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목 차

서문 ····· 1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 3

제2장 상품 무역 ····· 8

부속서 2-가-1 한국 관세양허표 ····· 23

부속서 2-가-2 아랍에미리트 관세양허표 ····· 273

제3장 원산지 규정 ····· 387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 428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439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 441

제7장 무역구제 ····· 449

제8장 서비스무역 ····· 458

부속서 8-가 금융서비스 ····· 479

부속서 8-나 통신 ····· 484

부속서 8-다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 ····· 496

부속서 8-라-1 한국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499

부속서 8-라-2 아랍에미리트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567

제9장 디지털 무역 ····· 606

제10장 지식재산 ····· 624

제11장 정부조달 ····· 648

부속서 11-가 정부조달 양허표 ····· 681

제12장 투자 원활화 협력 ····· 699

제13장 경제협력 ····· 701

제14장 중소기업 ····· 716

제15장 분쟁해결 ····· 722

제16장 예외 ····· 747

제17장 협정의 운영 ····· 749

제18장 최종 규정 ····· 751

서문

대한민국(이하 “한국” 이라 한다)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아랍에미리트”라 한다) 정부는,

이하 개별적으로 “당사국”이라 하고 집합적으로 “양 당사국”이라 하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돈독한 경제적・정치적 유대관계를 인정하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이러한 연계를 강화하여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확립할 것을 희망하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상 그들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기초할 것을 결의하며,

세계화와 기술적 진보로 인하여 역동적이고 급속히 변화하는 전 세계적 환경이 양 당사국에 다양한 경제적・전략적 도전과제와 기회를 제시함을 의식하고,

양국의 공동 관심사와 상호 이익을 위하여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와 확장을 통하여 양국의 경제 및 무역 관계를 발전시키고 강화할 것을 결의하며,

기술 협력을 증진하고 무역을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이 양 당사국 간 경제 및 무역 관계의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을 확신하며,

양국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유익한 규칙의 제정과 양국 영역 간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의 축소 또는 철폐를 목표로 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이 협정이 창출한 기회에 참여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지할 것을 결의하며,

무역과 투자의 추가적인 확대를 지지하는, 사업 계획을 위한 명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법적・상업적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할 것과 양국 경제의 분야에서 그리고 그 분야들 간에 더 강한 연계를 도모할 것을 희망하며,

규제를 위한 양국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고, 입법 및 규제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양 당사국의 유연성을 보전하고 정당한 공공 복지 목적을 보호할 것을 결의하며,

위의 내용을 추구하면서, 다음 협정(이하 “이 협정”이라 한다)의 체결에 합의하였다.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1.1조
일반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농업에 관한 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반덤핑 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관세 당국이란 각 당사국의 법에 따라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운영과 집행을 담당하는 당국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관세청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그리고

나.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연방주민등록세관항만보안청 또는 그 승계기관

관세는 생산품의 수입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생산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 또는 부과금(종류를 불문한다)을 지칭하나,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가. 1994년도 GATT 제3조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1994년도 GATT 제6조, 반덤핑 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반덤핑, 상계 또는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라. 농업에 관한 협정 제5조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관세

관세평가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이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란 WTO 협정 부속서 2의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를 말한다.

GATS란 WTO 협정 부속서 1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또는 HS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말하고 그 일반해석규칙, 부의 주, 류의 주, 그리고 소호의 주를 포함한다.

수입허가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동위원회란 이 협정의 제17.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조치란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관행, 행정조치의 형태이거나 그 밖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모든 조치를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

한 협정」을 말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다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WTO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그리고

WTO 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에 마라케쉬에서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말한다.

제1.2조
자유무역지대의 설립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따라, 그리고 상품,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시장접근 및 무역 자유화 기회를 증진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강화하며 양 당사국 간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한다.

제1.3조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양 당사국 간의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제1.4조
지리적 적용범위

이 협정은 다음에 적용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 및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

나.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자국의 법에 정의된 대로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아랍에미리트가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영토, 자국의 자유지역을 포함한 내수, 해저 및 그 하층토를 포함한 영해, 그러한 영역과 수역 위의 상공뿐만 아니라 접속수역,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

제1.5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양 당사국은 WTO 협정 및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그 밖의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2.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그 밖의 협정 간 불합치가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즉시 서로 협의한다.

제1.6조
지역 및 지방 정부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지역 및 지방 정부와 당국에 의한, 그리고 자국의 영역 내에서 중앙, 지역 및 지방 정부와 당국이 위임한 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정은 1994년도 GATT 제24조제12항 및 GATS 제1조제3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된다.

제1.7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과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들 각자의 국제 협정을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2. 제1.8조와 무관하게, 각 당사국은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응답하고, 요청에 따라, 제1항에 언급된 사안에 대한 정보를 서로 제공한다.

제1.8조
비밀 정보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한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당사국의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거나, 경제 운영자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당사국이 공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제2장
상품 무역

제2.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무관세란 관세가 없음을 말한다. 그리고

수입허가란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통관목적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제2.2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2.3조
내국 과세 및 규정에 대한 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를 구성한다.

제2.4조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부속서 2-가에 포함된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하지 않는다.

2. 이 협정의 발효 시, 한국은 부속서 2-가-1에 따라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적용되는 자국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고, 아랍에미리트는 부속서 2-가-2에 따라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한다.

3. 당사국이 자국의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그 관세율이 부속서 2-가에 포함된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보다 낮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관세율이 그러한 상품에 적용된다.

제2.5조
관세 양허의 가속화 또는 확대

1.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은 부속서 2-가에 포함된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양허를 가속화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을 고려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2. 제1항에 따른 양 당사국 간의 추가적 약속은 각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되었을 때 부속서 2-가에 포함된 각국의 양허표에 따라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양허를 일방적으로 가속화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한 모든 관세 양허의 일방적인 가속화 또는 그 범위의 확대는,

가. 부속서 2-가의 각국 양허표에 따라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영구적으로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나. 일방적인 인하를 한 후에 부속서 2-가에 포함된 각국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다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그 당사국의 권리를 상실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제2.6조
상품 분류 및 양허표 전환

1. 양 당사국 간 무역에서의 상품 분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및 그 개정에 합치한다.

2. 양 당사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주기적 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부속서 2-가에 포함된 각 당사국의 양허표를 현행화할 필요가 있는지 협의한다.

3.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국 양허표의 전환이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양허를 손상하지 않고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이는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 것과, 상품무역위원회가 채택할 합의된 전환 지침에 따르는 것을 포함한다.

제2.7조
수입 및 수출 제한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2.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WTO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달리 정당화되는 금지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경우, 조치를 부과하는

당사국은 시의적절하게 그 조치를 공표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은 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협의를 개시한다.

제2.8조
수입허가

1. 어떠한 당사국도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되는 수입허가협정[1]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2. 새로운 또는 변경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당사국은 정부의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에의 공표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정부 및 무역업자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를 공표한다.

제2.9조
관세평가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양 당사국 간 거래되는 상품의 관세가격을 결정한다.

제2.10조
수출 보조금

1. 어떠한 당사국도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과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수출 보조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국은 농산물에 대하여 예정된 수출 보조금 권리의 철폐를 포함하여 2015년 12월 19일에 나이로비에서 채택된 「수출 경쟁에 관한 WTO 각료회의

[1] 제1항의 목적상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양 당사국은 그 협정에 포함된 "수입허가"의 정의를 적용한다.

결정(WT/MIN(15)/45, WT/L/980)」에서 한 자국의 약속에 따라서만 당사국이 농산물에 대하여 수출 보조금을 유지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다.

제2.11조
국제수지 보호조치

1. 양 당사국은 국제수지 목적상 제한조치의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상품 무역을 위하여 국제수지 목적상 취해진 모든 조치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 1994년도 GATT 제12조 및 「1994년도 GATT의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를 따른다.

제2.12조
행정 수수료 및 형식

1. 각 당사국은 수입 및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이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 및 그 주해에 따른 자국의 의무에 합치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자국이 부과하는 수수료 및 부과금의 현행 목록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유지한다.

제2.13조
비관세 조치

1. 어떠한 당사국도 WTO 협정 또는 이 협정상 자국의 권리 및 의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비관세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2. 각 당사국은 비관세 조치와 관련된 자국의 법, 규정, 절차 및 행정판정이 다른 쪽 당사국과의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도록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3.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비관세 조치가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여기는 경우, 그 당사국은 상품무역위원회의 검토를 위하여 서면 요청서를 통하여 그러한 비관세 조치를 지명할 수 있으며, 서면 요청서는 예정된 차기 상품무역위원회 회의일의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된다. 검토를 위한 비관세 조치의 지명은 그 조치의 지명 사유, 그 조치가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가능한 경우, 제안된 해결책을 포함한다. 상품무역위원회는 요청의 접수일부터 90일 내에 그 사안에 대하여 상호 합의된 해결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시 그 조치를 검토한다. 상품무역위원회에 의한 검토는 제15장(분쟁해결)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와 무관하다.

제2.14조
국영무역기업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1994년도 GATT 제17조, 그 주해 및 「1994년도 GATT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에 따라 국영무역기업을 유지하거나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2.15조
상품의 일시 반입[2]

1. 각 당사국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다른 쪽 당사국에서 수입한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 반입을 허용한다.

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일시입국의 자격을 갖춘 인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2] 이 조의 목적상,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컨테이너"** 및 **"팔레트"** 라는 용어는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송 및 영화촬영 장비를 포함하는 전문 장비

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다. 상업용 견본품과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라.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그리고

마. 장비 운반에 사용되는 컨테이너 및 팔레트

2. 각 당사국은, 수입자나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자국의 관세 당국이 타당하다고 간주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처음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일시 반입의 기한을 연장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제1항에 언급된 상품의 자국 영역으로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않을 것

나.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세금 또는 부과금을 넘지 않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담보를 수반할 것

다. 그 상품이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라. 그 상품이 일시 반입의 목적과 관련된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일시 반입이 허용되는 기간 내에 수출될 것

마.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넘어 반입되지 않을 것

바.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해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 거래, 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 데 사용할 것, 또는

사. 그 상품이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달리 반입 가능할 것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관세 및 그 밖의 세금 또는 부과금과 자국의 법에 규정된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적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 당국을 통하여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의 신속한 반출을 규정하는 절차를 채택하고 유지한다. 가능한 범위에서, 그러한 절차는 그러한 상품이 일시 입국하려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동반될 때, 그 상품이 그 국민 또는 거주자의 입국과 동시에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항구 외의 다른 통관 항구를 통하여 수출되도록 허용한다.

7.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을 책임지는 수입자 또는 관계인이 일시 반입을 위하여 정해진 원래 기간 또는 적법한 연장기간 내에 그 상품이 폐기되었다는 납득할 만한 증거를 수입 당사국에 제시하면 그 상품을 수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다.[3]

제2.16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1. 어떠한 당사국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상품을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러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한 증가분에 각 당사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관세 또는 그 밖의 세금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3] 특정한 경우, 당사국은 이 항에 따른 책임 면제의 조건으로, 상품이 그렇게 폐기될 수 있기 전에 수입자 또는 관계인이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이 조의 목적상, "수리" 또는 "개조"는 다음의 작업이나 공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또는

나.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제2.17조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4]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그러한 견본품이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해서만 수입될 것, 또는

나. 그러한 광고물이 포장 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그러한 광고물의 각 1부를 초과하여 담고 있지 않을 것과 그 광고물 또는 그 포장 중 어떠한 것도 더 큰 탁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을 것

제2.18조
상품무역위원회

[4] 이 조의 목적상,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 및 "**인쇄된 광고물**"이란 용어는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공동위원회 산하에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매년 1회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된 시간, 장소 및 방법에 따라 회합한다. 위원회는 적절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는 전자우편, 화상회의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의 이행과 운영을 점검 및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 보고 및 권고하는 것

나. 이 협정에 따른 특혜 대우 또는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거나 그 범위를 개선하는 것과 적절한 경우 그 밖의 문제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을 증진하는 것

다.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비관세 조치의 적용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대한 장벽을 다루고,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그러한 사안을 공동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라. 이 협정에 따른 각 당사국의 의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개정을 검토하는 것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그러한 개정과 부속서 2-가 간의 충돌, 또는 부속서 2-가와 국가상품분류체계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것

마. 전환 방법 및 지침의 채택과 검토를 포함하여,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상품의 분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발생할 수 있는 차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바. 이 장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품 무역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것, 그리고

사. 공동위원회가 부여할 수 있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부속서 2-가-1
한국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이 부속서의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은 제2.4조에 따른 한국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적용된다.

가. 단계별 양허유형 "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의 발효일에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단계별 양허유형 "B"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 단계별 양허유형 "C"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라. 단계별 양허유형 "TR"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5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여,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기준세율의 50퍼센트로 유지된다. 그리고

마. 단계별 양허유형 "X"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기준세율로 유지된다.

2. 품목에 대한 각 관세 인하 단계에서의 과도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그 품목에 대하여 양허표에 표시된다.

3.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리거나,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한국의 경우 최소한 가장 근접한 한국 원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4. 이 부속서 및 그에 포함된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년차란 제18.4조(발효)에 규정된 대로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를 말한다.

5. 이 부속서 및 그에 포함된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속서 2-가-2
아랍에미리트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이 부속서의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은 제2.4조에 따른 아랍에미리트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적용된다.

가. 단계별 양허유형 “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의 발효일에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단계별 양허유형 “B”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 단계별 양허유형 “C”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라. 단계별 양허유형 “TR”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5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여,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기준세율의 50퍼센트로 유지된다.

마. 단계별 양허유형 “X”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기준세율로 유지된다.

바. 단계별 양허유형 “PH(금지품목)”인 품목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 관세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 단계별 양허유형 “SG(특별관심품목)”인 품목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 관세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2. 품목에 대한 각 관세 인하 단계에서의 과도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그 품목에 대하여 양허표에 표시된다.

3.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최소한 가장 근접한 아랍에미리트 디르함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4. 이 부속서 및 그에 포함된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년차란 제18.4조(발효)에 규정된 대로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를 말한다.

5. 이 부속서 및 그에 포함된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속서 2-가-1

한국 관세양허표

1) 소호 세번이 한 개 이상의 줄표(-)로 시작하는 추가 하위 분류를 포함하는 경우, 그러한 하위 세번에 대한 기준세율은 한국의 2021년 MFN 적용세율을 반영한다.

연번	HSK 2022 (10단위)	품목명	기준세율(2022 MFN 적용세율,%)[1)]	양허유형
1	0101211000	농가 사육용	0	A
2	0101219000	기타	8	B
3	0101291000	경주말	8	B
4	0101299000	기타	8	B
5	0101300000	당나귀		
		- 번식용	8	B
		- 기타	8	C
6	0101900000	기타	8	B
7	0102211000	젖소	89.1	A
8	0102212000	육우(肉牛)	89.1	A
9	0102219000	기타	89.1	A
10	0102291000	젖소	40	A
11	0102292000	육우(肉牛)	40	A
12	0102299000	기타	0	A
13	0102310000	번식용	89.1	A
14	0102391000	젖소	40	X
15	0102392000	육우(肉牛)	40	X
16	0102399000	기타	0	A
17	0102901000	번식용	89.1	A
18	0102909010	젖소	40	X
19	0102909020	육우(肉牛)	40	X
20	0102909090	기타	0	A
21	0103100000	번식용	18	A
22	0103910000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18	X
23	0103920000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18	X
24	0104101000	번식용	0	A
25	0104109000	기타	8	A
26	0104201000	젖염소	8	A
27	0104209000	기타	8	A
28	0105111000	번식용	9	A
29	0105119000	기타	9	A
30	0105120000	칠면조	9	A
31	0105131000	번식용	0	A
32	0105139000	기타	18	B
33	0105140000	거위	9	A
34	0105150000	기니아새	9	A
35	0105941000	번식용	9	B
36	0105949000	기타	9	B
37	0105991010	번식용	0	A
38	0105991090	기타	18	B
39	0105992000	칠면조	9	A
40	0105999000	기타	9	A

41	0106110000	영장류	8	A
42	0106121000	고래・돌고래・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8	A
43	0106122000	물개, 바다사자와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	8	B
44	0106130000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의 동물[카멜리대(Camelidae)과]	8	B
45	0106141000	번식용	0	A
46	0106149000	기타	8	B
47	0106191000	개	8	B
48	0106193000	사슴	8	B
49	0106194000	곰	8	A
50	0106195010	번식용	0	A
51	0106195090	기타	8	A
52	0106196010	번식용	0	A
53	0106196090	기타	8	B
54	0106199000	기타	8	B
55	0106201000	뱀	8	A
56	0106202000	자라	8	B
57	0106203000	거북	8	A
58	0106209000	기타	8	A
59	0106310000	맹금류	8	B
60	0106320000	앵무류[패럿류(parrots)・패러키트류(parakeets)・금강앵무류・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8	B
61	0106330000	타조와 에뮤(emus)[드로마이어스 노배홀란디애(Dromaius novaehollandiae)]	8	A
62	0106390000	기타	8	A
63	0106410000	벌		
		- 꿀벌	8	B
		- 기타	8	A
64	0106490000	기타	8	A
65	0106901000	양서류	8	A
66	0106903010	갯지렁이	8	B
67	0106903020	실지렁이	8	A
68	0106903090	기타	8	A
69	0106909000	기타	8	B
70	0201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40	A
71	0201201000	갈비	40	A
72	0201209000	기타	40	A
73	0201300000	뼈 없는 것	40	A
74	0202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40	A
75	0202201000	갈비	40	A
76	0202209000	기타	40	A
77	0202300000	뼈 없는 것	40	A
78	02031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2.5	X
79	020312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2.5	X
80	0203191000	삼겹살	22.5	X
81	0203199000	기타	22.5	X
82	02032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5	X
83	020322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5	X
84	0203291000	삼겹살	25	X
85	0203299000	기타	25	X

86	020410000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2.5	C
87	02042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2.5	C
88	020422000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2.5	C
89	0204230000	뼈 없는 것	22.5	C
90	020430000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2.5	C
91	02044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2.5	C
92	020442000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2.5	C
93	0204430000	뼈 없는 것	22.5	C
94	0204500000	염소의 고기	22.5	C
95	0205000000	말・당나귀・노새・버새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7	C
96	0206100000	소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C
97	0206210000	혀	18	A
98	0206220000	간	18	A
99	0206291000	꼬리	18	A
100	0206292000	족	18	A
101	0206299000	기타	18	A
102	0206300000	돼지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X
103	0206410000	간	18	X
104	0206491000	족	18	C
105	0206499000	기타	18	C
106	0206800000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C
107	0206900000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C
108	020711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X
109	020712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X
110	0207131000	절단육	18	X
111	0207132010	간	22.5	X
112	0207132090	기타	27	X
113	0207141010	다리	20	X
114	0207141020	가슴	20	X
115	0207141030	날개	20	X
116	0207141090	기타	20	X
117	0207142010	간	22.5	X
118	0207142090	기타	27	X
119	020724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C
120	020725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C
121	0207261000	절단육	18	C
122	0207262010	간	22.5	C
123	0207262090	기타	27	C
124	0207271000	절단육	18	C
125	0207272010	간	22.5	C
126	0207272090	기타	27	C
127	020741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X
128	020742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X
129	0207430000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2.5	X
130	0207441000	절단육	18	X
131	0207442010	간	22.5	X
132	0207442090	기타	27	X
133	0207451000	절단육	18	X

134	0207452010	간	22.5	X
135	0207452090	기타	27	X
136	020751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C
137	020752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X
138	0207530000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2.5	C
139	0207541000	절단육	18	C
140	0207542010	간	22.5	C
141	0207542090	기타	27	C
142	0207551000	절단육	18	C
143	0207552010	간	22.5	C
144	0207552090	기타	27	C
145	0207601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C
146	0207602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X
147	0207603100	절단육	18	C
148	0207603210	간	22.5	C
149	0207603290	기타	27	C
150	0207604100	절단육	18	C
151	0207604210	간	22.5	C
152	0207604290	기타	27	C
153	0208100000	토끼의 것	22.5	C
154	0208300000	영장류의 것	18	B
155	0208401000	고래 · 돌고래 · 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30	A
156	0208402000	물개 · 바다사자 ·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30	A
157	0208500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18	A
158	0208600000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카멜리대(Camelidae)과]의 것	18	C
159	0208901000	사슴의 것	27	C
160	0208909010	해양동물의 것	30	A
161	0208909090	기타	18	C
162	0209100000	돼지의 것	3	A
163	0209900000	기타	3	A
164	0210110000	넓적다리살 · 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5	X
165	0210120000	복부살(삼겹살)과 이를 절단한 것	30	X
166	0210190000	기타	25	X
167	0210201000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	27	X
168	0210209000	기타	27	X
169	0210910000	영장류의 것	22.5	C
170	0210921000	고래 · 돌고래 · 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 · 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22.5	X
171	0210922000	물개 · 바다사자 ·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22.5	X
172	0210930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22.5	C
173	0210991010	소의 것	22.5	X
174	0210991090	기타		
		- 가금(家禽)류의 것	22.5	C
		- 기타	22.5	X
175	0210999020	가금(家禽)류의 것	22.5	C
176	0210999090	기타		
		- 면양과 염소의 것	22.5	C
		- 기타	22.5	X
177	0301111000	비단잉어	10	A

178	0301119000	기타	10	X
179	0301190000	기타	10	X
180	03019100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 (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 (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 (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 (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Oncorhynchus chrysogaster)]	10	A
181	0301921000	실뱀장어(한 마리당 0.3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양식용으로 한정한다)	0	A
182	0301922000	새끼뱀장어(한 마리당 0.3그램 초과 5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양식용으로 한정한다)	5	X
183	0301929010	실뱀장어(양식용은 제외한다)	10	X
184	0301929090	기타	20	X
185	0301931000	붕어[카라시우스(Carassius)속]	10	B
186	0301939000	기타	10	B
187	0301940000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Thunnus thynnus)・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 대서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Thunnus thynnus)]	10	A
		-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10	X
188	03019500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10	A
189	0301992000	방어	10	A
190	0301994010	치어(稚魚)(양식용으로 한정한다)	0	A
191	0301994091	참돔[파그루스 마조르(Pagrus major)]	28% 또는 2,052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92	0301994099	기타	28% 또는 2,052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93	0301995000	붕장어	10	A
194	0301996000	갯장어	10	A
195	0301997000	먹장어	10	B
196	0301998000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바디대(Bothidae)과・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솔레이대(Soleidae)과・스코프탈미대(Scophthalmidae)과・시타리대(Citharidae)과]	10	X
197	0301999010	능성어	10	X
198	0301999020	복어	10	X
199	0301999040	볼락(적어를 포함한다)	10	X
200	0301999051	치어(稚魚)(양식용으로 한정한다)	0	A
201	0301999059	기타	28	X
202	0301999060	숭어	10	B
203	0301999070	미꾸라지	10	B
204	0301999080	메기	10	A
205	0301999091	노래미[헥사그라모스(Hexagrammos)속・아그라무스(Agrammus)속]	10	X
206	0301999092	붕어[카라시우스(Carassius)속은 제외한다]	10	B
207	0301999095	민어	10	X
208	0301999099	기타		
		- 틸라피아	10	A
		- 연어	10	A
		- 초어	10	A

		-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은 제외한다]	10	B
		- 기타	10	X
209	03021100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20	A
210	0302130000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20	B
211	0302140000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20	B
212	0302190000	기타	20	A
213	0302210000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20	X
214	0302220000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20	A
215	0302230000	서대[솔레아(Solea)속]	20	A
216	0302240000	터벗(turbots)[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20	X
217	0302290000	기타	20	X
218	0302310000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Thunnus alalunga)]	20	A
219	03023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20	A
220	0302330000	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카추워누스 펠라미스(Katsuwonus pelamis)]	20	A
221	03023400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20	A
222	0302351000	대서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Thunnus thynnus)]	20	A
223	0302352000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20	X
224	03023600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20	A
225	0302390000	기타	20	X
226	030241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20	A
227	0302420000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	20	X
228	0302430000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속],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20	A
229	0302440000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20	X
230	0302450000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속]	20	A

231	0302460000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20	X
232	030247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20	A
233	0302491000	삼치[스콤버로모러스(Scomberomorus)속]	20	X
234	0302492000	병어[팜푸스(Pampus)속]	20	X
235	0302493000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20	B
236	0302499000	기타	20	X
237	030251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20	B
238	030252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20	A
239	03025300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20	A
240	0302540000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속・유르피키스(Urophycis)속]	20	X
241	03025500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20	X
242	0302560000	블루 화이팅스(blue whi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20	X
243	0302590000	기타	20	X
244	030271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20	X
245	03027200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20	X
246	0302730000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20	X
247	0302740000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20	A
248	0302790000	기타	20	X
249	0302810000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20	A
250	0302820000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20	X
251	030283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20	A
252	0302840000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속]	20	X
253	0302850000	돔[스파리대(Sparidae)과]	20	X
254	0302891000	방어	20	A
255	0302892000	갈치	20	X
256	0302893000	붕장어	20	A
257	0302894000	갯장어	20	A
258	0302895000	학꽁치(Hyporhampus sajori)	20	B
259	0302896000	돔[스파리대(Sparidae)과는 제외한다]	20	X
260	0302899020	복어	20	B
261	0302899040	아귀	20	C
262	0302899090	기타	20	A
263	0302911000	간	20	A
264	0302912000	어란(魚卵)・어백(魚白)	20	A
265	0302920000	상어 지느러미	20	A
266	0302990000	기타	20	A
267	0303110000	소크아이 연어[홍연어(red salmon)][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10	B

268	0303120000	그 밖의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10	C
269	0303130000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10	B
270	03031400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10	B
271	0303190000	기타	10	B
272	030323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10	X
273	03032400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10	X
274	0303250000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10	X
275	0303260000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10	B
276	0303290000	기타	10	X
277	0303310000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10	X
278	0303320000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10	X
279	0303330000	서대[솔레아(Solea)속]	10	B
280	0303340000	터벗(turbots)[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10	X
281	0303391000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를 제외한다]	10	X
282	0303399000	기타	10	X
283	0303410000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Thunnus alalunga)]	10	B
284	03034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10	X
285	0303430000	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카추워누스 펠라미스(Katsuwonus pelamis)]	10	B
286	03034400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10	C
287	0303451000	대서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10	B
288	0303452000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10	B
289	03034600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10	B
290	0303490000	기타	10	B
291	030351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10	X
292	0303530000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속],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10	X

293	0303540000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10	X
294	0303550000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속]	10	X
295	0303560000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10	X
296	030357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10	X
297	0303591000	삼치[스콤버로모러스(Scomberomorus)속]	10	C
298	0303592000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24	C
299	0303599000	기타	10	A
300	030363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10	X
301	030364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10	B
302	03036500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10	B
303	0303660000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속・유르피키스(Urophycis)속]	10	B
304	03036700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22	X
305	0303680000	블루 화이팅스(blue whi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10	X
306	0303691000	새꼬리민태	10	B
307	0303699000	기타	22	X
308	0303810000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10	B
309	0303821000	가오리	10	X
310	0303822000	홍어	10	X
311	030383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10	B
312	0303840000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속]	10	X
313	0303891000	은대구	10	B
314	0303892000	갈치	10	X
315	0303893010	옥돔[브랜치오스테거스 자포니커스(Branchiostegus japonicus)]	10	C
316	0303893020	옥두어[브랜치오스테거스 알부스(Branchiostegus albus)]	10	A
317	0303893090	기타	10	A
318	0303894000	붕장어	10	C
319	0303895010	참조기[라리미크티스 폴리악티스(Larimichthys polyactis)]	10	C
320	0303895020	부세[라리미크티스 크로세아(Larimichthys crocea)]	10	C
321	0303895090	기타	10	C
322	0303896000	학꽁치(Hyporhampus sajori)	10	C
323	0303898000	복어	10	C
324	0303899010	보리멸	10	B
325	0303899020	홍살치	10	B
326	0303899030	달고기	10	B
327	0303899040	임연수어	10	B
328	0303899050	볼낙(적어를 포함한다)	10	C
329	0303899060	아귀	10	C
330	0303899070	먹장어(대서양 또는 태평양)	10	B
331	0303899080	밀크피쉬	10	A
332	0303899091	민어	10	C
333	0303899092	까나리	10	B
334	0303899093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은 제외한다]	10	B
335	0303899099	기타	10	A

336	0303911000	간	10	A
337	0303912010	명란	10	B
338	0303912090	기타	10	C
339	0303920000	상어 지느러미	10	B
340	0303990000	기타	10	A
341	030431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20	B
342	03043200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20	B
343	0304330000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20	B
344	0304390000	기타	20	B
345	0304410000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20	B
346	03044200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20	B
347	0304431000	가자미	20	A
348	0304439000	기타	20	B
349	0304440000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20	B
350	030445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20	A
351	030446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20	A
352	0304470000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20	B
353	0304480000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20	B
354	0304491000	붕장어	20	X
355	0304492000	참다랑어	20	A
356	0304499000	기타	20	B
357	0304511000	연육	20	C
358	0304519000	기타	20	C
359	0304520000	연어과	20	C
360	0304530000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20	C
361	030454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20	A
362	030455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20	A
363	0304560000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20	C
364	0304573000	연육	20	C
365	0304579000	기타	20	C
366	0304591000	붕장어	20	A
367	0304592000	가자미	20	A
368	0304593010	연육	20	A

369	0304593090	기타	20	A
370	0304599010	연육	20	C
371	0304599090	기타	20	C
372	030461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10	B
373	03046200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10	X
374	0304630000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10	X
375	0304690000	기타	10	X
376	030471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10	B
377	030472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10	X
378	03047300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10	X
379	0304740000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속・유르피키스(Urophycis)속]	10	X
380	03047500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10	X
381	0304790000	기타	10	B
382	0304810000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10	X
383	03048200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10	X
384	0304831000	가자미	10	B
385	0304839000	기타	10	X
386	030484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10	X
387	030485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10	A
388	030486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10	X
389	0304871000	참다랑어	10	B
390	0304879000	기타	10	X
391	0304881000	곱상어, 그 밖의 상어	10	X
392	0304889000	기타	10	X
393	0304891000	붕장어의 것	10	B
394	0304892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은 제외한다]의 것	10	A
395	0304893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은 제외한다]의 것	10	B
396	0304894000	쥐치의 것	10	B
397	0304895000	고등어의 것	10	A
398	0304899000	기타	10	A
399	0304911000	냉동 연육	10	X
400	0304919000	기타	10	X
401	0304921000	냉동 연육	10	A
402	0304929000	기타	10	A
403	0304931000	냉동 연육	10	X
404	0304939000	기타	10	C

405	0304941000	냉동 연육	10	X
406	0304949000	기타	10	X
407	0304951000	냉동 연육	10	X
408	0304959000	기타	10	C
409	0304960000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 냉동 연육	10	X
		- 기타	10	C
410	0304970000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 냉동 연육	10	X
		- 기타	10	C
411	0304991000	냉동 연육	10	X
412	0304999000	기타	10	C
413	0305201000	간	20	A
414	0305202000	건조한 어란(魚卵)과 어백(魚白)	20	A
415	0305203000	훈제한 어란(魚卵)과 어백(魚白)	20	A
416	0305204010	명태의 것	20	A
417	0305204020	조기의 것	20	A
418	0305204030	청어의 것	20	A
419	0305204090	기타	20	A
420	0305311000	건조한 것	20	B
421	030531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B
422	0305321000	건조한 것	20	B
423	030532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B
424	0305391000	건조한 것	20	B
425	030539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B
426	0305410000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20	X
427	030542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20	A
428	03054300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20	B
429	030544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20	B
430	0305491000	멸치	20	X
431	0305492000	명태	20	A

432	0305499000	기타	20	B
433	030551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20	B
434	030552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20	X
435	0305531000	명태(북어)	20	X
436	0305539000	기타	20	X
437	0305541000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	20	X
438	0305549000	기타	20	X
439	0305594000	조기(굴비)	20	X
440	0305595000	복어	20	A
441	0305596000	갯장어	20	A
442	0305597000	까나리	20	A
443	0305598000	베도라치(실치)	20	A
444	0305599000	기타	20	X
445	030561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20	A
446	030562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20	A
447	0305631000	멸치젓	20	X
448	0305639000	기타	20	X
449	030564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20	C
450	0305691000	연어	20	A
451	0305692000	송어	20	A
452	0305693000	갈치	20	X
453	0305694000	정어리	20	A
454	0305695000	고등어	20	X
455	0305696000	조기	20	B
456	0305698000	꽁치(학꽁치를 포함한다)	20	A
457	0305699000	기타		
		- 전갱이	20	A
		- 기타	20	C
458	0305711000	훈제한 것	20	B
459	0305712000	건조한 것	20	A
460	030571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C

461	0305720000	어류의 머리・꼬리・부레	20	A
462	0305790000	기타	20	A
463	0306111000	훈제한 것	20	B
464	0306119000	기타	20	B
465	0306121000	훈제한 것	20	A
466	0306129000	기타	20	A
467	0306141010	훈제한 것	20	A
468	0306141090	기타	20	X
469	0306142000	왕게		
		- 훈제한 것	20	C
		- 기타	20	X
470	0306143010	훈제한 것	20	C
471	0306143090	기타	14	X
472	0306149010	훈제한 것	20	C
473	0306149090	기타	14	X
474	0306151000	훈제한 것	20	B
475	0306159000	기타	20	X
476	0306161010	훈제한 것	20	X
477	0306161090	기타	20	X
478	0306169010	훈제한 것	20	X
479	0306169090	기타	20	X
480	0306171010	훈제한 것	20	X
481	0306171090	기타	20	X
482	0306179010	훈제한 것	20	X
483	0306179091	흰다리새우[리토페나에우스 바나메이(Litopenaeus vannamei)]	20	X
484	0306179099	기타	20	X
485	0306191000	훈제한 것	20	B
486	0306199000	기타	20	X
487	0306310000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속・파누리루스(Panulirus)속・자수스(Jasus)속]	20	C
488	0306320000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속]	20	X
489	0306331000	꽃게[포르투누스 트리투버큘라투스(Portunus trituberculatus)]	20	X
490	0306332000	대게	20	X
491	0306339000	기타	20	X
492	0306340000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20	X
493	0306350000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속・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	20	C
494	0306360000	그 밖의 새우류	20	C
495	0306390000	기타	20	X
496	0306910000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속・파누리루스(Panulirus)속・자수스(Jasus)속]		
		- 훈제한 것	20	B
		- 기타	20	C
497	0306920000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속]		
		- 훈제한 것	20	A
		- 기타	20	X
498	0306930000	게		
		- 훈제한 것		
		-- 게살	20	A

		-- 기타	20	C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X
		- 기타	20	C
499	0306940000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 훈제한 것	20	B
		- 기타	20	X
500	0306951020	건조한 것	20	X
501	030695103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32	X
502	0306951040	훈제한 것	20	X
503	0306959020	건조한 것	20	X
504	030695903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32	X
505	0306959040	훈제한 것	20	X
506	0306992000	건조한 것	20	X
507	03069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X
508	0306994000	훈제한 것	20	B
509	0307111010	종패용	0	A
510	0307111090	기타	5	A
511	0307119000	기타	20	A
512	0307120000	냉동한 것	20	A
513	0307192000	건조한 것	20	A
514	03071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A
515	0307194000	훈제한 것	20	A
516	0307211000	펙텐(Pecten)·클라미스(Chlamys)·플라코펙텐(Placopecten)속의 것	20	B
517	0307219000	기타		
		-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0	B
		- 기타	20	C
518	0307221000	펙텐(Pecten)·클라미스(Chlamys)·플라코펙텐(Placopecten)속의 것	20	X
519	0307229000	기타	20	X
520	0307291000	펙텐(Pecten)·클라미스(Chlamys)·플라코펙텐(Placopecten)속의 것		
		- 훈제한 것	20	B
		- 기타	20	A
521	0307299000	기타		
		- 훈제한 것	20	B
		- 건조한 것	20	C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X
522	03073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0	A
523	0307320000	냉동한 것	20	X
524	0307392000	건조한 것	20	A
525	0307399000	기타	20	A
526	0307421010	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세피올라(Sepiola)속	10	B
527	0307421090	기타	20	C
528	0307422010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속·로리고(Loligo)속·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속·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속	10	A
529	0307422090	기타	20	C
530	0307431010	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세피올라(Sepiola)속	10	X

531	0307431090	기타	20	X
532	0307432010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속・로리고(Loligo)속・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속・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속	22	X
533	0307432090	기타	22	X
534	0307492010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세피올라(Sepiola)속]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속・로리고(Loligo)속・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속・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속]	10	X
535	0307492090	기타	20	X
536	0307493010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세피올라(Sepiola)속]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속・로리고(Loligo)속・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속・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속]	10	X
537	0307493090	기타	20	C
538	0307494010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세피올라(Sepiola)속]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속・로리고(Loligo)속・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속・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속]	20	A
539	0307494090	기타	20	B
540	0307511000	낙지	20	B
541	0307512000	주꾸미	20	B
542	0307519000	기타	20	B
543	0307521000	문어	20	X
544	0307522000	낙지	20	X
545	0307523000	주꾸미	20	X
546	0307529000	기타	20	X
547	0307592000	건조한 것	20	A
548	0307599000	기타		
		- 훈제한 것	20	B
		- 기타	20	C
549	0307600000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 훈제한 것	20	B
		- 기타	20	A
550	0307711000	백합		
		- 치패(稚貝)	20	A
		- 기타	20	B
551	0307712010	종패용	0	A
552	0307712090	기타	20	B
553	0307713000	새조개	20	A
554	0307714000	바지락	20	B
555	0307715000	개조개	20	C
556	0307719000	기타	20	C
557	0307721000	새조개	20	A
558	0307722000	개량조개	20	A
559	0307723000	바지락	20	X
560	0307724000	피조개	20	B
561	0307725000	개조개	20	X
562	0307729000	기타	20	X
563	0307792010	개량조개	20	A

564	0307792020	바지락	20	A
565	0307792090	기타	20	C
566	0307793010	개량조개	20	A
567	0307793020	바지락	20	B
568	0307793090	기타	20	X
569	0307794010	새조개	20	A
570	0307794090	기타	20	B
571	0307810000	살아 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속]	20	X
572	0307820000	살아 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속]	20	C
573	0307830000	냉동한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속]	20	X
574	0307840000	냉동한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속]	20	X
575	0307871000	건조한 것	20	C
576	030787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X
577	0307873000	훈제한 것	20	B
578	0307881000	건조한 것	20	C
579	030788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X
580	0307883000	훈제한 것	20	B
581	0307911000	소라	20	A
582	0307912010	종패용	0	A
583	0307912090	기타	20	A
584	0307913000	조개관자	20	A
585	0307914000	재첩	20	A
586	0307919000	기타	20	C
587	0307921000	조개관자	20	X
588	0307922000	소라	20	A
589	0307929000	기타	20	X
590	0307992100	조개관자	20	A
591	0307992900	기타	20	C
592	03079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 소라	20	A
		- 기타	20	X
593	03079941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B
594	0307994120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20	A
595	0307994900	기타	20	B
596	03081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0	A
597	0308120000	냉동한 것	20	A
598	0308192000	건조한 것	20	A
599	03081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A
600	0308194000	훈제한 것	20	B
601	03082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0	A
602	0308220000	냉동한 것	20	X
603	0308292000	건조한 것	20	C
604	03082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A
605	0308294000	훈제한 것	20	B
606	0308301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0	A
607	0308302000	냉동한 것	20	X
608	0308303000	건조한 것	20	C
609	0308304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B
610	0308305000	훈제한 것	20	B

611	0308901011	종묘(種苗)	0	A
612	0308901019	기타	20	B
613	0308901090	기타	20	X
614	0308902010	우렁쉥이(멍게)	20	A
615	0308902090	기타	20	X
616	0308903000	건조한 것		
		- 우렁쉥이(멍게)	20	A
		- 기타	20	C
617	0308904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X
618	0308905000	훈제한 것	20	B
619	0309100000	어류의 것	20	A
620	0309901000	갑각류의 것		
		- 훈제한 것	20	B
		- 기타	20	X
621	0309902000	연체동물의 것		
		- 훈제한 것	20	B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0	C
		- 건조한 것	20	C
		- 기타	20	X
622	0309909000	기타		
		- 냉동한 것		
		-- 우렁쉥이(멍게)	20	A
		-- 기타	20	X
		- 건조한 것		
		-- 우렁쉥이(멍게)	20	A
		-- 기타	20	C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X
		- 기타	20	B
623	0401100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이하인 것	36	X
624	0401200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초과 100분의 6 이하인 것	36	C
625	0401401000	냉동크림	36	X
626	0401409000	기타	36	X
627	0401501000	냉동크림	36	X
628	0401509000	기타	36	X
629	0402101010	탈지(脫脂)분유	176	X
630	0402101090	기타	176	X
631	0402109000	기타	176	X
632	0402211000	전지분유	176	X
633	0402219000	기타	176	X
634	0402290000	기타	176	X
635	0402911000	무가당연유(無加糖煉乳)	89	X
636	0402919000	기타	89	X
637	0402991000	가당연유(加糖煉乳)	89	X
638	0402999000	기타	89	X
639	0403201000	액체 상태인 것		
		- 제1901.10.1090호의 것	40	C
		- 기타	36	X
640	0403202000	냉동한 것		
		- 제1901.10.1090호의 것	40	C
		- 기타	36	X
641	0403209000	기타		

		- 제1901.10.1090호의 것	40	C
		- 기타	36	X
642	0403901000	버터밀크	89	X
643	0403909000	기타	36	X
644	0404101011	사료용	49.5	C
645	0404101019	기타	49.5	C
646	0404101091	사료용	49.5	X
647	0404101099	기타	49.5	X
648	0404102111	사료용	49.5	X
649	0404102119	기타	49.5	X
650	0404102121	사료용	49.5	C
651	0404102129	기타	49.5	C
652	0404102131	사료용	49.5	C
653	0404102139	기타	49.5	C
654	0404102191	사료용	49.5	X
655	0404102199	기타	49.5	X
656	0404102910	사료용	49.5	X
657	0404102990	기타	49.5	X
658	0404901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36	X
659	0404902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36	X
660	0405100000	버터	89	X
661	0405200000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8	B
662	0405900000	기타	89	C
663	0406101010	모차렐라 치즈(Mozzarella cheese)	36	X
664	0406101020	크림 치즈	36	X
665	0406101090	기타	36	X
666	0406102000	커드(curd)	36	X
667	0406200000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36	X
668	0406300000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36	X
669	0406400000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36	X
670	0406901000	체더 치즈(Cheddar cheese)	36	X
671	0406902000	하우다 치즈(Gouda cheese)	36	X
672	0406903000	카망베르 치즈(Camembert cheese)	36	X
673	0406904000	에멘탈 치즈(Emmental cheese)	36	X
674	0406909000	기타	36	X
675	0407110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27	C
676	0407190000	기타	27	C
677	0407210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27	C
678	0407290000	기타	27	C
679	0407900000	기타	27	C
680	0408110000	건조한 것	27	X
681	0408190000	기타	27	X
682	0408910000	건조한 것	27	C
683	0408991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41.6	X
684	0408999000	기타	27	X
685	0409000000	천연꿀	243% 또는 1,864원/kg 양자 중 고액(율)	X

686	0410100000	곤충		
		- 제0208.90.9090호의 것	18	C
		- 제0210.99.9090호의 것	22.5	X
		- 기타	8	A
687	0410901000	칼새둥지	8	A
688	0410902000	로열젤리	8	C
689	0410909000	기타	8	A
690	0501000000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웨이스트(waste)	3	A
691	0502100000	돼지털・멧돼지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3	A
692	0502900000	기타	3	A
693	0504001010	소의 것	27	C
694	0504001021	소시지 케이싱용	27	C
695	0504001029	기타	27	C
696	0504001031	소시지 케이싱용	27	C
697	0504001039	기타	27	C
698	0504001090	기타	27	C
699	0504002000	방광	27	C
700	0504003000	위	27	C
701	0505100000	솜털과 충전재용 깃털	3	B
702	0505901000	깃털 가루	5	A
703	0505909000	기타	5	B
704	0506100000	골소(骨素)와 뼈[산(酸)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3	A
705	0506901020	소의 것	9	A
706	0506901090	기타	3	A
707	0506902000	뼛가루	25.6	C
708	0506909000	기타	3	A
709	0507101000	상아	8	A
710	0507109000	기타	8	A
711	0507901110	전지(全枝)	20	X
712	0507901190	기타	20	X
713	0507901200	녹각	20	X
714	0507902010	귀갑(龜甲)과 귀판(龜板)	8	A
715	0507902020	고래수염과 그 털	8	A
716	0507902090	기타	8	A
717	0508001000	산호	8	A
718	0508002010	진주패각	8	A
719	0508002020	청패각(전복)	8	A
720	0508002030	첩패각과 지첩패각	8	A
721	0508002040	야광패각(소라)	8	A
722	0508002050	트로커스(Trocus) 패각	8	A
723	0508002060	아고야(Agoya) 패각	8	A
724	0508002070	민물패각[메가로나이아스네보사(Megalonaiasnervosa), 앰브레마프리카타(Amblemaplicata), 콰드루라 콰드루라(Quadrula quadrula)속]	8	A
725	0508002090	기타	8	X
726	0508009000	기타	8	A
727	0510003000	사향	8	A
728	0510004000	우황	8	A
729	0510009000	기타	8	A
730	0511100000	소의 정액	0	A

731	0511911010	브라인 슈림프(brine shrimp) 알	8	A
732	0511911090	기타	8	A
733	0511912000	어류의 웨이스트(waste)	5	B
734	0511919000	기타	8	X
735	0511991000	동물의 피	8	A
736	0511992010	돼지의 정액	0	A
737	0511992090	기타	0	A
738	0511993010	소의 것	18	A
739	0511993020	돼지의 것	18	A
740	0511993090	기타	0	A
741	0511994000	동물의 건(腱)과 근(筋)	18	C
742	0511995030	정돈한 말의 털	3	A
743	0511995090	기타	3	A
744	0511996000	동물성의 해면	8	A
745	0511999010	잠종(蠶種)	18	A
746	0511999020	누에번데기	8	A
747	0511999030	동물의 사체(제3류 물품의 사체는 제외한다)	8	A
748	0511999040	원피의 페어링(paring)과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waste)	8	A
749	0511999090	기타	8	A
750	0601101000	튤립의 것	8	A
751	0601102000	백합의 것	4	A
752	0601104000	히아신스의 것	8	A
753	0601105000	글라디올러스의 것	8	A
754	0601106000	아이리스의 것	8	A
755	0601107000	프리지어의 것	8	A
756	0601108000	수선화의 것	8	A
757	0601109000	기타	8	A
758	0601201000	튤립의 것	8	A
759	0601202000	백합의 것	8	A
760	0601207000	아이리스의 것	8	A
761	0601208000	프리지어의 것	8	A
762	0601209010	수선화의 것	8	A
763	0601209090	기타	8	A
764	0602100000	뿌리가 없는 꺾꽂이용 가지와 접붙임용 가지		
		- 과수목의 것	8	A
		- 기타	8	X
765	0602201000	사과나무	18	A
766	0602202000	배나무	18	A
767	0602203000	복숭아나무	18	A
768	0602204000	포도나무	8	A
769	0602206000	귤나무	18	A
770	0602209000	기타		
		- 감나무	8	A
		- 기타	8	B
771	0602300000	철쭉과 진달래속의 식물(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8	B
772	0602400000	장미(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8	A
773	0602901010	난초	8	A
774	0602901020	카네이션	8	A
775	0602901030	구즈마니아	8	A
776	0602901040	안개초	8	A
777	0602901050	국화	8	A

778	0602901060	선인장류	8	A
779	0602901090	기타	8	A
780	0602902010	분재용		
		- 낙엽송	8	B
		- 삼나무	8	B
		- 편백	8	B
		- 리기테다	8	B
		- 기타	8	X
781	0602902021	단풍나무	8	B
782	0602902029	기타	8	B
783	0602902090	기타	8	B
784	0602909010	목단	8	B
785	0602909030	뽕나무	18	A
786	0602909040	버섯의 종균(種菌)	8	A
787	0602909050	잔디	8	A
788	0602909090	기타		
		- 동백나무	8	B
		- 기타	8	A
789	0603110000	장미	25	B
790	0603120000	카네이션	25	B
791	0603131000	심비디움(Cymbidiums)	25	B
792	0603132000	팔레놉시스(Phalaenopsis)	25	B
793	0603139000	기타	25	B
794	0603140000	국화	25	B
795	0603150000	백합[릴리움(Lilium)속]	25	B
796	0603191000	튤립	25	B
797	0603199000	기타	25	B
798	0603900000	기타	25	B
799	0604201000	이끼와 지의(地衣)	8	B
800	0604202000	식물의 잎	8	B
801	0604209000	기타	8	B
802	0604901000	이끼와 지의(地衣)	8	B
803	0604909000	기타	8	B
804	0701100000	종자용	304	X
805	0701900000	기타	304	X
806	0702001000	방울토마토	45	B
807	0702009000	기타	45	B
808	0703101010	껍질을 벗긴 것	135% 또는 180원/kg 양자 중 고액(율)	X
809	0703101090	기타	135% 또는 180원/kg 양자 중 고액(율)	X
810	0703103000	샬롯(shallot)	27	B
811	0703201000	껍질을 깐 것	360% 또는 1,800원/kg 양자 중 고액(율)	X
812	0703209000	기타	360% 또는 1,800원/kg 양자 중 고액(율)	X
813	0703901000	리크(leek)	27	B
814	0703902000	대파	27	B
815	0703903000	쪽파	27	B
816	0703909000	기타	27	B
817	0704100000	꽃양배추와 브로콜리(broccoli)	27	B
818	0704200000	방울다다기 양배추	27	X

819	0704901000	양배추	27	B
820	0704902000	배추	27	B
821	0704909000	기타	27	B
822	0705110000	결구(結球) 상추	45	X
823	0705190000	기타	45	X
824	0705210000	위트루프 치커리(Witloof chicory)[시코리엄 인티부스 변종 포리오섬(Cichorium intybus var. foliosum)]	8	B
825	0705290000	기타	8	B
826	0706101000	당근	30% 또는 134원/kg 양자 중 고액(율)	B
827	0706102000	순무	27	B
828	0706901000	무	30	X
829	0706902000	고추냉이와 겨자무	27	A
830	0706903000	더덕	27	X
831	0706904000	도라지	27	X
832	0706909000	기타	27	B
833	0707000000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7	X
834	0708100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7	B
835	0708200000	콩[비그나(Vigna)속・파세러스(Phaseolus)속)]	27	A
836	0708900000	그 밖의 채두류(菜豆類)	27	B
837	070920000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7	X
838	0709300000	가지(에그플랜트)	27	B
839	0709400000	셀러리(celery)[셀러리액(celeriac)은 제외한다]	27	B
840	0709517000	양송이 버섯	30	B
841	0709519000	기타	30	C
842	0709520000	볼레투스(Boletus)속의 버섯	30	C
843	0709530000	칸타렐루스(Cantharellus)속의 버섯	30	C
844	0709540000	표고버섯(Lentinus edodes)	40% 또는 1,625원/kg 양자 중 고액(율)	X
845	0709550000	송이버섯(Tricholoma matsutake, Tricholoma magnivelare, Tricholoma anatolicum, Tricholoma dulciolens, Tricholoma caligatum)	30	X
846	0709560000	송로버섯[튜버(Tuber) 속]	27	X
847	0709593000	영지버섯	30	B
848	0709594010	큰느타리버섯	30	B
849	0709594090	기타	30	B
850	0709595000	팽이버섯	30	B
851	0709599000	기타	30	C
852	0709601000	단고추(벨타입으로 한정한다)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	X
853	0709609000	기타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	X
854	0709700000	시금치류	27	B
855	0709910000	글로브 아티초크(globe artichoke)	27	C
856	0709920000	올리브	27	C
857	0709930000	호박류[쿠쿠르비타(Cucurbita)속]	27	B
858	0709991000	고사리	30	X
859	0709992000	고비	27	X
860	0709993000	깻잎	27	B
861	0709999000	기타	27	B
862	0710100000	감자	27	B
863	0710210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7	B

864	0710220000	콩[비그나(Vigna)속・파세러스(Phaseolus)속)]	27	B
865	0710290000	기타	27	B
866	0710300000	시금치류	27	A
867	0710400000	스위트콘	30	B
868	0710801000	양파	27	X
869	0710802000	마늘	27	X
870	0710804000	당근	27	B
871	0710805000	고사리	30	X
872	0710806000	송이버섯	27	X
873	0710807000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27	X
874	0710808010	취(참취, 개미취, 곰취, 미역취)	27	B
875	0710808020	고려엉겅퀴(곤드레)	27	B
876	0710809010	대파	27	B
877	0710809090	기타		
		- 죽순	27	X
		- 기타	27	B
878	0710900000	채소류의 혼합물	27	B
879	0711200000	올리브	27	A
880	0711400000	오이류	30	X
881	0711510000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30	B
882	0711591000	송로(松露)	27	X
883	0711599000	기타	30	C
884	0711901000	마늘	360% 또는 1,800원/kg 양자 중 고액(율)	X
885	0711903000	죽순	27	X
886	0711904000	당근	27	X
887	0711905010	고사리	27	X
888	0711905020	고비	27	X
889	0711905091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	X
890	0711905099	기타	27	A
891	0711909000	채소류의 혼합물	27	A
892	0712200000	양파	135% 또는 180원/kg 양자 중 고액(율)	X
893	0712311000	양송이 버섯	30	C
894	0712319000	기타	30% 또는 1,218원/kg 양자 중 고액(율)	B
895	0712320000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속]	30% 또는 1,218원/kg 양자 중 고액(율)	X
896	0712330000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속]	30% 또는 1,218원/kg 양자 중 고액(율)	C
897	0712340000	표고버섯(Lentinus edodes)	40% 또는 1,625원/kg 양자 중 고액(율)	X
898	0712391010	송이버섯	30	X
899	0712391030	영지버섯	30% 또는 842원/kg 양자 중 고액(율)	C
900	0712391040	느타리버섯	30	C
901	0712391050	팽이버섯	30	C
902	0712391090	기타	30% 또는 1,218원/kg 양자 중 고액(율)	B
903	0712392000	송로(松露)	27	X

904	0712901000	마늘	360% 또는 1,800원/kg 양자 중 고액(율)	X
905	0712902010	고사리	30% 또는 1,807원/kg 양자 중 고액(율)	X
906	0712902020	무	30	B
907	0712902030	대파	30% 또는 1,159원/kg 양자 중 고액(율)	B
908	0712902040	당근	30% 또는 864원/kg 양자 중 고액(율)	X
909	0712902050	호박	30	X
910	0712902060	양배추	30	X
911	0712902070	토란줄기	30	C
912	0712902080	고구마줄기	30	B
913	0712902091	스위트콘(종자용)	370	X
914	0712902092	스위트콘(기타)	370	X
915	0712902093	감자	27	B
916	0712902094	고비	30% 또는 1,446원/kg 양자 중 고액(율)	X
917	0712902095	더덕	30	X
918	0712902096	취(참취, 개미취, 곰취, 미역취)	30	X
919	0712902097	고려엉겅퀴(곤드레)	30	X
920	0712902099	기타	30	C
921	0712909000	채소류의 혼합물	27	B
922	0713101000	종자용	27	B
923	0713102000	사료용	0	A
924	0713109000	기타	27	X
925	0713200000	이집트 콩[가반조스(garbanzos)]	27	C
926	0713311000	종자용	607.5	X
927	0713319000	기타	607.5	X
928	0713321000	종자용	420.8	C
929	0713329000	기타	420.8	X
930	0713331000	종자용	27	B
931	0713339000	기타	27	X
932	0713340000	밤바라콩[비그나 서브터라니아(Vigna subterranea)·보안드제이아 서브터라니아(Voandzeia subterranea)]	27	B
933	0713350000	동부콩[비그나 운구이쿨라타(Vigna unguiculata)]	27	B
934	0713390000	기타	27	B
935	0713400000	렌즈콩	27	C
936	0713500000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메이저(Vicia faba var. major)] 과 말먹이용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에퀴나(Vicia faba var. equina)·비시아 파바 변종 마이너(Vicia faba var. minor)]	27	B
937	0713600000	비둘기콩[카자누스 카잔(Cajanus cajan)]	27	B
938	0713900000	기타	27	B
939	0714101000	신선한 것	887.4	X
940	0714102010	칩	887.4	X
941	0714102020	펠릿(pellet)	887.4	X
942	0714102090	기타	887.4	X
943	0714103000	냉장한 것	887.4	X
944	0714104000	냉동한 것	45	B
945	0714201000	신선한 것	385% 또는 338원/kg 양자 중 고액(율)	X
946	0714202000	건조한 것	385	X

947	0714203000	냉장한 것	385	X
948	0714204000	냉동한 것	45	X
949	0714301000	냉동한 것	45	B
950	0714309000	기타	385	X
951	0714401000	냉동한 것	45	B
952	0714409000	기타	385	X
953	0714501000	냉동한 것	45	B
954	0714509000	기타	385	X
955	0714901010	냉동한 것	45	X
956	0714901090	기타	18	X
957	0714909010	냉동한 것	45	B
958	0714909090	기타	385	X
959	0801110000	말린 것	30	B
960	0801120000	내피[내과피(內果皮)]를 벗기지 않은 것	30	B
961	0801190000	기타	30	B
962	08012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30	B
963	08012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30	B
964	08013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8	B
965	08013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8	B
966	08021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8	B
967	08021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8	B
968	08022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8	X
969	08022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8	X
970	08023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45	X
971	08023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30	X
972	08024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219.4% 또는 1,470원/kg 양자 중 고액(율)	X
973	08024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219.4% 또는 1,470원/kg 양자 중 고액(율)	X
974	08025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30	B
975	08025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30	B
976	08026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30	C
977	08026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30	C
978	0802700000	콜라 너트(kola nut)[콜라(Cola)속]	30	X
979	0802800000	빈랑자(areca nut)	30	X
980	0802910000	잣(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566.8% 또는 2,664원/kg 양자 중 고액(율)	X
981	0802920000	잣(껍데기를 벗긴 것)	566.8% 또는 2,664원/kg 양자 중 고액(율)	X
982	080299101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27% 또는 803원/kg 양자 중 고액(율)	X
983	0802991020	껍데기를 벗긴 것	27% 또는 803원/kg 양자 중 고액(율)	X
984	0802999000	기타	30	X
985	0803100000	플랜틴(plantain)	30	B
986	0803900000	기타	30	B
987	0804100000	대추야자	30	A
988	0804200000	무화과	30	B
989	0804300000	파인애플	30	C
990	0804400000	아보카도(avocado)	30	C
991	0804501000	구아바(guava)	30	B
992	0804502000	망고(mango)	30	C

993	0804503000	망고스틴(mangosteen)	30	C
994	0805100000	오렌지	50	X
995	0805211000	감귤	144	X
996	0805219000	기타	144	C
997	0805220000	클레멘타인(clementine)	144	X
998	0805290000	기타	144	X
999	0805400000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와 포멜로(pomelo)	30	B
1000	0805501000	레몬[시트러스 리몬(Citrus limon)・시트러스 리머늄(Citrus limonum)]	30	C
1001	0805502010	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tifolia)	30	C
1002	0805502020	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144	C
1003	0805900000	기타	144	X
1004	0806100000	신선한 것	45	C
1005	0806200000	건조한 것	21	B
1006	0807110000	수박	45	X
1007	0807191000	참외	45	X
1008	0807199000	기타	45	X
1009	0807200000	포포(papaw)[파파야(papaya)]	30	B
1010	0808100000	사과	45	X
1011	0808300000	배	45	X
1012	0808400000	마르멜로(quince)	45	A
1013	0809100000	살구	45	B
1014	0809210000	신 체리[프루너스 체라서스(Prunus cerasus)]	24	B
1015	0809290000	기타	24	B
1016	0809300000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45	X
1017	0809401000	자두	45	C
1018	0809402000	슬로(sloe)	45	B
1019	0810100000	초본류 딸기	45	X
1020	0810200000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로간베리(loganberry)	45	A
1021	0810300000	흑색・백색・적색의 커런트(currant)와 구즈베리(gooseberry)	45	A
1022	0810400000	크랜베리(cranberry)・빌베리(bilberry)와 그 밖의 박시니엄(Vaccinium)속의 과실	45	A
1023	0810500000	키위프루트(kiwifruit)	45	X
1024	0810600000	두리안(durian)	45	B
1025	0810701000	단감	45	X
1026	0810709000	기타	50	X
1027	0810903000	대추	611.5% 또는 5,800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028	0810905000	매실	50	X
1029	0810909000	기타	45	X
1030	0811100000	초본류 딸기	30	B
1031	081120000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loganberry), 흑색・백색・적색의 커런트(currant), 구즈베리(gooseberry)	30	A
1032	0811901000	밤	30	X
1033	0811902000	대추	30	X
1034	0811903000	잣	30	X
1035	0811909000	기타	30	B
1036	0812100000	체리	30	A
1037	0812901000	초본류 딸기	30	X
1038	0812909000	기타	30	B
1039	0813100000	살구	45	B

1040	0813200000	프룬(prune)	18	A
1041	0813300000	사과	45	X
1042	0813401000	감	50	X
1043	0813402000	대추	611.5% 또는 5,800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044	0813409000	기타	45	B
1045	0813500000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45	A
1046	0814001000	감귤류의 껍질	30	B
1047	0814002000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	30	B
1048	09011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2	A
1049	09011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2	A
1050	09012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8	B
1051	09012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8	B
1052	0901901000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3	A
1053	0901902000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8	B
1054	0902100000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513.6	C
1055	0902200000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13.6	C
1056	0902300000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40	A
1057	0902400000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40	B
1058	0903000000	마테(maté)	25	B
1059	09041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B
1060	09041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B
1061	0904210000	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062	0904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063	090510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B
1064	090520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B
1065	0906110000	계피[신나모멈 제이나이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	8	A
1066	0906190000	기타	8	A
1067	090620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계피나무의 꽃	8	A
		- 계피	8	B
1068	090710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B
1069	090720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B
1070	09081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B
1071	09081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B
1072	09082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B
1073	0908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B
1074	09083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B
1075	09083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B
1076	09092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B
1077	0909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B
1078	09093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B
1079	09093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B
1080	0909611000	아니스(anise)나 대회향(大茴香)의 씨	8	B
1081	0909612000	캐러웨이(caraway)의 씨	8	B
1082	0909613000	회향(茴香)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8	B
1083	0909621000	아니스(anise)나 대회향(大茴香)의 씨	8	A

1084	0909622000	캐러웨이(caraway)의 씨	8	B
1085	0909623000	회향(茴香)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8	B
1086	0910111000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377.3% 또는 931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087	0910112000	건조한 것	377.3% 또는 931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088	0910119000	기타	377.3% 또는 931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089	0910121000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377.3% 또는 931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090	0910122000	건조한 것	377.3% 또는 931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091	0910129000	기타	377.3% 또는 931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092	0910200000	사프란(saffron)	8	B
1093	0910300000	심황[강황(薑黃)]	8	B
1094	0910911000	카레	8	B
1095	0910919000	기타	8	B
1096	0910991000	타임과 월계수의 잎	8	B
1097	0910999000	기타	8	B
1098	1001110000	종자	3	A
1099	1001190000	기타	3	A
1100	1001911000	메슬린(meslin)	3	A
1101	1001919000	기타	1.8	A
1102	1001991010	메슬린(meslin)	3	A
1103	1001991090	기타	0	A
1104	1001992010	메슬린(meslin)	3	A
1105	1001992090	기타	1.8	A
1106	1001999010	메슬린(meslin)	3	A
1107	1001999090	기타	1.8	A
1108	1002100000	종자	108.7	B
1109	1002900000	기타	3	A
1110	1003101000	맥주보리	513	X
1111	1003102000	겉보리	324% 또는 326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112	1003103000	쌀보리	299.7% 또는 361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113	1003109000	기타	299.7	X
1114	1003901000	맥주보리	513	X
1115	1003902000	겉보리	324% 또는 326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116	1003903000	쌀보리	299.7% 또는 361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117	1003909000	기타	299.7	X
1118	1004100000	종자	554.8	B
1119	1004900000	기타	3	A
1120	1005100000	종자용	328	X
1121	1005901000	사료용	328	C
1122	1005902000	팝콘용	630	C
1123	1005909000	기타	328	C
1124	1006100000	벼	513	X
1125	1006201000	메현미	513	X
1126	1006202000	찰현미	513	X

1127	1006301000	멥쌀	513	X
1128	1006302000	찹쌀	513	X
1129	1006400000	쇄미(broken rice)	513	X
1130	1007100000	종자	779.4	X
1131	1007900000	기타	3	A
1132	1008100000	메밀	256.1	X
1133	1008211000	조	18	B
1134	1008219000	기타	3	A
1135	1008291000	조	3	A
1136	1008299000	기타	3	A
1137	1008300000	카나리시드(canary seed)	3	A
1138	1008400000	포니오(Fonio)[디지타리아(Digitaria)속]	800.3	X
1139	1008500000	퀴노아(quinoa)[체노포디움 퀴노아(Chenopodium quinoa)]	800.3	X
1140	1008600000	라이밀(triticale)	800.3	X
1141	1008900000	그 밖의 곡물	800.3	X
1142	1101001000	밀가루	3	A
1143	1101002000	메슬린(meslin) 가루	5	B
1144	1102200000	옥수수가루	5	B
1145	1102901000	보릿가루	260	X
1146	1102902000	쌀가루	513	X
1147	1102903000	호밀가루	5	B
1148	1102909000	기타	800.3	X
1149	1103110000	밀로 만든 것	288.2	C
1150	1103130000	옥수수로 만든 것	162.9	X
1151	1103191000	보리로 만든 것	260	X
1152	1103192000	귀리로 만든 것	554.8	B
1153	1103193000	쌀로 만든 것	513	X
1154	1103199000	기타	800.3	B
1155	1103201000	밀로 만든 것	288.2	X
1156	1103202000	쌀로 만든 것	513	X
1157	1103203000	보리로 만든 것	260	X
1158	1103209000	기타	800.3	X
1159	1104120000	귀리로 만든 것	554.8	B
1160	1104191000	쌀로 만든 것	513	X
1161	1104192000	보리로 만든 것	233	X
1162	1104199000	기타	800.3	X
1163	1104220000	귀리로 만든 것	554.8	B
1164	1104230000	옥수수로 만든 것	167	X
1165	1104291000	율무로 만든 것	800.3	X
1166	1104292000	보리로 만든 것	126	X
1167	1104299000	기타	800.3	X
1168	1104301000	쌀로 만든 것	5	X
1169	1104309000	기타	5	A
1170	1105100000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304	X
1171	1105200000	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	304	X
1172	1106100000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071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8	B
1173	1106201000	칡뿌리의 것	8	B
1174	1106209000	기타	8	B
1175	1106300000	제8류 물품의 것	8	B
1176	1107100000	볶지 않은 것	269	X

1177	1107201000	훈연(燻煙)한 것	269	X
1178	1107209000	기타	27	B
1179	1108110000	밀로 만든 것	50.9	X
1180	1108121000	식품용	226	X
1181	1108129000	기타	226	X
1182	1108130000	감자로 만든 것	455	X
1183	1108141000	식품용	455	X
1184	1108149000	기타	455	X
1185	1108191000	고구마로 만든 것	241.2	X
1186	1108199000	기타	800.3	X
1187	1108200000	이눌린(inulin)	800.3	X
1188	1109000000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8	A
1189	1201101000	콩나물용	487% 또는 956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190	1201109000	기타	487% 또는 956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191	1201901000	채유용과 탈지대두박(脫脂大豆粕)용	487% 또는 956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192	1201902000	사료용	487% 또는 956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193	1201903000	콩나물용	487% 또는 956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194	1201909000	기타	487% 또는 956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195	1202301000	꼬투리를 벗기지 않은 것	230.5	X
1196	1202302000	꼬투리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230.5	X
1197	1202410000	꼬투리를 벗기지 않은 것	230.5	X
1198	1202420000	꼬투리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230.5	X
1199	1203000000	코프라(copra)	3	A
1200	1204000000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3	A
1201	1205101000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0	A
1202	1205109000	기타	10	A
1203	1205901000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0	A
1204	1205909000	기타	10	A
1205	12060000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25	B
1206	1207100000	팜너트(palm nut)와 핵(核)	3	A
1207	1207210000	종자	3	A
1208	1207291000	사료용	2	A
1209	1207299000	기타	3	A
1210	1207300000	피마자	3	A
1211	1207400000	참깨	630% 또는 6,660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212	1207500000	겨자씨	3	A
1213	1207600000	잇꽃[카르타무스 틴크토리우스(Carthamus tinctorius)] 종자	3	A
1214	1207700000	멜론 종자	3	A
1215	1207910000	양귀비씨	3	A
1216	1207991000	들깨	40% 또는 410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217	1207992000	시어너트(shea nut)[캐리트너트(karite nut)]	3	A
1218	1207999000	기타	3	A
1219	1208100000	대두로 만든 것	3	A
1220	1208901000	고추・단고추류(Capsicum annuum)의 종자	3	A

1221	1208909000	기타	3	A
1222	1209100000	사탕무 종자	0	A
1223	1209210000	루우산(lucerne)(알팔파) 종자	0	A
1224	1209220000	클로버(clover)[트리폴리엄(Trifolium)속] 종자	0	A
1225	1209230000	페스큐(fescue) 종자	0	A
1226	1209240000	켄터키블루그래스(kentucky blue grass)[포아프래텐시스 엘(Poa pratensis L.)] 종자	0	A
1227	1209250000	라이그래스(rye grass) 종자[로리엄 멀티플로럼 램(Lolium multiflorum Lam)·로리엄 페레네 엘(Lolium perenne L.)]	0	A
1228	1209291000	루핀(lupine) 종자	0	A
1229	1209292000	수단그래스(Sudan grass) 종자	0	A
1230	1209293000	오차드그래스(orchard grass) 종자	0	A
1231	1209294000	티모디그래스(timothy grass) 종자	0	A
1232	1209299000	기타	0	A
1233	1209300000	화초용 초본(草本)식물의 종자	0	A
1234	1209911010	양파 종자	0	A
1235	1209911090	기타	0	A
1236	1209912000	무 종자	0	A
1237	1209913000	고추·단고추류(Capsicum annuum)의 종자	0	A
1238	1209914000	양배추 종자	0	A
1239	1209915000	토마토 종자	0	A
1240	1209919000	기타	0	A
1241	1209991010	참나무	0	A
1242	1209991090	기타	0	A
1243	1209992000	과수목의 종자	0	A
1244	1209993000	담배 종자	0	A
1245	1209994000	잔디 종자	0	A
1246	1209999000	기타	0	A
1247	1210100000	홉(hop)[잘게 부순 것·가루 모양·펠릿(pellet) 모양은 제외한다]	30	X
1248	1210201000	홉(hop)	30	B
1249	1210202000	루플린(lupulin)	30	A
1250	1211201110	산양삼(山養蔘)	222.8	X
1251	1211201120	새싹삼	222.8	X
1252	1211201190	기타	222.8	X
1253	1211201211	본삼	222.8	X
1254	1211201219	기타	222.8	X
1255	1211201291	본삼	222.8	X
1256	1211201299	기타	222.8	X
1257	1211201311	본삼	754.3	X
1258	1211201319	기타	754.3	X
1259	1211201391	본삼	754.3	X
1260	1211201399	기타	754.3	X
1261	1211202110	가루	18	X
1262	1211202120	태블릿이나 캡슐	18	X
1263	1211202190	기타	18	X
1264	1211202210	가루	754.3	X
1265	1211202220	태블릿이나 캡슐	754.3	X
1266	1211202290	기타	754.3	X
1267	1211203100	인삼잎과 줄기	754.3	X

1268	1211203200	종자	754.3	X
1269	12112093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754.3	X
1270	1211209900	기타	754.3	X
1271	12113010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8	A
1272	1211309000	기타	3	B
1273	12114010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8	A
1274	1211409000	기타	3	B
1275	12115010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8	A
1276	1211509000	기타	3	B
1277	12116010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8	A
1278	1211609000	기타		
		- 식용	45	C
		- 기타	3	B
1279	1211901100	부자(附子)	8	A
1280	1211901200	황련(黃連)	8	A
1281	1211901300	원지(遠志)	8	A
1282	1211901400	패모(貝母)	8	A
1283	1211901500	두충(杜沖)	8	A
1284	1211901600	감초	8	A
1285	1211901700	사인(砂仁)	8	A
1286	1211901800	산조인(酸棗仁)	8	A
1287	1211901910	용안육(龍眼肉)	8	A
1288	1211901920	산사자(山査子)	8	A
1289	1211901930	연자육(蓮子肉)	8	A
1290	1211901940	박하	8	A
1291	1211901950	초피(椒皮)	8	B
1292	1211901960	건조한 도라지	8	X
1293	1211901970	구기자	8	A
1294	1211901980	오미자	8	A
1295	1211901991	사군자(使君子)	8	A
1296	1211901992	백수오	8	A
1297	1211901993	하수오	8	A
1298	1211901999	기타	8	A
1299	1211909010	식용에 적합한 것	45	C
1300	1211909090	기타	3	B
1301	1212211010	건조한 것	20	B
1302	1212211020	냉장한 것	20	A
1303	1212211030	냉동한 것	10	A
1304	1212211090	기타	20	A
1305	1212212010	건조한 것	20	B
1306	1212212020	염장한 것	20	B
1307	1212212030	냉장한 것	20	A
1308	1212212040	냉동한 것	45	A
1309	1212212090	기타	20	A
1310	1212213010	건조한 것	20	X
1311	1212213020	냉장한 것	20	A
1312	1212213030	냉동한 것	45	A
1313	1212213090	기타	20	A
1314	1212214010	신선한 것	20	A
1315	1212214020	냉장한 것	20	A
1316	1212214030	냉동한 것	45	A

1317	1212214090	기타	20	A
1318	1212215010	염장한 것	20	A
1319	1212215020	냉장한 것	20	A
1320	1212215030	냉동한 것	45	A
1321	1212215090	기타	20	X
1322	1212216010	냉동한 것	45	A
1323	1212216090	기타	20	X
1324	1212217011	냉동한 것	45	A
1325	1212217019	기타	20	A
1326	1212217021	냉동한 것	45	A
1327	1212217029	기타	20	A
1328	1212217031	냉동한 것	45	A
1329	1212217039	기타	20	A
1330	1212218011	냉동한 것	45	A
1331	1212218019	기타	20	A
1332	1212218021	냉동한 것	45	A
1333	1212218029	기타	20	A
1334	1212218031	냉동한 것	45	A
1335	1212218039	기타	20	A
1336	1212219011	냉동한 것	45	A
1337	1212219019	기타	20	X
1338	1212219091	냉동한 것	45	X
1339	1212219099	기타	20	X
1340	1212291010	냉동한 것	10	A
1341	1212291090	기타	20	A
1342	1212292010	냉동한 것	45	A
1343	1212292090	기타	20	A
1344	1212293010	냉동한 것	45	A
1345	1212293090	기타	20	A
1346	1212294010	냉동한 것	45	A
1347	1212294090	기타	20	A
1348	1212295010	냉동한 것	45	A
1349	1212295090	기타	20	A
1350	1212296010	냉동한 것	45	A
1351	1212296090	기타	20	X
1352	1212297011	냉동한 것	45	A
1353	1212297019	기타	20	A
1354	1212297021	냉동한 것	45	A
1355	1212297029	기타	20	A
1356	1212297031	냉동한 것	45	A
1357	1212297039	기타	20	A
1358	1212298011	냉동한 것	45	A
1359	1212298019	기타	20	A
1360	1212298021	냉동한 것	45	A
1361	1212298029	기타	20	A
1362	1212298031	냉동한 것	45	A
1363	1212298039	기타	20	A
1364	1212299011	냉동한 것	45	A
1365	1212299019	기타	20	X
1366	1212299091	냉동한 것	45	X
1367	1212299099	기타	20	X

1368	1212910000	사탕무	3	A
1369	1212920000	로커스트콩(locust bean)(캐롭)	20	B
1370	1212930000	사탕수수	3	A
1371	1212940000	치커리(chicory) 뿌리	8	A
1372	1212992000	곤약	8	A
1373	1212993000	꽃가루	8	A
1374	1212996000	살구・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자두의 핵(核)	8	A
1375	1212999000	기타	8	A
1376	12130000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8	B
1377	1214101000	사료용	1	B
1378	1214109000	기타	10	B
1379	1214901000	사료용 뿌리채소류	100.5	X
1380	1214909011	사료용	1	B
1381	1214909019	기타	18	B
1382	1214909090	기타	100.5	X
1383	1301200000	아라비아 검	3	A
1384	1301901000	올레오레진(oleoresin)	3	X
1385	1301902010	쉘락(shellac)	3	A
1386	1301902090	기타	3	A
1387	1301909000	기타	3	X
1388	1302110000	아편	8	A
1389	1302120000	감초로 만든 것	8	A
1390	1302130000	홉(hop)으로 만든 것	30	B
1391	1302140000	마황(麻黃)으로 만든 것	8	B
1392	1302191110	인삼 추출물(extract)	20	X
1393	1302191120	인삼 추출물(extract) 가루	20	X
1394	1302191190	기타	20	X
1395	1302191210	홍삼 추출물(extract)	754.3	X
1396	1302191220	홍삼 추출물(extract) 가루	754.3	X
1397	1302191290	기타	754.3	X
1398	1302191900	기타	20	X
1399	1302192000	캐슈너트 쉘액(cashew nut shell liquid)	8	A
1400	1302193000	생칠(生漆)	8	B
1401	1302199010	알로에 수액과 추출물(extract)	8	A
1402	1302199020	콜라 추출물(extract)	8	A
1403	1302199031	당귀(當歸) 추출물	8	B
1404	1302199032	오미자(五味子) 추출물	8	B
1405	1302199033	작약(芍藥) 추출물	8	B
1406	1302199034	천궁(川芎) 추출물	8	B
1407	1302199035	황기(黃芪) 추출물	8	B
1408	1302199039	기타	8	B
1409	1302199091	바닐라 올레오레진이나 바닐라 추출물(extract)	8	A
1410	1302199099	기타	8	B
1411	1302200000	펙틴질・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8	A
1412	1302311000	실 한천	8	A
1413	1302312000	가루 한천	8	A
1414	1302319000	기타	8	A

1415	1302320000	로커스트콩(locust bean)·로커스트콩(locust bean)의 씨나 구아(guar)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8	A
1416	1302390000	기타	8	A
1417	1401102000	청환죽(靑丸竹)	8	B
1418	1401109000	기타	8	B
1419	1401200000	등나무	8	B
1420	1401900000	기타	8	B
1421	1404200000	면(綿) 린터(linter)	3	A
1422	1404901000	조각용 종자·껍질·너트(예: 상아야자)	3	X
1423	1404902010	닥나무나 꾸지나무(paper mulberry) 껍질	3	X
1424	1404902090	기타	3	X
1425	1404903010	떡갈잎	5	B
1426	1404903020	청미래덩굴잎	5	B
1427	1404903090	기타	5	B
1428	1404904000	충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케이폭(kapok)·식물성 헤어·거머리말][층상(層狀)으로 한 것인지 또는 지지물을 사용했는지에 상관없다]	3	B
1429	1404905000	비나 브러시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수수류·피아사바(piassava)·카우치 그라스(couch-grass)·이스틸리(istle)](다발이나 꾸러미 상태인지에 상관없다)	3	A
1430	1404906010	오배자(五倍子)	3	B
1431	1404906020	아몬드 껍질(almond hull)	3	B
1432	1404906090	기타	3	B
1433	1404909000	기타	3	B
1434	1501101000	산가(酸價)가 1 이하인 것	3	A
1435	1501109000	기타	3	A
1436	1501200000	그 밖의 돼지의 지방	3	A
1437	1501900000	기타	3	A
1438	1502101010	산가(酸價)가 2 이하인 것	2	A
1439	1502101090	기타	2	A
1440	1502109000	기타	3	A
1441	1502901000	소의 것	2	A
1442	1502909000	기타	3	A
1443	1503002000	라드유(lard oil)	3	A
1444	1503009000	기타	3	A
1445	1504101000	상어의 간유(肝油)와 그 분획물	3	A
1446	1504109000	기타	3	B
1447	1504200000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간유(肝油)는 제외한다]	3	B
1448	1504301000	고래기름과 그 분획물	3	A
1449	1504309000	기타	3	B
1450	1505001000	가공하지 않은 울그리스(wool grease)	3	A
1451	1505009000	기타	3	A
1452	1506001000	우각유(neat's foot oil)와 그 분획물	3	A
1453	1506009000	기타	3	A
1454	1507101000	식품용	5	C
1455	1507102000	바이오디젤 제조용	5	C
1456	1507109000	기타	5	C
1457	1507901010	식품용	5	C
1458	1507901020	바이오디젤 제조용	5	C
1459	1507901090	기타	5	C

1460	1507909000	기타	5	C
1461	1508100000	조유(粗油)	27	B
1462	1508901000	정제유(精製油)	27	B
1463	1508909000	기타	27	B
1464	1509200000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5	B
1465	1509300000	버진 올리브유	5	B
1466	1509400000	그 밖의 버진 올리브유	5	B
1467	1509900000	기타	5	A
1468	1510100000	올리브 퍼미스 조유(粗油)	5	B
1469	1510900000	기타	5	B
1470	1511100000	조유(粗油)	3	A
1471	1511901000	팜 올레인(palm olein)	2	A
1472	1511902000	팜 스테아린(palm stearin)	2	A
1473	1511909000	기타	2	A
1474	1512111000	해바라기씨유	5	B
1475	1512112000	잇꽃유	5	B
1476	1512191010	해바라기씨유	5	B
1477	1512191020	잇꽃유	5	A
1478	1512199010	해바라기씨유	5	B
1479	1512199020	잇꽃유	5	B
1480	1512210000	조유(粗油)[고시폴(gossypol)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5	B
1481	1512291000	정제유(精製油)	5	B
1482	1512299000	기타	5	B
1483	1513110000	조유(粗油)	3	A
1484	1513191000	정제유(精製油)	3	A
1485	1513199000	기타	3	A
1486	1513211000	팜핵유(palm kernel oil)	5	A
1487	1513212000	바바수유(babassu oil)	8	A
1488	1513291010	팜핵유(palm kernel oil)	5	A
1489	1513291020	바바수유(babassu oil)	8	A
1490	1513299000	기타	8	A
1491	1514110000	조유(粗油)	5	A
1492	1514191000	정제유(精製油)	5	A
1493	1514199000	기타	5	A
1494	1514911000	그 밖의 유채유(rape oil, colza oil)	5	A
1495	1514912000	겨자유	5	A
1496	1514991010	그 밖의 유채유(rape oil, colza oil)	5	A
1497	1514991020	겨자유	5	A
1498	1514999000	기타	5	A
1499	1515110000	조유(粗油)	5	B
1500	1515190000	기타	5	B
1501	1515210000	조유(粗油)	5	B
1502	1515290000	기타	5	B
1503	1515300000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5	B
1504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630% 또는 12,060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505	1515600000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5	B
1506	1515901000	들기름과 그 분획물	36	B
1507	1515909010	쌀겨기름과 그 분획물	5	B
1508	1515909020	동백유와 그 분획물	8	B
1509	1515909030	호호바유(jojoba oil)와 그 분획물	8	B

1510	1515909040	동유(tung oil)와 그 분획물	8	B
1511	1515909090	기타	5	B
1512	1516101000	우지(牛脂)와 그 분획물	8	A
1513	1516102000	고래기름과 그 분획물	8	A
1514	1516109000	기타	8	A
1515	1516201010	땅콩기름과 그 분획물	36	A
1516	1516201020	해바라기씨유와 그 분획물	36	A
1517	1516201030	유채유(rape oil, colza oil)와 그 분획물	36	A
1518	1516201040	들기름과 그 분획물	36	B
1519	1516201050	참기름과 그 분획물	36	C
1520	1516202010	야자[코프라(copra)]유와 그 분획물	8	A
1521	1516202020	팜유와 그 분획물	8	A
1522	1516202030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8	B
1523	1516202040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	8	A
1524	1516202050	대두유와 그 분획물	8	B
1525	1516202090	기타	8	A
1526	1516300000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8	A
1527	1517100000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8	B
1528	1517901000	이미테이션 라드	8	A
1529	1517902000	쇼트닝	8	B
1530	1517909000	기타	8	B
1531	1518001000	탈수피마자유	8	A
1532	1518002000	에폭시화(epoxidised)한 대두유	8	A
1533	1518009010	사료용	5	A
1534	1518009090	기타	8	A
1535	1520000000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 글리세롤 폐액(廢液)	8	A
1536	1521101000	카나버 왁스	8	A
1537	1521102000	팜왁스	8	A
1538	1521109000	기타	8	A
1539	1521901000	고래 왁스	8	A
1540	1521902000	밀랍(蜜蠟)	8	A
1541	1521909000	기타	8	A
1542	1522000000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8	A
1543	1601001000	소시지	18	B
1544	1601009000	기타	30	C
1545	1602100000	균질화한 조제품	30	C
1546	16022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C
1547	1602209000	기타	30	C
1548	16023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C
1549	1602319000	기타	30	B
1550	1602321010	삼계탕	30	X
1551	1602321090	기타	30	X
1552	1602329000	기타	30	X
1553	16023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B
1554	1602399000	기타	30	B
1555	16024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X
1556	1602419000	기타	27	X
1557	16024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X
1558	1602429000	기타	27	X

1559	16024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X
1560	1602499000	기타	27	X
1561	16025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72	X
1562	1602509000	기타	72	X
1563	16029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X
1564	1602909000	기타	30	X
1565	1603001000	육 추출물(extract)	30	X
1566	1603002000	육즙	30	X
1567	1603003000	어류의 추출물(extract)	30	A
1568	1603004000	어류의 즙	30	B
1569	1603009000	기타	30	X
1570	16041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B
1571	1604119000	기타	20	A
1572	16041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A
1573	1604129000	기타	20	A
1574	16041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A
1575	1604139000	기타	20	A
1576	1604141011	기름에 담근 것	20	X
1577	1604141012	삶은 것	20	A
1578	1604141019	기타	20	X
1579	1604141021	기름에 담근 것	20	X
1580	1604141029	기타	20	A
1581	1604141031	기름에 담근 것	20	A
1582	1604141039	기타		
		- 삶은 것	20	A
		- 기타	20	X
1583	1604149000	기타	20	B
1584	160415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X
1585	1604159000	기타	20	X
1586	160416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C
1587	1604169000	기타	20	C
1588	160417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B
1589	1604179000	기타	20	B
1590	1604180000	상어 지느러미		
		-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C
		- 기타	20	B
1591	1604191010	꽁치	20	A
1592	1604191020	전갱이	20	A
1593	1604191090	기타	20	C
1594	1604199010	쥐치포	20	B
1595	1604199090	기타	20	X
1596	1604201000	생선 페이스트(paste)	20	A
1597	1604202000	생선 마리네이드(marinade)	20	A
1598	1604203000	생선소시지	20	A
1599	1604204010	게맛의 것	20	A
1600	1604204090	기타	20	A
1601	1604209000	기타	20	X
1602	1604310000	캐비어	20	A
1603	1604320000	캐비어 대용물	20	A
1604	160510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A
1605	1605101091	붉은대게살	20	X

1606	1605101099	기타	20	X
1607	1605109000	기타	20	C
1608	1605211000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것	20	X
1609	1605219000	기타	20	A
1610	1605290000	기타	20	X
1611	16053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A
1612	1605309000	기타	20	A
1613	16054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C
1614	1605409000	기타	20	B
1615	16055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A
1616	1605519000	기타	20	X
1617	1605520000	가리비과의 조개(여왕 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B
		- 기타	20	X
1618	16055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A
1619	1605539000	기타	20	B
1620	1605541000	갑오징어		
		-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B
		- 기타	20	X
1621	1605542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B
1622	1605542091	조미오징어	20	X
1623	1605542099	기타	20	X
1624	1605550000	문어		
		-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B
		- 기타	20	X
1625	160556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A
1626	1605561090	기타	20	X
1627	1605562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A
1628	1605562090	기타	20	X
1629	1605569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B
1630	1605569090	기타	20	X
1631	160557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B
1632	1605579000	기타	20	X
1633	160558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B
1634	1605589000	기타	20	X
1635	160559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B
1636	1605591090	기타	20	B
1637	1605592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A
1638	1605592090	기타	20	X
1639	1605599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B
1640	1605599090	기타	20	X
1641	16056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B
1642	1605619000	기타	20	B
1643	16056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B
1644	1605629000	기타	20	X
1645	16056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B
1646	1605639000	기타	20	X
1647	1605690000	기타		
		-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B
		- 기타	20	X
1648	1701121000	편광도수가 98.5도 이하인 것	3	A

1649	1701122000	편광도수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3	A
1650	1701130000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3	A
1651	1701141000	편광도수가 98.5도 이하인 것	3	A
1652	1701142000	편광도수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3	A
1653	1701910000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30	X
1654	1701990000	기타	30	X
1655	1702111000	유당(乳糖)	49.5	B
1656	1702119000	유당(乳糖)시럽	20	C
1657	1702191000	유당(乳糖)	49.5	B
1658	1702199000	유당(乳糖)시럽	20	X
1659	1702201000	단풍당	8	B
1660	1702202000	단풍당시럽	8	B
1661	1702301000	포도당	8	A
1662	1702302000	포도당시럽	8	A
1663	1702401000	포도당	8	A
1664	1702402000	포도당시럽	8	A
1665	1702500000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8	B
1666	1702601000	과당	8	B
1667	1702602000	과당시럽	8	B
1668	1702901000	인조꿀	243	X
1669	1702902000	캐러멜당	8	B
1670	1702903000	맥아당	8	B
1671	1702909000	기타	8	B
1672	1703101000	주정 제조용	3	A
1673	1703109000	기타	3	A
1674	1703901000	주정 제조용	3	A
1675	1703909000	기타	3	A
1676	1704100000	추잉껌(당을 도포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B
1677	1704901000	감초 추출물(과자로 만들어진 것은 제외한다)	8	B
1678	1704902010	드롭스(drops)	8	B
1679	1704902020	캐러멜	8	B
1680	1704902090	기타	8	B
1681	1704909000	기타	8	B
1682	1801001000	생 것	2	A
1683	1801002000	볶은 것	8	A
1684	1802001000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8	A
1685	1802009000	기타	8	A
1686	1803100000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5	A
1687	1803200000	전부나 일부를 탈지(脫脂)한 것	5	A
1688	1804000000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5	A
1689	1805000000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5	B
1690	1806100000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8	B
1691	1806201000	초콜릿과 초콜릿 과자	8	B
1692	1806209010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것으로 한정한다)	8	B
1693	1806209090	기타	8	B
1694	1806311000	초콜릿과 초콜릿 과자	8	B
1695	1806319000	기타	8	B
1696	1806321000	초콜릿과 초콜릿 과자	8	B

1697	1806329000	기타	8	B
1698	1806901000	초콜릿과 초콜릿 과자	8	B
1699	1806902111	조제 분유	36	C
1700	1806902119	기타	40	C
1701	1806902191	오트밀의 것	8	A
1702	1806902199	기타	8	A
1703	1806902210	보릿가루의 것	8	B
1704	1806902290	기타	513	X
1705	1806902910	맥아 추출물(extract)의 것	30	B
1706	1806902920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36	C
1707	1806902991	오트밀의 것	8	A
1708	1806902992	보릿가루의 것	8	B
1709	1806902999	기타	513	X
1710	1806903010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5.4	B
1711	1806903091	낱알 모양의 쌀	8	X
1712	1806903099	기타	8	B
1713	1806909010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50 이상의 것)	8	B
1714	1806909090	기타	8	B
1715	1901101010	조제 분유	36	C
1716	1901101090	기타	40	C
1717	1901109010	오트밀의 것	8	B
1718	1901109090	기타	8	B
1719	1901201000	쌀가루의 것	513	X
1720	1901202000	보릿가루의 것	8	B
1721	1901209000	기타	513	X
1722	1901901000	맥아 추출물(extract)	30	B
1723	190190201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36	X
1724	190190202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	36	X
1725	1901909010	오트밀	8	B
1726	1901909091	쌀가루의 것	513	X
1727	1901909092	보릿가루의 것	8	B
1728	1901909099	기타	513	X
1729	1902111000	스파게티	5	B
1730	1902112000	마카로니	5	B
1731	1902119000	기타	5	B
1732	1902191000	국수	5	B
1733	1902192000	당면	26% 또는 206원/kg 양자 중 고액(율)	B
1734	1902193000	냉면	5	B
1735	1902199000	기타	5	A
1736	190220000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A
1737	1902301010	라면	5	A
1738	1902301090	기타	5	A
1739	1902309000	기타	5	A
1740	1902400000	쿠스쿠스(couscous)	5	B
1741	1903001000	타피오카	8	B
1742	1903009000	기타	8	B
1743	1904101000	콘 플레이크(corn flake)	5.4	A
1744	1904102000	콘 칩	5.4	A

1745	1904103000	튀긴 쌀	5.4	B
1746	1904109000	기타	5.4	A
1747	1904201000	무슬리(Musli) 형태의 조제 식료품	45	B
1748	1904209000	기타	5.4	A
1749	1904300000	불거 밀(bulgur wheat)	8	A
1750	1904901010	찌거나 삶은 쌀	50	X
1751	1904901090	기타	8	X
1752	1904909000	기타	8	A
1753	1905100000	귀리빵	8	B
1754	1905200000	생강과자(gingerbread)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B
1755	1905310000	스위트 비스킷	8	A
1756	1905320000	와플과 웨이퍼	8	B
1757	1905400000	러스크(rusk)・토스트 빵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스트 물품	8	B
1758	1905901010	빵	8	B
1759	1905901020	건빵	8	B
1760	1905901030	페이스트리와 케이크	8	B
1761	1905901040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5	B
1762	1905901050	쌀과자	8	B
1763	1905901090	기타	8	B
1764	1905909010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8	B
1765	1905909020	라이스 페이퍼	8	B
1766	1905909090	기타	8	B
1767	2001100000	오이류	30	B
1768	2001901000	과실과 견과류	30	A
1769	2001909010	쪽파	30	B
1770	2001909020	토마토	30	B
1771	2001909030	꽃양배추	30	B
1772	2001909040	스위트콘	30	B
1773	2001909050	염교(rakkyo)	30	B
1774	2001909060	마늘	30	X
1775	2001909070	양파	30	X
1776	2001909090	기타	30	B
1777	2002100000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	8	A
1778	2002901000	토마토 페이스트(paste)[브릭스(brix) 값이 100분의 24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	A
1779	2002909000	기타	8	A
1780	2003104000	양송이 버섯	20	B
1781	2003109000	기타	20	B
1782	2003901000	표고버섯	20	X
1783	2003902000	송이버섯	20	X
1784	2003903000	송로(松露)	20	X
1785	2003909000	기타	20	B
1786	2004100000	감자	18	A
1787	2004901000	스위트콘	30	B
1788	2004909000	기타	30	B
1789	2005101000	유아용 퓨레콘(pureed corn)	20	B
1790	2005109000	기타	20	B
1791	2005201000	플레이크로 만든 감자크로켓	20	B
1792	2005209000	기타	20	B
1793	2005400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0	B

1794	2005511000	녹두	20	B
1795	2005512000	팥	20	B
1796	2005519000	기타	20	B
1797	2005591000	녹두	20	B
1798	2005592000	팥	20	B
1799	2005599000	기타	20	B
1800	200560000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0	C
1801	2005700000	올리브	20	B
1802	200580000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15	B
1803	2005910000	죽순	20	X
1804	2005991000	김치	20	C
1805	2005992000	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	20	B
1806	2005994000	고려엉겅퀴(곤드레)	20	B
1807	2005999000	기타	20	B
1808	2006001000	마롱 글라세(marrons glacés)	30	X
1809	2006002000	파인애플	30	B
1810	2006003000	생강	30	B
1811	2006004000	연근	30	B
1812	2006005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0	B
1813	2006006010	꼬투리를 벗긴 콩	20	B
1814	2006006090	기타	20	B
1815	200600700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0	B
1816	2006008000	올리브	20	B
1817	200600901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15	B
1818	2006009020	죽순	20	X
1819	2006009030	그 밖의 채소	20	B
1820	2006009090	기타	30	B
1821	2007100000	균질화한 조제품	30	B
1822	2007911000	잼・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marmalade)	30	X
1823	2007919000	기타	30	B
1824	2007991000	잼・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marmalade)	30	C
1825	2007999000	기타	30	C
1826	2008111000	피넛 버터	50	X
1827	2008119000	기타	63.9	X
1828	2008191000	밤	50	X
1829	2008192000	코코넛	45	B
1830	2008193000	볶은 참깨가루	45	C
1831	2008199000	기타	45	C
1832	2008200000	파인애플	45	X
1833	2008301000	유자	45	X
1834	2008309000	기타	45	X
1835	2008400000	배	45	X
1836	2008500000	살구	45	B
1837	2008600000	체리	45	C
1838	2008701000	설탕을 첨가하여 밀폐용기에 넣은 것	50	X
1839	2008709000	기타	45	B
1840	2008800000	초본류 딸기	45	X
1841	2008910000	팜 하트(palm heart)	45	X

1842	2008930000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링곤베리(lingonberry)[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45	C
1843	2008971010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50	B
1844	2008971090	기타	45	B
1845	2008972000	과실 샐러드	45	B
1846	2008979000	기타	45	B
1847	2008991000	포도	45	B
1848	2008992000	사과	45	B
1849	2008993000	팝콘	45	B
1850	2008994000	소금에 절인 초피	45	X
1851	2008995010	김	8	A
1852	2008995090	기타	8	X
1853	2008999000	기타	45	X
1854	2009110000	냉동한 것	54	C
1855	2009120000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54	C
1856	2009190000	기타	54	X
1857	2009210000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30	X
1858	2009290000	기타	30	C
1859	2009311000	레몬주스	50	B
1860	2009312000	라임주스	50	B
1861	2009319000	기타	54	C
1862	2009391000	레몬주스	50	B
1863	2009392000	라임주스	50	A
1864	2009399000	기타	54	C
1865	2009410000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50	B
1866	2009490000	기타	50	C
1867	2009500000	토마토주스	30	B
1868	2009610000	브릭스(Brix) 값이 30 이하인 것	45	C
1869	2009690000	기타	45	A
1870	2009710000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45	C
1871	2009790000	기타	45	B
1872	2009810000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주스, 링곤베리(lingonberry)[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주스	50	C
1873	2009891010	복숭아주스	50	C
1874	2009891020	딸기주스	50	C
1875	2009891030	코코넛 주스(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	50	C
1876	2009891090	기타	50	C
1877	2009892000	채소 주스	30	C
1878	2009901010	오렌지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50	C
1879	2009901020	사과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50	C
1880	2009901030	포도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50	C
1881	2009901090	기타	50	C
1882	2009902000	채소로 만든 것	30	B
1883	2009909000	기타	50	C
1884	2101111000	인스턴트 커피	8	B
1885	2101119000	기타	8	B
1886	2101121000	인스턴트 커피의 조제품	8	B
1887	2101129010	밀크·크림 또는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8	B

1888	2101129090	기타	8	B
1889	2101201000	설탕·레몬이나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40	B
1890	2101209011	티백 포장의 것	40	B
1891	2101209019	기타	40	B
1892	2101209090	기타	40	B
1893	2101301000	보리의 것	8	B
1894	2101309000	기타	8	B
1895	2102101000	양조효모	8	B
1896	2102102000	증류효모	8	B
1897	2102103000	제빵효모	8	B
1898	2102104000	배양효모	8	B
1899	2102109000	기타	8	B
1900	2102201000	불활성 효모	8	B
1901	2102202000	누룩	8	B
1902	2102203010	태블릿(tablet) 모양의 것	8	B
1903	2102203090	기타	8	B
1904	2102204010	태블릿(tablet) 모양의 것	8	B
1905	2102204090	기타	8	B
1906	2102209000	기타	8	B
1907	2102300000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8	B
1908	2103100000	간장	8	A
1909	2103201000	토마토 케첩	8	B
1910	2103202000	그 밖의 토마토 소스	8	B
1911	2103301000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	8	A
1912	2103302000	조제한 겨자	8	A
1913	2103901010	된장	8	A
1914	2103901020	춘장	8	A
1915	2103901030	고추장	32	A
1916	2103901090	기타	45	B
1917	2103909010	마요네스	8	B
1918	2103909020	인스턴트 카레	45	B
1919	2103909030	혼합조미료	45	B
1920	2103909040	메주	8	C
1921	2103909090	기타	45	B
1922	2104101000	육류로 만든 것	18	B
1923	2104102000	어류로 만든 것	30	A
1924	2104103000	채소로 만든 것	18	B
1925	2104109000	기타	18	B
1926	2104200000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30	B
1927	2105001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8	B
1928	2105001090	기타	8	B
1929	2105009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8	B
1930	2105009090	기타	8	B
1931	2106101000	두부	8	B
1932	2106109020	단백질 농축물	8	B
1933	2106109030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8	B
1934	2106901010	콜라 베이스	8	A
1935	2106901020	과일향의 음료베이스	8	B
1936	2106901090	기타	8	B
1937	2106902000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8	B

1938	2106903011	인삼차	8	C
1939	2106903019	기타	8	A
1940	2106903021	홍삼차	754.3	C
1941	2106903029	기타	754.3	C
1942	2106909010	커피크리머	8	B
1943	2106909021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8	B
1944	2106909022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초과 100분의 70 이하인 것	8	B
1945	2106909023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것	8	B
1946	2106909030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8	B
1947	2106909040	자기소화효모(autolyzed yeast)와 그 밖의 효모 추출물(extract)	8	B
1948	2106909050	향미(香味)용 조제품	8	B
1949	2106909060	도토리 가루	8	B
1950	2106909070	알로에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B
1951	2106909080	음료 제조용 조제품[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하며,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0	B
1952	2106909091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	8	C
1953	2106909099	기타	8	B
1954	2201100000	광천수와 탄산수	8	B
1955	2201901000	얼음과 눈	8	B
1956	2201909000	기타	8	B
1957	2202101000	색깔을 입힌 것	8	A
1958	2202109000	기타	8	A
1959	2202910000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주	8	B
1960	2202991000	인삼음료	8	B
1961	2202992000	과실주스 음료	9	C
1962	2202993000	식혜	8	B
1963	2202999000	기타	8	B
1964	2203000000	맥주	30	X
1965	2204100000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15	B
1966	2204211000	붉은 포도주	15	B
1967	2204212000	흰 포도주	15	B
1968	2204219000	기타	15	B
1969	2204221000	붉은 포도주	15	B
1970	2204222000	흰 포도주	15	B
1971	2204229000	기타	15	B
1972	2204291000	붉은 포도주	15	B
1973	2204292000	흰 포도주	15	B
1974	2204299000	기타	15	B
1975	2204300000	그 밖의 포도즙	30	B
1976	2205100000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15	X
1977	2205900000	기타	15	X
1978	2206001010	사과술	15	A
1979	2206001020	배술	15	A
1980	2206001090	기타	15	A
1981	2206002010	청주	15	A
1982	2206002020	약주	15	A
1983	2206002030	탁주	15	A
1984	2206002090	기타	15	A

1985	2206009010	와인쿨러(제2009호나 제2202호의 물품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포도를 원료로 한 것을 포함한다)	15	A
1986	2206009090	기타	15	A
1987	2207101000	조주정(粗酒精)	10	X
1988	2207109010	주류 제조용 발효주정	270	X
1989	2207109090	기타	30	X
1990	2207200000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8	B
1991	2208201000	꼬냑	15	B
1992	2208209000	기타	15	B
1993	2208301000	스카시 위스키	20	B
1994	2208302000	버본 위스키	20	B
1995	2208303000	라이(rye) 위스키	20	B
1996	2208309000	기타	20	B
1997	2208400000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20	B
1998	2208500000	진(gin)과 제네바(geneva)	20	B
1999	2208600000	보드카	20	B
2000	2208701000	인삼주	20	B
2001	2208702000	오가피주	20	X
2002	2208709000	기타	20	B
2003	2208901000	브랜디류(소호 제2208.20호의 것은 제외한다)	20	X
2004	2208904000	소주	30	A
2005	2208906000	고량주	30	B
2006	2208907000	데낄라	20	B
2007	2208909000	기타	30	B
2008	2209001000	양조식초	8	B
2009	2209009000	기타	8	B
2010	2301101000	육이나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	9	B
2011	2301102000	수지박(greaves)	5	A
2012	2301201000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	5	A
2013	2301209000	기타	5	A
2014	2302100000	옥수수에서 나온 것	5	A
2015	2302300000	밀에서 나온 것	2	A
2016	2302401000	쌀에서 나온 것	5	B
2017	2302409000	기타	5	A
2018	2302500000	채두류(菜豆類)에서 나온 것	5	A
2019	230310000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0	A
2020	2303200000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5	A
2021	2303301000	사료용	2	A
2022	2303309000	기타	5	A
2023	23040000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8	A
2024	2305000000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5	A
2025	2306100000	목화씨에서 나온 것	2	A
2026	2306200000	아마씨에서 나온 것	5	A
2027	2306300000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5	A
2028	2306410000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0	A
2029	2306490000	기타	0	A

2030	2306500000	야자나 코프라(copra)에서 나온 것	2	A
2031	2306600000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2	A
2032	2306901000	참깨에서 나온 것	63% 또는 72원/kg 양자 중 고액(율)	X
2033	2306902000	들깨에서 나온 것	5	A
2034	2306903000	옥수수 씨눈에서 나온 것	5	A
2035	2306909000	기타	5	A
2036	2307000000	와인리스(wine lees)와 생주석(argol)	5	A
2037	2308001000	도토리	5	X
2038	2308002000	마로니에 열매	5	X
2039	2308003000	목화씨 껍질	5	A
2040	2308009000	기타	46.4	X
2041	2309101000	개사료	5	A
2042	2309102000	고양이 사료	5	A
2043	2309901010	양돈용	4.2	A
2044	2309901020	양계용	4.2	A
2045	2309901030	어류용	5	A
2046	2309901040	축우용	4.2	A
2047	2309901091	대용유(代用乳)	71	C
2048	2309901099	기타	5	A
2049	2309902010	무기물 혹은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	50.6	C
2050	2309902020	향미제(香味劑)를 주로 한 것	50.6	C
2051	2309902091	1994.12.31 현재 수입자동승인 품목	5	A
2052	2309902099	기타	50.6	C
2053	2309903010	항생물질을 주로 한 것	5	A
2054	2309903020	비타민을 주로 한 것	5	A
2055	2309903030	미량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	5	A
2056	2309903090	기타	5	A
2057	2309909010	낚시용 떡밥	5	C
2058	2309909090	기타	50.6	C
2059	2401101000	황색종(種)	20	B
2060	2401102000	버어리(burley)종(種)	20	B
2061	2401103000	오리엔트종(種)	20	A
2062	2401109000	기타	20	B
2063	2401201000	황색종	20	B
2064	2401202000	버어리(burley)종(種)	20	B
2065	2401203000	오리엔트종(種)	20	A
2066	2401209000	기타	20	B
2067	2401301000	잎의 주맥(主脈)	20	B
2068	2401302000	잎 부스러기	20	B
2069	2401309000	기타	20	B
2070	2402101000	시가(cigar)	40	A
2071	2402102000	셔루트(cheroot)	40	A
2072	2402103000	시가릴로(cigarillo)	40	A
2073	2402201000	필터담배	40	A
2074	2402209000	기타	40	A
2075	2402900000	기타	40	A
2076	2403110000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	40	A
2077	2403191000	파이프 담배	40	A

2078	2403199000	기타	40	A
2079	2403911000	판상엽(板狀葉)	32.8	A
2080	2403919000	기타	40	A
2081	2403991000	씹는 담배	40	A
2082	2403992000	코 담배	40	A
2083	2403993000	담배의 추출물(extracts)과 에센스(essence)	40	A
2084	2403994000	입안에 머금는 담배(예: 스누스)	40	A
2085	2403999000	기타	40	A
2086	2404110000	담배나 재구성한 담배를 함유한 것	40	A
2087	2404121000	전자담배용 용액	6.5	A
2088	2404129000	기타	6.5	A
2089	2404191000	담배대용물을 함유한 것	40	A
2090	2404199010	전자담배용 용액	6.5	A
2091	2404199090	기타	8	A
2092	2404910000	경구(經口)용	8	B
2093	2404920000	피부 투여용	6.5	A
2094	2404990000	기타	6.5	A
2095	2501001010	암염(岩鹽)	1	A
2096	2501001020	천일염	1	A
2097	2501009010	식염	8	X
2098	2501009020	순염화나트륨	8	A
2099	2501009090	기타	8	A
2100	2502000000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A
2101	2503000000	황[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2	A
2102	2504101000	인상(鱗狀)흑연	3	A
2103	2504102000	토상(土狀)흑연	3	A
2104	2504109000	기타	3	A
2105	2504900000	기타	3	A
2106	2505100000	규사	2	A
2107	2505901010	점토사	3	A
2108	2505901020	장석사(長石砂)	3	A
2109	2505901090	기타	3	A
2110	2505909000	기타	3	A
2111	2506101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06 미만인 것	3	A
2112	2506102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06 이상 100분의 0.1 이하인 것	3	A
2113	2506103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1을 초과하는 것	3	A
2114	2506200000	규암	3	A
2115	2507001010	하소(煆燒)하지 않은 것	3	A
2116	2507001090	기타	3	A
2117	2507002000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하소(煆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	A
2118	2507009000	기타	3	A
2119	2508100000	벤토나이트(bentonite)	3	A
2120	2508300000	내화(耐火)점토	3	A
2121	2508401000	산성백토	3	A
2122	2508402000	탈색토(奪色土)와 표포토(漂布土)	3	A
2123	2508409000	기타	3	A
2124	2508501000	홍주석(紅柱石)	3	A
2125	2508502000	남정석(藍晶石)	3	A

2126	2508503000	규선석(硅線石)	3	A
2127	2508600000	멀라이트(mullite)	3	A
2128	2508701000	샤모트(chamotte)	3	A
2129	2508702000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3	A
2130	2509000000	초크	3	A
2131	2510101000	천연 인산칼슘	0	A
2132	2510109000	기타	1	A
2133	2510201000	천연 인산칼슘	3	A
2134	2510202000	천연 인산알루미늄칼슘	3	A
2135	2510209000	기타	3	A
2136	2511100000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3	A
2137	2511200000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	3	A
2138	2512000000	규조토[예: 키절구어(kieselguhr)·트리폴리트(tripolite)·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	A
2139	25131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불규칙한 조각[잘게 부순 부석(빔스키)을 포함한다]	3	A
2140	2513109000	기타	3	A
2141	2513201010	금강사(金剛砂)	3	A
2142	2513201020	천연 커런덤(corundum)	3	A
2143	2513201030	천연 석류석	3	A
2144	2513201090	기타	3	A
2145	2513202010	금강사(金剛砂)	3	A
2146	2513202020	천연 커런덤(corundum)	3	A
2147	2513202030	천연 석류석	3	A
2148	2513202090	기타	3	A
2149	25140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3	B
2150	2514009000	기타	3	B
2151	2515111000	대리석	3	A
2152	2515112000	트래버틴(travertine)	3	A
2153	2515121000	대리석	3	A
2154	2515122000	트래버틴(travertine)	3	A
2155	2515200000	에코신(ecaussine)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과 설화 석고(alabaster)	3	A
2156	25161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3	B
2157	2516120000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3	B
2158	25162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3	B
2159	2516209000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3	B
2160	25169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3	B
2161	2516909000	기타	3	B
2162	2517101000	자갈	3	A
2163	2517102000	쇄석(碎石)	3	A
2164	2517109000	기타	3	A
2165	2517200000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소호 제2517.10호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	A
2166	2517300000	타르 머캐덤(tarred macadam)	3	A
2167	2517410000	대리석으로 만든 것	3	A
2168	2517491000	현무암으로 만든 것	3	B

2169	2517492000	화강암으로 만든 것	3	B
2170	2517499000	기타	3	B
2171	2518100000	하소(煆燒)하지 않거나 소결(燒結)하지 않은 백운석(白雲石)	3	A
2172	2518200000	하소(煆燒)하거나 소결(燒結)한 백운석(白雲石)	3	A
2173	2519100000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3	A
2174	2519901000	용융(溶融)·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	3	A
2175	2519902000	천연 산화마그네슘	3	A
2176	2519909000	기타	3	A
2177	2520101000	석고	5	A
2178	2520102000	무수(無水)석고	5	A
2179	2520201000	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하소하거나 미세하게 분쇄한 것	5	A
2180	2520209000	기타	5	A
2181	2521001000	석회석	3	A
2182	2521009000	기타	3	A
2183	2522100000	생석회(生石灰)	3	A
2184	2522200000	소석회(消石灰)	3	A
2185	2522300000	수경성(水硬性) 석회	3	A
2186	2523100000	시멘트 클링커(clinker)	5	A
2187	2523210000	백색 시멘트(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A
2188	2523290000	기타	5	C
2189	2523300000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8	C
2190	2523901000	슬래그(slag) 시멘트	5	C
2191	2523909000	기타	5	C
2192	2524100000	청(靑)석면	5	A
2193	2524901000	갈(褐)석면	5	A
2194	2524902000	백(白)석면	5	A
2195	2524909000	기타	5	A
2196	2525100000	가공하지 않은 운모와 시트(sheet) 모양의 운모나 쪼갠 운모	3	A
2197	2525200000	운모 가루	3	A
2198	2525300000	운모 웨이스트(waste)	3	A
2199	2526100000	부수지 않은 것으로 가루도 아닌 것	3	A
2200	2526200000	부수거나 가루인 것	5	A
2201	2528001000	천연 붕산나트륨과 그 정광(精鑛)[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	A
2202	2528002000	붕산칼슘	3	A
2203	2528003000	염화붕산마그네슘	3	A
2204	2528004000	천연 붕산	3	A
2205	2528009000	기타	3	A
2206	2529100000	장석(長石)	3	A
2207	2529211000	가루	2	A
2208	2529219000	기타	2	A
2209	2529221000	가루	2	A
2210	2529229000	기타	2	A
2211	2529301000	백류석(白榴石)	2	A
2212	2529302000	하석(霞石)	2	A
2213	2529303000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2	A
2214	2530101000	질석(蛭石)	3	A
2215	2530102000	진주암(眞珠巖)과 녹니석(綠泥石)	3	A
2216	2530200000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 황산마그네슘)	3	A
2217	2530901000	천연 황화비소	3	A
2218	2530902000	건전지 제조용에 적합한 연망간광	3	A

2219	2530903000	스트론티아나이트(strontianite)	3	A
2220	2530904000	주사(朱沙)	3	A
2221	2530905000	납석(蠟石)	3	A
2222	2530906000	불석(沸石)	3	A
2223	2530907000	명반석(明礬石)	3	A
2224	2530908000	규회석(硅灰石)	3	A
2225	2530909010	도석(陶石)	3	A
2226	2530909020	견운모(絹雲母)	3	A
2227	2530909030	어스컬러(earth colour)	8	A
2228	2530909040	천연의 운모상 산화철	8	A
2229	2530909050	천연 빙정석(氷晶石)과 천연 치올라이트(chiolite)	3	A
2230	2530909091	천연탄산칼슘	3	A
2231	2530909099	기타	3	A
2232	2601111000	적(赤)철광	0	A
2233	2601112000	자(磁)철광	0	A
2234	2601119000	기타	0	A
2235	2601121000	적(赤)철광	0	A
2236	2601122000	자(磁)철광	0	A
2237	2601129000	기타	0	A
2238	2601200000	배소(焙燒)한 황화철광	1	A
2239	2602000000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0	A
2240	26030000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0	A
2241	2604000000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0	A
2242	2605000000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0	A
2243	260600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0	A
2244	2607000000	납광과 그 정광(精鑛)	0	A
2245	2608000000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0	A
2246	2609000000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0	A
2247	2610000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0	A
2248	2611001000	흑중석(wolframite)	0	A
2249	2611002000	회중석(scheelite)	0	A
2250	2611009000	기타	0	A
2251	2612100000	우라늄광과 그 정광	0	A
2252	2612200000	토륨광과 그 정광	0	A
2253	2613100000	배소(焙燒)한 것	0	A
2254	2613900000	기타	0	A
2255	2614001000	금홍석(rutile)	0	A
2256	2614009000	기타	0	A
2257	261510000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	0	A
2258	2615901000	니오븀광과 그 정광	0	A
2259	2615902000	탄탈륨광과 그 정광	0	A
2260	2615903000	바나듐광과 그 정광	0	A
2261	2616100000	은광과 그 정광	0	A
2262	2616901000	금광과 그 정광	0	A
2263	2616902000	백금광과 그 정광(백금족의 광과 그 정광을 포함한다)	0	A
2264	2617100000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	0	A
2265	2617901000	수은광과 그 정광	0	A
2266	2617902000	게르마늄광과 그 정광	0	A
2267	2617904000	비스무트(bismuth)광과 그 정광	0	A

2268	2617909000	기타	0	A
2269	26180000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2	A
2270	2619001010	용광로 슬래그(slag)	2	B
2271	2619001090	기타	2	B
2272	2619002000	드로스(dross)	2	A
2273	2619003000	스케일링(scaling)	2	A
2274	2619009000	기타	2	A
2275	2620110000	경(硬)아연 스펠터(spelter)	2	A
2276	2620190000	기타	2	A
2277	2620210000	유연(有鉛) 가솔린 슬러지(sludge)와 유연 안티녹(anti-knock) 화합물 슬러지	2	A
2278	2620290000	기타	2	A
2279	2620300000	주로 구리를 함유하는 것	2	A
2280	2620400000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2	A
2281	2620600000	비소, 수은, 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2	A
2282	2620910000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이나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2	A
2283	2620990000	기타	2	A
2284	2621100000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2	A
2285	2621901000	분진(제철, 시멘트 제조공정 등의 대기오염방지지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286	2621902000	석탄재	2	A
2287	2621909000	기타	2	A
2288	2701110000	무연탄	0	A
2289	2701121000	강점결성 코크스용 탄	0	A
2290	2701122000	그 밖의 코크스용 탄	0	A
2291	2701129010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2 미만인 것(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 기준에 의한다)	0	A
2292	2701129090	기타	0	A
2293	2701190000	그 밖의 석탄	0	A
2294	2701201000	연탄	1	A
2295	2701202000	조개탄(ovoid)	1	A
2296	2701209000	기타	1	A
2297	2702100000	갈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1	A
2298	2702200000	응결시킨 갈탄	1	A
2299	2703001000	응결시키지 않은 것	1	A
2300	2703002000	응결시킨 것	1	A
2301	2704001010	석탄에서 제조한 것	3	A
2302	2704001090	기타	3	A
2303	2704002000	반성(半成) 코크스	3	A
2304	2704003000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3	A
2305	2705000000	석탄가스・수성(水性)가스・발생로(發生爐)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5	A
2306	2706001000	콜타르(coal tar)	5	A
2307	2706009000	기타	5	A
2308	2707100000	벤조올(벤젠)	3	X
2309	2707200000	톨루올(톨루엔)	3	A
2310	2707300000	크실롤(크실렌)	3	C
2311	2707400000	나프탈렌	5	A

2312	2707500000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혼합물[아이・에스・오(ISO) 3405방법{에이・에스・티・엠 디(ASTM D)86과 동등}에 의하여 섭씨 250도에서 전 용량의 100분의 65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이 증류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X
2313	2707910000	크레오소트(creosote)유	5	A
2314	2707991000	솔벤트 나프타(solvent naphtha)	5	A
2315	2707992000	안트라센(anthracene)	5	A
2316	2707993000	페놀(석탄산)	8	A
2317	2707999000	기타	5	X
2318	2708100000	피치(pitch)	5	X
2319	2708200000	피치코크스(pitch cokes)	5	C
2320	270900101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3	C
2321	270900102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	3	C
2322	270900103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3	C
2323	270900104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3	C
2324	270900105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3	C
2325	270900106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3	C
2326	270900107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	3	C
2327	270900108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3	C
2328	2709001090	기타	3	C
2329	2709002000	역청유(瀝靑油)	3	C
2330	2710121000	자동차 휘발유	3	X
2331	2710122000	항공 휘발유	3	X
2332	2710123000	프로필렌테트라머(propylene tetramer)	5	X
2333	2710124000	나프타	0.5	TR(50%를 5년에 걸쳐 인하)
2334	2710125000	엔지엘(NGL)	0.5	C
2335	2710129000	기타	5	X
2336	2710191010	제트 연료유	5	X
2337	2710191090	기타	5	X
2338	2710192010	등유	3	X
2339	2710192020	제트 연료유	3	X
2340	2710192030	노르말-파라핀(n-paraffin)	5	C
2341	2710192090	기타	5	X
2342	2710193000	경유	3	X
2343	2710194010	경질(輕質)중유(벙커에이유)	3	X
2344	2710194020	중유(벙커비유)	3	X
2345	2710194030	벙커시유	3	C
2346	2710194090	기타	5	X
2347	2710195010	조유(粗油)	7	C
2348	2710195020	윤활유 기유(基油)	7	X
2349	2710196000	신전유(extender oil)	8	X
2350	2710197110	항공기용 기관오일	7	X
2351	2710197120	자동차용 기관오일	7	X
2352	2710197130	선박용 기관오일	7	X
2353	2710197190	기타	7	X
2354	2710197210	실린더오일	7	X
2355	2710197220	스핀들(spindle)오일	7	X
2356	2710197230	기어오일	7	X

2357	2710197240	터빈오일	7	X
2358	2710197250	냉동기오일	7	X
2359	2710197310	콤파운드오일	7	X
2360	2710197320	유동파라핀	7	X
2361	2710197330	자동변속기용 윤활유	7	X
2362	2710197410	방청유(anti-corrosive oil)	7	X
2363	2710197420	절삭유	7	X
2364	2710197430	세척유	7	X
2365	2710197440	주형이형유	7	X
2366	2710197450	유압브레이크유	7	X
2367	2710197510	프로세스유	7	X
2368	2710197520	전기전열유	7	X
2369	2710197530	열처리유	7	X
2370	2710197540	열매체유	7	X
2371	2710197900	기타	7	X
2372	2710198010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	8	C
2373	2710198020	칼슘을 첨가한 것	8	C
2374	2710198030	나트륨을 첨가한 것	8	C
2375	2710198040	리튬을 첨가한 것	8	X
2376	2710198090	기타	8	X
2377	2710199000	기타	8	X
2378	2710201010	자동차 휘발유	5	X
2379	2710201020	항공 휘발유	5	X
2380	2710201030	프로필렌테트라머(propylene tetramer)	5	X
2381	2710201040	나프타	0.5	A
2382	2710201050	엔지엘(NGL)	0.5	A
2383	2710201090	기타	5	X
2384	2710209110	제트 연료유	5	X
2385	2710209190	기타	5	X
2386	2710209210	등유	5	X
2387	2710209220	제트 연료유	5	X
2388	2710209230	노르말-파라핀(n-paraffin)	5	A
2389	2710209290	기타	5	X
2390	2710209300	경유	5	X
2391	2710209410	경질(輕質)중유(벙커에이유)	5	X
2392	2710209420	중유(벙커비유)	5	X
2393	2710209430	벙커시유	5	X
2394	2710209490	기타	5	X
2395	2710209510	조유(粗油)	7	X
2396	2710209520	윤활유 기유(基油)	7	X
2397	2710209600	신전유(extender oil)	8	X
2398	2710209711	항공기용 기관오일	7	X
2399	2710209712	자동차용 기관오일	7	X
2400	2710209713	선박용 기관오일	7	X
2401	2710209719	기타	7	X
2402	2710209721	실린더오일	7	X
2403	2710209722	스핀들(spindle)오일	7	X
2404	2710209723	기어오일	7	X
2405	2710209724	터빈오일	7	X
2406	2710209725	냉동기오일	7	X
2407	2710209731	콤파운드오일	7	X

2408	2710209732	유동파라핀	7	X
2409	2710209733	자동변속기용 윤활유	7	X
2410	2710209741	방청유	7	X
2411	2710209742	절삭유	7	X
2412	2710209743	세척유	7	X
2413	2710209744	주형이형유	7	X
2414	2710209745	유압브레이크유	7	X
2415	2710209751	프로세스유	7	X
2416	2710209752	전기전열유	7	X
2417	2710209753	열처리유	7	X
2418	2710209754	열매체유	7	X
2419	2710209790	기타	7	X
2420	2710209810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	8	C
2421	2710209820	칼슘을 첨가한 것	8	C
2422	2710209830	나트륨을 첨가한 것	8	C
2423	2710209840	리튬을 첨가한 것	8	X
2424	2710209890	기타	8	X
2425	2710209900	기타	8	X
2426	2710911010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제트 연료유의 것	3	C
2427	2710911020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0	A
2428	2710911090	기타	5	C
2429	2710912010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3	C
2430	2710912090	기타	5	C
2431	2710913000	경유로 만든 것	3	C
2432	2710914010	경질(輕質)중유(벙커에이유)·중유(벙커비유)·벙커시유의 것	3	C
2433	2710914090	기타	5	C
2434	2710915000	조유(粗油)·윤활유[신전유(extender oil)는 제외한다]·윤활유 기유(基油)의 것	7	C
2435	2710919000	기타	8	C
2436	2710991010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제트 연료유의 것	3	C
2437	2710991020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0	A
2438	2710991090	기타	5	C
2439	2710992010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3	C
2440	2710992090	기타	5	C
2441	2710993000	경유로 만든 것	3	C
2442	2710994010	경질(輕質)중유(벙커에이유)·중유(벙커비유)·벙커시유의 것	3	C
2443	2710994090	기타	5	C
2444	2710995000	조유(粗油)·윤활유[신전유(extender oil)는 제외한다]·윤활유 기유(基油)의 것	7	C
2445	2710999000	기타	8	X
2446	2711110000	천연가스	3	A
2447	2711120000	프로판	3	A
2448	2711130000	부탄	3	A
2449	2711141000	에틸렌	5	X
2450	2711142000	프로필렌	5	B
2451	2711143000	부틸렌	5	B
2452	2711144000	부타디엔	5	C
2453	2711190000	기타	5	X
2454	2711210000	천연가스	3	A
2455	2711290000	기타	5	C

2456	2712101000	바셀린	8	C
2457	2712109000	기타	8	C
2458	2712200000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7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C
2459	2712901010	슬랙왁스와 스케일왁스	8	X
2460	2712901020	마이크로크리스털린왁스	8	C
2461	2712901090	기타	8	X
2462	2712909010	몬탄왁스	8	C
2463	2712909020	토탄왁스	8	C
2464	2712909030	세레신왁스	8	C
2465	2712909040	합성 파라핀왁스	8	C
2466	2712909090	기타	8	C
2467	2713110000	하소(煆燒)하지 않은 것	5	X
2468	2713120000	하소(煆燒)한 것	5	X
2469	2713200000	석유역청(瀝靑)	5	A
2470	2713900000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잔재물	5	X
2471	2714100000	역청질 혈암(瀝靑質 頁巖)·유모 혈암(油母 頁巖), 타르샌드(tar sand)	5	C
2472	2714901000	천연의 역청(瀝靑)과 아스팔트	5	C
2473	2714902000	아스팔타이트	5	C
2474	2714903000	아스팔트질의 암석	5	C
2475	2715001000	컷백(cut-back)	5	C
2476	2715002000	아스팔트·역청(瀝靑)·피치(pitch)·타르의 에멀션(emulsion)이나 안정분산액	5	C
2477	2715003000	매스틱(mastic)	5	C
2478	2715009000	기타	5	C
2479	2716000000	전기에너지	5	A
2480	2801100000	염소	5.5	A
2481	2801200000	요드	5.5	A
2482	2801301000	플루오르	5.5	A
2483	2801302000	브롬	5.5	A
2484	2802001000	승화황(昇華黃)	5	A
2485	2802002000	침강황(沈降黃)	5	A
2486	2802003000	콜로이드황	5	A
2487	2803001000	아세틸렌 블랙	5.5	A
2488	2803009011	이차전지 제조용	5	A
2489	2803009019	기타	5.5	A
2490	2803009090	기타	5.5	A
2491	2804100000	수소	5.5	A
2492	2804210000	아르곤	5.5	A
2493	2804291000	헬륨	5.5	A
2494	2804292000	네온	5.5	A
2495	2804293000	크립톤	5.5	A
2496	2804294000	크세논	5.5	A
2497	2804299000	기타	5.5	A
2498	2804300000	질소	5.5	A
2499	2804400000	산소	5.5	A
2500	2804501000	붕소	5.5	A
2501	2804502000	텔루르	5.5	A
2502	2804611010	잉곳(ingot) 또는 브릭(brick)	3	A
2503	2804611090	기타	3	A

2504	2804619000	기타	3	A
2505	2804690000	기타	5	A
2506	2804701000	황린	5	A
2507	2804709000	기타	5.5	A
2508	2804800000	비소	5.5	A
2509	2804900000	셀렌	5.5	A
2510	2805110000	나트륨	5.5	A
2511	2805120000	칼슘	5.5	A
2512	2805190000	기타	5.5	A
2513	2805301000	세륨족	5.5	A
2514	2805302000	테르븀족	5.5	A
2515	2805303000	에르븀족	5.5	A
2516	2805304000	이트륨	5.5	A
2517	2805305000	스칸듐	5.5	A
2518	2805309000	기타	5.5	A
2519	2805400000	수은	5.5	A
2520	2806100000	염화수소(염산)	5.5	A
2521	2806200000	클로로황산	5.5	A
2522	2807001010	반도체 제조용	5.5	A
2523	2807001090	기타	5.5	A
2524	2807002000	발연황산	5.5	A
2525	2808001010	반도체 제조용	5.5	A
2526	2808001090	기타	5.5	A
2527	2808002000	황질산	5.5	A
2528	2809100000	오산화인	5.5	A
2529	2809201010	반도체 제조용	5.5	A
2530	2809201090	기타	5.5	A
2531	2809202000	폴리인산	5.5	A
2532	2810001010	삼산화 이붕소	5.5	A
2533	2810001090	기타	5.5	A
2534	2810002000	오르토붕산	5.5	A
2535	2810009000	기타	5.5	A
2536	2811111000	반도체 제조용	5.5	A
2537	2811119000	기타	5.5	A
2538	2811120000	시안화수소(시안화수소산)	5.5	A
2539	2811192000	브롬화수소산	5.5	A
2540	2811193000	술파민산	5.5	A
2541	2811196000	하이포아인산	5.5	A
2542	2811199000	기타	5.5	A
2543	2811210000	이산화탄소	5.5	A
2544	2811221000	화이트카본	5.5	A
2545	2811229010	실리카겔	5.5	A
2546	2811229090	기타	5.5	A
2547	2811291000	일산화탄소	5.5	A
2548	2811292000	아산화질소	5.5	A
2549	2811299000	기타	5.5	A
2550	2812110000	카보닐 디클로라이드(포스겐)	5	A
2551	2812120000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	5	A
2552	2812130000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	5	A
2553	2812140000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	5	A
2554	2812150000	설퍼 모노클로라이드	5	A

2555	2812160000	설퍼 디클로라이드	5	A
2556	2812170000	티오닐 클로라이드	5	A
2557	2812190000	기타	5	A
2558	2812901000	삼플루오르붕소	5.5	A
2559	2812902000	설퍼헥사플루오라이드	5.5	A
2560	2812903010	불소고무 제조용	5.5	A
2561	2812903090	기타	5.5	A
2562	2812909000	기타	5.5	A
2563	2813100000	이황화탄소	5.5	A
2564	2813900000	기타	5.5	A
2565	2814100000	무수(無水)암모니아	1	A
2566	2814200000	암모니아수	2	A
2567	2815110000	고체	5.5	C
2568	2815120000	수용액(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소다)	8	C
2569	2815200000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5.5	A
2570	2815300000	과산화나트륨이나 과산화칼륨	5.5	A
2571	2816101000	수산화마그네슘	5.5	A
2572	2816102000	과산화마그네슘	5.5	A
2573	2816400000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과산화물	5.5	A
2574	2817001000	산화아연	5.5	A
2575	2817002000	과산화아연	5.5	A
2576	2818101000	선별된 알갱이 모양	3	A
2577	2818109000	기타	3	A
2578	2818201000	고순도 분말의 것(산화알루미늄 함유량이 100분의 99.99(4N) 이상이며, 알갱이의 크기가 0.1마이크로미터 이상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	A
2579	2818209000	기타	1	A
2580	2818301000	알루미나겔	5.5	A
2581	2818309000	기타	5.5	A
2582	2819100000	삼산화크로뮴	5.5	A
2583	2819901010	산화제이크로뮴	5.5	A
2584	2819901090	기타	5.5	A
2585	2819902000	수산화크로뮴	5.5	A
2586	2820100000	이산화망간	5	A
2587	2820900000	기타	5.5	A
2588	2821101000	산화철	5.5	A
2589	2821102000	수산화철	5.5	A
2590	2821200000	어스컬러(earth colour)	5.5	A
2591	2822001010	산화제이코발트	5.5	A
2592	2822001091	이차전지 제조용	3	A
2593	2822001099	기타	5.5	A
2594	2822002010	수산화제일코발트	5.5	A
2595	2822002090	기타	5.5	A
2596	2823001000	아나타스형	5.5	A
2597	2823009000	기타	5.5	A
2598	2824100000	일산화납[리사지(litharge)·메시코트(massicot)]	5.5	A
2599	2824901000	연단(鉛丹)과 오렌지납	5.5	A
2600	2824909000	기타	5.5	A
2601	2825101000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5.5	A
2602	2825102000	히드록실아민	5.5	A
2603	2825109000	기타	5.5	A

2604	2825201000	산화리튬	5.5	A
2605	2825202000	수산화리튬	5	A
2606	2825301000	오산화바나듐	1	A
2607	2825309000	기타	3	A
2608	2825401000	산화니켈	5.5	A
2609	2825402000	수산화니켈	5.5	A
2610	2825501000	산화구리	5.5	C
2611	2825502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612	2825502090	기타	5.5	A
2613	2825601000	산화게르마늄	5.5	A
2614	2825602000	이산화지르코늄	5.5	A
2615	2825701000	산화몰리브덴	3	A
2616	2825702000	수산화몰리브덴	5.5	A
2617	2825800000	산화안티모니	5.5	A
2618	2825901010	산화칼슘	5.5	A
2619	2825901020	산화텅스텐	1	A
2620	2825901030	산화주석	5.5	A
2621	2825901040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산화물	5.5	A
2622	2825901090	기타	5.5	A
2623	2825902010	수산화칼슘	5.5	A
2624	2825902050	니켈 코발트 망간 수산화물	5.5	A
2625	2825902090	기타	5.5	A
2626	2825903000	금속과산화물	5.5	A
2627	2825909000	기타	5.5	A
2628	2826120000	플루오르화알루미늄	5.5	A
2629	2826191000	플루오르화칼슘	5.5	A
2630	2826193010	산성플루오르화칼륨	5.5	A
2631	2826193090	기타	5.5	A
2632	2826194000	플루오르화암모늄이나 플루오르화나트륨	5.5	A
2633	2826195000	텅스텐 헥사플루오라이드(WF6)	5.5	A
2634	2826199000	기타	5.5	A
2635	2826300000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 빙정석(氷晶石)]	5.5	A
2636	2826901000	인조치올라이트	5.5	A
2637	2826902000	플루오르화규산칼슘	5.5	A
2638	2826903000	플루오르화붕산염	5.5	A
2639	2826904000	플루오르화인산염	5.5	A
2640	2826905000	플루오르화황산염	5.5	A
2641	2826906000	플루오르화규산나트륨이나 플루오르화규산칼륨	5.5	A
2642	2826909000	기타	5.5	A
2643	2827100000	염화암모늄	5.5	A
2644	2827200000	염화칼슘	5.5	A
2645	2827310000	마그네슘 염화물	5.5	A
2646	2827320000	알루미늄 염화물	5.5	A
2647	2827350000	니켈 염화물	5.5	A
2648	2827391000	구리염화물	5.5	A
2649	2827399000	기타	5.5	A
2650	2827411000	산화염화구리	5.5	A
2651	2827412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652	2827412090	기타	5.5	A

2653	2827491000	산화염화물	5.5	A
2654	2827492000	수산화염화물	5.5	A
2655	2827511000	브롬화나트륨	5.5	A
2656	2827512000	브롬화칼륨	5.5	A
2657	2827590000	기타	5.5	A
2658	2827601000	산화요드화물	5.5	A
2659	2827609010	요드화칼륨	5.5	A
2660	2827609090	기타	5.5	A
2661	2828100000	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그 밖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5.5	A
2662	2828901000	아염소산나트륨	5.5	A
2663	2828909000	기타	5.5	A
2664	2829110000	염소산나트륨	5.5	A
2665	2829190000	기타	5.5	A
2666	2829901000	과염소산암모늄	5.5	A
2667	2829909000	기타	5.5	A
2668	2830101000	황화수소나트륨	5.5	A
2669	2830109000	기타	5.5	A
2670	2830901000	황화물	5.5	A
2671	2830902000	폴리황화물	5.5	A
2672	2831101000	아이티온산나트륨	5.5	A
2673	2831102000	술폭실산나트륨(포름알데히드 술폭실산나트륨)	5.5	A
2674	2831900000	기타	5.5	A
2675	2832100000	아황산나트륨	5.5	A
2676	2832200000	그 밖의 아황산염	5.5	A
2677	2832302000	티오황산 나트륨	5.5	A
2678	2832309000	기타	5.5	A
2679	2833110000	황산이나트륨	5.5	A
2680	2833190000	기타	5.5	A
2681	2833210000	황산마그네슘	5.5	A
2682	2833221000	이차전지 제조용	5	A
2683	2833229000	기타	5.5	A
2684	2833240000	황산니켈	5	A
2685	283325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686	2833259000	기타	5.5	A
2687	2833270000	황산바륨	5.5	A
2688	2833291000	황산철	5.5	A
2689	2833292010	이차전지 제조용	5	A
2690	2833292090	기타	5.5	A
2691	2833293010	이차전지 제조용	5	A
2692	2833293090	기타	5.5	A
2693	2833299000	기타	5.5	A
2694	2833300000	명반	5.5	A
2695	2833401000	과황산암모늄	5.5	A
2696	2833402000	과황산나트륨	5.5	A
2697	2833409000	기타	5.5	A
2698	2834100000	아질산염	5.5	A
2699	2834210000	질산칼륨	5.5	A
2700	2834291000	질산바륨	5.5	A
2701	2834299000	기타	5.5	A

2702	2835101000	하이포아인산나트륨	5.5	A
2703	2835109000	기타	5.5	A
2704	2835221000	인산일나트륨	5.5	A
2705	2835222000	인산이나트륨	5.5	A
2706	2835240000	인산칼륨	5.5	A
2707	2835250000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5.5	A
2708	2835260000	그 밖의 인산칼슘	5.5	A
2709	2835291000	인산알루미늄	5.5	A
2710	2835299000	기타	5.5	A
2711	2835310000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5.5	A
2712	2835391000	메타인산나트륨	5.5	A
2713	2835392000	피로인산나트륨	5.5	A
2714	2835399000	기타	5.5	A
2715	2836200000	탄산이나트륨	3	A
2716	2836300000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5.5	A
2717	2836400000	탄산칼륨	5.5	A
2718	2836500000	탄산칼슘	5.5	A
2719	2836600000	탄산바륨	5.5	A
2720	2836910000	탄산리튬	5	A
2721	2836920000	탄산스트론튬	5.5	A
2722	2836991010	탄산마그네슘	5.5	A
2723	2836991020	상관습상의 탄산암모늄과 그 밖의 탄산암모늄	5.5	A
2724	2836991031	이차전지 제조용	5	A
2725	2836991039	기타	5.5	A
2726	2836991090	기타	5.5	A
2727	2836992000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5.5	A
2728	2837111000	시안화나트륨	5.5	A
2729	2837112000	산화시안화나트륨	5.5	A
2730	2837191010	시안화칼륨	5.5	A
2731	2837191020	시안화구리	5.5	A
2732	2837191030	시안화아연	5.5	A
2733	2837191090	기타	5.5	A
2734	2837192000	산화시안화물	5.5	A
2735	2837201000	페로시안화물	5.5	A
2736	2837202000	페리시안화물	5.5	A
2737	2837209000	기타	5.5	A
2738	2839110000	메타규산나트륨	5.5	A
2739	2839190000	기타	5.5	A
2740	2839901000	규산지르코늄	5.5	A
2741	2839902000	규산바륨	5.5	A
2742	2839909000	기타	5.5	A
2743	2840110000	무수물(無水物)	5	A
2744	2840190000	기타	5	A
2745	2840200000	그 밖의 붕산염	5	A
2746	2840300000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5	A
2747	2841300000	중크롬산나트륨	5.5	A
2748	2841500000	그 밖의 크롬산염과 중크롬산염, 과산화크롬산염	5.5	A
2749	2841610000	과망간산칼륨	5.5	A
2750	2841691000	아망간산염	5.5	A
2751	2841692000	망간산염	5.5	A
2752	2841693000	과망간산염	5.5	A

2753	2841700000	몰리브덴산염	5.5	A
2754	2841800000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wolframate)]	5	A
2755	2841901000	주석산염	5.5	A
2756	2841902010	티탄산바륨	5.5	A
2757	2841902090	기타	5.5	A
2758	2841903000	안티몬산염	5.5	A
2759	2841904000	철산염과 아철산염	5.5	A
2760	2841905000	바나듐산염	5.5	A
2761	2841909010	코발트산 리튬	5.5	A
2762	2841909020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	5.5	A
2763	2841909030	니켈코발트알루미늄 산화물의 리튬염	5.5	A
2764	2841909040	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산화물의 리튬염	5.5	A
2765	2841909090	기타	5.5	A
2766	2842101000	알루미노실리케이트	6.5	A
2767	2842109000	기타	5.5	A
2768	2842903000	황을 함유하는 겹염이나 착염	5.5	A
2769	2842909000	기타	5.5	A
2770	2843100000	콜로이드 귀금속	5.5	A
2771	2843210000	질산은	5.5	A
2772	2843290000	기타	5.5	A
2773	2843301000	반도체 제조용 금청산칼륨	5.5	A
2774	2843309000	기타	5.5	A
2775	2843901000	아말감(amalgam)	5.5	A
2776	2843909010	백금 화합물	5.5	A
2777	2843909090	기타	5.5	A
2778	2844101000	천연 우라늄	0	A
2779	2844102000	분산물(分散物)(천연 우라늄이나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2780	2844109000	기타	0	A
2781	2844201000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	0	A
2782	2844202000	분산물(分散物)(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플루토늄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2783	2844209000	기타	0	A
2784	2844301000	분산물(分散物)(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과 토륨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2785	2844309000	기타	0	A
2786	2844410000	삼중수소와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삼중수소와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2787	2844420000	악티늄-225·악티늄-227·캘리포늄-253·퀴륨-240·퀴륨-241·퀴륨-242·퀴륨-243·퀴륨-244·아인슈타이늄-253·아인슈타이늄-254·가돌리늄-148·폴로늄-208·폴로늄-209·폴로늄-210·라듐-223·우라늄-230·우라늄-232와 이들의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 원소나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2788	2844430000	그 밖의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와 이들의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2789	2844440000	방사성 잔재물	0	A
2790	2844500000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照射)]된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	0	A

2791	2845100000	중수(重水)(산화 중수소)	0	A
2792	2845200000	붕소-10을 농축한 붕소와 그 화합물	0	A
2793	2845300000	리튬-6을 농축한 리튬과 그 화합물	0	A
2794	2845400000	헬륨-3	0	A
2795	2845901000	중수소	0	A
2796	2845902000	탄소의 동위원소	0	A
2797	2845909000	기타	0	A
2798	2846100000	세륨화합물	5	A
2799	2846901000	산화이트륨	5	A
2800	2846909000	기타	5	A
2801	2847002000	반도체 제조용	5.5	A
2802	2847009000	기타	5.5	A
2803	2849100000	탄화칼슘	5.5	A
2804	2849200000	탄화규소	5	A
2805	2849901000	복탄화물	5.5	A
2806	2849909010	탄화텅스텐	5.5	A
2807	2849909090	기타	5.5	A
2808	2850001000	수소화물	5.5	A
2809	2850002000	질화물	5.5	A
2810	2850003000	아지드화물	5.5	A
2811	2850004000	규화물	5.5	A
2812	2850005000	붕화물	5.5	A
2813	2852100000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8	A
2814	2852903000	소호 제3501.90호의 카세인산염과 그 밖의 카세인 유도체의 것(커피크리머 제조용은 제외한다)	20	B
2815	2852909000	기타	8	A
2816	2853100000	시아노겐 클로라이드(클로르시안)	5.5	A
2817	2853901000	증류수, 전도도수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	5.5	A
2818	2853902000	인화물(燐化物)(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인철은 제외한다)	5.5	A
2819	2853909000	기타	5.5	A
2820	2901101000	부탄	0	A
2821	2901102000	헥산	0	A
2822	2901103000	헵탄	0	A
2823	2901109000	기타	0	A
2824	2901210000	에틸렌	0	A
2825	2901220000	프로펜(프로필렌)	0	A
2826	2901230000	부텐(부틸렌)과 이들의 이성체	0	A
2827	2901241000	1,3-부타디엔	0	A
2828	2901242000	이소프렌	0	A
2829	2901291000	헥센	0	A
2830	2901292000	옥텐	0	A
2831	2901299000	기타	0	A
2832	2902110000	시클로헥산	5	X
2833	2902191000	에틸리덴 노르보넨	5	A
2834	2902199000	기타	5	A
2835	2902200000	벤젠	3	X
2836	2902300000	톨루엔	3	X
2837	2902410000	오르토-크실렌	5	A
2838	2902420000	메타-크실렌	5	A
2839	2902430000	파라-크실렌	3	X

2840	2902440000	혼합크실렌이성체	3	A
2841	2902500000	스티렌	0	A
2842	2902600000	에틸벤젠	5	A
2843	2902700000	큐멘	3	A
2844	2902901000	나프탈렌	0	A
2845	2902902000	메틸나프탈렌	0	A
2846	2902903000	메틸스티렌	0	A
2847	2902909000	기타	0	A
2848	2903111000	염화메탄(염화메틸)	5.5	A
2849	2903112000	염화에탄(염화에틸)	5.5	A
2850	2903120000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5.5	A
2851	2903130000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5.5	A
2852	2903140000	사염화탄소	5.5	A
2853	2903150000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5	X
2854	2903190000	기타	5.5	A
2855	2903210000	염화비닐(염화에틸렌)	5.5	X
2856	2903220000	삼염화에틸렌	5.5	A
2857	2903230000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5.5	A
2858	2903290000	기타	5.5	A
2859	2903410000	트리플루오로메탄(HFC-23)	5.5	A
2860	2903420000	디플루오로메탄(HFC-32)	5.5	A
2861	2903430000	플루오로메탄(HFC-41), 1,2-디플루오로에탄(HFC-152)과 1,1-디플루오르에탄(HFC-152a)	5.5	A
2862	2903440000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 1,1,1-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a)과 1,1,2-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	5.5	A
2863	2903450000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과 1,1,2,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	5.5	A
2864	2903460000	1,1,1,2,3,3,3-헵타플루오로프로판(HFC-227ea), 1,1,1,2,2,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cb), 1,1,1,2,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ea)과 1,1,1,3,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fa)	5.5	A
2865	2903470000	1,1,1,3,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fa)과 1,1,2,2,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ca)	5.5	A
2866	2903480000	1,1,1,3,3-펜타플루오로부탄(HFC-365mfc)과 1,1,1,2,2,3,4,5,5,5-데카플루오로펜탄(HFC-43-10mee)	5.5	A
2867	2903491000	헥사플루오로에탄(CFC-116)	5.5	A
2868	2903499000	기타	5.5	A
2869	2903510000	2,3,3,3-테트라플루오르프로펜(HFO-1234yf), 1,3,3,3-테트라플루오르프로펜(HFO-1234ze)과 (Z)-1,1,1,4,4,4-헥사플루오르-2-부텐(HFO-1336mzz)	5.5	A
2870	2903590000	기타	5.5	A
2871	2903610000	브롬화메틸(브로모메탄)	5.5	A
2872	2903620000	에틸렌 디브로마이드(ISO)(1,2-디브로모에탄)	5.5	A
2873	2903690000	기타	5.5	A
2874	2903710000	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CFC-22)	5.5	A
2875	2903720000	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HCFC-123)	5.5	A
2876	2903730000	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41, 141b)	5.5	A
2877	2903740000	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42, 142b)	5.5	A
2878	2903750000	디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HCFC-225, 225ca, 225cb)	5.5	A
2879	29037600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alon-1211), 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Halon-1301),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Halon-2402)	5.5	A
2880	2903770000	기타(불소와 염소만으로 퍼할로겐화한 것)	5.5	A

2881	2903780000	그 밖의 퍼할로겐화유도체	5.5	A
2882	2903790000	기타	5.5	A
2883	29038100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한다]	5.5	A
2884	2903820000	앨드린(ISO), 클로르덴(ISO), 헵타클로르(ISO)	5.5	A
2885	2903830000	미렉스(ISO)	5.5	A
2886	2903890000	기타	5.5	A
2887	2903910000	클로로벤젠, 오르토-디클로로벤젠, 파라-디클로로벤젠	5.5	A
2888	2903920000	헥사클로로벤젠(ISO)과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5.5	A
2889	2903930000	펜타클로로벤젠(ISO)	5.5	A
2890	2903940000	헥사브로모비페닐	5.5	A
2891	2903992000	트리클로로벤젠	5.5	A
2892	2903999000	기타	5.5	A
2893	2904100000	술폰화유도체와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	5.5	A
2894	2904201000	니트로톨루엔	5.5	A
2895	2904209010	니트로벤젠	5.5	A
2896	2904209090	기타	5.5	A
2897	2904310000	과불화옥탄술폰산	5.5	A
2898	2904320000	과불화옥탄술폰산 암모늄	5.5	A
2899	2904330000	과불화옥탄술폰산 리튬	5.5	A
2900	2904340000	과불화옥탄술폰산 칼륨	5.5	A
2901	2904350000	그 밖의 과불화옥탄술폰산의 염	5.5	A
2902	2904360000	과불화옥탄술포닐플루오라이드	5.5	A
2903	2904910000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클로로피크린)	5.5	A
2904	2904990000	기타	5.5	A
2905	2905110000	메탄올(메틸알코올)	2	A
2906	2905121000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	5.5	A
2907	2905122010	반도체 제조용	5.5	X
2908	2905122090	기타	5.5	X
2909	2905130000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5	X
2910	2905140000	그 밖의 부탄올	5.5	X
2911	2905161000	2-에틸헥실알코올	5.5	X
2912	2905169000	기타	5.5	A
2913	2905171000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5.5	A
2914	2905172000	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5.5	A
2915	2905173000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5.5	A
2916	2905191000	헵틸알코올	5.5	A
2917	2905192000	노닐알코올	5.5	A
2918	2905193000	이소노닐알코올	3	A
2919	2905194000	펜탄올(아밀알코올)과 그 이성체	5.5	A
2920	2905199010	3,3-디메틸부탄-2-올(피나코릴 알코올)	5	A
2921	2905199020	2-프로필 헵틸 알코올	5	A
2922	2905199030	이소데실 알코올	3	A
2923	2905199090	기타	5	A
2924	2905221000	게라니올・시트로네롤・리날롤・로디놀・네롤	5	A
2925	2905229000	기타	5	A
2926	2905290000	기타	5	A
2927	29053100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3	X
2928	2905320000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5.5	B
2929	2905391000	1,4-부탄디올	5.5	C

2930	2905392000	네오펜틸 글리콜	5.5	C
2931	2905399000	기타	5.5	A
2932	2905410000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5.5	A
2933	2905420000	펜타에리트리톨	5.5	A
2934	2905430000	만니톨	8	C
2935	2905440000	디-글루시톨(소르비톨)	8	A
2936	2905450000	글리세롤	8	A
2937	2905490000	기타	5.5	A
2938	2905510000	에스클로비놀(INN)	5.5	A
2939	2905590000	기타	5.5	A
2940	2906110000	멘톨	5.5	A
2941	2906120000	시클로헥산올・메틸시클로헥산올・디메틸시클로헥산올	5.5	A
2942	2906131000	스테롤	5.5	A
2943	2906132000	이노시톨	5.5	A
2944	2906191000	보르네올	5.5	A
2945	2906192000	테르피네올	5.5	A
2946	2906199000	기타	5.5	A
2947	2906210000	벤질알코올	5.5	A
2948	2906290000	기타	5.5	A
2949	2907111000	페놀	5.5	X
2950	2907112000	페놀의 염	5.5	A
2951	2907121000	크레졸	5.5	A
2952	2907122000	크레졸의 염	5.5	A
2953	2907131000	옥틸페놀	5.5	A
2954	2907132000	노닐페놀	5	A
2955	2907139000	기타	5.5	A
2956	2907151000	나프톨	5.5	A
2957	2907152000	나프톨의 염	5.5	A
2958	2907191000	티몰	5.5	A
2959	2907192000	크실레놀과 이들의 염	5.5	A
2960	2907199000	기타	5.5	A
2961	2907211000	레조르시놀	5.5	A
2962	2907212000	레조르시놀의 염	5.5	A
2963	2907221000	히드로퀴논	5.5	A
2964	2907222000	히드로퀴논의 염	5.5	A
2965	2907231000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5.5	X
2966	2907232000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의 염	5.5	A
2967	2907291000	카테콜	5.5	A
2968	2907299000	기타	5.5	A
2969	2908110000	펜타클로로페놀(ISO)	5	A
2970	2908191000	클로로페놀(펜타클로로페놀은 제외한다)	5	A
2971	2908192000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에이	5	A
2972	2908193000	트리브로모페놀	5	A
2973	2908199000	기타	5	A
2974	2908910000	디노셉(ISO)과 그 염	5.5	A
2975	2908920000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NOC(ISO)]과 그 염	5.5	A
2976	2908990000	기타	5.5	A
2977	2909110000	디에틸에테르	5.5	A
2978	2909191000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5.5	A
2979	2909192000	메틸터샤리 부틸에테르	5.5	X

2980	2909199000	기타	5.5	X
2981	290920000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5.5	A
2982	2909301000	아니솔	5.5	A
2983	2909302000	아네톨	5.5	A
2984	2909303000	디페닐 에테르	5.5	A
2985	2909304000	앰브렛 머스크	5.5	A
2986	2909305000	데카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	5.5	A
2987	29093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88	2909309090	기타	5.5	A
2989	2909410000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5.5	X
2990	2909430000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5.5	X
2991	2909441000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메틸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메틸에테르	5.5	A
2992	2909449000	기타	5.5	A
2993	2909491000	트리에틸렌 글리콜	5.5	X
2994	2909499000	기타	5.5	A
2995	2909500000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5.5	A
2996	2909601000	과산화알코올	5.5	A
2997	2909602000	디쿠밀퍼록사이드	5.5	A
2998	2909603000	메틸에틸케톤퍼록사이드	5.5	A
2999	2909604000	과산화아세탈과 과산화헤미아세탈	5.5	A
3000	2909609000	기타	5.5	A
3001	2910100000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5	A
3002	2910200000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5.5	X
3003	2910300000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5.5	X
3004	2910400000	디엘드린(ISO, INN)	5.5	A
3005	2910500000	엔드린(ISO)	5.5	A
3006	2910900000	기타	5.5	A
3007	2911000000	아세탈・헤미아세탈(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5.5	A
3008	2912110000	메탄알(포름알데히드)	5.5	A
3009	2912120000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5.5	A
3010	2912193000	부탄알(부티르알데히드, 노르말-이성체)	5.5	A
3011	2912199000	기타	5.5	A
3012	2912210000	벤즈알데히드	5.5	A
3013	2912290000	기타	5.5	A
3014	2912410000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5	A
3015	2912420000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5.5	A
3016	2912490000	기타	5.5	A
3017	2912500000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5.5	A
3018	2912600000	파라포름알데히드	5.5	X
3019	2913000000	제2912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5.5	A
3020	2914110000	아세톤	5.5	X
3021	2914120000	부탄온(메틸에틸케톤)	3	A
3022	2914130000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5.5	C

3023	2914190000	기타	5.5	A
3024	2914221000	시클로헥사논	5	A
3025	2914222000	메틸시클로헥사논	5	A
3026	2914231000	이오논	5	A
3027	2914232000	메틸이오논	5	A
3028	2914291000	자스몬	5	A
3029	2914299000	기타	5	A
3030	2914310000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5.5	A
3031	2914390000	기타	5.5	A
3032	2914401000	디아세톤 알코올(4-히드록시-4-메틸펜탄-2-온)	5.5	A
3033	2914409000	기타	5.5	A
3034	2914501000	케톤-페놀	5.5	A
3035	2914509000	기타	5.5	A
3036	2914610000	안트라퀴논	5.5	A
3037	2914620000	코엔자임 Q10[유비데카레논(INN)]	5.5	A
3038	2914691000	안트라퀴논의 유도체	5.5	A
3039	2914699000	기타	5.5	A
3040	2914710000	클로르데콘(ISO)	5	A
3041	29147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042	2914799000	기타	5	A
3043	2915110000	포름산	5.5	A
3044	2915121000	포름산 칼슘	5.5	A
3045	2915129000	기타	5.5	A
3046	2915130000	포름산의 에스테르	5.5	A
3047	2915210000	초산	5.5	X
3048	2915240000	무수(無水)초산	5.5	A
3049	2915291000	초산칼슘	5.5	A
3050	2915292000	초산나트륨	5.5	A
3051	2915293000	초산코발트	5.5	A
3052	2915299000	기타	5.5	A
3053	2915310000	초산에틸	5.5	X
3054	2915320000	초산비닐	5.5	X
3055	2915331000	반도체 제조용	5.5	A
3056	2915339000	기타	5.5	A
3057	2915360000	초산디노셉(ISO)	5.5	A
3058	2915391000	초산아밀	5.5	A
3059	2915392000	초산이소아밀	5.5	A
3060	2915393000	초산메틸	5.5	A
3061	2915394000	초산이소부틸	5.5	A
3062	2915395000	초산2-에톡시에틸	5.5	A
3063	2915399000	기타	5.5	A
3064	2915401000	모노클로로 아세트산	5.5	A
3065	2915409000	기타	5.5	A
3066	2915500000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	5.5	A
3067	2915600000	부탄산・펜탄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5.5	A
3068	2915701000	팔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5.5	A
3069	2915702010	스테아르산	5.5	B
3070	2915702020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5.5	B
3071	2915702030	스테아르산 연	5.5	B
3072	2915702040	스테아르산 아연	5.5	A

3073	2915702050	스테아르산 바륨	5.5	B
3074	2915702060	스테아르산 카드뮴	5.5	A
3075	2915702070	스테아르산 칼슘	5.5	B
3076	2915702080	스테아르산 부틸	5.5	B
3077	2915702090	기타	5.5	A
3078	2915901000	네오데카노일 클로라이드와 피발로일클로라이드	5.5	A
3079	2915909010	2-에틸헥소산	5.5	A
3080	2915909020	2-에틸헥실클로로포르메이트	5.5	A
3081	2915909090	기타	5.5	B
3082	2916111000	아크릴산	6.5	X
3083	2916119000	기타	6.5	C
3084	2916121000	아크릴산에틸	6.5	X
3085	2916122000	아크릴산메틸	6.5	X
3086	2916123000	아크릴산부틸	6.5	X
3087	2916124000	아크릴산 2-에틸헥실	6.5	X
3088	2916129000	기타	6.5	A
3089	2916131000	메타아크릴산	6.5	X
3090	2916139000	기타	6.5	A
3091	2916141000	메타아크릴산메틸	6.5	X
3092	2916149000	기타	6.5	X
3093	2916151000	올레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B
3094	2916152000	리놀레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A
3095	2916153000	리놀렌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A
3096	2916160000	비나파크릴(ISO)	6.5	B
3097	2916190000	기타	6.5	B
3098	2916203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099	2916209000	기타	6.5	A
3100	2916311000	벤조산	6.5	A
3101	2916312000	벤조산나트륨	6.5	A
3102	2916313000	벤조산벤질	6.5	A
3103	291631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B
3104	2916319090	기타	6.5	B
3105	2916321000	과산화벤조일	6.5	A
3106	2916322000	염화벤조일	6.5	A
3107	2916340000	페닐아세트산과 그 염	6.5	A
3108	2916391000	계피산	6.5	A
3109	29163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B
3110	2916399090	기타	6.5	A
3111	2917111000	옥살산	6.5	A
3112	2917112000	옥살산의 염	6.5	A
3113	2917113000	옥살산의 에스테르	6.5	A
3114	2917121000	아디프산	6.5	A
3115	2917122000	아디프산의 염	6.5	A
3116	2917123010	아디프산 디옥틸	6.5	A
3117	2917123090	기타	6.5	A
3118	2917131000	아젤라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A
3119	2917132000	세바스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A
3120	2917140000	무수말레산	6.5	C

3121	2917192000	숙신산	6.5	A
3122	2917193000	숙신산 나트륨	6.5	A
3123	2917199000	기타	6.5	A
3124	291720000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6.5	A
3125	2917321000	오르토프탈산 디-2-에틸헥실	6.5	B
3126	2917329000	기타	6.5	A
3127	2917331000	오르토프탈산디노닐	6.5	A
3128	2917332000	오르토프탈산디데실	6.5	A
3129	2917341000	오르토프탈산 디헵틸	6.5	A
3130	2917342000	오르토프탈산 디이소데실	6.5	A
3131	2917343000	오르토프탈산 디부틸	6.5	A
3132	2917349000	기타	6.5	A
3133	2917350000	무수프탈산	6.5	A
3134	2917361000	테레프탈산	3	X
3135	2917369000	기타	6.5	A
3136	2917370000	테레프탈산디메틸	6.5	X
3137	2917391000	이소프탈산	6.5	A
3138	2917392000	트리옥틸트리메리테이트(T.O.T.M)	6.5	A
3139	2917393000	무수트리멜리트산	6.5	A
3140	2917399000	기타	6.5	A
3141	2918111000	락트산	6.5	A
3142	2918112000	락트산의 염	6.5	A
3143	2918113000	락트산의 에스테르	6.5	A
3144	2918120000	타르타르산	6.5	B
3145	2918131000	타르타르산의 염	6.5	A
3146	2918132000	타르타르산의 에스테르	6.5	A
3147	2918140000	시트르산	6.5	A
3148	2918151000	시트르산의 염		
		- 구연산칼슘	6.5	A
		- 기타	6.5	B
3149	2918152000	시트르산의 에스테르	6.5	A
3150	2918161000	글루콘산	6.5	A
3151	2918162000	글루콘산의 염	6.5	A
3152	2918163000	글루콘산의 에스테르	6.5	A
3153	2918170000	2,2-디페닐-2-하이드록시아세트산(벤질산)	6.5	A
3154	2918180000	클로로벤질레이트(ISO)	6.5	B
3155	2918191010	말산	6.5	A
3156	2918191090	기타	6.5	A
3157	2918192000	그 밖의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의 염	6.5	A
3158	2918193000	그 밖의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의 에스테르	6.5	A
3159	2918199000	기타	6.5	B
3160	2918210000	살리실산과 그 염		
		- 살리실산	6.5	A
		- 살리실산 나트륨	6.5	A
		- 기타	6.5	B
3161	29182200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A
3162	2918231000	그 밖의 살리실산의 에스테르	6.5	A
3163	2918232000	그 밖의 살리실산에스테르의 염	6.5	A
3164	2918291000	베타옥시나프토산과 그 염	6.5	A

3165	2918299010	갈산	6.5	A
3166	2918299030	파라히드록시 벤조산	6.5	A
3167	2918299090	기타	6.5	A
3168	291830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169	2918309000	기타	6.5	A
3170	2918910000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A
3171	29189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172	2918999000	기타	6.5	A
3173	291910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6.5	B
3174	2919901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175	2919901090	기타		
		- 디메틸 디클로로비닐 포스페이트(D.D.V.P)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외한다.	6.5	A
		- 글리세로인산	6.5	A
		- 기타	6.5	B
3176	2919902000	인산에스테르의 염	6.5	A
3177	2919909000	기타	6.5	B
3178	292011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179	2920119000	기타	6.5	A
3180	29201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181	2920199000	기타	6.5	A
3182	2920210000	디메틸 포스파이트	6.5	A
3183	2920220000	디에틸 포스파이트	6.5	A
3184	2920230000	트리메틸 포스파이트	6.5	A
3185	2920240000	트리에틸 포스파이트	6.5	A
3186	2920290000	기타	6.5	C
3187	292030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B
3188	2920309000	기타	6.5	C
3189	2920904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190	2920909110	황산디메틸	6.5	A
3191	2920909190	기타	6.5	A
3192	2920909200	탄산에스테르의 것	6.5	A
3193	2920909900	기타		
		- 아질산에스테르와 질산에스테르의 것	6.5	A
		- 기타	6.5	C
3194	2921111010	메틸아민	6.5	A
3195	2921111020	메틸아민의 염	6.5	A
3196	2921112010	디메틸아민	6.5	A
3197	2921112020	디메틸아민의 염	6.5	A
3198	2921113010	트리메틸아민	6.5	A
3199	2921113020	트리메틸아민의 염	6.5	C
3200	2921120000	2-(엔,엔-디메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6.5	A
3201	2921130000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6.5	C

3202	2921140000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6.5	C
3203	2921192000	디에틸아민과 그 염	6.5	A
3204	2921199010	디메틸라우릴아민	6.5	A
3205	2921199090	기타	6.5	A
3206	2921211000	에틸렌디아민	6.5	X
3207	2921212000	에틸렌디아민의 염	6.5	A
3208	2921221000	헥사메틸렌디아민	6.5	A
3209	2921222000	헥사메틸렌디아민아디페이트	6.5	A
3210	2921229000	기타	6.5	A
3211	2921291000	디에틸렌 트리아민	5	A
3212	2921292000	트리에틸렌 테트라아민	5	A
3213	2921299000	기타	5	A
3214	2921301000	시클로 헥실아민	6.5	A
3215	2921309000	기타	6.5	A
3216	2921411000	아닐린	6.5	A
3217	2921412000	아닐린의 염	6.5	A
3218	2921423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219	2921429020	아닐린의 니트로할로겐화 유도체	6.5	A
3220	2921429090	기타	6.5	A
3221	2921434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222	2921435000	파라-톨루이딘-메타-술폰산과 그 염	6.5	A
3223	2921436000	2-클로로-파라-톨루이딘-5-술폰산과 그 염	6.5	A
3224	2921437000	3-아미노-6-클로로톨루엔-4-술폰산과 그 염	6.5	A
3225	2921439010	톨루이딘	6.5	A
3226	2921439090	기타	6.5	A
3227	2921441000	디페닐아민	6.5	A
3228	2921449000	기타	6.5	A
3229	2921451000	1-나프틸아민-4-술폰산과 그 염	6.5	A
3230	2921459010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6.5	A
3231	2921459020	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6.5	A
3232	2921459030	2-나프틸아민-3,6,8-트리술폰산과 그 염	5	A
3233	2921459090	기타	6.5	A
3234	2921460000	암페타민(INN)·벤즈페타민(INN)·덱스암페타민(INN)·에틸암페타민(INN)·펜캄파민(INN)·레페타민(INN)·레브암페타민(INN)·메페노렉스(INN)·펜터민(INN), 이들의 염	6.5	A
3235	29214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236	2921499000	기타	6.5	A
3237	2921511000	엔-페닐-엔-이소프로필 파라-페닐렌디아민	6.5	A
3238	2921512000	엔-(1,3-디메틸 부틸)-엔-페닐-파라-페닐렌디아민	6.5	A
3239	2921519010	오르토-페닐렌 디아민	6.5	A
3240	2921519020	메타-페닐렌 디아민	6.5	A
3241	2921519030	파라-페닐렌 디아민	6.5	A
3242	2921519040	디아미노톨루엔	6.5	A
3243	2921519090	기타	6.5	A
3244	2921592000	4,4′디아미노스틸벤-2,2′-디술폰산과 그 염	6.5	A
3245	2921599000	기타	6.5	A
3246	2922111000	모노에탄올아민	6.5	A

3247	2922112000	모노에탄올아민의 염	6.5	A
3248	2922121000	디에탄올아민	6.5	A
3249	2922122000	디에탄올아민의 염	6.5	A
3250	2922140000	덱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6.5	A
3251	2922150000	트리에탄올아민	3	A
3252	292216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에탄올암모늄	6.5	A
3253	2922171000	메틸디에탄올아민	6.5	A
3254	2922172000	에틸디에탄올아민	6.5	A
3255	2922180000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탄올	6.5	A
3256	292219300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2-아미노에탄올과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	6.5	A
3257	2922199000	기타	6.5	A
3258	2922211000	7-아미노-1-나프톨-3-술폰산(감마 에시드)과 그 염	6.5	A
3259	2922212000	8-아미노-1-나프톨-3, 6-디술폰산(에이치 에시드)과 그 염	3	A
3260	2922213000	2-아미노-5-나프톨-7-디술폰산(제이 에시드)과 그 염	6.5	A
3261	2922219000	기타	6.5	A
3262	2922292000	메타-아미노페놀	6.5	A
3263	2922293000	페네티딘과 이들의 염	6.5	A
3264	2922299000	기타	6.5	A
3265	2922310000	암페프라몬(INN)·메타돈(INN)·노르메타돈(INN)과 이들의 염	6.5	A
3266	2922393000	아미노 안트라퀴논의 유도체	6.5	A
3267	2922399000	기타		
		- 아미노 안트라퀴논과 이들의 염	6.5	A
		- 기타	6.5	B
3268	2922411000	리신	6.5	A
3269	2922412000	리신의 에스테르	6.5	B
3270	2922413000	리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	6.5	B
3271	2922421000	글루탐산	5	A
3272	2922422000	글루탐산 나트륨	6.5	A
3273	2922423000	그 밖의 글루탐산의 염	6.5	A
3274	2922430000	안트라닐산과 그 염	6.5	A
3275	2922440000	틸리딘(INN)과 그 염	6.5	A
3276	2922491000	글리신	6.5	B
3277	2922492000	알라닌	6.5	A
3278	2922493000	류우신	6.5	A
3279	2922494000	바린	6.5	A
3280	2922497000	에틸파라아미노 벤조에이트	6.5	A
3281	2922499000	기타	6.5	A
3282	2922505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283	2922506000	세린	6.5	A
3284	2922509000	기타	6.5	A
3285	2923101000	콜린	6.5	A
3286	2923102000	콜린의 염	6.5	A
3287	2923201000	레시틴	6.5	A
3288	2923202000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6.5	A
3289	292330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 테트라에틸암모늄	6.5	B
3290	292340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데실디메틸암모늄	6.5	B
3291	2923900000	기타	6.5	B
3292	2924110000	메프로바메이트(INN)	6.5	B

3293	2924120000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모노크로토포스(ISO), 포스파미돈(ISO)	6.5	A
3294	2924191000	디메틸포름아미드	6.5	A
3295	2924192000	디메틸아세트아미드	6.5	A
3296	29241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297	2924199090	기타	6.5	A
3298	292421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B
3299	2924219000	기타	6.5	B
3300	2924230000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 안트라닐산)과 그 염	6.5	A
3301	2924240000	에치나메이트(INN)	6.5	A
3302	292425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B
3303	2924259000	기타	6.5	B
3304	2924291010	아미노아세트아닐리드와 그 유도체	6.5	A
3305	2924291020	아세트아미노펜	6.5	B
3306	2924291090	기타	6.5	A
3307	2924292000	아세토아세트아닐리드와 그 유도체	5	A
3308	2924299010	염산리도카인	6.5	A
3309	2924299020	이오프로마이드, 이오파미돌, 이오메프롤, 이오헥솔, 이오버솔, 이오딕산올	0	A
3310	2924299092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B
3311	2924299099	기타	6.5	B
3312	2925111000	사카린	6.5	A
3313	2925112000	사카린의 염	6.5	A
3314	2925120000	구루테치미드(INN)	6.5	A
3315	2925191000	프탈이미드	6.5	A
3316	29251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317	2925199090	기타	6.5	A
3318	2925210000	클로르디메포름(ISO)	6.5	A
3319	2925291000	디페닐구아니딘	6.5	A
3320	29252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321	2925299090	기타	6.5	A
3322	2926100000	아크릴로니트릴	6.5	X
3323	2926200000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6.5	A
3324	2926300000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메사돈(INN) 제조중간체(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6.5	A
3325	2926400000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	6.5	B
3326	2926903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B
3327	2926904000	아세토니트릴	6.5	A
3328	2926909000	기타		
		- 1,4-디아미노-2,3-디시아노안트라퀴논	6.5	A
		- 말로노니트릴	6.5	A
		- 기타	6.5	B
3329	2927001100	6-니트로-1-디아조-2-나프톨-4-술폰산	6.5	A
3330	2927001900	기타	6.5	A
3331	2927002100	아조디카본아미드	6.5	A
3332	2927002910	아조이소부티로니트릴	6.5	A

3333	2927002990	기타	6.5	A
3334	2927003000	아족시화합물	6.5	A
3335	2928002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336	2928003000	메틸에틸 케토옥심	6.5	A
3337	2928009000	기타	6.5	A
3338	2929101000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6.5	A
3339	2929102000	디페닐메탄 디이소시아네이트	6.5	A
3340	2929109000	기타	6.5	A
3341	2929900000	기타	6.5	A
3342	2930100000	2-(엔,엔-디메틸아미노) 에탄티올	6.5	A
3343	2930201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344	2930201090	기타	6.5	A
3345	2930202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346	2930202090	기타	6.5	A
3347	2930301000	티우람모노술파이드	6.5	A
3348	2930302000	티우람디술파이드	6.5	A
3349	2930303000	티우람테트라술파이드	6.5	A
3350	2930400000	메티오닌	6.5	A
3351	2930600000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탄티올	6.5	A
3352	2930700000	비스(2-하이드록시에틸)술파이드[티오디글리콜(INN)]	6.5	B
3353	2930800000	알디카브(ISO), 캡타폴(ISO) 및 메타미도포스(ISO)	6.5	A
3354	2930902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티오아미드(티오우레아, 티오카르바닐리드를 제외한다)	2	B
		- 기타	2	A
3355	2930905030	티오우레아	6.5	A
3356	2930905080	기타		
		- 티오카르바닐리드	6.5	A
		- 기타	6.5	B
3357	2930906010	티오알코올	6.5	A
3358	2930906090	기타	6.5	A
3359	2930907020	티오아닐린	6.5	A
3360	2930907090	기타	6.5	A
3361	2930909010	티오산	6.5	A
3362	2930909030	시스테인	6.5	B
3363	2930909050	글루타티온	6.5	B
3364	2930909090	기타	6.5	A
3365	2931100000	테트라메틸납, 테트라에틸납	6.5	A
3366	2931200000	트리부틸틴 화합물	6.5	A
3367	2931410000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6.5	A
3368	2931420000	디메틸 프로필포스포네이트	6.5	A
3369	2931430000	디에틸 에틸포스포네이트	6.5	A
3370	2931440000	메틸포스폰산	6.5	A
3371	2931450000	메틸포스폰산과 (아미노이미노메틸)우레아의 염(1 : 1)	6.5	A
3372	2931460000	2,4,6-트리프로필-1,3,5,2,4,6-트리옥사트리포스피난-2,4,6-트리옥사이드	6.5	A
3373	2931470000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 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6.5	A

3374	2931480000	3,9-디메틸-2,4,8,10-테트라옥사-3,9-디포스파스피로[5.5] 운데칸 3,9-디옥사이드	6.5	A
3375	2931490000	기타	6.5	A
3376	2931510000	메틸포스포닉 디클로라이드	6.5	A
3377	2931520000	프로필포스포닉 디클로라이드	6.5	A
3378	2931530000	오-(3-클로로프로필) 오-[4-니트로-3-(트리플루오르메틸)페닐] 메틸포스포노티오네이트	6.5	A
3379	2931540000	트리클로르폰(ISO)	6.5	A
3380	2931590000	기타	6.5	A
3381	293190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382	2931902000	유기-비소 화합물	6.5	A
3383	2931903000	유기-인 화합물	6.5	A
3384	2931904000	불소 화합물	6.5	A
3385	2931905000	염소화합물	6.5	A
3386	2931909010	디부틸 틴 옥사이드	6.5	A
3387	2931909020	디에틸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6.5	A
3388	2931909090	기타	6.5	A
3389	2932110000	테트라히드로푸란	6.5	A
3390	2932120000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6.5	A
3391	2932131000	푸르푸릴 알코올	6.5	A
3392	2932132000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 알코올	6.5	A
3393	2932140000	수크랄로스	6.5	A
3394	29321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395	2932199000	기타	6.5	A
3396	2932201010	쿠마린	5	A
3397	2932201020	메틸쿠마린	5	A
3398	2932201030	에틸쿠마린	5	A
3399	2932209010	노나락톤	5	A
3400	2932209020	운데카락톤	5	A
3401	2932209030	부티로락톤	5	A
3402	2932209040	산토닌	5	A
3403	2932209050	페놀프탈레인	5	A
3404	2932209060	글루쿠로노락톤	5	A
3405	2932209070	탈수소초산과 그 염	5	A
3406	2932209080	아세틸케텐(디케텐)	5	A
3407	29322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408	2932209099	기타	5	A
3409	2932910000	이소사프롤	6.5	A
3410	2932920000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6.5	A
3411	2932930000	피페로날	6.5	A
3412	2932940000	사프롤	6.5	A
3413	2932950000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6.5	A
3414	2932960000	카보퓨란(ISO)	6.5	A
3415	2932991000	디옥산	6.5	A
3416	2932992000	벤조푸란(쿠마론)	6.5	A
3417	29329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418	2932999090	기타	6.5	A

3419	2933112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420	2933119000	기타	6.5	A
3421	2933192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B
3422	2933193000	피라조론과 그 유도체	6.5	A
3423	2933199000	기타		
		- 페닐부타존	6.5	A
		- 피라졸레이트	6.5	A
		- 기타	6.5	B
3424	2933211000	히단토인	6.5	A
3425	2933212000	히단토인의 유도체	6.5	A
3426	2933291000	리시딘	6.5	A
3427	29332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B
3428	2933299090	기타	6.5	B
3429	2933311000	피리딘	6.5	A
3430	2933312000	피리딘의 염	6.5	A
3431	2933321000	피페리딘	6.5	B
3432	2933329000	피페리딘의 염	6.5	A
3433	2933330000	알펜타닐(INN)·아닐레리딘(INN)·베지트라마이드(INN)·브로마제팜(INN)·카펜타닐(INN)·디페녹신(INN)·디펜옥실레이트(INN)·디피파논(INN)·펜타닐(INN)·케토베미돈(INN)·메틸페니데이트(INN)·펜타조신(INN)·페치딘(INN)·페치딘(INN) 제조중간체 에이·펜사이클리딘(INN)(PCP)·페노페리딘(INN)·피프라드롤(INN)·피리트라미드(INN)·프로피람(INN)·레미펜타닐(INN)·트리메페리딘(INN)과 이들의 염	6.5	A
3434	2933340000	그 밖의 펜타닐과 그 유도체	6.5	A
3435	2933350000	3-퀴뉴클리디놀	6.5	A
3436	2933360000	4-아닐리노-N-펜에틸피페리딘(ANPP)	6.5	A
3437	2933370000	엔-펜에틸-4-피페리돈(NPP)	6.5	A
3438	2933392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439	2933393000	3-하이드록시-1-메틸피페리딘	6.5	A
3440	2933399000	기타	6.5	A
3441	2933410000	레보파놀(INN)과 그 염	6.5	A
3442	2933491000	피비니움파모에이트	6.5	A
3443	29334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444	2933499090	기타	6.5	A
3445	2933520000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6.5	A
3446	2933530000	아로바르비탈(INN)·아모바르비탈(INN)·바르비탈(INN)·부탈비탈(INN)·부토바르비탈(INN)·싸이클로바르비탈(INN)·메틸페노바르비탈(INN)·펜토바르비탈(INN)·페노바르비탈(INN)·섹부타바르비탈(INN)·세코바르비탈(INN)·비닐비탈(INN)과 이들의 염	6.5	B
3447	2933540000	그 밖의 말로닐우레아 유도체(바르비투르산)와 이들의 염	6.5	A
3448	2933550000	로프라졸람(INN)·메크로콰론(INN)·메타콰론(INN)·지페프롤(INN)과 이들의 염	6.5	A
3449	29335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450	2933592000	피리미딘, 그 염과 그 밖의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6.5	A

3451	2933593000	피페라진, 그 염과 그 밖의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6.5	A
3452	2933610000	멜라민	6.5	A
3453	2933691000	염화시아눌	3	A
3454	2933692000	헥사메틸렌테트라민	6.5	C
3455	2933699010	트리메틸렌 트리니트라민	6.5	A
3456	293369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457	2933699099	기타	6.5	A
3458	2933710000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3	X
3459	2933720000	클로바잠(INN)과 메치푸리론(INN)	6.5	A
3460	2933793000	1-비닐-2-피롤리돈	6.5	A
3461	2933799000	기타		
		- 이사틴	6.5	A
		- 2- 히드록시퀴놀린	6.5	A
		- 기타	6.5	B
3462	2933910000	알프라졸람(INN)·카마제팜(INN)·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클로나제팜(INN)·클로라제페이트·델로라제팜(INN)·디아제팜(INN)·에스타졸람(INN)·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플르디아제팜(INN)·플루니트라제팜(INN)·플루라제팜(INN)·할라제팜(INN)·로라제팜(INN)·로르메타제팜(INN)·마진돌(INN)·메다제팜(INN)·미다졸람(INN)·니메타제팜(INN)·니트라제팜(INN)·놀다제팜(INN)·옥사제팜(INN)·피나제팜(INN)·프라제팜(INN)·피로발레톤(INN)·테마제팜(INN)·테트라제팜(INN)·트리아졸람(INN)과 이들의 염	6.5	B
3463	293392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464	2933929000	기타	6.5	A
3465	2933991000	인돌과 그 유도체	6.5	B
3466	29339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467	2933999090	기타	6.5	A
3468	2934101000	아미노티아졸과 그 유도체	6.5	A
3469	29341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470	2934109090	기타	6.5	A
3471	2934204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472	2934205000	머캐프토 벤조티아졸	6.5	A
3473	2934206000	디벤조티아졸린 디술파이드	6.5	A
3474	2934209000	기타	6.5	A
3475	2934301000	페노티아진(티오디페닐아민)	6.5	A
3476	2934309000	기타	6.5	A
3477	2934910000	아미노렉스(INN)·브로티졸람(INN)·클로티아제팜(INN)·클록사졸람(INN)·덱스트로모라마이드(INN)·할록사졸람(INN)·케타졸람(INN)·메소카브(INN)·옥사졸람(INN)·페몰린(INN)·펜디메트라진(INN)·펜메트라진(INN)·서펜타닐(INN)과 이들의 염	6.5	A
3478	2934920000	그 밖의 펜타닐과 그 유도체	6.5	A
3479	2934994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480	2934995000	모르포린	6.5	A
3481	2934996000	핵산, 이들의 염과 유도체	6.5	A
3482	2934997000	7-아미노세팔로스포린산	6.5	A

3483	2934999000	기타	6.5	A
3484	2935100000	엔-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6.5	A
3485	2935200000	엔-에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6.5	A
3486	2935300000	엔-에틸-엔-(2-히드록시에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6.5	A
3487	2935400000	엔-(2-히드록시에틸)-엔-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6.5	A
3488	2935500000	그 밖의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6.5	A
3489	2935904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B
3490	2935905000	그 밖의 파라아미노벤젠 술폰아미드의 유도체	6.5	A
3491	2935909000	기타	6.5	A
3492	2936210000	비타민 A와 이들의 유도체	6.5	B
3493	2936220000	비타민 B1과 이들의 유도체	6.5	B
3494	2936230000	비타민 B2와 이들의 유도체	6.5	A
3495	2936240000	디-판토텐산이나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5)과 이들의 유도체	6.5	A
3496	2936250000	비타민 B6와 이들의 유도체	6.5	A
3497	2936260000	비타민 B12와 이들의 유도체	6.5	A
3498	2936271000	아스코르브산	6.5	A
3499	2936272000	아스코르브산나트륨	6.5	A
3500	2936273000	아스코르브산 칼슘	6.5	B
3501	2936279000	기타	6.5	B
3502	2936281000	초산알파토코페롤	6.5	A
3503	2936289000	기타	6.5	A
3504	2936291010	비타민 B9	6.5	A
3505	2936291090	기타	6.5	A
3506	2936292000	비타민 D와 이들의 유도체	6.5	A
3507	2936293000	비타민 H와 이들의 유도체	6.5	A
3508	2936294000	비타민 K와 이들의 유도체	6.5	A
3509	2936295000	니코틴아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6.5	B
3510	2936299000	기타	6.5	B
3511	2936901000	프로비타민(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5	A
3512	2936909000	기타	6.5	A
3513	2937111000	소호 제2933.9호나 제2934.9호의 것	6.5	B
3514	2937119000	기타	0	A
3515	2937120000	인슐린과 그 염	0	A
3516	2937191000	소호 제2933.9호, 제2934.9호의 것	6.5	A
3517	2937199000	기타	0	A
3518	2937211000	코르티손	0	A
3519	2937212000	히드로코르티손	0	A
3520	2937213000	프레드니손	0	A
3521	2937214000	프레드니소론	0	A
3522	29372200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0	A
3523	2937230000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0	A
3524	2937292000	소호 제2914.50호의 것	5.5	A
3525	2937299000	기타	0	A
3526	2937501000	소호 제2918.19호, 제2918.9호의 것	6.5	A
3527	2937502000	소호 제2934.9호의 것	6.5	A
3528	2937509000	기타	0	A
3529	2937901000	소호 제2933.9호, 제2934.9호의 것	6.5	A
3530	2937902100	에피네프린	0	A
3531	2937902910	소호 제2922.50호의 것	6.5	A

3532	2937902990	기타	0	A
3533	2937903000	아미노산 유도체	0	A
3534	2937909000	기타	0	A
3535	2938101000	루토시드(루틴)	6.5	A
3536	2938102000	루토시드의 유도체	6.5	A
3537	2938901000	디기탈리스 글리코시드	6.5	A
3538	2938902000	글리시리진과 글리시리제이트	6.5	B
3539	2938903000	사포닌	6.5	A
3540	2938904000	스테비오사이드	6.5	B
3541	2938909000	기타	6.5	B
3542	2939111000	모르핀	0	A
3543	2939112000	에틸모르핀	0	A
3544	2939113000	코데인	0	A
3545	2939114000	양귀비 줄기 농축물(전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A
3546	2939119000	기타	0	A
3547	2939190000	기타	0	A
3548	2939200000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A
3549	2939300000	카페인과 그 염	0	A
3550	2939411000	에페드린	0	A
3551	2939419000	에페드린의 염	0	A
3552	2939421000	슈도에페드린(INN)	0	A
3553	2939429000	슈도에페드린의 염	0	A
3554	2939430000	카틴(INN)과 그 염	0	A
3555	2939440000	놀에페드린과 그 염	0	A
3556	2939450000	레보메탐페타민・메탐페타민(INN)・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및 이들의 염	0	A
3557	2939490000	기타	0	A
3558	2939510000	페네틸린(INN)과 그 염	0	A
3559	2939590000	기타	0	A
3560	2939611000	엘고메트린(INN)	0	A
3561	2939619000	엘고메트린(INN)의 염	0	A
3562	2939621000	엘고타민(INN)	0	A
3563	2939629000	엘고타민(INN)의 염	0	A
3564	2939631000	리세르그산	0	A
3565	2939639000	리세르그산의 염	0	A
3566	2939690000	기타	0	A
3567	2939720000	코카인・엑고닌, 이들의 염・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0	A
3568	2939791000	니코틴과 그 염	0	A
3569	2939799000	기타	0	A
3570	2939801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571	2939801090	기타	6.5	A
3572	2939802000	히스트리오니코톡신, 테트로도톡신	0	A
3573	2939809000	기타	6.5	A
3574	2940001010	갈락토오스	6.5	A
3575	2940001020	소르보오스	6.5	A
3576	2940001030	키실로오스	6.5	B
3577	2940001090	기타	6.5	A
3578	2940002010	히드록시프로필 슈크로오스	6.5	A
3579	2940002090	기타	6.5	B

3580	2941101000	페니실린 지(G) 칼륨	6.5	A
3581	2941109010	페니실린 지(G) 나트륨	6.5	A
3582	2941109020	페니실린 브이(V)	6.5	A
3583	2941109090	기타	6.5	B
3584	294120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585	2941209000	기타	6.5	A
3586	2941301000	클로로 테트라사이클린	6.5	A
3587	2941302000	염산 옥시 테트라사이클린	6.5	A
3588	2941303000	염산 클로로 테트라사이클린	6.5	A
3589	2941309000	기타	6.5	B
3590	2941400000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6.5	A
3591	2941501000	에리즈로마이신 티오시아네이트	6.5	B
3592	2941509000	기타	6.5	A
3593	294190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594	2941909000	기타		
		- 류코마이신	6.5	B
		- 기타	6.5	A
3595	2942000000	그 밖의 유기화합물	6.5	A
3596	3001202000	간장 추출물	0	A
3597	3001209000	기타	0	A
3598	3001901010	인체의 것	0	A
3599	3001901090	기타	0	A
3600	3001902010	웅담	0	A
3601	3001902090	기타	0	A
3602	3001909010	헤파린과 그 염	0	A
3603	3001909020	인체의 것	0	A
3604	3001909090	기타	0	A
3605	3002122000	면역혈청	0	A
3606	3002123000	그 밖의 혈액 분획물	0	A
3607	3002130000	면역물품(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0	A
3608	3002140000	면역물품(혼합된 것으로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0	A
3609	3002150000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3610	3002410000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0	A
3611	3002421000	구제역 백신	0	A
3612	3002429000	기타	0	A
3613	3002491000	독소, 톡소이드(toxoid), 크립토독소(cryptotoxin), 항독소(anti-toxin)	0	A
3614	3002492000	미생물 배양체	0	A
3615	3002493000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	0	A
3616	3002494000	기타[박테리오파지(bacteriophage)를 포함한다]	0	A
3617	3002510000	세포치료법용 제품	0	A
3618	3002590000	기타	0	A
3619	3002901000	사람의 피	0	A
3620	3002902000	동물의 피(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3621	3002909000	기타	0	A

3622	300310100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를 함유하는 것	8	B
3623	3003102000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8	A
3624	3003200000	기타(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항결핵제 · 항암제	8	B
		- 기타	8	A
3625	3003310000	인슐린을 함유한 것	8	A
3626	3003395000	부신피질 호르몬제제	8	B
3627	3003399000	기타		
		-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8	B
		- 기타	8	A
3628	3003410000	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8	A
3629	3003420000	슈도에페드린(INN)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8	A
3630	3003430000	놀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8	A
3631	3003490000	기타		
		- 항암제	8	B
		- 기타	8	A
3632	3003600000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열거한 항말라리아 활성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8	A
3633	3003902000	아스피린제제	8	A
3634	3003903000	비타민제제	8	A
3635	3003909000	기타		
		- 인삼제제	8	B
		- 기타	8	A
3636	300410100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를 함유하는 것	8	A
3637	3004102000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8	A
3638	3004201000	항결핵제 · 구충제 · 항암제	8	A
3639	3004209100	클로람페니콜제제	8	B
3640	3004209300	옥시테트라 사이클린제제	8	A
3641	3004209900	기타	8	A
3642	3004310000	인슐린을 함유한 것	8	A
3643	30043200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이들의 유도체나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8	B
3644	3004391010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제제	8	A
3645	3004391020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8	A
3646	3004393000	갑상샘과 부갑상샘 호르몬제제	8	A
3647	3004395000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8	A
3648	3004396000	남성 호르몬제제	8	A
3649	3004397000	난포와 황체 호르몬제제	8	A
3650	3004399000	기타	8	A
3651	3004410000	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8	A
3652	3004420000	슈도에페드린(INN)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8	A
3653	3004430000	놀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8	A
3654	3004491000	항암제	8	A
3655	3004492010	코카인제제	8	A
3656	3004492020	맥각알칼로이드제제	8	A
3657	3004492030	니코틴제제	8	A
3658	300449300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8	B
3659	3004499000	기타	8	A
3660	3004501000	비타민 A제제	8	B
3661	3004502010	비타민 B1제제	8	A

3662	3004502090	기타	8	B
3663	3004503000	비타민 C제제	8	A
3664	3004504000	비타민 D제제	8	A
3665	3004509000	기타	8	A
3666	3004600000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열거한 항말라리아 활성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8	A
3667	3004901000	항결핵제·구충제·항암제	8	A
3668	3004909100	아스피린제제	8	A
3669	3004909200	항히스타민제제	8	A
3670	3004909900	기타		
		- 녹각제제	8	B
		- 기타	8	A
3671	3005101000	반창고	0	A
3672	3005109000	기타	0	A
3673	3005901000	탈지면	0	A
3674	3005902000	거즈	0	A
3675	3005903000	붕대	0	A
3676	3005904000	조제 드레싱과 습포제	0	A
3677	3005909000	기타	0	A
3678	3006101010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	0	A
3679	3006101020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	0	A
3680	3006102000	살균한 외과용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0	A
3681	3006103000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살균한 라미나리아의 텐트	0	A
3682	3006104000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0	A
3683	300610501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6.5	A
3684	300610502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8	A
3685	3006105090	기타	0	A
3686	3006301000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0	A
3687	3006302000	진단용 시약(환자 투여용)	0	A
3688	3006401000	치과용 시멘트	0	A
3689	3006402000	치과용 충전제	0	A
3690	3006403000	뼈 형성용 시멘트	0	A
3691	3006500000	구급상자와 구급대	0	A
3692	3006600000	제2937호의 호르몬과 그 밖의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0	A
3693	3006700000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	6.5	A
3694	3006910000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6.5	A
3695	3006921010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	0	A
3696	3006921090	기타	0	A
3697	3006922010	혈액 분획물의 조제품, 의약품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0	A
3698	3006922020	헤모글로빈과 글로불린(globulin)	0	A
3699	3006922031	색시톡신(saxitoxin)	6.5	A
3700	3006922032	리신(ricin)	8	A
3701	3006922090	기타	0	A
3702	3006923000	제3003호와 제3004호의 것	8	A
3703	3006924000	제3005호와 제3006호의 것	0	A
3704	3006925000	소호 제3824.84호부터 제3824.88호까지, 제3824.91호, 제3824.99호의 것	6.5	A

3705	3006930000	공인된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플라세보(placebo)와 맹검(또는 이중 맹검) 임상시험 키트(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 제3004.90.9900호(녹용제제・인삼제제・로열젤리 제제는 제외한다)의 것	8	A
		-제3824.99.9090호의 것	6.5	A
		- 기타	8	B
3706	3101001000	동물성 비료	6.5	A
3707	3101002000	식물성 비료	6.5	A
3708	3101003000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6.5	A
3709	3102101000	비료나 비료제조용	2	A
3710	3102109000	기타	6.5	B
3711	3102210000	황산암모늄	6.5	C
3712	3102291000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	6.5	B
3713	3102292000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혼합물	6.5	C
3714	3102300000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6.5	A
3715	3102400000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이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6.5	A
3716	3102501000	천연의 것	6.5	A
3717	3102509000	기타	6.5	A
3718	3102600000	질산칼슘・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6.5	A
3719	3102800000	요소・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을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6.5	A
3720	3102901000	질산칼슘과 질산마그네슘의 겹염	6.5	A
3721	3102909000	기타	6.5	A
3722	3103110000	오산화인(P2O5)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5 이상인 것	6.5	A
3723	3103190000	기타	6.5	A
3724	3103900000	기타	6.5	A
3725	3104200000	염화칼륨	0	A
3726	3104301000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2 이하인 것	1	A
3727	3104309000	기타	6.5	A
3728	3104901010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1	A
3729	3104901090	기타	6.5	A
3730	3104909000	기타	1	A
3731	3105100000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태블릿(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6.5	C
3732	3105200000	질소・인・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6.5	C
3733	310530000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6.5	C
3734	310540000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6.5	C
3735	3105510000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6.5	C
3736	3105590000	기타	6.5	C
3737	3105600000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6.5	C
3738	3105901000	질소와 칼륨을 함유한 비료	6.5	C
3739	3105909000	기타	6.5	C
3740	3201100000	퀘브라쵸 추출물(quebracho extract)	6.5	A
3741	3201200000	왓틀 추출물(wattle extract)	6.5	A
3742	3201900000	기타	6.5	A

3743	3202101000	방향족 신탄스	6.5	A
3744	3202103000	수지성 유연제	6.5	A
3745	3202109000	기타	6.5	A
3746	3202901000	무기유연제	6.5	A
3747	3202909000	기타	6.5	A
3748	3203001000	식물성 착색제	6.5	A
3749	3203002010	코치닐(cochineal)	6.5	A
3750	3203002030	세피아(sepia)	6.5	A
3751	3203002090	기타	6.5	A
3752	3203003000	식물성이나 동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6.5	A
3753	3204111000	분산성 염료 중간체[프레스케익(press cake)으로 한정한다]	4	A
3754	3204119000	기타	8	A
3755	3204121000	산성염료와 및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A
3756	3204122000	매염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A
3757	3204130000	염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A
3758	3204140000	직접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A
3759	3204150000	건염(建染) 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A
3760	3204160000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A
3761	3204170000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A
3762	3204180000	카로티노이드 착색제와 이들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8	A
3763	3204191000	유기용제 용해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B
3764	3204193000	황화염료·황화 건염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A
3765	3204199000	기타	8	A
3766	3204200000	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	6.5	A
3767	3204901010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5	A
3768	3204901090	기타	6.5	A
3769	3204909000	기타	6.5	A
3770	3205001000	플라스틱 안료색소	6.5	A
3771	3205009000	기타	6.5	A
3772	3206110000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6.5	B
3773	3206190000	기타	6.5	A
3774	3206200000	크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6.5	A
3775	3206411000	군청	6.5	A
3776	3206419000	기타	6.5	A
3777	3206421000	리토폰(lithopone)	6.5	A
3778	3206429000	기타	6.5	A
3779	3206491000	아연회	6.5	A
3780	3206495000	코발트 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	6.5	A
3781	3206496000	카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6.5	A
3782	3206499000	기타	6.5	A
3783	3206500000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	6.5	A
3784	3207100000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조제 그림물감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6.5	A
3785	3207201000	법랑과 유약	6.5	A
3786	3207202000	슬립	6.5	A
3787	3207209000	기타	6.5	A
3788	3207301000	금으로 만든 것	6.5	A
3789	3207302000	백금으로 만든 것	6.5	A
3790	3207303000	팔라듐으로 만든 것	6.5	A

3791	3207304000	은으로 만든 것	6.5	A
3792	3207309000	기타	6.5	A
3793	3207400000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6.5	A
3794	3208101010	에나멜	6.5	A
3795	3208101090	기타	6.5	A
3796	320810200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A
3797	320810300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6.5	A
3798	3208201011	에나멜	6.5	A
3799	3208201019	기타	6.5	A
3800	320820102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A
3801	320820103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6.5	A
3802	3208202011	에나멜	6.5	A
3803	3208202019	기타	6.5	A
3804	320820202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A
3805	320820203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6.5	A
3806	3208901011	에나멜	6.5	A
3807	3208901019	기타	6.5	A
3808	320890102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A
3809	320890103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6.5	A
3810	3208909011	에나멜	6.5	A
3811	3208909019	기타	6.5	B
3812	320890902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A
3813	320890903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6.5	A
3814	3209101011	에나멜	6.5	A
3815	3209101019	기타	6.5	A
3816	320910102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A
3817	3209102010	페인트(에나멜을 포함한다)	6.5	A
3818	320910202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A
3819	3209901011	에나멜	6.5	A
3820	3209901019	기타	6.5	A
3821	320990102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A
3822	3209909011	에나멜	6.5	A
3823	3209909019	기타	6.5	A
3824	320990902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A
3825	3210001011	에나멜	6.5	A
3826	3210001019	기타	6.5	A
3827	3210001091	에나멜	6.5	A
3828	3210001099	기타	6.5	A
3829	3210002010	오일 바니시(varnish)	6.5	A
3830	3210002020	락・천연 검이나 천연 수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니시(varnish)와 래커(lacquer)	6.5	A
3831	3210002030	역청질・피치나 이와 유사한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바니시(varnish)	6.5	A
3832	3210002040	용제를 함유하지 않은 액상 바니시(varnish)	6.5	A
3833	3210003010	디스템퍼(distemper)	6.5	A
3834	3210003090	기타	6.5	A
3835	3211000000	조제 드라이어	6.5	A
3836	3212100000	스탬프용 박(箔)	6.5	A
3837	3212901000	소매용의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6.5	A
3838	3212909000	기타	6.5	A

3839	3213101000	유성 물감	6.5	A
3840	3213102000	수성 물감	6.5	A
3841	3213109000	기타	6.5	A
3842	3213901000	유성 물감	6.5	A
3843	3213902000	수성 물감	6.5	A
3844	3213909000	기타	6.5	A
3845	3214101060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A
3846	3214101080	수지매스틱과 수지시멘트	6.5	A
3847	3214101090	기타	6.5	A
3848	3214102000	도장용 충전제	6.5	A
3849	3214109000	기타	6.5	A
3850	3214900000	기타	6.5	A
3851	3215110000	흑색	0	A
3852	3215190000	기타	0	B
3853	3215901000	필기용 잉크	6.5	A
3854	3215902000	제도용 잉크	6.5	A
3855	3215903000	복사용 잉크	6.5	A
3856	3215904010	유성	6.5	A
3857	3215904020	수성	6.5	A
3858	3215904030	유성·수성 겸용	6.5	A
3859	3215905000	금속성 잉크	6.5	A
3860	3215906010	유성	6.5	A
3861	3215906020	수성	6.5	A
3862	3215906030	유성·수성 겸용	6.5	A
3863	3215909000	기타	6.5	A
3864	3301120000	오렌지유	5	A
3865	3301130000	레몬유	5	A
3866	3301190000	기타	5	A
3867	3301240000	박하유[멘타 피페리타(Mentha piperita)]	5	A
3868	3301250000	그 밖의 민트류로 만든 것	5	A
3869	3301290000	기타	5	A
3870	3301300000	레지노이드(resinoid)	8	A
3871	3301901000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에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8	A
3872	3301902000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	8	A
3873	3301903000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8	A
3874	3301904100	아편에서 추출한 것	8	A
3875	3301904200	감초에서 추출한 것	8	A
3876	3301904300	홉(hop)에서 추출한 것	30	A
3877	3301904400	제충국(除蟲菊)에서 추출한 것이나 로테논(rotenone)을 함유하는 식물 뿌리에서 추출한 것	8	A
3878	3301904510	백삼에서 추출한 것	20	A
3879	3301904520	홍삼에서 추출한 것	754.3	C
3880	3301904530	그 밖의 인삼에서 추출한 것	20	C
3881	3301904600	캐슈너트 쉘액(cashew nut shell liquid)에서 추출한 것	8	A
3882	3301904700	생칠(生漆)에서 추출한 것	8	A
3883	3301904800	기타	8	A
3884	3302101000	식품공업용	5	A
3885	3302102011	알코올성 합성 조제품	30	A
3886	3302102019	기타	8	A

3887	3302102090	기타	5	A
3888	3302900000	기타	6.5	A
3889	3303001000	향수	6.5	B
3890	3303002000	화장수	6.5	A
3891	3304101000	립스틱	6.5	A
3892	3304109000	기타	6.5	A
3893	3304201000	아이섀도	6.5	A
3894	3304209000	기타	6.5	A
3895	3304301000	네일에나멜	6.5	A
3896	3304309000	기타	6.5	A
3897	3304911000	페이스파우다	6.5	A
3898	3304912000	베이비파우다(탈쿰파우다를 포함한다)	6.5	A
3899	3304919000	기타	6.5	A
3900	3304991000	기초화장용 제품류	6.5	B
3901	3304992000	메이크업용 제품류	6.5	A
3902	3304993000	어린이용 제품류	6.5	A
3903	3304999000	기타	6.5	B
3904	3305100000	샴푸	5	B
3905	3305200000	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용 제품류	5	A
3906	3305300000	헤어 래커(hair lacquer)	5	A
3907	3305901000	헤어린스	5	A
3908	3305902000	헤어크림	5	A
3909	3305909000	기타	5	B
3910	3306100000	치약	6.5	A
3911	3306201011	70데시텍스를 초과하지 않는 것	8	A
3912	3306201019	기타	8	A
3913	3306201020	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를 초과하는 것	8	A
3914	3306209000	기타	8	A
3915	3306901000	구강위생용 제품류	6.5	A
3916	3306902000	치과위생용 제품류	6.5	A
3917	3307101000	애프터 셰이빙로션	6.5	A
3918	3307109000	기타	6.5	A
3919	3307200000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6.5	A
3920	3307301000	가향한 목욕용 염	6.5	A
3921	3307302000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6.5	A
3922	3307410000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6.5	A
3923	3307490000	기타	6.5	A
3924	3307901000	탈모제	6.5	A
3925	3307903000	콘택트렌즈의 액이나 의안의 액	6.5	A
3926	3307904000	마스크 팩	6.5	A
3927	3307909000	기타	6.5	A
3928	3401111000	약용비누	6.5	A
3929	3401119000	기타	6.5	B
3930	3401191010	세탁비누	6.5	A
3931	3401191090	기타	6.5	A
3932	3401192000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	6.5	A
3933	3401200000	그 밖의 모양의 비누	6.5	A
3934	340130000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5	A

3935	3402310000	선형 알킬벤젠 술폰산과 그 염	8	A
3936	3402390000	기타	8	A
3937	3402410000	양이온성	8	A
3938	340242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939	3402429000	기타	8	A
3940	3402490000	기타	8	A
3941	3402501000	조제 세제	5	A
3942	3402502000	조제 청정제	6.5	A
3943	3402509000	기타	6.5	A
3944	3402901000	조제 계면활성제	6.5	A
3945	3402902000	조제 세제	5	A
3946	3402903000	조제 청정제	6.5	A
3947	3403111000	방직용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6.5	A
3948	3403112000	가죽이나 모피의 처리용 조제품	6.5	A
3949	3403119000	기타	6.5	A
3950	3403191000	조제 절삭유	6.5	A
3951	3403193000	방청제나 부식방지제	6.5	A
3952	3403194000	이형(mold release) 조제품	6.5	A
3953	3403195000	신선용(伸線用) 조제 윤활제	6.5	A
3954	3403199000	기타	6.5	A
3955	3403911000	방직용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6.5	A
3956	3403912000	가죽이나 모피의 처리용 조제품	6.5	A
3957	3403919000	기타	6.5	A
3958	3403991000	조제 절삭유	6.5	A
3959	3403992000	신선용(伸線用) 조제 윤활제	6.5	A
3960	3403999000	기타	6.5	A
3961	340420000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6.5	A
3962	3404901010	클로로 파라핀왁스	6.5	A
3963	3404901030	폴리알킬렌왁스	6.5	A
3964	3404901040	화학적으로 변성한 갈탄왁스	6.5	A
3965	3404901090	기타	6.5	A
3966	3404902000	조제 왁스	6.5	B
3967	3405100000	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6.5	A
3968	3405200000	목제가구·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6.5	A
3969	3405300000	차체(coachwork)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	6.5	A
3970	3405400000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6.5	A
3971	3405901030	다이아몬드 가루나 더스트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A
3972	3405901090	기타	6.5	A
3973	3405909000	기타	6.5	A
3974	3406000000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6.5	A
3975	3407001000	조형용 페이스트(paste)	6.5	A
3976	3407002000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	6.5	A
3977	3407003000	플라스터를 기본 재료로 한 기타 치과용 조제품	6.5	A
3978	3501101000	커피 크리머 제조용	8	B
3979	3501109000	기타	20	B
3980	3501901110	커피 크리머 제조용	8	B
3981	3501901190	기타	20	B
3982	3501901200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	20	B

3983	3501902000	카세인 글루(casein glue)	20	B
3984	3502110000	건조한 것	8	B
3985	3502190000	기타	8	B
3986	3502200000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8	B
3987	3502901000	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8	A
3988	3502909000	기타	8	A
3989	3503001010	젤라틴	8	B
3990	3503001020	젤라틴 유도체	8	A
3991	3503002000	아이징글라스(isinglass)	8	A
3992	3503003000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	8	A
3993	3504001010	펩톤(peptone)	8	A
3994	3504001020	펩톤(peptone) 유도체	8	A
3995	3504002010	케라틴	8	A
3996	3504002020	핵산단백질	8	A
3997	3504002030	유리단백질	8	A
3998	3504002090	기타	8	A
3999	3504003000	하이드 파우더(hide powder)	8	A
4000	3505101000	덱스트린	8	B
4001	3505102000	가용성 전분(아밀로겐)	8	B
4002	3505103000	배소전분	385.7	C
4003	3505104010	식품용	385.7	C
4004	3505104090	기타	385.7	C
4005	3505105010	식품용	385.7	C
4006	3505105090	기타	385.7	C
4007	3505109010	식품용	385.7	C
4008	3505109090	기타	385.7	C
4009	3505201000	전분 글루(glue)	201.2	X
4010	3505202000	덱스트린 글루(glue)	201.2	X
4011	3505209000	기타	201.2	X
4012	3506101000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A
4013	3506102000	플라스틱(인조수지를 포함한다)을 기본 재료로 한 것	6.5	A
4014	3506109000	기타	6.5	A
4015	3506911000	광학용 투명 점착 필름 접착제 · 광학용 투명 경화성 액상 접착제(평판디스플레이 또는 터치 감지 스크린 패널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0	B
4016	3506919000	기타	6.5	B
4017	3506991000	비엔나 글루(glue)	6.5	A
4018	3506999000	기타	6.5	A
4019	3507100000	레네트(rennet)와 이들의 농축물	6.5	B
4020	3507901000	췌장계 효소	6.5	A
4021	3507904000	파파인, 브로멜라인과 피신	6.5	A
4022	3507906010	아밀라제	6.5	B
4023	3507906020	프로테아제	6.5	A
4024	3507907000	펙틱효소	6.5	B
4025	3507909000	기타	6.5	A
4026	3601001000	흑색화약	6.5	A
4027	3601002000	무연화약	6.5	A
4028	3602000000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6.5	A
4029	3603100000	도화선	6.5	A
4030	3603200000	도폭선	6.5	A
4031	3603300000	격발뇌관(percussion cap)	6.5	A

4032	3603400000	뇌관(detonating cap)	6.5	A
4033	3603500000	점화기	6.5	A
4034	3603600000	전기뇌관	6.5	A
4035	3604100000	불꽃제품	6.5	A
4036	3604901000	신호용 조명탄	6.5	A
4037	3604909000	기타	6.5	A
4038	3605000000	성냥(제3604호의 화공품은 제외한다)	6.5	A
4039	3606100000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연료·액화가스연료	6.5	A
4040	3606900000	기타	6.5	A
4041	3701100000	엑스선용	6.5	A
4042	370120000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6.5	A
4043	3701302000	인쇄제판용	0	A
4044	3701303000	인쇄회로기판용	0	A
4045	3701304000	평판디스플레이용[블랭크마스크(blank mask)로 한정한다]	0	A
4046	3701309000	기타	0	A
4047	3701911000	반도체 제조용	6.5	A
4048	3701919100	인쇄제판용	6.5	A
4049	3701919200	인쇄회로기판용	6.5	A
4050	3701919900	기타	6.5	A
4051	3701991000	반도체 제조용	0	A
4052	3701999100	인쇄제판용	0	A
4053	3701999200	인쇄회로기판용	0	A
4054	3701999900	기타	0	A
4055	3702100000	엑스선용	6.5	A
4056	3702311000	영화필름	6.5	A
4057	3702319000	기타	6.5	A
4058	3702321000	영화필름	6.5	A
4059	3702329000	기타	6.5	A
4060	3702391000	영화필름	6.5	A
4061	3702399000	기타	6.5	A
4062	3702411000	영화필름	6.5	A
4063	3702419000	기타	6.5	A
4064	3702421000	영화필름	6.5	A
4065	3702422000	인쇄제판용	6.5	A
4066	370242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A
4067	3702429000	기타	6.5	A
4068	3702431000	영화필름	6.5	A
4069	3702432000	인쇄제판용	6.5	A
4070	370243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A
4071	3702439000	기타	6.5	A
4072	3702441000	영화필름	6.5	A
4073	3702442000	인쇄제판용	6.5	A
4074	370244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A
4075	3702449000	기타	6.5	A
4076	3702521000	영화필름	6.5	A
4077	3702529000	기타	6.5	A
4078	3702530000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으로 한정한다)	6.5	A
4079	3702541000	영화필름	6.5	A

4080	3702549000	기타	6.5	A
4081	3702551000	영화필름	6.5	A
4082	3702559000	기타	6.5	A
4083	3702561000	영화필름	6.5	A
4084	3702569000	기타	6.5	A
4085	3702961000	영화필름	6.5	A
4086	3702969000	기타	6.5	A
4087	3702971000	영화필름	6.5	A
4088	3702979000	기타	6.5	A
4089	3702981000	영화필름	6.5	A
4090	3702982000	인쇄제판용	6.5	A
4091	370298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A
4092	3702989000	기타	6.5	A
4093	3703100000	롤 모양(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5	A
4094	3703203000	사진복사용	6.5	A
4095	3703209000	기타	6.5	A
4096	3703900000	기타	6.5	A
4097	3704001100	영화용	0	A
4098	3704001200	오프셋 복사용(엽서・그림엽서・카드・캘린더 제작용으로 한정한다)	0	A
4099	3704001300	반도체 제조용	0	A
4100	3704001900	기타	0	A
4101	3704002000	사진 인화지・판지・직물	6.5	A
4102	3705001010	엽서・그림엽서・카드와 캘린더 제작용	6.5	A
4103	3705001090	기타	0	A
4104	3705009010	반도체 제조용	0	A
4105	3705009090	기타	0	A
4106	3706100000	폭이 35밀리미터 이상인 것	6.5% 또는 1,560원/m 양자 중 고액(율)	A
4107	3706900000	기타	6.5% 또는 1,092원/m 양자 중 고액(율)	A
4108	3707100000	감광유제	6.5	A
4109	3707901010	반도체 제조용	0	A
4110	3707901020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0	A
4111	3707901090	기타	0	A
4112	3707902010	인쇄제판용	0	A
4113	3707902090	기타	0	A
4114	3707903000	정착제	0	A
4115	3707909200	조색제	0	A
4116	3707909300	세정제	0	A
4117	3707909900	기타	0	A
4118	3801101000	이차전지 제조용	4	A
4119	3801109000	기타	6.5	A
4120	3801200000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	6.5	A
4121	380130000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와 노(爐)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paste)	6.5	A
4122	3801900000	기타	6.5	A
4123	3802100000	활성탄	6.5	A
4124	3802901000	활성 규조토	6.5	A
4125	3802903000	활성토	6.5	A
4126	3802909000	기타	6.5	A
4127	3803000000	톨유(tall oil)(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A

4128	3804001000	액체 상태인 것	6.5	A
4129	3804009000	기타	6.5	B
4130	3805101000	검테레빈유	6.5	A
4131	3805102000	우드테레빈유	6.5	A
4132	3805103000	황산테레빈유	6.5	A
4133	3805900000	기타	6.5	A
4134	3806101000	로진(rosin)	6.5	B
4135	3806102000	수지산	6.5	A
4136	3806200000	로진염, 수지산염, 로진(rosin)·수지산 유도체의 염[로진(rosin) 부가물의 염은 제외한다]	6.5	A
4137	3806300000	에스테르 검(ester gum)	6.5	A
4138	3806900000	기타	6.5	A
4139	3807003000	식물성 피치(pitch)	6.5	A
4140	3807009010	목초액	6.5	B
4141	3807009090	기타	6.5	A
4142	3808520000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순중량이 300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6.5	A
4143	38085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4144	3808599000	기타	6.5	A
4145	380861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4146	3808619000	기타	6.5	A
4147	380862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4148	3808629000	기타	6.5	A
4149	38086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4150	3808699000	기타	6.5	A
4151	380891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4152	3808919000	기타	6.5	A
4153	380892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4154	3808929000	기타	6.5	A
4155	3808931000	제초제	6.5	A
4156	3808932000	발아억제제	6.5	A
4157	3808933000	식물성장조절제	6.5	A
4158	3808940000	소독제	6.5	A
4159	3808991000	살서제(쥐약)	6.5	A
4160	3808999000	기타	6.5	B
4161	3809100000	전분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B
4162	3809910000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6.5	A
4163	3809920000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6.5	A
4164	3809930000	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6.5	A
4165	381010100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6.5	A
4166	3810109000	기타	6.5	A
4167	3810901000	납땜·땜질이나 용접용의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6.5	A
4168	3810909000	기타	6.5	A
4169	3811110000	납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6.5	A
4170	3811190000	기타	6.5	A
4171	3811210000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5	A

4172	3811290000	기타	5	A
4173	3811900000	기타	6.5	A
4174	3812101000	디페닐구아니딘을 기본 재료로 한 것	6.5	A
4175	3812102000	디티오카르바메이트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A
4176	3812109000	기타	6.5	A
4177	3812200000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6.5	A
4178	3812310000	2,2,4-트리메틸-1,2-디히드로퀴놀린 올리고머(티엠큐)의 혼합물	6.5	A
4179	3812391000	산화방지 조제품	6.5	A
4180	3812392000	그 밖의 복합안정제	6.5	B
4181	3813001000	소화기용 조제품	6.5	A
4182	3813002000	소화기용 장전물	6.5	A
4183	3813003000	장전된 소화탄	6.5	A
4184	3814001020	초산에틸・부틸알코올과 톨루엔 혼합물	6.5	A
4185	3814001090	기타	6.5	A
4186	3814002110	반도체 제조용	6.5	A
4187	3814002190	기타	6.5	A
4188	3814002900	기타	6.5	A
4189	3815110000	활성물질로서 니켈이나 니켈화합물의 것	6.5	A
4190	3815121000	백금이나 백금화합물의 것	6.5	A
4191	3815122000	팔라듐이나 팔라듐화합물의 것	6.5	A
4192	3815129000	기타	6.5	A
4193	3815191000	활성물질로서 철이나 철화합물의 것	6.5	A
4194	3815192000	활성물질로서 티타늄이나 티타늄화합물의 것	6.5	A
4195	3815199000	기타	6.5	B
4196	3815901000	반응시작제	6.5	A
4197	3815909000	기타	6.5	A
4198	3816001000	내화시멘트	6.5	A
4199	3816002000	내화모르타르	6.5	A
4200	3816003000	내화콘크리트	6.5	A
4201	3816009010	백운석 래밍믹스(ramming mix)	3	A
4202	3816009090	기타	6.5	A
4203	38170000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2707호・제290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5	X
4204	38180010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	0	A
4205	3818002010	태양전지 제조용 웨이퍼	0	A
4206	3818002090	기타	0	A
4207	3819001000	유압제동액	6.5	A
4208	3819002000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	6.5	A
4209	3820001000	부동(不凍) 조제품	6.5	A
4210	3820002000	조제 제빙액	6.5	A
4211	3821000000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6.5	B
4212	3822111000	진단 시험 도구모음	0	A
4213	3822112000	면역물품	0	A
4214	3822119000	기타	6.5	A
4215	3822121000	면역물품	0	A
4216	3822129000	기타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sheet), 필름, 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6.5	B
		- 기타	0/6.5/8	A
4217	3822130000	혈액형 분류용	0	A

4218	3822191000	면역물품	0	A
4219	382219201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sheet), 필름, 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0	A
4220	382219201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0	A
4221	3822192013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web)[제48류의 주 제8호의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0	A
4222	3822192014	리트머스 시험지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험지	0	A
4223	3822192019	기타	0	A
4224	3822192020	조제된 것(뒷편을 보강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4225	382219209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sheet), 필름, 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6.5	B
4226	382219209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6.5	A
4227	3822192093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web)[제48류의 주 제8호의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0	A
4228	3822192099	기타	8	A
4229	382219301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sheet), 필름, 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0	A
4230	382219301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0	A
4231	3822193013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web)[제48류의 주 제8호의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0	A
4232	3822193014	리트머스 시험지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험지	0	A
4233	3822193019	기타	0	A
4234	3822193020	조제된 것(뒷편을 보강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4235	382219309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sheet), 필름, 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6.5	A
4236	382219309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6.5	A
4237	3822193093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web)[제48류의 주 제8호의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0	A
4238	3822193099	기타	8	B
4239	3822900011	이 표에서 세율이 무세인 것	0	A
4240	3822900012	이 표에서 세율이 1퍼센트인 것	1	A
4241	3822900013	이 표에서 세율이 2퍼센트인 것	2	A
4242	3822900014	이 표에서 세율이 3퍼센트인 것	3	A
4243	3822900015	이 표에서 세율이 4퍼센트인 것	4	A
4244	3822900016	이 표에서 세율이 5퍼센트인 것	5	A
4245	3822900017	이 표에서 세율이 5.4퍼센트인 것	5.4	A
4246	3822900018	이 표에서 세율이 6.5퍼센트인 것	6.5	A
4247	3822900019	이 표에서 세율이 7퍼센트인 것	7	A
4248	3822900020	기타	8	A
4249	3823110000	스테아린산	8	A
4250	3823120000	올레인산	8	A
4251	3823130000	톨유(tall oil) 지방산	8	A
4252	3823191000	팔미틴산	8	A
4253	3823192000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8	A
4254	3823199000	기타	8	A
4255	3823701000	세틸 알코올	5	A
4256	3823702000	스테아릴 알코올	5	A
4257	3823703000	올레일 알코올	5	A

4258	3823704000	라우릴 알코올	3	A
4259	38237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4260	3823709090	기타	5	A
4261	3824100000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6.5	A
4262	3824300000	응결하지 않은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5	A
4263	3824400000	시멘트용・모르타르용・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	6.5	A
4264	3824500000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6.5	B
4265	3824600000	소르비톨(sorbitol)(소호 제2905.44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8	B
4266	3824810000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6.5	B
4267	3824820000	폴리염소화 비페닐 (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6.5	B
4268	382483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6.5	B
4269	3824840000	엘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펜),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또는 미렉스(ISO)를 함유한 것	6.5	A
4270	38248500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을 함유한 것	6.5	A
4271	3824860000	펜타클로로벤젠(ISO) 또는 헥사클로로벤젠(ISO)을 함유한 것	6.5	A
4272	382487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또는 과불화옥탄술포닐 플루오라이드를 함유한 것	6.5	A
4273	3824880000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또는 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를 함유한 것	6.5	A
4274	3824890000	짧은사슬 염화파라핀을 함유한 것	6.5	A
4275	3824910000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와 비스[(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과 조제품	6.5	A
4276	3824920000	메틸포스폰산의 폴리글리콜 에스테르	6.5	A
4277	3824991000	크롬광 배소물	5	A
4278	3824992100	진공관의 게터(getter)	6.5	A
4279	38249922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B
4280	3824992290	기타	6.5	B
4281	3824992900	기타	6.5	A
4282	3824993100	[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 알킬을 포함한다)에스테르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과 이들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로 구성된 혼합물	6.5	A
4283	3824993910	하나의 인(燐) 원자가 하나의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 그룹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더 이상의 탄소 원자와 결합하지 않은 화학품으로 주로 구성된 그 밖의 혼합물	6.5	A
4284	3824993990	기타	6.5	A
4285	3824994100	혼합 폴리에틸렌글리콜	6.5	A
4286	3824994200	이온교환체	6.5	A
4287	3824994300	스케일방지제	6.5	A
4288	3824994400	바니시(varnish)경화제나 글루(glue)의 경화제	6.5	A

4289	3824995100	잉크 제거제	6.5	A
4290	3824995200	등사판원지 수정제	6.5	A
4291	3824995300	수정액	6.5	A
4292	3824996100	페인트용 혼합증량제	6.5	A
4293	3824996200	특정요업제품 제조용 조제품(의치 등)	6.5	B
4294	3824996300	소다석회	6.5	A
4295	3824996400	수화실리카겔	6.5	A
4296	3824996500	방청제(anti-rust preparation)	6.5	A
4297	3824996600	세라믹콘덴서와 페라이트코어 제조용 조제품	6.5	A
4298	3824997100	도금용 조제품	6.5	A
4299	3824997200	염화파라핀	6.5	A
4300	3824997300	소포제	6.5	A
4301	3824997400	발포제	6.5	A
4302	3824997500	조제 탄산칼슘	6.5	A
4303	3824997600	액정용 조제품	6.5	A
4304	3824997700	암모니아성 가스액	6.5	A
4305	3824998000	조제유기과산화물(제3815호의 물품과 제3824.99-4400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5	A
4306	3824999010	미량요소비료(제31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6.5	A
4307	3824999020	추잉껌 베이스	6.5	A
4308	3824999030	나프텐산과 이들의 수불용성염과 이들의 에스테르	6.5	A
4309	3824999040	수소차 연료전지 제조용 혼합 조제품(흑연을 기본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6.5	A
4310	3824999051	전해액	6.5	A
4311	3824999052	전해액 첨가제	6.5	A
4312	3824999090	기타	6.5	A
4313	3825100000	생활폐기물	6.5	A
4314	3825200000	하수 찌꺼기	6.5	A
4315	3825301000	제3005호의 것	0	A
4316	3825302000	소호 제3824.84호부터 제3824.88호까지, 제3824.91호, 제3824.99호의 것	6.5	A
4317	3825303000	소호 제4015.12호의 것	8	A
4318	3825304000	소호 제9018.3호의 것	8	A
4319	3825410000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6.5	A
4320	3825490000	기타	6.5	A
4321	3825500000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부동액 폐기물	6.5	A
4322	3825610000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6.5	A
4323	3825690000	기타	6.5	A
4324	3825901000	폐석고	6.5	A
4325	3825902000	폐석회석	6.5	A
4326	3825903000	폐주물사	6.5	A
4327	3825904000	그 밖의 폐토사	6.5	A
4328	3825909000	기타	6.5	A
4329	3826000000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6.5	A
4330	3827111000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을 기본 재료로 한 세정제	6.5	A
4331	3827119000	기타	6.5	B
4332	3827120000	수소브롬화불화탄소(HBFCs)를 함유하는 것	6.5	B
4333	3827130000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6.5	B
4334	3827140000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6.5	B

4335	38272000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alon-1211)·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Halon-1301)·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Halon-2402)을 함유하는 것	6.5	B
4336	3827310000	소호 제2903.41호부터 제2903.48호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것	6.5	B
4337	3827320000	기타(소호 제2903.71호부터 제2903.75호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6.5	B
4338	3827390000	기타	6.5	B
4339	3827400000	메틸 브로마이드(브로모메탄)나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한 것	6.5	B
4340	3827510000	트리플루오로메탄(HFC-23)을 함유한 것	6.5	B
4341	3827590000	기타	6.5	B
4342	3827610000	1,1,1-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a)을 질량 기준으로 15% 이상 함유한 것	6.5	B
4343	3827620000	기타[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을 질량 기준으로 55% 이상 함유하고 비환식탄화수소의 불포화 플루오르화유도체(HFO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5	B
4344	3827630000	기타[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을 질량 기준으로 40%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6.5	B
4345	3827640000	기타[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을 질량 기준으로 30% 이상 함유하고 비환식탄화수소의 불포화 플루오르화유도체(HFO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5	B
4346	3827650000	기타[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디플루오로메탄(HFC-32)을 질량 기준으로 20% 이상 함유하고 펜타플루오르에탄(HFC-125)을 질량 기준으로 20%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6.5	B
4347	3827680000	기타[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소호 제2903.41호부터 제2903.48호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6.5	B
4348	3827690000	기타	6.5	B
4349	3827900000	기타	6.5	B
4350	3901101000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6.5	C
4351	3901109000	기타	6.5	C
4352	390120000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6.5	C
4353	390130000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6.5	C
4354	3901400000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6.5	C
4355	3901900000	기타	6.5	C
4356	3902100000	폴리프로필렌	6.5	C
4357	3902200000	폴리이소부틸렌	6.5	C
4358	3902300000	프로필렌 공중합체	6.5	C
4359	3902900000	기타	6.5	C
4360	3903110000	발포성의 것	6.5	X
4361	3903190000	기타	6.5	X
4362	3903200000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6.5	X
4363	390330000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6.5	X
4364	3903901000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	6.5	X
4365	3903909000	기타	6.5	C
4366	390410000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5	X

4367	3904210000	가소화하지 않은 것	6.5	X
4368	3904220000	가소화한 것	6.5	X
4369	3904300000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6.5	X
4370	3904400000	그 밖의 염화비닐 공중합체	6.5	X
4371	3904500000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6.5	X
4372	3904610000	폴리테트라 플루오로에틸렌	6.5	X
4373	3904691000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6.5	X
4374	3904699000	기타	6.5	X
4375	3904900000	기타	6.5	X
4376	3905120000	물에 분산된 것	6.5	C
4377	3905190000	기타	6.5	C
4378	3905210000	물에 분산된 것	6.5	C
4379	3905290000	기타	6.5	C
4380	3905300000	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되지 않은 초산기(基)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C
4381	3905910000	공중합체(共重合體)	6.5	C
4382	3905990000	기타	6.5	C
4383	3906100000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6.5	X
4384	3906901000	폴리아크릴아미드	8	C
4385	3906909000	기타	8	X
4386	3907100000	폴리아세탈수지	6.5	X
4387	3907210000	비스(폴리옥시에틸렌) 메틸포스포네이트	6.5	X
4388	390729100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	6.5	C
4389	3907292000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	6.5	C
4390	3907293000	폴리페닐렌 옥사이드	6.5	X
4391	3907299000	기타	6.5	X
4392	3907301000	반도체 제조용	6.5	X
4393	3907309000	기타	6.5	X
4394	3907400000	폴리카보네이트	6.5	X
4395	3907500000	알키드수지	6.5	C
4396	3907610000	점도번호가 그램당 78밀리리터 이상인 것	6.5	C
4397	3907690000	기타	6.5	C
4398	3907700000	폴리(락트산)	6.5	C
4399	3907910000	불포화의 것	6.5	C
4400	3907991000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6.5	A
4401	3907992000	열가소성의 액정 방향족 폴리에스테르 공중합체	0	A
4402	3907999000	기타	6.5	C
4403	3908101000	폴리아미드 -6	6.5	A
4404	3908102000	폴리아미드 -6,6	6.5	A
4405	3908103000	폴리아미드 -11, -12, -6,9, -6,10 또는 -6,12	6.5	A
4406	3908900000	기타	6.5	A
4407	3909100000	요소수지와 티오요소수지	6.5	C
4408	3909200000	멜라민수지	6.5	X
4409	3909310000	폴리(메틸렌 페닐 이소시아네이트)(크루드 엠디아이, 중합 엠디아이)	6.5	X
4410	3909390000	기타	6.5	C
4411	3909400000	페놀수지	6.5	C
4412	3909500000	폴리우레탄	6.5	X
4413	3910001000	반도체 제조용	6.5	A
4414	3910009010	실리콘오일	6.5	A

4415	3910009020	실리콘고무	6.5	A
4416	3910009090	기타	6.5	A
4417	3911101000	석유수지	8	C
4418	3911102000	쿠마론・인덴이나 쿠마론-인덴수지	8	A
4419	3911103000	폴리테르펜	8	A
4420	3911200000	폴리(1,3-페닐렌 메틸포스포네이트)	6.5	C
4421	3911901000	폴리술파이드	6.5	A
4422	3911902000	폴리술폰	6.5	A
4423	3911903000	푸란수지	6.5	A
4424	3911909000	기타	6.5	C
4425	3912110000	가소화하지 않은 것	5	A
4426	3912120000	가소화한 것	5	A
4427	3912200000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6.5	A
4428	3912311000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나트륨	6.5	A
4429	3912319000	기타	6.5	A
4430	3912391000	메틸셀룰로오스	6.5	A
4431	3912399000	기타	6.5	A
4432	3912900000	기타	6.5	A
4433	3913101000	알긴산 나트륨	6.5	A
4434	3913102000	알긴산 프로필렌 글리콜	6.5	A
4435	3913109000	기타	6.5	A
4436	3913902010	염화고무	6.5	A
4437	3913902090	기타	6.5	A
4438	3913909000	기타	6.5	A
4439	3914001000	양이온성의 것	6.5	A
4440	3914009000	기타	6.5	A
4441	3915101000	제조 당시 필름・시트(sheet)・판・박(箔) 상태의 것	6.5	C
4442	3915102000	제조 당시 파이프・호스 상태의 것	6.5	C
4443	3915103000	제조 당시 플라스틱 절연전선의 것	6.5	C
4444	3915104000	기타, 폴리에틸렌(PE)으로 만든 것	6.5	C
4445	3915109000	기타	6.5	C
4446	3915201000	제조 당시 양식용 부자의 것	6.5	A
4447	3915209000	기타	6.5	A
4448	3915301000	제조 당시 플라스틱 절연전선의 것	6.5	A
4449	3915309000	기타	6.5	A
4450	3915901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4451	3915902000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4452	3915903000	폴리아세탈수지로 만든 것	6.5	A
4453	391590400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6.5	C
4454	3915905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6.5	A
4455	3915909010	제조 당시 플라스틱 포장재의 것	6.5	C
4456	3915909020	펠릿, 플레이크, 분말 형태의 것	6.5	C
4457	3915909030	액상 상태의 것	6.5	C
4458	3915909090	기타	6.5	C
4459	391610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4460	391620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4461	3916901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4462	3916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4463	3916903000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4464	3916904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6.5	A
4465	3916909000	기타	6.5	A

4466	3917101000	경화 단백질로 만든 것	6.5	A
4467	3917102000	셀룰로오스 물질로 만든 것	6.5	A
4468	391721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4469	391722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4470	391723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4471	3917292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6.5	A
4472	3917299000	기타	6.5	A
4473	391731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4474	391731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4475	3917319000	기타	6.5	A
4476	391732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4477	391732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4478	3917329000	기타	6.5	A
4479	391733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4480	391733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4481	3917339000	기타	6.5	A
4482	391739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4483	391739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4484	3917399000	기타	6.5	B
4485	3917400000	연결구류	6.5	A
4486	391810100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6.5	A
4487	3918102000	염화비닐과 초산비닐의 공중합체로 만든 것	6.5	A
4488	3918109000	기타	6.5	A
4489	391890000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6.5	A
4490	3919100000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6.5	A
4491	3919900000	기타	6.5	A
4492	392010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4493	392020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4494	3920300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B
4495	3920430000	전 중량의 100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6.5	A
4496	3920490000	기타	6.5	A
4497	3920510000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로 만든 것	6.5	A
4498	3920590000	기타	6.5	A
4499	392061000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6.5	A
4500	39206200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6.5	A
4501	392063000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6.5	A
4502	3920690000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6.5	A
4503	3920710000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6.5	A
4504	3920730000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6.5	A
4505	392079100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6.5	A
4506	3920799000	기타	6.5	A
4507	3920910000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6.5	A
4508	3920920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6.5	A
4509	3920930000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6.5	A
4510	3920940000	페놀수지로 만든 것	6.5	A
4511	3920991000	항공기용	6.5	A
4512	3920999010	폴리이미드 필름(리드프레임의 기능을 하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4	A
4513	3920999020	불화폴리이미드로 만든 것	6.5	A
4514	3920999090	기타	6.5	A
4515	3921110000	스티렌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4516	3921120000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4517	392113000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6.5	A
4518	3921140000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6.5	A
4519	3921191010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4	A
4520	3921191090	기타	6.5	B
4521	3921192010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4	A
4522	3921192090	기타	6.5	A
4523	3921193010	폴리메틸메타클레이트로 만든 것	6.5	A
4524	3921193090	기타	6.5	A
4525	392119401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6.5	A
4526	39211940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6.5	A
4527	392119403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6.5	A
4528	3921194090	기타	6.5	A
4529	3921195000	그 밖의 셀룰로오스나 그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6.5	A
4530	392119902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6.5	A
4531	3921199040	페놀수지로 만든 것	6.5	A
4532	3921199090	기타		
		-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6.5	A
		-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6.5	A
		- 기타	6.5	C
4533	392190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4534	3921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4535	3921903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4536	3921904010	경질의 것	6.5	A
4537	3921904020	연질의 것	6.5	C
4538	3921905000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4539	392190601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6.5	A
4540	39219060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6.5	A
4541	392190603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6.5	A
4542	3921906090	기타	6.5	A
4543	3921907000	셀룰로오스나 그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6.5	A
4544	3921909010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6.5	A
4545	392190902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6.5	A
4546	3921909030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6.5	A
4547	3921909040	페놀수지로 만든 것	6.5	A
4548	392190905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6.5	A
4549	3921909090	기타	6.5	C
4550	3922101000	목욕통과 샤워통	6.5	A
4551	3922102000	세면대	6.5	A
4552	3922103000	설거지통	6.5	A
4553	3922200000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6.5	A
4554	3922901000	비데	6.5	A
4555	3922909000	기타	6.5	A
4556	3923100000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6.5	B
4557	3923210000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6.5	B
4558	392329000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6.5	C
4559	3923300000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6.5	A
4560	3923400000	스풀(spool)・콥(cop)・보빈(bobbin)과 이와 유사한 물품	6.5	B
4561	3923500000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6.5	A
4562	3923900000	기타	6.5	B
4563	392410000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6.5	B

4564	3924901000	비누접시와 통	6.5	A
4565	3924902000	탁상보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6.5	A
4566	3924909000	기타	6.5	C
4567	3925100000	저장기・탱크・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5	A
4568	392520000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6.5	A
4569	3925300000	셔터・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	6.5	A
4570	3925900000	기타	6.5	C
4571	3926101000	필통과 지우개	6.5	A
4572	3926102000	바인더	6.5	A
4573	3926109000	기타	6.5	A
4574	3926200000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한다)	6.5	A
4575	3926300000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6.5	A
4576	3926400000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	6.5	A
4577	3926901000	기계용의 부분품	6.5	B
4578	3926902000	부채・핸드스크린(기계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살・자루(살・자루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6.5	A
4579	3926903000	레이블과 태그	6.5	A
4580	3926904000	케이스를 갖춘 접착테이프	6.5	A
4581	3926905000	그림틀・사진틀・거울틀과 이와 유사한 틀	6.5	A
4582	3926906000	앨범	6.5	A
4583	3926909000	기타	6.5	A
4584	4001100000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pre-vulcanised) 것인지에 상관없다]	0	A
4585	4001210000	스모크드 시트(smoked sheet)	0	A
4586	4001220000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0	A
4587	4001290000	기타	0	A
4588	4001300000	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율(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	2	A
4589	4002110000	라텍스	8	C
4590	4002190000	기타	8	X
4591	4002201000	라텍스	8	X
4592	4002209000	기타	8	C
4593	4002311000	라텍스	5	A
4594	4002319000	기타	5	X
4595	4002391000	라텍스	5	A
4596	4002399010	염화부틸고무(CIIR)의 것	5	A
4597	4002399020	브롬화 부틸고무(BIIR)의 것	5	C
4598	4002410000	라텍스	8	A
4599	4002490000	기타	8	A
4600	4002510000	라텍스	8	C
4601	4002590000	기타	8	C
4602	4002600000	이소프렌 고무(IR)	8	A
4603	4002700000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EPDM)		
		- 라텍스	8	A
		- 기타	8	C
4604	4002800000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	8	A
4605	4002910000	라텍스	8	A
4606	4002991000	카르복시화한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고무(XNBR)의 것	8	A
4607	4002999000	기타		
		- 아크릴로니트릴 이소프렌고무(NIR)의 것	8	A

		- 티오플라스트(TM)	8	A
		- 기타	8	C
4608	4003000000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8	C
4609	4004001010	제87류 자동차용의 타이어의 것	3	B
4610	4004001090	기타	3	B
4611	4004002000	합성고무(타이어를 제외한다)의 것	3	B
4612	4004009000	기타	3	B
4613	4005101000	판·시트(sheet)·스트립	8	A
4614	4005109000	기타	8	A
4615	4005200000	용액과 분산액(소호 제4005.10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8	A
4616	4005910000	판·시트(sheet)·스트립	8	A
4617	4005990000	기타	8	A
4618	4006100000	고무타이어 재생용 "캐멀-백(camel-back)" 스트립	8	A
4619	4006904000	고무디스크·링·와셔	8	A
4620	4006909000	기타	8	A
4621	4007001000	고무실	5	A
4622	4007002000	고무끈	8	A
4623	4008111000	보강을 위하여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8	A
4624	4008119000	기타	8	A
4625	4008191000	보강을 위하여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8	A
4626	4008199000	기타	8	A
4627	4008211000	보강을 위해서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8	A
4628	4008219000	기타	8	A
4629	4008291000	보강을 위해서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8	A
4630	4008299000	기타	8	A
4631	40091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8	A
4632	40091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A
4633	40092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8	A
4634	40092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A
4635	40093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8	A
4636	40093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A
4637	40094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8	A
4638	40094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A
4639	4010110000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8	A
4640	4010120000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8	A
4641	4010191000	플라스틱으로만 보강된 것	8	A
4642	4010199000	기타	8	A
4643	401031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A
4644	401032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8	A
4645	401033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A
4646	401034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8	A
4647	4010350000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50센티미터 이하인 것	8	A

4648	4010360000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센티미터 초과 198센티미터 이하인 것	8	A
4649	4010390000	기타	8	A
4650	4011101000	래디알 구조의 것	5	A
4651	4011102000	바이어스 구조의 것	5	A
4652	4011109000	기타	5	A
4653	4011201010	림의 지름이 49.53센티미터 미만인 것	5	A
4654	4011201090	기타	5	A
4655	4011202010	림의 지름이 49.53센티미터 미만인 것	5	A
4656	4011202090	기타	5	A
4657	4011209000	기타	5	A
4658	4011300000	항공기용	5	A
4659	4011400000	모터사이클용	5	A
4660	4011500000	자전거용	5	A
4661	4011701000	헤링본(herring-bone)이나 이와 유사한 트레드(tread)가 있는 것	5	A
4662	4011709000	기타	5	A
4663	4011801010	림(rim)의 지름이 61센티미터 이하인 것	5	A
4664	4011801090	기타	5	A
4665	4011809010	림(rim)의 지름이 61센티미터 이하인 것	5	A
4666	4011809090	기타	5	A
4667	4011900000	기타	5	A
4668	401211000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8	A
4669	4012120000	버스용・화물자동차용	8	A
4670	4012130000	항공기용	5	A
4671	4012190000	기타	8	A
4672	4012201000	항공기용	5	A
4673	401220901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8	A
4674	4012209020	버스용이나 화물차용의 것	8	A
4675	4012209090	기타	8	A
4676	4012901000	항공기용	5	A
4677	4012909010	솔리드 타이어	8	A
4678	4012909020	쿠션 타이어	8	A
4679	4012909030	타이어트레드	8	A
4680	4012909040	타이어 플랩	8	A
4681	4012909090	기타	8	A
4682	401310100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8	A
4683	4013102000	버스・화물차용	8	A
4684	4013200000	자전거용	8	A
4685	4013901000	항공기용	5	A
4686	4013909010	모터싸이클・모터스쿠터용	8	A
4687	4013909020	산업용・농경용	8	A
4688	4013909090	기타	8	A
4689	4014100000	콘돔	8	A
4690	4014901000	젖꼭지	8	B
4691	4014909000	기타	8	A
4692	4015120000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8	A
4693	4015190000	기타	8	A

4694	4015901000	잠수복	8	A
4695	4015902000	방사선 방호복	8	A
4696	4015909000	기타	8	A
4697	4016100000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8	A
4698	4016910000	바닥깔개와 매트	8	A
4699	4016920000	지우개	8	A
4700	4016930000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	8	B
4701	4016940000	보트나 도크펜더(dock fender)(공기주입식인지에 상관없다)	8	A
4702	4016951000	공기 매트리스	8	A
4703	4016952000	베개	8	A
4704	4016953000	쿠션	8	A
4705	4016959000	기타	8	A
4706	4016991010	기구·비행선·비행기계류·글라이더·연과 로토슈트의 부품	0	A
4707	4016991090	기타	8	A
4708	4016992000	고무밴드	8	A
4709	4016993000	병마개	8	A
4710	4016999000	기타	8	A
4711	4017001000	경질고무(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제외한다)	8	A
4712	4017002000	경질고무의 제품	8	A
4713	4017003000	경질고무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8	A
4714	4101201000	유연처리하지 않은 원피	0	A
4715	41012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A
4716	4101501011	카우하이드(cow hide)	0	A
4717	4101501012	스티어하이드(steer hide)	0	A
4718	4101501013	옥스하이드(ox hide)	0	A
4719	4101501014	불하이드(bull hide)	0	A
4720	4101501019	기타	0	A
4721	4101501021	카우하이드(cow hide)	0	A
4722	4101501022	스티어하이드(steer hide)	0	A
4723	4101501023	옥스하이드(ox hide)	0	A
4724	4101501024	불하이드(bull hide)	0	A
4725	4101501029	기타	0	A
4726	4101501090	기타	0	A
4727	41015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A
4728	4101901010	버트(butt)와 벤드(bend)	0	A
4729	4101901091	송아지의 원피	0	A
4730	4101901099	기타	0	A
4731	41019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A
4732	4102100000	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	A
4733	4102211000	유연처리하지 않은 원피	0	A
4734	410221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A
4735	4102291000	유연처리하지 않은 원피	0	A
4736	410229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A
4737	4103201010	뱁의 원피	0	A
4738	4103201030	악어의 원피	0	A

4739	4103201090	기타	0	A
4740	41032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A
4741	4103301000	유연처리하지 않은 원피	0	A
4742	41033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A
4743	4103901010	장어류의 원피	0	A
4744	4103901020	캥거루의 원피	0	A
4745	4103901030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의 원피	0	A
4746	4103901090	기타	0	A
4747	41039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A
4748	4104110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3	A
4749	4104190000	기타	3	A
4750	4104410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3	A
4751	4104490000	기타	3	A
4752	410510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3	A
4753	410530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3	C
4754	410621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3	A
4755	410622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3	A
4756	410631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5	A
4757	410632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5	A
4758	4106400000	파충류의 원피	5	A
4759	410691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5	A
4760	410692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5	A
4761	4107110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5	A
4762	4107120000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5	A
4763	4107190000	기타	5	A
4764	4107910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5	A
4765	4107920000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5	A
4766	4107990000	기타	5	A
4767	4112000000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5	C
4768	4113100000	염소의 가죽	5	A
4769	4113200000	돼지의 가죽	5	A
4770	4113300000	파충류의 가죽	5	A
4771	4113900000	기타	5	A
4772	4114100000	샤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샤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5	A
4773	4114201000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5	A
4774	4114202000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5	A
4775	4114203000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5	A
4776	4115100000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8	A
4777	4115200000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3	A
4778	4201002000	끈	8	X

4779	4201009000	기타	8	X
4780	4202111000	가죽으로 만든 것	8	A
4781	4202112000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8	A
4782	42021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8	A
4783	42021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8	A
4784	42021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8	A
4785	4202121090	기타	8	A
4786	42021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A
4787	4202190000	기타	8	A
4788	420221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8	A
4789	420221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8	A
4790	42022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8	A
4791	4202211090	기타	8	A
4792	4202212000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8	A
4793	42022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8	A
4794	42022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8	A
4795	42022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8	A
4796	4202221090	기타	8	A
4797	42022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A
4798	4202290000	기타	8	A
4799	42023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8	A
4800	4202311090	기타	8	A
4801	4202312000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8	A
4802	42023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8	A
4803	42023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8	A
4804	42023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8	A
4805	4202321090	기타	8	A
4806	42023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A
4807	4202390000	기타	8	A
4808	4202911000	가죽으로 만든 것	8	A
4809	4202912000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8	A
4810	42029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8	A
4811	42029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8	A
4812	42029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8	A
4813	4202921090	기타	8	A
4814	42029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A
4815	4202991000	판지로 만든 것	8	A
4816	4202999000	기타	8	A
4817	4203101010	코트류	13	A
4818	4203101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13	A
4819	4203101060	바지류	13	A
4820	4203101090	기타	13	A
4821	4203102000	돼지 가죽으로 만든 것	13	A
4822	4203103010	코트류	13	A
4823	4203103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13	A
4824	4203103050	조끼류	13	A
4825	4203103060	바지류	13	A
4826	4203103070	스커트류	13	A
4827	4203103090	기타	13	A
4828	4203109010	코트류	13	A
4829	4203109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13	A

4830	4203109090	기타	13	A
4831	4203211000	야구장갑	13	A
4832	4203212000	골프장갑	13	A
4833	4203213000	스키장갑	13	A
4834	4203214000	모터싸이클장갑	13	A
4835	4203215000	배팅장갑	13	A
4836	4203219000	기타	13	A
4837	4203291000	작업용 장갑	13	A
4838	4203292000	방한용 장갑	13	A
4839	4203299000	기타	13	A
4840	420330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13	A
4841	4203301090	기타	13	A
4842	4203309000	기타	13	A
4843	4203400000	그 밖의 의류 부속품	13	A
4844	4205001100	기계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가죽제품	8	A
4845	4205001900	그 밖의 가죽제품	8	A
4846	4205002100	기계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	8	A
4847	4205002900	그 밖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	8	A
4848	4206000000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골드비터 스킨(goldbeater skin)·방광·건(腱)의 제품	8	A
4849	4301100000	밍크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3	A
4850	430130000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브로드테일(Broadtail)·카라쿨(Caracul)·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중국·몽고·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3	A
4851	4301600000	여우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3	A
4852	4301802000	오파섬(opossum)의 것	3	A
4853	4301803000	라쿤(raccoon)의 것	3	A
4854	4301804000	코요테의 것	3	A
4855	4301805000	토끼의 것	3	A
4856	4301806000	사향쥐의 것	3	A
4857	4301809000	기타	3	A
4858	4301900000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3	A
4859	4302110000	밍크의 것	5	A
4860	4302191000	비버(beaver)의 것	5	A
4861	4302192000	사향쥐의 것	5	A
4862	4302193000	여우의 것	5	A
4863	4302195000	친칠라의 것	5	A
4864	4302196000	오파섬(opossum)의 것	5	A
4865	4302197000	라쿤(raccoon)의 것	5	A
4866	4302198000	코요테의 것	5	A
4867	4302199010	면양의 것	5	A
4868	430219902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브로드테일(Broadtail)·카라쿨(Caracul)·페르시아와 이와 유사한 어린 양·인도·중국·몽고나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5	A
4869	4302199090	기타	5	A
4870	4302201000	밍크의 것	5	A

4871	4302202000	토끼의 것	5	A
4872	4302203000	비버(beaver)의 것	5	A
4873	4302204000	사향쥐의 것	5	A
4874	4302205000	여우의 것	5	A
4875	4302207000	친칠라의 것	5	A
4876	4302209020	라쿤(raccoon)의 것	5	A
4877	4302209030	코요테의 것	5	A
4878	4302209090	기타	5	A
4879	4302300000	전신 모피와 그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4880	4303101100	밍크의 것	16	A
4881	4303101200	토끼의 것	16	A
4882	4303101300	어린 양의 것	16	A
4883	4303101600	여우의 것	16	A
4884	4303101900	기타	16	A
4885	4303102100	밍크의 것	16	A
4886	4303102200	토끼의 것	16	A
4887	4303102600	여우의 것	16	A
4888	4303102920	라쿤(raccoon)의 것	16	A
4889	4303102990	기타	16	A
4890	4303900000	기타	16	A
4891	4304001000	인조모피	8	A
4892	4304002000	인조모피의 제품	8	A
4893	4401110000	침엽수류	2	A
4894	4401120000	활엽수류	2	A
4895	4401210000	침엽수류	2	A
4896	4401221000	펄프 제조용	0	A
4897	4401229000	기타	2	A
4898	4401310000	목재 펠릿(pellet)	2	A
4899	4401320000	목재 브리켓(briquette)	2	A
4900	4401390000	기타	2	A
4901	4401410000	톱밥	2	A
4902	4401490000	기타	2	A
4903	4402101000	성형 목탄	2	B
4904	4402109000	기타	2	B
4905	4402201000	성형 목탄	2	B
4906	4402209000	기타	2	A
4907	4402901010	구이용	2	B
4908	4402901090	기타	2	B
4909	4402909010	백탄	2	A
4910	4402909090	기타	2	A
4911	4403110000	침엽수류	0	A
4912	4403121000	열대산 목재	0	A
4913	4403129000	기타	0	A
4914	4403211000	적송	0	A
4915	4403212000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	0	A
4916	4403219000	기타	0	A
4917	4403221000	적송	0	A
4918	4403222000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	0	A
4919	4403229000	기타	0	A
4920	4403231000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	0	A
4921	4403232000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속]	0	A

4922	4403241000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	0	A
4923	4403242000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속]	0	A
4924	4403251000	삼나무	0	A
4925	4403252010	더글러스퍼(Douglas fir)	0	A
4926	4403252020	헴록(hemlock)	0	A
4927	4403252090	기타	0	A
4928	4403254000	전나무류[아비에스(Abies)속을 제외한다]	0	A
4929	4403255000	편백나무	0	A
4930	4403259000	기타	0	A
4931	4403261000	삼나무	0	A
4932	4403262010	더글러스퍼(Douglas fir)	0	A
4933	4403262020	헴록(hemlock)	0	A
4934	4403262090	기타	0	A
4935	4403264000	전나무류[아비에스(Abies)속을 제외한다]	0	A
4936	4403265000	편백나무	0	A
4937	4403269000	기타	0	A
4938	4403410000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0	A
4939	4403420000	티크(Teak)	0	A
4940	4403491000	화이트라왕(White Lauan)·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아란(Alan)	0	A
4941	4403492000	케루잉(Keruing)·라민(Ramin)·카풀(Kapur)·종콩(Jongkong)·멜바우(Merbau)·제루통(Jelutong)·켐파스(Kempas)	0	A
4942	4403493000	오꾸메(Okoumé)·오베체(Obeche)·사펠리(Sapelli)·시포(Sipo)·아까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마코레(Makoré)·이로코(Iroko)	0	A
4943	4403494000	티아마(Tiama)·만소니아(Mansonia)·이롬바(Ilomba)·디베토우(Dibétou)·림바(Limba)·아조베(Azobé)	0	A
4944	4403495000	마호가니(Mahogany)와 발사(Balsa)	0	A
4945	4403499000	기타	0	A
4946	4403910000	참나무[코커스(Quercus)속]	0	A
4947	4403930000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속]의 것(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4948	4403940000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속]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0	A
4949	4403950000	자작나무[베툴라(Betula)속]의 것(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4950	4403960000	자작나무[베툴라(Betula)속]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0	A
4951	4403971000	포플러	0	A
4952	4403972000	사시나무	0	A
4953	4403980000	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속]의 것	0	A
4954	4403991010	자단(rosewood)	0	A
4955	4403991020	흑단(ebony wood)	0	A
4956	4403991040	물푸레나무	0	A
4957	4403991050	호두나무	0	A
4958	4403991090	기타	0	A
4959	4403992000	리그넘 바이티(Lignum vitae)	0	A
4960	4403993030	단풍나무	0	A
4961	4403993040	느릅나무	0	A
4962	4403993060	피나무	0	A

4963	4403994000	오동나무	0	A
4964	4403999000	기타	0	A
4965	4404100000	침엽수류	5	B
4966	4404200000	활엽수류	5	B
4967	4405000000	목모(wood wool)와 목분(wood flour)	5	B
4968	4406110000	침엽수류	5	B
4969	4406120000	활엽수류	5	B
4970	4406910000	침엽수류	5	B
4971	4406920000	활엽수류	5	B
4972	4407111010	방부처리한 것	5	B
4973	4407111020	난연처리한 것	5	B
4974	4407111090	기타	5	B
4975	4407112000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	5	B
4976	4407119000	기타	5	B
4977	4407121000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	5	B
4978	4407122010	방부처리한 것	5	B
4979	4407122020	난연처리한 것	5	B
4980	4407122090	기타	5	B
4981	4407131000	방부처리한 것	5	B
4982	4407132000	난연처리한 것	5	B
4983	4407139000	기타	5	B
4984	4407140000	헴퍼(Hem-fir)[웨스턴 헴록(Western hemlock)(트수가 헤테로필라(Tsuga heterophylla))과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의 것	5	B
4985	4407191000	삼나무	5	B
4986	4407192010	더글러스퍼(Douglas fir)	5	B
4987	4407192020	헴록(hemlock)	5	B
4988	4407192090	기타	5	B
4989	4407193000	전나무류[아비에스(Abies)속을 제외한다]	5	B
4990	4407194000	낙엽송	5	B
4991	4407195000	편백나무	5	B
4992	4407199000	기타	5	B
4993	4407210000	마호가니(Mahogany)[스웨테니아(Swietenia)속]	5	B
4994	4407220000	비롤라(Virola)·임부아(Imbua)·발사(Balsa)	5	B
4995	4407230000	티크(Teak)	5	B
4996	4407250000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5	B
4997	4407260000	화이트라왕(White Lauan)·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아란(Alan)	5	B
4998	4407270000	사펠리(Sapelli)	5	B
4999	4407280000	이로코(Iroko)	5	B
5000	4407291000	케루잉(Keruing)·라민(Ramin)·카풀(Kapur)·종콩(Jongkong)·멜바우(Merbau)·제루통(Jelutong)·켐파스(Kempas)	5	B
5001	4407293000	오꾸메(Okoumé)·오베체(Obeche)·시포(Sipo)·아까주 다푸리케(Acajou d'Afrique)·마꼬레(Makoré)·티아마(Tiama)·만소니아(Mansonia)·이롬바(Ilomba)·디베토우(Dibétou)·림바(Limba)·아조베(Azobé)	5	B
5002	4407299000	기타	5	B
5003	4407910000	참나무[코커스(Quercus)속]	5	B
5004	4407920000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속]	5	B

5005	4407930000	단풍나무[아세르(Acer)속]	5	B
5006	4407940000	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속]	5	B
5007	4407950000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Fraxinus)속]	5	B
5008	4407960000	자작나무[베툴라(Betula)속]의 것	5	B
5009	4407971000	포플러	5	B
5010	4407972000	사시나무	5	B
5011	4407991010	자단(rosewood)	5	B
5012	4407991020	흑단(ebony wood)	5	B
5013	4407991040	호두나무	5	B
5014	4407991090	기타	5	B
5015	4407992000	리그넘 바이티(Lignum vitae)	5	B
5016	4407993040	느릅나무	5	B
5017	4407993060	피나무	5	B
5018	4407994000	오동나무	5	B
5019	4407999000	기타	5	B
5020	4408106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8	B
5021	4408109100	합판 제조용	2	B
5022	4408109200	무늬목	3	B
5023	4408109910	삼나무	5	B
5024	4408109920	미송	5	B
5025	4408109950	낙엽송	5	B
5026	4408109960	가문비나무	5	B
5027	4408109990	기타	5	B
5028	4408313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8	B
5029	4408319011	합판 제조용	2	B
5030	4408319012	무늬목	3	B
5031	4408319019	기타	5	B
5032	4408319021	합판 제조용	2	B
5033	4408319022	무늬목	3	B
5034	4408319029	기타	5	B
5035	4408396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8	B
5036	4408399011	합판 제조용	2	B
5037	4408399012	무늬목	3	B
5038	4408399019	기타	5	B
5039	4408399021	합판 제조용	2	B
5040	4408399022	무늬목	3	B
5041	4408399029	기타	5	B
5042	4408399031	합판 제조용	2	B
5043	4408399032	무늬목	3	B
5044	4408399039	기타	5	B
5045	4408399041	합판 제조용	2	B
5046	4408399042	무늬목	3	B
5047	4408399049	기타	5	B
5048	4408399051	합판 제조용	2	B
5049	4408399052	무늬목	3	B
5050	4408399059	기타	5	B
5051	4408399091	합판 제조용	2	B
5052	4408399092	무늬목	3	B

5053	4408399099	기타	5	B
5054	4408901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8	B
5055	4408909150	합판 제조용	2	B
5056	4408909160	무늬목	3	B
5057	4408909191	자단(Rosewood)	5	B
5058	4408909192	흑단(Ebony wood)	5	B
5059	4408909193	물푸레나무	5	B
5060	4408909194	호두나무	5	B
5061	4408909195	참나무	5	B
5062	4408909199	기타	5	B
5063	4408909210	합판 제조용	2	B
5064	4408909220	무늬목	3	B
5065	4408909290	기타	5	B
5066	4408909370	합판 제조용	2	B
5067	4408909380	무늬목	3	B
5068	4408909391	사시나무	5	B
5069	4408909392	포플러	5	B
5070	4408909393	단풍나무	5	B
5071	4408909394	느릅나무	5	B
5072	4408909395	자작나무	5	B
5073	4408909396	피나무	5	B
5074	4408909410	합판 제조용	2	B
5075	4408909420	무늬목	3	B
5076	4408909490	기타	5	B
5077	4408909910	합판 제조용	2	B
5078	4408909920	무늬목	3	B
5079	4408909990	기타	5	B
5080	4409101000	벽판재	8	B
5081	4409102000	바닥재	8	B
5082	4409109000	기타	8	B
5083	4409210000	대나무로 만든 것	8	B
5084	4409221000	벽판재	8	B
5085	4409222000	바닥재	8	B
5086	4409229000	기타	8	B
5087	4409291000	벽판재	8	B
5088	4409292000	바닥재	8	B
5089	4409299000	기타	8	B
5090	441011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8	X
5091	4410112000	멜라민을 침투한 종이로 표면을 피복한 것	8	X
5092	4410119000	기타	8	X
5093	441012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8	X
5094	4410129000	기타	8	X
5095	4410191000	웨이퍼보드	8	X
5096	4410199000	기타	8	X
5097	4410900000	기타	8	X
5098	4411121000	기계적 가공과 표면 피복을 모두 하지 않은 것	8	X
5099	4411129000	기타	8	X
5100	4411131000	기계적 가공과 표면 피복을 모두 하지 않은 것	8	X
5101	4411139000	기타	8	X
5102	4411141000	기계적 가공과 표면 피복을 모두 하지 않은 것	8	X

5103	4411149010	마루판	8	X
5104	4411149090	기타	8	X
5105	4411921000	기계적 가공과 표면 피복을 모두 하지 않은 것	8	X
5106	4411929010	마루판	8	X
5107	4411929090	기타	8	X
5108	4411931000	기계적 가공과 표면 피복을 모두 하지 않은 것	8	X
5109	4411939010	마루판	8	X
5110	4411939090	기타	8	X
5111	4411941000	기계적 가공과 표면 피복을 모두 하지 않은 것	8	X
5112	4411949000	기타	8	X
5113	4412101010	두께가 6밀리미터 미만인 것	8	X
5114	441210102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8	X
5115	4412102000	마루판	8	X
5116	441210901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8	X
5117	4412109090	기타	8	X
5118	4412311000	두께가 3.2밀리미터 미만인 것	8	X
5119	44123120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8	X
5120	4412312090	기타	8	X
5121	4412313000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미만인 것	8	X
5122	441231401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8	X
5123	4412314019	기타	10	X
5124	441231402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10	X
5125	4412314029	기타	10	X
5126	44123150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10	X
5127	4412315090	기타	10	X
5128	44123160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10	X
5129	4412316090	기타	10	X
5130	44123170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10	X
5131	4412317090	기타	10	X
5132	4412331000	두께가 3.2밀리미터 미만인 것	8	X
5133	4412332000	두께가 3.2밀리미터 이상 4밀리미터 미만인 것	8	X
5134	4412333000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미만인 것	8	X
5135	441233401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X
5136	4412334020	두께가 8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X
5137	4412335000	두께가 10밀리미터 이상 12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X
5138	4412336000	두께가 12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X
5139	4412337000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X
5140	4412341000	두께가 3.2밀리미터 미만인 것	8	X
5141	4412342000	두께가 3.2밀리미터 이상 4밀리미터 미만인 것	8	X
5142	4412343000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미만인 것	8	X
5143	441234401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X
5144	4412344020	두께가 8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X
5145	4412345000	두께가 10밀리미터 이상 12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X
5146	4412346000	두께가 12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X
5147	4412347000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X

5148	4412391000	두께가 6밀리미터 미만인 것	8	X
5149	4412399000	기타	10	X
5150	441241100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X
5151	4412419000	기타	8	X
5152	441242100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X
5153	4412429000	기타	8	X
5154	441249100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X
5155	4412499000	기타	8	X
5156	441251000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8	X
5157	4412520000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8	X
5158	4412590000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8	X
5159	4412911000	합판	10	X
5160	441291911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X
5161	4412919190	기타	8	X
5162	441291991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X
5163	4412919990	기타	8	X
5164	4412921000	합판	10	X
5165	441292911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X
5166	4412929190	기타	8	X
5167	441292991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X
5168	4412929990	기타	8	X
5169	4412991000	합판	10	X
5170	441299911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8	X
5171	4412999190	기타	8	X
5172	441299991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X
5173	4412999990	기타	8	X
5174	4413000000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플레이트(plate) 모양・스트립(strip) 모양・프로파일(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8	X
5175	4414100000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8	X
5176	4414900000	기타	8	X
5177	4415100000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블드럼	8	X
5178	4415200000	팰릿(pallet)・박스팰릿(box pallet)・그 밖의 깔판류, 목재로 만든 팰릿칼러(pallet collar)	8	X
5179	4416000000	목재로 만든 통・배럴(barrel)・배트(vat)・텁(tub)・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와 준재를 포함한다)	8	X
5180	4417000000	목재로 만든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나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목재로 만든 신발의 골	8	X
5181	4418110000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8	B
5182	4418190000	기타	8	B
5183	4418210000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8	B
5184	4418290000	기타	8	B

5185	4418300000	기둥과 들보(소호 제4418.81호부터 제4418.89호까지의 물품을 제외한다)	8	B
5186	4418400000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 거푸집널	8	B
5187	4418500000	지붕을 이는 판자	8	B
5188	441873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5	B
5189	4418739000	기타	5	B
5190	441874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8	B
5191	4418749000	기타	8	B
5192	441875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8	B
5193	4418759000	기타	8	B
5194	441879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8	B
5195	4418799000	기타	8	B
5196	4418810000	집성재[글루램(glulam)]	8	B
5197	4418820000	직교집성판[씨엘티(CLT)나 엑스-램(X-lam)]	8	B
5198	4418830000	아이빔(I beam)	8	B
5199	4418890000	기타	8	B
5200	4418910000	대나무로 만든 것	8	B
5201	4418920000	셀룰러우드패널	8	B
5202	4418992000	집성판	8	B
5203	4418999000	기타	8	B
5204	4419110000	빵도마, 도마 및 이와 유사한 판	8	B
5205	4419120000	젓가락	8	B
5206	4419190000	기타	8	B
5207	4419201000	빵도마, 도마 및 이와 유사한 판	8	B
5208	4419202000	대접(공기)	8	B
5209	4419203000	젓가락	8	B
5210	4419209000	기타	8	B
5211	4419901000	빵도마, 도마 및 이와 유사한 판	8	B
5212	4419902000	대접(공기)	8	B
5213	4419903000	젓가락	8	B
5214	4419909000	기타	8	B
5215	4420110000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8	B
5216	4420190000	기타	8	B
5217	4420902000	칠기제품(나전칠기 제품을 포함한다)	8	B
5218	4420909010	담배용 상자와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8	B
5219	4420909020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가구	8	B
5220	4420909090	기타	8	B
5221	4421100000	옷걸이	8	B
5222	4421200000	관(棺)	8	B
5223	4421913000	이쑤시개	8	B
5224	4421915000	부채·핸드스크린(기계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이들의 살과 자루(살·자루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8	B
5225	4421919000	기타	8	B
5226	4421991000	스풀·콥·보빈·재봉사 릴과 이와 유사한 것(선반가공한 목재의 것으로 한정한다)	8	B
5227	4421993000	이쑤시개	8	B
5228	4421994000	포장용의 목재블록	8	B
5229	4421995000	부채·핸드스크린(기계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이들의 살과 자루(살·자루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8	B
5230	4421999000	기타	8	B
5231	4501100000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8	B

5232	4501900000	기타	8	B
5233	4502000000	천연 코르크(cork)[외피를 제거한 것, 거칠게 각을 만든 것,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판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strip)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고, 각이 예리한 마개용 블랭크(blank)를 포함한다]	8	B
5234	4503100000	마개	8	B
5235	4503900000	기타	8	B
5236	4504100000	블록・판・시트(sheet)・스트립(strip)・타일(어떤 모양이라도 상관없다)・솔리드실린더(solid cylinder)(디스크를 포함한다)	8	B
5237	4504900000	기타	8	B
5238	4601211000	매트류	8	A
5239	4601212000	발	8	A
5240	4601220000	등나무로 만든 것	8	A
5241	4601290000	기타	8	A
5242	4601920000	대나무로 만든 것	8	A
5243	4601930000	등나무로 만든 것	8	A
5244	4601940000	그 밖의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	8	A
5245	4601990000	기타	8	A
5246	4602111000	바구니	8	B
5247	4602119000	기타	8	B
5248	4602120000	등나무로 만든 것	8	B
5249	4602191000	골풀제품	8	A
5250	4602199000	기타	8	A
5251	4602900000	기타	8	A
5252	4701001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A
5253	470100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0	A
5254	4702000000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0	A
5255	4703110000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A
5256	4703190000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A
5257	4703211000	반표백한 것	0	A
5258	4703212000	표백한 것	0	A
5259	4703291000	반표백한 것	0	A
5260	4703292000	표백한 것	0	A
5261	4704110000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A
5262	4704190000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A
5263	4704210000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A
5264	4704290000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A
5265	4705000000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0	A
5266	4706100000	면 린터 펄프(cotton linters pulp)	0	A
5267	4706200000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0	A
5268	4706300000	기타(대나무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A
5269	4706911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A
5270	470691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0	A
5271	4706921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A
5272	470692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0	A
5273	4706931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A
5274	470693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0	A
5275	4707100000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판지로 만든 것	0	A

5276	4707200000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그 밖의 종이나 판지(전체를 착색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5277	4707300000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예: 신문, 잡지, 이와 유사한 인쇄물)	0	A
5278	4707900000	기타[선별하지 않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0	A
5279	4801000000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0	A
5280	4802100000	수제(手製) 종이와 판지	0	A
5281	4802200000	사진 감광성·열 감응성·전자 감광성 종이나 판지의 기본 재료로 사용되는 종이와 판지	0	A
5282	4802400000	벽지용 원지(原紙)	0	A
5283	480254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5284	4802541090	기타	0	A
5285	480254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5286	4802549090	기타	0	A
5287	480255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5288	4802551020	복사용지	0	A
5289	4802551030	전산용지와 폼용지 (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A
5290	4802551090	기타	0	A
5291	480255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5292	4802559090	기타	0	A
5293	480256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5294	4802561020	복사용지	0	A
5295	4802561090	기타	0	A
5296	480256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5297	4802569090	기타	0	A
5298	480257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5299	4802571020	복사용지	0	A
5300	4802571090	기타	0	A
5301	480257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5302	4802579090	기타	0	A
5303	480258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5304	4802581090	기타	0	A
5305	4802582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5306	4802582090	기타	0	A
5307	480258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5308	4802589090	기타	0	A
5309	480261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5310	4802611090	기타	0	A
5311	480261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5312	4802619090	기타	0	A
5313	480262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5314	4802621020	복사용지	0	A
5315	4802621090	기타	0	A
5316	480262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5317	4802629090	기타	0	A
5318	480269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5319	4802691020	복사용지	0	A
5320	4802691090	기타	0	A
5321	480269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5322	4802699090	기타	0	A
5323	4803001000	화장지·안면용 티슈용 원지	0	A

5324	4803002000	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0	A
5325	4803009000	기타	0	A
5326	4804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A
5327	4804190000	기타	0	A
5328	4804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A
5329	4804290000	기타	0	A
5330	4804311000	전기절연지와 판지	0	A
5331	4804312000	콘덴서지와 판지	0	A
5332	4804313000	포장지와 판지	0	A
5333	4804319000	기타	0	A
5334	4804391000	전기절연지와 판지	0	A
5335	4804392000	콘덴서지와 판지	0	A
5336	4804393000	포장지와 판지	0	A
5337	4804399000	기타	0	A
5338	4804412000	중량이 1제곱미터당 200그램 미만인 것	0	A
5339	4804419000	기타	0	A
5340	4804421000	중량이 1제곱미터당 200그램 미만인 것	0	A
5341	4804429000	기타	0	A
5342	4804491000	중량이 1제곱미터당 200그램 미만인 것	0	A
5343	4804499000	기타	0	A
5344	48045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A
5345	4804523000	쟁반·접시·플레이트·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0	A
5346	4804529000	기타	0	A
5347	4804590000	기타	0	A
5348	4805110000	반화학 플루팅지(fluting paper)	0	A
5349	4805120000	스트로 플루팅지(straw fluting paper)	0	A
5350	4805190000	기타	0	A
5351	480524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5352	4805249000	기타	0	A
5353	480525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5354	4805259000	기타	0	A
5355	4805300000	아황산포장지	0	A
5356	4805400000	여과지와 판지	0	A
5357	4805500000	펠트지와 판지	0	A
5358	480591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5359	4805919010	콘덴서지와 판지	0	A
5360	4805919090	기타	0	A
5361	480592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5362	4805929000	기타	0	A
5363	480593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5364	4805939000	기타	0	A
5365	4806100000	황산지	0	A
5366	4806200000	내지지(耐脂紙)	0	A
5367	4806300000	트레이싱지(tracing paper)	0	A
5368	4806401000	글라신지(glassine paper)	0	A
5369	4806409000	기타	0	A
5370	4807000000	겹붙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0	A
5371	4808100000	물결 모양의 종이와 판지(구멍을 뚫었는지에 상관없다)	0	A
5372	4808401000	자루(sack)용	0	A

5373	4808409000	기타	0	A
5374	4808900000	기타	0	A
5375	4809201000	한 겹의 것	0	A
5376	4809202000	두 겹 이상의 것	0	A
5377	4809901000	전사지	0	A
5378	4809902010	제곱미터당 중량이 65그램 이상의 것	0	A
5379	4809902090	기타	0	A
5380	4809904000	카본지나 이와 유사한 복사지	0	A
5381	4809909000	기타	0	A
5382	4810131000	인쇄용・필기용 종이와 판지	0	A
5383	4810139000	기타	0	A
5384	4810140000	시트(sheet) 모양인 것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 이하이고, 다른 한 변은 297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5385	4810191000	인쇄용・필기용 종이와 판지	0	A
5386	4810199000	기타	0	A
5387	4810220000	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이	0	A
5388	4810290000	기타	0	A
5389	4810319000	기타	0	A
5390	481032100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의약품・담배의 포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	A
5391	4810322000	쟁반・접시・플레이트・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0	A
5392	4810329000	기타	0	A
5393	4810390000	기타	0	A
5394	4810921010	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0	A
5395	4810921090	기타	0	A
5396	4810929000	기타	0	A
5397	4810992000	여과지	0	A
5398	4810999000	기타	0	A
5399	4811100000	타르・역청물질・아스팔트 처리를 한 종이와 판지	0	A
5400	4811410000	셀프접착지	0	A
5401	4811490000	기타	0	A
5402	4811511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며 265그램 이하인 것	0	A
5403	481151901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0	A
5404	4811519019	기타	0	A
5405	4811519090	기타	0	A
5406	4811590000	기타	0	A
5407	4811600000	왁스・파라핀왁스・스테아린(stearin)・기름・글리세롤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	0	A
5408	4811901000	그 밖의 종이와 판지	0	A
5409	4811902010	셀룰로오스워딩	0	A
5410	4811902090	기타	0	A
5411	48120000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필터플레이트	0	A
5412	4813100000	소책자 모양이나 튜브 모양인 것	0	A
5413	4813200000	폭이 5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0	A
5414	4813900000	기타	0	A
5415	4814201000	벽지	0	A
5416	4814209000	기타	0	A
5417	4814901010	갈포섬유로 만든 것	0	A
5418	4814901090	기타	0	A
5419	4814909000	기타	0	A

5420	4816200000	셀프복사지	0	A
5421	4816901000	전사지	0	A
5422	4816902010	제곱미터당 중량이 65그램 이상인 것	0	A
5423	4816902090	기타	0	A
5424	4816903000	인쇄용 제판용지	0	A
5425	4816904000	카본지나 이와 유사한 복사지	0	A
5426	4816905000	등사원지	0	A
5427	4816909000	기타	0	A
5428	4817100000	봉투	0	A
5429	4817200000	봉함엽서·우편엽서·통신용카드	0	A
5430	4817300000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5431	4818100000	화장지	0	A
5432	4818200000	손수건·클렌징티슈·안면용 화장지·타월	0	A
5433	4818300000	책상보와 서비에트(serviette)	0	A
5434	4818500000	의류와 의류 부속품	0	A
5435	4818900000	기타	0	A
5436	4819100000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A
5437	4819200000	접는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0	A
5438	4819300000	폭이 40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	0	A
5439	4819400000	그 밖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0	A
5440	4819501000	액체 포장에 적합한 것	0	A
5441	4819509000	기타	0	A
5442	4819600000	서류상자·서류받침·보관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5443	4820100000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	0	A
5444	4820200000	연습장	0	A
5445	4820300000	바인더(책표지는 제외한다)·폴더·서류철 표지	0	A
5446	4820400000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삽입식 카본세트	0	A
5447	4820500000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	0	A
5448	4820900000	기타	0	A
5449	4821100000	인쇄한 것	0	A
5450	4821900000	기타	0	A
5451	4822100000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 데에 사용하는 것	0	A
5452	4822900000	기타	0	A
5453	4823200000	여과용 종이와 판지	0	A
5454	4823400000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시트(sheet)·다이얼	0	A
5455	4823610000	대나무로 만든 것	0	A
5456	4823690000	기타	0	A
5457	48237000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몰드·프레스한 제품	0	A
5458	4823901010	구멍을 뚫은 카드	0	A
5459	4823901090	기타	0	A
5460	4823902000	전기절연지	0	A
5461	482390301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0	A
5462	4823903019	기타	0	A
5463	482390302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0	A
5464	4823903029	기타	0	A
5465	4823903090	기타	0	A
5466	4823905000	자카드(Jacquard) 직기용 구멍을 뚫은 종이	0	A
5467	482390901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0	A

5468	4823909019	기타	0	A
5469	4823909090	기타	0	A
5470	4901101000	국문판	0	A
5471	4901109000	기타	0	A
5472	4901911000	국문판	0	A
5473	4901919000	기타	0	A
5474	4901991000	국문판	0	A
5475	4901999000	기타	0	A
5476	4902101010	신문	0	A
5477	4902101090	기타	0	A
5478	4902109000	기타	0	A
5479	4902901010	잡지	0	A
5480	4902901090	기타	0	A
5481	4902909010	잡지	0	A
5482	4902909090	기타	0	A
5483	4903000000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0	A
5484	4904000000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A
5485	4905201000	지도와 해도	0	A
5486	4905209000	기타	0	A
5487	4905900000	기타	0	A
5488	4906001000	설계도	0	A
5489	4906002000	도안	0	A
5490	4906009000	기타	0	A
5491	4907001000	우표(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5492	4907002000	항공화물증권	0	A
5493	4907009000	기타	0	A
5494	4908100000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로서 유리화할 수 있는 것	0	A
5495	4908901000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로서 쿠션 플로어링 시트(sheet)용의 것	0	A
5496	4908909000	기타	0	A
5497	4909000000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안내용으로서 그림・봉투・장식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A
5498	4910001000	종이나 판지로 만든 것	0	A
5499	4910009000	기타	0	A
5500	4911100000	광고 선전물・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와 유사한 것	0	A
5501	4911911000	인쇄된 설계도와 도안	0	A
5502	4911919000	기타	0	A
5503	4911990000	기타	0	A
5504	50010000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1% 또는 5,276원/kg 양자 중 고액(율)	A
5505	5002001010	20데시텍스 이하인 것	3	A
5506	5002001020	20데시텍스 초과 25.56데시텍스 이하인 것	51.7% 또는 17,215원/kg 양자 중 고액(율)	A
5507	5002001030	25.56데시텍스 초과 28.89데시텍스 이하인 것	51.7% 또는 17,215원/kg 양자 중 고액(율)	A
5508	5002001040	28.89데시텍스 초과 36.67데시텍스 이하인 것	51.7% 또는 17,215원/kg 양자 중 고액(율)	A
5509	5002001050	36.67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51.7% 또는 17,215원/kg 양자 중 고액(율)	A
5510	5002002000	옥사(doupion silk)	3	A

5511	5002009000	기타	8	A
5512	5003001000	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	2	A
5513	5003009000	기타	2	A
5514	5004000000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3	A
5515	5005000000	견방사[견 웨이스트(waste)인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3	A
5516	5006000000	견사·견방사(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누에의 거트(gut)	8	A
5517	5007100000	견 노일(noil) 직물	13	A
5518	5007201000	생지견직물	13	A
5519	5007202010	홀치기가공	13	A
5520	5007202020	사틴	13	A
5521	5007202030	크레이프 드 신(crepe de chine)	13	A
5522	5007202090	기타	13	A
5523	5007209000	기타	13	A
5524	5007901000	생지견직물	13	A
5525	5007902000	아세테이트사와 혼방한 견직물	13	A
5526	5007903000	그 밖의 인조섬유와 혼방한 견직물	13	A
5527	5007904000	양모와 혼방한 견직물	13	A
5528	5007909000	기타	13	A
5529	5101110000	깎은 양모	0	A
5530	5101190000	기타	0	A
5531	5101210000	깎은 양모	0	A
5532	5101290000	기타	0	A
5533	5101300000	탄화처리한 것	0	A
5534	5102110000	캐시미어 염소의 것	0	A
5535	5102190000	기타	0	A
5536	5102200000	동물의 거친 털	0	A
5537	5103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노일(noil)	0	A
5538	5103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0	A
5539	5103300000	동물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	0	A
5540	5104000000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0	A
5541	5105100000	카드(card)한 양모	0	A
5542	5105210000	코움(comb)한 양모(단편 모양으로 한정한다)	0	A
5543	5105290000	기타	0	A
5544	5105310000	캐시미어 염소의 것	0	A
5545	5105390000	기타	0	A
5546	5105400000	동물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5547	5106101000	순모의 것	8	A
5548	5106109000	기타	8	A
5549	5106201000	폴리에스테르섬유와 혼방한 것	8	A
5550	5106202000	폴리아미드섬유와 혼방한 것	8	A
5551	5106204000	그 밖의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8	A
5552	5106209000	기타	8	A
5553	5107101000	순모의 것	8	A
5554	5107102000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8	A
5555	5107109000	그 밖의 섬유와 혼방한 것	8	A
5556	5107201000	폴리에스테르섬유와 혼방한 것	8	A
5557	5107202000	폴리아미드섬유와 혼방한 것	8	A
5558	5107203000	아크릴섬유와 혼방한 것	8	A

5559	5107209000	그 밖의 섬유와 혼방한 것	8	A
5560	5108100000	카드(card)한 것	8	A
5561	5108200000	코움(comb)한 것	8	A
5562	5109101000	양모사	8	A
5563	5109109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	8	A
5564	5109901000	양모사	8	A
5565	5109909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	8	A
5566	5110000000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8	A
5567	5111111000	양모로 만든 것	13	A
5568	5111112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실로 만든 것	13	A
5569	5111191000	양모로 만든 것	13	A
5570	5111192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실로 만든 것	13	A
5571	5111200000	기타(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A
5572	5111300000	기타(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A
5573	5111900000	기타	13	A
5574	5112111000	양모로 만든 것	13	A
5575	5112112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실로 만든 것	13	A
5576	5112191000	양모로 만든 것	13	A
5577	5112192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실로 만든 것	13	A
5578	5112200000	기타(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A
5579	5112300000	기타(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A
5580	5112900000	기타	13	A
5581	5113000000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13	A
5582	5201001000	실면(實綿)	0	A
5583	5201009010	섬유 길이가 23.2밀리미터 미만인 것	0	A
5584	5201009020	섬유 길이가 23.2밀리미터 이상 25.4밀리미터 미만인 것	0	A
5585	5201009030	섬유 길이가 25.4밀리미터 이상 28.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A
5586	5201009050	섬유 길이가 28.5밀리미터 이상 34.9밀리미터 미만인 것	0	A
5587	5201009060	섬유 길이가 34.9밀리미터 이상인 것	0	A
5588	5202100000	실(yarn)의 웨이스트(waste)[실(thread)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0	A
5589	5202910000	가닛스톡(garnetted stock)	0	A
5590	5202990000	기타	0	A
5591	5203000000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5592	5204110000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8	A
5593	5204190000	기타	8	A
5594	5204200000	소매용	8	A
5595	520511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596	5205119000	기타	8	A
5597	5205121010	370.37데시텍스 이하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번수 27수 이상 43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엔드사(open end yarn)는 제외한다.	1	A
5598	5205121090	기타	8	A
5599	5205129000	기타	8	A
5600	520513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601	5205139000	기타	8	A
5602	520514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603	5205149000	기타	8	A
5604	5205150000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8	A

5605	5205210000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8	A
5606	520522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C
5607	5205229000	기타	8	B
5608	520523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C
5609	5205239000	기타	8	B
5610	520524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C
5611	5205249000	기타	8	A
5612	5205260000	125데시텍스 미만 106.38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94수 이하)	8	A
5613	5205270000	106.38데시텍스 미만 83.33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94수 초과 120수 이하)	8	A
5614	5205280000	83.33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120수 초과)	8	A
5615	5205310000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8	A
5616	5205321010	370.37데시텍스 이하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번수 27수 이상 43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엔드사(open end yarn)는 제외한다.	1	A
5617	5205321090	기타	8	A
5618	5205329000	기타	8	A
5619	5205330000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8	A
5620	5205340000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8	A
5621	5205350000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8	A
5622	5205410000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8	A
5623	5205420000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8	A
5624	5205430000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8	A
5625	5205440000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8	A
5626	5205460000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 106.38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94수 이하)	8	A
5627	5205470000	구성하는 단사가 106.38데시텍스 미만 83.33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94수 초과 120수 이하)	8	A
5628	5205480000	구성하는 단사가 83.33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20수 초과)	8	A
5629	520611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630	5206119000	기타	8	A
5631	520612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632	5206129000	기타	8	A
5633	5206130000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8	A
5634	5206140000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8	A
5635	5206150000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8	A
5636	5206210000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8	A
5637	520622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638	5206229000	기타	8	A
5639	520623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640	5206239000	기타	8	A
5641	520624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642	5206249000	기타	8	A
5643	5206250000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8	A
5644	5206310000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8	A
5645	5206320000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8	A
5646	5206330000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8	A
5647	5206340000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8	A
5648	5206350000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8	A
5649	5206410000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8	A
5650	5206420000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8	A
5651	5206430000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8	A
5652	5206440000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8	A
5653	5206450000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8	A
5654	5207100000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8	A
5655	5207900000	기타	8	A
5656	520811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C
5657	520812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A
5658	520813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A
5659	5208190000	그 밖의 직물의 것	10	A
5660	520821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C
5661	520822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A
5662	520823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A
5663	5208290000	그 밖의 직물의 것	10	A
5664	520831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B
5665	520832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A
5666	520833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A
5667	5208390000	그 밖의 직물	10	A
5668	520841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A
5669	520842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A
5670	520843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A
5671	5208490000	그 밖의 직물	10	A
5672	520851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A

5673	520852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A
5674	5208591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A
5675	5208599000	기타	10	A
5676	5209110000	평직물(平織物)	10	A
5677	520912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A
5678	5209190000	그 밖의 직물	10	A
5679	5209210000	평직물(平織物)	10	A
5680	520922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A
5681	5209290000	그 밖의 직물	10	A
5682	5209310000	평직물(平織物)	10	A
5683	520932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A
5684	5209390000	그 밖의 직물	10	B
5685	5209410000	평직물(平織物)	10	A
5686	5209420000	데님(denim)	10	B
5687	5209430000	3올이나 4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A
5688	5209490000	그 밖의 직물	10	A
5689	5209510000	평직물(平織物)	10	A
5690	520952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A
5691	5209590000	그 밖의 직물	10	A
5692	5210110000	평직물(平織物)	10	A
5693	5210190000	그 밖의 직물	10	A
5694	5210210000	평직물(平織物)	10	A
5695	5210290000	그 밖의 직물	10	A
5696	5210310000	평직물(平織物)	10	A
5697	521032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A
5698	5210390000	그 밖의 직물	10	A
5699	5210410000	평직물(平織物)	10	A
5700	5210490000	그 밖의 직물	10	A
5701	5210510000	평직물(平織物)	10	A
5702	5210590000	그 밖의 직물	10	A
5703	5211110000	평직물(平織物)	10	A
5704	521112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A
5705	5211190000	그 밖의 직물	10	A
5706	5211200000	표백한 것	10	A
5707	5211310000	평직물(平織物)	10	A
5708	521132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A
5709	5211390000	그 밖의 직물	10	A
5710	5211410000	평직물(平織物)	10	A
5711	5211420000	데님(denim)	10	A
5712	5211430000	3올이나 4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A
5713	5211490000	그 밖의 직물	10	A
5714	5211510000	평직물(平織物)	10	A

5715	521152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A
5716	5211590000	그 밖의 직물	10	A
5717	5212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10	A
5718	5212120000	표백한 것	10	A
5719	5212130000	염색한 것	10	A
5720	521214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A
5721	5212150000	날염한 것	10	A
5722	5212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10	A
5723	5212220000	표백한 것	10	A
5724	5212230000	염색한 것	10	A
5725	521224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A
5726	5212250000	날염한 것	10	A
5727	5301100000	생아마나 침지(沈漬)아마	2	A
5728	5301210000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린(scutched) 것	2	A
5729	5301290000	기타	2	A
5730	5301301000	아마의 토우(tow)	2	A
5731	5301302000	아마의 웨이스트(waste)	2	A
5732	5302100000	생대마나 침지(沈漬)대마	2	A
5733	5302901000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리거나(scutched) 훑어내리거나(hackled)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대마(방적한 것은 제외한다)	2	A
5734	5302902010	대마의 토우(tow)	2	A
5735	5302902020	대마의 웨이스트(waste)	2	A
5736	5303101000	황마	2	A
5737	5303102000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	2	A
5738	5303901010	황마	2	A
5739	5303901090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	2	A
5740	5303909010	황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2	A
5741	5303909090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2	A
5742	5305001000	코코넛[코이어(coir)]의 것	2	A
5743	5305002000	아바카(마닐라마)의 것	2	A
5744	5305003000	사이잘(sisal)마와 아가베(Agave)속의 것	2	A
5745	5305009000	기타	2	A
5746	5306101000	순아마사	8	A
5747	5306102000	혼방아마사	8	A
5748	5306201000	순아마사	8	A
5749	5306202000	혼방아마사	8	A
5750	5307101000	황마사	8	A
5751	5307109000	기타	8	A
5752	5307201000	황마사	8	A
5753	5307209000	기타	8	A
5754	5308100000	코이어(coir)사	8	A
5755	5308200000	대마사	8	A
5756	5308901000	라미(ramie)사	8	A
5757	5308909000	기타	8	A
5758	5309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A
5759	5309190000	기타	2	A
5760	5309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A
5761	5309290000	기타	2	A

5762	5310100000	표백하지 않은 것	8	A
5763	5310900000	기타	8	A
5764	5311001000	라미(ramie)의 것	8	A
5765	5311002000	대마의 것	8	A
5766	5311009000	기타	8	A
5767	5401101000	나일론이나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A
5768	5401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A
5769	5401109000	기타	8	A
5770	540120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8	A
5771	5401209000	기타	8	A
5772	5402110000	아라미드의 것	8	A
5773	5402191011	타이어 코드사	8	A
5774	5402191012	어망사	8	A
5775	5402191019	기타	8	A
5776	5402191021	타이어 코드사	8	A
5777	5402191029	기타	8	A
5778	5402191090	기타	8	A
5779	5402199000	기타	8	A
5780	540220000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하며, 텍스처화한 (textured) 것인지에 상관없다]	8	A
5781	5402311010	나일론 6의 것	8	A
5782	5402311020	나일론 66의 것	8	A
5783	5402311090	기타	8	A
5784	5402319000	기타	8	A
5785	5402321010	나일론 6의 것	8	A
5786	5402321020	나일론 66의 것	8	A
5787	5402321090	기타	8	A
5788	5402329000	기타	8	A
5789	540233100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	A
5790	5402339000	기타	8	A
5791	540234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A
5792	5402390000	기타	8	A
5793	5402440000	탄성사	8	A
5794	5402451010	나일론 6의 것	8	A
5795	5402451020	나일론 66의 것	8	A
5796	5402451090	기타	8	A
5797	5402459000	기타	8	A
5798	540246100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	A
5799	5402469000	기타	8	A
5800	540247100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	A
5801	5402479000	기타	8	A
5802	5402480000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8	A
5803	54024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A
5804	5402499000	기타	8	A
5805	540251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A
5806	540252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A
5807	540253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A
5808	54025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A
5809	5402599000	기타	8	A
5810	540261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A
5811	540262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A

5812	540263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A
5813	54026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A
5814	5402692000	폴리비닐알코올의 것	8	A
5815	5402699000	기타	8	A
5816	5403100000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1	A
5817	5403310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꼬임이 없거나, 꼬임이 미터당 120회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	A
5818	5403320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꼬임이 미터당 120회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	A
5819	5403331000	텍스처드사	8	A
5820	5403339000	기타	8	A
5821	5403390000	기타	8	A
5822	5403411000	텍스처드사	1	A
5823	5403419000	기타	1	A
5824	5403420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A
5825	5403490000	기타	8	A
5826	5404110000	탄성사	8	A
5827	5404120000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8	A
5828	5404191000	나일론이나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A
5829	5404199000	기타	8	A
5830	5404901000	스트립 모양의 것	8	B
5831	5404909000	기타	8	B
5832	5405000000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재생・반(半)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A
5833	5406001000	합성필라멘트사	8	A
5834	5406002000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	8	A
5835	540710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A
5836	5407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A
5837	5407200000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8	B
5838	5407300000	제11부의 주 제9호의 직물	8	A
5839	54074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A
5840	5407420000	염색한 것	8	A
5841	54074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A
5842	5407440000	날염한 것	8	A
5843	54075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A
5844	5407520000	염색한 것	8	A
5845	54075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A
5846	5407540000	날염한 것	8	A
5847	540761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A
5848	5407612000	염색한 것	8	A
5849	5407613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A
5850	5407614000	날염한 것	8	A
5851	540769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A
5852	5407692000	염색한 것	8	A
5853	5407693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A
5854	5407694000	날염한 것	8	A
5855	54077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A
5856	5407720000	염색한 것	8	A

5857	54077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A
5858	5407740000	날염한 것	8	A
5859	54078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A
5860	540781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A
5861	540781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A
5862	5407819000	기타	8	A
5863	540782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A
5864	540782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A
5865	540782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A
5866	5407829000	기타	8	A
5867	540783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A
5868	540783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A
5869	540783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A
5870	5407839000	기타	8	A
5871	540784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A
5872	540784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A
5873	540784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A
5874	5407849000	기타	8	A
5875	54079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A
5876	540791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A
5877	540791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A
5878	5407919000	기타	8	A
5879	540792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A
5880	540792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A
5881	540792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A
5882	5407929000	기타	8	A
5883	540793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A
5884	540793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A
5885	540793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A
5886	5407939000	기타	8	A
5887	540794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A
5888	540794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A
5889	540794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A
5890	5407949000	기타	8	C
5891	5408100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8	A
5892	5408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A
5893	5408220000	염색한 것	8	A
5894	54082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A
5895	5408240000	날염한 것	8	A
5896	54083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A
5897	5408320000	염색한 것	8	A
5898	54083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A
5899	5408340000	날염한 것	8	A
5900	5501110000	아라미드의 것	8	A
5901	5501190000	기타	8	A
5902	550120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A
5903	5501300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A
5904	550140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A
5905	5501900000	기타	8	A
5906	5502101000	44,000 데시텍스 미만의 것	7.5	A
5907	5502102000	44,000 데시텍스 이상의 것	7.5	A

5908	5502900000	기타	7.5	A
5909	5503110000	아라미드(aramid)의 것	8	A
5910	5503190000	기타	8	A
5911	550320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A
5912	5503209000	기타	8	A
5913	5503301000	아크릴의 것	8	A
5914	550330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A
5915	550340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A
5916	5503900000	기타	8	A
5917	550410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1	A
5918	5504102000	폴리노직(polynosic) 단면인 것	1	A
5919	5504109000	기타	1	A
5920	5504902000	리오셀(lyocell)의 것	2	A
5921	5504909000	기타	8	A
5922	5505100000	합성섬유의 것	2	A
5923	550520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의 것	2	A
5924	550610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A
5925	550620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A
5926	5506300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A
5927	550640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A
5928	5506900000	기타	8	A
5929	550700000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8	A
5930	5508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A
5931	5508109000	기타	8	A
5932	550820000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8	A
5933	5509111000	강력사	8	A
5934	5509119000	기타	8	A
5935	5509121000	강력사	8	A
5936	5509129000	기타	8	A
5937	5509211000	강력사	8	A
5938	5509219000	기타	8	A
5939	5509221000	강력사	8	A
5940	5509229000	기타	8	A
5941	5509311000	아크릴의 것	8	A
5942	550931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A
5943	5509321000	아크릴의 것	8	A
5944	550932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A
5945	5509410000	단사	8	A
5946	550942000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8	A
5947	5509510000	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8	A
5948	5509520000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8	A
5949	5509530000	주로 면과 혼방한 것	8	A
5950	5509590000	기타	8	A
5951	5509611000	아크릴의 것	8	A
5952	550961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A
5953	5509621000	아크릴의 것	8	A
5954	550962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A
5955	5509691010	아크릴의 것	8	A
5956	5509691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A
5957	5509692010	아크릴의 것	8	A

5958	55096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A
5959	55099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A
5960	5509919000	기타	8	A
5961	5509920000	주로 면과 혼방한 것	8	A
5962	5509990000	기타	8	A
5963	55101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8	A
5964	5510119000	기타	8	A
5965	55101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8	A
5966	5510129000	기타	8	A
5967	55102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8	A
5968	5510209000	기타	8	A
5969	55103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8	A
5970	5510309000	기타	8	A
5971	55109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8	A
5972	5510909000	기타	8	A
5973	551110000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8	A
5974	551120000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8	A
5975	551130000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8	A
5976	5512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A
5977	5512191000	염색한 것	10	A
5978	5512192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A
5979	5512193000	날염한 것	10	A
5980	5512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A
5981	5512290000	기타	10	A
5982	55129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A
5983	5512919000	기타	10	A
5984	55129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A
5985	5512999000	기타	10	A
5986	55131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A
5987	55131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A
5988	55131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10	A
5989	5513190000	그 밖의 직물	10	A
5990	55132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A
5991	5513231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A
5992	5513239000	기타	10	A
5993	5513290000	그 밖의 직물	10	A
5994	55133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A
5995	5513390000	그 밖의 직물	10	A
5996	55134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A
5997	5513490000	그 밖의 직물	10	A
5998	55141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A
5999	55141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A
6000	5514193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직물	10	A

6001	5514199000	기타	10	A
6002	55142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A
6003	55142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A
6004	55142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10	A
6005	5514290000	그 밖의 직물	10	A
6006	551430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A
6007	55144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A
6008	55144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A
6009	55144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10	A
6010	5514490000	그 밖의 직물	10	A
6011	551511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A
6012	5515119000	기타	10	A
6013	551512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A
6014	5515129000	기타	10	A
6015	551513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A
6016	5515139000	기타	10	A
6017	551519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A
6018	5515199000	기타	10	A
6019	5515210000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10	A
6020	551522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A
6021	5515229000	기타	10	A
6022	5515290000	기타	10	A
6023	5515910000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10	A
6024	5515990000	기타	10	A
6025	55161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A
6026	5516119000	기타	10	A
6027	55161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A
6028	5516129000	기타	10	A
6029	55161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A
6030	551614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A
6031	5516149000	기타	10	A
6032	55162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A
6033	5516219000	기타	10	A
6034	55162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A
6035	5516229000	기타	10	A
6036	55162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A
6037	551624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A
6038	5516249000	기타	10	A
6039	55163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A
6040	5516320000	염색한 것	10	A
6041	55163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A
6042	5516340000	날염한 것	10	A
6043	55164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A
6044	5516419000	기타	10	A
6045	55164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A
6046	5516429000	기타	10	A
6047	55164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A
6048	5516440000	날염한 것	10	A

6049	55169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A
6050	55169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A
6051	5516929000	기타	10	A
6052	55169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A
6053	5516940000	날염한 것	10	A
6054	5601210000	면으로 만든 것	8	A
6055	5601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A
6056	5601290000	기타	8	A
6057	5601301000	섬유의 플록(flock)	8	A
6058	5601309000	기타	8	A
6059	5602101000	니들룸 펠트(needleloom felt)	8	A
6060	5602102000	스티치 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	8	A
6061	56022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A
6062	560229000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8	A
6063	5602900000	기타	8	A
6064	5603111000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8	A
6065	5603119000	기타	8	A
6066	5603121000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8	A
6067	5603129000	기타	8	A
6068	5603131000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8	A
6069	5603139000	기타	8	C
6070	5603141000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8	A
6071	5603149000	기타	8	A
6072	560391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것	8	A
6073	560392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	8	A
6074	560393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	8	A
6075	560394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8	B
6076	5604100000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8	A
6077	5604902000	강력사(폴리에스테르・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비스코스레이온의 것으로서 침투・도포한 것)	8	A
6078	5604909000	기타	8	A
6079	5605000000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gimp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스트립(strip)・가루 모양의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8	A
6080	5606001000	짐프사(gimped yarn)	8	A
6081	5606002000	셔닐사(chenille yarn)	8	A
6082	5606003000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8	A
6083	5606009000	기타	8	A
6084	5607210000	포장용 끈	10	A
6085	5607290000	기타	10	A
6086	5607410000	포장용 끈	10	A
6087	5607490000	기타	10	A
6088	5607500000	그 밖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A
6089	5607901000	제5303호의 황마, 방직용 인피섬유로 만든 것	10	A
6090	5607909000	기타	10	A
6091	5608111011	그물코 크기가 3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A
6092	5608111012	그물코 크기가 22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5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A
6093	5608111013	그물코 크기가 22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A
6094	5608111020	자망	10	A

6095	5608111090	기타	10	A
6096	5608119000	기타	10	A
6097	560819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A
6098	5608199000	기타	10	A
6099	5608900000	기타	10	A
6100	5609001000	면으로 만든 것	8	A
6101	5609002000	식물성 섬유로 만든 것(면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8	A
6102	560900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A
6103	5609009000	기타	8	A
6104	5701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A
6105	5701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A
6106	5702100000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	10	A
6107	5702200000	코코넛섬유(코이어)로 만든 바닥깔개	10	A
6108	5702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A
6109	5702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A
6110	570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A
6111	5702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A
6112	57024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A
6113	5702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A
6114	5702500000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과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10	A
6115	5702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A
6116	57029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A
6117	5702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A
6118	5703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A
6119	5703210000	인조잔디(turf)	10	A
6120	5703290000	기타	10	A
6121	5703310000	인조잔디(turf)	10	A
6122	5703390000	기타	10	A
6123	5703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A
6124	5704100000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제곱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A
6125	5704200000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제곱미터 초과 1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A
6126	5704900000	기타	10	A
6127	5705000000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10	A
6128	5801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129	5801210000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13	A
6130	5801220000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13	A
6131	5801230000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13	A
6132	5801260000	셔닐(chenille)직물	13	A
6133	5801270000	경(經)파일(pile)직물	13	A
6134	5801310000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13	A
6135	5801320000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13	A
6136	5801330000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13	A
6137	5801360000	셔닐(chenille)직물	13	A
6138	5801370000	경(經)파일(pile) 직물	13	A
6139	580190000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3	A
6140	5802100000	면으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8	A

6141	580220000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8	A
6142	5802300000	터프트(tuft)한 직물	8	A
6143	5803000000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8	A
6144	580410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A
6145	5804109000	기타	13	A
6146	580421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B
6147	5804292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148	5804299000	기타		
		- 견의 것	13	A
		- 기타	13	B
6149	5804300000	손으로 만든 레이스	13	A
6150	5805000000	고블랭(gobelin)직・플랜더스(flanders)직・오뷔송(aubusson)직・보베(beauvais)직과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태피스트리(tapestry), 자수의 태피스트리(tapestry)[예: 프티포인트(petit point)・십자수](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A
6151	580610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A
6152	5806109000	기타	8	A
6153	5806200000	그 밖의 직물(탄성사나 고무실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8	A
6154	5806310000	면으로 만든 것	8	A
6155	5806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A
6156	5806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A
6157	5806400000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	8	A
6158	5807101000	레이블(label)	8	A
6159	5807109000	기타	8	A
6160	5807901000	레이블(label)	8	A
6161	5807909000	기타	8	A
6162	5808100000	브레이드(braid)(원단 상태로 한정한다)	8	A
6163	5808900000	기타	8	A
6164	5809000000	금속사의 직물과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8	A
6165	5810100000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13	A
6166	5810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167	58109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B
6168	5810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169	5811004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A
6170	5811009000	기타	8	A
6171	5901100000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8	A
6172	5901901000	투사포(tracing cloth)	8	A
6173	5901902000	회화용 캔버스	8	A
6174	5901903000	버크럼(buckram)과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8	A
6175	590210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8	A
6176	5902200000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8	A
6177	5902900000	기타	8	A
6178	5903100000	폴리(염화비닐)의 것	10	B
6179	5903200000	폴리우레탄의 것	10	B

6180	5903900000	기타	10	A
6181	5904100000	리놀륨	8	A
6182	5904900000	기타	8	A
6183	59050000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	8	A
6184	5906100000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	8	A
6185	590691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8	A
6186	5906990000	기타	8	A
6187	5907001000	건성유의 조제품이나 기름을 도포·침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8	A
6188	5907002000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8	A
6189	5907009000	기타	8	A
6190	5908001000	심지	8	A
6191	5908009000	기타	8	A
6192	59090000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호스와 이와 유사한 관 모양의 물품(다른 재료를 내장·보강한 것인지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8	A
6193	5910000000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와 벨팅(belting)(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A
6194	5911100000	침포(針布)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felt), 펠트(felt)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가죽 그 밖의 물품을 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물품으로 그 밖의 기술적 용도로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위빙스핀들(weaving spindle)(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細幅)직물을 포함한다]	8	A
6195	5911200000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 상관없다)	8	A
6196	591131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650그램 미만인 것	8	A
6197	591132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650그램 이상인 것	8	A
6198	5911400000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8	A
6199	5911900000	기타	8	A
6200	6001101000	면으로 만든 것	10	A
6201	600110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A
6202	6001109000	기타	10	A
6203	6001210000	면으로 만든 것	10	A
6204	6001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A
6205	6001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A
6206	6001910000	면으로 만든 것	10	A
6207	60019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B
6208	6001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A
6209	600240000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10	A
6210	6002900000	기타	10	A
6211	6003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A
6212	6003200000	면으로 만든 것	10	A
6213	600330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A
6214	600340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0	A
6215	6003900000	기타	10	A
6216	600410000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10	B
6217	6004900000	기타	10	A

6218	6005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A
6219	6005220000	염색한 것	10	A
6220	60052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A
6221	6005240000	날염한 것	10	A
6222	600535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A
6223	6005352000	염색한 것	10	A
6224	6005353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A
6225	6005354000	날염한 것	10	A
6226	6005360000	기타(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A
6227	6005370000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A
6228	6005380000	기타(서로 다른 색실의 것으로 한정한다)	10	A
6229	6005390000	기타(날염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A
6230	60054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A
6231	6005420000	염색한 것	10	A
6232	60054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A
6233	6005440000	날염한 것	10	A
6234	6005900000	기타	10	A
6235	6006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A
6236	6006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A
6237	6006220000	염색한 것	10	A
6238	60062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A
6239	6006240000	날염한 것	10	A
6240	60063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A
6241	6006320000	염색한 것	10	A
6242	60063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A
6243	6006340000	날염한 것	10	A
6244	60064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A
6245	6006420000	염색한 것	10	A
6246	60064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A
6247	6006440000	날염한 것	10	A
6248	6006900000	기타	10	A
6249	61012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250	6101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251	6101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252	6101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253	6102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254	61022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255	6102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256	6102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257	6102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258	610310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259	6103102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260	610310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261	61032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262	6103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263	6103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264	6103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265	61033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266	6103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267	6103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268	6103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269	61034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270	6103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271	6103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272	61041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273	6104191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274	6104199000	기타	13	A
6275	61042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276	6104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277	6104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278	6104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279	61043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280	6104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281	6104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282	6104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283	61044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284	6104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285	610444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286	61044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A
6287	6104499000	기타	13	A
6288	61045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289	61045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290	61045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291	61045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292	61046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293	61046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294	61046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295	61046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296	61051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297	61052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298	61052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299	6105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300	61061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301	61062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302	61062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303	6106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견의 것	13	A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 기타	13	B
6304	61071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305	61071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306	61071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307	6107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308	61072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309	6107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310	6107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311	6107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312	6107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313	6107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314	610811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315	610811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316	6108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317	61082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318	6108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319	6108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320	6108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321	61083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322	61083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323	61083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324	6108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325	6108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326	61089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327	61089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328	6108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329	6109101000	티셔츠	13	A
6330	6109109000	기타	13	B
6331	6109901010	티셔츠	13	A
6332	6109901090	기타	13	B
6333	6109902010	티셔츠	13	A
6334	6109902090	기타	13	A
6335	6109903010	티셔츠	13	A
6336	6109903090	기타	13	A
6337	6109909010	티셔츠	13	A
6338	6109909090	기타	13	A
6339	6110110000	양모로 만든 것	13	A
6340	6110120000	캐시미어 염소의 털로 만든 것	13	A
6341	6110190000	기타	13	A
6342	61102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343	6110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344	6110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345	6110901000	견으로 만든 것	13	A
6346	6110909000	기타	13	A
6347	6111201000	의류	8	A
6348	6111202000	부속품	8	A
6349	6111301000	의류	8	A
6350	6111302000	부속품	8	A
6351	6111901000	의류	8	A
6352	6111902000	부속품	8	A
6353	61121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354	6112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355	6112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356	6112200000	스키슈트	13	A
6357	61123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358	611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359	61124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360	6112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361	6113001000	제5903호의 것	13	A
6362	6113002000	제5906호의 것	13	A
6363	6113003000	제5907호의 것	13	A
6364	61142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B
6365	6114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366	6114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367	6114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368	611510000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13	A
6369	61152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3	A
6370	61152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3	A
6371	6115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372	6115300000	그 밖의 여성용인 전길이(full-length)나 무릎길이(knee-length)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3	A
6373	611594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374	611595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375	611596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376	6115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377	611610000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	8	A
6378	6116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A
6379	6116921000	작업용 장갑	8	A
6380	6116929000	기타	8	A
6381	61169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8	A
6382	6116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A
6383	6117101000	견으로 만든 것	13	A
6384	61171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385	6117103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386	6117104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A
6387	6117109000	기타	13	A
6388	6117800000	그 밖의 부속품	13	A
6389	6117900000	부분품	13	A
6390	6201201000	오버코트(overcoat)·레인코트(rain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	13	A
6391	6201209000	기타	13	A
6392	6201301000	오버코트(overcoat)·레인코트(rain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	13	A
6393	6201309000	기타	13	A
6394	6201401010	오버코트(overcoat)·레인코트(rain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	13	A
6395	6201401090	기타	13	B
6396	6201409010	오버코트(overcoat)·레인코트(rain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	13	A
6397	6201409090	기타	13	A
6398	6201901000	오버코트(overcoat)·레인코트(rain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	13	A
6399	6201909000	기타	13	A
6400	6202201000	오버코트(overcoat)·레인코트(rain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	13	A
6401	6202209000	기타	13	A
6402	6202301000	오버코트(overcoat)·레인코트(rain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	13	A
6403	6202309000	기타	13	A
6404	6202401010	오버코트(overcoat)·레인코트(rain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	13	A
6405	6202401090	기타	13	A
6406	6202409010	오버코트(overcoat)·레인코트(rain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	13	A
6407	6202409090	기타	13	A

6408	6202901000	오버코트(overcoat)·레인코트(rain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	13	A
6409	6202909000	기타	13	A
6410	6203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411	6203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412	6203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413	62032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414	6203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415	6203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416	6203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417	62033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418	6203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419	6203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420	6203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421	6203421000	데님의 것(청바지를 포함한다)	13	B
6422	6203429000	기타	13	B
6423	6203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B
6424	6203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425	6204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426	62041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427	62041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428	6204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429	62042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430	62042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431	6204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432	6204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433	6204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434	62043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435	6204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436	62043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A
6437	6204399000	기타	13	A
6438	6204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439	62044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440	6204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B
6441	620444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442	62044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A
6443	6204499000	기타	13	A
6444	62045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445	62045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446	62045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447	62045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A
6448	6204599000	기타	13	A
6449	62046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450	6204621000	데님의 것(청바지를 포함한다)	13	B
6451	6204629000	기타	13	A
6452	62046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B
6453	62046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A
6454	6204699000	기타	13	A
6455	62052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C
6456	6205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457	6205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458	6205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459	620610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3	A
6460	6206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461	62063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462	62064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463	62064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464	6206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465	62071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466	620719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A
6467	6207199000	기타	13	A
6468	62072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469	6207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470	6207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471	6207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472	6207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473	62079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A
6474	620799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475	620799301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476	620799302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477	6207999000	기타	13	A
6478	620811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479	620811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480	6208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481	62082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C
6482	6208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483	6208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484	6208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485	6208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486	62089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487	62089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488	6208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489	6209201000	의류	8	A
6490	6209202000	부속품	8	A
6491	6209301000	의류	8	A
6492	6209302000	부속품	8	A
6493	6209901000	의류	8	A
6494	6209902000	부속품	8	A
6495	6210101000	제5602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A
6496	6210102000	제56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A
6497	621020101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A
6498	621020102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A
6499	621020103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A
6500	621020901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A
6501	621020902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A
6502	621020903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A
6503	621030101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A
6504	621030102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A
6505	621030103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A
6506	621030901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A
6507	621030902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A
6508	621030903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A

6509	621040100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A
6510	621040200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A
6511	621040300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A
6512	621050100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A
6513	621050200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A
6514	621050300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A
6515	621111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A
6516	6211119000	기타	13	A
6517	621112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A
6518	6211129000	기타	13	A
6519	621120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A
6520	6211209000	기타	13	A
6521	6211321000	유도, 태권도와 그 밖의 동양 무술복	13	A
6522	6211329000	기타	13	A
6523	62113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524	62113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525	62113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526	6211399000	기타	13	A
6527	6211421000	유도, 태권도와 그 밖의 동양 무술복	13	A
6528	6211429000	기타	13	A
6529	62114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530	62114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531	62114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532	6211499000	기타	13	A
6533	6212101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534	621210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A
6535	6212109000	기타	13	A
6536	6212201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537	621220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A
6538	6212209000	기타	13	A
6539	6212300000	코르슬렛(corselette)	13	A
6540	6212900000	기타	13	A
6541	6213200000	면으로 만든 것	8	A
6542	6213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A
6543	621410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8	A
6544	6214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A
6545	621430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8	A
6546	621440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8	A
6547	6214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A
6548	621510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8	A
6549	621520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A
6550	6215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A
6551	6216001000	플라스틱・고무를 침투, 도포, 피복한 것	8	A
6552	6216009000	기타	8	A
6553	6217100000	부속품	13	A
6554	6217900000	부분품	13	A
6555	6301100000	전기모포	10	A
6556	6301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10	A
6557	6301300000	면으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10	A

6558	6301400000	합성섬유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10	A
6559	6301900000	그 밖의 모포와 여행용 러그(rug)	10	A
6560	6302101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561	6302109000	기타	13	A
6562	63022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563	6302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A
6564	6302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565	63023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566	6302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A
6567	630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568	6302400000	테이블린넨(table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3	A
6569	63025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570	630253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A
6571	63025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572	6302600000	면으로 만든 토일렛린넨(toilet linen)과 주방린넨(kitchen linen)[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13	A
6573	6302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574	630293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A
6575	6302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576	6303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577	6303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578	6303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579	63039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580	6303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581	630411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13	A
6582	6304190000	기타	13	A
6583	6304200000	베드 네트(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한다)	13	A
6584	630491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13	A
6585	6304920000	면으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13	A
6586	63049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13	A
6587	6304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13	A
6588	6305100000	황마나 제5303호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로 만든 것	8	A
6589	6305200000	면으로 만든 것	8	A
6590	6305320000	중간 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A
6591	6305330000	기타[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스트립(strip)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8	A
6592	6305390000	기타	8	A
6593	6305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A
6594	6306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595	6306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596	63062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597	6306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598	6306300000	돛	13	A
6599	6306400000	압축공기식 매트리스(mattress)	13	A
6600	6306901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601	6306902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602	6306909000	기타	13	A
6603	6307100000	마루닦이포・접시닦이포・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10	A
6604	6307200000	구명재킷과 구명벨트	10	A
6605	6307901000	신발류 끈	10	A
6606	6307902000	보자기	10	A
6607	6307903000	드레스 패턴(dress pattern)	10	A
6608	6307904010	수술용 마스크	10	A
6609	6307904020	보건용 마스크	10	A
6610	6307904030	비말차단용 마스크	10	A
6611	6307904090	그 밖의 안면마스크	10	A
6612	6307909000	기타	10	A
6613	6308000000	러그(rug)용・태피스트리(tapestry)용・자수한 테이블보용・서비에트(serviette)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13	A
6614	63090000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8	A
6615	6310100000	선별한 것	8	A
6616	6310900000	기타	8	A
6617	6401100000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신발	8	A
6618	6401921000	스키부츠	8	A
6619	6401929010	고무로 만든 것	8	A
6620	6401929090	기타	8	A
6621	6401991010	고무로 만든 것	8	A
6622	6401991090	기타	8	A
6623	6401999000	기타	8	A
6624	6402120000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스노보드부츠	13	A
6625	6402190000	기타	13	A
6626	6402200000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A
6627	6402911000	방한화	13	A
6628	6402912000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13	A
6629	6402919000	기타	13	A
6630	6402991000	샌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로서 주조에 의하여 단일체로 제조된 것	13	A
6631	6402992000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13	A
6632	6402999000	기타	13	A
6633	6403120000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스노보드부츠	13	A
6634	6403190000	기타	13	A
6635	640320000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3	A
6636	6403400000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13	A
6637	6403510000	발목을 덮는 것	13	A
6638	6403591000	드레스화	13	A
6639	6403599000	기타	13	A
6640	6403911000	드레스화	13	A
6641	6403912000	등산화	13	A
6642	6403913000	편상화(lace-boots)	13	A
6643	6403914000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13	A
6644	6403919000	기타	13	A
6645	6403991000	드레스화	13	A

6646	6403992000	등산화	13	A
6647	6403994000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13	A
6648	6403999000	기타	13	A
6649	6404110000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13	A
6650	6404191000	실내화	13	A
6651	6404199000	기타	13	A
6652	640420000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3	A
6653	6405100000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13	A
6654	6405200000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3	A
6655	6405900000	기타	13	A
6656	6406101000	갑피	8	A
6657	6406102000	부분품	8	A
6658	6406201000	바깥바닥	8	A
6659	6406202000	뒷굽	8	A
6660	6406902000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	8	A
6661	6406903000	각반	8	A
6662	6406909000	기타	8	A
6663	6501000000	모체(hat-form)[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felt)로 만든 플래토우(plateaux)와 망숑(manchon)[슬릿망숑(slit manchon)을 포함한다]	8	A
6664	6502000000	모체(hat-shape)[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인 것,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거나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A
6665	6504000000	모자[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A
6666	6505001000	헤어네트	8	A
6667	6505009011	합성섬유로 만든 것	8	A
6668	6505009019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8	A
6669	6505009021	운동모	8	A
6670	6505009029	기타	8	A
6671	6505009090	기타	8	A
6672	6506100000	안전모자	8	A
6673	6506910000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A
6674	6506990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8	A
6675	6507000000	헤드밴드・내장재・커버・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모자의 프레임(frame)・챙・턱끈	8	A
6676	6601100000	정원용 산류(傘類)나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	13	A
6677	6601910000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것	13	A
6678	6601992000	양산	13	A
6679	6601999000	기타	13	A
6680	6602001000	지팡이	8	A
6681	6602009000	기타	8	A
6682	6603200000	산류(傘類)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13	A
6683	6603900000	기타	13	A
6684	6701000000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깃털과 그 부분・솜털과 이들의 제품[제0505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깃촉(quill)은 제외한다]	8	A

6685	67021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A
6686	6702901000	직물로 만든 것	8	A
6687	6702909000	기타	8	A
6688	6703001000	사람 머리카락	8	A
6689	6703009000	기타	8	A
6690	6704110000	전체가발	8	A
6691	6704191000	부분가발	8	A
6692	6704194000	가속눈썹	8	A
6693	6704199000	기타	8	A
6694	6704201000	전체가발	8	A
6695	6704202000	부분가발	8	A
6696	6704205000	가속눈썹	8	A
6697	6704209000	기타	8	A
6698	6704900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8	A
6699	6801000000	포석·연석·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8	A
6700	6802100000	타일·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가장 넓은 면이 변의 길이가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알갱이·조각·가루	8	A
6701	6802211000	대리석	8	B
6702	6802212000	트래버틴(travertine)	8	A
6703	6802213000	설화석고(alabaster)	8	A
6704	6802230000	화강암	8	B
6705	6802291000	그 밖의 석회질 암석	8	A
6706	6802299000	기타	8	B
6707	6802911000	대리석	8	B
6708	6802912000	트래버틴(travertine)	8	A
6709	6802913000	설화석고(alabaster)	8	A
6710	6802920000	그 밖의 석회질 암석	8	A
6711	6802930000	화강암	8	B
6712	6802990000	그 밖의 돌	8	B
6713	6803000000	가공한 슬레이트(slate)와 슬레이트(slate) 제품, 응결 슬레이트(slate)의 제품	8	B
6714	6804100000	밀스톤(millstone)과 그라인드스톤(grindstone)[밀링(milling)용·그라인딩(grinding)용·펄핑(pulping)용으로 한정한다]	8	A
6715	6804210000	합성·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8	A
6716	6804221000	반도체 웨이퍼 연마용	8	A
6717	6804229000	기타	8	A
6718	6804230000	천연석으로 만든 것	8	B
6719	6804300000	수지석(手砥石)	8	A
6720	6805100000	방직용 섬유의 직물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A
6721	6805200000	종이나 판지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A
6722	6805300000	그 밖의 재료를 기본 재료로 한 것	8	A
6723	6806101000	슬래그 울(slag wool)	8	A
6724	6806102000	암면(rock wool)	8	A
6725	6806103000	세라믹 파이버	8	A
6726	6806109000	기타	8	A
6727	6806201000	박리한 질석(蛭石)	8	A
6728	6806202000	팽창점토	8	A
6729	6806204000	팽창퍼라이트	8	A

6730	6806209000	기타	8	A
6731	6806901000	내화피복재	8	A
6732	6806909000	기타	8	A
6733	6807100000	롤 모양인 것	8	B
6734	6807900000	기타	8	A
6735	6808000000	패널·보드·타일·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짚·목재의 대팻밥·칩·파티클(particle)·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8	A
6736	6809110000	종이나 판지만을 입혔거나 보강한 것	8	C
6737	6809190000	기타	8	B
6738	6809900000	그 밖의 제품	8	A
6739	6810111000	블록	8	A
6740	6810112000	벽돌	8	A
6741	6810191000	타일	8	B
6742	6810192000	판석	8	A
6743	6810199000	기타	8	A
6744	6810910000	조립식 건축자재(건축용이나 토목 공사용으로 한정한다)	8	A
6745	6810992000	파일	8	A
6746	6810993000	전신주	8	A
6747	6810999000	기타	8	A
6748	6811400000	석면을 함유한 것	8	A
6749	6811810000	물결 모양의 시트(sheet)	8	B
6750	6811820000	그 밖의 시트(sheet)·패널·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	8	A
6751	6811890000	그 밖의 제품	8	A
6752	6812800000	청석면의 것	8	A
6753	6812910000	의류·의류 부속품·신발·모자류	8	A
6754	6812990000	기타	8	A
6755	6813200000	석면을 함유한 것	8	A
6756	6813810000	브레이크 라이닝(brake lining)과 패드	8	A
6757	6813891000	클러치 페이싱	8	A
6758	6813899000	기타	8	A
6759	6814100000	판·시트(sheet)·스트립(strip)(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의 것으로 한정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A
6760	6814900000	기타	8	A
6761	6815110000	탄소섬유	8	A
6762	6815120000	탄소섬유 직물	8	A
6763	6815131000	프리프레그	8	A
6764	6815139000	기타	8	A
6765	6815191000	비전기용 흑연제품	8	A
6766	6815199000	기타	8	A
6767	6815200000	이탄(泥炭)제품	8	A
6768	6815910000	마그네사이트, 페리클레이스(periclase) 형태의 마그네시아, 백운석[돌라임(dolime) 형태의 것을 포함한다)]이나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 마그네사이트, 백운석이나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8	A
		- 기타	8	B
6769	6815990000	기타	8	B
6770	6901001000	벽돌	8	A
6771	6901002000	블록	8	A
6772	6901003000	타일	8	A
6773	6901009010	슬래브와 패널	8	A

6774	6901009090	기타	8	A
6775	6902100000	마그네슘・칼슘・크로뮴원소를 산화마그네슘・산화칼슘・산화크로뮴으로 표현하였을 때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8	A
6776	6902200000	알루미나(Al2O3)・실리카(SiO2),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8	A
6777	6902901000	탄화규소나 지르콘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A
6778	6902909000	기타	8	A
6779	6903102010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에 사용되는 노(爐)용	3	A
6780	6903102090	기타	8	A
6781	6903105000	노즐	8	A
6782	6903109000	기타	8	A
6783	6903202000	도가니	8	A
6784	6903205000	노즐	8	A
6785	6903207000	관(管)	8	A
6786	6903209000	기타	8	A
6787	6903901000	탄화규소나 지르콘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A
6788	6903909020	도가니	8	A
6789	6903909070	관(管)	8	A
6790	6903909080	막대(bar, rod)	8	A
6791	6903909090	기타		
		- 도가니	8	A
		- 반응그릇	8	A
		- 머플	8	A
		- 노즐	8	A
		- 플러그(plug)	8	A
		- 기타	8	B
6792	6904100000	건축용 벽돌	8	A
6793	6904900000	기타	8	B
6794	6905100000	기와(지붕타일)	8	B
6795	6905900000	기타	8	A
6796	6906001000	관(管)・도관(導管)・홈통	8	A
6797	6906002000	관의 연결구류	8	A
6798	6907210000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이하인 것	8	A
6799	6907221000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초과 100분의 3 이하인 것	8	A
6800	6907229000	기타	8	A
6801	6907230000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10 초과인 것	8	A
6802	6907301000	자기제의 것	8	A
6803	6907309000	기타	8	A
6804	6907401000	자기제의 것	8	A
6805	6907409000	기타	8	A
6806	6909110000	자기제의 것	8	A
6807	6909120000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8	A
6808	6909190000	기타	8	A
6809	6909900000	기타	8	A
6810	6910101000	세면대	8	A
6811	6910103000	수세식 변기통	8	A
6812	6910104000	소변기	8	A
6813	6910109000	기타	8	A
6814	6910900000	기타	8	A

6815	6911101000	커피 세트・티세트	8	A
6816	6911102000	공기, 대접과 접시	8	A
6817	6911109000	기타	8	A
6818	6911900000	기타	8	A
6819	6912001010	커피 세트・티세트	8	A
6820	6912001020	공기, 대접과 접시	8	A
6821	6912001090	기타	8	A
6822	6912002000	가정용품	8	A
6823	6912003000	화장용품	8	A
6824	6912009000	기타	8	A
6825	6913100000	자기제의 것	8	A
6826	6913900000	기타	8	A
6827	6914101000	화분	8	A
6828	6914109000	기타	8	A
6829	6914901000	화분	8	A
6830	6914909000	기타	8	A
6831	7001001000	괴(塊)	5	A
6832	7001002000	웨이스트(waste)・스크랩(scrap), 깨진 유리	3	A
6833	7002100000	구(球)	8	A
6834	7002201000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quartz ware) 제조에 사용되는 것	3	A
6835	7002209000	기타	8	A
6836	7002311000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quartz ware) 제조에 사용되는 것	3	A
6837	7002319000	기타	8	A
6838	7002320000	선팽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1백만분의 5 이하인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8	A
6839	7002390000	기타	8	A
6840	700312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6841	700312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6842	700312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6843	700312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6844	700312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6845	700312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6846	700312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A
6847	700319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6848	700319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6849	700319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6850	700319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6851	700319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6852	700319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6853	700319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A
6854	7003200000	망입(網入) 시트(sheet) 유리	8	A
6855	7003300000	프로파일(profile)	8	A
6856	700420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6857	700420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6858	700420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6859	700420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6860	700420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6861	700420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6862	700420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A

6863	700490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6864	700490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6865	700490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6866	700490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6867	700490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6868	700490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6869	700490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A
6870	7005101010	두께가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B
6871	700510102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B
6872	700510103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B
6873	700510104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B
6874	7005102010	두께가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B
6875	700510202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B
6876	700510203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B
6877	700510204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B
6878	7005109010	두께가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B
6879	700510902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B
6880	700510903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B
6881	700510904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B
6882	700521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B
6883	700521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	B
6884	700521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B
6885	700521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	B
6886	700521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B
6887	700521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B
6888	7005217010	두께가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8	B
6889	7005217020	두께가 10밀리미터 초과 1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B
6890	7005217030	두께가 1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B
6891	700529101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4	B
6892	7005291020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blank mask)용	3	A
6893	7005291030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용	4	A
6894	7005291040	액정 디스플레이용	8	A
6895	7005291091	맑은 유리	8	A
6896	7005291092	저철분 유리	8	A
6897	7005291099	기타	8	A
6898	700529201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4	B
6899	7005292020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blank mask)용	3	A
6900	7005292030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용	4	A
6901	7005292091	맑은 유리	8	A
6902	7005292092	저철분 유리	8	A
6903	7005292099	기타	8	A
6904	7005293010	맑은 유리	8	B
6905	7005293020	저철분 유리	8	B
6906	7005293090	기타	8	B
6907	7005294010	맑은 유리	8	B
6908	7005294020	저철분 유리	8	B
6909	7005294090	기타	8	B
6910	7005295010	맑은 유리	8	B
6911	7005295020	저철분 유리	8	B

6912	7005295090	기타	8	B
6913	7005296010	맑은 유리	8	B
6914	7005296020	저철분 유리	8	B
6915	7005296090	기타	8	B
6916	7005297010	맑은 유리	8	B
6917	7005297020	저철분 유리	8	B
6918	7005297090	기타	8	B
6919	7005298010	맑은 유리	8	B
6920	7005298020	저철분 유리	8	B
6921	7005298090	기타	8	B
6922	7005299010	맑은 유리	8	B
6923	7005299020	저철분 유리	8	B
6924	7005299090	기타	8	B
6925	7005300000	망입(網入) 유리	8	A
6926	700600100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4	A
6927	7006002000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blank mask)용	3	A
6928	7006003000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용	4	A
6929	7006004000	액정 디스플레이용	8	A
6930	7006009000	기타	8	A
6931	7007111000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B
6932	7007112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B
6933	7007191000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B
6934	7007192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B
6935	7007211000	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인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8	B
6936	7007212000	두께가 1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8	B
6937	7007291000	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인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8	B
6938	7007292000	두께가 1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8	B
6939	7008000000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	8	B
6940	7009100000	백미러(차량용으로 한정한다)	8	B
6941	7009910000	틀이 붙지 않은 것	8	B
6942	7009920000	틀이 붙은 것	8	B
6943	7010100000	앰플	8	A
6944	7010200000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8	A
6945	7010900000	기타	8	A
6946	7011100000	전등용	8	A
6947	7011201000	천연색용	8	A
6948	7011209000	기타	8	A
6949	7011900000	기타	8	A
6950	7013100000	유리 도자제의 것	8	A
6951	701322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8	A
6952	7013280000	기타	8	B
6953	701333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8	A
6954	7013370000	기타	8	B
6955	701341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8	A
6956	7013420000	선팽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이하인 유리로 만든 것	8	A
6957	7013490000	기타	8	B
6958	701391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8	B
6959	7013990000	기타	8	A
6960	7014001000	실드빔 램프(sealed beam lamp)의 것	8	A

6961	7014009010	신호용 유리제품	8	A
6962	7014009020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	8	A
6963	701510000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8	A
6964	7015901000	선글라스용	8	A
6965	7015902000	시계용 유리와 이와 유사한 것	8	A
6966	7015909000	기타	8	A
6967	7016100000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8	A
6968	7016901000	압축하거나 주형한 유리로 만든 포장(鋪裝)용 블록·슬래브·벽돌·스퀘어(square)·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8	A
6969	7016909010	레드라이트(leaded light)	8	A
6970	7016909020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	8	A
6971	7016909090	기타	8	A
6972	7017100000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8	A
6973	7017200000	선팽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이하인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8	A
6974	7017900000	기타	8	A
6975	7018101000	비드(bead)	8	A
6976	7018102000	모조 진주	8	A
6977	7018103000	모조 귀석과 반귀석	8	A
6978	7018104000	모조 산호	8	A
6979	7018109000	기타	8	A
6980	7018200000	1밀리미터 이하인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8	A
6981	7018901000	유리안구(인체용은 제외한다)	8	A
6982	7018909000	기타	8	A
6983	7019110000	단연사(길이가 5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A
6984	7019120000	로빙(roving)	8	A
6985	7019130000	그 밖의 실[슬리버(sliver)로 한정한다]	8	A
6986	7019140000	기계적으로 접착한 매트	8	A
6987	7019150000	화학적으로 접착한 매트	8	A
6988	7019190000	기타	8	A
6989	7019610000	촘촘하게 직조한 직물[로빙(roving)의 것]	8	A
6990	7019620000	그 밖의 촘촘한 직물[로빙(roving)의 것]	8	A
6991	7019631000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8	A
6992	7019632000	폭이 30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	8	A
6993	7019639000	기타	8	A
6994	7019641000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8	A
6995	7019642000	폭이 30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	8	A
6996	7019649000	기타	8	A
6997	7019651000	로빙으로 짠 것	8	A
6998	7019659000	기타	8	A
6999	7019661000	로빙으로 짠 것	8	A
7000	7019662000	기타(평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	8	A

7001	7019669000	기타	8	A
7002	7019692000	웹(web)·매트리스(mattress)·보드와 이와 유사한 부직포	8	A
7003	7019693010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8	A
7004	7019693090	기타	8	A
7005	7019699000	기타	8	A
7006	7019710000	베일(얇은 시트)	8	A
7007	7019720000	그 밖의 촘촘한 직물	8	A
7008	7019730000	그 밖의 성긴 직물	8	A
7009	7019801000	글라스 울(glass wool)	8	A
7010	7019809000	기타	8	A
7011	7019900000	기타	8	A
7012	7020001011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용으로 확산로(擴散爐)와 산화로(酸化爐)에 삽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석영 리액터(reactor) 튜브와 홀더	0	A
7013	7020001012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에 사용되는 노(爐)용 석영 도가니	3	A
7014	7020001013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quartz ware) 제조에 사용되는 것	3	A
7015	7020001019	기타	8	A
7016	7020001090	기타	8	A
7017	7020009000	기타	8	A
7018	7101100000	천연진주	8	A
7019	7101210000	가공하지 않은 것	8	A
7020	7101220000	가공한 것	8	A
7021	7102100000	선별하지 않은 것	1	A
7022	7102210000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1	A
7023	7102290000	기타	5	A
7024	7102310000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1	A
7025	7102390000	기타	5	B
7026	7103100000	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	1	A
7027	7103911000	공업용	5	A
7028	7103919010	루비	5	A
7029	7103919020	사파이어	5	A
7030	7103919030	에메랄드	5	A
7031	7103991000	공업용	5	A
7032	7103999010	오팔	5	A
7033	7103999020	비취	5	A
7034	7103999030	옥수(玉髓)	5	A
7035	7103999040	수정	5	A
7036	7103999090	기타	5	A
7037	7104100000	압전기용 석영	5	A
7038	7104210000	다이아몬드	5	A
7039	7104290000	기타	5	A
7040	7104911000	공업용	5	A
7041	7104919000	기타	5	A
7042	7104991000	인조수정(공업용으로 한정한다)	5	A
7043	7104999010	공업용	5	A
7044	7104999090	기타	5	A
7045	7105101000	천연의 것	5	A
7046	7105102000	합성한 것	5	A
7047	7105901000	석류석의 것	5	A
7048	7105909000	기타	5	A

7049	7106100000	가루	3	A
7050	7106911000	은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3	A
7051	7106919000	기타	3	A
7052	7106921000	막대(bar, rod)와 형재(形材)	3	A
7053	7106922000	판・시트(sheet)・스트립(strip)	3	A
7054	7106923000	선	3	A
7055	7106929000	기타	3	A
7056	7107001000	막대(bar, rod)와 형재(形材)	3	A
7057	7107002000	판・시트(sheet)・스트립(strip)	3	A
7058	7107003000	선	3	A
7059	7107004000	관(管)과 중공(中空)봉	3	A
7060	7107009000	기타	3	A
7061	7108110000	가루	3	A
7062	7108121000	럼프(lump)・빌릿(billet)・알갱이	3	A
7063	7108129000	기타	3	A
7064	7108131010	반도체 제조용	3	A
7065	7108131090	기타	3	A
7066	7108139010	막대(bar, rod)와 형재(形材)	3	A
7067	7108139020	판・시트(sheet)・스트립(strip)	3	A
7068	7108139090	기타	3	A
7069	7108200000	화폐용	0	A
7070	7109000000	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이나 은(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	A
7071	71101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3	A
7072	7110190000	기타	3	A
7073	71102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3	A
7074	7110290000	기타	3	A
7075	71103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3	A
7076	7110390000	기타	3	A
7077	71104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3	A
7078	7110490000	기타	3	A
7079	7111000000	백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은・금(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	A
7080	7112300000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灰)	2	A
7081	7112911000	잔재물의 것	2	A
7082	7112919000	기타	3	A
7083	7112921000	잔재물의 것	2	A
7084	7112929000	기타	3	A
7085	7112991000	잔재물의 것	2	A
7086	7112992000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의 것	6.5	A
7087	7112999000	기타	3	A
7088	7113110000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8	A
7089	7113191000	백금으로 만든 것	8	A
7090	7113192000	금으로 만든 것	8	A
7091	7113199000	기타	8	A
7092	7113201000	백금을 입힌 것	8	A
7093	7113202000	금을 입힌 것	8	A
7094	7113203000	은을 입힌 것	8	A
7095	7113209000	기타	8	A

7096	7114110000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8	A
7097	7114191000	식탁용	8	A
7098	7114199000	기타	8	A
7099	7114200000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8	A
7100	7115100000	촉매제[백금으로 만든 와이어 클로스(wire cloth)나 그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8	A
7101	7115901010	백금 도가니	8	A
7102	7115901090	기타	8	A
7103	7115909010	금으로 만든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한다)	8	A
7104	7115909020	은으로 만든 것(은을 입힌 금속을 포함한다)	8	A
7105	7115909090	기타	8	A
7106	7116101000	천연진주로 만든 것	8	A
7107	7116102000	양식진주로 만든 것	8	A
7108	7116201000	공업용	8	A
7109	7116209010	신변장식용	8	A
7110	7116209090	기타	8	A
7111	7117110000	커프링크(cuff-link)와 장식용 단추	8	A
7112	7117191000	목걸이	8	A
7113	7117192000	팔찌	8	A
7114	7117193000	귀걸이	8	A
7115	7117194000	브로치	8	A
7116	7117195000	반지	8	A
7117	7117196000	신변장식용 체인	8	A
7118	7117199000	기타	8	A
7119	7117900000	기타	8	A
7120	7118100000	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	0	A
7121	7118901000	금화	0	A
7122	7118902000	은화	0	A
7123	7118909000	기타	0	A
7124	7201101000	주물용	0	A
7125	7201102000	제강용	0	A
7126	7201109000	기타	0	A
7127	720120000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7128	7201500000	합금선철과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2	A
7129	7202110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것	5	A
7130	7202190000	기타	5	A
7131	7202210000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	2	A
7132	7202291000	마그네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	3	A
7133	7202299000	기타	3	A
7134	7202300000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5	A
7135	7202410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2	A
7136	7202490000	기타	2	A
7137	7202500000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	2	A
7138	7202600000	페로니켈(ferro-nickel)	3	A
7139	7202700000	페로몰리브데늄(ferro-molybdenum)	3	A
7140	7202800000	페로텅스텐(ferro-tungsten)과 페로실리코 텅스텐(ferro-silico-tungsten)	3	A
7141	7202910000	페로티타늄(ferro-titanium)과 페로실리코티타늄(ferro-silico-titanium)	3	A
7142	7202920000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3	A

7143	7202930000	페로니오븀(ferro-niobium)	3	A
7144	7202991000	인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3	A
7145	7202999000	기타	3	A
7146	7203100000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0	A
7147	7203900000	기타	1	A
7148	7204100000	주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7149	7204210000	스테인리스강의 것	0	A
7150	7204290000	기타	0	A
7151	7204300000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7152	7204410000	선삭(旋削)·세이빙(shaving)·칩·밀링 웨이스트(milling waste)·톱밥·파일링(filing)·트리밍(trimming)·스탬핑(stamping)(번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0	A
7153	7204490000	기타	0	A
7154	7204500000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0	A
7155	7205101000	숏(shot)	5	A
7156	7205102000	그릿(grit)	5	A
7157	7205109000	기타	5	A
7158	7205210000	합금강의 것	3	A
7159	7205290000	기타	3	A
7160	7206100000	잉곳(ingot)	0	A
7161	7206900000	기타	0	A
7162	7207111000	블룸(bloom)	0	A
7163	7207112000	빌릿(billet)	0	A
7164	7207121000	슬래브	0	A
7165	7207122000	시트바(sheet bar)	0	A
7166	7207190000	기타	0	A
7167	7207201000	블룸(bloom)	0	A
7168	7207202000	빌릿(billet)	0	A
7169	7207203000	슬래브	0	A
7170	7207209000	기타	0	A
7171	7208101000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0	A
7172	7208109000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A
7173	720825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174	7208259000	기타	0	A
7175	720826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176	7208269000	기타	0	A
7177	720827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178	7208279000	기타	0	A
7179	720836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180	7208369000	기타	0	A
7181	720837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182	7208379000	기타	0	A
7183	720838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184	7208389000	기타	0	A
7185	720839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186	7208399000	기타	0	A
7187	7208400000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0	A
7188	720851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189	7208519000	기타	0	A

7190	720852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191	7208529000	기타	0	A
7192	720853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193	7208539000	기타	0	A
7194	720854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195	7208549000	기타	0	A
7196	7208900000	기타	0	A
7197	720915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198	7209159000	기타	0	A
7199	720916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00	7209169000	기타	0	A
7201	720917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02	7209179000	기타	0	A
7203	720918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04	7209189000	기타	0	A
7205	720925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06	7209259000	기타	0	A
7207	720926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08	7209269000	기타	0	A
7209	720927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10	7209279000	기타	0	A
7211	720928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12	7209289000	기타	0	A
7213	7209900000	기타	0	A
7214	7210110000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0	A
7215	7210120000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A
7216	7210200000	납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함석판을 포함한다)	0	A
7217	721030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18	7210309000	기타	0	A
7219	7210410000	물결 모양의 것	0	A
7220	721049101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21	7210491090	기타	0	A
7222	721049901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23	7210499090	기타	0	A
7224	7210500000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A
7225	7210610000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A
7226	7210690000	기타	0	A
7227	7210701000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의 것	0	A
7228	7210702000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의 것	0	A
7229	7210901000	니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A
7230	7210902000	구리를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A
7231	7210909000	기타	0	A
7232	7211130000	4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0	A
7233	721114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34	7211149000	기타	0	A
7235	721119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36	7211199000	기타	0	A

7237	721123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38	7211239000	기타	0	A
7239	721129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40	7211299000	기타	0	A
7241	721190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42	7211909000	기타	0	A
7243	7212101000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0	A
7244	7212102000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A
7245	721220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46	7212209000	기타	0	A
7247	721230101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48	7212301090	기타	0	A
7249	721230901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50	7212309090	기타	0	A
7251	7212401000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0	A
7252	7212402000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A
7253	7212501000	니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A
7254	7212502000	구리를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A
7255	7212509000	기타	0	A
7256	7212600000	클래드(clad)한 것	0	A
7257	721310000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0	A
7258	721320000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0	A
7259	721391101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이상인 것	0	A
7260	7213911090	기타	0	A
7261	7213919000	기타	0	A
7262	721399101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이상인 것	0	A
7263	7213991090	기타	0	A
7264	7213999000	기타	0	A
7265	7214100000	단조(鍛造)한 것	0	A
7266	7214201000	철근	0	A
7267	7214209000	기타	0	A
7268	721430000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0	A
7269	7214910000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0	A
7270	7214991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	0	A
7271	7214999000	기타	0	A
7272	7215100000	쾌삭강(快削鋼)의 것[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7273	7215500000	기타[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7274	7215900000	기타	0	A
7275	7216101000	유(U)형강	0	A
7276	7216102000	아이(I)형강	0	A
7277	7216103000	에이치(H)형강	0	A
7278	7216210000	엘(L)형강	0	A
7279	7216220000	티(T)형강	0	A
7280	7216310000	유(U)형강	0	A
7281	7216320000	아이(I)형강	0	A
7282	7216333000	높이가 300밀리미터 미만인 것	0	A
7283	7216334000	높이가 300밀리미터 이상 60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7284	7216335000	높이가 6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A

7285	7216401000	엘(L)형강	0	A
7286	7216402000	티(T)형강	0	A
7287	7216500000	그 밖의 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抜)・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7288	7216610000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0	A
7289	7216690000	기타	0	A
7290	7216910000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한 것	0	A
7291	7216990000	기타	0	A
7292	7217100000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A
7293	7217200000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A
7294	7217301000	구리를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A
7295	7217309000	기타	0	A
7296	7217900000	기타	0	A
7297	7218101000	잉곳(ingot)	0	A
7298	7218109000	기타	0	A
7299	7218911000	슬래브	0	A
7300	7218912000	시트바(sheet bar)	0	A
7301	7218919000	기타	0	A
7302	7218991000	블룸(bloom)	0	A
7303	7218992000	빌릿(billet)	0	A
7304	7218999000	기타	0	A
7305	721911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A
7306	7219111090	기타	0	A
7307	7219119000	기타	0	A
7308	721912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A
7309	7219121090	기타	0	A
7310	7219129000	기타	0	A
7311	721913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A
7312	7219131090	기타	0	A
7313	7219139000	기타	0	A
7314	721914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A
7315	7219141090	기타	0	A
7316	7219149000	기타	0	A
7317	721921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A
7318	7219211090	기타	0	A
7319	7219219000	기타	0	A
7320	721922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A
7321	7219221090	기타	0	A
7322	7219229000	기타	0	A
7323	721923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A
7324	7219231090	기타	0	A
7325	7219239000	기타	0	A
7326	721924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A
7327	7219241090	기타	0	A
7328	7219249000	기타	0	A
7329	721931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A
7330	7219311090	기타	0	A
7331	7219319000	기타	0	A
7332	721932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A
7333	7219321090	기타	0	A

7334	7219329000	기타	0	A
7335	721933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A
7336	7219331090	기타	0	A
7337	7219339000	기타	0	A
7338	721934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A
7339	7219341090	기타	0	A
7340	7219349000	기타	0	A
7341	721935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A
7342	7219351090	기타	0	A
7343	7219359000	기타	0	A
7344	721990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A
7345	7219901090	기타	0	A
7346	7219909000	기타	0	A
7347	722011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A
7348	7220111090	기타	0	A
7349	7220119000	기타	0	A
7350	722012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A
7351	7220121090	기타	0	A
7352	7220129000	기타	0	A
7353	722020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A
7354	7220201090	기타	0	A
7355	7220209000	기타	0	A
7356	722090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A
7357	7220901090	기타	0	A
7358	7220909000	기타	0	A
7359	72210000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7360	7222110000	횡단면이 원형인 것	0	A
7361	7222190000	기타	0	A
7362	7222200000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7363	7222300000	그 밖의 봉	0	A
7364	7222400000	형강(形鋼)	0	A
7365	7223000000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0	A
7366	7224101000	잉곳(ingot)	0	A
7367	7224109000	기타	0	A
7368	7224901000	블룸(bloom)	0	A
7369	7224902000	빌릿(billet)	0	A
7370	7224903000	슬래브	0	A
7371	7224904000	시트바(sheet bar)	0	A
7372	7224909000	기타	0	A
7373	7225110000	방향성(方向性)인 것	0	A
7374	7225190000	기타	0	A
7375	7225301000	고속도강의 것	0	A
7376	722530901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377	7225309091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의 것	0	A
7378	7225309092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의 것	0	A
7379	7225309099	기타	0	A
7380	7225401000	고속도강의 것	0	A
7381	722540901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382	7225409091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의 것	0	A
7383	7225409092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의 것	0	A
7384	7225409099	기타	0	A
7385	7225501000	고속도강의 것	0	A
7386	7225509000	기타	0	A
7387	7225911000	고속도강의 것	0	A
7388	722591901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389	7225919090	기타	0	A
7390	7225921000	고속도강의 것	0	A
7391	7225929011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392	7225929019	기타	0	A
7393	7225929091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394	7225929099	기타	0	A
7395	7225991000	고속도강의 것	0	A
7396	7225999000	기타	0	A
7397	7226110000	방향성(方向性)인 것	0	A
7398	7226190000	기타	0	A
7399	7226200000	고속도강의 것	0	A
7400	722691100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의 것	0	A
7401	722691200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의 것	0	A
7402	7226919000	기타	0	A
7403	722692000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0	A
7404	7226991000	비정질 합금 박판(두께가 100미크론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7405	7226992000	아연을 전해도금이나 전해 도포한 것	0	A
7406	722699300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이나 도포한 것	0	A
7407	7226999000	기타	0	A
7408	7227100000	고속도강의 것	0	A
7409	7227200000	실리코망간강의 것	0	A
7410	7227901000	내열강의 것	0	A
7411	722790901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이고 전 중량의 100분의 0.003 미만의 것	0	A
7412	722790902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3 이상의 것	0	A
7413	7227909090	기타	0	A
7414	7228100000	고속도강의 봉	0	A
7415	7228200000	실리코망간강의 봉	0	A
7416	722830100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	0	A
7417	7228309000	기타	0	A
7418	722840100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	0	A
7419	7228409000	기타	0	A
7420	7228500000	그 밖의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7421	7228601000	철근(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	0	A
7422	7228609000	기타	0	A
7423	722870101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	0	A
7424	7228701090	기타	0	A
7425	7228709000	기타	0	A

7426	7228800000	중공(中空)드릴봉	0	A
7427	7229200000	실리코망간강의 것	0	A
7428	7229901010	고속도강의 것	0	A
7429	7229901090	기타	0	A
7430	7229902010	고속도강의 것	0	A
7431	7229902090	기타	0	A
7432	7229909010	고속도강의 것	0	A
7433	7229909090	기타	0	A
7434	7301101000	유(U)형	0	A
7435	7301109000	기타	0	A
7436	7301201000	유(U)형강	0	A
7437	7301202000	에이치(H)형강	0	A
7438	7301203000	아이(I)형강	0	A
7439	7301209000	기타	0	A
7440	7302101010	열처리한 것	0	A
7441	7302101090	기타	0	A
7442	7302102010	열처리한 것	0	A
7443	7302102090	기타	0	A
7444	7302103010	열처리한 것	0	A
7445	7302103090	기타	0	A
7446	7302104010	열처리한 것	0	A
7447	7302104090	기타	0	A
7448	7302300000	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교차구류(crossing frog)·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8	B
7449	7302400000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0	A
7450	7302900000	기타	0	A
7451	7303001010	구상흑연 주철로 만든 것	8	B
7452	7303001090	기타	8	B
7453	7303002000	주철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8	B
7454	7304110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0	A
7455	7304190000	기타	0	A
7456	7304220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드릴파이프	0	A
7457	7304230000	그 밖의 드릴파이프	0	A
7458	7304240000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A
7459	7304290000	기타	0	A
7460	7304310000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A
7461	7304390000	기타	0	A
7462	7304410000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A
7463	7304490000	기타	0	A
7464	7304510000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A
7465	7304590000	기타	0	A
7466	7304900000	기타	0	A
7467	7305111000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 초과 1,422.4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7468	7305112000	바깥지름이 1,422.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A
7469	7305120000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7470	7305190000	기타	0	A
7471	7305200000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0	A
7472	7305311000	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 용접한 것	0	A
7473	7305312000	전기저항 용접한 것	0	A

7474	7305319000	기타	0	A
7475	7305390000	기타	0	A
7476	7305900000	기타	0	A
7477	7306110000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A
7478	7306190000	기타	0	A
7479	7306211000	케이싱	0	A
7480	7306212000	튜빙	0	A
7481	7306291000	케이싱	0	A
7482	7306292000	튜빙	0	A
7483	7306301010	아연도금한 것	0	A
7484	7306301020	아연 이외의 금속으로 도금이나 클래드한 것	0	A
7485	7306301030	비금속으로 도포한 것	0	A
7486	7306301090	기타	0	A
7487	7306302010	아연도금한 것	0	A
7488	7306302020	아연 이외의 금속으로 도금이나 클래드한 것	0	A
7489	7306302030	비금속으로 도포한 것	0	A
7490	7306302090	기타	0	A
7491	7306401000	바깥지름이 114.3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A
7492	7306402000	바깥지름이 114.3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7493	730650000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A
7494	7306611010	아연도금한 것	0	A
7495	7306611090	기타	0	A
7496	7306612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0	A
7497	7306613000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	0	A
7498	7306691010	아연도금한 것	0	A
7499	7306691090	기타	0	A
7500	7306692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0	A
7501	7306693000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	0	A
7502	7306901000	이중권(double wall) 강관	0	A
7503	7306909000	기타	0	A
7504	7307110000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8	A
7505	7307190000	기타	8	A
7506	7307210000	플랜지(flange)	8	A
7507	7307221000	나선 가공한 슬리브(sleeve)(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에 한정한다)	0	A
7508	7307229000	기타	8	A
7509	7307230000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8	A
7510	7307290000	기타	8	B
7511	7307910000	플랜지(flange)	8	A
7512	7307921000	나선 가공한 슬리브(sleeve)(철강으로 만든 것에 한정한다)	0	A
7513	7307929000	기타	8	A
7514	7307930000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8	A
7515	7307991000	나선가공한 것(도금여부에 상관없다)	8	B
7516	7307999000	기타	8	B
7517	7308100000	다리와 교량	0	A
7518	7308200000	탑과 격자주(格子柱)	8	B
7519	730830000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8	B
7520	7308400000	비계(飛階)・차단기・지주・굉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8	A
7521	7308901000	수문	0	A
7522	7308909000	기타	0	A

7523	730900000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A
7524	7310100000	용적이 50리터 이상인 것	8	A
7525	7310210000	납땜이나 크림핑(crimping)으로 봉합되는 통	8	A
7526	7310290000	기타	8	A
7527	7311001000	용적이 30리터 이하인 것	8	A
7528	7311002000	용적이 30리터 초과 100리터 이하인 것	8	A
7529	7311003000	용적이 100리터를 초과하는 것	8	A
7530	7312101011	연결구류 부착한 것	0	A
7531	7312101019	기타	0	A
7532	7312101091	연결구류 부착한 것	0	A
7533	7312101092	스틸타이어 코드	0	A
7534	7312101099	기타	0	A
7535	7312102011	연결구류 부착한 것	0	A
7536	7312102019	기타	0	A
7537	7312102091	연결구류 부착한 것	0	A
7538	7312102092	스틸타이어 코드	0	A
7539	7312102099	기타	0	A
7540	7312900000	기타	0	A
7541	7313001000	유자선(有刺線)	0	A
7542	7313009000	기타	0	A
7543	7314120000	기계용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A
7544	7314140000	그 밖의 직조한 클로스(cloth)(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A
7545	7314190000	기타	0	A
7546	7314200000	그릴・망・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mesh)의 크기가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7547	7314310000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A
7548	7314390000	기타	0	A
7549	7314410000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A
7550	7314420000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0	A
7551	7314490000	기타	0	A
7552	7314500000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0	A
7553	7315110000	롤러체인(roller chain)	8	A
7554	7315120000	그 밖의 체인	8	A
7555	7315190000	부분품	8	A
7556	7315200000	스키드체인(skid chain)	8	A
7557	7315810000	스터드링크(stud-link)	8	A
7558	7315820000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으로 한정한다)	8	A
7559	7315890000	기타	8	A
7560	7315900000	그 밖의 부분품	8	A
7561	7316001000	닻	8	A
7562	7316002000	부분품	8	A
7563	7317001011	도금・도포・ 페인트한 것	0	A
7564	7317001019	기타	0	A
7565	7317001021	도금・도포・ 페인트한 것	0	A
7566	7317001029	기타	0	A

7567	7317002000	압정	0	A
7568	7317003000	제도용과 사무용 핀	0	A
7569	7317004000	물결 무늬가 있는 못	0	A
7570	7317005000	스테이플	0	A
7571	7317009000	기타	0	A
7572	7318110000	코치 스크루(coach screw)	8	A
7573	7318120000	그 밖의 목재용 스크루(screw)	8	A
7574	7318130000	스크루 훅(screw hook)과 스크루 링(screw ring)	8	A
7575	7318140000	셀프태핑 스크루(self-tapping screw)	8	A
7576	7318151000	머신스크루(screw)	8	A
7577	7318152000	볼트(bolt)	8	A
7578	7318153000	볼트(bolt)·너트(nut)(세트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8	A
7579	7318159000	기타	8	A
7580	7318160000	너트(nut)	8	A
7581	7318190000	기타	8	A
7582	7318210000	스프링 와셔(spring washer)와 그 밖의 록 와셔(lock washer)	8	A
7583	7318220000	그 밖의 와셔(washer)	8	A
7584	7318230000	리벳(rivet)	8	A
7585	7318240000	코터(cotter)와 코터핀(cotter-pin)	8	A
7586	7318290000	기타	8	A
7587	7319401000	안전핀	8	A
7588	7319402000	반도체 웨이퍼·반도체 디바이스의 측정이나 검사에 사용되는 핀	8	A
7589	7319409000	기타	8	A
7590	7319901010	수봉침	8	A
7591	7319901020	수편침	8	A
7592	7319901090	기타	8	A
7593	7319909000	기타	8	A
7594	7320101000	자동차용 판상 스프링	8	A
7595	7320102000	기관차·철도 차량용 판상 스프링	8	A
7596	7320109000	기타	8	A
7597	7320201000	자동차용	8	A
7598	7320202000	충격 흡수용	8	A
7599	7320203000	철도차량 연계완충기용	8	A
7600	7320204000	가구용	8	A
7601	7320209000	기타	8	A
7602	7320901000	평나선형 스프링	8	A
7603	7320909000	그 밖의 스프링	8	A
7604	7321110000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8	A
7605	7321120000	액체연료용	8	A
7606	7321190000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8	A
7607	7321810000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8	A
7608	7321820000	액체연료용	8	A
7609	7321890000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8	A
7610	7321900000	부분품	8	A
7611	7322111000	방열기	8	A
7612	7322112000	부분품	8	A
7613	7322191000	방열기	8	A
7614	7322192000	부분품	8	A
7615	7322901000	태양열 집열기와 그 부분품	8	A

7616	7322909010	공기가열기	8	A
7617	7322909020	온풍배분기	8	A
7618	7322909030	부분품	8	A
7619	7323100000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8	A
7620	7323910000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가 아닌 것	8	A
7621	7323920000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8	A
7622	7323930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8	A
7623	7323940000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8	A
7624	7323990000	기타	8	A
7625	7324101000	설거지통	8	A
7626	7324102000	세면대	8	A
7627	7324210000	주철로 만든 것(법랑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8	A
7628	7324291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8	A
7629	7324299000	기타	8	A
7630	7324901000	화장용 세트	8	A
7631	7324908000	기타	8	B
7632	7324909000	부분품	8	A
7633	7325100000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8	A
7634	7325910000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8	A
7635	7325991000	주철로 만든 것	8	B
7636	7325992000	주강으로 만든 것	8	B
7637	7325993000	합금강으로 만든 것	8	B
7638	7325999000	기타	8	B
7639	7326110000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8	A
7640	7326190000	기타	8	B
7641	7326200000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	8	A
7642	7326901000	방직기계용 보빈(bobbin)	8	A
7643	7326909000	기타	8	B
7644	7401001000	구리의 매트(mat)	0	A
7645	7401002000	시멘트동(침전동)	0	A
7646	7402001000	정제하지 않은 구리	0	A
7647	7402002000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0	A
7648	7403110000	음극과 음극의 형재	3	B
7649	7403120000	와이어바(wire-bar)	5	A
7650	7403130000	빌릿(billet)	5	A
7651	7403191000	슬래브	5	A
7652	7403192000	잉곳(ingot)	5	A
7653	7403199000	기타	5	A
7654	7403210000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5	C
7655	7403220000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5	A
7656	7403291010	구리-니켈의 합금(백동)	5	B
7657	7403291020	구리-니켈-아연의 합금(양백)	5	B
7658	7403299000	기타	5	A
7659	7404000000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7660	7405000000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	5	A
7661	7406100000	비(非)층상조직인 가루	8	A
7662	7406201000	층상조직인 가루	8	A
7663	7406202000	플레이크(flake)	8	A
7664	740710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8	A
7665	7407210000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8	A

7666	7407291000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8	A
7667	740729201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	8	A
7668	7407292020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8	A
7669	7407299000	기타	8	A
7670	74081100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A
7671	7408190000	기타	8	A
7672	7408210000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8	A
7673	740822100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	8	A
7674	7408222000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8	A
7675	7408291000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8	A
7676	7408299000	기타	8	A
7677	7409111000	반도체 제조용	5	A
7678	7409119000	기타	8	A
7679	7409191000	반도체 제조용	5	A
7680	7409199000	기타	8	A
7681	7409211000	반도체 제조용	5	A
7682	7409219000	기타	8	A
7683	7409291000	반도체 제조용	5	A
7684	7409299000	기타	8	A
7685	7409311000	반도체 제조용	5	A
7686	7409319000	기타	8	A
7687	7409391000	반도체 제조용	5	A
7688	7409399000	기타	8	A
7689	7409401010	반도체 제조용	5	A
7690	7409401090	기타	8	A
7691	7409402010	반도체 제조용	5	A
7692	7409402090	기타	8	A
7693	7409901000	반도체 제조용	5	A
7694	7409909000	기타	8	A
7695	741011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8	A
7696	7410120000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8	A
7697	7410211000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모양인 것	8	A
7698	7410219000	기타	8	A
7699	7410221000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모양인 것	8	A
7700	7410229000	기타	8	B
7701	741110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8	A
7702	7411210000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8	B
7703	741122100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	8	A
7704	7411222000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8	A
7705	7411291000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8	A
7706	7411299000	기타	8	B
7707	741210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3	B
7708	7412200000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3	B
7709	7413000000	구리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3	B
7710	7415101000	귀금속을 도금·피복·도포한 것	8	A
7711	7415109000	기타	8	A
7712	7415210000	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	8	A
7713	7415290000	기타	8	A
7714	7415330000	스크루(screw), 볼트(bolt)와 너트(nut)	8	A
7715	7415390000	기타	8	A

7716	7418101000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8	A
7717	7418109010	식탁용품·주방용품	8	A
7718	7418109020	태양열 집열기(가정용에 사용되는 비전기식으로 한정한다)	5	A
7719	7418109030	기타 가정용 물품	8	A
7720	7418109091	태양열 집열기(가정용에 사용되는 비전기식으로 한정한다)용	5	A
7721	7418109099	기타	8	A
7722	7418201000	위생용품	8	A
7723	7418202000	부분품	8	A
7724	7419200000	주조·주형·압착·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A
7725	7419801010	클로스(cloth)	8	A
7726	7419801090	기타	8	A
7727	7419802000	구리로 만든 스프링	8	A
7728	7419809000	기타	8	A
7729	7501100000	니켈의 매트(mat)	0	A
7730	750120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8 이상인 것	2	A
7731	7501201090	기타	0	A
7732	7501209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8 이상인 것	2	A
7733	7501209090	기타	0	A
7734	7502101000	음극	3	B
7735	7502109000	기타	3	B
7736	7502200000	니켈 합금	3	B
7737	7503000000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7738	7504001000	가루	5	A
7739	7504002000	플레이크(flake)	5	A
7740	7505110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5	A
7741	75051200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5	A
7742	7505210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5	A
7743	75052200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5	A
7744	7506101000	판·시트(sheet)·스트립	3	A
7745	7506102000	박(箔)	5	A
7746	7506201000	판·시트(sheet)·스트립	5	A
7747	7506202000	박(箔)	5	A
7748	7507110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8	A
7749	75071200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8	A
7750	7507200000	관(管) 연결구류	8	A
7751	7508100000	니켈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	8	A
7752	7508901000	전기도금용 양극	8	A
7753	750890201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5	A
7754	750890202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8	A
7755	7508909000	기타	8	A
7756	76011000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1	A
7757	7601201000	캐스팅 얼로이(casting alloy)	1	A
7758	7601202000	빌릿(billet)	3	A
7759	7601209000	기타	1	A
7760	7602001000	캔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A
7761	7602009000	기타	0	A
7762	7603100000	비(非)층상조직인 가루	8	C
7763	7603201000	가루	8	C

7764	7603202000	플레이크(flake)	8	A
7765	7604101000	봉	8	C
7766	7604102010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8	A
7767	7604102090	기타	8	A
7768	7604210000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8	A
7769	7604291000	봉	8	A
7770	7604299000	그 밖의 프로파일(profile)	8	A
7771	76051100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C
7772	7605190000	기타	8	B
7773	76052100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A
7774	7605290000	기타	8	C
7775	76061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8	A
7776	7606119000	기타	8	A
7777	760612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8	A
7778	76069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8	A
7779	7606919000	기타	8	A
7780	760692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8	A
7781	76071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8	A
7782	7607119000	기타	8	A
7783	760719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8	B
7784	7607199000	기타	8	B
7785	760720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8	B
7786	7607209000	기타	8	B
7787	76081000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8	A
7788	760820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8	C
7789	760900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8	A
7790	761010000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8	A
7791	7610901000	구조물	8	A
7792	7610908000	기타	8	A
7793	7610909000	부분품	8	C
7794	761100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B
7795	7612100000	연질의 튜브형 용기	8	B
7796	7612901000	경질의 튜브형 용기	8	B
7797	7612909010	용적이 1리터 미만인 것	8	B
7798	7612909020	용적이 1리터 이상 20리터 미만인 것	8	B
7799	7612909030	용적이 20리터 이상인 것	8	B
7800	7613001000	압축가스용	8	A
7801	7613002000	액화가스용	8	A
7802	7614100000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8	A
7803	7614900000	기타	8	A
7804	7615101000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polishing)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8	A
7805	7615109010	태양열 집열기와 그 부분품	5	A
7806	7615109020	식탁용품·주방용품	8	A
7807	7615109030	그 밖의 가정용 물품	8	A
7808	7615109090	부분품	8	A
7809	7615201000	위생용품	8	A

7810	7615202000	부분품	8	A
7811	7616100000	못・압정・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8	A
7812	7616910000	알루미늄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울타리	8	A
7813	7616991000	보빈(bobbin)	8	A
7814	7616999010	알루미늄 파우치(pouch)	8	A
7815	7616999020	알루미늄 노브(knob)	8	A
7816	7616999090	기타	8	C
7817	7801101000	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3	C
7818	7801109000	기타	3	C
7819	7801910000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그 밖의 원소의 것	3	B
7820	7801991000	정제하지 않은 납	1	B
7821	7801992010	납-주석 합금	3	C
7822	7801992090	기타	3	C
7823	7802000000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7824	7804111000	시트(sheet)・스트립	8	A
7825	7804112000	박(箔)	8	A
7826	7804190000	기타	8	A
7827	7804201000	가루	8	A
7828	7804202000	플레이크(flake)	8	A
7829	7806001000	납으로 만든 용기	8	A
7830	7806002000	전기도금용 양극	8	A
7831	7806003010	봉	8	A
7832	7806003030	선(線)	8	A
7833	7806004000	관(管)과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8	A
7834	7806009000	기타	8	A
7835	7901110000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3	C
7836	7901120000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인 것	3	B
7837	7901201000	아연-알루미늄 합금	3	B
7838	7901209000	기타	3	C
7839	7902000000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7840	7903100000	아연 더스트(dust)	8	A
7841	7903901000	가루	8	A
7842	7903902000	플레이크(flake)	8	A
7843	7904001000	봉	8	A
7844	7904002000	프로파일(profile)	8	A
7845	7904003000	선(線)	8	A
7846	7905001000	판・시트(sheet)・스트립	8	A
7847	7905002000	박(箔)	8	A
7848	7907001000	아연으로 만든 홈통・지붕덮개・채광 창틀과 그 밖의 가공한 건축용 재료	8	A
7849	7907002010	관(管)	8	A
7850	7907002020	관(管) 연결구류	8	A
7851	7907009010	전기도금용 양극	8	A
7852	7907009090	기타	8	A
7853	8001100000	합금하지 않은 주석	2	A
7854	8001200000	주석 합금	3	A
7855	8002000000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7856	8003001010	합금하지 않은 것	8	A

7857	8003001090	기타	8	A
7858	8003002010	합금하지 않은 것	8	A
7859	8003002090	기타	8	A
7860	8007001000	전기도금용 양극	8	A
7861	8007002000	판·시트(sheet) 및 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A
7862	8007003010	박(箔)	8	A
7863	8007003021	가루	8	A
7864	8007003022	플레이크(flake)	8	A
7865	8007009000	기타	8	A
7866	8101100000	가루	3	A
7867	8101940000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3	A
7868	8101961000	전구용이나 전자관용 스파이럴 필라멘트	8	A
7869	8101969000	기타	8	A
7870	810197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7871	8101991010	봉	8	A
7872	8101991020	프로파일(profile)	8	A
7873	8101991030	판·시트(sheet)·스트립	8	A
7874	8101991040	박(箔)	8	A
7875	8101999000	기타	8	A
7876	8102100000	가루	3	A
7877	8102940000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3	A
7878	8102951000	봉	8	A
7879	8102952000	프로파일(profile)	8	A
7880	8102953000	판·시트(sheet)·스트립	8	A
7881	8102954000	박(箔)	8	A
7882	8102961000	전구용이나 전자관용 스파이럴 필라멘트	8	A
7883	8102969000	기타	8	A
7884	810297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7885	8102990000	기타	8	A
7886	8103201000	괴(塊)	3	A
7887	8103202000	가루	3	A
7888	8103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7889	8103910000	도가니	8	A
7890	8103990000	기타	8	A
7891	8104110000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 이상인 것	3	A
7892	8104190000	기타	3	A
7893	81042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7894	8104301000	줄밥(rasping)·연삭설(tuming)·알갱이	8	A
7895	8104302000	가루	8	A
7896	8104901000	봉	8	A
7897	8104909000	기타	8	A
7898	8105201000	괴(塊)	3	A
7899	8105202000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3	A
7900	8105203000	가루	2	A
7901	8105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A
7902	8105900000	기타	3	A
7903	8106101000	괴(塊)	3	A
7904	8106103000	가루	3	A
7905	8106109000	기타	3	A

7906	8106901000	괴(塊)	3	A
7907	8106903000	가루	3	A
7908	8106909000	기타	3	A
7909	8108201000	괴(塊)	2	A
7910	8108202000	가루	3	A
7911	8108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A
7912	8108901000	판과 스트립	8	A
7913	8108902000	관	8	A
7914	8108909000	기타	8	A
7915	8109210000	하프늄 함유량이 중량비로 지르코늄 함유량의 500분의 1 미만인 것	3	A
7916	8109290000	기타	3	A
7917	8109310000	하프늄 함유량이 중량비로 지르코늄 함유량의 500분의 1 미만인 것	3	A
7918	8109390000	기타	3	A
7919	8109911010	관	0	A
7920	8109911020	판・시트(sheet)・스트립	0	A
7921	8109911030	봉	0	A
7922	8109911090	기타	0	A
7923	8109919000	기타	3	A
7924	8109991010	관	0	A
7925	8109991020	판・시트(sheet)・스트립	0	A
7926	8109991030	봉	0	A
7927	8109991090	기타	0	A
7928	8109999000	기타	3	A
7929	8110100000	안티모니의 괴(塊), 가루	3	A
7930	81102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A
7931	8110900000	기타	3	A
7932	81110000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2	A
7933	8112120000	괴(塊), 가루	3	A
7934	811213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A
7935	8112190000	기타	3	A
7936	8112210000	괴(塊), 가루	3	A
7937	811222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A
7938	8112290000	기타	3	A
7939	8112310000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3	A
7940	8112390000	기타	3	A
7941	8112410000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3	A
7942	8112490000	기타	3	A
7943	8112510000	괴(塊), 가루	3	A
7944	811252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A
7945	8112590000	기타	3	A
7946	811261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A
7947	8112690000	기타	3	A
7948	8112921000	게르마늄	3	A
7949	8112922000	바나듐	3	A
7950	8112923000	갈륨	3	A
7951	8112925000	인듐	3	A
7952	8112926000	니오븀(컬럼븀)	3	A
7953	8112929000	기타	3	A

7954	8112991000	게르마늄	3	A
7955	8112992000	바나듐	3	A
7956	8112993000	갈륨	3	A
7957	8112995000	인듐	3	A
7958	8112996000	니오븀(컬럼븀)	3	A
7959	8112999000	기타	3	A
7960	8113000000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3	A
7961	8201100000	가래와 삽	8	A
7962	8201300000	곡괭이・픽스(picks)・괭이・쇠스랑	8	A
7963	8201400000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8	A
7964	8201500000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지가위[가금(家禽)용 가위를 포함한다]	8	A
7965	8201600000	울타리 전단기(剪斷機)・양손용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8	A
7966	8201901000	낫	8	A
7967	8201909000	기타	8	A
7968	8202101000	목재용	8	A
7969	8202109000	기타	8	A
7970	8202200000	띠톱의 날	8	A
7971	8202310000	작용하는 부분을 강(鋼)으로 만든 것	8	A
7972	8202391000	작용하는 부분이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것	8	A
7973	8202392010	반도체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를 개별 단위로 절단하는 기기에 사용되는 것	8	A
7974	8202392090	기타	8	A
7975	8202393000	작용하는 부분이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8	A
7976	8202399000	부분품	8	A
7977	8202400000	체인톱의 날	8	A
7978	8202911000	쇠톱의 날	8	A
7979	8202919000	기타	8	A
7980	8202991000	사파이어 잉곳(ingot) 절단용	5	A
7981	8202999000	기타	8	A
7982	8203100000	줄과 이와 유사한 공구	8	A
7983	8203201000	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	8	A
7984	8203202000	집게	8	A
7985	8203203000	펀셋	8	A
7986	8203209000	기타	8	A
7987	8203300000	금속 절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공구	8	A
7988	8203401000	파이프커터(pipe-cutter)	8	A
7989	8203402000	볼트크로퍼(bolt cropper)와 클리퍼	8	A
7990	8203403000	천공펀치	8	A
7991	8203409000	기타	8	A
7992	8204110000	조절할 수 없는 것	8	A
7993	8204120000	조절할 수 있는 것	8	A
7994	8204200000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8	A
7995	8205101000	드릴링용	8	A
7996	8205109000	기타	8	A
7997	8205200000	망치(hammer, sledge hammer)	8	A
7998	8205300000	목재 가공용 대패・끌・둥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8	A
7999	8205400000	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	8	A
8000	8205510000	가정용 공구	8	A

8001	8205591000	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	8	A
8002	8205593000	그리스 건(grease gun)	8	A
8003	8205599000	기타	8	A
8004	8205600000	블로램프(blow lamp)	8	A
8005	8205701000	바이스(vice)	8	A
8006	8205702000	클램프(clamp)	8	A
8007	8205709000	기타	8	A
8008	8205903000	이호의 둘 이상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트	8	A
8009	8205909000	기타	8	A
8010	8206000000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8	A
8011	8207130000	작용하는 부분을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8	A
8012	8207191000	작용하는 부분을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8	A
8013	8207199000	부분품	8	A
8014	8207201000	인발(引拔)용	8	A
8015	8207202000	압출용	8	A
8016	8207300000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 공구	8	A
8017	8207401000	태핑(tapping)용	8	A
8018	8207402000	드레딩(threading)용	8	A
8019	8207501010	고속도강으로 만든 것	8	A
8020	8207501090	기타	8	A
8021	8207502000	브레이스비트(brace bit)	8	A
8022	8207509000	기타	8	A
8023	8207601000	리머(reamer)	8	A
8024	8207603000	브로치(broach)	8	A
8025	8207609000	기타	8	A
8026	8207701000	기어커터	8	A
8027	8207702000	밀링커터	8	A
8028	8207703000	기어커팅 호브(gear cutting hob)	8	A
8029	8207704000	로터리파일	8	A
8030	8207709000	기타	8	A
8031	8207801000	선반용 공구	8	A
8032	8207809000	기타	8	A
8033	8207901000	다이아몬드 공구	8	A
8034	8207909000	기타	8	A
8035	8208100000	금속 가공용	8	A
8036	8208200000	목재 가공용	8	A
8037	8208300000	주방기구용이나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	8	A
8038	8208400000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기계의 것	8	A
8039	8208900000	기타	8	A
8040	8209001010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것으로 코팅 처리된 것	8	A
8041	8209001050	티타늄의 것	8	A
8042	8209001090	기타	8	A
8043	8209002010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것	8	A
8044	8209002090	기타	8	A
8045	8210001000	분쇄기・마쇄기	8	A
8046	8210002000	추출기・압착기	8	A
8047	8210004000	세절기・ 커터	8	A
8048	8210005000	오프너・코르커・실러	8	A
8049	8210008000	그 밖의 가정용 식품가공기기	8	A

8050	8210009000	부분품	8	A
8051	82111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8	A
8052	8211910000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8	A
8053	8211920000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	8	A
8054	8211930000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8	A
8055	8211940000	칼날	8	A
8056	821195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손잡이	8	A
8057	8212100000	면도기	8	A
8058	8212200000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8	A
8059	8212900000	그 밖의 부분품	8	A
8060	8213001000	가정용・사무용 가위	8	A
8061	8213002010	재단용 가위	8	A
8062	8213002020	이발용 가위	8	A
8063	8213002090	기타	8	A
8064	8213003000	매니큐어용 가위	8	A
8065	8213009000	기타	8	A
8066	8214101000	연필깎이	8	A
8067	8214109000	기타	8	A
8068	8214200000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8	A
8069	8214902000	정육점이나 주방용 칼붙이와 토막용 칼(chopper)과 다지기(mincing)용 칼	8	A
8070	8214909000	기타	8	A
8071	82151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한 가지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으로 한정한다)	8	A
8072	82152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	8	A
8073	8215910000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8	A
8074	8215991000	스푼	8	A
8075	8215992000	포크	8	A
8076	8215993000	국자와 스키머(skimmer)	8	A
8077	8215995000	각종 집게	8	A
8078	8215999000	기타	8	A
8079	8301100000	자물쇠	8	A
8080	8301200000	자동차용 자물쇠	8	A
8081	8301300000	가구용 자물쇠	8	A
8082	8301401010	디지털 도어 록	8	A
8083	8301401090	기타	8	A
8084	8301409000	기타	8	A
8085	8301500000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8	A
8086	8301600000	부분품	8	A
8087	8301700000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8	A
8088	8302100000	경첩	8	A
8089	8302200000	카스터(castor)	8	A
8090	8302300000	자동차용으로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8	A
8091	8302411000	문・창에 적합한 것	8	A
8092	8302419000	기타	8	A
8093	8302420000	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8	A
8094	8302491000	트렁크・슈트케이스나 이와 유사한 여행용구에 적합한 것	8	A
8095	8302499000	기타	8	A
8096	8302500000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8	A

8097	8302600000	자동도어 폐지기	8	A
8098	8303001000	금고	8	A
8099	8303009000	기타	8	A
8100	83040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페이퍼 트레이(paper tray)·페이퍼 레스트(paper rest)·펜 트레이(pen tray)·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stamp stand)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9403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8	A
8101	8305100000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	8	A
8102	8305200000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	8	A
8103	830590000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8	A
8104	8306100000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	8	A
8105	8306210000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8	A
8106	8306290000	기타	8	A
8107	8306301000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8	A
8108	8306302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거울	8	A
8109	8307100000	철강으로 만든 것	8	A
8110	8307900000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8	A
8111	8308101000	혹(hook)	8	A
8112	8308102000	아이(eye)·아일렛(eyelet)	8	A
8113	8308200000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8	A
8114	8308902000	버클(buckle)이나 버클(buckle)걸쇠	8	A
8115	8308904000	스팽글(spangle)	8	A
8116	8308909000	기타	8	A
8117	8309100000	크라운코르크(crown cork)	8	A
8118	8309901000	캔뚜껑(E.O.E)	8	A
8119	8309909000	기타	8	A
8120	83100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명판·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9405호의 것은 제외한다)	8	A
8121	8311101000	반도체 제조용	8	A
8122	8311109000	기타	8	A
8123	8311201000	반도체 제조용	8	A
8124	8311209000	기타	8	A
8125	8311301000	반도체 제조용	8	A
8126	8311309010	납-주석 합금의 땜납	8	A
8127	8311309090	기타	8	A
8128	8311901000	반도체 제조용	8	A
8129	8311909000	기타	8	A
8130	8401100000	원자로	0	A
8131	8401200000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와 그 부분품	0	A
8132	8401300000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연료요소(카트리지)	0	A
8133	8401400000	원자로의 부분품	0	A
8134	84021100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을 초과하는 수관(水管)보일러	8	A
8135	84021200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 이하인 수관(水管)보일러	8	A
8136	8402191000	열매체보일러	8	A
8137	8402199000	기타	8	A
8138	8402200000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8	A
8139	8402901000	증기발생보일러의 것	5	A
8140	8402902000	과열수보일러의 것	5	A
8141	8403101000	유류를 사용하는 것	8	A

8142	8403103000	가스를 사용하는 것	8	A
8143	8403109000	기타	8	A
8144	8403900000	부분품	8	A
8145	8404101000	연료절약기	5	A
8146	8404102000	과열기	5	A
8147	8404103000	그을음제거기	5	A
8148	8404104000	가스회수기	5	A
8149	8404109000	기타	5	A
8150	8404200000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5	A
8151	8404901000	보일러용 응축기의 것	5	A
8152	8404902000	증기원동기용 응축기의 것	5	A
8153	8404909000	기타	5	A
8154	8405101000	발생로가스 발생기	8	A
8155	8405102000	수성가스 발생기	8	A
8156	8405104000	산소 발생기	8	A
8157	8405109000	기타	8	A
8158	8405901000	발생로가스 발생기의 것	8	A
8159	8405902000	수성가스 발생기의 것	8	A
8160	8405904000	산소 발생기의 것	8	A
8161	8405909000	기타	8	A
8162	8406100000	선박추진용 터빈	5	A
8163	8406811000	출력이 40메가와트 초과 100메가와트 이하인 것	5	A
8164	8406812000	출력이 100메가와트 초과 300메가와트 이하인 것	5	A
8165	8406813000	출력이 30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5	A
8166	8406820000	출력이 40메가와트 이하인 것	5	A
8167	8406901000	선박추진용 증기터빈의 것	8	A
8168	8406909000	기타	5	A
8169	8407100000	항공기용 엔진	0	A
8170	8407210000	아웃보드(outboard) 모터	8	A
8171	8407290000	기타	8	A
8172	8407311000	모터사이클의 것	8	A
8173	8407319000	기타	8	A
8174	8407321000	모터사이클의 것	8	A
8175	8407329000	기타	8	A
8176	8407331000	모터사이클의 것	8	A
8177	8407339000	기타	8	A
8178	8407341000	모터사이클의 것	8	A
8179	8407349000	기타	8	A
8180	8407901000	철도차량용	0	A
8181	8407909000	기타	8	A
8182	8408101000	출력이 300킬로와트 이하인 것	8	A
8183	8408102000	출력이 300킬로와트 초과 2,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8	A
8184	8408103000	출력이 2,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	A
8185	8408201000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8	A
8186	8408202000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8	A
8187	8408203000	실린더용량이 2,000시시 초과 4,000시시 이하인 것	8	A
8188	8408204000	실린더용량이 4,000시시 초과 10,000시시 이하인 것	8	A
8189	8408205000	실린더용량이 10,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8	A
8190	8408901010	철도용 기관차의 내연기관	0	A
8191	8408901090	기타	5	A
8192	8408909010	선박용 내연기관	8	A

8193	8408909021	출력이 40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기용[분당 회전수(알피엠)가 1,500이나 1,800인 것으로 한정한다]	4	A
8194	8408909029	기타	8	A
8195	8408909030	제8429호용 내연기관	8	A
8196	8408909090	기타	8	A
8197	8409100000	항공기 엔진용	5	A
8198	8409911000	제87류의 차량용	8	A
8199	8409912000	아웃보드(outboard) 모터의 것	8	A
8200	8409919000	기타	8	A
8201	8409994010	제8429호 기계용	8	A
8202	8409994090	기타	8	A
8203	8409995000	발전용	8	A
8204	8409996000	철도차량용	5	A
8205	8409997000	제87류의 차량용	8	A
8206	8409998010	출력이 300킬로와트 이하인 내연기관의 것	8	A
8207	8409998020	출력이 300킬로와트 초과 2,000킬로와트 이하인 내연기관의 것	8	A
8208	8409998030	출력이 2,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내연기관의 것	8	A
8209	8409999000	기타	8	A
8210	8410111000	수력터빈	0	A
8211	8410119000	기타	8	A
8212	8410120000	동력이 1,000킬로와트 초과 10,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0	A
8213	8410130000	동력이 10,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	A
8214	8410901010	수력터빈의 것	0	A
8215	8410901090	기타	8	A
8216	8410909010	수력터빈의 것	0	A
8217	8410909090	기타	8	A
8218	8411111000	항공기용	3	A
8219	8411119010	선박용	8	A
8220	8411119090	기타	8	A
8221	8411121000	항공기용	3	A
8222	8411129010	선박용	8	A
8223	8411129090	기타	8	A
8224	8411211000	항공기용	3	A
8225	8411219010	선박용	8	A
8226	8411219090	기타	8	A
8227	8411221000	항공기용	3	A
8228	8411229010	선박용	8	A
8229	8411229090	기타	8	A
8230	8411811000	항공기용	3	A
8231	8411819010	선박용	8	A
8232	8411819090	기타	8	A
8233	8411821000	항공기용	3	A
8234	8411829010	선박용	8	A
8235	8411829090	기타	5	A
8236	8411911000	항공기용	3	A
8237	8411919000	기타	8	A
8238	8411991000	항공기용	3	A
8239	8411999000	기타	5	A
8240	8412101000	항공기의 것	5	A
8241	8412109000	기타	8	A

8242	8412211000	액압실린더	8	A
8243	8412219000	기타	8	A
8244	8412290000	기타	8	A
8245	8412310000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8	A
8246	8412390000	기타	8	A
8247	8412800000	기타	8	A
8248	8412901010	램제트나 펄스제트 엔진의 것	5	A
8249	8412901090	기타	5	A
8250	8412902000	수력엔진의 것	0	A
8251	8412909000	기타	5	A
8252	8413110000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8	A
8253	8413190000	기타	8	A
8254	8413200000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나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	8	A
8255	8413301000	항공기용	8	A
8256	8413302000	철도용 기관차용	8	A
8257	8413303000	선박용	8	A
8258	8413304000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용	8	A
8259	8413309000	기타	8	A
8260	8413400000	콘크리트 펌프	8	A
8261	8413504000	수영장용 펌프	8	A
8262	8413509010	플런저펌프	8	A
8263	8413509020	피스톤펌프	8	A
8264	8413509030	다이아프램펌프	8	A
8265	8413509090	기타	8	A
8266	8413604000	수영장용 펌프	8	A
8267	8413609010	기어펌프	8	A
8268	8413609020	베인펌프	8	A
8269	8413609030	스크루펌프	8	A
8270	8413609090	기타	8	A
8271	8413703000	수영장용 펌프	8	A
8272	8413709010	터빈펌프	8	A
8273	8413709020	볼류트 펌프	8	A
8274	8413709090	기타	8	A
8275	8413811000	수영장용 펌프	8	A
8276	8413819000	기타	8	A
8277	8413820000	액체엘리베이터	8	A
8278	8413911000	급유용 펌프의 것	8	A
8279	8413912000	내연기관의 것	8	A
8280	8413913000	왕복펌프의 것	8	A
8281	8413914000	원심펌프의 것	8	A
8282	8413915000	로터리펌프의 것	8	A
8283	8413919000	기타	8	A
8284	8413920000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8	A
8285	8414101000	항공기용	8	A
8286	8414109010	반도체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A
8287	841410902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A
8288	8414109090	기타	8	A
8289	8414200000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8	A

8290	8414301000	소비전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8	A
8291	8414302000	소비전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8	A
8292	8414400000	예인용 바퀴 달린 섀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8	A
8293	8414511000	항공기용	8	A
8294	8414519000	기타	8	A
8295	8414591000	항공기용	8	A
8296	8414592000	마이크로프로세서, 전기통신용 기기,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 냉각을 위해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1.625	A
8297	8414599000	기타	8	A
8298	8414601000	항공기용	8	A
8299	8414609000	기타	8	A
8300	8414700000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	8	A
8301	8414801000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A
8302	8414809110	항공기용	8	A
8303	8414809190	기타	8	A
8304	8414809210	소비전력이 74.6킬로와트 미만인 것	8	A
8305	8414809220	소비전력이 74.6킬로와트 이상 373킬로와트 미만인 것	8	A
8306	8414809230	소비전력이 373킬로와트 이상인 것	8	A
8307	8414809900	기타	8	A
8308	8414901000	팬과 후드의 것	8	A
8309	8414909010	냉장설비용이나 냉동설비용 압축기의 것	8	A
8310	8414909020	기체압축기의 것(냉장설비용이나 냉동설비용은 제외한다)	8	A
8311	8414909090	기타	8	A
8312	8415101010	소비전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8	A
8313	8415101020	소비전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8	A
8314	8415102010	소비전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8	A
8315	8415102020	소비전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8	A
8316	8415109010	소비전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8	A
8317	8415109020	소비전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8	A
8318	8415200000	자동차용(탑승자용으로 한정한다)	8	A
8319	8415810000	냉각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8	A
8320	8415820000	기타(냉각유닛을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8	A
8321	8415830000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8	A
8322	8415900000	부분품	8	A
8323	8416101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리터 이하인 것	8	A
8324	8416102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리터 초과 1,500리터 미만인 것	8	A
8325	8416103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1,500리터 이상인 것	8	A
8326	8416201000	잘게 부순 고체연료용	8	A
8327	8416202000	기체연료용	8	A
8328	8416209000	기타	8	A
8329	8416300000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8	A
8330	8416901000	노용 버너의 것	8	A
8331	8416909000	기타	8	A
8332	8417101010	철광석용	8	A
8333	8417101090	기타	8	A
8334	8417102010	철강용	8	A

8335	8417102090	기타	8	A
8336	8417200000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 오븐을 포함한다)	8	A
8337	8417801010	시멘트용	8	A
8338	8417801020	유리용	8	A
8339	8417801030	도자기용	8	A
8340	8417801090	기타	8	A
8341	8417802000	이화학용	8	A
8342	8417809000	기타	5	A
8343	8417900000	부분품	5	A
8344	8418101010	용량이 200리터 이하인 것	8	A
8345	8418101020	용량이 200리터 초과 400리터 이하인 것	8	A
8346	8418101030	용량이 400리터를 초과하는 것	8	A
8347	8418109000	기타	8	A
8348	8418211000	용량이 200리터 미만인 것	8	A
8349	8418212000	용량이 200리터 이상 400리터 미만인 것	8	A
8350	8418213000	용량이 400리터 이상인 것	8	A
8351	8418291000	흡수식(전기식으로 한정한다)	8	A
8352	8418299000	기타	8	A
8353	8418300000	체스트(chest)형 냉동고(용량이 8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A
8354	8418400000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A
8355	8418501000	쇼케이스	8	A
8356	8418509000	기타	8	A
8357	8418610000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8	A
8358	8418691000	혈액 저장용 냉장고	8	A
8359	8418692010	아이스크림 제조기	8	A
8360	8418692020	얼음 제조기	8	A
8361	8418692030	냉수기	8	A
8362	8418692090	기타	8	A
8363	8418693000	열펌프	8	A
8364	8418910000	냉장기구나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8	A
8365	8418991000	가정형 냉장고의 것	8	A
8366	8418999000	기타	8	A
8367	8419110000	가스식인 즉시식 물가열기	8	A
8368	8419120000	태양열 물 가열기	5	A
8369	8419190000	기타	8	A
8370	8419200000	내과용・외과용・실험실용 살균기	0	A
8371	8419330000	동결건조 장치・유닛과 분무건조기	5	A
8372	8419340000	기타(농산물용으로 한정한다)	8	A
8373	8419350000	기타(목재용・제지펄프용・종이용・판지용으로 한정한다)	8	A
8374	8419390000	기타	5	A
8375	8419400000	증류기나 정류기	8	A
8376	8419501000	항공기용	8	A
8377	8419502000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내경이 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0	A
8378	8419509000	기타	8	A
8379	8419600000	기체 액화용 기기	5	A
8380	8419810000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8	A
8381	8419891000	인조섬유 제조용 중합기	8	A
8382	8419899010	가열기	8	A
8383	8419899020	냉각기	5	A

8384	8419899030	증발기	5	A
8385	8419899040	응축기	5	A
8386	8419899050	태양열 집열기와 그 장치	8	A
8387	8419899060	고온항온기・저온항온기	8	A
8388	8419899070	항온항습기	8	A
8389	8419899080	공기조절기	8	A
8390	8419899090	기타	5	A
8391	8419901000	인조섬유 제조용 중합기의 것	8	A
8392	8419909010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가열기의 것	5	A
8393	8419909020	뜨거운 음료제조용 기기의 것,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 기기의 것	8	A
8394	8419909030	공기조절용 기기의 것	8	A
8395	8419909040	내과용・외과용・실험실용 살균장치의 것	0	A
8396	8419909090	기타	5	A
8397	8420101000	제지용	8	A
8398	8420102000	직물용	8	A
8399	8420103000	가죽용	8	A
8400	8420104000	고무용・플라스틱용	8	A
8401	8420105000	롤 라미네이터(인쇄회로기판이나 인쇄회로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0	A
8402	8420109000	기타	8	A
8403	8420910000	실린더	8	A
8404	8420990000	기타	8	A
8405	8421110000	크림분리기	8	A
8406	8421120000	의류탈수기	8	A
8407	8421191000	내과용・외과용・이화학용	8	A
8408	8421192000	식품공업용	8	A
8409	8421193000	석유화학공업용	8	A
8410	8421199000	기타	8	A
8411	8421211000	가정형	5	A
8412	8421219010	수영장용 여과기나 청정기	5	A
8413	8421219020	반도체 제조용 여과기나 청정기	3	A
8414	8421219090	기타	5	A
8415	8421220000	물 외의 음료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8	A
8416	8421231000	제87류 차량의 내연기관의 것	8	A
8417	8421232000	항공기용	8	A
8418	8421239000	기타	8	A
8419	8421291000	낙농용	8	A
8420	8421292010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인 것	5	A
8421	8421292090	기타	5	A
8422	8421293010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인 것	0	A
8423	8421293090	기타	0	A
8424	8421294000	항공기용	8	A
8425	8421299010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인 것	0	A
8426	8421299090	기타	5	A
8427	8421311000	제87류 차량의 내연기관의 것	8	A
8428	8421312000	항공기용	8	A
8429	8421319000	기타	8	A

8430	8421320000	촉매 변환기나 분진 여과기(두 가지가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청정용이나 여과용으로 한정한다)	5	A
8431	8421391000	가정형	5	A
8432	8421392000	제87류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용	5	A
8433	8421399011	스테인리스강제의 하우징을 갖추고, 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0	A
8434	8421399019	기타	5	A
8435	8421399021	스테인리스강제의 하우징을 갖추고, 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0	A
8436	8421399029	기타	0	A
8437	8421399030	항공기용	8	A
8438	8421399091	스테인리스강제의 하우징을 갖추고, 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0	A
8439	8421399092	기타, 헤파필터(공기중의 0.3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를 100분의 99.97 이상 포집할 수 있는 것)	5	A
8440	8421399099	기타	5	A
8441	8421910000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8	A
8442	8421991000	제87류 차량의 배기가스정화기의 것	5	A
8443	8421999010	내연기관용의 여과기나 청정기의 것	5	A
8444	8421999021	액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나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테인리스강의 하우징을 갖춘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0	A
8445	8421999029	기타	5	A
8446	8421999031	액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나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테인리스강의 하우징을 갖춘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0	A
8447	8421999039	기타	0	A
8448	8421999091	액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나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테인리스강의 하우징을 갖춘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0	A
8449	8421999099	기타	5	A
8450	8422110000	가정형	8	A
8451	8422190000	기타	8	A
8452	8422200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8	A
8453	8422301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 기계	8	A
8454	8422302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봉함용・봉지용 기계	8	A
8455	8422303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캡슐 취부용・레이블 첨부용 기계	8	A
8456	8422304000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8	A
8457	8422309000	기타	8	A
8458	8422404000	열수축포장기계	8	A
8459	8422409010	자동포장기계	8	A
8460	8422409020	자동결속기	8	A
8461	8422409030	진공포장기	8	A
8462	8422409090	기타	8	A
8463	8422901000	접시세척기의 것	8	A
8464	8422902000	그 밖의 포장기계의 것	8	A

8465	8422909000	기타	8	A
8466	8423100000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와 가정형 저울	8	A
8467	8423201000	컨베이어 스케일	8	A
8468	8423202000	피드미터(feed meter)·피드웨이어(feed weigher)	8	A
8469	8423209000	기타	8	A
8470	8423301000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	0	A
8471	8423309000	기타	8	A
8472	8423811000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	0	A
8473	8423819000	기타	8	A
8474	8423821000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자동차중량측정용 기기는 제외한다)	0	A
8475	8423829000	기타	8	A
8476	8423891010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	0	A
8477	8423891090	기타	8	A
8478	8423899010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	0	A
8479	8423899090	기타	8	A
8480	8423901011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자동차중량측정용 기기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0	A
8481	8423901019	기타	8	A
8482	8423901091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자동차중량측정용 기기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0	A
8483	8423901099	기타	8	A
8484	8423909010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자동차중량측정용 기기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0	A
8485	8423909090	기타	8	A
8486	842410000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A
8487	8424201000	스프레이건	8	A
8488	8424202010	로봇형	8	A
8489	8424202090	기타	8	A
8490	8424209000	기타	8	A
8491	8424301000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	8	A
8492	8424302000	고압증기 세척기	8	A
8493	8424309000	기타	8	A
8494	8424410000	휴대용 방제기	8	A
8495	8424491000	자주식(自走式) 방제기	8	A
8496	8424499000	기타	8	A
8497	8424820000	농업용이나 원예용	8	A
8498	8424891000	반도체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A
8499	8424892000	인쇄회로기판이나 인쇄회로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A
8500	8424899000	기타	8	A
8501	8424901000	소화기의 것	8	A
8502	8424902000	스프레이건의 것	8	A
8503	8424903000	방제기의 것	8	A
8504	8424909010	반도체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A
8505	8424909020	인쇄회로기판이나 인쇄회로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A
8506	8424909090	기타	8	A
8507	8425111010	체인블록	0	A
8508	8425111090	기타	0	A
8509	8425112010	체인블록	0	A
8510	8425112090	기타	0	A

8511	8425190000	기타	0	A
8512	8425311000	갱구용 와인딩 기어와 윈치(winch)(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설계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13	8425319000	기타	0	A
8514	8425391000	갱구용 와인딩 기어와 윈치(winch)(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설계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15	8425399000	기타	0	A
8516	8425410000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jacking system)	0	A
8517	8425421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 이하인 것	0	A
8518	8425422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0	A
8519	8425491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 이하인 것	0	A
8520	8425492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0	A
8521	8426110000	고정식 천장주행 크레인	0	A
8522	8426121000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	0	A
8523	8426122000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0	A
8524	8426190000	기타	0	A
8525	8426200000	타워크레인(tower crane)	0	A
8526	8426301000	문형 크레인	0	A
8527	8426302000	정치형 지브 크레인(jib crane)	0	A
8528	8426410000	타이어가 달린 것	0	A
8529	8426491000	신축붐식(telescopic boom type)	0	A
8530	8426492000	앵글식(latticed boom type)	0	A
8531	8426499000	기타	0	A
8532	8426910000	도로주행 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0	A
8533	8426991000	선박의 데릭(derrick)	0	A
8534	8426999000	기타	0	A
8535	8427101010	신품	8	A
8536	8427101020	중고품	8	A
8537	8427102010	신품	8	A
8538	8427102020	중고품	8	A
8539	8427103000	무인운반로봇(A.G.V.)	8	A
8540	8427201011	신품	8	A
8541	8427201012	중고품	8	A
8542	8427201021	신품	8	A
8543	8427201022	중고품	8	A
8544	8427209000	기타	8	A
8545	8427901000	수동식 팰릿(pallet) 트럭	8	A
8546	8427909000	기타	8	A
8547	8428101000	리프트	0	A
8548	8428102000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0	A
8549	8428201000	압축공기식 엘리베이터	0	A
8550	8428202000	압축공기식 컨베이어	0	A
8551	8428310000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	0	A
8552	8428320000	그 밖의 버켓형	0	A
8553	8428331010	분당 속도가 240미터 미만인 것	0	A
8554	8428331020	분당 속도가 240미터 이상인 것	0	A
8555	8428332000	컨베이어	0	A
8556	8428390000	기타	0	A
8557	8428401000	에스컬레이터	0	A
8558	8428402000	무빙 워크웨이(moving walkway)	0	A

8559	8428600000	텔레페릭(teleferic)·의자 양하기·스키용 드래그라인(dragline)·퓨니쿨러(funicular)용 견인장치	0	A
8560	8428701000	적재용 로봇(소호 제8479.50호의 것은 제외한다)	0	A
8561	8428702000	무인운반로봇(제8427호의 것을 제외한다)	0	A
8562	8428709000	기타	0	A
8563	8428901000	광산용 왜건푸셔·기관차·화차의 트레버서·화차 경사기나 이와 유사한 철도화차 취급 장비	0	A
8564	8428909000	기타	0	A
8565	8429111000	불도저(bulldozer)	0	A
8566	8429112000	앵글도저(angledozer)	0	A
8567	8429190000	기타	0	A
8568	8429200000	그레이더(grader)와 레벨러(leveller)	0	A
8569	8429300000	스크레이퍼(scraper)	0	A
8570	8429401000	탬핑머신(tamping machine)	0	A
8571	8429402000	로드롤러(road roller)	0	A
8572	8429511011	신품	0	A
8573	8429511012	중고품	0	A
8574	8429511021	신품	0	A
8575	8429511022	중고품	0	A
8576	8429511031	신품	0	A
8577	8429511032	중고품	0	A
8578	8429511091	신품	0	A
8579	8429511092	중고품	0	A
8580	8429519000	기타	0	A
8581	8429521011	신품	0	A
8582	8429521012	중고품	0	A
8583	8429521021	신품	0	A
8584	8429521022	중고품	0	A
8585	8429521090	기타	0	A
8586	8429529000	기타	0	A
8587	8429590000	기타	0	A
8588	8430100000	항타기(杭打機)와 항발기(抗拔機)	0	A
8589	8430200000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0	A
8590	8430310000	자주식(自走式)	0	A
8591	8430390000	기타	0	A
8592	8430411000	천공용 기계	0	A
8593	8430412000	시굴용 기계	0	A
8594	8430491000	시추기	0	A
8595	8430499000	기타	0	A
8596	8430500000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0	A
8597	8430610000	탬핑(tamping)용이나 콤팩팅(compacting)용 기계	0	A
8598	8430690000	기타	0	A
8599	8431100000	제8425호의 기계의 것	0	A
8600	8431200000	제8427호의 기계의 것	8	A
8601	8431310000	리프트·스킵호이스트(skip hoist)·에스컬레이터의 것	0	A
8602	8431390000	기타	0	A
8603	8431411000	엑스커베이터(excavator)의 것	0	A
8604	8431419000	기타	0	A
8605	8431420000	불도저(bulldozer)나 앵글도저(angledozer)의 블레이드(blade)	0	A
8606	8431430000	소호 제8430.41호나 제8430.49호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의 부분품	0	A

8607	8431491000	유압브레이커	0	A
8608	8431492000	크러셔(crusher)	0	A
8609	8431499000	기타	0	A
8610	8432100000	플라우(쟁기)	0	A
8611	8432210000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0	A
8612	8432291000	스카리파이어	0	A
8613	8432292000	제초기	0	A
8614	8432299000	기타	0	A
8615	8432310000	무경간(無耕墾) 직접 농법용 파종기·식부기(植付機)·이식기	0	A
8616	8432391000	파종기	0	A
8617	8432392000	식부기(植付機)·이식기(이앙기를 포함한다)	0	A
8618	8432410000	퇴비 살포기	0	A
8619	8432420000	비료 살포기	0	A
8620	8432800000	그 밖의 기계	0	A
8621	8432901000	플라우(쟁기)의 것	0	A
8622	8432902000	자동경운기의 것	0	A
8623	8432909000	기타	0	A
8624	8433110000	동력식(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A
8625	8433190000	기타	0	A
8626	8433200000	그 밖의 풀 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 커터바(cutter bar)를 포함한다]	0	A
8627	8433300000	그 밖의 건초제조용 기계	0	A
8628	8433400000	짚이나 건초 결속기[픽업(pick-up)결속기를 포함한다]	0	A
8629	8433510000	수확·탈곡 겸용기	0	A
8630	8433520000	그 밖의 탈곡기	0	A
8631	8433530000	구경(球莖)이나 괴경(塊莖)의 수확기[근채(根菜) 수확기]	0	A
8632	8433590000	기타	0	A
8633	8433601000	새의 알 선별기	0	A
8634	8433609010	농산물 선별기	0	A
8635	8433609090	기타	0	A
8636	8433901000	수확·탈곡 겸용기의 것	0	A
8637	8433902000	풀베는 기계의 것	0	A
8638	8433909000	기타	0	A
8639	8434100000	착유기	0	A
8640	8434201000	균질기	0	A
8641	8434209000	기타	0	A
8642	8434901000	착유기의 것	0	A
8643	8434902000	균질기의 것	0	A
8644	8434909000	기타	0	A
8645	8435101000	과실주스 추출용 프레스(press)	8	A
8646	8435102000	과실주스 추출용 크러셔(crusher)	8	A
8647	8435109000	기타	8	A
8648	8435900000	부분품	8	A
8649	8436101000	사료절단기	8	A
8650	8436102000	사료분쇄기	8	A
8651	8436103000	사료배합기	8	A
8652	8436109000	기타	8	A
8653	8436211000	부란기	8	A
8654	8436219000	기타	8	A
8655	8436290000	기타	8	A

8656	8436800000	그 밖의 기계	8	A
8657	8436910000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나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8	A
8658	8436990000	기타	8	A
8659	8437101000	목초종자 정선기	8	A
8660	8437109000	기타	8	A
8661	8437801000	제분업용 기계	8	A
8662	8437802000	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가공용	8	A
8663	8437901000	종자·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용의 것	8	A
8664	8437909000	기타	8	A
8665	8438101000	베이커리 기계	8	A
8666	8438109000	기타	8	A
8667	8438200000	과자·코코아·초콜릿 제조용 기계	8	A
8668	8438300000	설탕 제조용 기계	8	A
8669	8438400000	양조용 기계	8	A
8670	8438501000	육류 조제용 기계	8	A
8671	8438509000	기타	8	A
8672	8438600000	과실·견과·채소의 조제용 기계	8	A
8673	8438801000	어패류 조제용 기계	8	A
8674	8438809000	기타	8	A
8675	8438900000	부분품	8	A
8676	8439100000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	8	A
8677	8439201000	초지 준비기	8	A
8678	8439202000	초지기	8	A
8679	8439209000	기타	8	A
8680	8439301000	종이·판지를 감는 기계	8	A
8681	8439302000	표면 가공기	8	A
8682	8439303000	침투 가공기	8	A
8683	8439309000	기타	8	A
8684	8439910000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8	A
8685	8439990000	기타	8	A
8686	8440101000	제본용 재봉기	8	A
8687	8440102000	제본용 접는 기계	8	A
8688	8440109000	기타	8	A
8689	8440901000	제본용 재봉기의 것	8	A
8690	8440909000	기타	8	A
8691	8441100000	절단기	8	A
8692	8441201000	종이백·봉지 제조용 기계	8	A
8693	8441202000	봉투 제조기	8	A
8694	8441300000	카톤(carton)·박스·케이스·튜브·드럼·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moulding)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8	A
8695	8441400000	제지용 펄프·종이·판지 제품의 몰딩(moulding)용 기계	8	A
8696	8441801000	종이·판지의 트리밍기	8	A
8697	8441809000	기타	8	A
8698	8441900000	부분품	8	A
8699	8442300000	기계류·장치·장비	0	A
8700	8442400000	위의 기계류·장치·장비의 부분품	0	A
8701	8442500000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그레인·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0	A

8702	8443110000	오프셋(offset) 인쇄기계[릴(reel) 공급식으로 한정한다]	8	A
8703	8443120000	오프셋(offset) 인쇄기계[사무실용 시트(sheet) 공급식으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22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센티미터 이하인 시트(sheet)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A
8704	8443130000	그 밖의 오프셋(offset) 인쇄기계	8	A
8705	8443140000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 공급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8	A
8706	8443150000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 공급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8	A
8707	8443160000	곡면인쇄용 기계	8	A
8708	8443170000	그라비어(gravure) 인쇄용 기계	8	A
8709	8443191000	직물날염기	8	A
8710	8443192000	그 밖의 직물, 가죽, 벽지, 포장지, 리놀륨 등의 재료에 동일한 모양이나 문자를 반복하여 인쇄하거나 지색을 인쇄하는 인쇄기	8	A
8711	8443199000	기타	8	A
8712	8443311010	레이저 프린터	0	A
8713	8443311020	도트 프린터	0	A
8714	8443311030	잉크젯 프린터	0	A
8715	8443311090	기타	0	A
8716	8443313000	복사기(프린터, 팩시밀리 전송기능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8717	8443319000	기타	0	A
8718	8443321010	레이저 프린터	0	A
8719	8443321020	도트 프린터	0	A
8720	8443321030	잉크젯 프린터	0	A
8721	8443321090	기타	0	A
8722	8443324000	복사기	0	A
8723	8443329000	기타	0	A
8724	8443391010	반도체 제조용	0	A
8725	8443391090	기타	0	A
8726	8443392000	복사기	0	A
8727	8443399000	기타	0	A
8728	8443911010	자동급지기	0	A
8729	8443911020	접기용, 풀칠용, 천공용, 지철용의 기계	0	A
8730	8443911090	기타	0	A
8731	8443919000	기타	0	A
8732	8443991000	프린터의 것	0	A
8733	8443994010	자동 문서공급기	0	A
8734	8443994020	종이공급기	0	A
8735	8443994030	분류기	0	A
8736	8443994090	기타	0	A
8737	8443999000	기타	0	A
8738	8444001000	방사(紡絲)기	5	A
8739	8444002000	연신(drawing)기	5	A
8740	8444003000	텍스처(texture)기	5	A
8741	8444009000	기타	5	A
8742	8445110000	카드기(carding machine)	5	A
8743	8445120000	코밍기(combing machine)	5	A
8744	8445130000	연조기나 조방기	5	A
8745	8445191000	혼타면기	5	A
8746	8445199000	기타	8	A

8747	8445201010	정방기	5	A
8748	8445201090	기타	5	A
8749	8445202000	모방용	5	A
8750	8445203000	견방용	5	A
8751	8445209000	기타	5	A
8752	8445301000	필라멘트사용	5	A
8753	8445302000	방적사용	5	A
8754	8445309000	기타	5	A
8755	8445401000	콘 와인더	5	A
8756	8445409000	기타	5	A
8757	8445901000	정경기	8	A
8758	8445902000	정경호부기	8	A
8759	8445909000	기타	8	A
8760	8446100000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소폭직기	8	A
8761	8446210000	직조기(동력구동식으로 한정한다)	8	A
8762	8446290000	기타	8	A
8763	8446301010	면직기	8	A
8764	8446301090	기타	8	A
8765	8446302000	에어젯트식	8	A
8766	8446303000	워터젯트식	8	A
8767	8446309000	기타	8	A
8768	8447111000	양말편기	8	A
8769	8447119000	기타	8	A
8770	8447120000	실린더 지름이 16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A
8771	8447201010	수(手) 편직기(반자동 횡(橫) 편직기는 포함한다)	8	A
8772	8447201020	자동 횡(橫) 편직기	8	A
8773	8447201090	기타	8	A
8774	8447202010	랏셀기	8	A
8775	8447202020	트리코트기	8	A
8776	8447202090	기타	8	A
8777	8447209000	기타	8	A
8778	8447901000	레이스기	8	A
8779	8447902010	자동자수기	8	A
8780	8447902090	기타	8	A
8781	8447903000	결망기	8	A
8782	8447909000	기타	8	A
8783	8448111000	도비(dobby)기	8	A
8784	8448112000	자카드기	8	A
8785	8448119000	기타	8	A
8786	8448191000	경사용 빔스탠드와 크릴(creel)	8	A
8787	8448199000	기타	8	A
8788	8448201000	방사 니플	5	A
8789	8448209000	기타	5	A
8790	8448310000	침포	8	A
8791	8448320000	침포를 제외한 방적준비기계의 것	8	A
8792	8448330000	스핀들・스핀들 플라이어・스피닝 링・링트래블러	8	A
8793	8448391000	경사빔	8	A
8794	8448399000	기타	8	A
8795	8448420000	직조기용 바디・종광(heald)과 종광 프레임	8	A
8796	8448490000	기타	8	A
8797	8448511000	메리야스용 바늘	8	A

8798	8448519000	기타	8	A
8799	8448590000	기타	8	A
8800	8449001000	기계	8	A
8801	8449002000	모자제조용 형(型)	8	A
8802	8449009000	부분품	8	A
8803	8450110000	완전자동 세탁기	8	A
8804	8450120000	그 밖의 세탁기(원심탈수기를 내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8	A
8805	8450190000	기타	8	A
8806	8450200000	1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8	A
8807	8450900000	부분품	8	A
8808	8451100000	드라이클리닝기	8	A
8809	8451210000	1회의 건조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8	A
8810	8451290000	기타	8	A
8811	8451301000	스팀 프레스	8	A
8812	8451309000	기타	8	A
8813	8451401000	세탁기	8	A
8814	8451402000	표백기	8	A
8815	8451403000	염색기	8	A
8816	8451501000	감기(reeling)용 기계・풀기(unreeling)용 기계	8	A
8817	8451502000	절단기	8	A
8818	8451509000	기타	8	A
8819	8451801000	열처리기	8	A
8820	8451802000	폭출기(幅出機)	8	A
8821	8451803000	머서라이징(mercerizing)기	8	A
8822	8451809010	방축가공기	8	A
8823	8451809020	도포기, 침투기	8	A
8824	8451809030	기모기(起毛機)	8	A
8825	8451809050	가정용 의류관리기	8	A
8826	8451809090	기타	8	A
8827	8451902000	건조기의 것	8	A
8828	8451909000	기타	8	A
8829	8452101020	지그재그형	8	A
8830	8452101090	기타	8	A
8831	8452102000	수동식	8	A
8832	8452212000	포장대 봉함용	8	A
8833	8452219000	기타	8	A
8834	8452292000	포장대 봉함용	8	A
8835	8452299000	기타	8	A
8836	8452300000	재봉기용 바늘	8	A
8837	8452901000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밑판・덮개와 그 부분품	8	A
8838	8452909000	그 밖의 재봉기 부분품	8	A
8839	8453101000	유피준비기계	8	A
8840	8453102000	유피기계	8	A
8841	8453103000	원피・가죽 가공기계	8	A
8842	8453200000	신발의 제조용이나 수선용 기계	8	A
8843	8453800000	그 밖의 기계	8	A
8844	8453900000	부분품	8	A
8845	8454100000	전로	8	A
8846	8454200000	잉곳(ingot)용 주형과 레이들(ladle)	8	A

8847	8454301010	다이케스팅기	8	A
8848	8454301090	기타	8	A
8849	8454309000	기타	8	A
8850	8454901000	전로의 것	8	A
8851	8454909000	기타	8	A
8852	8455100000	관 압연기	8	A
8853	8455210000	열간(熱間)이나 열·냉간(熱冷間) 겸용 압연기	8	A
8854	8455220000	냉간(冷間) 압연기	8	A
8855	8455301000	주조제의 것	8	A
8856	8455302000	단조제의 것	8	A
8857	8455309000	기타	8	A
8858	8455900000	그 밖의 부분품	8	A
8859	8456111000	인쇄회로, 인쇄회로조립품, 제8517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A
8860	8456119000	기타	8	A
8861	8456121000	인쇄회로, 인쇄회로조립품, 제8517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A
8862	8456129000	기타	8	A
8863	8456200000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8	A
8864	8456301010	와이어 컷 방전 가공기	8	A
8865	8456301090	기타	8	A
8866	8456309000	기타	8	A
8867	8456400000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하는 것	8	A
8868	8456500000	워터제트 절단기	8	A
8869	8456900000	기타	8	A
8870	8457104000	5축 머시닝 센터(분할 5축 가공이 가능한 것을 포함한다)	8	A
8871	8457109010	수직형	8	A
8872	8457109020	수평형	8	A
8873	8457109030	문형	8	A
8874	8457109090	기타	8	A
8875	8457200000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	8	A
8876	8457300000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8	A
8877	8458110000	수치제어식	8	A
8878	8458190000	기타	8	A
8879	8458910000	수치제어식	8	A
8880	8458990000	기타	8	A
8881	8459100000	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	8	A
8882	8459211000	심공 드릴링머신(최대 천공 깊이가 5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A
8883	8459219000	기타	8	A
8884	8459291000	레이디얼 드릴링머신	8	A
8885	8459292000	직립 드릴링머신	8	A
8886	8459293000	다축 드릴링머신	8	A
8887	8459299000	기타	8	A
8888	8459310000	수치제어식	8	A
8889	8459390000	기타	8	A
8890	8459411000	지그 보링머신	8	A
8891	8459412000	수평 보링머신	8	A

8892	8459419000	기타	8	A
8893	8459490000	기타	8	A
8894	8459510000	수치제어식	8	A
8895	8459590000	기타	8	A
8896	8459611000	베드형 밀링머신	8	A
8897	8459612000	평삭(平削) 밀링머신	8	A
8898	8459619000	기타	8	A
8899	8459691000	베드형 밀링머신	8	A
8900	8459699000	기타	8	A
8901	8459701000	태핑머신(tapping machine)	8	A
8902	8459709000	그 밖의 나사절삭기	8	A
8903	8460120000	수치제어식	8	A
8904	8460190000	기타	8	A
8905	8460220000	무심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8	A
8906	8460230000	그 밖의 원통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8	A
8907	8460241000	내면연삭기	8	A
8908	8460242000	프로파일(profile) 연삭기	8	A
8909	8460249000	기타	8	A
8910	8460291000	원통연삭기	8	A
8911	8460292000	내면연삭기	8	A
8912	8460293000	무심연삭기	8	A
8913	8460294000	프로파일(profile) 연삭기	8	A
8914	8460299000	기타	8	A
8915	8460310000	수치제어식	8	A
8916	8460390000	기타	8	A
8917	8460401000	호닝머신(honing machine)	8	A
8918	8460402000	래핑머신(lapping machine)	8	A
8919	8460900000	기타	8	A
8920	8461200000	쉐이핑머신(shaping machine)이나 슬로팅머신(slotting machine)	8	A
8921	8461300000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8	A
8922	8461401010	수치제어식	8	A
8923	8461401090	기타	8	A
8924	8461402000	기어연삭기·기어완성가공기	8	A
8925	8461500000	톱기계나 절단기	8	A
8926	8461900000	기타	8	A
8927	8462110000	밀폐식 형 단조기	8	A
8928	8462191000	에어해머	8	A
8929	8462199000	기타	8	A
8930	8462221000	수치제어식	8	A
8931	8462229000	기타	8	A
8932	8462230000	수치제어식 프레스 브레이크(press brake)	8	A
8933	8462240000	수치제어식 패널 굽힘기	8	A
8934	8462250000	수치제어식 롤 성형기	8	A
8935	8462260000	그 밖의 수치제어식 굽힘기·접음기·교정기·펼침기	8	A
8936	8462291000	수치제어식	8	A
8937	8462299000	기타	8	A
8938	8462321010	수치제어식	8	A
8939	8462321090	기타	8	A
8940	8462322010	수치제어식	8	A
8941	8462322090	기타	8	A

8942	8462330000	수치제어식 전단기	8	A
8943	8462390000	기타	8	A
8944	8462420000	수치제어식	8	A
8945	8462490000	기타	8	A
8946	8462510000	수치제어식	8	A
8947	8462590000	기타	8	A
8948	8462610000	액압식 프레스	8	A
8949	8462620000	기계식 프레스	8	A
8950	8462630000	서보프레스	8	A
8951	8462690000	기타	8	A
8952	8462900000	기타	8	A
8953	8463100000	드로우벤치(draw-bench)[봉・관・프로파일(profile)・선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引拔)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A
8954	8463200000	나사 전조기	8	A
8955	8463300000	선 가공기	8	A
8956	8463900000	기타	8	A
8957	8464100000	톱기계	8	A
8958	8464201000	광학유리용・안경유리용	8	A
8959	8464202000	그 밖의 유리용	8	A
8960	8464209000	기타	8	A
8961	8464901000	유리 냉간 가공용 공작기계	8	A
8962	8464902000	콘크리트 가공용 공작기계	8	A
8963	8464903000	도자기 가공용 공작기계	8	A
8964	8464909000	기타	8	A
8965	8465101000	목재 가공용	8	A
8966	8465109000	기타	8	A
8967	8465201000	목재 가공용	8	A
8968	8465209000	기타	8	A
8969	8465911000	목재 가공용	8	A
8970	8465919000	기타	8	A
8971	8465921000	목재 가공용	8	A
8972	8465929000	기타	8	A
8973	8465931000	목재 가공용	8	A
8974	8465939000	기타	8	A
8975	8465941000	목재 가공용	8	A
8976	8465949000	기타	8	A
8977	8465951000	목재 가공용	8	A
8978	8465959000	기타	8	A
8979	8465961000	목재 가공용	8	A
8980	8465969000	기타	8	A
8981	8465991000	목재 가공용	8	A
8982	8465999000	기타	8	A
8983	8466100000	툴홀더(tool holder)와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8	A
8984	8466201000	항공기용	8	A
8985	8466209000	기타	8	A
8986	8466300000	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	8	A
8987	8466910000	제8464호의 기계용	8	A
8988	8466920000	제8465호의 기계용	8	A
8989	8466931000	인쇄회로, 인쇄회로조립품, 제8517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의 것	0	A

8990	8466939000	기타	8	A
8991	8466940000	제8462호나 제8463호의 기계용	8	A
8992	8467111000	착암기	8	A
8993	8467112000	스크루 드라이버	8	A
8994	8467113000	그라인더	8	A
8995	8467114000	임팩트 렌치	8	A
8996	8467115000	드릴	8	A
8997	8467119000	기타	8	A
8998	8467191000	착암기	8	A
8999	8467199000	기타	8	A
9000	8467210000	각종 드릴	8	A
9001	8467220000	톱	8	A
9002	8467290000	기타	8	A
9003	8467810000	체인톱	8	A
9004	8467891010	소호 제8430.49호, 제8479.10호의 것	0	A
9005	8467891020	제8479.89-9010호, 제8479.89-9030호, 제8479.89-9091호의 것	8	A
9006	8467891090	기타	8	A
9007	8467899000	기타	8	A
9008	8467910000	체인톱의 것	8	A
9009	8467920000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8	A
9010	8467990000	기타	8	A
9011	8468100000	수지식 취관(吹管)	8	A
9012	8468201000	가스 용접기	8	A
9013	8468202000	가스 자동절단기	8	A
9014	8468209000	기타	8	A
9015	8468800000	그 밖의 기기	8	A
9016	8468900000	부분품	8	A
9017	8470103000	전자계산기	0	A
9018	8470104000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0	A
9019	8470210000	인쇄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	0	A
9020	8470290000	기타	0	A
9021	8470300000	그 밖의 계산기	0	A
9022	8470500000	금전 등록기	0	A
9023	8470902000	표권 발행기	0	A
9024	8470909000	기타	0	A
9025	847130000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9026	8471411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A
9027	8471412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A
9028	8471419000	기타	0	A
9029	847149101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A
9030	847149102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A
9031	8471491090	기타	0	A
9032	8471499000	기타	0	A
9033	8471501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A

9034	8471502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A
9035	8471509000	기타	0	A
9036	8471601010	문자(표식) 판독장치	0	A
9037	8471601020	키 입력장치	0	A
9038	8471601030	마우스	0	A
9039	8471601040	스캐너	0	A
9040	8471601090	기타	0	A
9041	8471602000	출력장치	0	A
9042	8471603000	입출력 겸용의 것	0	A
9043	8471701000	주기억장치(램·롬)	0	A
9044	8471702020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0	A
9045	8471702031	씨디(CD) 드라이브	0	A
9046	8471702032	디브이디(DVD) 드라이브	0	A
9047	8471702033	블루레이 디스크 드라이브	0	A
9048	8471702039	기타	0	A
9049	8471702090	기타	0	A
9050	8471709000	기타	0	A
9051	8471801000	사운드카드	0	A
9052	8471802000	비디오 카드	0	A
9053	8471809000	기타	0	A
9054	8471900000	기타	0	A
9055	8472100000	등사기	0	A
9056	8472300000	우편물의 분류기·접음기, 우편물을 봉투나 밴드에 삽입하는 기계, 우편물의 개봉기·봉함기·실링기, 우표의 첨부기나 소인기	8	A
9057	8472901010	현금자동지불기	0	A
9058	8472901020	현금자동입금기	0	A
9059	8472901040	현금자동지불·입금기	0	A
9060	8472901050	주화계수 포장기	0	A
9061	8472901090	기타	0	A
9062	8472902000	등사용이나 인쇄용 자동제판기	0	A
9063	8472903000	표권발행기	0	A
9064	8472904000	연필절삭기	0	A
9065	8472905000	서류절단기	0	A
9066	8472909000	기타	8	A
9067	8473210000	소호 제8470.10호·제8470.21호·제8470.29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	0	A
9068	8473291000	소호 제8470.30호의 기계의 것	0	A
9069	8473293000	소호 제8470.50호의 기계의 것	0	A
9070	8473294000	소호 제8470.90호의 기계의 것	0	A
9071	8473301000	자기헤드	0	A
9072	8473302000	주기판(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이 장착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0	A
9073	8473303000	컴퓨터 케이스	0	A
9074	8473304060	디램 모듈	0	A
9075	8473304090	기타	0	A
9076	8473309010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로서 제8542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	0	A
9077	8473309090	기타	0	A
9078	8473400000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0	A
9079	8473500000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 중에서 두 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0	A

9080	8474100000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	0	A
9081	8474201000	파쇄・분쇄능력이 시간당 20톤 이하인 것	0	A
9082	8474209000	기타	0	A
9083	8474311000	배처 플랜트	0	A
9084	8474319000	기타	0	A
9085	8474321000	아스팔트 플랜트	0	A
9086	8474329000	기타	0	A
9087	8474390000	기타	0	A
9088	8474801000	주물용 사형의 성형기	0	A
9089	8474802000	조괴기(造塊機)・형입기와 성형기	0	A
9090	8474809000	기타	0	A
9091	8474900000	부분품	0	A
9092	8475100000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밸브・섬광전구(flashbu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	8	A
9093	8475210000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기계	0	A
9094	8475291000	판유리 제조용	8	A
9095	8475292000	유리병 제조용	8	A
9096	8475299000	기타	8	A
9097	8475901000	판유리 제조용	8	A
9098	8475902000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0	A
9099	8475909000	기타	8	A
9100	8476210000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8	A
9101	8476290000	기타	8	A
9102	8476810000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8	A
9103	8476891000	식품 자동판매기	8	A
9104	8476894000	화폐 교환기	0	A
9105	8476899000	기타	8	A
9106	8476901000	화폐교환기의 것	0	A
9107	8476909000	기타	8	A
9108	8477101000	고무 공업용	8	A
9109	8477102000	플라스틱 공업용	8	A
9110	8477201000	고무 공업용	8	A
9111	8477202000	플라스틱 공업용	8	A
9112	8477300000	취입 성형기	8	A
9113	8477400000	진공성형기와 그 밖의 열성형기	8	A
9114	8477510000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나 재생기와 그 밖의 이너튜브(inner tube) 성형기	8	A
9115	8477590000	기타	8	A
9116	8477800000	그 밖의 기계	8	A
9117	8477900000	부분품	8	A
9118	8478100000	기계류	8	A
9119	8478900000	부분품	8	A
9120	8479101000	모올타르나 콘크리트 살포기	0	A
9121	8479102000	그 밖의 도로공사용 기계	0	A
9122	8479109000	기타	0	A
9123	8479200000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인 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조제용 기계류	8	A
9124	847930000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건축용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용 프레스, 목재나 코르크 처리용 그 밖의 기계	8	A

9125	8479400000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	8	A
9126	8479501000	제8479.81호, 제8479.82호, 제8479.89-9010호, 제8479.89-9030호, 제8479.89-9060호, 제8479.89-9091호의 것	8	A
9127	8479502000	제8479.89-9080호의 것	8	A
9128	8479509000	기타	8	A
9129	8479600000	증발식 에어쿨러	8	A
9130	8479710000	공항에서 사용되는 것	8	A
9131	8479790000	기타	8	A
9132	8479811000	금속 세척기	8	A
9133	8479812010	반도체 제조용	3	A
9134	8479812090	기타	8	A
9135	8479813000	권선기	8	A
9136	8479814000	절연이나 보호재료 피복기	8	A
9137	8479819000	기타	8	A
9138	8479821000	혼합기	5	A
9139	8479822000	파쇄기와 분쇄기	5	A
9140	8479823000	균질기	5	A
9141	8479824000	교반기	5	A
9142	8479829000	기타	5	A
9143	8479830000	냉간 등압성형기	8	A
9144	8479891010	공기청정기(제습 및 가습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A
9145	8479891090	기타	8	A
9146	8479892010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A
9147	8479892090	기타	8	A
9148	8479899010	프레스·압출기	5	A
9149	8479899020	선박용·어업용 기기	8	A
9150	8479899030	아이레팅(eyeletting)기·튜불러리베팅(tubular revetting)기	8	A
9151	8479899050	코팅머신(도포기)	8	A
9152	8479899060	자동도어 작동기	8	A
9153	8479899080	조상기(釣上機)	8	A
9154	8479899091	제87류의 차량용	8	A
9155	8479899099	기타	5	A
9156	8479901010	냉방기기용(카쿨러의 것을 포함한다)	8	A
9157	8479901020	가정형 기기용	8	A
9158	8479901030	제87류의 차량용	8	A
9159	8479902000	제8479.89-9080호의 것	8	A
9160	847990300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8	A
9161	8479904000	소호 제8479.7호의 것	8	A
9162	8479905010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A
9163	8479905090	기타	5	A
9164	8479909010	토목공사, 건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의 것	8	A
9165	8479909020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의 추출 및 조제용 기계의 것	8	A
9166	8479909030	로프, 케이블 제조기의 것	8	A
9167	8479909040	금속처리용 기계류의 것	5	A
9168	8479909050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체·시프팅기·균질기·유화기·교반기의 것	5	A
9169	8479909060	프레스·압출기의 것	5	A
9170	8479909070	선박용·어업 기기의 것	8	A

9171	8479909090	기타	5	A
9172	8480100000	금속 주조용 주형틀	8	A
9173	8480200000	주형 베이스	8	A
9174	8480300000	주형 제조용 모형	8	A
9175	8480410000	사출식이나 압축식	8	A
9176	8480490000	기타	8	A
9177	8480500000	유리 성형용 주형	8	A
9178	8480600000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8	A
9179	8480710000	사출식이나 압축식	8	A
9180	8480790000	기타	8	A
9181	8481100000	감압밸브	8	A
9182	8481201000	유압 전송용 밸브	8	A
9183	8481202000	공기압 전송용 밸브	8	A
9184	8481300000	체크(논리턴)밸브	8	A
9185	8481400000	안전밸브	8	A
9186	8481801010	전기 작동식의 것	8	A
9187	8481801020	액압 작동식의 것	8	A
9188	8481801030	그 밖의 자동제어식의 것	8	A
9189	8481801090	기타	8	A
9190	8481802000	탭・코크와 트랩	8	A
9191	8481809000	기타	8	A
9192	8481900000	부분품	8	A
9193	8482102000	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13	A
9194	8482109000	기타	8	A
9195	8482200000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8	A
9196	8482300000	구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	A
9197	8482400000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케이지와 니들 롤러의 조립품을 포함한다)	8	A
9198	8482500000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케이지와 롤러의 조립품을 포함한다)	8	A
9199	8482800000	그 밖의 베어링[볼베어링(ball bearing)과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A
9200	8482910000	볼・니들・롤러	8	A
9201	8482990000	기타	8	A
9202	8483101000	항공기용	3	A
9203	8483109010	제87류 차량용	8	A
9204	8483109090	기타	8	A
9205	8483201000	항공기용	3	A
9206	8483209000	기타	8	A
9207	8483301000	항공기용	3	A
9208	8483309000	기타	8	A
9209	8483401010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3	A
9210	8483401090	기타	3	A
9211	8483409010	기어	8	A
9212	8483409020	기어박스	8	A
9213	8483409030	무단변속기	8	A
9214	8483409040	롤러 스크루	8	A
9215	8483409050	볼 스크루	8	A
9216	8483409090	기타	8	A
9217	8483501000	항공기용	8	A
9218	8483509000	기타	8	A

9219	8483601000	항공기용	3	A
9220	8483602000	풍력발전기용	5	A
9221	8483609000	기타	8	A
9222	8483901000	항공기용	3	A
9223	8483902000	풍력발전기용	5	A
9224	8483909000	기타	8	A
9225	8484101000	제87류 차량용	8	A
9226	8484109000	기타	8	A
9227	8484200000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8	A
9228	8484900000	기타	8	A
9229	8485100000	금속용	8	A
9230	8485201000	데스크탑 형태의 재료압출방식	8	A
9231	8485209000	기타	8	A
9232	8485300000	플라스터·시멘트·세라믹·유리용	8	A
9233	8485800000	기타	8	A
9234	8485900000	부분품	8	A
9235	8486101000	스핀 드라이어(원심분리방식으로 한정한다)	0	A
9236	8486102000	단결정 보울(boule)을 성장시키는 기계	0	A
9237	8486103010	단결정 보울(boule)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	0	A
9238	8486103020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광택기(래핑기를 포함한다)	0	A
9239	8486103090	기타	0	A
9240	8486104010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 방식에 의한 것	0	A
9241	8486104020	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이나 플라즈마아크방식에 의한 것	0	A
9242	8486105010	저항가열식의 노(爐)와 오븐	0	A
9243	8486105030	그 밖의 노(爐)와 오븐	0	A
9244	8486109000	기타	0	A
9245	8486201000	스핀 드라이어(원심분리방식으로 한정한다)	0	A
9246	8486202100	저항가열식의 노(爐)와 오븐	0	A
9247	8486202200	전자유도식·유전식 노(爐)와 오븐	0	A
9248	8486202300	그 밖의 노(爐)와 오븐	0	A
9249	8486203000	반도체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	0	A
9250	8486204000	반도체웨이퍼 위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0	A
9251	8486205000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침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0	A
9252	8486206010	반도체웨이퍼 위에 직접 그리는 기기	0	A
9253	8486206020	스텝 앤 리피트 얼라이너	0	A
9254	8486206091	레이저 작동식 기기	0	A
9255	8486206099	기타	0	A
9256	8486207000	반도체 웨이퍼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계	0	A
9257	8486208100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 방식에 의한 것	0	A
9258	8486208410	반도체재료의 건식식각 패턴용의 것	0	A
9259	8486208420	반도체웨이퍼를 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기	0	A
9260	8486208490	기타	0	A
9261	8486209100	액체나 분말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	0	A
9262	8486209200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현상·경화시키는 기계	0	A
9263	8486209310	반도체 웨이퍼가공용의 연마기·광택기(래핑기를 포함한다)	0	A
9264	8486209320	반도체 웨이퍼의 스크라이빙·스코어링을 위한 다이싱기	0	A
9265	8486209390	기타	0	A
9266	8486209400	웨이퍼·캐리어·튜브를 세척하는 기계	0	A

9267	8486209500	반도체웨이퍼 위에 테이프를 부착시키는 기계	0	A
9268	8486209600	반도체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절단하는 기기	0	A
9269	8486209900	기타	0	A
9270	8486301010	연마기・광택기	0	A
9271	8486301020	도포 또는 현상기	0	A
9272	8486301031	물리적 방식의 것	0	A
9273	8486301032	화학적 방식의 것	0	A
9274	8486301040	감광성 평판디스플레이용 기판에 회로모형을 투영하거나 드로잉하는 기기	0	A
9275	8486301050	식각기	0	A
9276	8486301060	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기	0	A
9277	8486301090	기타	0	A
9278	8486302010	연마기・광택기	0	A
9279	8486302020	도포 또는 현상기	0	A
9280	8486302031	물리적 방식의 것	0	A
9281	8486302032	화학적 방식의 것	0	A
9282	8486302040	감광성 평판디스플레이용기판에 회로모형을 투영하거나 드로잉하는 기기	0	A
9283	8486302050	식각기	0	A
9284	8486302060	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기	0	A
9285	8486302070	액정 공정용 기기	0	A
9286	8486302090	기타	0	A
9287	8486401010	패턴형성기(주로 사진 감광액이 도포된 감광판으로부터 마스크와 레티클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0	A
9288	8486401020	마스크와 레티클을 처리・수리하기 위한 포커스드 이온빔 밀링기	0	A
9289	8486401030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현상・경화시키는 기계	0	A
9290	8486401040	마스크와 레티클을 식각, 세척, 스트리핑하는 기계와 기기	0	A
9291	8486401090	기타	0	A
9292	8486402010	반도체 조립용의 다이 부착기, 테이프자동접착기・와이어접착기	0	A
9293	8486402020	반도체 디바이스를 삽입・제거시키는 기계	0	A
9294	8486402031	반도체조립용 인캡슐레이션 기기	0	A
9295	8486402039	기타	0	A
9296	8486402040	납볼을 반도체 제조용 인쇄회로기판이나 세라믹기판에 탑재하는 기계	0	A
9297	8486402070	사출식・압축식의 고무・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0	A
9298	8486402080	반도체 다이를 부착하거나 웨이퍼, 캐리어, 튜브를 세척하는 기계	0	A
9299	8486402091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침용 금속가공 공작기계(반도체 리드의 것으로서 프레스를 포함하며, 수치제어식의 여부는 상관없다)	0	A
9300	8486402093	웨이퍼의 절단 이전에 전체 웨이퍼에 연결접점(범프)을 형성하는 웨이퍼 범핑용 기기	0	A
9301	8486402095	저항가열식의 전기식 노(爐)와 오븐	0	A
9302	8486402099	기타	0	A
9303	8486403010	반도체 소자 제조용 웨이퍼, 웨이퍼카셋트, 상자나 그 밖의 물품을 이송, 핸들링 그리고 저장하기 위한 것	0	A
9304	8486403020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捲揚), 취급, 적하(積荷)나 양하(揚荷)용의 것	0	A
9305	8486403090	기타	0	A
9306	8486901000	보울・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것	0	A

9307	8486902030	정전식 척(chuck)	0	A
9308	8486902040	도포・현상・증착・식각용 기기의 것	0	A
9309	8486902090	기타	0	A
9310	8486903050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디스플레이 제조용기기의 것	0	A
9311	8486903060	액정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	0	A
9312	8486903090	기타	0	A
9313	8486904000	이 류의 주 제11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의 것	0	A
9314	8487100000	선박이나 보트의 추진기와 그 블레이드(blade)	8	A
9315	8487901000	제87류 차량용	8	A
9316	8487909010	오일 실링	8	A
9317	8487909090	기타	8	A
9318	8501101000	직류 전동기	8	A
9319	8501102000	교류 전동기	8	A
9320	8501103000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	8	A
9321	8501201000	출력이 37.5와트 초과 100와트 이하인 것	8	A
9322	8501202000	출력이 100와트 초과 750와트 이하인 것	8	A
9323	8501203000	출력이 750와트를 초과하는 것	8	A
9324	8501311010	출력이 100와트 이하인 것	8	A
9325	8501311090	기타	8	A
9326	8501312000	직류 발전기	8	A
9327	8501321000	직류 전동기	8	A
9328	8501322000	직류 발전기	8	A
9329	8501331000	직류 전동기	8	A
9330	8501332000	직류 발전기	8	A
9331	8501341000	직류 전동기	8	A
9332	8501342000	직류 발전기	8	A
9333	8501401000	출력이 100와트 이하인 것	8	A
9334	8501402000	출력이 100와트 초과 750와트 이하인 것	8	A
9335	8501403000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8	A
9336	8501404000	출력이 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	A
9337	8501510000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8	A
9338	8501520000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8	A
9339	8501531000	출력이 375킬로와트 이하인 것	8	A
9340	8501532000	출력이 375킬로와트 초과 1,500킬로와트 이하인 것	8	A
9341	8501534000	출력이 1,5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	A
9342	8501611000	출력이 75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9343	8501612000	출력이 750볼트암페어 초과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9344	8501620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9345	8501631000	400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0	A
9346	8501639000	기타	8	A
9347	8501640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A
9348	8501710000	출력이 50와트 이하인 것	8	A
9349	8501721000	출력이 50와트 초과 750와트 이하인 것	8	A
9350	8501722000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8	A
9351	8501723000	출력이 75킬로와트 초과 375킬로와트 이하인 것	8	A
9352	8501724000	출력이 3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	A
9353	8501801000	출력이 75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9354	8501802000	출력이 750볼트암페어 초과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9355	8501803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9356	8501804010	400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0	A
9357	8501804090	기타	8	A
9358	8501805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A
9359	8502111000	출력이 75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9360	8502112000	출력이 750볼트암페어 초과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9361	8502120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9362	8502131010	400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0	A
9363	8502131090	기타	8	A
9364	8502132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A
9365	8502134000	출력이 3,5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A
9366	8502201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9367	8502202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9368	8502203010	400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0	A
9369	8502203090	기타	8	A
9370	8502204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A
9371	8502311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A
9372	8502312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A
9373	8502314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5	A
9374	8502391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A
9375	8502392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A
9376	8502393000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A
9377	8502394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5	A
9378	8502400000	회전변환기	8	A
9379	8503001000	전동기의 것	8	A
9380	8503002010	풍력발전기용	5	A
9381	8503002090	기타	5	A
9382	8503003000	회전변환기의 것	8	A
9383	8504101010	전류가 1암페어 이하인 것	8	A
9384	8504101020	전류가 1암페어 초과 20암페어 이하인 것	8	A
9385	8504102000	전류가 20암페어 초과 60암페어 이하인 것	8	A
9386	8504103000	전류가 6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A
9387	8504211000	계기용 변압기	8	A
9388	8504219010	용량이 1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9389	8504219020	용량이 1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6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9390	8504221000	계기용 변압기	8	A
9391	8504229010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9392	8504229020	용량이 1,0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9393	8504229030	용량이 5,0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9394	8504230000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A
9395	8504311000	계기용 변압기	8	A
9396	8504312000	전압 조정기	8	A
9397	8504319010	용량이 10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9398	8504319020	용량이 100볼트암페어 초과 50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9399	8504319040	용량이 500볼트암페어 초과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9400	8504321000	계기용 변압기	8	A
9401	8504322000	전압 조정기	8	A
9402	8504329010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9403	8504329020	용량이 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6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9404	8504331000	계기용 변압기	8	A
9405	8504332000	전압 조정기	8	A
9406	8504339010	용량이 16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9407	8504339020	용량이 3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9408	8504339040	용량이 1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9409	8504341000	계기용 변압기	8	A
9410	8504342000	전압 조정기	8	A
9411	8504349010	용량이 5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2,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9412	8504349030	용량이 2,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A
9413	8504401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A
9414	8504401090	기타	1	A
9415	850440201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A
9416	8504402019	기타	1	A
9417	850440209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A
9418	8504402099	기타	1	A
9419	8504403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A
9420	8504403090	기타	1.625	A
9421	8504404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A
9422	8504404090	기타	1.625	A
9423	8504405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A
9424	8504405090	기타	1.625	A
9425	850440901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것	0	A
9426	8504409019	기타	0	A
9427	8504409091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A
9428	8504409099	기타	1.625	A
9429	8504501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A
9430	8504501090	기타	0	A
9431	8504502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A

9432	8504502090	기타	0	A
9433	8504509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A
9434	8504509090	기타	0	A
9435	8504901000	인쇄회로조립품(소호 제8504.40호·제8504.50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그 단위기기와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서 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A
9436	8504909000	기타	0	A
9437	8505111000	알니코(alnico)의 것	8	A
9438	8505119000	기타	8	A
9439	8505191000	산화철의 것	8	A
9440	8505199000	기타	8	A
9441	8505200000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브레이크	8	A
9442	8505901010	자기공명 촬영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제9018호의 전자석은 제외한다)	0	A
9443	8505901090	기타	8	A
9444	8505902000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의 척(chuck)·클램프·바이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8	A
9445	8505903000	전자석 리프팅 헤드(lifting head)	8	A
9446	8505909000	부분품	8	A
9447	8506101000	망간건전지	13	A
9448	8506102000	알칼리망간건전지	13	A
9449	8506109000	기타	8	B
9450	8506300000	산화수은으로 만든 것	8	B
9451	8506400000	산화은으로 만든 것	8	B
9452	8506500000	리튬으로 만든 것	8	A
9453	8506600000	에어징크로 만든 것	8	A
9454	8506801000	산화아연으로 만든 것	8	B
9455	8506809000	기타	8	A
9456	8506900000	부분품	8	A
9457	850710000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8	A
9458	8507200000	그 밖의 연산(鉛酸)축전지	8	A
9459	8507300000	니켈-카드뮴 축전지	8	A
9460	8507500000	니켈-수소합금 축전지	8	A
9461	8507602000	전기차용	8	A
9462	8507603000	에너지 저장장치용	8	A
9463	8507609000	기타	8	A
9464	8507800000	그 밖의 축전지		
		- 니켈-철 축전지	8	B
		- 기타	8	A
9465	8507901000	격리판	8	A
9466	8507909000	기타	8	A
9467	8508111000	로봇형	8	A
9468	8508119000	기타	8	A
9469	8508192000	로봇형	8	A
9470	8508199000	기타	8	A
9471	8508600000	그 밖의 진공청소기	8	A
9472	8508701000	제8508.11-9000호의 것	8	A
9473	8508702000	제8508.19-9000호, 제8508.60-0000호의 것	8	A
9474	8508703000	제8508.11-1000호, 제8508.19-2000호의 것	8	A
9475	850940000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실주스·채소주스 추출기	8	A

9476	8509801000	커피분쇄기	8	A
9477	8509802000	얼음분쇄기	8	A
9478	8509803000	바닥광택기	8	A
9479	8509804000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8	A
9480	8509809000	기타	8	A
9481	8509900000	부분품	8	A
9482	8510100000	면도기	8	A
9483	8510200000	이발기	8	A
9484	8510300000	모발제거기	8	A
9485	8510901000	면도기의 것	8	A
9486	8510902000	이발기의 것	8	A
9487	8510903000	모발제거기의 것	8	A
9488	8511101000	항공기용	3	A
9489	8511109000	기타	8	A
9490	8511201000	항공기용	3	A
9491	8511209000	기타	8	A
9492	8511301000	항공기용	3	A
9493	8511309000	기타	8	A
9494	8511401000	항공기용	3	A
9495	8511409000	기타	8	A
9496	8511501000	항공기용	3	A
9497	8511509000	기타	8	A
9498	8511801000	항공기용	3	A
9499	8511809000	기타	8	A
9500	8511901000	항공기용	3	A
9501	8511909000	기타	8	A
9502	8512101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8	A
9503	8512109000	기타	8	A
9504	851220101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8	A
9505	8512201090	기타	8	A
9506	851220201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8	A
9507	8512202090	기타	8	A
9508	8512300000	음향신호용 기구	8	A
9509	8512400000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	8	A
9510	8512900000	부분품	8	A
9511	8513101000	광산용 안전등	8	A
9512	851310201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8	A
9513	8513102090	기타	8	A
9514	851310901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8	A
9515	8513109090	기타	8	A
9516	8513900000	부분품	8	A
9517	8514110000	열간 등압성형기	8	A
9518	8514191000	실험실용	8	A
9519	8514192000	금속공업용	8	A
9520	8514193000	식품공업용	8	A
9521	8514199000	기타	5	A
9522	8514201000	실험실용	8	A
9523	8514202000	금속공업용	8	A
9524	8514203000	식품공업용	8	A
9525	8514209000	기타	5	A

9526	8514311000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A
9527	8514319000	기타	5	A
9528	8514321000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A
9529	8514329000	기타	5	A
9530	8514391000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A
9531	8514399000	기타	5	A
9532	8514401000	반도체 제조용	0	A
9533	8514409000	기타	8	A
9534	8514901000	반도체 제조용	0	A
9535	8514902000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노(爐)와 오븐의 것	0	A
9536	8514909000	기타	5	A
9537	8515110000	납땜용 인두와 건(gun)	8	A
9538	8515191000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침적 납땜용(wave soldering) 기계	0	A
9539	8515199000	기타	8	A
9540	8515211010	로봇형	8	A
9541	8515211090	기타	8	A
9542	8515212010	로봇형	8	A
9543	8515212090	기타	8	A
9544	8515213010	로봇형	8	A
9545	8515213090	기타	8	A
9546	8515219010	로봇형	8	A
9547	8515219090	기타	8	A
9548	8515291000	점 용접기기	8	A
9549	8515292000	봉합 용접기기	8	A
9550	8515293000	버트 용접기기	8	A
9551	8515299000	기타	8	A
9552	8515311010	로봇형	8	A
9553	8515311090	기타	8	A
9554	8515319010	로봇형	8	A
9555	8515319090	기타	8	A
9556	8515391000	교류아크 용접기기	8	A
9557	8515399000	기타	8	A
9558	8515801000	초음파 응용기기	8	A
9559	8515802000	전자빔용 기기	8	A
9560	8515803000	레이저 작동식 기기	8	A
9561	8515809000	기타	8	A
9562	8515901010	레이저 작동식의 것	8	A
9563	8515901090	기타	8	A
9564	8515902000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침적 납땜용(wave soldering) 기기의 것	0	A
9565	8515909000	기타	8	A
9566	8516100000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8	A
9567	8516210000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8	A
9568	8516290000	기타	8	A
9569	8516310000	헤어드라이어	8	A
9570	8516320000	그 밖의 이용기기	8	A
9571	8516330000	손 건조기	8	A

9572	8516400000	전기다리미	8	A
9573	851650000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	8	A
9574	8516601000	전기오븐	8	A
9575	8516602000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8	A
9576	8516609000	기타	8	A
9577	8516710000	커피·차를 끓이는 기기	8	A
9578	8516720000	토스터	8	A
9579	8516791000	전기보온밥통	8	A
9580	8516799000	기타	8	A
9581	8516800000	전열용 저항체	8	A
9582	8516900000	부분품	8	A
9583	8517110000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9584	8517130000	스마트폰	0	A
9585	8517141000	코드분할다중접속을 사용하는 동기식	0	A
9586	8517142000	시분할다중접속을 사용하는 비동기식	0	A
9587	8517143000	코드분할다중접속을 사용하는 비동기식	0	A
9588	8517144000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을 사용하는 동기식	0	A
9589	8517149000	기타	0	A
9590	8517180000	기타	0	A
9591	8517610000	기지국	0	A
9592	8517621010	유선통신용	0	A
9593	8517621020	무선통신용	0	A
9594	8517622030	유선통신용	0	A
9595	8517622040	무선통신용	0	A
9596	8517623010	유선통신용	0	A
9597	8517623020	무선통신용	0	A
9598	8517629010	자동자료처리기계에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A
9599	8517629020	그 밖의 유선통신용	0	A
9600	8517629030	그 밖의 무선통신용	0	A
9601	8517693000	유선통신용	0	A
9602	8517694000	무선통신용	0	A
9603	8517711000	무선전화기의 것	0	A
9604	8517719000	기타	0	A
9605	8517791010	유선전화기의 것	0	A
9606	8517791020	스마트폰용의 것	0	A
9607	8517791030	그 밖의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으로 한정한다)의 것	0	A
9608	8517792000	소호 제8517.61호의 것	0	A
9609	8517793000	소호 제8517.62호의 것	0	A
9610	8517794000	소호 제8517.69호의 것	0	A
9611	8518101000	전기통신용 마이크로폰(지름이 10밀리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3밀리미터 이하이며, 주파수 대역이 300헤르츠부터 3.4킬로헤르츠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9612	8518109010	무선 마이크로폰(무선 마이크로폰 세트를 포함한다)	2	A
9613	8518109090	기타	2	A
9614	8518210000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9615	8518220000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9616	8518291000	전기통신용의 것(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주파수대역이 300헤르츠부터 3.4킬로헤르츠까지이며, 하우징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9617	8518299000	기타	2	A
9618	8518304000	유선전화 핸드세트	0	A
9619	8518309000	기타	2	B
9620	8518400000	가청주파증폭기	1	A
9621	8518500000	음향증폭세트	0	A
9622	8518901000	인쇄회로조립품(제8518.10-1000호 · 제8518.29-1000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A
9623	8518909000	기타	0	A
9624	8519200000	코인 · 은행권 · 은행카드 · 토큰이나 그 밖의 지급 수단으로 작동하는 기기	8	A
9625	8519300000	턴 테이블(레코드 데크)	8	A
9626	8519812000	자기식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0	A
9627	8519814000	광학식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0	A
9628	8519815000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0	A
9629	8519816000	자기식 · 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 중 두 가지 이상의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기	0	A
9630	8519890000	기타	0	A
9631	8521100000	마그네틱 테이프형	0	A
9632	8521901000	디스크형	1	A
9633	8521909000	기타	1	A
9634	8522100000	픽업 카트리지	8	A
9635	8522903000	자기헤드와 동 부분품	0	A
9636	8522909000	기타	0	A
9637	8523210000	마그네틱 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를 갖춘 카드(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A
9638	8523291000	기록이 안 된 매체	0	A
9639	85232920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A
9640	8523292020	비디오 녹화된 것	0	A
9641	8523292030	음성만을 기록한 것	0	A
9642	8523292090	기타	0	A
9643	8523410000	기록이 안 된 것	0	A
9644	85234910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A
9645	8523491030	비디오 녹화된 것	0	A
9646	8523491040	음성만을 기록한 것	0	A
9647	8523491090	기타	0	A
9648	85234990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A
9649	8523499020	비디오 녹화된 것	0	A
9650	8523499030	음성만을 기록한 것	0	A
9651	8523499090	기타	0	A
9652	8523511000	기록이 안 된 매체	0	A
9653	85235120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A
9654	8523512020	비디오 녹화된 것	0	A
9655	8523512030	음성만을 기록한 것	0	A
9656	8523512090	기타	0	A
9657	8523521000	한 개의 전자집적회로를 갖춘 것과 그 부분품	0	A
9658	8523522000	기타(프록시미티 카드(proximity card)와 태그로 한정한다)	0	A
9659	8523529000	기타와 그 부분품	0	A
9660	8523591000	기록이 안 된 매체	0	A
9661	85235920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A

9662	8523592020	비디오 녹화된 것	0	A
9663	8523592030	음성만을 기록한 것	0	A
9664	8523592090	기타	0	A
9665	8523801000	기록이 안 된 매체	0	A
9666	85238020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A
9667	8523802020	비디오 녹화된 것	0	A
9668	8523802030	음성만을 기록한 것	0	A
9669	8523802090	기타	0	A
9670	8524111000	휴대형 자동자료처리기계(소호 제8471.30호의 것)용	8	A
9671	8524112000	유선·무선 통신기기용	8	A
9672	8524113000	텔레비전용	8	A
9673	8524114000	모니터용	8	A
9674	8524115000	전기식 시각 신호용 기기(제8531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용	8	A
9675	8524119000	기타	8	A
9676	8524121000	휴대형 자동자료처리기계(소호 제8471.30호의 것)용	0	A
9677	8524122000	유선·무선 통신기기용	0	A
9678	8524123000	텔레비전용	8	B
9679	8524124000	모니터용	0	A
9680	8524125000	전기식 시각 신호용 기기(제8531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용	0	A
9681	8524129000	기타	8	A
9682	8524191000	휴대형 자동자료처리기계(소호 제8471.30호의 것)용	0	A
9683	8524192000	유선·무선 통신기기용	0	A
9684	8524193000	텔레비전용	0	A
9685	8524194000	모니터용	0	A
9686	8524195000	전기식 시각 신호용 기기(제8531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용	0	A
9687	8524199000	기타	8	A
9688	8524911000	휴대형 자동자료처리기계(소호 제8471.30호의 것)용	0	A
9689	8524912000	유선·무선 통신기기용	0	A
9690	8524913000	텔레비전용	0	A
9691	8524914000	모니터용	0	A
9692	8524915000	전기식 시각 신호용 기기(제8531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용	0	A
9693	8524919000	기타	8	A
9694	8524921000	휴대형 자동자료처리기계(소호 제8471.30호의 것)용	0	A
9695	8524922000	유선·무선 통신기기용	0	A
9696	8524923000	텔레비전용	8	B
9697	8524924000	모니터용	0	A
9698	8524925000	전기식 시각 신호용 기기(제8531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용	0	A
9699	8524929000	기타	8	A
9700	8524991000	휴대형 자동자료처리기계(소호 제8471.30호의 것)용	0	A
9701	8524992000	유선·무선 통신기기용	0	A
9702	8524993000	텔레비전용	0	A
9703	8524994000	모니터용	0	A
9704	8524995000	전기식 시각 신호용 기기(제8531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용	0	A
9705	8524999000	기타	8	A
9706	8525501000	라디오 방송용	0	A
9707	8525502000	텔레비전용	0	A
9708	8525509000	기타	0	A
9709	8525601000	라디오 방송용	0	A
9710	8525602000	텔레비전용	0	A
9711	8525609000	기타	0	A
9712	8525810000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고속 카메라	0	A

9713	8525820000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방사선 강화・내(耐)방사선 카메라로 한정한다]	0	A
9714	8525830000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3호에 규정된 야간투시 카메라로 한정한다)	0	A
9715	8525891000	초소형 특수카메라(필기구, 버튼, 안경, 시계, USB 메모리 등 일상소품이나 다른 전기기기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	0	A
9716	8525892000	텔레비전 카메라	0	A
9717	8525893000	디지털 카메라	0	A
9718	8525899000	기타	0	A
9719	8526101000	항공기용	1.3	A
9720	8526109000	기타	1.3	A
9721	8526911010	항공기용	1.625	A
9722	8526911090	기타	1.625	A
9723	8526912010	항공기용	1.625	A
9724	8526912090	기타	1.625	A
9725	8526913010	항공기용	1	A
9726	8526913020	자동차용	1	A
9727	8526913090	기타	1	A
9728	8526914000	로란 리시버	1	A
9729	8526919010	항공기용	1.625	A
9730	8526919020	자동차용	1.625	A
9731	8526919090	기타	1.625	B
9732	8526920000	무선원격조절기기	2.5	B
9733	8527120000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0	A
9734	8527131000	카세트형	0	A
9735	8527132000	디스크형	0	A
9736	8527133000	카셋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0	A
9737	8527139000	기타	0	A
9738	8527190000	기타	0	A
9739	8527211000	카세트형	8	A
9740	8527212010	디지털 무선 데이터 시스템 신호를 수신 및 디코딩할 수 있는 것	2	A
9741	8527212090	기타	8	A
9742	8527213010	디지털 무선 데이터 시스템 신호를 수신 및 디코딩할 수 있는 것	2	A
9743	8527213090	기타	8	A
9744	8527219010	디지털 무선 데이터 시스템 신호를 수신 및 디코딩할 수 있는 것	2	A
9745	8527219090	기타	8	A
9746	8527290000	기타	0	A
9747	8527911010	카세트형	0	A
9748	8527911020	디스크형	0	A
9749	8527911030	카셋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0	A
9750	8527911090	기타	0	A
9751	8527919000	기타	0	A
9752	8527920000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0	A
9753	8527990000	기타	0	A
9754	8528420000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0	A
9755	8528491010	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	0	A

9756	8528491090	기타	0	A
9757	8528492010	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	0	A
9758	8528492090	기타	0	A
9759	8528521000	액정모니터	0	A
9760	8528529000	기타	0	A
9761	8528591010	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	8	A
9762	8528591090	기타	8	A
9763	8528592010	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	8	A
9764	8528592090	기타	8	A
9765	8528620000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0	A
9766	8528690000	기타	8	A
9767	8528711000	비디오 튜너	0	A
9768	8528712020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갖춘 것	0	A
9769	8528712090	기타	0	A
9770	8528713000	TV튜너가 내장된 프로젝터	0	A
9771	8528719000	기타	0	A
9772	8528722000	액정디스플레이 방식	8	A
9773	8528725000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방식	8	A
9774	8528726000	마이크로 LED 방식	8	A
9775	8528729000	기타	8	A
9776	8528730000	기타(단색)	8	A
9777	8529101000	레이더기기용	1.3	A
9778	8529109100	항행용 무선기기·무선원격조절기용	1.625	C
9779	8529109200	텔레비전 송·수신용	1.625	A
9780	8529109900	기타		
		-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기기의 것	0	A
		- 기타	3.25	B
9781	8529902000	제8524호의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용의 것		
		-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방식용(텔레비전 수신기의 것으로 천연색 튜너, 흑백이나 단색 튜너, 영상투사기용 스크린, 그밖의 흑백이나 단색용은 제외한 그 밖의 천연색 용으로 한정한다)	8	B
		- 기타	0/8	A
9782	8529903010	송신기기 또는 수신기기의 것	0	A
9783	8529903020	텔레비전카메라·디지털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 것	0	A
9784	8529904000	제8526호 기기의 것	0	A
9785	8529905000	제8527호 기기의 것	0	A
9786	8529906010	모니터나 프로젝터의 것	0	A
9787	8529906021	튜너	0	A
9788	8529906022	그 밖의 액정 디스플레이 방식용	0	A
9789	8529906023	그 밖의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방식용	8	B
9790	8529906029	기타	0	A
9791	8530101000	열차의 자동정지용·제어용·운전용 기기	8	A
9792	8530109000	기타	8	A
9793	8530800000	그 밖의 기기	8	A
9794	8530900000	부분품	8	A
9795	8531101000	도난경보기	8	A
9796	8531102000	화재경보기	8	A
9797	8531103000	가스경보기	8	A
9798	8531106000	전기식의 벨 또는 사이렌	8	A

9799	8531109000	그 밖의 신호기기	8	A
9800	8531201000	액정 디바이스(엘시디)가 결합된 표시반	0	A
9801	8531202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0	A
9802	8531802000	도어벨・차임・버저와 이와 유사한 기기	8	A
9803	8531809000	기타	0	A
9804	8531901000	소호 제8531.10호의 것	0	A
9805	8531902000	소호 제8531.20호의 것	0	A
9806	8531909000	기타	0	A
9807	8532100000	고정식 축전기로 50/60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無效)전력 용량이 0.5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0	A
9808	8532210000	탄탈륨의 것	0	A
9809	8532220000	알루미늄 전해의 것	0	A
9810	8532230000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0	A
9811	8532240000	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층)	0	A
9812	8532250000	종이나 플라스틱 유전체의 것	0	A
9813	8532290000	기타	0	A
9814	8532300000	가변식이나 조정식(프리세트) 축전기	0	A
9815	8532901000	고정식의 것	0	A
9816	8532909000	기타	0	A
9817	8533100000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콤퍼지션형이나 필름형으로 한정한다)	0	A
9818	8533212000	서미스터	0	A
9819	8533219000	기타	0	A
9820	8533292000	서미스터	0	A
9821	8533299000	기타	0	A
9822	8533310000	용량이 20와트 이하인 것	0	A
9823	8533390000	기타	0	A
9824	8533401000	탄소가변의 것	0	A
9825	8533403000	바리스터	0	A
9826	8533409000	기타	0	A
9827	8533901000	가변식 저항기의 것	0	A
9828	8533909000	기타	0	A
9829	8534001000	수동소자 부분[인덕턴스(inductance), 저항기, 축전지 등]이 형성된 것	0	A
9830	8534002000	테이프형이나 리드프레임(lead frame) 기능을 하는 회로가 형성된 것	0	A
9831	8534009000	기타	0	A
9832	8535100000	퓨즈	8	A
9833	8535211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8	A
9834	8535212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이상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8	A
9835	8535291000	정격전압이 200킬로볼트 미만인 것	8	A
9836	8535292000	정격전압이 200킬로볼트 이상인 것	8	A
9837	8535301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8	A
9838	8535302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이상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8	A
9839	8535303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이상인 것	8	A
9840	8535400000	피뢰기・전압제한기와 서지(surge)억제기	8	A
9841	8535901000	커넥터	8	A
9842	8535902000	터미널	8	A
9843	8535909000	기타	8	A
9844	8536101000	관형	8	A
9845	8536109000	기타	8	A
9846	8536200000	자동차단기	8	A

9847	8536300000	전기회로 보호용 그 밖의 기기	0	A
9848	8536410000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	8	A
9849	8536490000	기타	8	A
9850	8536501000	회전형	1.625	A
9851	8536502000	푸쉬 버튼형	1.625	A
9852	8536503000	마이크로형	1.625	A
9853	8536504000	전자개폐형(전자접속기를 포함한다)	1.625	A
9854	8536509010	전기기계식의 스냅동작방식의 것(11암페어 이하로 한정한다)	0	A
9855	8536509020	교류(AC)방식의 것(입출력 회로가 광학적으로 짝지워진 것으로 한정한다)	0	A
9856	8536509030	온도보호용의 것(1,000볼트 이하의 전압용으로 트랜지스터와 논리칩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A
9857	8536509090	기타	1.625	A
9858	8536610000	램프홀더	8	A
9859	8536691000	동축케이블·인쇄회로용의 것	0	A
9860	8536699000	기타	8	A
9861	85367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6.5	A
9862	8536702000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의 것	8	A
9863	8536703010	주조·주형·압착·단조(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9864	8536703090	기타	8	A
9865	8536901000	접속함	0	A
9866	8536902000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나 제8711호의 자동차용 배터리 클램프(battery clamp)	8	A
9867	8536909010	선이나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	0	A
9868	8536909090	기타	0	A
9869	8537103000	터치감응식 자료입력장치('터치스크린'이라 불림)[영상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는 기기에 결합되어 디스플레이 영역 내의 접촉여부와 위치를 감지하는 기능을 하며, 제시된 상태에서 디스플레이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함]	0	A
9870	8537104000	배전용의 것	8	A
9871	8537105010	수치 제어반	8	A
9872	8537105020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8	A
9873	8537105090	기타	8	A
9874	8537203000	배전용의 것	8	A
9875	8537204000	전기제어용의 것	8	A
9876	8538100000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7호의 물품용으로 한정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0	A
9877	8538901000	개폐기의 것	8	A
9878	8538902000	자동차단기의 것	8	A
9879	8538903000	계전기의 것	8	A
9880	8538905000	전기제어용의 것	8	A
9881	8538909000	기타	8	A
9882	8539100000	실드빔 램프 유닛(sealed beam lamp unit)	8	A
9883	8539210000	텅스텐 할로겐의 것	8	A
9884	8539221000	백열램프	8	A
9885	8539223000	빔 램프	8	A
9886	8539229000	기타	8	A
9887	8539290000	기타	8	A
9888	8539310000	형광램프(열음극형으로 한정한다)	8	A

9889	8539321000	수은램프	8	A
9890	8539322000	나트륨 증기 램프	8	A
9891	8539323000	메탈 할라이드(metal halide)램프	8	A
9892	8539391010	평판디스플레이의 후면광원(backlighting)용	0	A
9893	8539391090	기타	8	A
9894	8539399000	기타	8	A
9895	8539410000	아크램프	8	A
9896	8539491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3	A
9897	8539491090	기타	8	A
9898	8539492000	적외선 램프	8	A
9899	853951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모듈	8	A
9900	853952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	8	A
9901	853990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8	A
9902	8539902000	방전램프의 것	8	A
9903	8539909000	기타	8	A
9904	8540110000	천연색	8	A
9905	8540120000	단색	8	A
9906	8540200000	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영상변환관, 영상증강관(image intensifier), 그 밖의 광전관(photo-cathode tube)	8	A
9907	854040000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단색),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천연색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A
9908	8540601000	천연색	8	A
9909	8540609000	기타	8	A
9910	8540710000	자전관(magnetron)	8	A
9911	8540791000	속도변조관(klystron)	8	A
9912	8540799000	기타	8	A
9913	8540810000	수신관이나 증폭관	8	A
9914	8540891000	송신기용 열전자관	8	A
9915	8540892000	방전관	8	A
9916	8540899000	기타	8	A
9917	8540910000	음극선관의 것	8	A
9918	8540990000	기타	8	A
9919	85411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A
9920	8541109000	기타	0	A
9921	854121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A
9922	8541219000	기타	0	A
9923	854129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A
9924	8541299000	기타	0	A
9925	85413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A
9926	8541302000	사이리스터(thyristor)	0	A
9927	8541303000	다이액(diac)	0	A
9928	8541304000	트라이액(triac)	0	A
9929	8541411000	레이저소자	0	A
9930	8541419000	기타	0	A
9931	8541420000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된 것은 제외한다)	0	A
9932	8541430000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A
9933	854149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A
9934	8541492000	광전도 셀	0	A
9935	8541493000	전하결합소자	0	A

9936	8541499000	기타	0	A
9937	8541511000	센서	5	A
9938	8541512000	액추에이터	5	A
9939	8541513000	공진기	5	A
9940	8541514000	오실레이터	5	A
9941	854159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A
9942	8541599000	기타	0	A
9943	8541601000	수정진동자	0	A
9944	8541609000	기타	0	A
9945	8541902000	다이오드의 것	0	A
9946	8541903000	트랜지스터의 것	0	A
9947	8541909000	기타	0	A
9948	85423110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0	A
9949	854231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A
9950	854231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A
9951	8542314000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0	A
9952	8542321010	디램	0	A
9953	8542321020	에스램	0	A
9954	8542321030	플래시 메모리	0	A
9955	8542321090	기타	0	A
9956	854232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A
9957	854232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A
9958	8542324000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0	A
9959	85423310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0	A
9960	854233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A
9961	854233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A
9962	8542334000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0	A
9963	85423910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0	A
9964	854239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A
9965	854239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A
9966	8542394000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0	A
9967	8542900000	부분품	0	A
9968	8543100000	입자가속기	8	A
9969	8543200000	신호발생기	0	A
9970	8543301000	인쇄회로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전기영동용은 제외한다)	0	A
9971	8543309000	기타	8	A
9972	8543401000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제2404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 것	8	A
9973	8543409000	기타	8	A
9974	8543701000	일렉트릭 펜스 에너자이저	8	A
9975	8543702010	이온정수기	8	A
9976	8543702020	미용기기	8	A
9977	8543702030	오디오믹서	8	A
9978	8543702040	이퀄라이저	8	A
9979	8543702050	오존 발생기	8	A
9980	8543702090	기타	8	A
9981	8543703000	전자번역기・전자사전	0	A
9982	8543705000	유선전신용・유선전화용 기기 또는 유선전신용・유선전화용 통신망 연결용 제품	0	A
9983	8543709010	고주파증폭기	8	A

9984	8543709020	디텍터(소호 제8541.51호의 것을 제외한다)	8	A
9985	8543709040	비디오게임 콘솔용 무선 적외선 원격조절장치	0	A
9986	8543709050	디지털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	0	A
9987	8543709060	휴대용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자 리더기(문자, 정지화상 또는 음성파일의 기록 및 재생용으로 한정한다)	0	A
9988	8543709070	디지털신호처리기(사운드 믹싱을 위해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 연결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9989	8543709090	기타	8	A
9990	8543901000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0	A
9991	8543909000	기타	0	A
9992	8544111000	절연도료 피복전선	8	A
9993	8544119000	기타	8	A
9994	8544190000	기타	8	A
9995	8544200000	동축케이블과 그 밖의 동축 도체	8	A
9996	854430000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8	A
9997	8544421010	전기통신용	0	A
9998	8544421090	기타	8	A
9999	8544422010	전기통신용	0	A
10000	8544422090	기타	8	A
10001	8544429010	전기통신용	0	A
10002	8544429090	기타	8	A
10003	8544491011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0	A
10004	8544491012	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	8	A
10005	8544491090	기타	8	A
10006	8544492011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0	A
10007	8544492012	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	8	A
10008	8544492090	기타	8	A
10009	8544499011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0	A
10010	8544499012	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	8	A
10011	8544499090	기타	8	A
10012	8544601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8	A
10013	8544601090	기타	8	A
10014	8544602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8	A
10015	8544602090	기타	8	A
10016	8544603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8	A
10017	8544603090	기타	8	A
10018	8544700000	광섬유 케이블	0	A
10019	8545110000	노(爐)용	5	A
10020	8545190000	기타	5	A
10021	8545200000	브러시	8	A
10022	8545901000	탄소봉	8	A
10023	8545902000	탄소난방필름	8	A
10024	8545909000	기타	8	A
10025	8546100000	유리로 만든 것	8	A
10026	8546200000	도자제의 것	8	A
10027	85469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애자	8	A
10028	8546909000	기타	8	A
10029	8547100000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8	A
10030	85472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8	A
10031	8547900000	기타	8	A

10032	8548001000	전자 초소형 조립회로	0	A
10033	8548009000	기타	8	A
10034	8549110000	연산(鉛酸)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연산 축전지	6.5	A
10035	8549121000	납을 함유한 것	0	A
10036	8549122000	카드뮴을 함유한 것	3	A
10037	8549123000	수은을 함유한 것	8	A
10038	8549130000	화학적 유형에 따라 선별된 것(납·카드뮴·수은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A
10039	8549141000	철강·구리·니켈·아연을 함유한 것	0	A
10040	8549142000	망간을 함유한 것	3	A
10041	8549149000	기타	8	A
10042	8549190000	기타	8	A
10043	8549211000	철강·구리·니켈·납·아연을 함유한 것	0	A
10044	8549212000	유리·카드뮴·망간을 함유한 것	3	A
10045	8549219000	기타	3	A
10046	8549291000	철강·구리·니켈·납·아연을 함유한 것	0	A
10047	8549292000	유리·카드뮴·망간을 함유한 것	3	A
10048	8549299000	기타	3	A
10049	8549311000	철강·구리·니켈·납·아연을 함유한 것	0	A
10050	8549312000	유리·카드뮴·망간을 함유한 것	3	A
10051	8549319000	기타	8	A
10052	8549391000	철강·구리·니켈·납·아연을 함유한 것	0	A
10053	8549392000	유리·카드뮴·망간을 함유한 것	3	A
10054	8549399000	기타	8	A
10055	8549911000	철강·구리·니켈·납·아연을 함유한 것	0	A
10056	8549912000	유리·카드뮴·망간을 함유한 것	3	A
10057	8549919000	기타	8	A
10058	8549991000	철강·구리·니켈·납·아연을 함유한 것	0	A
10059	8549992000	유리·카드뮴·망간을 함유한 것	3	A
10060	8549999000	기타	8	A
10061	8601100000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5	A
10062	8601200000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5	A
10063	8602100000	디젤 전기기관차	0	A
10064	8602900000	기타	0	A
10065	8603101000	객차	5	A
10066	8603102000	화차	5	A
10067	8603901000	객차	5	A
10068	8603902000	화차	5	A
10069	8604004000	궤도검사차	5	A
10070	8604009000	기타	5	A
10071	8605001000	객차	5	A
10072	8605002000	수하물차	5	A
10073	8605009000	기타	5	A
10074	8606100000	탱크차와 이와 유사한 차	0	A
10075	8606300000	자기양하식(self-discharging) 화차(소호 제8606.10호의 것은 제외한다)	0	A
10076	8606910000	덮개가 있는 것으로서 밀폐되어 있는 것	0	A
10077	8606920000	덮개가 없는 것으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A
10078	8606990000	기타	0	A
10079	8607110000	구동식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5	A

10080	8607120000	그 밖의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5	A
10081	8607191000	차축	5	A
10082	8607192000	차륜	5	A
10083	8607193000	윤축(輪軸)	5	A
10084	8607199000	기타	5	A
10085	8607210000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5	A
10086	8607290000	기타	5	B
10087	8607301000	훅	5	A
10088	8607302000	연결장치	5	A
10089	8607303000	완충장치	5	A
10090	8607309000	기타	5	A
10091	8607910000	기관차용	5	A
10092	8607990000	기타	5	A
10093	8608001000	철도·궤도선로용 장치물	8	A
10094	8608002000	기계식의 신호·안전·교통 관제용 기기	8	A
10095	8608009000	부분품	8	A
10096	8609001000	액체 운반용	0	A
10097	8609002000	압축가스 운반용	0	A
10098	8609003000	일반화물 운반용	0	A
10099	8609004000	살아있는 동물 운반용	0	A
10100	8609005000	냉동용과 냉장용	0	A
10101	8609009000	기타	0	A
10102	8701100000	차축이 하나인 트랙터	8	A
10103	8701211000	신차	8	A
10104	8701212000	중고차	8	A
10105	8701221000	신차	8	A
10106	8701222000	중고차	8	A
10107	8701231000	신차	8	A
10108	8701232000	중고차	8	A
10109	8701241000	신차	8	A
10110	8701242000	중고차	8	A
10111	8701291000	신차	8	A
10112	8701292000	중고차	8	A
10113	8701300000	무한궤도식 트랙터	0	A
10114	8701911010	신차	8	A
10115	8701911020	중고차	8	A
10116	8701912000	농업용 트랙터	0	A
10117	8701919000	기타	8	A
10118	8701921010	신차	8	A
10119	8701921020	중고차	8	A
10120	8701922000	농업용 트랙터	0	A
10121	8701929000	기타	8	A
10122	8701931010	신차	8	A
10123	8701931020	중고차	8	A
10124	8701932000	농업용 트랙터	0	A
10125	8701939000	기타	8	A
10126	8701941010	신차	8	A
10127	8701941020	중고차	8	A
10128	8701942000	농업용 트랙터	0	A
10129	8701949000	기타	8	A
10130	8701951010	신차	8	A

10131	8701951020	중고차	8	A
10132	8701952000	농업용 트랙터	0	A
10133	8701959000	기타	8	A
10134	8702101010	신차	10	A
10135	8702101020	중고차	10	A
10136	8702102010	신차	10	A
10137	8702102020	중고차	10	A
10138	8702103010	신차	10	A
10139	8702103020	중고차	10	A
10140	8702201000	신차	10	A
10141	8702202000	중고차	10	A
10142	8702301000	신차	10	A
10143	8702302000	중고차	10	A
10144	8702401000	신차	10	A
10145	8702402000	중고차	10	A
10146	8702901010	신차	10	A
10147	8702901020	중고차	10	A
10148	8702902010	신차	10	A
10149	8702902020	중고차	10	A
10150	8702903010	신차	10	A
10151	8702903020	중고차	10	A
10152	8703101000	설상주행용	8	A
10153	8703102000	골프용차	8	A
10154	8703109000	기타	8	A
10155	8703217000	신차	8	A
10156	8703218000	중고차	8	A
10157	8703227000	신차	8	A
10158	8703228000	중고차	8	A
10159	8703231010	신차	8	A
10160	8703231020	중고차	8	A
10161	8703239010	신차	8	A
10162	8703239020	중고차	8	A
10163	8703241010	신차	8	A
10164	8703241020	중고차	8	A
10165	8703249010	신차	8	A
10166	8703249020	중고차	8	A
10167	8703317000	신차	8	A
10168	8703318000	중고차	8	A
10169	8703321010	신차	8	A
10170	8703321020	중고차	8	A
10171	8703329010	신차	8	A
10172	8703329020	중고차	8	A
10173	8703337000	신차	8	A
10174	8703338000	중고차	8	A
10175	8703401000	신차	8	A
10176	8703402000	중고차	8	A
10177	8703501000	신차	8	A
10178	8703502000	중고차	8	A
10179	8703601000	신차	8	A
10180	8703602000	중고차	8	A
10181	8703701000	신차	8	A

10182	8703702000	중고차	8	A
10183	8703801000	신차	8	A
10184	8703802000	중고차	8	A
10185	8703900000	기타	8	A
10186	870410000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0	A
10187	8704211010	신차	10	A
10188	8704211020	중고차	10	A
10189	8704219010	냉동차·냉장차	10	A
10190	8704219020	탱크차	10	A
10191	8704219090	기타	10	A
10192	8704221011	신차	10	A
10193	8704221012	중고차	10	A
10194	8704221091	신차	10	A
10195	8704221092	중고차	10	A
10196	8704229010	냉동차·냉장차	10	A
10197	8704229020	탱크차	10	A
10198	8704229090	기타	10	A
10199	8704231010	신차	10	A
10200	8704231020	중고차	10	A
10201	8704239010	냉동차·냉장차	10	A
10202	8704239020	탱크차	10	A
10203	8704239090	기타	10	A
10204	8704311010	신차	10	A
10205	8704311020	중고차	10	A
10206	8704319010	냉동차·냉장차	10	A
10207	8704319020	탱크차	10	A
10208	8704319090	기타	10	A
10209	8704321010	신차	10	A
10210	8704321020	중고차	10	A
10211	8704329010	냉동차·냉장차	10	A
10212	8704329020	탱크차	10	A
10213	8704329090	기타	10	A
10214	8704411010	신차	10	A
10215	8704411020	중고차	10	A
10216	8704419010	냉동차·냉장차	10	A
10217	8704419020	탱크차	10	A
10218	8704419090	기타	10	A
10219	8704421010	신차	10	A
10220	8704421020	중고차	10	A
10221	8704429010	냉동차·냉장차	10	A
10222	8704429020	탱크차	10	A
10223	8704429090	기타	10	A
10224	8704431010	신차	10	A
10225	8704431020	중고차	10	A
10226	8704439010	냉동차·냉장차	10	A
10227	8704439020	탱크차	10	A
10228	8704439090	기타	10	A
10229	8704511010	신차	10	A
10230	8704511020	중고차	10	A
10231	8704519010	냉동차·냉장차	10	A
10232	8704519020	탱크차	10	A

10233	8704519090	기타	10	A
10234	8704521010	신차	10	A
10235	8704521020	중고차	10	A
10236	8704529010	냉동차·냉장차	10	A
10237	8704529020	탱크차	10	A
10238	8704529090	기타	10	A
10239	8704601010	신차	10	A
10240	8704601020	중고차	10	A
10241	8704609010	냉동차·냉장차	10	A
10242	8704609020	탱크차	10	A
10243	8704609090	기타	10	A
10244	8704901010	신차	10	A
10245	8704901020	중고차	10	A
10246	8704909010	냉동차·냉장차	10	A
10247	8704909020	탱크차	10	A
10248	8704909090	기타	10	A
10249	8705101000	신축붐식	8	A
10250	8705102000	앵글식	8	A
10251	8705109000	기타	8	A
10252	8705200000	이동식 시추용 데릭(derrick)차	8	A
10253	8705300000	소방차	8	A
10254	870540000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8	A
10255	8705901010	농업용 살포차	8	A
10256	8705901090	기타	8	A
10257	8705909010	구난차	8	A
10258	8705909020	도로청소차	8	A
10259	8705909030	이동공작차	8	A
10260	8705909040	이동방송차	8	A
10261	8705909050	이동진료차	8	A
10262	8705909060	이동통신차와 레이더차	8	A
10263	8705909070	제설차	8	A
10264	8705909090	기타	8	A
10265	8706001000	제8701호의 것	8	A
10266	8706002000	제8702호의 것	8	A
10267	8706003000	제8703호의 것	8	A
10268	8706004000	제8704호의 것	8	A
10269	8706005000	제8705호의 것	8	A
10270	8707100000	제8703호의 차량용	8	A
10271	8707901000	제8701호의 것	8	A
10272	8707902000	제8702호의 것	8	A
10273	8707903000	제8704호의 것	8	A
10274	8707904000	제8705호의 것	8	A
10275	8708100000	완충기와 그 부분품	8	A
10276	8708210000	안전벨트	8	A
10277	8708220000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서 규정한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쉴드), 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	8	A
10278	8708290000	기타	8	A
10279	8708301000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8	A
10280	8708302000	브레이크 부스터	8	A
10281	8708303000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	8	A
10282	8708309000	기타	8	A

10283	870840000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8	A
10284	870850100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부분품	8	B
10285	8708502000	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8	A
10286	870870000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부속품	8	A
10287	8708800000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8	A
10288	8708910000	방열기와 그 부분품	8	A
10289	8708920000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	8	A
10290	8708930000	클러치와 그 부분품	8	A
10291	8708940000	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8	A
10292	8708951000	에어백	8	A
10293	8708959000	기타	8	A
10294	8708991010	제8701호의 것	8	A
10295	8708991020	제8702호의 것	8	A
10296	8708991030	제8703호의 것	8	A
10297	8708991040	제8704호의 것	8	A
10298	8708991050	제8705호의 것	8	A
10299	8708999000	기타	8	A
10300	8709110000	전기식의 것	8	A
10301	8709190000	기타	8	A
10302	8709900000	부분품	8	A
10303	8710001000	전차	0	A
10304	8710002000	그 밖의 장갑차량	0	A
10305	8710009000	부분품	0	A
10306	8711101000	모터사이클	8	A
10307	8711102000	모페드	8	A
10308	8711109000	기타	8	A
10309	8711201000	모터사이클	8	A
10310	8711209000	기타	8	A
10311	8711301000	모터사이클	8	A
10312	8711309000	기타	8	A
10313	8711401000	모터사이클	8	A
10314	8711409000	기타	8	A
10315	8711501000	모터사이클	8	A
10316	8711509000	기타	8	A
10317	8711601000	모터사이클	8	A
10318	8711609000	기타	8	A
10319	8711901000	모터사이클	8	A
10320	8711909000	기타	8	A
10321	8712001000	경기용	8	A
10322	8712009020	삼륜자전거	8	A
10323	8712009090	기타	8	A
10324	871310000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0	A
10325	8713900000	기타	0	A
10326	8714101000	안장	8	A
10327	8714109000	기타	8	A
10328	8714200000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것	0	A
10329	8714911000	프레임	8	A
10330	8714912000	포크	8	A

10331	8714919000	이들의 부분품	8	A
10332	8714921000	휠 림	8	A
10333	8714922000	스포크	8	A
10334	8714931000	허브[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는 제외한다]	8	A
10335	8714932000	프리휠(free-wheel) 스프로켓 휠(sprocket-wheel)	8	A
10336	8714941000	브레이크	8	A
10337	8714949000	이들의 부분품	8	A
10338	8714950000	안장	8	A
10339	8714961000	페달	8	A
10340	8714962000	크랭크 기어(crankgear)	8	A
10341	8714969000	이들의 부분품	8	A
10342	8714990000	기타	8	A
10343	87150000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5	A
10344	87161000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과 캠핑용으로 한정한다)	8	A
10345	8716200000	농업용 자동적재식이나 자동양하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	A
10346	8716310000	탱커 트레일러(tanker trailer)와 탱커 세미트레일러(tanker semi-trailer)	8	A
10347	8716390000	기타	8	A
10348	8716400000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	A
10349	8716801000	손수레	8	A
10350	8716802000	우마차	8	A
10351	8716803000	썰매	8	A
10352	8716809000	기타	8	A
10353	87169010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의 것	8	A
10354	8716909000	기타	8	A
10355	8801001000	글라이더와 행글라이더	0	A
10356	8801009010	기구와 비행선	8	A
10357	8801009090	기타	0	A
10358	8802111000	군용	0	A
10359	8802119000	기타	0	A
10360	8802121000	군용	0	A
10361	8802129000	기타	0	A
10362	8802201000	프로펠러식	0	A
10363	8802202000	터보프로펠러식	0	A
10364	8802203000	터보제트식	0	A
10365	8802209000	기타	0	A
10366	8802301000	프로펠러식	0	A
10367	8802302000	터보프로펠러식	0	A
10368	8802303000	터보제트식	0	A
10369	8802309000	기타	0	A
10370	8802401000	프로펠러식	0	A
10371	8802402000	터보프로펠러식	0	A
10372	8802403000	터보제트식	0	A
10373	8802409000	기타	0	A
10374	8802601010	인공위성	0	A
10375	8802601090	기타	0	A
10376	8802602000	우주선 발사체	0	A
10377	8802603000	서보비틀(suborbital) 발사체	0	A
10378	88040010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	0	A

10379	8804002000	로토슈트(rotochute)	0	A
10380	880400901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의 것	0	A
10381	8804009020	로토슈트(rotochute)의 것	0	A
10382	8805101010	군용・경찰용	0	A
10383	8805101090	기타	5	A
10384	8805102010	군용・경찰용	0	A
10385	8805102090	기타	5	A
10386	8805109010	군용・경찰용	0	A
10387	8805109090	기타	5	A
10388	8805211000	모의공중전장치	0	A
10389	8805212000	부분품	0	A
10390	8805291010	군용・경찰용	0	A
10391	8805291090	기타	0	A
10392	8805292000	부분품	0	A
10393	8806100000	승객 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	0	A
10394	8806210000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0	A
10395	8806220000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것	0	A
10396	8806230000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0	A
10397	8806240000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킬로그램 이하인 것	0	A
10398	8806290000	기타	0	A
10399	8806910000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0	A
10400	8806920000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것	0	A
10401	8806930000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0	A
10402	8806940000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킬로그램 이하인 것	0	A
10403	8806990000	기타	0	A
10404	8807100000	프로펠러・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	0	A
10405	8807200000	이착륙장치와 그 부분품	0	A
10406	8807301000	비행기의 부분품	0	A
10407	8807302000	헬리콥터의 부분품	0	A
10408	8807303000	무인기의 부분품	0	A
10409	8807901000	글라이더나 행글라이더의 것	0	A
10410	8807902000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의 것	0	A
10411	8807909000	기타	0	A
10412	8901100000	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각종 페리보트(ferry-boat)	0	A
10413	8901200000	탱커(tanker)	0	A
10414	8901300000	냉동선(소호 제890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0	A
10415	8901901000	화물선	0	A
10416	8901902000	화객선	0	A
10417	8902001010	철강선	0	A
10418	8902001020	에프알피(FRP)선	0	A
10419	8902001030	목조선	0	A
10420	8902001090	기타	0	A
10421	8902002010	어획물의 가공선・저장선	0	A
10422	8902002090	기타	0	A

10423	8903110000	모터가 결합되었거나 결합되도록 설계된 것[짐을 싣지 않은 순중량(모터를 제외한다)이 10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A
10424	8903120000	모터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것[짐을 싣지 않은 순중량이 10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A
10425	8903190000	기타	8	A
10426	8903210000	길이가 7.5미터 이하인 것	8	A
10427	8903220000	길이가 7.5미터를 초과하고 24미터 이하인 것	8	A
10428	8903230000	길이가 24미터를 초과하는 것	8	A
10429	8903310000	길이가 7.5미터 이하인 것	8	A
10430	8903320000	길이가 7.5미터를 초과하고 24미터 이하인 것	8	A
10431	8903330000	길이가 24미터를 초과하는 것	8	A
10432	8903931000	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	8	A
10433	8903939000	기타	8	A
10434	8903991000	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	8	A
10435	8903999000	기타	8	A
10436	8904001000	예인선	5	A
10437	8904002000	푸셔크라프트(pusher craft)	5	A
10438	8904009000	기타	5	A
10439	8905100000	준설선	5	A
10440	8905201000	시추대	5	A
10441	8905202000	작업대	5	A
10442	8905209000	기타	5	A
10443	8905901000	조명선	5	A
10444	8905902000	소방선	5	A
10445	8905903000	기중기선	5	A
10446	8905905000	해난구조선	5	A
10447	8905907000	시추선	5	A
10448	8905908000	부선거(艀船渠)	5	A
10449	8905909000	기타	5	A
10450	8906100000	군함	0	A
10451	8906900000	기타	0	A
10452	8907100000	공기주입식 부교	5	A
10453	8907901000	부교(소호 제8907.10호의 것은 제외한다)	5	A
10454	8907902000	탱크	5	A
10455	8907903000	코퍼댐(coffer-dam)	5	A
10456	8907904000	부잔교(landing stage)	5	A
10457	8907905000	부표	5	A
10458	8907906000	수로부표	5	A
10459	8907909000	기타	5	A
10460	8908001000	해체용 선박	0	A
10461	8908009000	기타	0	A
10462	9001100000	광섬유 · 광섬유 다발과 광섬유 케이블	8	A
10463	9001200000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0	A
10464	9001300000	콘택트렌즈	8	A
10465	9001400000	유리로 만든 안경렌즈	8	A
10466	9001501000	시력 교정용	8	A
10467	9001509000	기타	8	A
10468	9001901000	프리즘	0	A
10469	9001902000	반사경	0	A
10470	9001903000	그 밖의 렌즈	0	A

10471	9001909000	기타	0	A
10472	9002111000	사진기용	8	A
10473	9002119010	촬영기・비디오카메라용	8	A
10474	9002119020	영사기용	8	A
10475	9002119090	기타	8	A
10476	9002191000	현미경용	0	A
10477	9002199000	기타	0	A
10478	9002201000	사진기용	0	A
10479	9002209000	기타	0	A
10480	9002901000	사진기용	0	A
10481	9002909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0	A
10482	9002909090	기타	0	A
10483	900311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A
10484	9003191000	귀금속을 사용한 것	8	A
10485	9003199000	기타	8	A
10486	9003900000	부분품	8	A
10487	9004101000	귀금속을 사용한 것	8	A
10488	9004109000	기타	8	A
10489	9004901000	시력교정용 안경	8	A
10490	9004902000	3D 입체영상용 안경(능동방식인지 수동방식인지에 상관없다)	8	A
10491	9004909000	기타	8	A
10492	9005100000	쌍안경	8	A
10493	9005800000	그 밖의 기기	8	A
10494	9005900000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8	A
10495	9006300000	수중촬영용・공중측량용・장기(臟器)의 내과나 외과 검사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사진기와 법정비교용 사진기	8	A
10496	9006400000	즉석인화 사진기	8	A
10497	9006531000	특수용도 사진기	8	A
10498	9006539010	일회용사진기	8	A
10499	9006539090	기타	8	A
10500	9006591000	특수용도 사진기	8	A
10501	9006599000	기타	8	A
10502	9006610000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8	A
10503	9006690000	기타	8	A
10504	9006910000	카메라용	8	A
10505	9006990000	기타	8	A
10506	9007100000	촬영기	8	A
10507	9007200000	영사기	8	A
10508	9007910000	촬영기용	8	A
10509	9007920000	영사기용	8	A
10510	9008500000	투영기・확대기와 축소기	8	A
10511	9008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8	A
10512	9010101000	인쇄 제판용	8	A
10513	9010109010	반도체 제조용	0	A
10514	9010109090	기타	8	A
10515	9010501000	반도체 제조용 현상기	0	A
10516	9010509000	기타	0	A
10517	9010600000	영사용 스크린	0	A
10518	9010901010	제9010.50-1000호의 것	0	A
10519	9010901090	기타	0	A

10520	9010902000	소호 제9010.50호 및 제9010.60호의 것(반도체 제조용은 제외한다)	0	A
10521	9010909000	기타	8	A
10522	9011101000	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	0	A
10523	9011109000	기타	0	A
10524	9011201010	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	0	A
10525	9011201090	기타	8	A
10526	9011209000	기타	8	A
10527	9011802000	금속 현미경	0	A
10528	9011804000	생물 현미경	0	A
10529	9011809000	기타	0	A
10530	9011901000	제9011.10-1000호, 제9011.20-1010호의 것	0	A
10531	9011909000	기타	0	A
10532	9012101010	일렉트론 빔 현미경(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0	A
10533	9012101090	기타	0	A
10534	9012102000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0	A
10535	9012901000	제9012.10-1010호의 것	0	A
10536	9012909000	기타	0	A
10537	9013101000	이 류나 제16부의 기기 부분품용 망원경	0	A
10538	9013109000	기타	8	A
10539	901320000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0	A
10540	9013802000	확대경, 루페, 섬유 카운터	8	A
10541	9013803000	도어아이	8	A
10542	9013809000	기타	5	A
10543	9013902000	무기용 망원 조준기 또는 잠망경의 것	8	A
10544	9013909000	기타	0	A
10545	9014101010	항공기용	0	A
10546	9014101090	기타	0	A
10547	9014102010	항공기용	0	A
10548	9014102090	기타	0	A
10549	9014109000	기타	0	A
10550	9014200000	항공용이나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	0	A
10551	9014800000	그 밖의 항행용 기기	0	A
10552	9014901000	항공기용	0	A
10553	9014909000	기타	0	A
10554	9015100000	거리측정기	0	A
10555	9015200000	경위의(經緯儀)와 시거의(視距儀)	0	A
10556	9015300000	수준기(水準器)	8	A
10557	9015400000	사진측량기기	0	A
10558	9015801000	토지 측량용	0	A
10559	9015802000	수로 측량용	0	A
10560	9015803000	해양 측량용	0	A
10561	9015804000	수리 계측용	0	A
10562	9015805000	기상 관측용	0	A
10563	9015809000	기타	0	A
10564	9015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0	A
10565	9016001000	직시식	8	A
10566	9016002000	전자식	8	A

10567	9016008000	기타	8	A
10568	901600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A
10569	9017101000	플로터	0	A
10570	9017109000	기타	8	A
10571	9017201010	플로터	0	A
10572	9017201090	기타	8	A
10573	9017202010	플로터	0	A
10574	9017202090	기타	8	A
10575	9017203000	계산용구	8	A
10576	9017209000	기타	8	A
10577	9017301000	마이크로미터	8	A
10578	9017302000	다이알 게이지류	8	A
10579	9017303000	버니어 캘리퍼스(vernier callipers)	8	A
10580	9017309000	기타	8	A
10581	9017801000	눈금이 든 곧은 자와 줄자	8	A
10582	9017809010	반도체 제조용	0	A
10583	9017809090	기타	8	A
10584	9017901000	반도체 제조용	0	A
10585	9017909010	플로터용 인쇄회로조립품(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A
10586	9017909090	기타	8	A
10587	9018111000	심전계	0	A
10588	901811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A
10589	9018121000	초음파 영상진단기	0	A
10590	901812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A
10591	9018131000	자기공명 촬영기기	0	A
10592	901813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A
10593	9018140000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8	A
10594	9018191000	뇌파계	0	A
10595	9018192000	청력검사용 기구	0	B
10596	9018194000	혈압 측정기기	0	A
10597	9018197000	환자 감시장치	0	A
10598	9018198000	기타	0	A
10599	901819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A
10600	9018201000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0	A
10601	90182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A
10602	9018310000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8	A
10603	9018321000	주사침	8	A
10604	9018322000	봉합침	8	A
10605	9018329000	기타	8	A
10606	9018391000	수혈세트와 수액세트	8	A
10607	9018392000	카테터(catheter)	8	A
10608	9018398000	기타	8	A
10609	901839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A
10610	9018411000	치과용 드릴 엔진	8	A
10611	901841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A
10612	9018491000	치과용 버(bur)	8	B
10613	9018492000	치과용 유닛	8	A
10614	9018493000	치석 제거기	8	A
10615	9018498000	기타	8	A
10616	901849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A

10617	9018501010	레이저 작동식 기기	0	A
10618	9018501090	기타	0	A
10619	90185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A
10620	9018901000	임신진단기	8	A
10621	9018902010	레이저 작동식 기기	8	A
10622	9018902090	기타	8	A
10623	9018903000	산부인과용 기기	8	A
10624	9018904000	내시경(위내시경, 복막경, 방광경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8	A
10625	9018905000	인공신장기(인공신장기용 투석기를 포함한다)	8	A
10626	9018906000	경피전기신경자극기	0	A
10627	9018907000	수의과용 기기	8	B
10628	9018908110	레이저 작동식 기기	8	A
10629	9018908190	기타	8	A
10630	9018908900	기타	8	A
10631	901890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A
10632	9019101000	기계요법용 기기	0	A
10633	9019102000	마사지용 기기	0	A
10634	9019103000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0	A
10635	90191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A
10636	9019202000	산소 흡입기	0	A
10637	9019203000	에어로졸 치료기	0	A
10638	9019204000	인공호흡기	0	A
10639	9019208000	기타	0	A
10640	90192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A
10641	9020001000	가스마스크	8	A
10642	9020008000	그 밖의 호흡용 기기	8	A
10643	902000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A
10644	9021100000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	0	A
10645	9021210000	의치	0	A
10646	9021290000	기타	0	A
10647	9021310000	인공관절	0	A
10648	9021390000	기타	0	A
10649	9021400000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0	A
10650	9021500000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0	A
10651	9021901000	스크루·스테이플·핀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체에 삽입되는 것	0	A
10652	9021908000	기타	0	A
10653	90219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A
10654	9022120000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0	A
10655	9022130000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0	A
10656	9022141020	혈관조영 촬영장치	0	A
10657	9022141030	뼈(골)밀도측정기	0	A
10658	9022141090	기타	0	A
10659	9022142000	수의과용	0	A
10660	9022191000	물리·화학시험용	0	A
10661	9022192000	공업용	0	A
10662	9022199000	기타	0	A
10663	9022211020	선형 가속치료 장치	0	A
10664	9022211030	코발트 60 치료기	0	A
10665	9022211090	기타	0	A

10666	9022212000	수의과용	0	A
10667	9022291000	물리・화학시험용	0	A
10668	9022292000	공업용	0	A
10669	9022299000	기타	0	A
10670	9022300000	엑스선관	0	A
10671	9022901010	엑스선 발생기	8	A
10672	9022901020	엑스선의 스크린	8	A
10673	9022901030	엑스선용 고압발생기	8	A
10674	9022901090	기타	8	A
10675	9022909010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의 것	0	A
10676	9022909090	기타	8	A
10677	9023001000	인체나 동물의 해부 전시모형	0	A
10678	9023009000	기타	0	A
10679	9024101000	경도시험기	0	A
10680	9024102000	항장력(인장)시험기	0	A
10681	9024104000	피로시험기	0	A
10682	9024105000	만능시험기	0	A
10683	9024106000	인쇄회로기판, 반도체 디바이스 및 전자집적회로의 볼이나 와이어의 접착력・전단력 측정을 위한 기기	0	A
10684	9024109000	기타	0	A
10685	9024801020	마모시험기	0	A
10686	9024801090	기타	0	A
10687	9024809010	탄성시험기	0	A
10688	9024809090	기타	0	A
10689	9024901000	센서(특정의 변화량을 감지하는 소자로서 감지된 신호를 전기적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0	A
10690	9024909000	기타	0	A
10691	9025111000	의료용・수의과용 온도계	0	A
10692	9025119000	기타	8	A
10693	9025191000	온도계	0	A
10694	9025192010	광학식 고온계	0	A
10695	9025192090	기타	0	A
10696	9025801000	액체 비중계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	8	A
10697	9025802000	기압계(다른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A
10698	9025803000	습도계	8	A
10699	9025809000	기타	8	A
10700	9025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0	A
10701	9026101000	유량의 측정・검사용	0	A
10702	9026102000	액면의 측정・검사용	0	A
10703	9026202000	액체형 압력계	0	A
10704	9026203000	금속형 압력계	0	A
10705	9026204000	전기식 압력계	0	A
10706	9026209000	기타	0	A
10707	9026801000	열측정계	0	A
10708	9026802000	풍력계	0	A
10709	9026809000	기타	0	A
10710	9026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0	A
10711	9027100000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0	A
10712	902720000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0	A
10713	9027303000	분광사진기	0	A
10714	9027304000	분광계・분광광도계	0	A

10715	9027501000	편광계	0	A
10716	9027502000	굴절계	0	A
10717	9027503000	비색계	0	A
10718	9027504000	조도계	0	A
10719	9027509000	기타	0	A
10720	9027810000	질량분석기	0	A
10721	9027891000	그 밖의 물리분석용・화학분석용 기기	0	A
10722	9027892010	피・에이치(pH) 미터	0	A
10723	9027892020	열량계	0	A
10724	9027892030	점도계	0	A
10725	9027892090	기타	0	A
10726	9027901000	마이크로톰(microtome)	0	A
10727	9027909010	반도체 제조용	0	A
10728	9027909091	가스・매연분석기기와 마이크로톰(microtome)의 것	0	A
10729	9027909099	기타	0	A
10730	9028101010	디지털식	8	A
10731	9028101090	기타	8	A
10732	9028102000	검정용 계기	8	A
10733	9028201010	디지털식	8	A
10734	9028201090	기타	8	A
10735	9028202000	검정용 계기	8	A
10736	9028301010	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것	1.1	A
10737	9028301020	전류가 50암페어 미만인 것	1.1	A
10738	9028302000	검정용 계기	1.1	A
10739	9028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1.1	A
10740	9029101000	적산(積算)회전계	8	A
10741	9029102000	생산량계	8	A
10742	9029109000	기타	8	A
10743	9029201010	시계식	8	A
10744	9029201090	기타	8	A
10745	9029202000	스트로보스코우프(stroboscope)	8	A
10746	9029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8	A
10747	9030100000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0	A
10748	9030200000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와 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	0	A
10749	9030310000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0	A
10750	9030320000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0	A
10751	9030331000	전압계	0	A
10752	9030332000	전류계	0	A
10753	9030333000	회로계	0	A
10754	9030334000	저항계	8	A
10755	9030339000	기타	8	A
10756	9030391000	전압계	0	A
10757	9030392000	전류계	0	A
10758	9030393000	회로계	0	A
10759	9030394000	저항계	0	A
10760	9030396000	주파수 측정기	0	A
10761	9030399000	기타	0	A
10762	9030400000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예: 누화계(cross-talk meter)・게인측정계(gain measuring instrument)・만곡률계(distortion factor meter)・잡음전압계(psophometer)]	0	A

10763	9030820000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집적회로를 포함한다)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0	A
10764	9030840000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A
10765	9030890000	기타	0	A
10766	9030901000	소호 제9030.82호의 것	0	A
10767	9030909000	기타	0	A
10768	9031100000	균형시험기	0	A
10769	9031200000	테스트벤치(Test bench)	8	A
10770	9031412000	반도체웨이퍼 표면의 파티클 오염상태 측정용	0	A
10771	9031419000	기타	0	A
10772	9031491000	광학식 표면 테스터	0	A
10773	9031494010	반도체 제조공정의 것	0	A
10774	9031494090	기타	0	A
10775	9031499000	기타	0	A
10776	9031801000	초음파 어군탐지기	0	A
10777	9031802000	로드셀	0	A
10778	9031809010	내연기관 특성 시험기	0	A
10779	9031809020	기어 테스터	0	A
10780	9031809060	초음파 두께 측정기	0	A
10781	9031809070	흠·균열 등 측정기	0	A
10782	9031809080	동력시험기	0	A
10783	9031809091	반도체 제조용	0	A
10784	9031809099	기타	0	A
10785	9031901010	소호 제9031.41호의 것	0	A
10786	9031901090	기타	0	A
10787	9031909000	기타	0	A
10788	9032101010	냉장고용	8	A
10789	9032101020	항공기용	5	A
10790	9032101090	기타	8	A
10791	9032102000	고정식	8	A
10792	9032200000	매노우스타트(manostat)	0	A
10793	9032811000	반도체 제조용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A
10794	9032812000	항공기용	0	A
10795	9032819000	기타	0	A
10796	9032891010	항공기용	5	A
10797	9032891090	기타	8	A
10798	9032892010	항공기용	5	A
10799	9032892090	기타	8	A
10800	9032893010	항공기용	5	A
10801	9032893090	기타	8	A
10802	9032894010	항공기용	5	A
10803	9032894091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3	A
10804	9032894099	기타	8	A
10805	9032899010	항공기용	5	A
10806	9032899090	기타	5	A
10807	9032901000	항공기용	5	A
10808	9032909000	기타	5	A
10809	9033000000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10810	91011100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8	A
10811	9101190000	기타	8	A

10812	9101210000	자동권(自動捲)식	8	A
10813	9101290000	기타	8	A
10814	9101910000	전기구동식	8	A
10815	9101990000	기타	8	A
10816	9102111000	시각장애인용	8	A
10817	910211200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A
10818	9102119010	배터리·축전지 구동식	8	A
10819	9102119090	기타	8	A
10820	9102121000	배터리·축전지 구동식	8	A
10821	9102129010	시각장애인용	8	A
10822	910212902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A
10823	9102129090	기타	8	A
10824	9102191000	배터리·축전지 구동식	8	A
10825	9102199010	시각장애인용	8	A
10826	910219902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A
10827	9102199090	기타	8	A
10828	9102211000	시각장애인용	8	A
10829	910221200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A
10830	9102219000	기타	8	A
10831	9102291000	시각장애인용	8	A
10832	910229200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A
10833	9102299000	기타	8	A
10834	9102911000	스톱워치	8	A
10835	9102912000	시각장애인용	8	A
10836	9102919010	배터리·축전지 구동식	8	A
10837	9102919090	기타	8	A
10838	9102991000	스톱워치	8	A
10839	9102992000	시각장애인용	8	A
10840	9102999000	기타	8	A
10841	9103100000	전기구동식	8	A
10842	9103900000	기타	8	A
10843	9104000000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선박용 계기반 클록(clock)과 이와 유사한 클록(clock)	8	A
10844	9105110000	전기구동식	8	A
10845	9105190000	기타	8	A
10846	9105210000	전기구동식	8	A
10847	9105290000	기타	8	A
10848	9105910000	전기구동식	8	A
10849	9105990000	기타	8	A
10850	9106100000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와 타임레코더(time-recorder)	8	A
10851	9106902000	타이머	8	A
10852	9106909000	기타	8	A
10853	9107000000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	A
10854	91081100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이나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5	A
10855	9108120000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5	A

10856	9108190000	기타	5	A
10857	9108200000	자동권(自動捲)식	5	A
10858	9108900000	기타	5	A
10859	9109100000	전기구동식	8	A
10860	9109900000	기타	8	A
10861	9110110000	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무브먼트세트)	8	A
10862	9110120000	불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8	A
10863	9110190000	러프 무브먼트(rough movement)	8	A
10864	9110900000	기타	8	A
10865	911110000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8	A
10866	91112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케이스(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A
10867	9111800000	그 밖의 케이스	8	A
10868	911190100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8	A
10869	9111909000	기타	8	A
10870	9112200000	케이스	8	A
10871	9112900000	부분품	8	A
10872	911310000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A
10873	91132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A
10874	91139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A
10875	9113902000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8	A
10876	9113909000	기타	8	A
10877	9114300000	문자판	8	A
10878	9114400000	지판과 브리지(bridge)	8	A
10879	9114900000	기타	8	A
10880	9201100000	업라이트(upright) 피아노	8	A
10881	9201200000	그랜드 피아노	8	A
10882	9201900000	기타	8	A
10883	9202101000	바이올린	8	A
10884	9202102000	첼로	8	A
10885	9202109000	기타	8	A
10886	9202901000	기타(guitar)	8	A
10887	9202902000	하프	8	A
10888	9202909000	기타	8	A
10889	9205101000	트럼펫	8	A
10890	9205109000	기타	8	A
10891	9205901010	플루트	8	A
10892	9205901020	클라리넷	8	A
10893	9205901030	색소폰	8	A
10894	9205901040	리코더(recorder)	8	A
10895	9205901090	기타	8	A
10896	9205902000	건반이 있는 파이프오르간, 하모늄과 이와 유사한 프리메탈리드식 건반악기	8	A
10897	9205903000	아코디언과 이와 유사한 악기	8	A
10898	9205904000	하모니카	8	A
10899	9205909000	기타	8	A
10900	9206001000	북	8	A
10901	9206003000	심벌	8	A

10902	9206009000	기타	8	A
10903	9207101000	오르간(신디사이저를 포함한다)	8	A
10904	9207103000	피아노	8	A
10905	9207109000	기타	8	A
10906	9207901000	기타	8	A
10907	9207902000	아코디언	8	A
10908	9207909000	기타	8	A
10909	9208100000	뮤지컬박스	8	A
10910	9208900000	기타	8	A
10911	9209301000	금속선으로 만든 것	8	A
10912	9209309000	기타	8	A
10913	9209910000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8	A
10914	9209920000	제9202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8	A
10915	9209940000	제9207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8	A
10916	9209990000	기타	8	A
10917	9301101000	자주식(自走式)	0	A
10918	9301109000	기타	0	A
10919	9301200000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과 이와 유사한 발사장치	0	A
10920	9301901000	완전자동 산탄총	0	A
10921	9301902010	노리쇠작동	0	A
10922	9301902020	반자동	0	A
10923	9301902030	완전자동	0	A
10924	9301902090	기타	0	A
10925	9301903000	기관총	0	A
10926	9301904010	완전자동 피스톨(pistol)	0	A
10927	9301904090	기타	0	A
10928	9301909000	기타	0	A
10929	9302001010	리볼버(revolver)	0	A
10930	9302001021	반자동	0	A
10931	9302001029	기타	0	A
10932	9302001030	피스톨(pistol)(다열총열)	0	A
10933	9302001090	기타	0	A
10934	9302009010	리볼버(revolver)	0	A
10935	9302009021	반자동	0	A
10936	9302009029	기타	0	A
10937	9302009030	피스톨(pistol)(다열총열)	0	A
10938	9302009090	기타	0	A
10939	9303100000	총구장전 화기	8	A
10940	9303201011	펌프작동	8	A
10941	9303201012	반자동	8	A
10942	9303201019	기타	8	A
10943	9303201020	산탄총(다열총열)(산탄총과 라이플(rifle) 기능이 결합된 것은 포함한다)	8	A
10944	9303201090	기타	8	A
10945	9303209011	펌프작동	8	A
10946	9303209012	반자동	8	A
10947	9303209019	기타	8	A
10948	9303209020	산탄총(다열총열)(산탄총과 라이플(rifle)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A
10949	9303209090	기타	8	A

10950	9303301010	단발	8	A
10951	9303301020	반자동	8	A
10952	9303301090	기타	8	A
10953	9303309010	단발	8	A
10954	9303309020	반자동	8	A
10955	9303309090	기타	8	A
10956	9303900000	기타	8	A
10957	9304001000	공기총	8	A
10958	9304009000	기타	8	A
10959	9305101010	격발장치	0	A
10960	9305101020	프레임과 총몸	0	A
10961	9305101030	총열	0	A
10962	9305101040	피스톤・잠금러그(locking lug)・가스완충기	0	A
10963	9305101050	탄알집과 그 부분품	0	A
10964	9305101060	소음기와 그 부분품	0	A
10965	9305101070	개머리판・손잡이・ 플레이트	0	A
10966	9305101080	슬라이드[피스톨(pistol)용]와 실린더[리볼버(revolver)용]	0	A
10967	9305101090	기타	0	A
10968	9305109010	격발장치	8	A
10969	9305109020	프레임과 총몸	8	A
10970	9305109030	총열	8	A
10971	9305109040	피스톤・잠금러그(locking lug)・가스완충기	8	A
10972	9305109050	탄알집과 그 부분품	8	A
10973	9305109060	소음기와 그 부분품	8	A
10974	9305109070	개머리판・손잡이・플레이트	8	A
10975	9305109080	슬라이드(피스톨용)와 실린더(리볼버용)	8	A
10976	9305109090	기타	8	A
10977	9305201000	산탄총의 총열	8	A
10978	9305209010	라이플 총열	8	A
10979	9305209020	탄알집과 그 부분품	8	A
10980	9305209090	기타	8	A
10981	9305911010	격발장치	0	A
10982	9305911020	프레임과 총몸	0	A
10983	9305911030	총열	0	A
10984	9305911040	피스톤・잠금러그(locking lug)・가스완충기	0	A
10985	9305911050	탄알집과 그 부분품	0	A
10986	9305911060	소음기와 그 부분품	0	A
10987	9305911070	소염기와 그 부분품	0	A
10988	9305911080	브리치(breech)・노리쇠와 노리쇠집	0	A
10989	9305911090	기타	0	A
10990	9305919000	기타	0	A
10991	9305990000	기타	8	A
10992	9306210000	탄약	0	A
10993	9306290000	기타	0	A
10994	9306301000	리베팅용이나 이와 유사한 공구용・무통 도살기용 탄약과 이들의 부분품	0	A
10995	9306309000	기타	0	A
10996	9306900000	기타	0	A
10997	9307000000	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이들의 부분품과 집	0	A
10998	9401100000	항공기용 의자	0	A
10999	9401200000	차량용 의자	8	A

11000	940131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A
11001	9401319000	기타	0	A
11002	940139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A
11003	9401399000	기타	0	A
11004	9401410000	목재로 만든 것	0	A
11005	9401490000	기타	0	A
11006	9401520000	대나무로 만든 것	0	A
11007	9401530000	등나무로 만든 것	0	A
11008	9401590000	기타	0	A
11009	940161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A
11010	9401619000	기타	0	A
11011	940169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A
11012	9401699000	기타	0	A
11013	940171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A
11014	9401719000	기타	0	A
11015	940179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A
11016	9401799000	기타	0	A
11017	9401800000	그 밖의 의자	0	A
11018	9401910000	목재로 만든 것	8	A
11019	9401991000	금속으로 만든 것	8	A
11020	9401999000	기타	8	A
11021	9402101000	내과용・외과용・치과용 의자	0	A
11022	9402109010	이발용・미용실용 의자	0	A
11023	9402109090	기타	0	A
11024	9402901000	수술대	0	A
11025	9402908000	기타	0	A
11026	9402909000	부분품	0	A
11027	9403100000	금속으로 만든 사무실용 가구	0	A
11028	9403201000	침대	0	A
11029	9403209000	기타	0	A
11030	9403301000	책상	0	A
11031	9403309000	기타	0	A
11032	9403401000	식탁	8	A
11033	9403409000	기타	8	A
11034	9403501000	침대	0	A
11035	9403509000	기타	0	A
11036	9403601000	나전칠기로 만든 것	0	A
11037	9403609010	문갑	0	A
11038	9403609020	화장대	0	A
11039	9403609030	장롱	0	A
11040	9403609090	기타	0	A
11041	94037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	0	A
11042	9403820000	대나무로 만든 것	0	A
11043	9403830000	등나무로 만든 것	0	A
11044	9403890000	기타	0	A
11045	9403910000	목재로 만든 것	8	A
11046	9403990000	기타	8	A
11047	9404100000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8	B
11048	9404210000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A
11049	9404290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8	A

11050	9404300000	침낭(sleeping bag)	8	A
11051	9404400000	이불·침대보·솜털이불·깃털이불[컴포터(comforter)]	8	A
11052	9404900000	기타	8	A
11053	940511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8	A
11054	940519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8	A
11055	9405192000	형광램프의 것	8	A
11056	9405199000	기타	8	A
11057	940521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8	A
11058	940529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8	A
11059	9405299000	기타	8	A
11060	940531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8	A
11061	9405390000	기타	8	A
11062	9405410000	광전(光電)식의 것[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8	A
11063	9405420000	기타[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8	A
11064	9405491000	방폭형	8	A
11065	9405492000	투광형	8	A
11066	9405493000	가로등의 것	8	A
11067	9405499000	기타	8	A
11068	940550000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8	A
11069	940561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8	A
11070	9405691000	네온관의 것	8	A
11071	9405692000	필라멘트램프의 것	8	A
11072	9405699000	기타	8	A
11073	9405910000	유리로 만든 것	8	A
11074	940592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A
11075	9405990000	기타	8	A
11076	9406100000	나무로 만든 것	8	X
11077	9406200000	모듈화된 빌딩 유닛[강(鋼)으로 만든 것을 한정한다]	8	A
11078	94069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A
11079	9406902000	철강으로 만든 것	8	A
11080	9406903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8	A
11081	9406909000	기타	8	A
11082	9503001100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0	A
11083	9503001200	스쿠터	0	A
11084	9503001300	페달차	0	A
11085	9503001800	기타	0	A
11086	9503001900	부분품과 부속품	0	A
11087	950300211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A
11088	9503002120	고무로 만든 것	0	A
11089	950300213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A
11090	9503002140	도자제의 것	0	A
11091	9503002150	유리로 만든 것	0	A
11092	9503002160	나무로 만든 것	0	A
11093	9503002190	기타	8	A
11094	9503002910	인형용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8	A
11095	9503002990	기타	0	A
11096	9503003110	전기식 기차	0	A
11097	9503003190	부속품	0	A

11098	9503003200	축소모형의 조립용 키트(작동하는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제9503.00-31호의 것은 제외한다)	0	A
11099	9503003300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	0	A
11100	9503003411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A
11101	9503003419	기타	8	A
11102	9503003491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A
11103	9503003492	고무로 만든 것	0	A
11104	9503003493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A
11105	9503003495	도자제의 것	0	A
11106	9503003496	유리로 만든 것	0	A
11107	9503003497	나무로 만든 것	0	A
11108	9503003499	기타	8	A
11109	9503003500	완구용 악기류	8	A
11110	9503003600	퍼즐	0	A
11111	9503003700	그 밖의 완구(세트·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A
11112	9503003800	그 밖의 완구와 모형(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A
11113	9503003911	풍선·완구용 공·연과 이와 유사한 것	8	A
11114	9503003919	기타	8	A
11115	9503003990	부분품과 부속품(제9503.00-3190호의 것은 제외한다)	0	A
11116	9504201000	당구대	0	A
11117	9504202000	당구공	0	A
11118	9504209000	기타	0	A
11119	9504301000	금전적 보상을 즉시 지급하는 사행성 게임용구	0	A
11120	9504309000	기타	0	A
11121	9504400000	오락용 카드	0	A
11122	9504501000	비디오 게임용구(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11123	9504509000	기타	0	A
11124	9504901020	핀 세터	0	A
11125	9504901030	볼링 볼	0	A
11126	9504901040	레인	0	A
11127	9504901050	볼링 핀	0	A
11128	9504901090	기타	0	A
11129	9504902000	전자식 게임기	0	A
11130	9504903000	그 밖의 용구	0	A
11131	9504909020	전자식 게임기의 것	0	A
11132	9504909090	기타	0	A
11133	9505100000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8	A
11134	9505900000	기타	8	A
11135	9506110000	스키	8	X
11136	9506120000	스키파스닝(ski-fastening)(스키바인딩)	8	X
11137	9506190000	기타	8	X
11138	9506210000	세일보드(sailboard)	8	X
11139	9506290000	기타	8	X
11140	9506310000	골프채(완제품으로 한정한다)	8	X
11141	9506320000	골프공	8	X
11142	9506391000	골프채의 부분품	8	X
11143	9506399000	기타	8	X
11144	9506401000	탁구대	8	C
11145	9506402000	탁구라켓	8	C

11146	9506403000	탁구공	8	C
11147	9506409000	기타	8	C
11148	9506510000	론테니스(lawn-tennis)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8	C
11149	9506591000	배드민턴 라켓	8	C
11150	9506599000	기타	8	C
11151	9506610000	론테니스(lawn-tennis) 공	8	C
11152	9506621000	축구공	8	C
11153	9506622000	농구공	8	C
11154	9506623000	배구공	8	C
11155	9506629000	기타	8	C
11156	9506691000	배드민턴 셔틀콕	8	C
11157	9506692000	야구공	8	C
11158	9506699000	기타	8	C
11159	9506700000	아이스 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8	C
11160	9506910000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8	C
11161	9506990000	기타	8	C
11162	9507101000	유리섬유로 만든 것	8	X
11163	9507102000	카본으로 만든 것	8	X
11164	9507109000	기타	8	X
11165	9507200000	낚싯바늘(낚싯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8	X
11166	9507300000	낚시 릴	8	X
11167	9507901000	낚시용 망과 그 밖의 낚시용구	8	X
11168	9507909000	기타	8	X
11169	9508100000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8	A
11170	9508210000	롤러코스터	8	A
11171	9508220000	회전놀이기구・그네・회전목마	8	A
11172	9508230000	범퍼카(Dodge'em car)	8	A
11173	9508240000	동작 시뮬레이션 기기 및 무빙 씨어터(moving theatre)	8	A
11174	9508250000	물놀이용 탈것	8	A
11175	9508260000	워터파크 놀이기구	8	A
11176	9508290000	기타	8	A
11177	9508300000	유원지용 오락물	8	A
11178	9508400000	순회극장용품	8	A
11179	9601100000	가공한 아이보리(ivory)와 그 제품	8	A
11180	9601901010	진주 양식용 핵	0	A
11181	9601901090	기타	8	A
11182	9601909010	진주양식용 핵	0	A
11183	9601909090	기타	8	A
11184	9602001000	젤라틴 캡슐	8	A
11185	9602009010	가공한 식물성 조각용 재료(예: 상아야자)와 식물성 조각용 재료의 제품	8	A
11186	9602009090	기타	8	A
11187	9603100000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으로 한정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8	A
11188	9603210000	칫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8	A
11189	9603290000	기타	8	A
11190	9603300000	회화용 붓・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붓	8	A
11191	9603400000	페인트용・디스템퍼(distemper)용・바니시(varnish)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브러시(소호 제9603.30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8	A

11192	9603500000	그 밖의 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A
11193	9603900000	기타	8	A
11194	9604000000	수동식 체와 어레미	8	A
11195	9605000000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8	A
11196	9606100000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스냅파스너(snap-fastener)・프레스스터드(press-stud)와 이들의 부분품	8	A
11197	960621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8	A
11198	960622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8	A
11199	9606291000	조개껍질로 만든 것	8	A
11200	9606299000	기타	8	A
11201	9606300000	단추의 몰드(mould)와 단추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8	A
11202	9607110000	체인스쿠프(chain scoop)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8	A
11203	960719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A
11204	9607199000	기타	8	A
11205	9607201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8	A
11206	9607202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A
11207	9607209000	기타	8	A
11208	9608100000	볼펜	8	A
11209	9608200000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8	A
11210	9608301000	만년필	8	A
11211	9608309000	기타	8	A
11212	9608400000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8	A
11213	9608500000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8	A
11214	9608600000	볼펜용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A
11215	9608911000	펜촉	8	A
11216	9608912000	닙 포인트(nib point)	8	A
11217	9608991000	부분품	8	A
11218	9608999000	기타	8	A
11219	9609101000	연필	8	A
11220	9609102000	색연필	8	A
11221	9609103000	크레용	8	A
11222	9609200000	연필심(검은색이나 색깔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A
11223	9609901000	크레용・오일파스텔	8	A
11224	9609902000	파스텔	8	A
11225	9609903000	초크	8	A
11226	9609909000	기타	8	A
11227	9610000000	석판과 보드(필기용이나 도화용 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틀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8	A
11228	9611001000	스탬프	8	A
11229	9611009000	기타	8	A
11230	9612102000	자동자료처리기계용	8	A
11231	9612109000	기타	8	A
11232	9612200000	잉크 패드	8	A
11233	9613100000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8	A
11234	9613200000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A

11235	9613800000	그 밖의 라이터	8	A
11236	9613900000	부분품	8	A
11237	9614000000	흡연용 파이프[파이프 볼(pipe bowl)을 포함한다]·시가홀더·시가렛홀더, 이들의 부분품	8	A
11238	9615111000	빗	8	A
11239	9615119000	기타	8	A
11240	9615191000	빗	8	A
11241	9615199000	기타	8	A
11242	9615901000	머리핀	8	A
11243	9615909000	기타	8	A
11244	9616100000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8	A
11245	9616200000	화장용 분첩과 패드	8	A
11246	9617001000	진공 플라스크	8	A
11247	9617002000	보온 도시락	8	A
11248	9617008000	기타	8	A
11249	9617009000	부분품	8	A
11250	9618001000	마네킹 인형	8	A
11251	9618009000	기타	8	A
11252	9619001010	냅킨(기저귀)과 냅킨라이너(napkin liner)	0	A
11253	9619001090	기타	0	A
11254	9619002000	방직용 섬유재료의 워딩(wadding)으로 만든 것	8	A
11255	9619003010	소호 제6108.21호, 제6108.22호, 제6108.29호, 제6111.20호, 제6111.30호, 제6111.90호, 제6209.20호, 제6209.30호, 제6209.90호, 제6210.50호의 것	13	A
11256	9619003020	제6113호, 제6208.91호, 제6208.92호, 제6208.99호의 것	13	A
11257	9619004000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재료의 그 밖의 물품(제63류 주 제2호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10	A
11258	9619009010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napkin liner)	6.5	A
11259	9619009090	기타	6.5	A
11260	9620000000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5	A
11261	9701211000	회화	0	A
11262	9701212000	데생	0	A
11263	9701213000	파스텔	0	A
11264	9701220000	모자이크	0	A
11265	9701290000	기타	0	A
11266	9701911000	회화	0	A
11267	9701912000	데생	0	A
11268	9701913000	파스텔	0	A
11269	9701920000	모자이크	0	A
11270	9701990000	기타	0	A
11271	9702101000	동판화	0	A
11272	9702102000	목판화	0	A
11273	9702103000	석판화	0	A
11274	9702901000	동판화	0	A
11275	9702902000	목판화	0	A
11276	9702903000	석판화	0	A
11277	9703101000	조각	0	A
11278	9703102000	조상(彫像)	0	A
11279	9703901000	조각	0	A
11280	9703902000	조상(彫像)	0	A

11281	9704000000	우표・수입인지・우편요금 별납증서・초일(初日)봉투・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이미 사용한 것이나 제4907호의 것은 제외한 사용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0	A
11282	9705100000	수집품과 표본(고고학・민족학・사학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11283	9705210000	사람 표본과 그 일부분	0	A
11284	9705220000	멸종하였거나 멸종위기에 있는 종의 것이나 그 일부분	0	A
11285	9705290000	기타	0	A
11286	9705310000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	0	A
11287	9705390000	기타	0	A
11288	9706101000	도자기류	0	A
11289	9706102000	악기류	0	A
11290	9706103000	기타	0	A
11291	9706901000	도자기류	0	A
11292	9706902000	악기류	0	A
11293	9706903000	기타	0	A

부속서 2-가-2

아랍에미리트 관세양허표

HS 2022 8단위	품목명	기준세율	UAE 양허유형
01012110	- - - 아랍종	**0%**	A
01012190	- - - 기타	**0%**	A
01012910	- - - 스포츠용 말	**0%**	A
01012920	- - - 조랑말	**0%**	A
01012990	- - - 기타	**0%**	A
01013000	- 당나귀	**0%**	A
01019000	- 기타	**0%**	A
01022100	- - 번식용	**0%**	A
01022900	- - 기타	**0%**	A
01023100	- - 번식용	**0%**	A
01023900	- - 기타	**0%**	A
01029000	- 기타	**0%**	A
01031000	- 번식용	**금지**	PH
01039100	- -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금지**	PH
01039200	- -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금지**	PH
01041010	- - - 번식용	**0%**	A
01041090	- - - 기타	**0%**	A
01042010	- - - 번식용	**0%**	A
01042090	- - - 기타	**0%**	A
01051100	-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	**0%**	A
01051200	- - 칠면조	**0%**	A
01051300	- - 오리	**0%**	A
01051400	- - 거위	**0%**	A
01051500	- - 기니아새	**0%**	A
01059410	- - - 산란계	**0%**	A
01059420	- - - 육계	**0%**	A
01059430	- - - 암탉	**0%**	A
01059490	- - - 기타	**0%**	A
01059910	- - - 사육용 오리와 거위	**0%**	A
01059920	- - - 칠면조	**0%**	A
01059990	- - - 기타	**0%**	A
01061100	- - 영장류	**0%**	A
01061200	- - 고래・돌고래・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	**0%**	A
01061310	- - - 번식용	**0%**	A
01061320	- - - 대회용과 경주용	**0%**	A
01061390	- - - 기타	**0%**	A
01061400	- 토끼	**0%**	A
01061930	- - - 가젤과 사슴	**0%**	A
01061940	- - - 개	**0%**	A
01061950	- - - 여우・밍크 및 그 밖의 모피 동물	**0%**	A
01061960	- - - 동물원용・전시회용 동물 및 과학 실험용과 연구실용으로 수입된 동물	**0%**	A
01061990	- - - 기타	**0%**	A
01062000	-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0%**	A
01063100	- - 맹금류	**0%**	A
01063200	- - 앵무류[패럿류(parrots)・패러키트류(parakeets)・금강앵무류・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0%**	A
01063300	- - 타조와 에뮤(emus)[드로마이어스 노배홀란디애(Dromaius novaehollandiae)]	**0%**	A
01063910	- - - 사육용 및 야생의 비둘기・자고새・꿩・메추라기・도요새・사막꿩・야생 오리	**0%**	A
01063920	- - - 관상용 조류	**0%**	A
01063990	- - - 기타	**0%**	A
01064100	- - 벌	**0%**	A
01064900	- - 기타	**0%**	A
01069000	- 기타	**0%**	A
02011000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	A
02012000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0%**	A
02013000	- 뼈 없는 것	**0%**	A
02021000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5%**	A
02022000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5%**	A
02023010	- - - 다진 것	**5%**	A
02023090	- - - 기타	**5%**	A
02031100	-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특별관심품목**	SG
02031200	- -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특별관심품목**	SG
02031900	- - 기타	**특별관심품목**	SG
02032100	-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특별관심품목**	SG
02032200	- -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특별관심품목**	SG
02032900	- - 기타	**특별관심품목**	SG
02041000	-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02042100	-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	A

02042200	- - 그 밖의 것으로서 뼈 째로 절단한 것	**0%**	A
02042300	- - 뼈 없는 것	**0%**	A
02043000	-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5%**	B
02044100	-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5%**	A
02044200	- - 그 밖의 것으로서 뼈 째로 절단한 것	**5%**	A
02044310	- - - 다진 것	**5%**	B
02044390	- - - 기타	**5%**	B
02045011	-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A
02045012	- - - - 냉동한 것	**5%**	B
02045021	-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A
02045022	- - - - 냉동한 것	**5%**	B
02045031	-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A
02045032	- - - - 냉동한 것	**5%**	A
02050010	- - - 말고기	**5%**	A
02050090	- - - 기타	**특별관심품목**	SG
02061000	- 소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02062100	- - 혀	**5%**	A
02062200	- - 간	**5%**	A
02062900	- - 기타	**5%**	A
02063000	- 돼지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특별관심품목**	SG
02064100	- - 간	**특별관심품목**	SG
02064900	- - 기타	**특별관심품목**	SG
02068010	- - - 면양이나 염소의 것	**0%**	A
02068090	- - - 기타	**5%**	A
02069011	- - - - 혀	**5%**	A
02069012	- - - - 간	**5%**	A
02069019	- - - - 기타	**5%**	A
02069090	- - - 기타	**5%**	A
02071100	-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02071200	-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02071300	- - 절단육과 설육(屑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02071400	- -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02072400	-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02072500	-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02072600	- - 절단육과 설육(屑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02072700	- -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5%**	B
02074100	-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02074200	-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02074300	- -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02074400	- -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02074500	- -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02075100	-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02075200	-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02075300	- -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02075400	- -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02075500	- -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5%**	B
02076000	- 기니아새의 것	**5%**	A
0208101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A
02081020	- - - 냉동한 것	**5%**	A
02083000	- 영장류의 것	**5%**	A
02084000	- 고래・돌고래・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5%**	A
02085000	-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5%**	A
0208601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A
02086020	- - - 냉동한 것	**0%**	A
02089021	-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5%**	B
02089022	- - - - 냉동한 것	**5%**	A
02089031	-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5%**	B
02089032	- - - - 냉동한 것	**5%**	B
02089091	- - - - 개구리 다리	**5%**	A
02089099	- - - - 기타	**5%**	B
02091000	- 돼지의 것	**특별관심품목**	SG
02099000	- 기타	**5%**	A
02101100	- -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특별관심품목**	SG
02101200	- - 복부살(삼겹살)과 이를 절단한 것	**특별관심품목**	SG
02101900	- - 기타	**특별관심품목**	SG
02102000	- 쇠고기	**5%**	A
02109100	- - 영장류의 것	**5%**	A
02109200	- - 고래・돌고래・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5%**	A
02109300	- -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5%**	A
02109900	- - 기타	**5%**	A
03011100	- - 민물의 것	**0%**	A
03011900	- - 기타	**0%**	A
03019100	-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	A
03019200	- -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0%**	A

03019300	- -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0%**	A
03019400	- -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Thunnus thynnus)・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0%**	A
03019500	- -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0%**	A
03019900	- - 기타	**0%**	A
03021100	-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	A
03021300	- -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0%**	A
03021400	- -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0%**	A
03021900	- - 기타	**0%**	A
03022100	- -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0%**	A
03022200	- -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0%**	A
03022300	- - 서대[솔레아(Solea)속]	**0%**	A
03022400	- - 터벗(turbots)[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0%**	A
03022900	- - 기타	**0%**	A
03023100	- -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Thunnus alalunga)]	**0%**	A
03023200	-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0%**	A
03023300	- - 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카추워누스 펠라미스(Katsuwonus pelamis)]	**0%**	A
03023400	- -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0%**	A
03023500	- -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Thunnus thynnus)・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0%**	A
03023600	- -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0%**	A
03023910	- - - 백다랑어[터너스 텅글(Thunnus tungle)]	**0%**	A
03023920	- - - 점다랑어[터너스 아비누스(Thunnus Avinus)]	**0%**	A
03023990	- - - 기타	**0%**	A
03024100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0%**	A
03024200	- -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	**0%**	A
03024300	- -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속],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0%**	A
03024410	- - 동갈삼치[킹피쉬(Kingfish)・소이티드 수아부스그 매크럴(soitted soabusg mackerel)]	**0%**	A
03024420	- - - 줄무늬 고등어[트라커러스 인디쿠스(Trachurus indicus)]	**0%**	A
03024490	- - - 기타	**0%**	A
03024510	- - - 사출갈전갱이	**0%**	A
03024520	- - - 잭 폼프렛(Jack pomfret)	**0%**	A
03024590	- - - 기타	**0%**	A
03024600	- -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0%**	A
030247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0%**	A
03024910	- - - 병어	**0%**	A
03024990	- - - 기타	**0%**	A
03025100	-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0%**	A
03025200	-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0%**	A
03025300	-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0%**	A
03025400	- -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속・유르피키스(Urophycis)속]	**0%**	A
03025500	-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0%**	A
03025600	- - 블루 화이팅스(blue whi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0%**	A
03025900	- - 기타	**0%**	A
030271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0%**	A
03027200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0%**	A
03027300	- -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0%**	A
03027400	- -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0%**	A
03027900	- - 기타	**0%**	A
03028100	-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0%**	A
03028200	- -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0%**	A
03028300	-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0%**	A

03028400	- -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속]	**0%**	A
03028500	- - 돔[스파리대(Sparidae)과][(핀드-블랙 시브림(finned-black seabream)・블래슈 시브림(blache seabream)・바드 실버리 시브림(barred-silvery seabream)・밴디드 시브림(banded seabream)・레드 스트립트 시브림(red-stripped seabream) 등]	**0%**	A
03028910	- - - 점박이 그루퍼(푸른점 그루퍼・대문바리・새들 그루퍼 등)	**0%**	A
03028920	- - - 엠프러(Emperor)	**0%**	A
03028930	- - - 붉은 돔[알레스마우디(Alesmaudi)]	**0%**	A
03028940	- - - 별도랑벤자리(silver grunt)	**0%**	A
03028950	- - - 숭어[미드(Meed)와 비야(Biyah)]	**0%**	A
03028960	- - - 독가시치	**0%**	A
03028970	- - - 바라쿠다(barracuda)	**0%**	A
03028980	- - - 민어[시가니대(Siganidae)과]	**0%**	A
03028990	- - - 기타	**0%**	A
03029100	- - 간・어란(魚卵)・어백(魚白)	**0%**	A
03029200	- - 상어 지느러미	**0%**	A
03029900	- - 기타	**0%**	A
03031100	- - 소크아이 연어[홍연어(red salmon)][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5%**	C
03031200	- - 그 밖의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5%**	C
03031300	- -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5%**	C
03031400	-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5%**	A
03031900	- - 기타	**5%**	A
030323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5%**	A
03032400	-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5%**	A
03032500	- - 잉어[사이프리너스 카피오(Cyprinus carpio)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5%**	A
03032600	- -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5%**	A
03032900	- - 기타	**5%**	C
03033100	- -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5%**	A
03033200	- -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5%**	A
03033300	- - 서대[솔레아(Solea)속]	**5%**	A
03033400	- - 터벗(turbots)[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5%**	A
03033900	- - 기타	**5%**	C
03034100	- -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Thunnus alalunga)]	**5%**	A
03034200	-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5%**	C
03034300	- - 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카추워누스 펠라미스(Katsuwonus pelamis)]	**5%**	A
03034400	- -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5%**	A
03034500	- -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5%**	B
03034600	- -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5%**	A
03034910	- - - 백다랑어[터너스 텅글(Thunnus tungle)]	**5%**	A
03034920	- - - 점다랑어[터너스 아비누스(Thunnus Avinus)]	**5%**	A
03034990	- - - 기타	**5%**	A
03035100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5%**	A
03035300	- -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5%**	C
03035410	- - - 고등어[킹피쉬(Kingfish)・소이티드 수아부스그 매크럴(soitted soabusg macherel)]	**5%**	C
03035420	- - - 줄무늬 고등어	**5%**	C
03035490	- - - 기타	**5%**	C
03035510	- - - 사출갈전갱이(빅아이・블랙팁・가라지)	**5%**	A
03035520	- - - 잭 폼프렛(Jack pomfret)	**5%**	A
03035590	- - - 기타	**5%**	A
03035600	- -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5%**	A
030357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5%**	C
03035910	- - - 병어	**5%**	C
03035990	- - - 기타	**5%**	C
03036300	-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5%**	A
03036400	-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5%**	A
03036500	-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5%**	A
03036600	- -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속・유르피키스(Urophycis)속]	**5%**	A
03036700	-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5%**	A

03036800	- - 블루 화이팅스(blue whi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5%**	A
03036900	- - 기타	**5%**	C
03038100	-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5%**	A
03038200	- -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5%**	A
03038300	-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5%**	A
03038400	- -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속]	**5%**	B
03038910	- - - 점박이 그루퍼(푸른점 그루퍼・대문바리・새들 그루퍼 등)	**5%**	C
03038920	- - - 엠프러(Emperor)	**5%**	C
03038930	- - - 붉은 돔[알레스마우디(Alesmaudi)]	**5%**	A
03038940	- - - 실버리 그런트(Silvery grunt)	**5%**	A
03038950	- - - 숭어[미드(Meed)와 비야(Biyah)]	**5%**	A
03038960	- - - 독가시치	**5%**	A
03038970	- - - 바라쿠다(Barracuda)	**5%**	B
03038980	- - - 민어[시가니대(Siganidae)과]	**5%**	B
03038991	- - 돔[스파리대(Sparidae)과][(핀드-블랙 시브림(finned-black seabream)・블래슈 시브림(blache seabream)・바드 실버리 시브림(barred-silvery seabream)・밴디드 시브림(banded seabream)・레드 스트립트 시브림(red-stripped seabream) 등]	**5%**	A
03038999	- - - - 기타	**5%**	A
03039100	- - 간・어란(魚卵)・어백(魚白)	**5%**	A
03039200	- - 상어 지느러미	**5%**	A
03039900	- - 기타	**5%**	A
030431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5%**	A
03043200	-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5%**	A
03043300	-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5%**	B
03043900	- - 기타	**5%**	A
03044100	- -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5%**	C
03044200	-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5%**	A
03044300	- -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바디대(Bothidae)과・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솔레이대(Soleidae)과・스코프탈미대(Scophthalmidae)과・시타리대(Citharidae)과]	**5%**	A
03044400	-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5%**	A
030445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5%**	A
03044600	-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5%**	A
03044700	-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5%**	A
03044800	- -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5%**	A
03044900	- - 기타	**5%**	C
030451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5%**	A
03045200	- - 연어과	**5%**	B
03045300	-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5%**	A
030454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5%**	A
03045500	-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5%**	A
03045600	-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5%**	A
03045700	- -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5%**	A
03045910	- - - 점박이 그루퍼	**5%**	A
03045920	- - - 엠프러(Emperor)	**5%**	A
03045990	- - - 기타	**5%**	B
030461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5%**	A
03046200	-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5%**	B
03046300	-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5%**	B
03046900	- - 기타	**5%**	C
03047100	-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5%**	A

03047200	-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5%**	A
03047300	-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5%**	A
03047400	- -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속・유르피키스(Urophycis)속]	**5%**	A
03047500	-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5%**	C
03047900	- - 기타	**5%**	B
03048100	- -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5%**	C
03048200	-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5%**	A
03048300	- -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바디대(Bothidae)과・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솔레이대(Soleidae)과・스코프탈미대(Scophthalmidae)과・시타리대(Citharidae)과]	**5%**	A
030484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5%**	A
03048500	-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5%**	A
03048600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5%**	A
03048700	- -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Euthynnus (Katsuwonus) pelamis)]	**5%**	C
03048800	- - 곱상어, 그 밖의 상어,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5%**	A
03048910	- - - 그루퍼(Groupers)	**5%**	C
03048920	- - - 엠프러(Emperor)	**5%**	A
03048990	- - - 기타	**5%**	C
030491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5%**	A
03049200	-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5%**	A
030493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5%**	A
03049400	-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5%**	A
03049500	-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는 제외한다]	**5%**	A
03049600	-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5%**	A
03049700	- -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5%**	A
03049900	- - 기타	**5%**	C
03052000	- 어류의 간・어란(魚卵)(건조한 것・훈제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030531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 카피오(Cyprinus carpio)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5%**	A
03053200	-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5%**	A
03053910	- - - 상어	**5%**	A
03053990	- - - 기타	**5%**	A
03054100	- -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5%**	A
03054200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5%**	A
03054300	-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5%**	A

030544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5%**	A
03054900	- - 기타	**5%**	B
03055100	-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5%**	A
030552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5%**	A
03055300	-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이외의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5%**	A
03055400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속],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줄무늬 고등어(Indian mackerels)[라스트렐리거(Rastrelliger)속], 삼치[스콤버로모러스(Scomberomorus)속],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속], 줄전갱이류[카랑크스(Caranx)속],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병어 [팜푸스(Pampus)속],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가라지[데캅테러스(Decapterus)속], 열빙어[말로투스 빌로서스(Mallotus villosus)],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점다랑어[유티너스 아피니스(Euthynnus affinis)], 버니토[사르다(Sarda)속], 새치류, 돛새치, 청새치[이스티오포리대(Istiophoridae)]	**5%**	C
03055930	- - -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	**5%**	A
03055990	- - - 기타	**5%**	B
03056100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5%**	A
03056200	-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5%**	A
03056300	- -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	**5%**	B
030564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5%**	A
03056900	- - 기타	**5%**	A
03057100	- - 상어 지느러미	**5%**	A
03057200	- - 어류의 머리・꼬리・부레	**5%**	A
03057900	- - 기타	**5%**	A
03061100	- -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속・파누리루스(Panulirus)속・자수스(Jasus)속]	**0%**	A
03061200	- -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속]	**0%**	A
03061400	- - 게	**0%**	A
03061500	- -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0%**	A
03061600	- -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속・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	**0%**	A
03061700	- - 그 밖의 새우류	**0%**	A
03061900	- - 기타	**0%**	A
03063100	- -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속・파누리루스(Panulirus)속・자수스(Jasus)속]	**0%**	A
03063200	- -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속]	**0%**	A
03063300	- - 게	**0%**	A
03063400	- -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0%**	A
03063500	- -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속・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	**0%**	A

03063600	- - 그 밖의 새우류	**0%**	A
03063900	- - 기타	**0%**	A
03069100	- -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속 · 파누리루스(Panulirus)속 · 자수스(Jasus)속]	**0%**	A
03069200	- -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속]	**0%**	A
03069300	- - 게	**0%**	A
03069400	- -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0%**	A
03069500	- - 새우류	**0%**	A
03069900	- - 기타	**0%**	A
03071100	-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5%**	C
03071200	- - 냉동한 것	**5%**	A
03071900	- - 기타	**5%**	B
03072100	-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5%**	B
03072200	- - 냉동한 것	**5%**	B
03072900	- - 기타	**5%**	A
03073100	-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5%**	A
03073200	- - 냉동한 것	**5%**	C
03073900	- - 기타	**5%**	A
03074200	-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5%**	B
03074300	- - 냉동한 것	**5%**	C
03074900	- - 기타	**5%**	C
03075100	-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5%**	A
03075200	- - 냉동한 것	**5%**	B
03075900	- - 기타	**5%**	C
03076000	-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5%**	A
03077100	-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5%**	B
03077200	- - 냉동한 것	**5%**	A
03077900	- - 기타	**5%**	A
03078100	- - 살아 있거나 , 신선하거나 냉장한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속]	**5%**	C
03078200	- - 살아 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속]	**5%**	A
03078300	- - 냉동한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속]	**5%**	A
03078400	- - 냉동한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속]	**5%**	A
03078700	- - 그 밖의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속]	**5%**	A
03078800	- - 그 밖의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속]	**5%**	A
03079100	-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5%**	B
03079200	- - 냉동한 것	**5%**	A
03079900	- - 기타	**5%**	B
03081100	-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5%**	B
03081200	- - 냉동한 것	**5%**	A
03081900	- - 기타	**5%**	A
03082100	-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5%**	A
03082200	- - 냉동한 것	**5%**	A
03082900	- - 기타	**5%**	A
03083000	- 해파리[로필레마(Rhopilema)속]	**5%**	A
03089000	- 기타	**5%**	B
03091000	- 어류의 것	**5%**	B
03099010	- - - 갑각류의 것	**0%**	A
03099090	- - - 기타	**5%**	A
04011030	- - - 멸균우유(1리터를 초과하는 용기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5%**	C
04011090	- - - 기타	**5%**	C
04012030	- - - 멸균우유(1리터를 초과하는 용기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5%**	C
04012090	- - - 기타	**5%**	C
04014030	- - - 멸균우유(1리터를 초과하는 용기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5%**	C
04014090	- - - 기타	**5%**	C
04015030	- - - 멸균우유(1리터를 초과하는 용기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04015090	- - - 기타	**5%**	A
04021011	- - - - 산업용 밀크(밀크 함량이 100분의 75 이상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A
04021012	- - - - 산업용 밀크(밀크 함량이 100분의 75 미만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B
04021019	- - - - 기타	**5%**	A
04021091	- - - - 그 밖의 밀크(밀크 함량이 100분의 75 이상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A
04021092	- - - - 그 밖의 밀크(밀크 함량이 100분의 75 미만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A
04021099	- - - - 기타	**5%**	A
04022110	- - - 산업용	**5%**	A
04022190	- - - 기타	**5%**	A
04022911	- - - - 밀크의 그 밖의 것(산업용으로서 밀크 함량이 100분의 75 이상이고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B
04022912	- - - - 그 밖의 밀크(밀크 함량이 100분의 75 미만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A
04022919	- - - - 기타	**5%**	A
04022991	- - - - 그 밖의 밀크(밀크 함량이 100분의 75 이상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B
04022992	- - - - 밀크의 그 밖의 것(밀크 함량이 100분의 75 미만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A
04022999	- - - - 기타	**5%**	B
04029110	- - - 밀크(Milk)	**5%**	A
04029120	- - - 크림(Cream)	**5%**	A

04029911	- - - - 밀크의 그 밖의 것(밀크 함량이 100분의 75 이상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B
04029912	- - - - 밀크의 그 밖의 것(밀크 함량이 100분의 75 미만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A
04029919	- - - - 기타	**5%**	C
04029920	- - - 크림(Cream)	**5%**	C
04032000	- 요구르트	**5%**	C
04039010	- - - 라브나(Labnah)(탈수한 요거트)	**5%**	B
04039020	- - - 라반(Laban)(응고 밀크)	**5%**	B
04039090	- - - 기타	**5%**	B
04041000	-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C
04049000	- 기타	**5%**	C
04051000	- 버터	**5%**	B
04052000	-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5%**	A
04059000	- 기타	**5%**	C
04061000	-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	**5%**	C
04062000	-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5%**	A
04063000	-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5%**	C
04064000	-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5%**	A
04069010	- - - 신선한 발효 크림치즈	**5%**	C
04069020	- - - 반경성(半硬性)치즈와 경성(硬性)치즈(예: 체다・고다・그루에르・파르메잔)	**5%**	C
04069030	- - - 반가공된 노란 치즈(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중량이 15킬로그램 이상으로 포장한 것)	**5%**	A
04069090	- - - 기타	**5%**	C
04071100	-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	A
04071900	- - 기타	**0%**	A
04072100	-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5%**	C
04072900	- - 기타	**5%**	A
04079000	- 기타	**5%**	B
04081100	- - 건조한 것	**5%**	A
04081900	- - 기타	**5%**	B
04089100	- - 건조한 것	**5%**	A
04089900	- - 기타	**5%**	A
04090000	천연꿀	**5%**	A
04101000	- 곤충	**5%**	A
04109010	- - - 거북이 알	**5%**	A
04109020	- - - 살랑갠(salangane) 둥지	**5%**	A
04109090	- - - 기타	**5%**	A
05010000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웨이스트(waste)	**5%**	A
05021000	- 돼지털・멧돼지털・오소리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특별관심품목**	SG
05029000	- 기타	**5%**	A
05040010	- - - 장	**5%**	A
05040020	- - - 위	**5%**	A
05040090	- - - 기타	**5%**	A
05051000	- 솜털과 충전재용 깃털	**5%**	A
05059000	- 기타	**5%**	A
05061000	- 골소(骨素)와 뼈[산(酸)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05069000	- 기타	**5%**	A
05071000	- 아이보리(ivory), 아이보리(ivory) 가루와 웨이스트(waste)	**금지**	PH
05079010	- - - 귀갑(龜甲)・고래수염과 그 털・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	**5%**	A
05079020	- - - 뿔・사슴뿔・발굽・발톱・부리와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	**5%**	A
05080010	- - - 산호	**5%**	A
05080020	- - - 흑산호	**5%**	A
05080030	- - - 연체동물・갑각류 또는 극피동물의 껍데기	**5%**	A
05080090	- - - 기타	**5%**	A
05100010	- - - 용연향(ambergris)・해리향(castoreum)・시빗(civet)과 사향	**5%**	A
05100090	- - - 쓸개즙(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5%**	A
05111000	- 소의 정액	**5%**	A
05119110	- - -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란(魚卵)	**5%**	A
05119120	- - -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5%**	A
05119190	- - - 기타	**5%**	A
05119910	- - - 코치닐(Cochineal) 및 이와 유사한 곤충	**5%**	A
05119920	- - - 잠종(蠶種)	**5%**	A
05119930	- - - 개미 알	**5%**	A
05119940	- - - 동물의 피・그 밖의 동물의 사체・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육・설육(屑肉)・사지(四肢)	**5%**	A
05119950	- - - 건(腱)과 근(筋)・이와 유사한 원피의 웨이스트(waste)	**5%**	A
05119990	- - - 기타	**5%**	A
06011000	-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근경(根莖)으로서 휴면(休眠)상태인 것	**0%**	A
06012000	-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근경(根莖)으로서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커리・치커리 뿌리	**0%**	A
06021010	- - - 포도(포도 접붙임용 가지)	**0%**	A
06021090	- - - 기타	**0%**	A
06022010	- - - 팜나무 종묘(種苗)	**0%**	A
06022020	- - - 코코넛 종묘(種苗)	**0%**	A

06022090	- - - 기타	**0%**	A
06023010	- - - 관상용 관목	**5%**	B
06023090	- - - 기타	**5%**	A
06024000	- 장미(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5%**	A
06029000	- 기타	**5%**	A
06031100	- - 장미	**5%**	A
06031200	- - 카네이션	**5%**	A
06031300	- - 난	**5%**	A
06031400	- - 국화	**5%**	A
06031500	- - 백합[릴리움(Lilium)속]	**5%**	A
06031900	- - 기타	**5%**	A
06039000	- 기타	**5%**	A
06042000	- 신선한 것	**5%**	A
06049000	- 기타	**5%**	A
07011000	- 종자	**0%**	A
07019000	- 기타	**0%**	A
07020000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07031011	- - - - 식품용 양파(녹색이나 건조한 외피)	**0%**	A
07031012	- - - - 양파(파종용)	**0%**	A
07031020	- - - 샬롯(shallot)	**0%**	A
07032000	- 마늘	**0%**	A
07039000	-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0%**	A
07041000	- 꽃양배추와 브로콜리(broccoli)	**0%**	A
07042000	- 방울다다기 양배추	**0%**	A
07049000	- 기타	**0%**	A
07051100	- - 결구(結球) 상추	**0%**	A
07051900	- - 기타	**0%**	A
07052100	- - 위트루프 치커리(Witloof chicory)[시코리엄 인티부스 변종 포리오섬(Cichorium intybus var. foliosum)]	**0%**	A
07052900	- - 기타	**0%**	A
07061000	- 당근과 순무	**0%**	A
07069000	- 기타	**0%**	A
07070000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07081000	-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0%**	A
07082000	- 콩[비그나(Vigna)속・파세러스(Phaseolus)속)]	**0%**	A
07089010	- - - 콩	**0%**	A
07089090	- - - 기타	**0%**	A
07092000	- 아스파라거스(asparagus)	**0%**	A
07093000	- 가지(에그플랜트)	**0%**	A
07094000	- 셀러리(celery)[셀러리액(celeriac)은 제외한다]	**0%**	A
07095100	-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0%**	A
07095200	- - 볼레투스(Boletus)속의 버섯	**0%**	A
07095300	- - 칸타렐루스(Cantharellus)속의 버섯	**0%**	A
07095400	- - 표고버섯(Lentinus edodes)	**0%**	A
07095500	- - 송이버섯(Tricholoma matsutake, Tricholoma magnivelare, Tricholoma anatolicum, Tricholoma dulciolens, Tricholoma caligatum)	**0%**	A
07095600	- - 송로(松露)[튜버(Tuber)속]	**0%**	A
07095910	- - - 송로(松露)	**0%**	A
07095990	- - - 기타	**0%**	A
07096000	-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0%**	A
07097000	- 시금치류	**0%**	A
07099100	- - 글로브 아티초크(globe artichoke)	**0%**	A
07099200	- - 올리브	**0%**	A
07099300	- - 호박류[쿠쿠르비타(Cucurbita)속]	**0%**	A
07099910	- - - 호박	**0%**	A
07099920	- - - 오크라(okra)	**0%**	A
07099930	- - - 파슬리	**0%**	A
07099940	- - - 고수	**0%**	A
07099990	- - - 기타	**0%**	A
07101000	- 감자	**5%**	A
07102100	- -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5%**	C
07102200	- - 콩[비그나(Vigna)속・파세러스(Phaseolus)속)]	**5%**	B
07102900	- - 기타	**5%**	A
07103000	- 시금치류	**5%**	A
07104000	- 스위트콘	**5%**	B
07108000	- 그 밖의 채소	**5%**	A
07109000	- 채소류의 혼합물	**5%**	B
07112000	- 올리브	**5%**	A
07114000	- 오이류	**5%**	A
07115100	-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5%**	A
07115900	- - 기타	**5%**	A
07119000	-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5%**	B
07122000	- 양파	**5%**	A
07123100	-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5%**	B
07123200	- -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속]	**5%**	A
07123300	- -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속]	**5%**	A
07123400	- - 표고버섯(Lentinus edodes)	**5%**	A
07123900	- - 기타	**5%**	B
07129000	-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5%**	C
07131000	-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5%**	A
07132000	- 이집트 콩[가반조스(garbanzos)]	**5%**	A

07133110	- - - 파종용	**0%**	A
07133120	- - - 식품용	**5%**	B
07133210	- - - 파종용	**0%**	A
07133220	- - - 식품용	**5%**	A
07133310	- - - 파종용	**0%**	A
07133320	- - - 식품용	**5%**	A
07133410	- - - 파종용	**5%**	A
07133420	- - - 식품용	**5%**	A
07133510	- - - 파종용	**5%**	A
07133520	- - - 식품용	**5%**	A
07133900	- - 기타	**5%**	A
07134000	- 렌즈콩	**5%**	B
07135000	-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메이저(Vicia faba var. major)]과 말먹이용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에퀴나(Vicia faba var. equina)・비시아 파바 변종 마이너(Vicia faba var. minor)]	**5%**	B
07136000	- 비둘기콩[카자누스 카잔(Cajanus cajan)]	**5%**	B
07139010	- - - 녹두	**5%**	A
07139090	- - - 기타	**5%**	A
07141000	-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	**5%**	A
07142000	- 고구마	**5%**	B
07143000	- 얌[디오스코레아(Dioscorea)속]	**5%**	A
07144000	- 토란[콜로카시아(Colocasia)속]	**5%**	A
07145000	- 아메리카 토란[크산토소마(Xanthosoma)속]	**5%**	A
07149010	- - - 살렙(Salep)	**5%**	A
07149020	- - - 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	**5%**	A
07149090	- - - 기타	**5%**	A
08011100	- - 말린 것	**5%**	B
08011200	- - 내피[내과피(內果皮)]를 벗기지 않은 것	**5%**	A
08011900	- - 기타	**5%**	A
08012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5%**	B
08012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5%**	C
08013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5%**	A
08013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5%**	A
08021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5%**	A
08021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5%**	C
08022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5%**	A
08022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5%**	C
08023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5%**	B
08023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5%**	C
08024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5%**	A
08024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5%**	A
08025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5%**	B
08025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5%**	A
08026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5%**	A
08026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5%**	C
08027010	- - - 콜라 아쿠미나타[스테큘리아 아쿠미나타(Sterculia acuminata)]	**5%**	A
08027090	- - - 기타	**5%**	A
08028000	- 빈랑자(areca nut)	**5%**	A
08029100	- - 잣(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5%**	C
08029200	- - 잣(껍데기를 벗긴 것)	**5%**	B
08029910	- - - 녹색의 종자(바나크)	**5%**	A
08029991	- -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5%**	C
08029992	- - - - 껍데기를 벗긴 것	**5%**	C
08031000	- 플랜틴(plantain)	**0%**	A
08039000	- 기타	**0%**	A
08041010	- - - 신선한 것	**0%**	A
08041021	- - - - 압착한 것	**0%**	A
08041029	- - - - 기타	**0%**	A
08042010	- - - 신선한 것	**0%**	A
08042020	- - - 건조한 것	**0%**	A
08043000	- 파인애플	**0%**	A
08044000	- 아보카도(avocado)	**0%**	A
08045010	- - - 구아바(guava)	**0%**	A
08045020	- - - 망고(mango)	**0%**	A
08045030	- - - 망고스틴(mangosteen)	**0%**	A
08051000	- 오렌지	**0%**	A
08052100	- - 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es)・세트수마(satsumas)를 포함한다]	**0%**	A
08052200	- - 클레멘타인(clementine)	**0%**	A
08052900	- - 기타	**0%**	A
08054000	-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와 포멜로(pomelo)	**0%**	A
08055010	- - - 신선한 것	**0%**	A
08055020	- - - 건조한 것	**0%**	A
08059000	- 기타	**0%**	A
08061000	- 신선한 것	**0%**	A
08062000	- 건조한 것	**0%**	A
08071100	- - 수박	**0%**	A
08071910	- - - 멜론(사향참외)	**0%**	A
08071990	- - - 기타	**0%**	A
08072000	- 포포(papaw)[파파야(papaya)]	**0%**	A
08081000	- 사과	**0%**	A

08083000	- 배	**0%**	A
08084000	- 마르멜로(quince)	**0%**	A
08091000	- 살구	**0%**	A
08092100	- - 신 체리[프루너스 체라서스(Prunus cerasus)]	**0%**	A
08092900	- - 기타	**0%**	A
08093000	-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0%**	A
08094000	- 자두와 슬로(sloe)	**0%**	A
08101000	- 초본류 딸기	**0%**	A
08102000	-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로간베리(loganberry)	**0%**	A
08103000	- 흑색・백색・적색의 커런트(currant)와 구즈베리(gooseberry)	**0%**	A
08104000	- 크랜베리(cranberry)・빌베리(bilberry)와 그 밖의 박시니엄(Vaccinium)속의 과실	**0%**	A
08105000	- 키위프루트(kiwifruit)	**0%**	A
08106000	- 두리안(durian)	**0%**	A
08107000	- 감	**0%**	A
08109010	- - - 석류	**0%**	A
08109020	- - - 서양모과	**0%**	A
08109030	- - - 선인장무화과	**0%**	A
08109090	- - - 기타	**0%**	A
08111000	- 초본류 딸기	**5%**	A
08112000	-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loganberry), 흑색・백색・적색의 커런트(currant), 구즈베리(gooseberry)	**5%**	A
08119000	- 기타	**5%**	C
08121000	- 체리	**5%**	A
08129000	- 기타	**5%**	A
08131000	- 살구	**5%**	A
08132000	- 프룬(prune)	**5%**	A
08133000	- 사과	**5%**	A
08134010	- - - 체리	**5%**	A
08134020	- - - 타마린드(Tamarind)	**5%**	A
08134030	- - - 배	**5%**	A
08134090	- - - 기타	**5%**	A
08135000	-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5%**	A
08140000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한 것, 냉동하거나 건조한 것, 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09011100	-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	A
09011200	- - 카페인을 제거한 것	**0%**	A
09012100	-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	A
09012200	- - 카페인을 제거한 것	**0%**	A
09019000	- 기타	**0%**	A
09021000	-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0%**	A
09022000	-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09023010	- - - 3그램 이하의 티백	**0%**	A
09023090	- - - 기타	**0%**	A
09024000	-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0%**	A
09030000	마테(maté)	**5%**	A
09041100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5%**	A
0904120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5%**	C
09042100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5%**	C
0904220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5%**	C
09051000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5%**	A
0905200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5%**	C
09061100	- - 계피[신나모멈 제이나이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	**5%**	B
09061900	- - 기타	**5%**	A
0906200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5%**	C
09071000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5%**	B
0907200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5%**	A
09081100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5%**	B
0908120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5%**	A
09082100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금지**	PH
0908220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금지**	PH
09083100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	A
0908320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	A
09092100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5%**	B
0909220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5%**	A
09093100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5%**	A
0909320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5%**	A
09096100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5%**	C
0909620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5%**	A
09101100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5%**	A
0910120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5%**	B
09102000	- 사프란(saffron)	**5%**	A
09103010	-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5%**	A
09103020	-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5%**	C
09109100	- - 혼합물(제9류의 주 제1호나목의 것으로 한정한다)	**5%**	C
09109910	- - - 호로파	**5%**	A
09109920	- - - 타임(Thyme)과 월계수잎	**5%**	A
09109930	- - - 카레	**5%**	A
09109990	- - - 기타	**5%**	A

10011100	- - 종자	**0%**	A
10011900	- - 기타	**0%**	A
10019100	- - 종자	**0%**	A
10019910	- - - 일반 밀	**0%**	A
10019920	- - - 얇은 밀	**0%**	A
10019930	- - - 메슬린(meslin)	**0%**	A
10021000	- 종자	**5%**	A
10029000	- 기타	**5%**	A
10031000	- 종자	**0%**	A
10039000	- 기타	**0%**	A
10041000	- 종자	**0%**	A
10049010	- - - 회색(또는 흑색) 귀리	**0%**	A
10049020	- - - 백색(또는 황색) 귀리	**0%**	A
10051000	- 종자	**0%**	A
10059010	- - - 황금색 옥수수	**0%**	A
10059020	- - - 백색 옥수수	**0%**	A
10059030	- - - 적갈색 옥수수	**0%**	A
10059090	- - - 기타	**0%**	A
10061000	- 벼	**0%**	A
10062000	- 현미	**0%**	A
10063000	-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0%**	A
10064000	- 쇄미(broken rice)	**0%**	A
10071000	- 종자	**5%**	A
10079000	- 기타	**5%**	A
10081000	- 메밀	**0%**	A
10082100	- - 종자	**0%**	A
10082900	- - 기타	**0%**	A
10083000	- 카나리시드(canary seed)	**0%**	A
10084000	- 포니오(Fonio)[디지타리아(Digitaria)속]	**0%**	A
10085000	- 퀴노아(quinoa)[체노포디움 퀴노아(Chenopodium quinoa)]	**0%**	A
10086000	- 라이밀(triticale)	**0%**	A
10089000	- 그 밖의 곡물	**0%**	A
11010010	- - - 밀가루	**0%**	A
11010020	- - - 밀과 호밀을 혼합한 가루	**0%**	A
11022000	- 옥수수가루	**0%**	A
11029010	- - - 보릿가루	**0%**	A
11029020	- - - 귀리가루	**0%**	A
11029030	- - - 수수가루	**0%**	A
11029040	- - - 메밀가루	**0%**	A
11029050	- - - 밀리트(millet)가루	**0%**	A
11029060	- - - 쌀가루	**0%**	A
11029090	- - - 기타	**0%**	A
11031110	- - - 부순 알곡	**0%**	A
11031120	- - - 거친 가루	**0%**	A
11031310	- - - 부순 알곡	**0%**	A
11031320	- - - 거친 가루	**0%**	A
11031910	- - - 보리로 만든 것	**0%**	A
11031920	- - - 수수로 만든 것	**0%**	A
11031930	- - - 호밀로 만든 것	**0%**	A
11031940	- - - 메밀로 만든 것	**0%**	A
11031950	- - - 밀리트(millet)로 만든 것	**0%**	A
11031990	- - -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0%**	A
11032000	- 펠릿(pellet)	**0%**	A
11041200	- - 귀리로 만든 것	**5%**	A
11041910	- - - 밀로 만든 것	**5%**	C
11041920	- - - 호밀로 만든 것	**5%**	A
11041930	- - - 메밀로 만든 것	**5%**	A
11041940	- - - 밀리트(millet)로 만든 것	**5%**	A
11041950	- - - 수수로 만든 것	**5%**	A
11041960	- - - 옥수수로 만든 것	**5%**	A
11041990	- - -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5%**	C
11042200	- - 귀리로 만든 것	**5%**	A
11042300	- - 옥수수로 만든 것	**5%**	C
11042910	- - - 밀로 만든 것	**5%**	C
11042920	- - - 호밀로 만든 것	**5%**	C
11042930	- - - 메밀로 만든 것	**5%**	C
11042940	- - - 밀리트(millet)로 만든 것	**5%**	C
11042950	- - - 수수로 만든 것	**5%**	C
11042990	- - -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5%**	C
11043000	- 곡물의 씨눈[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	**5%**	B
11051010	- - - 고운 가루	**5%**	C
11051020	- - - 거친 가루	**5%**	A
11051030	- - - 가루	**5%**	A
11052000	- 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	**5%**	C
11061011	- - - - 완두의 것	**5%**	A
11061012	- - - - 이집트 콩의 것	**5%**	A
11061013	- - - - 스트링 콩의 것	**5%**	A
11061014	- - - - 흰 강낭콩의 것	**5%**	A
11061015	- - - - 렌즈콩의 것	**5%**	A
11061016	- - - - 강낭콩의 것	**5%**	A

11061019	- - - - 기타	**5%**	A
11061021	- - - - 완두의 것	**5%**	A
11061022	- - - - 이집트 콩의 것	**5%**	A
11061023	- - - - 스트링 콩의 것	**5%**	A
11061024	- - - - 흰 강낭콩의 것	**5%**	A
11061025	- - - - 렌즈콩의 것	**5%**	A
11061026	- - - - 강낭콩의 것	**5%**	B
11061029	- - - - 기타	**5%**	A
11062010	- - - 사고(sago)의 고운 가루	**5%**	A
11062020	- - - 사고(sago)의 거친 가루	**5%**	A
11062031	- - - - 매니옥(Manioc)	**5%**	A
11062032	- - - - 칡뿌리	**5%**	A
11062033	- - - - 살렙(Salep)의 것	**5%**	A
11062034	- - - - 돼지감자의 것	**5%**	A
11062035	- - - - 고구마의 것	**5%**	A
11062039	- - - - 뿌리나 괴경(塊莖)의 것	**5%**	A
11063010	- - - 밤의 것	**5%**	A
11063020	- - - 아몬드의 것	**5%**	C
11063030	- - - 대추야자의 것	**5%**	A
11063040	- - - 바나나의 것	**5%**	A
11063050	- - - 코코넛의 것	**5%**	C
11063060	- - - 타마린드(tamarind)의 것	**5%**	A
11063070	- - - 과일 껍질의 것	**5%**	A
11063080	- - - 레몬의 것	**5%**	A
11063090	- - - 기타	**5%**	C
11071000	- 볶지 않은 것	**5%**	A
11072000	- 볶은 것	**5%**	A
11081100	- - 밀로 만든 것	**5%**	A
11081200	- - 옥수수로 만든 것	**5%**	C
11081300	- - 감자로 만든 것	**5%**	B
11081400	- -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으로 만든 것	**5%**	A
11081910	- - - 쌀 전분	**5%**	A
11081920	- - - 칡뿌리 전분	**5%**	A
11081930	- - - 사고(sago) 전분	**5%**	A
11081990	- - - 그 밖의 전분	**5%**	B
11082000	- 이눌린(inulin)	**5%**	A
11090000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5%**	A
12011000	- 종자	**0%**	A
12019010	- - - 온전한 알갱이 모양의 것	**0%**	A
12019020	- - - 부순 알갱이 모양의 것	**0%**	A
12023000	- 종자	**5%**	A
12024100	- - 꼬투리를 벗기지 않은 것	**5%**	B
12024200	- - 꼬투리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5%**	C
12030000	코프라(copra)	**5%**	A
12040000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5%**	A
12051000	-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의 씨	**5%**	B
12059000	- 기타	**5%**	A
120600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5%**	B
12071000	- 팜너트(palm nut)와 핵(核)	**5%**	A
12072100	- - 종자	**5%**	A
12072900	- - 기타	**5%**	A
12073000	- 피마자	**5%**	A
12074000	- 참깨	**5%**	A
12075000	- 겨자씨	**5%**	B
12076000	- 잇꽃[카르타무스 틴크토리우스(Carthamus tinctorius)] 종자	**5%**	A
12077000	- 멜론 종자	**5%**	A
12079100	- - 양귀비씨	**금지**	PH
12079910	- - - 양귀비	**금지**	PH
12079920	- - - 삼씨	**금지**	PH
12079990	- - - 기타	**5%**	A
12081000	- 대두로 만든 것	**5%**	C
12089000	- 기타	**5%**	A
12091000	- 사탕무 종자	**0%**	A
12092100	- - 루우산(lucerne)(알팔파) 종자	**0%**	A
12092200	- - 클로버(clover)[트리폴리엄(Trifolium)속] 종자	**0%**	A
12092300	- - 페스큐(fescue) 종자	**0%**	A
12092400	- - 켄터키블루그래스(kentucky blue grass)[포아프래텐시스 엘(Poa pratensis L.)] 종자	**0%**	A
12092500	- - 라이그래스(rye grass) 종자[로리엄 멀티플로럼 램(Lolium multiflorum Lam)・로리엄 페레네 엘(Lolium perenne L.)]	**0%**	A
12092910	- - - 루핀(Lupine)	**0%**	A
12092990	- - - 기타	**0%**	A
12093000	- 화초용 초본(草本)식물의 종자	**0%**	A
12099110	- - - 토마토 종자	**0%**	A
12099120	- - - 리크(leek) 종자	**0%**	A
12099130	- - - 무 종자	**0%**	A
12099140	- - - 당근 종자	**0%**	A
12099150	- - - 오이 종자	**0%**	A
12099160	- - - 호박 종자(Marrow seeds)	**0%**	A
12099170	- - - 호박 종자(Pumpkin seeds)	**0%**	A
12099180	- - - 가지 종자	**0%**	A

12099191	- - - - 상추 종자	**0%**	A
12099192	- - - - 크레스(cress) 종자	**0%**	A
12099193	- - - - 고추 종자[캐시컴(Capsicum)속 또는 피맨타(Pimenta)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0%**	A
12099199	- - - - 기타	**0%**	A
12099900	- - 기타	**0%**	A
12101000	- 홉(hop)[잘게 부순 것・가루 모양・펠릿(pellet) 모양은 제외한다]	**5%**	A
12102000	- 홉(hop)[잘게 부순 것・가루 모양・펠릿(pellet) 모양으로 한정한다], 루플린(lupulin)	**5%**	A
12112000	- 인삼	**5%**	B
12113000	- 코카잎	**금지**	PH
12114000	- 양귀비줄기	**금지**	PH
12115000	- 마황(麻黃)	**5%**	A
12116000	- 아프리카 체리(Prunus africana)나무의 껍질	**5%**	C
12119010	- - - 블랙 커민(Black cumin)	**5%**	A
12119020	- - - 검은 양귀비	**금지**	PH
12119030	- - - 침향나무의 칩과 조각 및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나무	**5%**	B
12119040	- - - 민트	**5%**	C
12119050	- - - 사막꽃	**5%**	B
12119060	- - - 대마(Cannabis sativa)	**금지**	PH
12119070	- - - 치아 청결용 아라크 뿌리[수왁(suwak)]	**5%**	B
12119081	- - - - 조제된 씹는 인도 빤[베텔(betel)](담배를 함유하지 않은 것)	**금지**	PH
12119089	- - - - 그 밖의 인디언 베텔 나뭇잎(betel leaves)	**5%**	A
12119091	- - - - 카트[카타 이듈리스(Catha edulis)]	**금지**	PH
12119099	- - - - 기타	**5%**	C
12122100	- - 식용	**5%**	A
12122900	- - 기타	**5%**	A
12129100	- - 사탕무	**5%**	A
12129200	- - 로커스트콩(locust bean)(캐롭)	**5%**	A
12129300	- - 사탕수수	**5%**	B
12129400	- - 치커리(chicory) 뿌리	**5%**	A
12129910	- - - 멜론 종자	**5%**	C
12129940	- - - 호박류 종자	**5%**	C
12129950	- - - 살구・복숭아 및 자두의 핵	**5%**	A
12129990	- - - 기타	**5%**	C
12130010	- - - 건초	**0%**	A
12130090	- - - 기타	**0%**	A
12141000	-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0%**	A
12149010	- - - 루핀(lupine)	**0%**	A
12149020	- - - 베치(vetch)	**0%**	A
12149090	- - - 기타	**0%**	A
13012000	- 아라비아 검	**5%**	C
13019010	- - - 트라가칸트(Tragacanth)	**5%**	A
13019020	- - - 매스틱(mastic)	**5%**	A
13019030	- - - 안식향(benzoin)	**5%**	A
13019040	- - - 아위(Asafetida)	**5%**	A
13019050	- - - 몰약(myrrh)	**5%**	A
13019060	- - - 올리바눔(Olibanum)	**5%**	A
13019070	- - - 유향(乳香)(Frankincense)	**5%**	A
13019080	- - - 소합향(storax)	**5%**	A
13019091	- - - - 검 수지	**5%**	A
13019092	- - - - 올레오레진(oleoresin)	**5%**	A
13019093	- - - - 발삼(balsam)	**5%**	A
13019099	- - - - 기타	**5%**	A
13021100	- - 아편	**금지**	PH
13021200	- - 감초로 만든 것	**5%**	A
13021300	- - 홉(hop)으로 만든 것	**5%**	A
13021400	- - 마황(麻黃)으로 만든 것	**5%**	A
13021910	- - - 하시시(hashish)	**금지**	PH
13021920	- - - 인삼 추출물(extract)	**5%**	A
13021930	- - - 타히나(참깨 진액)	**5%**	C
13021940	- - - 알로에	**5%**	A
13021950	- - - 몰약(myrrh)	**5%**	A
13021960	- - - 만닛트(Mannite)	**5%**	A
13021970	- - - 그 밖의 의료용 추출물(extract)	**5%**	A
13021990	- - - 기타	**5%**	A
13022000	- 펙틴질・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5%**	A
13023100	- - 한천	**5%**	A
13023200	- - 로커스트콩(locust bean)・로커스트콩(locust bean)의 씨나 구아(guar)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5%**	C
13023900	- - 기타	**5%**	C
14011000	- 대나무	**5%**	A
14012000	- 등나무	**5%**	A
14019010	- - - 버드나무 가지(osier)	**5%**	A
14019020	- - - 갈대	**5%**	A
14019090	- - - 기타	**5%**	A
14042000	- 면(綿) 린터(linter)	**5%**	A
14049010	- - - 단추・구슬・묵주 등 제조에 사용되는 조각용 종자・씨・껍질과 너트	**5%**	A
14049020	- - - 헨나	**5%**	A
14049090	- - - 기타	**5%**	A
15011000	- 라드(lard)	**특별관심품목**	SG

15012000	- 그 밖의 돼지의 지방	**특별관심품목**	SG
15019000	- 기타	**5%**	A
15021000	- 탤로우(tallow)	**5%**	A
15029000	- 기타	**5%**	A
15030011	- - - - 돼지의 것	**특별관심품목**	SG
15030019	- - - - 기타	**5%**	A
15030021	- - - - 돼지의 것	**특별관심품목**	SG
15030029	- - - - 기타	**5%**	A
15030091	- - - - 돼지의 것	**특별관심품목**	SG
15030099	- - - - 기타	**5%**	A
15041000	- 어류의 간유(肝油)와 그 분획물	**5%**	B
15042000	-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간유(肝油)는 제외한다]	**5%**	C
15043000	-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	**5%**	A
15050000	울그리스(wool grease)와 이것에서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lanolin)을 포함한다]	**5%**	C
15060000	그 밖의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5%**	A
15071000	- 조유(粗油)[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5%**	C
15079000	- 기타	**5%**	X
15081000	- 조유(粗油)	**5%**	B
15089000	- 기타	**5%**	A
15092000	-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5%**	X
15093000	- 버진 올리브유	**5%**	A
15094000	- 그 밖의 버진 올리브유	**5%**	A
15099000	- 기타	**5%**	X
15101000	- 올리브 퍼미스 조유(粗油)	**5%**	C
15109000	- 기타	**5%**	C
15111000	- 조유(粗油)	**5%**	C
15119000	- 기타	**5%**	B
15121100	- - 조유(粗油)	**5%**	C
15121900	- - 기타	**5%**	X
15122100	- - 조유(粗油)[고시폴(gossypol)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5%**	A
15122900	- - 기타	**5%**	A
15131100	- - 조유(粗油)	**5%**	A
15131900	- - 기타	**5%**	B
15132100	- - 조유(粗油)	**5%**	A
15132900	- - 기타	**5%**	A
15141100	- - 조유(粗油)	**5%**	A
15141900	- - 기타	**5%**	X
15149100	- - 조유(粗油)	**5%**	C
15149900	- - 기타	**5%**	X
15151100	- - 조유(粗油)	**5%**	A
15151900	- - 기타	**5%**	X
15152100	- - 조유(粗油)	**5%**	B
15152900	- - 기타	**5%**	X
15153000	-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5%**	A
15155000	- 참기름과 그 분획물	**5%**	C
15156000	-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5%**	A
15159000	- 기타	**5%**	X
15161000	-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5%**	X
15162000	-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5%**	X
15163000	-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5%**	A
15171010	- - - 동물성의 것	**5%**	C
15171020	- - - 식물성의 것	**5%**	X
15171090	- - - 기타	**5%**	C
15179010	- - - 액상 마가린	**5%**	X
15179090	- - - 기타	**5%**	X
15180011	- - - - 돼지의 것	**특별관심품목**	SG
15180019	- - - - 기타	**5%**	A
15180020	- - - 식물성의 것	**5%**	X
15180090	- - - 기타	**5%**	X
15200010	- - - 가공하지 않은 글리세롤	**5%**	A
15200020	- - - 글리세롤 수(水), 글리세롤 폐액(廢液)	**5%**	A
15211000	- 식물성 왁스	**5%**	A
15219010	- - - 고래 왁스(가공하지 않은 것・압착한 것이나 정제한 것・착색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15219020	- - - 밀랍(蜜蠟)(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A
15219040	- - - 그 밖의 곤충 왁스(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A
15220010	- - - 데그라스(질산 처리한 어유로 한정한다)	**5%**	A
15220020	- - - 지방성 물질 또는 동물성・식물성 물질을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5%**	A
16010011	- - - - 돼지의 것	**특별관심품목**	SG
16010012	- - - - 동물 피의 것	**특별관심품목**	SG
16010020	- - - 소의 것	**5%**	X
16010030	- - - 가금(家禽)류의 것	**5%**	X
16010090	- - - 기타	**5%**	X
16021010	- - - 영유아・어린이용 식품	**5%**	A
16021090	- - - 기타	**5%**	A
16022000	- 동물 간으로 만든 것	**5%**	A
16023100	- - 칠면조로 만든 것	**5%**	X

16023200	-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	**5%**	C
16023900	- - 기타	**5%**	C
16024100	- -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특별관심품목**	SG
16024200	- - 어깨살과 그 절단육	**특별관심품목**	SG
16024900	-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특별관심품목**	SG
16025010	- - - 파스트라미(양념・건조・조제된 육)	**5%**	C
16025090	- - - 기타(캔 포장된 것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16029010	- - - 육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조제 식료품(즉석식품으로 한정한다)	**5%**	X
16029021	- - - - 혀	**5%**	A
16029029	- - - - 기타[간(livers)은 제외한다]	**5%**	A
16029031	- - - - 돼지의 피 조제품	**특별관심품목**	SG
16029039	- - - - 기타	**특별관심품목**	SG
16029090	- - - 기타	**5%**	X
16030010	- - - 육 추출물(extract)과 육즙(meat juice)	**5%**	A
16030020	- - -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	**5%**	A
16041100	- - 연어	**5%**	B
16041200	- - 청어	**5%**	A
16041300	- - 정어리・사르디넬라(Sardinella)・브리스링(brisling)・스프랫(sprat)	**5%**	A
16041400	- - 다랑어・가다랑어・버니토(bonito)[사르다(Sarda)속]	**5%**	X
16041500	- - 고등어	**5%**	B
16041600	- - 멸치	**5%**	B
16041700	- - 뱀장어	**5%**	A
16041800	- - 상어 지느러미	**5%**	A
16041900	- - 기타	**5%**	X
16042000	-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5%**	X
16043100	- - 캐비어	**5%**	A
16043200	- - 캐비어 대용물	**5%**	A
16051000	- 게	**5%**	B
16052100	- -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5%**	X
16052900	- - 기타	**5%**	X
16053000	- 바닷가재	**5%**	B
16054000	- 그 밖의 갑각류	**5%**	A
16055100	- - 굴	**5%**	C
16055200	- - 가리비과의 조개(여왕 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5%**	C
16055300	- - 홍합	**5%**	C
16055400	- - 갑오징어와 오징어	**5%**	C
16055500	- - 문어	**5%**	A
16055600	- - 클램(clam), 새조개, 피조개	**5%**	A
16055700	- - 전복	**5%**	A
16055800	- -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5%**	A
16055900	- - 기타	**5%**	C
16056100	- - 해삼	**5%**	A
16056200	- - 성게	**5%**	A
16056300	- - 해파리	**5%**	A
16056900	- - 기타	**5%**	B
17011210	- - - 공업 정제용	**0%**	A
17011290	- - - 기타	**0%**	A
17011310	- - - 공업 정제용	**0%**	A
17011390	- - - 기타	**0%**	A
17011410	- - - 공업 정제용	**0%**	A
17011490	- - - 기타	**0%**	A
17019100	- -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0%**	A
17019911	- - - - 고순도 결정체	**0%**	A
17019912	- - - - 큐브(cube) 또는 몰드(mould) 형태의 것	**0%**	A
17019913	- - - - 가루	**0%**	A
17019920	- - - 락 캔디(설탕 캔디)(착색되지도 향이 첨가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17019930	- - -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	**0%**	A
17019990	- - - 기타	**0%**	A
17021100	- - 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유당(乳糖)[무수유당(無水乳糖)]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것	**5%**	A
17021900	- - 기타	**5%**	A
17022000	- 단풍당과 단풍당시럽	**5%**	C
17023000	-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과당을 함유하지 않거나 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5%**	C
17024000	-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5%**	A
17025000	-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5%**	A
17026000	- 그 밖의 과당과 과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5%**	B
17029010	- - - 맥아당(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B
17029020	- - - 자당(화학적으로 순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17029030	- - - 전화당(轉化糖)(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B
17029040	- - - 과당(화학적으로 순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17029050	- - - 그 밖의 액체 당(농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착색되지도 향이 첨가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C
17029060	- - - 캐러멜당	**5%**	C

17029070	- - - 인조꿀	**5%**	C
17029090	- - - 기타	**5%**	C
17031000	-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糖蜜)	**5%**	C
17039000	- 기타	**5%**	B
17041000	- 추잉껌(당을 도포하였는지에 상관없다)	**5%**	C
17049010	- - - 캔디류[드롭스(drops)와 봉봉(bonbon)]	**5%**	C
17049020	- - - 토피(캐러멜), 터키쉬 딜라이트(Turkish delight), 누가(nougat)	**5%**	A
17049030	- - - 아몬드 캔디・피스타치오 캔디・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A
17049040	- - - 과실 젤리・ 과실 페이스트・감초 당 (과자로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5%**	C
17049050	- - - 진해정(鎭咳錠, cough drops)	**5%**	A
17049060	- - - 할라와 타히니아(Halawa tahiniah)	**5%**	B
17049070	- - - 과일향을 함유한 캔디류 분말	**5%**	B
17049080	- - - 알코올을 함유한 백색 초콜릿	**특별관심품목**	SG
17049090	- - - 기타	**5%**	C
18010000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18020000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5%**	A
18031000	-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5%**	A
18032000	- 전부나 일부를 탈지(脫脂)한 것	**5%**	A
18040000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5%**	A
18050000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5%**	C
18061011	- - -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펩톤이나 우유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18061019	- - - - 기타	**5%**	C
18061091	- - - - 그 밖의 코코아 가루 (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18061099	- - - - 기타	**5%**	C
18062010	- - - 코코아를 함유한 아이스크림 제조용 가루	**5%**	C
18062020	- - - 코코아를 함유한 과자	**5%**	C
18062031	- - -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펩톤이나 우유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18062039	- - - - 기타	**5%**	C
18062090	- - - 기타	**5%**	C
18063110	- - - 알코올을 함유한 것	**특별관심품목**	SG
18063190	- - - 기타	**5%**	C
18063210	- - - 알코올을 함유한 것	**특별관심품목**	SG
18063290	- - - 기타	**5%**	C
18069010	- - - 코코아를 함유한 아이스크림 제조용 가루	**5%**	C
18069020	- - - 코코아를 함유한 과자	**5%**	A
18069031	- - -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펩톤이나 우유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B
18069039	- - - - 기타	**5%**	C
18069091	- - - - 음료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그 밖의 제품	**5%**	B
18069099	- - - - 기타	**5%**	C
19011010	- - - 밀크 또는 맥아 밀크(malted milk)를 기본 재료로 한 영유아・어린이용 식품(모유 대용물로 조제된 것으로서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19011020	- - - 밀크 또는 맥아 밀크(malted milk)를 기본 재료로 한 영유아・어린이용 식품(모유 대용물로 조제된 것으로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19011090	- - - 기타	**0%**	A
19012010	- - - 과일 가루와 혼합한 곡물 가루(코코아 가루를 첨가한 것)	**5%**	X
19012020	- - - 주로 곡물의 고운 가루(cereal flour)에 설탕・지방・알이나 과실을 미리 혼합하여 만든 가루반죽(dough)	**5%**	X
19012090	- - - 기타	**5%**	X
19019011	- - - - 라카우(racahout)(음료 산업용으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C
19019012	- - - - 라카우(racahout)(음료 산업용으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19019019	- - - - 기타	**5%**	C
19019021	- - - - 맥아 밀크(malted milk)(음료 산업용으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B
19019022	- - - - 맥아 밀크(malted milk)(음료 산업용으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X
19019029	- - - - 기타	**5%**	A
19019030	- - - 아이스크림 제조용 가루	**5%**	C
19019091	- - - - 기타(음료 산업용으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B
19019092	- - - - 기타(음료 산업용으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B
19019099	- - - - 기타	**5%**	X
19021110	- - - 마카로니・버미셀리(vermicelli) 와 이와 유사한 스파게티와 카넬로니(cannelloni)(조개・ 별・문자 모양 및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5%**	C
19021120	- - - 파스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19021130	- - - 감자 가루 칩(마카로니 모양의 것으로서 조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X
19021190	- - - 기타	**5%**	X
19021910	- - - 마카로니・버미셀리(vermicelli) 와 이와 유사한 스파게티와 카넬로니(cannelloni)(조개・ 별・문자 모양 및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5%**	X
19021920	- - - 파스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19021930	- - - 감자 가루 칩(마카로니 모양의 것으로서 조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X
19021990	- - - 기타	**5%**	X
19022010	- - - 육으로 속을 채운 것	**5%**	X
19022020	- - - 어류・갑각류・연체동물로 속을 채운 것	**5%**	C
19022090	- - - 기타	**5%**	X
19023000	- 그 밖의 파스타	**5%**	C
19024000	- 쿠스쿠스(couscous)	**5%**	A
19030000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flake) 모양・낟알 모양・진주 모양・무거리 모양・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5%**	C
19041010	- - - 코코아를 함유한 것	**5%**	C
19041091	- - - - 콘 플레이크(corn flake)와 이와 유사한 것	**5%**	C
19041099	- - - - 기타	**5%**	C
19042011	- - - - 코코아를 함유한 것	**5%**	A
19042019	- - - - 기타	**5%**	A
19042021	- - - - 코코아를 함유한 것	**5%**	A
19042029	- - - - 기타	**5%**	A
19043010	- - - 코코아를 함유한 것	**5%**	A
19043090	- - - 기타	**5%**	B
19049010	- - - 코코아를 함유한 것	**5%**	C
19049090	- - - 기타	**5%**	C
19051000	- 귀리빵	**5%**	C
19052000	- 생강과자(gingerbread)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A
19053100	- - 스위트 비스킷	**5%**	C
19053200	- - 와플과 웨이퍼	**5%**	C
19054010	- - - 러스크(rusk)	**5%**	C
19054090	- - - 기타	**5%**	C
19059010	- - - 모든 종류의 보통의 빵	**5%**	C
19059020	- - - 글루텐(gluten) 빵(당뇨병 환자용의 것)	**5%**	C
19059030	- - - 페이스트리(pastry)(피자를 포함한다)	**5%**	C
19059040	- - - 이스턴 사탕과자[크나페(kunafah)・바클라바(Baklava) 및 이와 유사한 것]	**5%**	C
19059050	- - - 케이크[가토(gateau)]와 이와 유사한 것	**5%**	C
19059060	- - -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5%**	C
19059070	- - - 실링웨이퍼(sealing wafer)	**5%**	C
19059080	- - - 바삭하며 짭잘한 맛의 식품(예: 팝콘・칩과 이와 유사한 것)(바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C
19059091	- - - - 효모를 사용하지 않은 빵	**5%**	C
19059092	- - - - 프레쩰(pretzel)	**5%**	C
19059093	- - - - 보통의 비스킷(가염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C
19059099	- - - - 기타	**5%**	C
20011000	- 오이류	**5%**	A
20019011	- - - - 버섯과 송로(松露)	**5%**	A
20019012	- - - - 올리브와 케이퍼	**5%**	A
20019013	- - - - 녹색 고추	**5%**	B
20019014	- - - - 피클(여러 종류를 혼합한 것)	**5%**	C
20019015	- - - - 토마토	**5%**	A
20019019	- - - - 기타	**5%**	B
20019020	- - - 과실・견과류	**5%**	A
20021000	-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	**5%**	A
20029010	- - - 토마토 페이스트(paste)	**5%**	A
20029090	- - - 기타	**5%**	A
20031000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5%**	A
20039000	- 기타	**5%**	A
20041000	- 감자	**5%**	C
20049010	- - - 당근	**5%**	A
20049020	- - - 완두	**5%**	C
20049030	- - - 흰 강낭콩	**5%**	C
20049040	- - - 강낭콩	**5%**	A
20049050	- - - 아스파라거스(asparagus)	**5%**	A
20049060	- - - 시금치	**5%**	A
20049070	- - - 오크라(Okra)	**5%**	A
20049080	- - - 채소 혼합물	**5%**	C
20049090	- - - 기타	**5%**	C
20051010	- - - 영유아・어린이용	**5%**	A
20051020	- - - 식이요법용	**5%**	A
20051090	- - - 기타	**5%**	A
20052000	- 감자	**5%**	C
20054000	-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5%**	B
20055100	- - 꼬투리를 벗긴 콩	**5%**	A
20055900	- - 기타	**5%**	A
20056000	- 아스파라거스(asparagus)	**5%**	A
20057000	- 올리브	**5%**	C
20058000	-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5%**	A
20059100	- - 죽순	**5%**	B
20059911	- - - - 풀 메담메스(foul medamas)(조리된 콩)	**5%**	C
20059912	- - - - 타히나(tahinah)(참기름)와 함께 조리된 이집트 콩	**5%**	C
20059913	- - - - 소스를 첨가한 야채와 두류	**5%**	C
20059919	- - - - 기타	**5%**	C
20059991	- - - - 오크라(Okra)	**5%**	A

20059992	- - - - 말 먹이용 콩	**5%**	C
20059993	- - - - 시금치	**5%**	A
20059994	- - - - 아티초크(artichoke)	**5%**	A
20059995	- - - - 채소 혼합물	**5%**	C
20059996	- - - - 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	**5%**	A
20059997	- - - - 포도 잎	**5%**	A
20059999	- - - - 그 밖의 채소와 식물	**5%**	B
20060000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draine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5%**	C
20071010	- - - 영유아・어린이용 식품과 유사한 것	**5%**	A
20071020	- - - 식이요법용	**5%**	A
20071090	- - - 기타	**5%**	A
20079110	- - - 마멀레이드(marmalade)	**5%**	A
20079190	- - - 기타	**5%**	A
20079911	- - - - 복숭아	**5%**	A
20079912	- - - - 살구	**5%**	A
20079913	- - - - 사과	**5%**	A
20079914	- - - - 수박	**5%**	A
20079915	- - - - 체리	**5%**	A
20079916	- - - - 딸기	**5%**	B
20079917	- - - - 라즈베리	**5%**	B
20079919	- - - - 기타	**5%**	B
20079920	- - - 살구 시트(sheet)	**5%**	A
20079930	- - - 터키쉬 딜라이트(Turkish delight)	**5%**	A
20079990	- - - 기타	**5%**	C
20081110	- - - 볶은 땅콩(가염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A
20081120	- - - 피넛 버터	**5%**	A
20081911	- - - - 아몬드	**5%**	C
20081912	- - - - 피스타치오(pistachio)	**5%**	C
20081913	- - - - 헤즐너트(hazelnut)	**5%**	C
20081919	- - - - 기타	**5%**	C
20081920	- - - 혼합된 것	**5%**	C
20081990	- - - 기타	**5%**	A
20082010	- - - 알코올을 첨가한 것	**특별관심품목**	SG
20082090	- - - 기타	**5%**	C
20083010	- - - 알코올을 첨가한 것	**특별관심품목**	SG
20083090	- - - 기타	**5%**	B
20084010	- - - 알코올을 첨가한 것	**특별관심품목**	SG
20084090	- - - 기타	**5%**	A
20085010	- - - 알코올을 첨가한 것	**특별관심품목**	SG
20085090	- - - 기타	**5%**	A
20086010	- - - 알코올을 첨가한 것	**특별관심품목**	SG
20086090	- - - 기타	**5%**	A
20087010	- - - 알코올을 첨가한 것	**특별관심품목**	SG
20087090	- - - 기타	**5%**	A
20088010	- - - 알코올을 첨가한 것	**특별관심품목**	SG
20088090	- - - 기타	**5%**	A
20089100	- - 팜 하트(palm heart)	**5%**	A
20089310	- - - 주정을 첨가한 것	**특별관심품목**	SG
20089390	- - - 기타	**5%**	B
20089710	- - - 주정을 첨가한 것	**특별관심품목**	SG
20089790	- - - 기타	**5%**	A
20089910	- - - 주정을 첨가한 것	**특별관심품목**	SG
20089990	- - - 기타	**5%**	B
20091110	- - - 냉동 오렌지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20091120	- - - 냉동 오렌지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20091210	- - - 냉동하지 않은 오렌지주스(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B
20091220	- - - 냉동하지 않은 오렌지주스(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B
20091910	- - - 그 밖의 오렌지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C
20091920	- - - 그 밖의 오렌지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20092110	- - -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주스(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20092120	- - -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주스(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20092130	- - - 포멜로(pomelo) 주스(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20092140	- - - 포멜로(pomelo) 주스(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20092910	- - - 그 밖의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주스(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20092920	- - - 그 밖의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주스(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20092930	- - - 그 밖의 포멜로(pomelo) 주스(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20092940	- - - 그 밖의 포멜로(pomelo) 주스(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20093111	- - - - 레몬 주스(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C
20093112	- - - - 레몬 주스(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20093191	- - - - 그 밖의 감귤류 주스(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C
20093192	- - - - 그 밖의 감귤류 주스(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B
20093910	- - - 그 밖의 감귤류 주스(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C
20093920	- - - 그 밖의 감귤류 주스(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20094110	- - - 파인애플 주스(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B
20094120	- - - 파인애플 주스(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B
20094910	- - - 그 밖의 파인애플 주스(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20094920	- - - 그 밖의 파인애플 주스(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20095010	- - - 토마토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20095020	- - - 토마토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20096110	- - - 포도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20096120	- - - 포도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20096910	- - - 그 밖의 포도 주스(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B
20096920	- - - 그 밖의 포도 주스(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20097110	- - - 사과 주스(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C
20097120	- - - 사과 주스(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20097910	- - - 그 밖의 사과 주스(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C
20097920	- - - 그 밖의 사과 주스(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20098110	- - - 크랜베리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20098120	- - - 크랜베리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20098911	- - - - 대추야자 당밀(Date molasses)(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C
20098912	- - - - 대추야자 당밀(Date molasses)(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B
20098922	- - - - 망고 주스(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C
20098923	- - - - 망고 주스(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20098924	- - - - 망고 주스(농축한 것으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C
20098925	- - - - 망고 주스(농축한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20098932	- - - - 구아바 주스(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C
20098933	- - - - 구아바 주스(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20098934	- - - - 구아바 주스(농축한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20098935	- - - - 구아바 주스(농축한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20098942	- - - - 당근 주스(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20098943	- - - - 당근 주스(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20098944	- - - - 당근 주스(농축한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20098945	- - - - 당근 주스(농축한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20098991	- - - - 그 밖의 과일 · 채소로 된 그 밖의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B
20098992	- - - - 그 밖의 과일 · 채소로 된 그 밖의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C
20099020	- - - 혼합 주스(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C
20099030	- - - 혼합 주스(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20099040	- - - 혼합 주스(농축한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C
20099050	- - - 혼합 주스(농축한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21011100	- -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5%**	X
21011211	- - - - 인스턴트 조제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21011219	- - - - 기타	**5%**	X
21011220	- - - 커피 페이스트(paste)	**5%**	A
21011290	- - - 기타	**5%**	B
21012010	- - - 차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5%**	C
21012090	- - - 기타	**5%**	C
21013010	- - -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	**5%**	A
21013020	- - - 치커리 추출물(extract)이나 그 밖의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5%**	A
21021000	- 활성 효모	**5%**	A
21022010	- - - 식용 불활성 효모	**5%**	A
21022020	- - - 불활성 효모와 그 밖의 죽은 단세포 미생물(동물 사료용으로 한정한다)	**5%**	A
21022090	- - - 기타	**5%**	A
21023010	- - - 베이킹 파우더	**5%**	B
21023020	- - - 알자스(alsace) 효모	**5%**	A
21023090	- - - 기타	**5%**	B
21031000	- 간장	**5%**	C
21032000	- 토마토 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 소스	**5%**	X
21033010	- - - 겨자가루	**5%**	A
21033020	- - - 조제한 겨자	**5%**	A
21039010	- - - 마요네스	**5%**	X
21039020	- - - 칠리 소스	**5%**	C
21039030	- - - 셀러리 염	**5%**	C
21039090	- - - 기타	**5%**	C
21041000	-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5%**	C
21042000	-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5%**	C
21050000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	**5%**	X
21061000	-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5%**	C
21069010	- - - 식탁용 크림 제조용 파우더	**5%**	C
21069020	- - - 식탁용 젤리 제조용 파우더	**5%**	A
21069030	- - - 아이스크림 제조용 가루	**5%**	C
21069050	- - -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나 그 밖의 지방이나 기름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예: 고급 베이커리 제품용)	**5%**	C
21069060	- - - 설탕을 기본 재료로 한 페이스트(paste)[지방・밀크・견과류를 첨가한 것으로서 직접 과자로 섭취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나 초콜릿・팬시 비스킷(fancy biscuit)・파이(pie)・케이크(cake) 등의 충전제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C
21069070	- - - 단과자・껌 태블릿(tablet)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뇨병 환자용 인공감미료(예: 소르비톨)를 함유하는 것	**0%**	A
21069080	- - - 감미용 사카린[액체나 태블릿(tablet) 모양의 것]	**5%**	C
21069091	- - - - 천연이나 인조의 향료[예: 바닐린(vanillin)]를 기본 재료로 한 식용의 태블릿(tablet)	**5%**	C
21069092	- - - - 레몬에이드나 그 밖의 음료 제조용 조제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21069093	- - - -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로 부르는 조제품[식물 추출물(extract)・과일 농축물・꿀이나 과당을 기본 재료로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C
21069094	- - - - 꿀벌 로얄젤리가 풍부한 천연꿀	**5%**	C
21069095	- - - -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는 단백질 가수분해물로서 식품 조제에 사용하는 것	**5%**	C
21069096	- - - - 근육 성장용 조제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21069098	레몬에이드나 그 밖의 음료 제조용 조제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21069099	- - - - 기타	**5%**	C
22011010	- - - 천연 광천수	**5%**	C
22011020	- - - 인조 광천수	**5%**	C
22011030	- - - 탄산수	**5%**	C
22019010	- - - 천연수	**5%**	C
22019090	- - - 기타	**5%**	C
22021012	- - - - 향을 첨가한 광천수(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C
22021013	- - - - 선수용 광천수(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5%**	A
22021014	- - - - 차와 커피 음료(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5%**	C
22021018	- - - - 차와 커피 음료(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5%**	A
22021021	- - - - 레몬에이드[예: 세븐 업(Seven Up)]	**5%**	C
22021022	- - - - 오렌지음료[예: 미란다(Miranda)]	**5%**	C
22021023	- - - - 콜라[예: 펩시콜라(Pepsi Cola)]	**5%**	C
22021024	- - - - 에너지 음료	**5%**	C
22021025	- - - - 탄산수(소다)	**5%**	C
22021029	- - - - 기타	**5%**	B
22021092	- - - - 그 밖의 물(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22021099	- - - - 기타	**5%**	C

22029100	- -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주	**5%**	C
22029913	- - - 밀크나 밀크 대용물 함유량이 100분의 75 미만인 그 밖의 음료(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	**5%**	C
22029919	- - - - 기타	**5%**	C
22029923	- - - - 그 밖의 코코아를 기본 재료로 한 음료(탄산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22029929	- - - - 기타	**5%**	C
22029930	- - - 그 밖의 향을 첨가한 음료(탄산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22029993	- - - - 기타(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22029999	- - - - 기타	**5%**	C
22030000	맥주	**특별관심품목**	SG
22041000	-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특별관심품목**	SG
22042100	-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특별관심품목**	SG
22042200	- - 2리터 초과 10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특별관심품목**	SG
22042900	- - 기타	**특별관심품목**	SG
22043000	- 그 밖의 포도즙	**특별관심품목**	SG
22051000	-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특별관심품목**	SG
22059000	- 기타	**특별관심품목**	SG
22060000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청주(sake)],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	**특별관심품목**	SG
22071010	- - - 내과용	**5%**	A
22071090	- - - 기타	**5%**	C
22072011	- - - - 내과용	**0%**	A
22072019	- - - - 기타(변성하지 않은 에틸)	**5%**	C
22072090	- - - 기타	**특별관심품목**	SG
22082000	- 포도주나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특별관심품목**	SG
22083000	- 위스키류	**특별관심품목**	SG
22084000	-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특별관심품목**	SG
22085000	- 진(gin)과 제네바(geneva)	**특별관심품목**	SG
22086000	- 보드카	**특별관심품목**	SG
22087000	-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	**특별관심품목**	SG
22089011	- - - - 내과용	**5%**	A
22089019	- - - - 기타	**5%**	A
22089090	- - - 기타	**특별관심품목**	SG
22090010	- - - 식초	**5%**	C
22090020	- - - 식초 대용물	**5%**	C
23011000	- 육이나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과 수지박	**5%**	A
23012000	-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	**5%**	A
23021000	- 옥수수에서 나온 것	**5%**	C
23023000	- 밀에서 나온 것	**5%**	C
23024000	- 그 밖의 곡물에서 나온 것	**5%**	A
23025000	- 채두류(菜豆類)에서 나온 것	**5%**	A
23031000	-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5%**	A
23032000	-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5%**	A
23033000	-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	**5%**	A
230400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0%**	A
23050000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5%**	A
23061000	- 목화씨에서 나온 것	**5%**	A
23062000	- 아마씨에서 나온 것	**5%**	A
23063000	-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5%**	B
23064100	- -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5%**	A
23064900	- - 기타	**5%**	A
23065000	- 야자나 코프라(copra)에서 나온 것	**5%**	A
23066000	-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5%**	A
23069000	- 기타	**5%**	A
23070010	- - - 와인리스(wine lees)	**특별관심품목**	SG
23070020	- - - 생주석(argol)	**5%**	A
23080000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C
23091000	-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	A
23099010	- - - 어류와 관상용 조류 사료	**5%**	C
23099020	- - - 가금류(家禽類) 사료	**5%**	C
23099031	- - - - 식품을 함유한 염석	**5%**	C
23099039	- - - - 기타	**5%**	A
23099040	- - - 새끼 동물 사료용 밀크 대용물	**5%**	C
23099050	- - - 사료 산업용 농축 조제품	**5%**	C
23099090	- - - 기타	**5%**	C
24011000	- 잎담배[주맥(主脈)을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0%**	SG
24012000	- 잎담배[주맥(主脈)을 일부나 전부 제거한 것으로 한정한다]	**100%**	SG
24013010	- - - 잎담배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100%**	SG
24013090	- - - 기타	**100%**	SG

24021000	- 시가(cigar)・셔루트(cheroot)・시가릴로(cigarillo)(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100%**	SG
24022000	- 궐련(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100%**	SG
24029010	- - - 담배 대용물로 만든 시가(담배나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0%**	SG
24029020	- - - 담배 대용물로 만든 궐련(담배나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0%**	SG
24031100	-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	**100%**	SG
24031910	- - - 궐련용으로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담배	**100%**	SG
24031920	- - - 파이프용으로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담배	**100%**	SG
24031930	- - -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담배(소매용으로 한정한다)	**100%**	SG
24031940	- - - 도하(dokha) 흡연 파이프용으로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담배	**100%**	SG
24031990	- - - 기타	**100%**	SG
24039100	- -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100%**	SG
24039910	- - - 코 담배 제조용으로 압축하거나 용액에 담근 담배	**100%**	SG
24039921	- - - - 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씹을 수 있는 것과 코로 들이마실 수 있는 조제품[삼마(Sahmmah)와 스와이카(Suwaikah)]	**금지**	PH
24039922	- - - - 조제된 씹는 인도 빤[베텔(betel)](담배를 함유한 것)	**금지**	PH
24039929	- - - - 기타	**100%**	SG
24039930	- - - 코 담배	**100%**	SG
24039940	- - - 지락(Jirak)	**100%**	SG
24039950	- - - 담배의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essence)	**100%**	SG
24039990	- - - 기타	**100%**	SG
24041110	- - - 전기 가열식 담배 제품	**100%**	SG
24041190	- - - 기타	**100%**	SG
24041211	- - - - 향이 첨가된 것	**100%**	SG
24041212	- - - - 향이 첨가되지 않은 것	**100%**	SG
24041221	- - - - 향이 첨가된 것	**100%**	SG
24041222	- - - - 향이 첨가되지 않은 것	**100%**	SG
24041900	- - 기타	**100%**	SG
24049110	- - - 흡연을 포함한 담배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니코틴을 함유한 추잉껌	**5%**	A
24049120	- - - 흡연을 포함한 담배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태플릿(tablet) 모양의 것	**5%**	A
24049130	- - - 담배를 함유하고 있지 않은 일회용 경구(經口)용 니코틴 파우치(LYFT)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00%**	SG
24049191	- - - 기타(흡연을 포함한 담배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한정한다)	**5%**	A
24049199	- - - - 기타	**100%**	SG
24049210	- - - 흡연을 포함한 담배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패치	**5%**	A
24049291	- - - 기타(흡연을 포함한 담배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한정한다)	**5%**	A
24049299	- - - - 기타	**100%**	SG
24049910	- - - 흡연을 포함한 담배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스프레이	**5%**	A
24049920	- - - 흡연을 포함한 담배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점비제(Nose drops)	**5%**	A
24049930	- - - 흡연을 포함한 담배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주사	**5%**	A
24049990	- - - 기타	**100%**	SG
25010010	- - 소금(식탁염)	**5%**	C
25010020	- - - 변성염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5%**	A
25010030	- - - 순염화나트륨	**5%**	B
25010040	- - - 수용액	**5%**	C
25010090	- - - 기타	**5%**	C
25020000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25030000	황[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5%**	C
25041000	- 가루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	**5%**	A
25049000	- 기타	**5%**	A
25051000	- 규사	**5%**	C
25059000	- 기타	**5%**	C
25061010	- - - 가공하지 않은 천연의 것(톱질하지 않은 응집체의 형태로 한정한다)	**5%**	A
25061090	- - - 기타	**5%**	A
25062000	- 규암	**5%**	A
25070010	- - - 고령토	**5%**	C
25070090	- - - 기타	**5%**	A
25081000	- 벤토나이트(bentonite)	**5%**	C
25083000	- 내화(耐火)점토	**5%**	B
25084000	- 그 밖의 점토	**5%**	C
25085000	- 홍주석(紅柱石)・남정석(藍晶石)・규선석(硅線石)	**5%**	B
25086000	- 멀라이트(mullite)	**5%**	A
25087000	- 샤모트(chamotte),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5%**	A
25090010	- - - 잘게 부순 건설용 초크	**5%**	A
25090090	- - - 기타	**5%**	A
25101000	- 잘게 부수지 않은 것	**5%**	A
25102000	- 잘게 부순 것	**5%**	A
25111000	-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5%**	C
25112000	-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	**5%**	A
25120000	규조토[예: 키젤구어(kieselguhr)・트리폴리트(tripolite)・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A
25131000	- 부석	**5%**	A
25132010	- - - 금강사(金剛砂)	**5%**	A

25132020	- - - 천연 커런덤(corundum)	**5%**	B
25132030	- - - 천연 카넬리안(carnelian)	**5%**	A
25132040	- - - 트리폴리(tripoli)의 흙	**5%**	A
25132090	- - - 기타	**5%**	A
25140010	- - - 가공하지 않은 것(톱질한 블록 모양으로 한정한다)	**5%**	A
25140090	- - - 기타	**5%**	A
25151100	-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5%**	C
25151200	- -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5%**	C
25152010	- -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5%**	A
25152020	- - -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5%**	A
25161100	-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5%**	A
25161200	- -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5%**	C
25162000	- 사암	**5%**	B
25169010	- -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5%**	A
25169020	- - -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5%**	A
25171000	- 자갈・왕자갈・쇄석(碎石)[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A
25172000	-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소호 제2517.10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B
25173000	- 타르 머캐덤(tarred macadam)	**5%**	A
25174100	- - 대리석으로 만든 것	**5%**	A
25174900	- - 기타	**5%**	A
25181010	- - - 가공하지 않은 것(거칠게 다듬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5%**	C
25181020	- - -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5%**	A
25182010	- - - 가공하지 않은 것(거칠게 다듬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5%**	C
25182020	- - -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5%**	C
25191000	-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5%**	A
25199010	- - - 산화마그네슘	**5%**	B
25199090	- - - 기타	**5%**	A
25201010	- - - 석고	**5%**	C
25201020	- - - 무수(無水)석고	**5%**	A
25202010	- - - 치과용 플라스터(plaster)	**5%**	B
25202090	- - - 기타	**5%**	C
25210000	석회석 융제(融劑), 석회석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석회나 시멘트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5%**	C
25221000	- 생석회(生石灰)	**5%**	A
25222000	- 소석회(消石灰)	**5%**	C
25223000	- 수경성(水硬性) 석회	**5%**	A
25231000	- 시멘트 클링커(clinker)	**5%**	A
25232100	- - 백색 시멘트(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A
25232910	- - - 보통 시멘트	**5%**	C
25232920	- - - 내황산염 시멘트	**5%**	C
25232990	- - - 기타	**5%**	A
25233000	-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5%**	C
25239000	- 그 밖의 수경성(水硬性) 시멘트	**5%**	C
25241000	- 청(靑)석면	**금지**	PH
25249010	- - - 녹섬석(양기석)	**금지**	PH
25249020	- - - 직섬석(anthophyllite)	**금지**	PH
25249030	- - - 갈(褐)석면	**금지**	PH
25249040	- - - 투각섬(tremolite)석	**금지**	PH
25249090	- - - 기타	**금지**	PH
25251000	- 가공하지 않은 운모와 시트(sheet) 모양의 운모나 쪼갠 운모	**5%**	B
25252000	- 운모 가루	**5%**	A
25253000	- 운모 웨이스트(waste)	**5%**	A
25261010	- - - 동석(凍石)	**5%**	A
25261020	- - - 활석(滑石)	**5%**	A
25262010	- - - 동석(凍石)	**5%**	A
25262020	- - - 활석(滑石)	**5%**	B
25280000	천연 붕산염과 그 정광(精鑛)[하소(煅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천연 염수(鹽水)에서 분리한 붕산염은 제외한다], 천연 붕산(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붕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A
25291000	- 장석(長石)	**5%**	A
25292100	- -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 이하인 것	**5%**	A
25292200	- -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을 초과하는 것	**5%**	A
25293000	-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5%**	A
25301000	- 질석(蛭石), 진주암(眞珠巖), 녹니석(綠泥石)(팽창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25302000	-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 황산마그네슘)	**5%**	A
25309011	- - - - 황화비소(쥐약)	**5%**	A
25309019	- - - - 기타	**5%**	A
25309020	- - - 해포석(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호박, 판(plaste), 막대(rod), 봉(stick) 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주조 후 가공하지 않은 응결한 해포석과 호박, 흑옥	**5%**	A
25309030	- - - 세라믹 파편	**5%**	A

25309040	- - - 어스컬러(earth colour)	**5%**	B
25309050	- - - 운석	**5%**	A
25309090	- - - 기타	**5%**	C
26011100	- - 응결시키지 않은 것	**5%**	A
26011200	- - 응결시킨 것	**5%**	B
26012000	- 배소(焙燒)한 황화철광	**5%**	A
26020000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5%**	A
260300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5%**	A
26040000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5%**	A
26050000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5%**	A
2606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5%**	A
26070000	납광과 그 정광(精鑛)	**5%**	A
26080000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5%**	C
26090000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5%**	A
26100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5%**	A
26110000	텅스텐광과 그 정광(精鑛)	**5%**	A
26121000	- 우라늄광과 그 정광	**5%**	A
26122000	- 토륨광과 그 정광	**5%**	A
26131000	- 배소(焙燒)한 것	**5%**	A
26139000	- 기타	**5%**	C
26140000	티타늄광과 그 정광(精鑛)	**5%**	C
26151000	-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	**5%**	A
26159000	- 기타	**5%**	A
26161000	- 은광과 그 정광	**5%**	A
26169000	- 기타	**5%**	A
26171000	-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	**5%**	A
26179000	- 기타	**5%**	A
261800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5%**	A
261900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5%**	A
26201100	- - 경(硬)아연 스펠터(spelter)	**5%**	A
26201900	- - 기타	**5%**	A
26202100	- - 유연(有鉛) 가솔린 슬러지(sludge)와 유연 안티녹(anti-knock) 화합물 슬러지	**5%**	A
26202900	- - 기타	**5%**	B
26203000	- 주로 구리를 함유하는 것	**5%**	A
26204000	-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5%**	C
26206000	- 비소, 수은, 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5%**	A
26209100	- -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이나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5%**	B
26209900	- - 기타	**5%**	A
26211000	-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5%**	A
26219000	- 기타	**5%**	C
27011100	- - 무연탄	**5%**	C
27011200	- - 유연탄	**5%**	A
27011900	- - 그 밖의 석탄	**5%**	A
27012000	-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5%**	A
27021000	- 갈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5%**	B
27022000	- 응결시킨 갈탄	**5%**	B
27030010	- - - 농지(農地)용이나 토양의 품질 개선용	**5%**	A
27030090	- - - 기타	**5%**	A
27040010	- - -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갈탄・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5%**	C
27040020	- - -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5%**	A
27050000	석탄가스・수성(水性)가스・발생로(發生爐)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5%**	A
27060000	석탄・갈탄・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그 밖의 광물성 타르(탈수나 부분 증류한 것과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5%**	A
27071000	- 벤조올(벤젠)	**5%**	A
27072000	- 톨루올(톨루엔)	**5%**	A
27073000	- 크실롤(크실렌)	**5%**	C
27074000	- 나프탈렌	**5%**	C
27075000	-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혼합물[아이・에스・오(ISO) 3405방법{에이・에스・티・엠 디(ASTM D)86과 동등}에 의하여 섭씨 250도에서 전 용량의 100분의 65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이 증류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C
27079100	- - 크레오소트(creosote)유	**5%**	C
27079900	- - 기타	**5%**	C
27081000	- 피치(pitch)	**5%**	C
27082000	- 피치코크스(pitch cokes)	**5%**	B
270900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5%**	C
27101211	- - - - 경질	**5%**	TR(50%를 5년에 걸쳐 인하)
27101212	- - - - 완전한(Whole) 것	**5%**	TR(50%를 5년에 걸쳐 인하)
27101213	- - - - 개질(改質)	**5%**	TR(50%를 5년에 걸쳐 인하)
27101214	- - - - 천연 가솔린	**5%**	TR(50%를 5년에 걸쳐 인하)
27101219	- - - - 기타	**5%**	C
27101221	- - - - 엔진용(항공기용은 제외한다)	**5%**	X
27101222	- - - - 제트기 엔진용(JP4)	**5%**	C
27101223	- - - - 그 밖의 항공기 엔진용	**5%**	C

27101229	- - - - 그 밖의 용도	**5%**	C
27101231	- - - - 엔진용	**5%**	X
27101232	- - - - 발전기용(선박용을 포함한다)	**5%**	C
27101233	- - - - 가열용	**5%**	C
27101239	- - - - 그 밖의 용도	**5%**	X
27101241	- - - - 선박용	**5%**	C
27101242	- - - - 부분 정제유(상압 증류)	**5%**	C
27101249	- - - - 기타	**5%**	C
27101911	- - - - 기유(基油)	**5%**	X
27101912	- - - - 불꽃점화식 엔진용(가솔린)	**5%**	X
27101913	- - - - 압축점화식 엔진용(디젤)	**5%**	C
27101914	- - - - 수동변속기용	**5%**	C
27101915	- - - - 자동변속기용	**5%**	C
27101919	- - - - 기타	**5%**	X
27101991	- - - - 절삭용	**5%**	C
27101992	- - - - 세척용	**5%**	C
27101993	- - - - 주형이형용	**5%**	C
27101994	- - - - 유압브레이크용	**5%**	C
27101995	- - - - 유압 및 터보 시스템용	**5%**	C
27101996	- - - - 변압기 및 차단기용	**5%**	C
27101997	- - - - 파라핀 오일이나 바셀린 오일과 같은 화이트 오일	**5%**	C
27101998	- - - - 기타 윤활유	**5%**	X
27101999	- - - 기타	**5%**	X
27102000	- 석유와 역청유(瀝青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인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5%**	C
27109100	- -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이나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5%**	C
27109900	- - 기타	**5%**	C
27111100	- - 천연가스	**5%**	C
27111200	- - 프로판	**5%**	C
27111300	- - 부탄	**5%**	C
27111400	- - 에틸렌・프로필렌・부틸렌・부타디엔	**5%**	C
27111900	- - 기타	**5%**	C
27112100	- - 천연가스	**5%**	C
27112900	- - 기타	**5%**	C
27121000	- 석유젤리	**5%**	C
27122010	- - - 양초 제조용	**5%**	C
27122020	- - - 성냥 함침용	**5%**	C
27122090	- - - 기타	**5%**	C
27129000	- 기타	**5%**	C
27131100	- - 하소(煆燒)하지 않은 것	**5%**	C
27131200	- - 하소(煆燒)한 것	**5%**	C
27132000	- 석유역청(瀝青)	**5%**	C
27139000	-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잔재물	**5%**	C
27141000	- 역청질 혈암(瀝青質 頁巖)・유모 혈암(油母 頁巖), 타르샌드(tar sand)	**5%**	B
27149010	- - - 천연의 역청(瀝青)과 아스팔트	**5%**	C
27149090	- - - 기타	**5%**	C
27150000	역청질(瀝青質) 혼합물[천연 아스팔트, 천연 역청(瀝青), 석유역청(瀝青), 광물성 타르, 광물성 타르 피치(tar 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예: 역청질 매스틱과 컷백)]	**5%**	C
27160000	전기에너지(임의의 호)	**5%**	A
28011000	- 염소	**5%**	A
28012000	- 요드	**5%**	A
28013010	- - - 플루오르	**5%**	A
28013020	- - - 브롬	**5%**	A
28020010	- - - 승화황(昇華黃) 이나 침강황(沈降黃)	**5%**	A
28020020	- - - 콜로이드황	**5%**	A
28030000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5%**	C
28041000	- 수소	**5%**	B
28042100	- - 아르곤	**5%**	C
28042910	- - - 헬륨	**5%**	C
28042920	- - - 네온	**5%**	A
28042990	- - - 기타	**5%**	C
28043000	- 질소	**5%**	B
28044000	- 산소	**5%**	B
28045000	- 붕소와 텔루르	**5%**	A
28046100	- -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5%**	A
28046900	- - 기타	**5%**	B
28047000	- 인	**5%**	A
28048000	- 비소	**5%**	A
28049000	- 셀렌	**5%**	B
28051100	- - 나트륨	**5%**	B
28051200	- - 칼슘	**5%**	C
28051910	- - - 리튬	**5%**	A
28051920	- - - 칼륨	**5%**	A
28051990	- - - 기타	**5%**	A
28053000	-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A
28054000	- 수은	**5%**	A

28061000	- 염화수소(염산)	**5%**	C
28062000	- 클로로황산	**5%**	A
28070010	- - - 황산	**5%**	C
28070020	- - - 발연황산(황산)	**5%**	A
28080010	- - - 질산	**5%**	C
28080020	- - - 황질산	**5%**	A
28091000	- 오산화인	**5%**	A
28092010	- - - 인산	**5%**	C
28092020	- - - 폴리인산	**5%**	A
28100010	- - - 붕소의 산화물	**5%**	A
28100020	- - - 붕산	**5%**	A
28111100	- -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르화수소산)	**5%**	C
28111200	- - 시안화수소(시안화수소산)	**5%**	C
28111920	- - - 황화수소	**5%**	A
28111930	- - - 요드화수소산	**5%**	A
28111990	- - - 기타	**5%**	C
28112100	- - 이산화탄소	**5%**	C
28112200	- - 이산화규소	**5%**	C
28112910	- - - 삼산화비소 또는 오산화비소	**5%**	A
28112990	- - - 기타	**5%**	C
28121100	- - 카보닐 디클로라이드(포스겐)	**5%**	A
28121200	- -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	**5%**	A
28121300	- -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	**5%**	A
28121400	- -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	**5%**	A
28121500	- - 설퍼 모노클로라이드	**5%**	A
28121600	- - 설퍼 디클로라이드	**5%**	A
28121700	- - 티오닐 클로라이드	**5%**	A
28121910	- - - 삼염화비소	**5%**	A
28121990	- - - 기타	**5%**	A
28129000	- 기타	**5%**	C
28131000	- 이황화탄소	**5%**	A
28139000	- 기타	**5%**	A
28141000	- 무수(無水)암모니아	**5%**	C
28142000	- 암모니아수	**5%**	A
28151100	- - 고체	**5%**	B
28151200	- - 수용액(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소다)	**5%**	C
28152000	-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5%**	C
28153000	- 과산화나트륨이나 과산화칼륨	**5%**	B
28161000	-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5%**	C
28164000	-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과산화물	**5%**	A
28170010	- - - 산화아연	**5%**	C
28170020	- - - 과산화아연	**5%**	A
28181000	-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A
28182000	- 산화알루미늄[인조 커런덤(corundum)은 제외한다]	**5%**	C
28183000	- 수산화알루미늄	**5%**	C
28191000	- 삼산화크로뮴	**5%**	C
28199000	- 기타	**5%**	C
28201000	- 이산화망간	**5%**	A
28209000	- 기타	**5%**	C
28211010	- - - 산화철(황색, 적색, 흑색)	**5%**	C
28211090	- - - 기타	**5%**	C
28212000	- 어스컬러(earth colour)	**5%**	A
28220000	산화코발트, 수산화코발트, 상관습(商慣習)상의 산화코발트	**5%**	C
28230000	산화티타늄	**5%**	C
28241000	- 일산화납[리사지(litharge)·메시코트(massicot)]	**5%**	A
28249010	- - - 이산화납	**5%**	A
28249090	- - - 기타	**5%**	A
28251000	-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5%**	A
28252000	-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	**5%**	C
28253000	- 산화바나듐과 수산화바나듐	**5%**	C
28254000	- 산화니켈과 수산화니켈	**5%**	A
28255010	- - - 산화구리	**5%**	A
28255020	- - - 수산화구리	**5%**	A
28256000	- 산화게르마늄과 이산화지르코늄	**5%**	B
28257000	- 산화몰리브덴과 수산화몰리브덴	**5%**	A
28258000	- 산화안티모니	**5%**	A
28259010	- - - 산화주석	**5%**	C
28259020	- - - 산화나트륨	**5%**	A
28259030	- - - 산화칼슘	**5%**	A
28259040	- - - 수산화칼슘을 함유하는 팽창성 파쇄제(膨脹性 破碎齊)와 이와 유사한 암석 파편	**5%**	C
28259060	- - - 수산화칼슘	**5%**	A
28259090	- - - 기타	**5%**	C
28261200	- - 플루오르화알루미늄	**5%**	B
28261900	- - 기타	**5%**	A
28263000	-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 빙정석(氷晶石)]	**5%**	B
28269000	- 기타	**5%**	A
28271000	- 염화암모늄	**5%**	A
28272000	- 염화칼슘	**5%**	C
28273100	- - 마그네슘 염화물	**5%**	C
28273200	- - 알루미늄 염화물	**5%**	A

28273500	- - 니켈 염화물	**5%**	B
28273920	- - - 코발트 염화물	**5%**	A
28273930	- - - 아연 염화물	**5%**	C
28273990	- - - 기타	**5%**	C
28274100	- - 산화염화구리와 수산화염화구리	**5%**	A
28274900	- - 기타	**5%**	A
28275100	- - 브롬화나트륨이나 브롬화칼륨	**5%**	A
28275900	- - 기타	**5%**	C
28276000	- 요드화합물과 산화요드화물	**5%**	A
28281000	- 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그 밖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5%**	A
28289010	- - -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5%**	A
28289020	- - - 하이포아염소산칼륨	**5%**	A
28289030	- - - 아염소산염	**5%**	A
28289040	- - - 하이포아브롬산염	**5%**	A
28289090	- - - 기타	**5%**	A
28291100	- - 염소산나트륨	**5%**	C
28291910	- - - 염소산칼륨	**5%**	A
28291920	- - - 염소산마그네슘	**5%**	A
28291990	- - - 기타	**5%**	A
28299011	- - - - 과염소산나트륨	**5%**	A
28299012	- - - - 과염소산마그네슘	**5%**	A
28299013	- - - - 과염소산암모늄	**5%**	A
28299019	- - - - 기타	**5%**	A
28299021	- - - - 브롬산칼륨	**5%**	A
28299029	- - - - 기타	**5%**	A
28299030	- - - 요오드산염과 과요오드산염	**5%**	A
28301000	- 황화나트륨	**5%**	A
28309000	- 기타	**5%**	C
28311000	- 아이티온산나트륨과 술폭실산나트륨	**5%**	A
28319000	- 기타	**5%**	A
28321000	- 아황산나트륨	**5%**	A
28322000	- 그 밖의 아황산염	**5%**	A
28323010	- - - 티오황산 나트륨	**5%**	A
28323020	- - - 티오황산 칼슘	**5%**	A
28323090	- - - 기타	**5%**	A
28331100	- - 황산이나트륨	**5%**	A
28331900	- - 기타	**5%**	A
28332100	- - 황산마그네슘	**5%**	C
28332200	- - 황산알루미늄	**5%**	A
28332400	- - 황산니켈	**5%**	A
28332500	- - 황산구리	**5%**	A
28332700	- - 황산바륨	**5%**	A
28332910	- - - 황산납	**5%**	A
28332920	- - - 황산칼슘과 무수(無水)황산칼슘	**5%**	A
28332930	- - - 황산철	**5%**	A
28332940	- - - 황산철(3가철)	**5%**	C
28332950	- - - 황산코발트	**5%**	A
28332960	- - - 주석황산염	**5%**	A
28332980	- - - 황산아연	**5%**	A
28332990	- - - 기타	**5%**	A
28333000	- 명반	**5%**	A
28334000	-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5%**	A
28341010	- - - 아질산나트륨	**5%**	A
28341020	- - - 아질산칼륨	**5%**	A
28341030	- - - 아질산납	**5%**	A
28341040	- - - 아질산칼슘	**5%**	A
28341050	- - - 아질산마그네슘	**5%**	A
28341060	- - - 아질산알루미늄	**5%**	C
28341070	- - - 아질산아연	**5%**	A
28341090	- - - 기타	**5%**	A
28342100	- - 질산칼륨	**5%**	C
28342910	- - - 질산나트륨	**5%**	A
28342920	- - - 질산납	**5%**	A
28342930	- - - 질산칼슘	**5%**	A
28342940	- - - 질산마그네슘	**5%**	A
28342950	- - - 질산알루미늄	**5%**	A
28342960	- - - 질산아연	**5%**	A
28342970	- - - 질산코발트	**5%**	A
28342980	- - - 질산암모늄	**5%**	A
28342990	- - - 기타	**5%**	A
28351000	-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와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5%**	B
28352200	- - 인산일나트륨이나 인산이나트륨	**5%**	A
28352400	- - 인산칼륨	**5%**	A
28352500	- -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5%**	A
28352600	- - 그 밖의 인산칼슘	**5%**	A
28352910	- - - 인산납	**5%**	A
28352920	- - - 인산철	**5%**	A
28352990	- - - 기타	**5%**	C
28353100	- -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5%**	A
28353910	- - - 나트륨산 피로인산염	**5%**	A

28353990	- - - 기타	**5%**	C
28362000	- 탄산이나트륨	**5%**	C
28363000	-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5%**	B
28364000	- 탄산칼륨	**5%**	C
28365000	- 탄산칼슘	**5%**	C
28366000	- 탄산바륨	**5%**	A
28369100	- - 탄산리튬	**5%**	A
28369200	- - 탄산스트론튬	**5%**	A
28369910	- - - 탄산아연	**5%**	A
28369990	- - - 기타	**5%**	B
28371100	- - 시안화나트륨과 산화시안화나트륨	**5%**	C
28371900	- - 기타	**5%**	B
28372000	- 시안착염	**5%**	A
28391100	- - 메타규산나트륨	**5%**	A
28391900	- - 기타	**5%**	C
28399000	- 기타	**5%**	C
28401100	- - 무수물(無水物)	**5%**	A
28401900	- - 기타	**5%**	C
28402000	- 그 밖의 붕산염	**5%**	A
28403000	-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5%**	A
28413000	- 중크롬산나트륨	**5%**	A
28415010	- - - 크롬산나트륨	**5%**	A
28415090	- - - 기타	**5%**	A
28416100	- - 과망간산칼륨	**5%**	B
28416900	- - 기타	**5%**	A
28417010	- - - 나트륨의 것	**5%**	A
28417090	- - - 기타	**5%**	A
28418000	-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wolframate)]	**5%**	A
28419010	- - - 알루미늄산나트륨	**5%**	A
28419090	- - - 기타	**5%**	A
28421000	- 규산의 겹염이나 착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5%**	A
28429000	- 기타	**5%**	A
28431000	- 콜로이드 귀금속	**5%**	B
28432100	- - 질산은	**5%**	A
28432910	- - - 아지드화 은	**5%**	A
28432920	- - - 아질산 은	**5%**	A
28432930	- - - 뇌산 은	**5%**	A
28432990	- - - 기타	**5%**	A
28433000	- 금 화합물	**5%**	C
28439000	- 그 밖의 화합물과 아말감(amalgam)	**5%**	C
28441010	- - - 의료용	**5%**	A
28441090	- - - 기타	**5%**	A
28442010	- - - 의료용	**5%**	C
28442090	- - - 기타	**5%**	A
28443010	- - - 의료용	**5%**	A
28443090	- - - 기타	**5%**	B
28444110	- - - 의료용	**0%**	A
28444190	- - - 기타	**0%**	A
28444210	- - - 의료용	**0%**	A
28444290	- - - 기타	**0%**	A
28444310	- - - 의료용	**0%**	A
28444390	- - - 기타	**0%**	A
28444410	- - - 의료용	**0%**	A
28444490	- - - 기타	**0%**	A
28445000	-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照射)]된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	**5%**	A
28451000	- 중수(重水)(산화 중수소)	**5%**	A
28452000	- 붕소-10을 농축한 붕소와 그 화합물	**5%**	A
28453000	- 리튬-6을 농축한 리튬과 그 화합물	**5%**	A
28454000	- 헬륨-3	**5%**	A
28459000	- 기타	**5%**	A
28461000	- 세륨화합물	**5%**	A
28469000	- 기타	**5%**	C
28470000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C
28491000	- 탄화칼슘	**5%**	A
28492000	- 탄화규소	**5%**	A
28499000	- 기타	**5%**	A
28500010	- - - 수소화물	**5%**	A
28500020	- - - 질화물	**5%**	A
28500031	- - - - 염소산나트륨	**5%**	A
28500032	- - - - 아지드화 납	**5%**	A
28500039	- - - - 기타	**5%**	A
28500040	- - - 규화물	**5%**	A
28500050	- - - 붕화물	**5%**	A
28521010	- - - 수은 티오시아네이트	**5%**	A
28521020	- - - 뇌산수은	**5%**	A
28521030	- - - 산화수은(황색, 적색, 흑색)	**5%**	A
28521040	- - - 염화수은	**5%**	A
28521050	- - - 요드화수은	**5%**	A
28521060	- - - 황산수은	**5%**	A
28521070	- - - 질산수은	**5%**	A

28521080	- - - 크롬산수은	**5%**	A
28521091	- - - 브롬화수은	**5%**	A
28521092	- - - 초산수은	**5%**	A
28521099	- - - 기타	**5%**	A
28529000	- 기타	**5%**	A
28531000	- 시아노겐 클로라이드(클로르시안)	**5%**	A
28539010	- - - 증류수, 전도도수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	**5%**	C
28539020	- - - 액체 공기와 압축 공기	**5%**	C
28539030	- - - 아말감(amalgam)(제2843호의 귀금속의 아말감은 제외한다)	**5%**	A
28539090	- - - 기타	**5%**	A
29011010	- - - 에탄	**0%**	A
29011020	- - - 부탄	**0%**	A
29011030	- - - 펜탄	**0%**	A
29011040	- - - 헥산	**0%**	A
29011050	- - - 헵탄	**0%**	A
29011060	- - - 옥탄	**0%**	A
29011090	- - - 기타	**0%**	A
29012100	- - 에틸렌	**0%**	A
29012200	- - 프로펜(프로필렌)	**0%**	A
29012300	- - 부텐(부틸렌)과 이들의 이성체	**0%**	A
29012400	- - 1,3-부타디엔과 이소프렌	**0%**	A
29012910	- - - 프로파디엔	**0%**	A
29012920	- - - 부타-1,2-디엔	**0%**	A
29012930	- - - 아세틸렌가스	**0%**	A
29012940	- - - 페닐아세틸렌	**0%**	A
29012950	- - - 메틸페닐아세틸렌	**0%**	A
29012960	- - - 부텐	**0%**	A
29012990	- - - 기타	**0%**	A
29021100	- - 시클로헥산	**0%**	A
29021900	- - 기타	**0%**	A
29022000	- 벤젠	**0%**	A
29023000	- 톨루엔	**0%**	A
29024100	- - 오르토-크실렌	**0%**	A
29024200	- - 메타-크실렌	**0%**	A
29024300	- - 파라-크실렌	**0%**	A
29024400	- - 혼합크실렌이성체	**0%**	A
29025000	- 스티렌	**0%**	A
29026000	- 에틸벤젠	**0%**	A
29027000	- 큐멘	**0%**	A
29029010	- - - 테트랄린	**0%**	A
29029020	- - - 나프탈렌	**0%**	A
29029090	- - - 기타	**0%**	A
29031100	- - 염화메탄(염화메틸)과 염화에탄(염화에틸)	**5%**	A
29031200	- -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5%**	C
29031300	- -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5%**	A
29031400	- - 사염화탄소	**5%**	A
29031500	- -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5%**	C
29031910	- - - 1,1,1-트리클로로에탄(클로로포름 메탄)	**5%**	A
29031990	- - - 기타	**5%**	A
29032100	- - 염화비닐(염화에틸렌)	**5%**	C
29032200	- - 삼염화에틸렌	**5%**	A
29032300	- -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5%**	A
29032900	- - 기타	**5%**	A
29034100	- - 트리플루오로메탄(HFC-23)	**5%**	C
29034200	- - 디플루오로메탄(HFC-32)	**5%**	C
29034300	- - 플루오로메탄(HFC-41), 1,2-디플루오로에탄(HFC-152)과 1,1-디플루오르에탄(HFC-152a)	**5%**	A
29034400	- -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 1,1,1-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a)과 1,1,2-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	**5%**	A
29034500	- -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과 1,1,2,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	**5%**	C
29034600	- - 1,1,1,2,3,3,3-헵타플루오로프로판(HFC-227ea), 1,1,1,2,2,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cb), 1,1,1,2,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ea)과 1,1,1,3,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fa)	**5%**	A
29034700	- - 1,1,1,3,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fa)과 1,1,2,2,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ca)	**5%**	A
29034800	- - 1,1,1,3,3-펜타플루오로부탄(HFC-365mfc)과 1,1,1,2,2,3,4,5,5,5-데카플루오로펜탄(HFC-43-10mee)	**5%**	A
29034900	- - 기타	**5%**	A
29035100	- - 2,3,3,3-테트라플루오르프로펜(HFO-1234yf), 1,3,3,3-테트라플루오르프로펜(HFO-1234ze)과 (Z)-1,1,1,4,4,4-헥사플루오르-2-부텐(HFO-1336mzz)	**5%**	A
29035910	- - - 1,1,3,3,3-펜타플루오로-2-(트리플루오로메틸)-1-프로펜	**5%**	A
29035990	- - - 기타	**5%**	A
29036100	- - 브롬화메틸(브로모메탄)	**5%**	A
29036200	- - 에틸렌 디브로마이드(ISO)(1,2-디브로모에탄)	**5%**	A
29036900	- - 기타	**5%**	A
29037100	- - 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CFC-22)	**5%**	C
29037200	- - 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HCFC-123)	**5%**	A
29037300	- - 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41, 141b)	**5%**	A
29037400	- - 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42, 142b)	**5%**	A
29037500	- - 디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HCFC-225, 225ca, 225cb)	**5%**	A

29037600	-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alon-1211), 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Halon-1301),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Halon-2402)	**5%**	C
29037710	- - -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	**5%**	A
29037720	- - - 펜타클로로플루오로프로펜에탄	**5%**	A
29037730	- - -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	**5%**	A
29037740	- - - 헵타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	**5%**	A
29037750	- - - 헥사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	**5%**	A
29037760	- - - 펜타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	**5%**	A
29037770	- - - 테트라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	**5%**	A
29037780	- - - 트리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	**5%**	A
29037791	- - - - 디클로로헥사플루오로프로판	**5%**	A
29037792	- - - - 클로로헵타플루오로프로판	**5%**	A
29037793	- - - -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	**5%**	A
29037794	- - - -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	**5%**	A
29037795	- - - - 클로로펜타플루오로에탄	**5%**	A
29037799	- - - - 기타	**5%**	A
29037800	- - 그 밖의 퍼할로겐화유도체	**5%**	A
29037910	- - - 불소와 염소만으로 할로겐화한 그 밖의 메탄, 에탄 또는 프로판 유도체	**5%**	A
29037920	- - 불소와 브롬만으로 할로겐화한 메탄, 에탄 또는 프로판 유도체	**5%**	A
29037930	- - - 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	**5%**	A
29037940	- - - 브로모클로로메탄	**5%**	A
29037990	- - - 기타	**5%**	C
29038100	- -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한다]	**5%**	A
29038200	- - 앨드린(ISO), 클로르덴(ISO), 헵타클로르(ISO)	**5%**	A
29038300	- - 미렉스(ISO)	**5%**	A
29038900	- - 기타	**5%**	A
29039100	- - 클로로벤젠, 오르토-디클로로벤젠, 파라-디클로로벤젠	**5%**	A
29039200	- - 헥사클로로벤젠(ISO)과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5%**	A
29039300	- - 펜타클로로벤젠(ISO)	**5%**	A
29039400	- - 헥사브로모비페닐	**5%**	A
29039900	- - 기타	**5%**	A
29041000	- 술폰화유도체와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	**5%**	C
29042010	- - - 니트로벤젠과 트리니트로벤젠과 니트로메탄	**5%**	A
29042020	- - - 디니트로톨루엔과 디니트로톨루엔	**5%**	A
29042090	- - - 기타	**5%**	A
29043100	- 과불화옥탄술폰산	**5%**	A
29043200	- - 과불화옥탄술폰산 암모늄	**5%**	A
29043300	- - 과불화옥탄술폰산 리튬	**5%**	A
29043400	- - 과불화옥탄술폰산 칼륨	**5%**	A
29043500	- - 그 밖의 과불화옥탄술폰산의 염	**5%**	A
29043600	- - 과불화옥탄술포닐플루오라이드	**5%**	A
29049100	- -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클로로피크린)	**5%**	A
29049900	- - 기타	**5%**	C
29051100	- - 메탄올(메틸알코올)	**5%**	C
29051200	- -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과 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5%**	C
29051300	- -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5%**	C
29051400	- - 그 밖의 부탄올	**5%**	C
29051600	- - 옥탄올(옥틸알코올)과 그 이성체	**5%**	C
29051700	- -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5%**	A
29051910	- - - 디에틸헥산올	**5%**	C
29051920	- - - 3,3-디메틸부탄-2-올(피나코릴 알코올)	**5%**	A
29051990	- - - 기타	**5%**	A
29052200	- - 비환식테르펜알코올	**5%**	A
29052900	- - 기타	**5%**	A
29053100	- -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5%**	C
29053200	- -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5%**	C
29053900	- - 기타	**5%**	C
29054100	- -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5%**	A
29054200	- - 펜타에리트리톨	**5%**	C
29054300	- - 만니톨	**5%**	A
29054400	- - D-글루시톨(소르비톨)	**5%**	A
29054500	- - 글리세롤	**5%**	C
29054900	- - 기타	**5%**	A
29055100	- - 에스클로비놀(INN)	**5%**	A
29055900	- - 기타	**5%**	A
29061100	- - 멘톨	**5%**	B
29061200	- - 시클로헥산올・메틸시클로헥산올・디메틸시클로헥산올	**5%**	B
29061300	- - 스테롤과 이노시톨	**5%**	A
29061900	- - 기타	**5%**	A
29062100	- - 벤질알코올	**5%**	A
29062900	- - 기타	**5%**	C
29071110	- - - 페놀	**5%**	C
29071120	- - - 페놀산(카르볼릭)	**5%**	C
29071190	- - - 기타	**5%**	C
29071200	- - 크레졸과 그 염	**5%**	C
29071300	- - 옥틸페놀・노닐페놀과 이들의 이성체, 이들의 염	**5%**	C
29071500	- - 나프톨과 이들의 염	**5%**	A
29071900	- - 기타	**5%**	A

29072100	- - 레조르시놀과 그 염	**5%**	A
29072200	- - 히드로퀴논(퀴놀)과 그 염	**5%**	A
29072300	- - 4,4 ' -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디페닐올프로판)과 그 염	**5%**	C
29072900	- - 기타	**5%**	C
29081100	- - 펜타클로로페놀(ISO)	**5%**	A
29081900	- - 기타	**5%**	C
29089100	- - 디노셉(ISO)과 그 염	**5%**	A
29089200	- -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NOC(ISO)]과 그 염	**5%**	A
29089910	- - - 피크르산 암모늄	**5%**	A
29089920	- - - 피크르산(트리니트로페놀)	**5%**	A
29089990	- - - 기타	**5%**	C
29091100	- - 디에틸에테르	**5%**	A
29091910	- - 트리메틸 부틸에테르	**5%**	X
29091990	- - - 기타	**5%**	C
29092000	-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5%**	A
29093000	- 방향족(芳香族)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5%**	B
29094100	- -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5%**	C
29094300	- -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5%**	C
29094400	- - 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	**5%**	C
29094900	- - 기타	**5%**	C
29095000	-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5%**	A
29096010	- - - 과산화메틸에틸케톤	**5%**	A
29096090	- - - 기타	**5%**	B
29101000	-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5%**	A
29102000	-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5%**	C
29103000	-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5%**	B
29104000	- 디엘드린(ISO, INN)	**5%**	A
29105000	- 엔드린(ISO)	**5%**	A
29109000	- 기타	**5%**	C
29110000	아세탈・헤미아세탈(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5%**	A
29121100	- - 메탄알(포름알데히드)	**5%**	A
29121200	- -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5%**	A
29121900	- - 기타	**5%**	C
29122100	- - 벤즈알데히드	**5%**	A
29122900	- - 기타	**5%**	A
29124100	- -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5%**	A
29124200	- -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5%**	A
29124900	- - 기타	**5%**	A
29125000	-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5%**	A
29126000	- 파라포름알데히드	**5%**	A
29130000	제2912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5%**	A
29141100	- - 아세톤	**5%**	C
29141200	- - 부탄온(메틸에틸케톤)	**5%**	A
29141300	- -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5%**	C
29141900	- - 기타	**5%**	B
29142200	- - 시클로헥사논과 메틸시클로헥사논	**5%**	A
29142300	- - 이오논과 메틸이오논	**5%**	A
29142900	- - 기타	**5%**	C
29143100	- -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5%**	A
29143900	- - 기타	**5%**	A
29144000	- 케톤-알코올과 케톤-알데히드	**5%**	C
29145000	- 케톤-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 케톤	**5%**	C
29146100	- - 안트라퀴논	**5%**	A
29146200	- - 코엔자임 Q10[유비데카레논(INN)]	**5%**	A
29146900	- - 기타	**5%**	A
29147100	- - 클로르데콘(ISO)	**5%**	A
29147900	- - 기타	**5%**	B
29151100	- - 포름산	**5%**	A
29151200	- - 포름산의 염	**5%**	A
29151300	- - 포름산의 에스테르	**5%**	A
29152110	- - - 식초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변성된 것	**5%**	C
29152120	- - - 식초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5%**	C
29152400	- - 무수(無水)초산	**5%**	A
29152900	- - 기타	**5%**	C
29153100	- - 초산에틸	**5%**	C
29153200	- - 초산비닐	**5%**	C
29153300	- - 초산노르말부틸	**5%**	C
29153600	- - 초산디노셉(ISO)	**5%**	A
29153900	- - 기타	**5%**	C
29154000	- 모노클로로 아세트산・디클로로 아세트산・트리클로로 아세트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5%**	A
29155000	-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	**5%**	A
29156000	- 부티르산과 발레르산, 그 염과 에스테르	**5%**	A
29157011	- - - - 구연산 마그네슘	**5%**	A

29157019	- - - - 기타	**5%**	C
29157090	- - - 기타	**5%**	C
29159000	- 기타	**5%**	C
29161100	- - 아크릴산과 그 염	**5%**	C
29161200	- - 아크릴산의 에스테르	**5%**	C
29161300	- - 메타아크릴산	**5%**	C
29161400	- -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5%**	C
29161500	- - 올레산・리놀레산・리놀렌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5%**	A
29161600	- - 비나파크릴(ISO)	**5%**	A
29161900	- - 기타	**5%**	A
29162000	-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5%**	A
29163110	- - - 벤조산	**5%**	C
29163120	- - - 벤조산염과 에스테르	**5%**	B
29163200	- - 과산화벤조일과 염화벤조일	**5%**	B
29163400	- - 페닐아세트산과 그 염	**5%**	A
29163900	- - 기타	**5%**	A
29171100	- - 옥살산, 그 염과 에스테르	**5%**	C
29171200	- - 아디프산, 그 염과 에스테르	**5%**	C
29171300	- - 아젤라산・세바스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5%**	A
29171400	- - 무수말레산	**5%**	C
29171900	- - 기타	**5%**	C
29172000	-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5%**	C
29173200	- - 오르토프탈산디옥틸	**5%**	C
29173300	- - 오르토프탈산디노닐과 오르토프탈산디데실	**5%**	C
29173400	- - 그 밖의 오르토프탈산의 에스테르	**5%**	C
29173500	- - 무수프탈산	**5%**	C
29173600	- - 테레프탈산과 그 염	**5%**	C
29173700	- - 테레프탈산디메틸	**5%**	A
29173910	- - - 프탈산납	**5%**	C
29173990	- - - 기타	**5%**	C
29181100	- - 락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5%**	A
29181200	- - 타르타르산	**5%**	A
29181300	- - 타르타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5%**	A
29181400	- - 시트르산	**5%**	C
29181510	- - - 납 에스테르	**5%**	A
29181520	- - - 마그네슘 에스테르	**5%**	A
29181530	- - - 아연 에스테르	**5%**	A
29181590	- - - 기타	**5%**	A
29181600	- - 글루콘산, 그 염과 에스테르	**5%**	C
29181700	- - 2,2-디페닐-2-하이드록시아세트산(벤질산)	**5%**	A
29181800	- - 클로로벤질레이트(ISO)	**5%**	A
29181900	- - 기타	**5%**	C
29182100	- - 살리실산과 그 염	**5%**	C
29182200	- -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그 염과 에스테르	**5%**	A
29182300	- - 그 밖의 살리실산의 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5%**	A
29182900	- - 기타	**5%**	C
29183000	- 알데히드・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5%**	A
29189100	- -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5%**	A
29189910	- - - 2,2-디페닐-2-하이드록시아세트산	**5%**	A
29189990	- - - 기타	**5%**	C
29191000	-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5%**	A
29199000	- 기타	**5%**	A
29201100	- - 파라티온(ISO)과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5%**	A
29201900	- - 기타	**5%**	C
29202100	- - 디메틸 포스파이트	**5%**	A
29202200	- - 디에틸 포스파이트	**5%**	A
29202300	- - 트리메틸 포스파이트	**5%**	C
29202400	- - 트리에틸 포스파이트	**5%**	A
29202900	- - 기타	**5%**	C
29203000	- 엔도설판(ISO)	**5%**	A
29209050	- - - 트리니트로 글리세린	**5%**	A
29209060	- - - 니트로글리콜	**5%**	A
29209070	- - - 에틸렌 디니트레이트	**5%**	A
29209090	- - - 기타	**5%**	C
29211100	- - 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과 이들의 염	**5%**	A
29211200	- - 2-(엔,엔-디메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5%**	A
29211300	- -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5%**	A
29211400	- -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5%**	A
29211910	- - - 디(2-클로로에틸)에틸아민	**5%**	C
29211920	- - - 클로르메틴(INN) [디(2-클로로에틸)아민]	**5%**	A
29211930	- - - 트리클로르메틴(INN)[트리(2-클로로에틸)메틸아민]	**5%**	A
29211940	- - -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2-클로로에틸아민과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	**5%**	A
29211952	- - - - 2-엔,엔-디에틸아미노 에틸클로라이드	**5%**	A
29211954	- - - - 엔,엔 디이소프로필-2-아미노에틸 클로라이드	**5%**	A
29211959	- - - - 기타	**5%**	A
29211991	- - - - 디아미노에틸	**5%**	A

29211999	- - - - 기타	**5%**	A
29212100	- - 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5%**	C
29212200	- - 헥사메틸렌디아민과 그 염	**5%**	C
29212900	- - 기타	**5%**	C
29213000	- 포화지환식아민 · 불포화지환식아민 · 시클로테르펜 모노아민 · 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5%**	C
29214100	- - 아닐린과 그 염	**5%**	A
29214200	- - 아닐린유도체와 이들의 염	**5%**	A
29214300	- - 톨루이딘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5%**	A
29214400	- - 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5%**	A
29214500	- -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5%**	A
29214600	- - 암페타민(INN) · 벤즈페타민(INN) · 덱스암페타민(INN) · 에틸암페타민(INN) · 펜캄파민(INN) · 레페타민(INN) · 레브암페타민(INN) · 메페노렉스(INN) · 펜터민(INN), 이들의 염	**5%**	A
29214900	- - 기타	**5%**	A
29215100	- - 오르토-페닐렌디아민 · 메타-페닐렌디아민 · 파라-페닐렌디아민 · 디아미노톨루엔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5%**	A
29215900	- - 기타	**5%**	C
29221100	- - 모노에탄올아민과 그 염	**5%**	C
29221200	- - 디에탄올아민과 그 염	**5%**	C
29221400	- - 덱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5%**	A
29221500	- - 트리에탄올아민	**5%**	C
29221600	- -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에탄올암모늄	**5%**	B
29221700	- - 메틸디에탄올아민과 에틸디에탄올아민	**5%**	A
29221800	- -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탄올	**5%**	A
29221911	- - - - 엔,엔-디메틸-2-아미노에탄올과 그의 수소화된 염들	**5%**	A
29221912	- - - - 엔,엔-디에틸-2-아미노에탄올과 그의 수소화된 염들	**5%**	A
29221919	- - - - 기타	**5%**	A
29221950	- - - 2-(N,N-디프로필아미노)에탄올	**5%**	A
29221990	- - - 기타	**5%**	B
29222100	- - 아미노히드록시 나프탈렌술폰산과 이들의 염	**5%**	A
29222900	- - 기타	**5%**	C
29223100	- - 암페프라몬(INN) · 메타돈(INN) · 노르메타돈(INN)과 이들의 염	**5%**	A
29223900	- - 기타	**5%**	A
29224100	- - 리신과 그 에스테르, 이들의 염	**5%**	C
29224200	- - 글루탐산과 그 염	**5%**	A
29224300	- - 안트라닐산과 그 염	**5%**	A
29224400	- - 틸리딘(INN)과 그 염	**5%**	A
29224900	- - 기타	**5%**	C
29225000	- 아미노-알코올페놀 · 아미노산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5%**	B
29231000	- 콜린과 그 염	**5%**	A
29232000	-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5%**	C
29233000	- 과불화옥탄 술폰산 테트라에틸암모늄	**5%**	C
29234000	-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데실디메틸암모늄	**5%**	A
29239000	- 기타	**5%**	C
29241100	- - 메프로바메이트(INN)	**5%**	A
29241200	- -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모노크로토포스(ISO), 포스파미돈(ISO)	**5%**	A
29241900	- - 기타	**5%**	C
29242100	- - 우레인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5%**	A
29242300	- -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 안트라닐산)과 그 염	**5%**	A
29242400	- - 에치나메이트(INN)	**5%**	A
29242500	- - 알라클로르(ISO)	**5%**	A
29242900	- - 기타	**5%**	C
29251100	- - 사카린과 그 염	**5%**	A
29251200	- - 구루테치미드(INN)	**5%**	A
29251900	- - 기타	**5%**	C
29252100	- - 클로르디메포름(ISO)	**5%**	A
29252900	- - 기타	**5%**	A
29261000	- 아크릴로니트릴	**5%**	C
29262000	-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5%**	A
29263000	-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메사돈(INN) 제조중간체(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5%**	A
29264000	-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	**5%**	A
29269010	- - - 벤질 시아나이드	**5%**	C
29269090	- - - 기타	**5%**	C
29270000	디아조화합물 · 아조화합물 · 아족시화합물	**5%**	C
29280000	히드라진 · 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5%**	C
29291000	- 이소시아네이트	**5%**	C
29299010	- - -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딕 디할라이드	**5%**	A
29299020	- - -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딕 디할라이드	**5%**	A
29299090	- - - 기타	**5%**	A
29301000	- 2-(엔,엔-디메틸아미노) 에탄티올	**5%**	C
29302000	- 티오카르바메이트와 디티오카르바메이트	**5%**	A
29303000	- 티우람모노술파이드 · 티우람디술파이드 · 티우람테트라술파이드	**5%**	A
29304000	- 메티오닌	**5%**	A
29306000	-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탄티올	**5%**	A
29307000	- 비스(2-하이드록시에틸)술파이드[티오디글리콜(INN)]	**5%**	A
29308000	- 알디카브(ISO), 캡타폴(ISO) 및 메타미도포스(ISO)	**5%**	A

29309011	- - - - 오-에틸 에스-페닐 에틸포스포노티오로티오네이트(포노포스)	**5%**	A
29309012	- - - - 하나의 인(燐) 원자가 하나의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 그룹과 결합되어 있으며 탄소 원자와 결합하지 않은 것을 함유하는 것	**5%**	A
29309019	- - - - 기타	**5%**	A
29309021	- - - - 2-클로로에틸 클로로메틸 술파이드	**5%**	A
29309022	- - - - 디(2-클로로에틸)술파이드	**5%**	A
29309023	- - - - (2-클로로에틸티오)메탄	**5%**	A
29309024	- - - - 1,2-디(클로로에틸티오)에탄	**5%**	A
29309025	- - - - 1,3-디(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프로판	**5%**	A
29309026	- - - - 1,4-디(2-클로로에틸티오)메탄-노르말-부탄	**5%**	A
29309027	- - - - 1,5-디(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펜탄	**5%**	C
29309029	- - - - 기타	**5%**	C
29309031	- - - - 디(2-클로로에틸티오메틸)에테르	**5%**	A
29309032	- - - - 디(2-클로로에틸티오에틸)에테르	**5%**	A
29309039	- - - - 기타	**5%**	B
29309041	- - - - 오,오-디에틸에스-[2-(디에틸아미노)에틸]포스포로티오에이트와 그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	**5%**	A
29309042	- - - - {에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릭 티올레이트와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상으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 이들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	**5%**	A
29309043	- - - - 메틸포스포노티오레이트 에이-에틸-2-디-이소프로필 아미노에틸	**5%**	A
29309044	- - - - 오-에틸-에스(2-디 이소프로필 아미노에틸)메틸포스포노티오래이트	**5%**	A
29309049	- - - - 기타	**5%**	B
29309051	- - - -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아미노 에탄-2-티올과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 [2-(엔,엔-디메틸아미노)에탄에티올과 2-(엔,엔-디에틸아미노) 에탄에티올은 제외한다]	**5%**	A
29309059	- - - - 기타	**5%**	A
29309061	- - - - 엔,엔-디메틸아미노에탄-2-티올 염산염	**5%**	A
29309062	- - - - 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탄-2-티올 염산염	**5%**	A
29309069	- - - - 기타	**5%**	A
29309072	- - - - (-)포스포노티오래이트메틸(-엔-아미노벤젠 에틸)-에스1,2-디메틸프로필-1,2	**5%**	C
29309073	- - - - (+)포스포노티오래이트메틸(-엔-아미노벤젠 에틸)-에스1,2-디메틸프로필-1,2	**5%**	A
29309079	- - - - 기타	**5%**	A
29309091	- - - 부틸 에스-나트륨 이소프로필 포스포노티오래이트	**5%**	A
29309092	- - - 이소프로필 에스-나트륨 메틸포스포노티오래이트	**5%**	A
29309093	- - - - 메틸펜틸-1에스-나트륨 메틸포스포노티오래이트	**5%**	A
29309094	- - - - 에틸 에스-나트륨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래이트	**5%**	A
29309095	- - - - sec-부틸 에스-나트륨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래이트	**5%**	A
29309099	- - - - 기타	**5%**	B
29311010	- - - 테트라메틸납	**5%**	A
29311020	- - - 테트라에틸납	**5%**	A
29312000	- 트리부틸틴 화합물	**5%**	A
29314100	- -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5%**	A
29314200	- - 디메틸 프로필포스포네이트	**5%**	A
29314300	- - 디에틸 에틸포스포네이트	**5%**	A
29314400	- - 메틸포스폰산	**5%**	C
29314500	- - 메틸포스폰산과 (아미노이미노메틸)우레아의 염(1 : 1)	**5%**	C
29314600	- - 2,4,6-트리프로필-1,3,5,2,4,6-트리옥사트리포스피난-2,4,6-트리옥사이드	**5%**	A
29314700	- -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5%**	A
29314800	- - 3,9-디메틸-2,4,8,10-테트라옥사-3,9-디포스파스피로[5.5] 운데칸 3,9-디옥사이드	**5%**	A
29314910	- - - 하나의 인(燐) 원자가 하나의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 그룹과 결합되어 있으며 탄소 원자와 결합하지 않은 것을 함유하는 것	**5%**	C
29314930	- - - 메틸포스폰산, 폴리글리콜 에스테르	**5%**	A
29314940	- - - 메틸포스폰산, (5-메틸-2-메틸-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 에스테르	**5%**	A
29314971	- - - -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도시아니데이트	**5%**	A
29314972	- - - - [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알킬(메틸,에틸,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나이트와 이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	**5%**	A
29314973	- - - - 오-에틸 엔,엔-디메틸 포스포라미도시아나이드	**5%**	A
29314974	- - - - 오-에틸 오-[2-(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 메틸포스포나이트	**5%**	A
29314979	- - - - 기타	**5%**	A
29314990	- - - 기타	**5%**	A
29315100	- - 메틸포스포닉 디클로라이드	**5%**	A
29315200	- - 프로필포스포닉 디클로라이드	**5%**	A
29315300	- - 오-(3-클로로프로필) 오-[4-니트로-3-(트리플루오르메틸)페닐] 메틸포스포노티오에이트	**5%**	A
29315400	- - 트리클로르폰(ISO)	**5%**	A
29315911	- - - -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	**5%**	A
29315912	- - - -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노디플루오라이드	**5%**	A
29315913	- - - - 사린: 오르토-이소프로필 메틸 포스포노디플루오라이드	**5%**	A

29315914	- - - - 소만: 오르토-피나코릴 메틸 포스포노플루오라이드	**5%**	A
29315915	- - - - 디플루오라이드메틸포스포닐	**5%**	A
29315916	- - - - 디플루오라이드 에틸포스포닐	**5%**	A
29315919	- - - - 기타	**5%**	A
29315921	- - - - 오-이소프로필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5%**	A
29315922	- - - - 오-피나콜릴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5%**	A
29315923	- - - - 디클로라이드 메틸포스포닐 메틸 포스포네이트 디메틸	**5%**	A
29315924	디클로라이드메틸포스포닐	**5%**	A
29315929	- - - - 기타	**5%**	A
29319051	- - - - 2-클로로페닐 디클로로 아르신	**5%**	A
29319052	- - - - 디(2-클로로페닐) 클로로 아르신	**5%**	A
29319053	- - - - 트리(-클로로페닐) 아르신	**5%**	A
29319059	- - - - 기타	**5%**	C
29319090	- - - 기타	**5%**	C
29321100	- - 테트라히드로푸란	**5%**	C
29321200	- -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5%**	A
29321300	- - 푸르푸릴 알코올, 테트라히드로 푸르푸릴 알코올	**5%**	A
29321400	- - 수크랄로스	**5%**	A
29321900	- - 기타	**5%**	A
29322000	- 락톤	**5%**	A
29329100	- - 이소사프롤	**5%**	A
29329210	- - - 3, 4 메틸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	**5%**	A
29329290	- - - 기타	**5%**	A
29329300	- - 피페로날	**5%**	A
29329400	- - 사프롤	**5%**	A
29329500	- -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5%**	B
29329600	- - 카보퓨란(ISO)	**5%**	A
29329900	- - 기타	**5%**	C
29331100	- - 페나존(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5%**	A
29331900	- - 기타	**5%**	A
29332100	- - 히단토인과 그 유도체	**5%**	A
29332900	- - 기타	**5%**	C
29333100	- - 피리딘과 그 염	**5%**	A
29333200	- - 피페리딘과 그 염	**5%**	A
29333300	- - 알펜타닐(INN)・아닐레리딘(INN)・베지트라마이드(INN)・브로마제팜(INN)・카펜타닐(INN)・디페녹신(INN)・디펜옥실레이트(INN)・디피파논(INN)・펜타닐(INN)・케토베미돈(INN)・메틸페니데이트(INN)・펜타조신(INN)・페치딘(INN)・페치딘(INN) 제조중간체 에이・펜사이클리딘(INN)(PCP)・페노페리딘(INN)・피프라드롤(INN)・피리트라미드(INN)・프로피람(INN)・레미펜타닐(INN)・트리메페리딘(INN)과 이들의 염	**5%**	C
29333400	- - 그 밖의 펜타닐과 그 유도체	**5%**	A
29333500	- - 3-퀴뉴클리디놀	**5%**	A
29333600	- - 4-아닐리노-N-펜에틸피페리딘(ANPP)	**5%**	A
29333700	- - 엔-펜에틸-4-피페리돈(NPP)	**5%**	A
29333910	- - - 3-퀴뉴클리디닐 벤질레이트	**5%**	C
29333990	- - - 기타	**5%**	C
29334100	- - 레보파놀(INN)과 그 염	**5%**	A
29334900	- - 기타	**5%**	C
29335200	- -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5%**	A
29335300	- - 아로바르비탈(INN)・아모바르비탈(INN)・바르비탈(INN)・부탈비탈(INN)・부토바르비탈(INN)・싸이클로바르비탈(INN)・메틸페노바르비탈(INN)・펜토바르비탈(INN)・페노바르비탈(INN)・섹부타바르비탈(INN)・세코바르비탈(INN)・비닐비탈(INN)과 이들의 염	**5%**	A
29335400	- - 그 밖의 말로닐우레아 유도체(바르비투르산)와 이들의 염	**5%**	A
29335500	- - 로프라졸람(INN)・메크로콰론(INN)・메타콰론(INN)・지페프롤(INN)과 이들의 염	**5%**	A
29335900	- - 기타	**5%**	B
29336100	- - 멜라민	**5%**	A
29336900	- - 기타	**5%**	C
29337100	- -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5%**	B
29337200	- - 클로바잠(INN)과 메치푸리논(INN)	**5%**	A
29337900	- - 그 밖의 락탐	**5%**	C
29339100	- - 알프라졸람(INN)・카마제팜(INN)・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클로나제팜(INN)・클로라제페이트・델로라제팜(INN)・디아제팜(INN)・에스타졸람(INN)・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플르디아제팜(INN)・플루니트라제팜(INN)・플루라제팜(INN)・할라제팜(INN)・로라제팜(INN)・로르메타제팜(INN)・마진돌(INN)・메다제팜(INN)・미다졸람(INN)・니메타제팜(INN)・니트라제팜(INN)・놀다제팜(INN)・옥사제팜(INN)・피나제팜(INN)・프라제팜(INN)・피로발레론(INN)・테마제팜(INN)・테트라제팜(INN)・트리아졸람(INN)과 이들의 염	**5%**	A
29339200	- - 아진포스-메틸(ISO)	**5%**	A
29339910	- - - 니트로카르바졸・트리니트로카르바졸・테트라니트로카르바졸	**5%**	A
29339990	- - - 기타	**5%**	C
29341000	- 붙지 않은 티아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5%**	C
29342000	-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29343000	- 페노티아진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29349100	- - 아미노렉스(INN), 브로티졸람(INN), 클로티아제팜(INN), 클록사졸람(INN), 덱스트로모라마이드(INN), 할록사졸람(INN), 케타졸람(INN), 메소카브(INN), 옥사졸람(INN), 페몰린(INN), 펜디메트라진(INN), 펜메트라진(INN), 서펜타닐(INN)과 이들의 염	**5%**	A
29349200	- - 그 밖의 펜타닐과 그 유도체	**5%**	A
29349910	- - - 페놀 레드	**5%**	A
29349990	- - - 기타	**5%**	C
29351000	- 엔-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5%**	A
29352000	- 엔-에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5%**	A
29353000	- 엔-에틸-엔-(2-히드록시에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5%**	A
29354000	- 엔-(2-히드록시에틸)-엔-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5%**	A
29355000	- 그 밖의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5%**	A
29359000	- 기타	**5%**	C
29362100	- - 비타민(A)과 이들의 유도체	**0%**	A
29362200	- - 비타민(B1)과 이들의 유도체	**0%**	A
29362300	- - 비타민(B2)과 이들의 유도체	**0%**	A
29362400	- - 디-판토텐산이나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5)과 이들의 유도체	**0%**	A
29362500	- - 비타민(B6)과 이들의 유도체◦	**0%**	A
29362600	- - 비타민(B12)과 이들의 유도체◦	**0%**	A
29362700	- - 비타민(C)과 이들의 유도체◦	**0%**	A
29362800	- - 비타민(E)과 이들의 유도체◦	**0%**	A
29362900	- - 그 밖의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	**0%**	A
29369000	- 기타(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0%**	A
29371100	- - 소마토트로핀, 그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0%**	A
29371200	- - 인슐린과 그 염	**0%**	A
29371900	- - 기타	**0%**	A
29372100	- - 코르티손, 호르몬, 프레드니손 (데히드로코르티손)과 프레드니소론(데히드로히드로코르티손)	**0%**	A
29372200	- -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0%**	A
29372300	- -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0%**	A
29372900	- - 기타	**0%**	A
29375000	- 프로스타글렌딘, 트롬복산과 류코트리엔,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0%**	A
29379000	- 기타	**0%**	A
29381000	- 루토시드(루틴)와 그 유도체	**5%**	A
29389000	- 기타	**5%**	C
29391100	- - 양귀비 줄기 농축물, 부프레노핀(INN)・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INN)・에틸모르핀・에토르핀(INN)・헤로인・히드로코돈(INN)・히드로모르폰(INN)・모르핀・니코모르핀(INN)・옥시코돈(INN)・옥시모르폰(INN)・폴코딘(INN)・테바콘(INN)・테바인, 이들의 염	**0%**	A
29391900	- - 기타	**0%**	A
29392000	-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A
29393000	- 카페인과 그 염	**0%**	A
29394100	- - 에페드린과 그 염	**0%**	A
29394200	- - 슈도에페드린(INN)과 그 염	**0%**	A
29394300	- - 카틴(INN)과 그 염	**0%**	A
29394400	- - 놀에페드린과 그 염	**0%**	A
29394500	- - 레보메탐페타민・메탐페타민(INN)・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및 이들의 염	**0%**	A
29394900	- - 기타	**0%**	A
29395100	- - 페네틸린(INN)과 그 염	**0%**	A
29395900	- - 기타	**0%**	A
29396100	- - 엘고메트린(INN)과 그 염	**0%**	A
29396200	- - 엘고타민(INN)과 그 염	**0%**	A
29396300	- - 리세르그산과 그 염	**0%**	A
29396900	- - 기타	**0%**	A
29397210	- - - 코카인	**금지**	PH
29397220	- - - 엑고닌	**특별관심품목**	SG
29397290	- - - 기타	**0%**	A
29397900	- - 기타	**0%**	A
29398000	- 기타	**0%**	A
29400000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당・유당・맥아당・포도당・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당아세탈・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제2937호・제2938호・제29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5%**	B
29411000	-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A
29412000	- 스트렙토마이신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A
29413000	- 테트라사이클린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A
29414000	-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0%**	A
29415000	- 에리즈로마이신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0%**	A
29419000	- 기타	**0%**	A
29420000	그 밖의 유기화합물	**5%**	C
30012000	- 선(腺)이나 그 밖의 기관의 추출물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	**0%**	A
30019000	- 기타	**0%**	A
30021200	- -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0%**	A
30021300	- - 면역물품(혼합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0%**	A
30021400	- - 면역물품(혼합된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0%**	A
30021500	- -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30024100	- -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0%**	A

30024200	- - 백신(동물의약용으로 한정한다)	**0%**	A
30024900	- - 기타	**0%**	A
30025100	- - 세포치료법용 제품	**0%**	A
30025900	- - 기타	**0%**	A
30029010	- - - 색시톡신	**0%**	A
30029020	- - - 리신	**0%**	A
30029090	- - - 기타	**0%**	A
30031000	-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0%**	A
30032000	- 기타(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30033100	- - 인슐린을 함유한 것	**0%**	A
30033900	- - 기타	**0%**	A
30034100	- - 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0%**	A
30034200	- - 슈도에페드린(INN)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0%**	A
30034300	- - 놀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0%**	A
30034900	- - 기타	**0%**	A
30036000	-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열거한 항말라리아 활성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0%**	A
30039000	- 기타	**0%**	A
30041000	-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0%**	A
30042000	- 기타(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30043100	- - 인슐린을 함유한 것	**0%**	A
30043200	- -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이들의 유도체나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0%**	A
30043900	- - 기타	**0%**	A
30044100	- - 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0%**	A
30044200	- - 슈도에페드린(INN)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0%**	A
30044300	- - 놀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0%**	A
30044900	- - 기타	**0%**	A
30045000	- 제2936호의 비타민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기타 의약품	**0%**	A
30046000	-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열거한 항말라리아 활성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30049010	- - - 메디컬 솔루션(medical solutions)	**0%**	A
30049090	- - - 기타	**0%**	A
30051000	- 접착성 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그 밖의 물품	**0%**	A
30059010	- - - 메디컬 코튼(medical cotton)	**0%**	A
30059021	- - - -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	**0%**	A
30059022	- - - -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지 않은 것으로 소매용 또는 내과용·외과용 목적으로 조제한 것[병원(hospital)·의료 센터(health center)·구급차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30059090	- - - 기타	**0%**	A
30061010	- - - 수술 상처 봉합용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	**0%**	A
30061020	- - -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	**0%**	A
30061030	- - -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0%**	A
30061040	- - - 멸균된 수술용 플라스터(plaster)	**0%**	A
30063000	-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	**0%**	A
30064000	-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	**0%**	A
30065000	- 구급상자와 구급대	**0%**	A
30066000	- 제2937호의 호르몬과 그 밖의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0%**	A
30067000	-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	**0%**	A
30069100	- -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0%**	A
30069200	- - 폐(廢)의료용품	**0%**	A
30069310	- - - 플라세보	**0%**	A
30069320	- - - 공인된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맹검(또는 이중 맹검) 임상시험 키트(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31010000	동물성·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5%**	B
31021000	-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5%**	A
31022100	- - 황산암모늄	**5%**	C
31022900	- - 기타	**5%**	C
31023000	-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5%**	C
31024000	-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이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31025000	- 질산나트륨	**5%**	A
31026000	- 질산칼슘·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5%**	C
31028000	- 요소·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을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31029000	- 기타(위의 소호에 열거하지 않은 혼합물을 포함한다)	**5%**	C
31031100	- - 오산화인(P2O5)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5 이상인 것	**5%**	B
31031900	- - 기타	**5%**	B
31039010	- - - 디칼슘포스페이트	**5%**	A
31039020	- - - 분해된 디칼슘포스페이트	**5%**	A
31039030	- - - 천연의·열처리한·하소(煆燒)한 인산암모늄	**5%**	A
31039040	- - - 상기한 물질의 비료 혼합물(플로오르 함유량을 고려하지 않는다)	**5%**	A
31039090	- - - 기타	**5%**	A
31042000	- 염화칼륨	**5%**	A

31043000	- 황산칼륨	**5%**	B
31049010	- - - 마그네슘과 황산수소칼륨	**5%**	A
31049030	- - - 칼륨염	**5%**	A
31049040	- - - 상기한 물질의 비료 혼합물(산화칼륨 함유량을 고려하지 않는다)	**5%**	A
31051000	-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태블릿(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5%**	A
31052000	- 질소・인・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5%**	C
31053000	-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5%**	C
31054000	-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5%**	C
31055100	- -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5%**	C
31055900	- - 기타	**5%**	A
31056000	-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5%**	C
31059000	- 기타	**5%**	C
32011000	- 퀘브라쵸 추출물(quebracho extract)	**5%**	A
32012000	- 왓틀 추출물(wattle extract)	**5%**	A
32019000	- 기타	**5%**	A
32021000	- 합성 유기유연제	**5%**	A
32029000	- 기타	**5%**	A
32030011	- - - - 천연 인디고(indigo)	**5%**	A
32030019	- - - - 기타	**5%**	A
32030020	- - - 동물성의 것	**5%**	A
32041100	- - 분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5%**	C
32041200	- - 산성 염료(금속염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매염(媒染)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5%**	C
32041300	- - 염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5%**	C
32041400	- - 직접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5%**	C
32041500	- - 건염(建染) 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5%**	B
32041600	- -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5%**	C
32041700	- -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5%**	C
32041800	- - 카로티노이드 착색제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5%**	A
32041900	- - 기타(소호 제3204.11호부터 제3204.19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착색제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5%**	B
32042000	- 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	**5%**	C
32049010	- - - 합성 인디고(indigo)	**5%**	A
32049090	- - - 기타	**5%**	C
32050000	레이크 안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5%**	B
32061100	- -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5%**	C
32061900	- - 기타	**5%**	C
32062000	- 크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5%**	B
32064100	- - 군청(群青)과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5%**	B
32064200	- - 황아연을 기본 재료로 한 리토폰(lithopone)・그 밖의 안료와 조제품	**5%**	A
32064900	- - 기타	**5%**	C
32065000	-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	**5%**	A
32071000	-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조제 그림물감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5%**	C
32072000	- 법랑과 유약・유약용 슬립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5%**	C
32073000	- 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5%**	C
32074000	-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5%**	C
32081010	- - - 바니시	**5%**	C
32081090	- - - 기타	**5%**	C
32082010	- - - 바니시	**5%**	C
32082090	- - - 기타	**5%**	C
32089010	- - - 바니시	**5%**	C
32089090	- - - 기타	**5%**	C
32091010	- - - 바니시	**5%**	C
32091090	- - - 기타	**5%**	C
32099010	- - - 바니시	**5%**	C
32099090	- - - 기타	**5%**	C
32100010	- - - 바니시	**5%**	C
32100020	- - - 가죽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	**5%**	A
32100090	- - - 기타	**5%**	C
32110000	조제 드라이어	**5%**	C
32121000	- 스탬프용 박(箔)	**5%**	C
32129010	- - - 소매용의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5%**	C
32129090	- - - 기타	**5%**	C
32131010	- - - 색조 수정용	**5%**	B
32131090	- - - 기타	**5%**	B
32139000	- 기타	**5%**	B
32141010	- - - 기름을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유리 접합용 퍼티(putty)로 한정한다]	**5%**	C
32141020	- - - 왁스를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과 접목용 퍼티[통・배럴(barrel) 등의 코팅용으로 한정한다]	**5%**	C
32141030	- - - 공업용의 수지매스틱	**5%**	C
32141040	- - - 물유리(water-glass)를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점화플러그・엔진블록・기름통・배기관・라디에이터(radiator) 등의 접합에 사용하며, 또한 어떤 접합부분의 충전이나 마개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C
32141050	- - - 옥시염화 아연을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목재・도자제품 등의 코킹(caulking)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5%**	A

32141060	- - - 옥시염화 마그네슘을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목재품 틈 충전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5%**	C
32141070	- - - 황을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조각으로 된 물품을 충전하거나 고정용으로 한정한다)	**5%**	A
32141080	- - - 플라스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접합부 누수 방지 및 바닥면 밀폐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C
32141091	- - - - 산화아연과 글리세롤을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내산성 도료의 제조에 사용하며, 철편을 도자제품에 접합하는 데 사용하며, 관의 연결에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C
32141092	- - - -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경화제를 첨가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유연한 보호도포층이나 선박용 코킹(caulking)에 사용하는 것)	**5%**	A
32141093	- - - - 실링왁스[균열의 코킹(caulking), 유리 용기의 누수 방지 및 문서 등의 실링(sealing)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C
32141094	- - - - 충전용 매스틱(페인팅 표면을 준비하기 위하여 요철을 고르게 하고 균열과 구멍을 채우는 것으로 건조 및 광택 후 페인트를 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32141099	- - - - 기타	**5%**	C
32149000	- 기타	**5%**	C
32151100	- - 흑색	**5%**	C
32151900	- - 기타	**5%**	C
32159010	- - - 필기 · 제도용	**5%**	B
32159020	- - - 복사용 잉크	**5%**	B
32159030	- - - 볼펜용 잉크	**5%**	A
32159040	- - - 복사기용 잉크	**5%**	A
32159050	- - - 스탬핑 패드 잉크(stamping pad ink)	**5%**	A
32159060	- - - 타자기용 리본 잉크	**5%**	A
32159070	- - - 마크용 잉크	**5%**	A
32159080	- - - 불가시(不可視) 잉크	**5%**	A
32159090	- - - 기타	**5%**	B
33011200	- - 오렌지유	**5%**	C
33011300	- - 레몬유	**5%**	C
33011900	- - 기타	**5%**	C
33012400	- - 박하유[멘타 피페리타(Mentha piperita)]	**5%**	A
33012500	- - 그 밖의 민트류로 만든 것	**5%**	A
33012900	- - 기타	**5%**	C
33013010	- - - 덴 알 우드(우드 레지노이드)	**5%**	B
33013090	- - - 기타	**5%**	B
33019011	- - - - 의료용	**5%**	B
33019012	- - - - 케이드 워터(kady)	**5%**	A
33019013	- - - - 장미수(Rose water)	**5%**	C
33019014	- - - - 꽃 수(Flower water)	**5%**	A
33019016	- - - - 꽃가루 수(pollen water)	**5%**	A
33019017	- - - - 그 밖의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5%**	C
33019019	- - - - 기타	**5%**	C
33019090	- - - 기타	**5%**	C
33021000	- 식품공업용이나 음료공업용	**5%**	C
33029000	- 기타	**5%**	C
33030010	- - - 액체용 · 고체용 향수	**5%**	B
33030020	- - - 코롱(Cologne)	**5%**	C
33030090	- - - 기타	**5%**	A
33041000	- 입술화장용 제품류	**5%**	A
33042000	- 눈화장용 제품류	**5%**	A
33043010	- - - 손 · 발톱용 광택제 · 바니시	**5%**	A
33043020	- - - 바니시 제거제	**5%**	A
33043090	- - - 기타	**5%**	A
33049110	- - - 베이비파우더	**5%**	A
33049190	- - - 기타	**5%**	A
33049910	- - - 토일렛 비니거(toilet vinegar)	**5%**	C
33049920	- - - 선스크린(sunscreen)	**5%**	C
33049930	- - - 피부 연화제	**5%**	B
33049940	- - - 메이크업 · 메이크업 제거용 제품류	**5%**	C
33049990	- - - 기타	**5%**	C
33051000	- 샴푸	**5%**	B
33052000	- 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용 제품류	**5%**	A
33053000	- 헤어 래커(hair lacquer)	**5%**	A
33059010	- - - 헤어오일	**5%**	A
33059020	- - - 헤어크림	**5%**	A
33059030	- - - 두발용 염색 조제품	**5%**	A
33059090	- - - 기타	**5%**	A
33061010	- - - 치약	**5%**	C
33061020	- - - 의치 세척제	**5%**	A
33061090	- - - 기타	**5%**	A
33062000	- 치간 청결용 실[치실(dental floss)]	**5%**	B
33069010	- - - 구강세척제 · 구강용 향수 제품류	**5%**	C
33069020	- - - 의치 고정제	**5%**	C
33069090	- - - 기타	**5%**	B
33071010	- - - 면도용 크림과 거품	**5%**	A
33071090	- - - 기타	**5%**	A
33072000	-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5%**	A
33073000	- 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5%**	A

33074110	- - - 액체 상태인 것	**5%**	A
33074120	- - - 가루 형상의 것	**5%**	A
33074130	- - - 유향 스틱(incense sticks)	**5%**	A
33074190	- - - 기타	**5%**	A
33074910	- - - 분무 용기의 것	**5%**	A
33074920	- - - 냉장고나 차량 등의 탈취제로 사용되는 활성탄(activated carbon)	**5%**	A
33074990	- - - 기타	**5%**	A
33079010	- - - 탈모제	**5%**	A
33079020	- - - 향을 첨가한 종이와 화장품이나 향낭(perfumed sachets)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5%**	A
33079040	- - - 콘택트렌즈의 액이나 의안의 액	**5%**	A
33079050	- - - 동물용 화장품이나 화장용품	**5%**	A
33079090	- - - 기타	**5%**	A
34011130	- - - 블록(blocks) 모양의 면도용 비누	**5%**	C
34011140	- - - 약용비누	**5%**	C
34011150	- - - 소독용 비누	**5%**	C
34011170	- - -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 (향을 첨가한 것인지 상관없다)	**5%**	C
34011180	- - - 화장 비누 [착색・향을 첨가하였는지, 연마성이나 소독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예: 럭스(Lux), 카메이(Camay) 등}]	**5%**	C
34011190	- - - 기타	**5%**	C
34011920	- - - 로진 비누나 톨유 비누	**5%**	C
34011930	- - - 특수 목적의 공업용 비누	**5%**	C
34011940	- - -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향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C
34011990	- - - 기타	**5%**	C
34012010	- - - 가루 형태인 것	**5%**	C
34012020	- - - 페이스트(paste) 형태인 것	**5%**	C
34012030	- - - 수용액(aqueous solution) 형태의 것	**5%**	C
34012090	- - - 기타	**5%**	C
34013000	-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C
34023100	- - 선형 알킬벤젠 술폰산과 그 염	**5%**	C
34023900	- - 기타	**5%**	C
34024100	- - 양이온성	**5%**	C
34024200	- - 비이온성	**5%**	C
34024900	- - 기타	**5%**	C
34025010	- - - 계면활성제[예: 클로록스(Clorox) 등]	**5%**	C
34025021	- - - - 건조 파우더[예: 타이드(Tide) 등]	**5%**	C
34025022	- - - - 액체 상태인 것	**5%**	C
34025029	- - - - 기타	**5%**	C
34029000	- 기타	**5%**	C
34031100	- -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5%**	C
34031910	- - - 마찰감소용 조제 윤활제	**5%**	C
34031920	- - - 신선용(伸線用) 조제 윤활제	**5%**	C
34031930	- - - 절삭유	**5%**	A
34031940	- - - 볼트・너트 방출제	**5%**	A
34031950	- - - 방청제와 부식방지제	**5%**	C
34031990	- - - 기타	**5%**	C
34039100	- -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5%**	C
34039900	- - 기타	**5%**	C
34042000	-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5%**	C
34049010	- - - 스탬핑 왁스(stamping wax)	**5%**	C
34049090	- - - 기타	**5%**	C
34051000	- 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5%**	B
34052000	- 목제가구・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5%**	B
34053000	- 차체(coachwork)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	**5%**	B
34054000	-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5%**	C
34059010	- - - 유리와 거울 광택제	**5%**	C
34059020	- - - 금속 광택제	**5%**	B
34059090	- - - 기타	**5%**	C
34060000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5%**	B
34070010	- - - 치과용 왁스(dental wax) [치과용 인상재료(dental impression compounds)]	**5%**	C
34070020	- - - 플라스터를 기본 재료로 한 기타 치과용 조제품 (소석고(燒石膏)나 황산칼슘제의 것)	**5%**	C
34070030	- - - 어린이 오락용의 모델링 페이스트(modelling paste)	**5%**	B
34070090	- - - 기타	**5%**	B
35011000	- 카세인(casein)	**5%**	A
35019010	- - - 카세인 글루(casein glue)	**5%**	C
35019090	- - - 기타	**5%**	A
35021100	- - 건조한 것	**5%**	A
35021900	- - 기타	**5%**	B
35022000	-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5%**	A
35029000	- 기타	**5%**	A
35030010	- - - 젤라틴과 젤라틴 유도체	**5%**	A
35030090	- - - 기타	**5%**	A
35040010	- - -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5%**	A
35040090	- - - 기타	**5%**	B

35051010	- - - 덱스트린	**5%**	A
35051020	- - -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전분이나 스웰링 전분	**5%**	A
35051030	- - - 에테르화전분이나 에스테르화전분	**5%**	A
35051040	- - - 가용성 전분(아밀로겐)	**5%**	A
35051090	- - - 기타	**5%**	B
35052010	- - - 덱스트린의 것	**5%**	C
35052020	- - - 전분 글루(glue)	**5%**	B
35052030	- - - 약품 처리하지 않은 전분・봉사와 수용성 셀룰로오스 유도체로 구성된 글루(glue)나 약품처리하지 않은 전분・봉사와 전분 에테르로 구성된 글루(glue)	**5%**	A
35052090	- - - 기타	**5%**	C
35061000	-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C
35069100	- -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5%**	C
35069900	- - 기타	**5%**	B
35071010	- - - 송아지 레네트(rennet)	**5%**	A
35071090	- - - 기타	**5%**	A
35079010	- - - 육류연화용 효소조제품	**5%**	A
35079020	- - - 과일주스 정제용 효소조제품	**5%**	C
35079030	- - - 직물의 풀빼기용 효소조제품	**5%**	A
35079040	- - - 췌장계 효소	**5%**	A
35079050	- - - 펩신 효소	**5%**	A
35079060	- - - 맥아 효소	**5%**	A
35079090	- - - 기타	**5%**	A
36010000	화약	**5%**	A
36020000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5%**	C
36031000	- 도화선	**5%**	C
36032000	- 도폭선	**5%**	A
36033000	- 격발뇌관(percussion cap)	**5%**	A
36034000	- 뇌관(detonating cap)	**5%**	A
36035000	- 점화기	**5%**	A
36036000	- 전기뇌관	**5%**	B
36041010	- - - 아동용	**5%**	A
36041020	- - - 축제 및 축하행사용	**5%**	A
36049000	- 기타	**5%**	C
36050000	성냥(제3604호의 화공품은 제외한다)	**5%**	A
36061000	-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연료・액화가스연료	**5%**	C
36069010	- - - 라이터 돌	**5%**	C
36069090	- - - 기타	**5%**	A
37011000	- 엑스선용	**5%**	C
37012000	-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5%**	A
37013000	- 그 밖의 플레이트와 필름(각 변의 길이가 25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B
37019100	- - 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5%**	A
37019900	- - 기타	**5%**	A
37021000	- 엑스선용	**5%**	A
37023100	- - 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5%**	A
37023200	- - 기타[할로겐화은 에멀션(emulsion)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	A
37023900	- - 기타	**5%**	A
37024100	- - 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5%**	A
37024200	- - 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것 (천연색 사진용의 것은 제외한다)	**5%**	A
37024300	- - 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미터 이하인 것	**5%**	A
37024400	- - 폭이 105밀리미터 초과 610밀리미터 이하인 것	**5%**	B
37025200	- - 폭이 16밀리미터 이하인 것	**5%**	A
37025300	- -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으로 한정한다)	**5%**	A
37025400	- -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은 제외한다)	**5%**	A
37025500	- -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를 초과하는 것	**5%**	A
37025600	- - 폭이 3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A
37029600	- - 폭이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밀리미터 이하인 것	**5%**	A
37029700	- - 폭이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초과인 것	**5%**	A
37029800	- - 폭이 3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A
37031000	- 롤 모양(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A
37032000	- 기타[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으로 한정한다]	**5%**	C
37039000	- 기타	**5%**	B
37040000	사진플레이트・필름・인화지・판지・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37050000	사진플레이트와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영화용 필름은 제외한다)	**5%**	A
37061010	- - - 문화・과학・농업・건강이나 교육 필름	**5%**	A
37061090	- - - 기타	**5%**	A
37069010	- - - 문화・과학・농업・건강이나 교육 필름	**5%**	A
37069090	- - - 기타	**5%**	A
37071000	- 감광유제	**5%**	A

37079010	- - - 현상제	**5%**	B
37079020	- - - 정착제	**5%**	A
37079030	- - - 증도제와 감도제	**5%**	A
37079040	- - - 조색제	**5%**	C
37079050	- - - 세정제	**5%**	C
37079090	- - - 기타	**5%**	C
38011000	- 인조흑연	**5%**	C
38012000	-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	**5%**	A
38013000	-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와 노(爐)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paste)	**5%**	A
38019010	- - - 흑연과 광물유의 혼합물	**5%**	A
38019090	- - - 기타	**5%**	C
38021000	- 활성탄	**5%**	A
38029000	- 기타	**5%**	C
38030000	톨유(tall oil)(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B
38040000	목재펄프를 제조할 때 생기는 폐액(廢液)[농축한 것인지, 당류를 제거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리그닌 술폰산을 포함하나, 제3803호의 톨유(tall oil)는 제외한다]	**5%**	C
38051000	-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황산테레빈유	**5%**	A
38059000	- 기타	**5%**	B
38061000	- 로진(rosin)과 수지산	**5%**	A
38062000	- 로진염, 수지산염, 로진(rosin)・수지산 유도체의 염[로진(rosin) 부가물의 염은 제외한다]	**5%**	A
38063000	- 에스테르 검(ester gum)	**5%**	A
38069000	- 기타	**5%**	B
38070000	목(木)타르, 목(木)타르유, 목(木)크레오소트(creosote), 목(木)나프타, 식물성 피치(pitch), 브루어피치(brewers' pitch)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rosin)・수지산이나 식물성 피치(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38085200	- -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순중량이 300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에 한정한다)	**5%**	A
38085900	- - 기타	**5%**	C
38086100	- - 순중량이 300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5%**	A
38086200	- - 순중량이 300그램 초과 7.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5%**	A
38086900	- - 기타	**5%**	A
38089110	- -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5%**	B
38089191	- - - - 인화 알루미늄의 것	**5%**	C
38089199	- - - - 기타	**5%**	C
38089210	- -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5%**	A
38089290	- - - 기타	**5%**	C
38089310	- -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5%**	B
38089390	- - - 기타	**5%**	B
38089410	- -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5%**	C
38089490	- - - 기타	**5%**	A
38089910	- -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5%**	B
38089990	- - - 기타	**5%**	A
38091010	- - - 다림질용 전분[예: 메리토(Merito)]	**5%**	C
38091090	- - - 기타	**5%**	C
38099110	- - - 의류, 타월 등에 사용되는 유연제[예: 레노어(lenor) 등]	**5%**	B
38099190	- - - 기타	**5%**	A
38099200	- -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5%**	A
38099300	- - 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5%**	A
38101000	-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땜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5%**	C
38109000	- 기타	**5%**	B
38111100	- - 납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5%**	B
38111900	- - 기타	**5%**	C
38112100	- - 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는 것	**5%**	C
38112900	- - 기타	**5%**	C
38119000	- 기타	**5%**	C
38121000	-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5%**	C
38122000	-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5%**	C
38123100	- - 2,2,4-트리메틸-1,2-디하드로퀴놀린 올리고머(티엠큐)의 혼합물	**5%**	B
38123900	- - 기타	**5%**	C
38130010	- - - 브로모클로로디플로로메탄 또는 브로모트리플로로메탄 또는 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을 함유하는 것	**5%**	B
38130020	- - - 메탄・에탄 또는 프로핀 수소브롬화불화탄소(HBFCs)를 함유하는 것	**5%**	C
38130030	- - - 메탄・에탄 또는 프로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	**5%**	C
38130040	- - -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5%**	C
38130090	- - - 기타	**5%**	B
38140010	- - - 메탄・에탄 또는 프로핀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는 것[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C
38140020	- - - 메탄・에탄 또는 프로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만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않는 것	**5%**	C
38140030	- - - 사염화탄소・브로모클로로메탄이나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5%**	A
38140090	- - - 기타	**5%**	C
38151100	- - 활성물질로서 니켈이나 니켈화합물의 것	**5%**	A
38151200	- - 활성물질로서 귀금속이나 귀금속화합물의 것	**5%**	A
38151900	- - 기타	**5%**	C
38159000	- 기타	**5%**	C

38160000	내화시멘트・내화모르타르・내화콘크리트와 이와 유사한 혼합물[백운석 래밍믹스(ramming mix)를 포함하며, 제3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5%**	C
381700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2707호・제290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5%**	C
381800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디스크・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	**0%**	A
38190000	유압제동액과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5%**	C
38200000	부동(不凍) 조제품과 조제 제빙액	**5%**	C
38210000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5%**	C
38221100	- - 말라리아용	**0%**	A
38221200	- - 지카(Zika)와 그 밖의 질병용[아에데스(Aedes)속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38221300	- - 혈액형 분류용	**0%**	A
38221900	- - 기타	**0%**	A
38229000	- 기타	**0%**	A
38231100	- - 스테아린산	**5%**	A
38231200	- - 올레인산	**5%**	A
38231300	- - 톨유(tall oil) 지방산	**5%**	A
38231900	- - 기타	**5%**	C
38237000	-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5%**	C
38241000	-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5%**	C
38243000	- 응결하지 않은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A
38244000	- 시멘트용・모르타르용・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	**5%**	C
38245000	-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5%**	C
38246000	- 소르비톨(sorbitol)(소호 제2905.44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5%**	A
38248100	- -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5%**	B
38248200	- -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5%**	A
38248300	- -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5%**	A
38248400	- - 앨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또는 미렉스(ISO)를 함유한 것	**5%**	A
38248500	- -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을 함유한 것	**5%**	B
38248600	- - 펜타클로로벤젠(ISO) 또는 헥사클로로벤젠(ISO)을 함유한 것	**5%**	A
38248700	- -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또는 과불화옥탄술포닐 플루오라이드를 함유한 것	**5%**	B
38248800	- -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또는 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를 함유한 것	**5%**	A
38248900	- - 짧은사슬 염화파라핀을 함유하는 것	**5%**	A
38249100	- -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와 비스[(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과 조제품	**5%**	C
38249200	- - 메틸포스폰산의 폴리글리콜 에스테르	**5%**	A
38249910	- - - 소매용으로 포장한 잉크 제거제	**5%**	A
38249920	- - - 소매용으로 포장한 등사판 원지 수정제	**5%**	A
38249930	- - - 암모니아수와 폐산화물(spent oxide)	**5%**	B
38249940	- - - 옥시석(oxylit)	**5%**	A
38249950	- - - 바니시(varnish)나 글루(glue)의 경화를 위한 첨가제	**5%**	A
38249960	- - - 진공관・전기밸브용 게터(getter)	**5%**	B
38249970	- - - 수산화나트륨을 순수한 석회에 스며들게 하여 조제한 소다석회(soda-lime)	**5%**	A
38249980	- - - 방청제(anti-rust preparation)	**5%**	A
38249991	- - - - 전동(transmission)용 벨트의 미끄럼방지제	**5%**	B
38249992	- - - - 휘발유 엔진용의 시동액	**5%**	A
38249993	- - - - 젤라틴을 기본 재료로 한 복사용 페이스트(paste)	**5%**	B
38249994	- - - - 에틸 글리콜을 함유한 라디에이터 냉각수	**5%**	B
38249995	- - - - 포스폰산・메틸-디메틸 에스테르・옥시란, 인광체(燐光體 : phosphor), 오산화와 그 중합체	**5%**	B
38249996	- - - - 포스폰산(phosphonic acid), 메틸 -, (아미노 아미노메틸) 우레아의 혼합물(1:1)	**5%**	A
38249997	- - - - 포스폰시오르산, 메틸, (5 - 에틸-2-메틸 — 1,3,2-디옥산포스포리난-5-에일) 메틸 메틸 에스테르, B-옥사이드와 포스폰시오산, 메틸, 디[(5 - 에틸-2-메틸)의 혼합물 -2 산화된 1,3,2 디옥산포스포리난-5-일)메틸]에스테르의 혼합물	**5%**	B
38249998	- - - - 2,4,6-트리프로필-1,3,5,2,4,6 트리옥사트리포스피난 (용제에 용해된 것)	**5%**	A
38249999	- - - - 기타	**5%**	B
38251000	- 생활폐기물	**5%**	A
38252000	- 하수 찌꺼기	**5%**	A
38253000	- 감염성 폐기물	**0%**	A
38254100	- -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5%**	A
38254900	- - 기타	**5%**	A
38255000	- 금속세정액・유압액・브레이크액・부동액 폐기물	**5%**	A
38256100	- -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5%**	A
38256900	- - 기타	**5%**	A

38259000	- 기타	**5%**	A
38260000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38271100	- -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는 것[수소염화불화탄소(HCFCs)·과불화탄소(PFCs)·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B
38271200	- - 수소브롬화불화탄소(HBFCs)를 함유하는 것	**5%**	A
38271300	- -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5%**	A
38271400	- -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5%**	A
38272000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alon-1211)·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Halon-1301)·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Halon-2402)을 함유하는 것	**5%**	A
38273100	- - 소호 제2903.41호부터 제2903.48호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것	**5%**	A
38273200	- - 기타(소호 제2903.71호부터 제2903.75호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38273900	- - 기타	**5%**	A
38274000	- 메틸 브로마이드(브로모메탄)나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한 것	**5%**	A
38275100	- - 트리플루오로메탄(HFC-23)을 함유한 것	**5%**	C
38275900	- - 기타	**5%**	A
38276100	- - 1,1,1-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a)을 질량 기준으로 15% 이상 함유한 것	**5%**	A
38276200	- - 기타[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을 질량 기준으로 55% 이상 함유하고 비환식탄화수소의 불포화 플루오르화유도체(HFO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38276300	- - 기타[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을 질량 기준으로 40%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38276400	- - 기타[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을 질량 기준으로 30% 이상 함유하고 비환식탄화수소의 불포화 플루오르화유도체(HFO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38276500	- - 기타[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디플루오로메탄(HFC-32)을 질량 기준으로 20% 이상 함유하고 펜타플루오르에탄(HFC-125)을 질량 기준으로 20%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38276800	- - 기타[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소호 제2903.41호부터 제2903.48호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38276900	- - 기타	**5%**	A
38279000	- 기타	**5%**	C
39011000	-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5%**	C
39012000	-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5%**	C
39013000	-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5%**	C
39014000	-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5%**	C
39019000	- 기타	**5%**	C
39021000	- 폴리프로필렌	**5%**	C
39022000	- 폴리이소부틸렌	**5%**	C
39023000	- 프로필렌 공중합체	**5%**	C
39029000	- 기타	**5%**	C
39031100	- - 발포성의 것	**5%**	B
39031900	- - 기타	**5%**	C
39032000	-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5%**	B
39033000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5%**	C
39039000	- 기타	**5%**	C
39041000	-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C
39042100	- - 가소화하지 않은 것	**5%**	C
39042200	- - 가소화한 것	**5%**	C
39043000	-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5%**	A
39044000	- 그 밖의 염화비닐 공중합체	**5%**	C
39045000	-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5%**	A
39046100	- - 폴리테트라 플루오로에틸렌	**5%**	C
39046900	- - 기타	**5%**	A
39049000	- 기타	**5%**	C
39051200	- - 물에 분산된 것	**5%**	C
39051900	- - 기타	**5%**	A
39052100	- - 물에 분산된 것	**5%**	C
39052900	- - 기타	**5%**	C
39053000	- 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되지 않은 초산기(基)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5%**	C
39059100	- - 공중합체(共重合體)	**5%**	C
39059900	- - 기타	**5%**	C
39061000	-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5%**	C
39069010	- - - 고흡수성수지(SAP)	**5%**	C
39069090	- - - 기타	**5%**	C
39071000	- 폴리아세탈수지	**5%**	C
39072100	- - 비스(폴리옥시에틸렌) 메틸포스포네이트	**5%**	C
39072900	- - 기타	**5%**	C
39073000	- 에폭시수지	**5%**	C
39074000	- 폴리카보네이트	**5%**	X
39075000	- 알키드수지	**5%**	C
39076100	- - 점도번호가 그램당 78밀리리터 이상인 것	**5%**	C
39076900	- - 기타	**5%**	C
39077000	- 폴리(락트산)	**5%**	A
39079100	- - 불포화의 것	**5%**	C
39079900	- - 기타	**5%**	C
39081000	- 폴리아미드-6, -11, -12, -6,6, -6,9, -6,10 또는 -6,12	**5%**	C
39089000	- 기타	**5%**	C
39091000	- 요소수지와 티오요소수지	**5%**	C

39092000	- 멜라민수지	**5%**	C
39093100	- - 폴리(메틸렌 페닐 이소시아네이트)(크루드 엠디아이, 중합 엠디아이)	**5%**	C
39093900	- - 기타	**5%**	C
39094000	- 페놀수지	**5%**	C
39095000	- 폴리우레탄	**5%**	C
39100000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5%**	C
39111000	- 석유수지・쿠마론・인덴・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	**5%**	C
39112000	- 폴리(1,3-페닐렌 메틸포스포네이트)	**5%**	A
39119000	- 기타	**5%**	C
39121100	- - 가소화하지 않은 것	**5%**	A
39121200	- - 가소화한 것	**5%**	A
39122000	-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5%**	A
39123100	- -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와 그 염	**5%**	C
39123900	- - 기타	**5%**	C
39129000	- 기타	**5%**	C
39131000	- 알긴산과 그 염・에스테르	**5%**	B
39139000	- 기타	**5%**	C
39140000	이온교환수지[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5%**	C
39151000	-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5%**	C
39152000	-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5%**	A
39153000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5%**	A
39159000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	C
39161010	- - -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C
39161020	- - - 봉・프로파일	**5%**	C
39162010	- - -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C
39162020	- - - 봉・프로파일	**5%**	C
39169010	- - -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C
39169020	- - - 봉・프로파일 모양인 것	**5%**	C
39171000	- 경화 단백질이나 셀룰로오스 물질의 인조 거트(gut)[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	**5%**	C
39172100	- -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5%**	C
39172200	- -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5%**	C
39172300	-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5%**	C
39172900	-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	C
39173100	- - 연질(軟質)의 관・파이프・호스[파열압(破裂壓)이 27.6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한정한다]	**5%**	C
39173210	- - - 음료용 빨대	**5%**	C
39173290	- - - 기타	**5%**	C
39173300	- - 기타(연결구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C
39173900	- - 기타	**5%**	C
39174000	- 연결구류	**5%**	A
39181000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5%**	C
39189000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	C
39191000	-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5%**	C
39199000	- 기타	**5%**	C
39201000	-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5%**	C
39202000	-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5%**	A
39203000	-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5%**	C
39204300	- - 전 중량의 100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5%**	C
39204910	- - - 식탁보	**5%**	C
39204990	- - - 기타	**5%**	C
39205100	- -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로 만든 것	**5%**	C
39205900	- - 기타	**5%**	C
39206100	- -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5%**	C
39206200	-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5%**	A
39206300	-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5%**	C
39206900	- -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5%**	C
39207100	- -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5%**	A
39207300	- -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5%**	A
39207900	- - 그 밖의 셀룰로오스 유도체로 만든 것	**5%**	A
39209100	- -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5%**	C
39209200	- -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5%**	C
39209300	- -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5%**	A
39209400	- - 페놀수지로 만든 것	**5%**	C
39209900	-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	C
39211100	- - 스티렌 중합체로 만든 것	**5%**	C
39211200	- -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것	**5%**	C
39211300	- -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5%**	C
39211400	- -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5%**	C
39211900	-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	C
39219000	- 기타	**5%**	A
39221000	- 목욕통・샤워통・설거지통・세면대	**5%**	C
39222000	-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5%**	C
39229000	- 기타	**5%**	C
39231010	- - - 가금(家禽) 운반용	**5%**	C
39231020	- - - 유제품과 음료 운반용	**5%**	C
39231090	- - - 기타	**5%**	C

39232110	- - - 생분해성	**5%**	C
39232190	- - - 기타	**5%**	C
39232910	- - - 생분해성	**5%**	C
39232990	- - - 기타	**5%**	C
39233000	-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5%**	C
39234000	- 스풀(spool)・콥(cop)・보빈(bobbin)과 이와 유사한 물품	**5%**	C
39235000	-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5%**	C
39239000	- 기타	**5%**	C
39241010	- - - 얼음과 식품 보관을 위한 용기	**5%**	C
39241020	- - - 포크・스푼・칼	**5%**	C
39241031	- - - - 셀룰러 플라스틱의 것(다포성)	**5%**	C
39241039	- - - - 기타	**5%**	C
39241040	- - - 젖병	**5%**	C
39241090	- - - 기타	**5%**	B
39249010	- - - 화장실용 칫솔, 종이냅킨, 컵용 홀더	**5%**	C
39249030	- - - 재떨이	**5%**	C
39249040	- - - 옷걸이	**5%**	C
39249090	- - - 기타	**5%**	C
39251000	- 저장기・탱크・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C
39252000	-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5%**	C
39253000	- 셔터・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	**5%**	C
39259000	- 기타	**5%**	C
39261000	- 사무용품이나 학용품	**5%**	C
39262010	- - - 플라스틱제 의료용 장갑	**5%**	C
39262090	- - - 기타	**5%**	C
39263000	-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5%**	C
39264000	-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	**5%**	C
39269031	- - - - 소변 및 대변 검체용 용기	**5%**	C
39269032	- - - - 의료용 배양용 농포(pustular)판	**5%**	C
39269039	- - - - 기타	**5%**	C
39269040	- - - 나사・볼트・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	**5%**	C
39269050	- - - 핸드백용 파스너(fastener)・슈트 케이스용 코너・걸대・가구 밑에 까는 보호용 컵과 글라이드(glide)	**5%**	C
39269061	- - - - 상품용의 것	**5%**	C
39269069	- - - - 기타	**5%**	C
39269070	- - - 컨베이어용 벨트 및 전동(transmission)용 벨트	**5%**	C
39269080	- - - 산업 및 농업용의 기계・장비 기술 제품	**5%**	C
39269091	- - - - 묵주(Rosary)	**5%**	C
39269092	- - - - 시계용 모조 유리	**5%**	C
39269093	- - - - 부채	**5%**	C
39269099	- - - - 기타	**5%**	A
40011000	-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pre-vulcanised) 것인지에 상관없다]	**5%**	A
40012100	- - 스모크드 시트(smoked sheet)	**5%**	A
40012200	- -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5%**	A
40012900	- - 기타	**5%**	A
40013000	- 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율(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	**5%**	A
40021100	- - 라텍스	**5%**	C
40021900	- - 기타	**5%**	C
40022000	- 부타디엔 고무(BR)	**5%**	C
40023100	- - 이소부텐-이소프렌 고무(부틸고무)(IIR)	**5%**	A
40023900	- - 기타	**5%**	B
40024100	- - 라텍스	**5%**	B
40024900	- - 기타	**5%**	B
40025100	- - 라텍스	**5%**	C
40025900	- - 기타	**5%**	C
40026000	- 이소프렌 고무(IR)	**5%**	C
40027000	-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EPDM)	**5%**	C
40028000	-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	**5%**	A
40029100	- - 라텍스	**5%**	B
40029900	- - 기타	**5%**	C
40030000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5%**	B
40040000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5%**	C
40051000	-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	**5%**	C
40052000	- 용액과 분산액(소호 제4005.10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5%**	B
40059100	- - 판・시트(sheet)・스트립	**5%**	C
40059900	- - 기타	**5%**	C
40061000	- 고무타이어 재생용 “캐멀-백(camel-back)” 스트립	**5%**	C
40069010	- - - 관(管)	**5%**	C
40069020	- - - 링(ring)・디스크(disc)와 와셔(washer)	**5%**	C
40069030	- - - 실	**5%**	C
40069040	- - - 판・시트(sheet)・스트립(strip)	**5%**	C
40069090	- - - 기타	**5%**	C
40070000	고무실과 고무끈(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40081100	- - 판・시트(sheet)・스트립	**5%**	C
40081900	- - 기타	**5%**	C

40082100	- - 판・시트(sheet)・스트립	**5%**	C
40082900	- - 기타	**5%**	C
40091110	- - - 운송 기기용	**5%**	C
40091190	- - - 기타	**5%**	C
40091210	- - - 운송 기기용	**5%**	C
40091290	- - - 기타	**5%**	C
40092110	- - - 운송 기기용	**5%**	C
40092190	- - - 기타	**5%**	C
40092210	- - - 운송 기기용	**5%**	C
40092290	- - - 기타	**5%**	C
40093110	- - - 운송 기기용	**5%**	C
40093190	- - - 기타	**5%**	C
40093210	- - - 운송 기기용	**5%**	C
40093290	- - - 기타	**5%**	C
40094110	- - - 운송 기기용	**5%**	C
40094190	- - - 기타	**5%**	C
40094210	- - - 운송 기기용	**5%**	C
40094290	- - - 기타	**5%**	C
40101100	- -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5%**	C
40101200	- -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5%**	C
40101900	- - 기타	**5%**	C
40103100	-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5%**	C
40103200	-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5%**	C
40103300	-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5%**	C
40103400	-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5%**	C
40103500	- -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50센티미터 이하인 것	**5%**	C
40103600	- -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센티미터 초과 198센티미터 이하인 것	**5%**	A
40103900	- - 기타	**5%**	C
40111000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5%**	C
40112000	- 버스용・화물차용	**5%**	C
40113000	- 항공기용	**5%**	C
40114000	- 모터사이클용	**5%**	C
40115000	- 자전거용	**5%**	A
40117000	- 농경용・임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5%**	C
40118000	- 건설용・광산용・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5%**	C
40119000	- 기타	**5%**	C
40121100	-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금지**	PH
40121200	- - 버스용・화물자동차용	**금지**	PH
40121300	- - 버스용・항공기용	**금지**	PH
40121900	- - 기타	**금지**	PH
40122000	- 중고 공기타이어	**금지**	PH
40129000	- 기타	**5%**	C
40131000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버스용・화물차용	**5%**	C
40132000	- 자전거용	**5%**	C
40139000	- 기타	**5%**	C
40141000	- 콘돔	**5%**	A
40149010	- - - 캐뉼러(cannula)・아이스백・주사기・온수 주머니・점적기(dropper)・점적기 손잡이・손가락 고무・산소 주머니	**5%**	B
40149020	- - - 젖꼭지(포유 젖꼭지)	**5%**	A
40149090	- - - 기타	**5%**	B
40151200	- -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A
40151910	- - - 소화용	**5%**	C
40151990	- - - 그 밖의 용도의 것	**5%**	A
40159010	- - - 잠수부・소방수용	**5%**	B
40159020	- - - 외과의사・방사선취급자용 의류와 의류 부속품	**5%**	C
40159030	- - - 벨트	**5%**	C
40159040	- - - 코트・오바코트・앞치마・코르셋(corset)・턱받이(bib)・아동용 바지와 이와 유사한 것	**5%**	C
40159090	- - - 기타	**5%**	C
40161000	-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5%**	C
40169100	- - 바닥깔개와 매트	**5%**	C
40169200	- - 지우개	**5%**	B
40169300	- -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	**5%**	C
40169400	- - 보트나 도크펜더(dock fender)(공기주입식인지에 상관없다)	**5%**	C
40169510	- - - 압축공기식 매트리스・베개・쿠션	**5%**	B
40169590	- - - 기타	**5%**	C
40169910	- - - 타이어 및 이너튜브(inner tube) 수리용 패치(patch)	**5%**	C

40169920	- - - 스탬프용의 문자・숫자와 이와 유사한 것	**5%**	C
40169930	- - - 철도용・궤도용・기관차용 부분품	**5%**	C
40169940	- - -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 부분품	**5%**	C
40169950	- - - 제8710호의 자동차 부분품	**5%**	C
40169990	- - - 기타	**5%**	C
40170010	- - - 가루,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B
40170020	- - - 의료 주사기용 압축기	**5%**	C
40170030	- - - 욕실용 위생용품과 이와 유사한것	**5%**	B
40170040	- - - 드럼과 세면기	**5%**	C
40170050	- - - 마개	**5%**	B
40170060	- - - 링(ring)・개스킷(gasket)(셀룰러 경화고무 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	B
40170090	- - - 기타	**5%**	B
41012000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전신 원피(단순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8킬로그램 이하, 염처리 후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 생 것・습식염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하였을 때의 중량이 16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B
41015000	- 전신 원피(1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A
41019000	- 기타[버트(butt), 벤드(bend), 벨리(belly)를 포함한다]	**5%**	B
41021000	- 털을 제거하지 않은 것	**5%**	C
41022100	- - 산처리한 것	**5%**	A
41022900	- - 기타	**5%**	C
41032000	- 파충류의 원피	**5%**	A
41033000	- 돼지의 원피	**특별관심품목**	SG
41039000	- 기타	**5%**	B
41041100	-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5%**	A
41041900	- - 기타	**5%**	A
41044100	-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5%**	A
41044900	- - 기타	**5%**	A
41051000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5%**	A
41053000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5%**	A
41062100	-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5%**	A
41062200	-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5%**	A
41063100	-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특별관심품목**	SG
41063200	-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특별관심품목**	SG
41064000	- 파충류의 원피	**5%**	A
41069100	-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5%**	A
41069200	-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5%**	C
41071100	-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5%**	A
41071200	- -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5%**	A
41071900	- - 기타	**5%**	A
41079100	-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5%**	A
41079200	- -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5%**	C
41079900	- - 기타	**5%**	A
41120000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5%**	C
41131000	- 염소의 가죽	**5%**	A
41132000	- 돼지의 가죽	**특별관심품목**	SG
41133000	- 파충류의 가죽	**5%**	A
41139000	- 기타	**5%**	A
41141000	- 샤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샤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5%**	A
41142000	-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5%**	A
41151000	-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5%**	A
41152000	-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5%**	A
42010000	동물용 마구(고삐줄, 끈, 무릎받이, 재갈, 안장용 방석, 안장에 다는 주머니, 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	**5%**	A
42021110	- - - 트렁크・슈트케이스	**5%**	C
42021120	- - - 서류가방	**5%**	B
42021130	- - - 학생가방	**5%**	A
42021190	- - - 기타	**5%**	C
42021210	- - - 트렁크・슈트케이스	**5%**	C
42021220	- - - 서류가방	**5%**	C
42021230	- - - 학생가방	**5%**	B
42021290	- - - 기타	**5%**	B
42021910	- - - 외부 표면을 목재(wood)로 만든 것	**5%**	A
42021920	- - - 외부 표면을 철(iron)로 만든 것	**5%**	A
42021990	- - - 기타	**5%**	B
42022100	-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5%**	C
42022200	-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5%**	C
42022900	- - 기타	**5%**	B
42023100	-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5%**	C
42023200	-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5%**	C
42023900	- - 기타	**5%**	B
42029100	-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5%**	C
42029200	-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5%**	C

42029900	- - 기타	**5%**	B
42031000	- 의류	**5%**	C
42032100	- -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5%**	B
42032900	- - 기타	**5%**	B
42033000	- 벨트와 띠	**5%**	C
42034000	- 그 밖의 의류 부속품	**5%**	B
42050010	- - - 특히 자동차 와이퍼용으로 제작된 섀미가죽(chamois leather)	**5%**	B
42050020	- - - 속을 채우지 않은 푸프(pouffe) 케이스	**5%**	B
42050030	- - - 가죽제의 구두끈	**5%**	A
42050040	- - - 가죽제의 또는 가죽으로 덮어씌운 책상 패드(pad)	**5%**	A
42050050	- - - 워터스킨(waterskin)・엔벨롭(envelope)과 그 밖의 장식한 물품(제4202호의 것은 제외한다.)	**5%**	B
42050060	- - - 가죽으로 덮어씌운 끈・버클(buckle)・자물쇠와 틀의 부분품	**5%**	A
42050090	- - - 기타	**5%**	C
42060000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골드비터 스킨(goldbeater skin)・방광・건(腱)의 제품	**5%**	A
43011000	- 밍크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5%**	A
43013000	-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브로드테일(Broadtail)・카라쿨(Caracul)・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중국・몽고・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5%**	A
43016000	- 여우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5%**	A
43018000	- 그 밖의 모피(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5%**	A
43019000	-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5%**	A
43021100	- - 밍크의 것	**5%**	A
43021900	- - 기타	**5%**	B
43022000	-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43023000	- 전신 모피와 그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43031010	- - - 모피로 만든 남성용 목도리(stole)	**5%**	B
43031090	- - - 기타	**5%**	A
43039000	- 기타	**5%**	A
43040010	- - - 조각 모양의 인조모피	**5%**	A
43040020	- - - 인조모피로 만든 남성용 목도리(stole)	**5%**	A
43040090	- - - 기타	**5%**	A
44011100	- - 침엽수류	**0%**	A
44011200	- - 활엽수류	**0%**	A
44012100	- - 침엽수류	**5%**	B
44012200	- - 활엽수류	**5%**	A
44013100	- - 목재 펠릿(pellet)	**5%**	A
44013200	- - 목재 브리켓(briquette)	**5%**	A
44013900	- - 기타	**5%**	B
44014100	- - 톱밥	**5%**	A
44014900	- - 기타	**5%**	A
44021000	- 대나무로 만든 것	**0%**	A
44022000	- 쉘(shell)이나 너트(nut)로 만든 것	**0%**	A
44029000	- 기타	**0%**	A
44031110	- - - 전신・전화・전력 송전용의 전봇대	**5%**	B
44031190	- - - 기타	**5%**	B
44031210	- - - 전신・전화・전력 송전용의 전봇대	**5%**	A
44031290	- - - 기타	**5%**	A
44032110	- - - 전신・전화・전력 송전용의 전봇대	**5%**	A
44032190	- - - 기타	**5%**	B
44032210	- - - 전신・전화・전력 송전용의 전봇대	**5%**	A
44032290	- - - 기타	**5%**	A
44032310	- - - 전신・전화・전력 송전용의 전봇대	**5%**	A
44032390	- - - 기타	**5%**	A
44032410	- - - 전신・전화・전력 송전용의 전봇대	**5%**	A
44032490	- - - 기타	**5%**	A
44032510	- - - 전신・전화・전력 송전용의 전봇대	**5%**	A
44032590	- - - 기타	**5%**	A
44032610	- - - 전신・전화・전력 송전용의 전봇대	**5%**	A
44032690	- - - 기타	**5%**	A
44034120	- - - 전신・전화・전력 송전용의 전봇대	**5%**	B
44034190	- - - 기타	**5%**	A
44034200	- - 티크(Teak)	**5%**	A
44034920	- - - 전신・전화・전력 송전용의 전봇대	**5%**	A
44034990	- - - 기타	**5%**	B
44039120	- - - 전신・전화・전력 송전용의 전봇대	**5%**	A
44039190	- - - 기타	**5%**	A
44039300	- -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속]의 것(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	A
44039400	- -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속]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5%**	A

44039500	- - 자작나무[베툴라(Betula)속]의 것(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	A
44039600	- - 자작나무[베툴라(Betula)속]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5%**	A
44039700	- - 포플러와 사시나무[포푸러스(Populus)속]의 것	**5%**	A
44039800	- - 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속]의 것	**5%**	A
44039920	- - - 전신・전화・전력 송전용의 전봇대	**5%**	A
44039990	- - - 기타	**5%**	A
44041010	- - - 통의 테냐 허들 제조에 사용되는 냐무로 만든 후프우드(hoopwood)	**5%**	A
44041020	- - - 원예와 농업용의 지주와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천장이나 지붕용의 외가지로서 사용되는 쪼갠 말뚝(split pole)	**5%**	B
44041030	- - - 지팡이・공구의 자루 등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용의 목재의 막대(stick)(거칠게 다듬은 것으로서 선반가공・훰 가공・그 밖의 별도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5%**	A
44041040	- - - 뾰족하게 만든 말뚝류(껍질을 벗겼거나 보존제(preservative)로 침투시켰는지에 상관없으나 길이 방향으로 쪼갠 것을 제외한다.)	**5%**	A
44041050	- - - 칩바구니(chip-basket)・체・성냥갑 등의 제조용에 사용되는 칩우드(chipwood)	**5%**	B
44041090	- - - 기타	**5%**	A
44042010	- - - 배럴 스테이브(barrel stave)와 파티션용의 후프우드(hoopwood)	**5%**	A
44042020	- - - 원예와 농업용의 지주와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천장이나 지붕용의 외가지로서 사용되는 쪼갠 말뚝(split pole)	**5%**	A
44042030	- - - 지팡이・공구의 자루 등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용의 목재의 막대(stick)(거칠게 다듬은 것으로서 선반가공・훰 가공・그 밖의 별도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5%**	A
44042040	- - - 뾰족하게 만든 말뚝류(껍질을 벗겼거나 보존제(preservative)로 침투시켰는지에 상관없으나 길이 방향으로 쪼갠 것을 제외한다.)	**5%**	A
44042050	- - - 체・칩바구니(chip-basket)・성냥갑 등의 제조용에 사용되는 칩우드(chipwood)	**5%**	A
44042090	- - - 기타	**5%**	A
44050010	- - - 목모(wood wool)	**5%**	A
44050020	- - - 목분(wood flour)	**5%**	A
44061100	- - 침엽수류	**5%**	A
44061200	- - 활엽수류	**5%**	A
44069100	- - 침엽수류	**5%**	A
44069200	- - 활엽수류	**5%**	A
44071110	- - - 대패질한 것	**5%**	A
44071120	- - -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5%**	A
44071190	- - - 기타	**5%**	A
44071210	- - - 대패질한 것	**5%**	A
44071220	- - -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5%**	A
44071290	- - - 기타	**5%**	A
44071300	- - 에스-피-에프(S-P-F)[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속), 소나무(피누스(Pinus)속)와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의 것	**5%**	A
44071400	- - 헴퍼(Hem-fir)[웨스턴 헴록(Western hemlock)(트수가 헤테로필라(Tsuga heterophylla))과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의 것	**5%**	A
44071910	- - - 대패질한 것	**5%**	A
44071920	- - -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5%**	A
44071990	- - - 기타	**5%**	B
44072100	- - 마호가니(Mahogany)[스웨테니아(Swietenia)속]	**5%**	B
44072200	- - 비롤라(Virola)・임부아(Imbua)・발사(Balsa)	**5%**	A
44072300	- - 티크(Teak)	**5%**	A
44072510	- - - 대패질한 것	**5%**	A
44072520	- - -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5%**	A
44072590	- - - 기타	**5%**	A
44072610	- - - 대패질한 것	**5%**	A
44072620	- - -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5%**	A
44072690	- - - 기타	**5%**	A
44072700	- - 사펠리(Sapelli)	**5%**	A
44072800	- - 이로코(Iroko)	**5%**	A
44072900	- - 기타	**5%**	B
44079110	- - - 대패질한 것	**5%**	A
44079120	- - -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5%**	B
44079190	- - - 기타	**5%**	A
44079210	- - - 대패질한 것	**5%**	A
44079220	- - -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5%**	A
44079290	- - - 기타	**5%**	A
44079300	- - 단풍나무[아세르(Acer)속]	**5%**	A
44079400	- - 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속]	**5%**	A
44079500	- -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Fraxinus)속]	**5%**	A
44079600	- - 자작나무[베툴라(Betula)속]의 것	**5%**	A
44079700	- - 포플러와 사시나무[포푸러스(Populus)속]의 것	**5%**	A
44079910	- - - 대패질한 것	**5%**	A
44079920	- - -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5%**	A
44079990	- - - 기타	**5%**	A
44081010	- - - 대패질한 것	**5%**	B
44081020	- - -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5%**	A
44081090	- - - 기타	**5%**	A
44083110	- - - 대패질한 것	**5%**	A
44083120	- - -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5%**	A
44083190	- - - 기타	**5%**	A
44083910	- - - 대패질한 것	**5%**	A

44083920	- - -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5%**	A
44083990	- - - 기타	**5%**	A
44089010	- - - 대패질한 것	**5%**	A
44089020	- - -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5%**	A
44089090	- - - 기타	**5%**	A
44091010	- - - 블록가공한 목재	**5%**	B
44091020	- - - 경사이음가공한 목재	**5%**	C
44091030	- - - 가장자리가 둥근 대패질한 패널	**5%**	A
44091040	- - - 브이형이음가공한 목재(블록가공・홈가공・경사이음가공)	**5%**	A
44091050	- - - 천장용 블록가공 목재・홈가공 목재	**5%**	A
44091060	- - - 그림틀・벽장식・가구・문・그 밖의 목공품과 목재건구 등의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주형가공 목재(moulded wood)[프레임 스틱(frame stick), 몰딩(moulding)이나 비딩(beading)]	**5%**	C
44091070	- - - 성냥축목・부목・신발용의 나무못・나무로 된 차양[피놀리움 블라인드(pinoleum blind)]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단면이 둥근 막대 모양의 원형가공 목재(rounded wood)	**5%**	A
44091090	- - - 기타	**5%**	C
44092110	- - - 그림틀・벽장식・가구・문・그 밖의 목공품과 목재건구 등의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주형가공 목재(moulded wood)[프레임 스틱(frame stick), 몰딩(moulding)이나 비딩(beading)]	**5%**	A
44092190	- - - 기타	**5%**	A
44092200	- - 열대산 목재의 것	**5%**	A
44092910	- - - 그림틀・벽장식・가구・문・그 밖의 목공품과 목재건구 등의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주형가공 목재(moulded wood)[프레임 스틱(frame stick), 몰딩(moulding)이나 비딩(beading)]	**5%**	A
44092990	- - - 기타	**5%**	A
44101100	-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5%**	A
44101200	- -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oriented strand board)	**5%**	A
44101900	- - 기타	**5%**	B
44109000	- 기타	**5%**	A
44111200	- -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5%**	A
44111300	- -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9밀리미터 이하인 것	**5%**	B
44111400	- - 두께가 9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A
44119200	- -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0.8그램을 초과하는 것	**5%**	A
44119300	- -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0.5그램 초과 0.8그램 이하인 것	**5%**	A
44119400	- -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0.5그램 이하인 것	**5%**	C
44121000	- 대나무로 만든 것	**5%**	C
44123100	- -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5%**	A
44123300	-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오리나무[알너스(Alnus)속]・물푸레나무[프락시너스(Fraxinus)속]・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속]・자작나무[베툴라(Betula)속]・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속]・밤나무[카스타네아(Castanea)속]・느릅나무[울무스(Ulmus)속]・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속]・히커리[카르야(Carya)속]・칠엽수[아에스쿨러스(Aesculus)속]・라임[틸리아(Tilia)속]・단풍나무[아서(Acer)속]・참나무[코커스(Quercus)속]・버즘나무[플라타너스(Platanus)속]・포플러와 사시나무[포푸러스(Populus)속]・아까시나무[로비니아(Robinia)속]・백합나무[리리오덴드론(Liriodendron)속] 또는 호두나무[주글란스(Juglans)속]의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5%**	A
44123400	-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소호 제4412.33호에 특정하지 않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5%**	A
44123900	- -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5%**	B
44124100	- -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5%**	A
44124200	-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5%**	A
44124900	- -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5%**	A
44125100	- -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5%**	A
44125200	-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5%**	A
44125900	- -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5%**	A
44129100	- -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5%**	A
44129200	-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5%**	A
44129900	- -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5%**	B
44130000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플레이트(plate) 모양・스트립(strip) 모양・프로파일(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5%**	B
44141000	-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5%**	B
44149000	- 기타	**5%**	B
44151010	- - - 포장용 및 운송용의 케이스・상자・작은 상자	**5%**	B
44151020	- - - 빈 성냥갑(불을 켜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5%**	A
44151040	- - - 케이블 드럼	**5%**	A
44151090	- - - 기타	**5%**	B
44152000	- 팰릿(pallet)・박스팰릿(box pallet)・그 밖의 깔판류, 목재로 만든 팰릿칼러(pallet collar)	**5%**	A
44160000	목재로 만든 통・배럴(barrel)・배트(vat)・텁(tub)・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와 준재를 포함한다)	**5%**	A
44170010	- - - 작용하는 부분을 목재로 만든 공구	**5%**	B
44170020	- - - 공구의 몸체	**5%**	A
44170030	- - - 공구용 손잡이	**5%**	A
44170040	- - - 비나 브러쉬의 몸체	**5%**	B
44170050	- - - 비나 브러시의 손잡이	**5%**	A
44170060	- - - 신발 제조용이나 모양을 유지시키는 데 사용되는 신발의 골	**5%**	A

44170090	- - - 기타	**5%**	A
44181100	- -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5%**	A
44181900	- - 기타	**5%**	C
44182100	- -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5%**	A
44182900	- - 기타	**5%**	A
44183000	- 기둥과 들보(소호 제4418.81호부터 제4418.89호까지의 물품을 제외한다)	**5%**	C
44184000	-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 거푸집널	**5%**	C
44185000	- 지붕을 이는 판자	**5%**	A
44187300	- - 대나무로 만든 것 또는 최소한 최상층(마모층)을 대나무로 만든 것	**5%**	A
44187400	- - 기타(모자이크 마루용인 것으로 한정한다)	**5%**	C
44187500	- - 기타(다층인 것으로 한정한다)	**5%**	A
44187900	- - 기타	**5%**	B
44188100	- - 집성재[글루램(glulam)]	**5%**	A
44188200	- - 직교집성판[씨엘티(CLT)나 엑스-램(X-lam)]	**5%**	A
44188300	- - 아이빔(I beam)	**5%**	A
44188900	- - 기타	**5%**	A
44189100	- - 대나무로 만든 것	**5%**	B
44189200	- - 셀룰러우드패널	**5%**	A
44189910	- - - 계단용 난간	**5%**	A
44189920	- - - 셀룰러우드 프레임 패널(비금속 시트로 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5%**	B
44189990	- - - 기타	**5%**	B
44191100	- - 빵도마, 도마 및 이와 유사한 판	**5%**	B
44191200	- - 젓가락	**5%**	A
44191900	- - 기타	**5%**	C
44192000	-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5%**	A
44199000	- 기타	**5%**	C
44201100	- -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5%**	A
44201900	- - 기타	**5%**	B
44209010	- - - 옻칠한 나무로 만든 작은 케이스와 상자, 칼붙이류・과학기구 등을 위한 목제 케이스・상자, 포켓 상자, 편지 케이스, 반짇고리(needlework box), 담배통・사탕과자상자 등	**5%**	A
44209020	- - - 제94류에 해당되지 않은 나무로 만든 가구제품[솔 걸이(brush hanger)・편지통(사무실용)・재떨이 등]	**5%**	A
44209030	- - - 묵주(Rosary)	**5%**	A
44209040	- - - 향로(Censer)	**5%**	A
44209090	- - - 기타	**5%**	B
44211000	- 옷걸이	**5%**	A
44212000	- 관(棺)	**5%**	A
44219100	- - 대나무로 만든 것	**5%**	A
44219910	- - - 스풀・콥・보빈・재봉사 릴과 이와 유사한 것(선반가공한 목재의 것으로 한정한다)	**5%**	B
44219920	- - - 농촌 작업용 제품(토끼장・닭둥우리・벌통・새장・개집・여물통과 멍에 등)	**5%**	A
44219930	- - - 무대(극장용) 배경	**5%**	A
44219940	- - - 휴대용 사다리	**5%**	A
44219950	- - - 계단식 발판	**5%**	B
44219960	- - - 선전 광고판, 간판, 도로 표지판	**5%**	B
44219970	- - 이쑤시개	**5%**	A
44219980	- - - 다양한 종류의 스크린과 그 축(스프링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5%**	B
44219991	- - - - 세탁용보드(washing board)와 다리미용 보드(ironing board)	**5%**	A
44219992	- - - - 빨래집게	**5%**	A
44219993	- - - - 포장용 블록	**5%**	A
44219994	- - - - 성냥용 가공 부목(나무부분)	**5%**	A
44219995	- - - - 신발용의 나무로 된 못과 핀	**5%**	A
44219996	- - - - 용량 측정구 및 저울	**5%**	A
44219999	- - - - 기타	**5%**	C
45011000	-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45019000	- 기타	**5%**	A
45020010	- - - 코르크(cork) 제조용 입방체(cube)나 블록(block) 모양인 것	**5%**	A
45020020	- - - 냉장 또는 작물 보존용 판(plate)・입방체(cube)와 시트(sheet)	**5%**	B
45020090	- - - 기타	**5%**	A
45031000	- 마개	**5%**	A
45039010	- - - 어망용 부표	**5%**	A
45039020	- - - 기계와 운송 장비용 부분품	**5%**	A
45039030	- - - 병마개 안을 대는 용도의 디스크(disc)와 링(ring)	**5%**	A
45039040	- - - 냉장 공업용과 작물 보존용의 제품	**5%**	A
45039090	- - - 기타	**5%**	A
45041010	- - - 냉장 공업용과 작물 보존용의 제품	**5%**	C
45041090	- - - 기타	**5%**	C
45049010	- - - 어망용 부표	**5%**	A
45049020	- - - 기계와 운송 장비용 부분품	**5%**	A
45049030	- - - 마개	**5%**	A
45049040	- - - 병마개 안을 대는 용도의 디스크(disc)와 링(ring)	**5%**	A
45049090	- - - 기타	**5%**	A
46012100	- - 대나무로 만든 것	**5%**	C
46012200	- - 등나무로 만든 것	**5%**	A
46012900	- - 기타	**5%**	B
46019200	- - 대나무로 만든 것	**5%**	A
46019300	- - 등나무로 만든 것	**5%**	A
46019400	- - 그 밖의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	**5%**	A

46019900	- - 기타	**5%**	C
46021100	- - 대나무로 만든 것	**5%**	A
46021200	- - 등나무로 만든 것	**5%**	A
46021910	- - - 수세미(loofah) 제품	**5%**	A
46021990	- - - 기타	**5%**	A
46029011	- - - - 바구니	**5%**	A
46029012	- - - - 핸드백・쇼핑백과 이와 유사한 것	**5%**	A
46029013	- - - - 여행가방과 상자	**5%**	A
46029014	- - - - 새장・벌집과 그 유사물품	**5%**	B
46029015	- - - - 어량(Fish trap)	**5%**	A
46029016	- - - - 가정용품・식탁용품과 주방용품	**5%**	B
46029017	- - - - 병 덮개	**5%**	A
46029018	- - - - 수세미(luffa) 제품・목욕용 수세미와 이와 유사한 것	**5%**	A
46029019	- - - - 기타	**5%**	A
46029090	- - - 기타	**5%**	A
47010000	기계목재펄프	**5%**	B
47020000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5%**	A
47031100	- - 침엽수류로 만든 것	**5%**	A
47031900	- - 활엽수류로 만든 것	**5%**	A
47032100	- - 침엽수류로 만든 것	**5%**	A
47032900	- - 활엽수류로 만든 것	**5%**	A
47041100	- - 침엽수류로 만든 것	**5%**	A
47041900	- - 활엽수류로 만든 것	**5%**	A
47042100	- - 침엽수류로 만든 것	**5%**	A
47042900	- - 활엽수류로 만든 것	**5%**	A
47050000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5%**	A
47061000	- 면 린터 펄프(cotton linters pulp)	**5%**	A
47062000	-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5%**	A
47063000	- 기타(대나무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	A
47069100	- - 기계펄프	**5%**	B
47069200	- - 화학펄프	**5%**	A
47069300	- - 기계공정과 화학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 펄프	**5%**	A
47071000	-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판지로 만든 것	**5%**	C
47072000	-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그 밖의 종이나 판지(전체를 착색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C
47073000	-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예: 신문, 잡지, 이와 유사한 인쇄물)	**5%**	C
47079010	- - - 묵은 신문지	**5%**	C
47079090	- - - 기타	**5%**	C
48010000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5%**	X
48021000	- 수제(手製) 종이와 판지	**5%**	C
48022000	- 사진 감광성・열 감응성・전자 감광성 종이나 판지의 기본 재료로 사용되는 종이와 판지	**5%**	X
48024000	- 벽지용 원지(原紙)	**5%**	C
480254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미만인 것	**5%**	C
48025500	- - 롤 모양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150그램 이하인 것	**5%**	X
48025600	- - 시트(sheet) 모양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150그램 이하이고,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 이하이며, 다른 한 변은 297밀리미터 이하인 것	**5%**	X
48025700	- - 그 밖의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150그램 이하인 것	**5%**	X
480258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5%**	C
48026100	- - 롤 모양인 것	**5%**	X
48026200	- - 시트(sheet) 모양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 이하이고, 다른 한 변은 297밀리미터 이하인 것	**5%**	A
48026900	- - 기타	**5%**	C
48030010	- - - 화장지・안면용 티슈용 원지, 타월・냅킨용 원지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위생용 종이	**5%**	X
48030090	- - - 기타	**5%**	X
48041100	- - 표백하지 않은 것	**5%**	X
48041900	- - 기타	**5%**	C
48042100	- - 표백하지 않은 것	**5%**	X
48042900	- - 기타	**5%**	C
48043100	- - 표백하지 않은 것	**5%**	C
48043900	- - 기타	**5%**	C
48044100	- - 표백하지 않은 것	**5%**	A
48044200	-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	**5%**	A
48044900	- - 기타	**5%**	A
48045100	- - 표백하지 않은 것	**5%**	X
48045200	-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	**5%**	A
48045900	- - 기타	**5%**	A
48051100	- - 반화학 플루팅지(fluting paper)	**5%**	X
48051200	- - 스트로 플루팅지(straw fluting paper)	**5%**	A
48051910	- - - 재생라이너판의 플루팅 지(fluting paper)(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X

48051920	- - - 재생라이너판의 플루팅 지(fluting paper)(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X
48051990	- - - 기타	**5%**	X
480524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	**5%**	X
480525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5%**	X
48053000	- 아황산포장지	**5%**	X
48054000	- 여과지와 판지	**5%**	A
48055000	- 펠트지와 판지	**5%**	A
480591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	**5%**	X
480592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 225그램 미만인 것	**5%**	C
480593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25그램 이상인 것	**5%**	X
48061000	- 황산지	**5%**	A
48062000	- 내지지(耐脂紙)	**5%**	X
48063000	- 트레이싱지(tracing paper)	**5%**	B
48064000	- 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	**5%**	B
48070000	겹붙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5%**	X
48081000	- 물결 모양의 종이와 판지(구멍을 뚫었는지에 상관없다)	**5%**	X
48084000	- 크라프트지[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으로서 올록볼록한지(embossed), 구멍을 뚫었는지(perforated)에 상관없다]	**5%**	B
48089000	- 기타	**5%**	B
48092000	- 셀프복사지	**5%**	C
48099000	- 기타	**5%**	B
48101300	- - 롤 모양인 것	**5%**	X
48101400	- - 시트(sheet) 모양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 이하이고, 다른 한 변은 297밀리미터 이하인 것	**5%**	X
48101900	- - 기타	**5%**	C
48102200	- - 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이	**5%**	C
48102900	- - 기타	**5%**	X
48103100	-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C
48103200	-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C
48103900	- - 기타	**5%**	C
48109200	- - 여러 겹의 것	**5%**	C
48109900	- - 기타	**5%**	C
48111000	- 타르・역청물질・아스팔트 처리를 한 종이와 판지	**5%**	A
48114110	- - - 롤 또는 테이프 모양(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X
48114190	- - - 기타	**5%**	X
48114900	- - 기타	**5%**	X
48115100	- - 표백한 것(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X
48115900	- - 기타	**5%**	X
48116000	- 왁스・파라핀왁스・스테아린(stearin)・기름・글리세롤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	**5%**	C
48119000	- 그 밖의 종이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5%**	X
481200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필터플레이트	**5%**	B
48131000	- 소책자 모양이나 튜브 모양인 것	**5%**	C
48132000	- 폭이 5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5%**	A
48139000	- 기타	**5%**	X
48142000	-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표면에 그레인한(grain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착색한 것, 디자인 인쇄한 것, 그 밖의 모양으로 장식한 플라스틱층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	X
48149000	- 기타	**5%**	C
48162000	- 셀프복사지	**5%**	C
48169000	- 기타	**5%**	C
48171000	- 봉투	**5%**	X
48172000	- 봉함엽서・우편엽서・통신용카드	**5%**	C
48173000	-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X
48181000	- 화장지	**5%**	X
48182000	- 손수건・클렌징티슈・안면용 화장지・타월	**5%**	X
48183010	- - - 책상보	**5%**	C
48183090	- - - 기타	**5%**	A
48185000	- 의류와 의류 부속품	**5%**	X
48189000	- 기타	**5%**	C
48191010	- - - 향수・신병장식용품과 선물용	**5%**	X
48191090	- - - 기타	**5%**	X
48192010	- - - 향수・신병장식용품과 선물용	**5%**	X
48192090	- - - 기타	**5%**	X
48193000	- 폭이 40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	**5%**	X
48194000	- 그 밖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5%**	X
48195000	- 그 밖의 포장용기[레코드 슬리브(record sleeve)를 포함한다]	**5%**	X
48196000	- 서류상자・서류받침・보관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C
48201000	-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	**5%**	X

48202000	- 연습장	**5%**	X
48203010	- - - 금속피팅(fitting)의 것	**5%**	B
48203090	- - - 그 밖의 종류의 것	**5%**	B
48204000	-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삽입식 카본세트	**5%**	A
48205000	-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	**5%**	B
48209000	- 기타	**5%**	X
48211000	- 인쇄한 것	**5%**	X
48219000	- 기타	**5%**	X
48221000	-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 데에 사용하는 것	**5%**	B
48229000	- 기타	**5%**	X
48232000	- 여과용 종이와 판지	**5%**	C
48234000	-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시트(sheet)・다이얼	**5%**	X
48236100	- - 대나무로 만든 것	**5%**	C
48236900	- - 기타	**5%**	X
48237010	- - - 알(egg) 포장에 사용되는 주형 플레이트(plate)	**5%**	B
48237090	- - - 기타	**5%**	C
48239010	- - - 과실・과자・이와 유사한 것의 포장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5%**	X
48239020	- - - 레이스(lace)지, 자수지와 그것의 스트립(strip), 쉘프에징(shelf edging)용의 종이	**5%**	A
48239030	- - - 종이로 만든 캐스킷(gasket)과 링(ring)	**5%**	C
48239040	- - - 스탬프(stamp)와 사진용 앵글과 경첩・그림 테두리용 스트립(strip)・슈트케이스용 보강 앵글	**5%**	B
48239050	- - - 테일러링 패턴(tailoring patterns)	**5%**	A
48239060	- - - 자카드용 구멍을 뚫은 카드와 이와 유사한 것	**5%**	B
48239070	- - - 방적용 캔(can), 사(絲, yarn) 등을 감기 위한 평판 모양의 카드	**5%**	A
48239080	- - - 소시지용 방수 종이의 인조 거트(gut)	**5%**	A
48239091	- - - - 손 부채	**5%**	A
48239092	- - - - 포장용의 페이퍼울(paper wool)	**5%**	B
48239093	- - - - 편조물 또는 그 밖의 용도의 종이 스트립[도포 또는 접어 포갠 것인지에 상관 없다]	**5%**	A
48239094	- - - - 컴퓨터용 용지	**0%**	A
48239099	- - - - 기타	**5%**	X
49011010	- - - 질문, 답변 또는 그 밖의 일반적인 교육 정보가 포함된 일련번호가 기입된 카드	**0%**	A
49011090	- - - 기타	**0%**	A
49019100	- - 사전・백과사전과 이들의 분할 연속물	**0%**	A
49019911	- - - - 코란(Quran) 경전	**0%**	A
49019919	- - - - 기타	**0%**	A
49019920	- - - 시각 장애인 또는 속기 사용자를 위해 점자 기법으로 인쇄된 서적(book)・소책자(booklet)와 팸플릿(pamphlet)	**0%**	A
49019930	- - - 학교 및 대학 서적	**0%**	A
49019940	- - - 박물관과 공공도서관용 색인 및 연간 디렉토리(directory)	**0%**	A
49019950	- - - 어린이용 삽화 책(그림이 주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0%**	A
49019960	- - - 판지를 피복한 신문・잡지・정기간행물과 신문・잡지・정기간행물을 결합하여 한 장의 표지 안에 세트로 만든 것 (광고 선전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A
49019990	- - - 기타	**0%**	A
49021010	- - - 신문	**0%**	A
49021020	- - - 잡지	**0%**	A
49021090	- - - 기타	**0%**	A
49029010	- - - 신문	**0%**	A
49029020	- - - 잡지	**0%**	A
49029030	- - - 정기 간행물	**0%**	A
49029090	- - - 기타	**0%**	A
49030010	- - - 아동용 습화책	**0%**	A
49030020	- - - 아동용 그림책	**0%**	A
49030090	- - - 기타	**0%**	A
49040000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5%**	A
49052000	- 책자로 된 것	**0%**	A
49059010	- - - 지구본	**0%**	A
49059090	- - - 기타	**0%**	A
49060000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다], 손으로 쓴 책자와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카본복사한 것	**5%**	C
49070011	- - - - 우표	**0%**	A
49070012	- - - - 수입인지	**0%**	A
49070019	- - - - 그 밖의 스탬프	**0%**	A
49070020	- - - 사용하지 않은 우표류가 찍힌 종이 카드와 봉투	**0%**	A
49070031	- - - - 유통되고 있는 은행권	**0%**	A
49070032	- - - - 아직 법화로 유통되지 않는 은행권	**0%**	A
49070040	- - - 여행자 수표	**0%**	A
49070050	- - - 공인 수표	**0%**	A
49070060	- - - 번호 및 서명된 주식・주권・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0%**	A
49070070	- - - 인쇄물로 사용되는 주식・주권・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0%**	A
49070080	- - - 수표장	**0%**	A
49070090	- - - 기타	**0%**	A
49081000	-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로서 유리화할 수 있는 것	**5%**	C
49089000	- 기타	**5%**	C
49090010	- - - 엽서	**5%**	A

49090020	- - - 연하장 및 이와 유사한 카드	**5%**	B
49100000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5%**	C
49111010	- - - 광고 선전물	**5%**	A
49111090	- - - 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와 유사한 것	**5%**	C
49119110	- - - 관광명소와 조경 사진(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C
49119190	- - - 기타	**5%**	C
49119910	- - - 달력용 인쇄된 마운트(mount)(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5%**	C
49119920	- - - 해부학・식물학・동물학을 위한 교육용 보드	**5%**	A
49119930	- - - 파티(party)・페스티벌(festival)・운송수단 티켓(ticket)과 이와 유사한 티켓	**5%**	C
49119990	- - - 기타	**5%**	B
500100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50020000	생사(꼰 것은 제외한다)	**5%**	A
50030000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 실 웨이스트(waste),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	A
50040000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	A
50050000	견방사[견 웨이스트(waste)인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5%**	A
50060000	견사・견방사(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누에의 거트(gut)	**5%**	A
50071000	- 견 노일(noil) 직물	**5%**	A
50072000	- 그 밖의 직물[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noil)의 것은 제외한다]	**5%**	B
50079000	- 그 밖의 직물	**5%**	A
51011100	- - 깎은 양모	**5%**	A
51011900	- - 기타	**5%**	A
51012100	- - 깎은 양모	**5%**	A
51012900	- - 기타	**5%**	A
51013000	- 탄화처리한 것	**5%**	A
51021100	- - 캐시미어 염소의 것	**5%**	A
51021900	- - 기타	**5%**	A
51022000	- 동물의 거친 털	**5%**	A
51031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노일(noil)	**5%**	A
51032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5%**	A
51033000	- 동물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	**5%**	A
51040000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5%**	A
51051000	- 카드(card)한 양모	**5%**	A
51052100	- - 코움(comb)한 양모(단편 모양으로 한정한다)	**5%**	A
51052900	- - 기타	**5%**	A
51053100	- - 캐시미어 염소의 것	**5%**	A
51053900	- - 기타	**5%**	A
51054000	- 동물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5106100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	A
5106200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5%**	A
5107100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	A
5107200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5%**	A
51081000	- 카드(card)한 것	**5%**	A
51082000	- 코움(comb)한 것	**5%**	A
51091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	A
51099000	- 기타	**5%**	A
51100000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	A
51111110	- - - 아바야(abaya)[남성용 클록(cloak)] 제작용	**5%**	B
51111190	- - - 기타	**5%**	A
51111910	- - - 아바야(abaya)[남성용 클록(cloak)] 제작용	**5%**	B
51111990	- - - 기타	**5%**	A
51112010	- - - 아바야(abaya)[남성용 클록(cloak)] 제작용	**5%**	A
51112090	- - - 기타	**5%**	A
51113010	- - - 아바야(abaya)[남성용 클록(cloak)] 제작용	**5%**	A
51113090	- - - 기타	**5%**	A
51119010	- - - 아바야(abaya)[남성용 클록(cloak)] 제작용	**5%**	A
51119090	- - - 기타	**5%**	A
51121110	- - - 아바야(abaya)[남성용 클록(cloak)] 제작용	**5%**	A
51121190	- - - 기타	**5%**	A
51121910	- - - 아바야(abaya)[남성용 클록(cloak)] 제작용	**5%**	A
51121990	- - - 기타	**5%**	A
51122010	- - - 아바야(abaya)[남성용 클록(cloak)] 제작용	**5%**	A
51122090	- - - 기타	**5%**	A
51123010	- - - 아바야(abaya)[남성용 클록(cloak)] 제작용	**5%**	A
51123090	- - - 기타	**5%**	A
51129010	- - - 아바야(abaya)[남성용 클록(cloak)] 제작용	**5%**	A
51129090	- - - 기타	**5%**	B
51130011	- - - - 아바야(abaya)[남성용 클록(cloak)] 제작용	**5%**	A
51130019	- - - - 기타	**5%**	A
51130020	- - - 직물(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5%**	A
52010000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B
52021000	- 실(yarn)의 웨이스트(waste)[실(thread)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5%**	A
52029100	- - 가닛스톡(garnetted stock)	**5%**	A
52029900	- - 기타	**5%**	B
52030000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52041100	- -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	B
52041900	- - 기타	**5%**	A
52042000	- 소매용	**5%**	B

52051100	- -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5%**	A
52051200	-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5%**	A
52051300	-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5%**	A
52051400	-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5%**	A
52051500	- -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5%**	A
52052100	- -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5%**	A
52052200	-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5%**	A
52052300	-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5%**	A
52052400	-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5%**	A
52052600	- - 125데시텍스 미만 106.38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94수 이하)	**5%**	A
52052700	- - 106.38데시텍스 미만 83.33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94수 초과 120수 이하)	**5%**	A
52052800	- - 83.33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120수 초과)	**5%**	A
520531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5%**	A
520532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5%**	A
52053300	-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5%**	A
52053400	-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5%**	A
52053500	-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5%**	A
520541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5%**	A
520542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5%**	A
52054300	-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5%**	A
52054400	-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5%**	A
52054600	-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 106.38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94수 이하)	**5%**	A
52054700	- - 구성하는 단사가 106.38데시텍스 미만 83.33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94수 초과 120수 이하)	**5%**	A
52054800	- - 구성하는 단사가 83.33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20수 초과)	**5%**	C
52061100	- -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5%**	A
52061200	-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5%**	A
52061300	-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5%**	A
52061400	-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5%**	A
52061500	- -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5%**	A
52062100	- -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5%**	A
52062200	-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5%**	A
52062300	-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5%**	A
52062400	-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5%**	A
52062500	- -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5%**	A
520631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5%**	A
520632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5%**	A
52063300	-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5%**	A
52063400	-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5%**	A
52063500	-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5%**	A
520641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5%**	A
520642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5%**	A
52064300	-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5%**	A
52064400	-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5%**	A
52064500	-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5%**	A
52071000	-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	A
52079000	- 기타	**5%**	A
52081100	-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B
52081200	-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5%**	A

52081300	-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	B
52081900	- - 그 밖의 직물의 것	**5%**	A
52082100	-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A
52082200	-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5%**	A
52082300	-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	A
52082900	- - 그 밖의 직물의 것	**5%**	B
52083100	-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C
52083200	-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5%**	C
52083300	-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	C
52083900	- - 그 밖의 직물의 것	**5%**	B
52084100	-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A
52084200	-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5%**	C
52084300	-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	B
52084900	- - 그 밖의 직물의 것	**5%**	A
52085100	-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C
52085200	-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5%**	B
52085900	- - 그 밖의 직물	**5%**	B
52091100	- - 평직물(平織物)	**5%**	A
52091200	-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	A
52091900	- - 그 밖의 직물	**5%**	B
52092100	- - 평직물(平織物)	**5%**	A
52092200	-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	A
52092900	- - 그 밖의 직물	**5%**	A
52093100	- - 평직물(平織物)	**5%**	B
52093200	-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	A
52093900	- - 그 밖의 직물	**5%**	C
52094100	- - 평직물(平織物)	**5%**	A
52094200	- - 데님(denim)	**5%**	B
52094300	- - 3올이나 4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	A
52094900	- - 그 밖의 직물	**5%**	A
52095100	- - 평직물(平織物)	**5%**	A
52095200	-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	A
52095900	- - 그 밖의 직물	**5%**	C
52101100	- - 평직물(平織物)	**5%**	A
52101900	- - 그 밖의 직물	**5%**	B
52102100	- - 평직물(平織物)	**5%**	A
52102900	- - 그 밖의 직물	**5%**	A
52103100	- - 평직물(平織物)	**5%**	B
52103200	-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	C
52103900	- - 그 밖의 직물	**5%**	A
52104100	- - 평직물(平織物)	**5%**	A
52104900	- - 그 밖의 직물	**5%**	B
52105100	- - 평직물(平織物)	**5%**	A
52105900	- - 그 밖의 직물	**5%**	B
52111100	- - 평직물(平織物)	**5%**	A
52111200	-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	A
52111900	- - 그 밖의 직물	**5%**	A
52112000	- 표백한 것	**5%**	A
52113100	- - 평직물(平織物)	**5%**	A
52113200	-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	B
52113900	- - 그 밖의 직물	**5%**	B
52114100	- - 평직물(平織物)	**5%**	A
52114200	- - 데님(denim)	**5%**	A
52114300	- - 3올이나 4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	A
52114900	- - 그 밖의 직물	**5%**	A
52115100	- - 평직물(平織物)	**5%**	A
52115200	-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	A
52115900	- - 그 밖의 직물	**5%**	A
52121100	- - 표백하지 않은 것	**5%**	A
52121200	- - 표백한 것	**5%**	A
52121300	- - 염색한 것	**5%**	C
521214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	A
52121500	- - 날염한 것	**5%**	B
52122100	- - 표백하지 않은 것	**5%**	A
52122200	- - 표백한 것	**5%**	A
52122300	- - 염색한 것	**5%**	A
521224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	A
52122500	- - 날염한 것	**5%**	A
53011000	- 생아마나 침지(沈漬)아마	**5%**	A
53012100	- -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린(scutched) 것	**5%**	A
53012900	- - 기타	**5%**	A
53013000	-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5%**	A
53021000	- 생대마나 침지(沈漬)대마	**5%**	A
53029000	- 기타	**5%**	A
53031000	-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생것이나 침지(沈漬)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53039000	- 기타	**5%**	A

53050000	코코넛・아바카(마닐라마)・라미(ramie)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토우(tow)・노일(noil)・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	A
53061000	- 단사	**5%**	A
53062000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	A
53071000	- 단사	**5%**	A
53072000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	A
53081000	- 코이어(coir)사	**5%**	A
53082000	- 대마사	**5%**	A
53089000	- 기타	**5%**	A
53091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A
53091900	- - 기타	**5%**	B
53092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A
53092900	- - 기타	**5%**	B
53101000	- 표백하지 않은 것	**5%**	A
53109000	- 기타	**5%**	A
53110000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종이실(paper yarn)의 직물	**5%**	B
54011010	- - - 소매용의 것	**5%**	B
54011090	- - - 기타	**5%**	C
54012010	- - - 소매용의 것	**5%**	A
54012090	- - - 기타	**5%**	B
54021100	- - 아라미드의 것	**5%**	A
54021900	- - 기타	**5%**	B
54022000	-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하며, 텍스쳐화한(textured) 것인지에 상관없다]	**5%**	C
54023100	-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A
54023200	-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5%**	A
54023300	- - 폴리에스테르의 것	**5%**	A
54023400	- - 폴리프로필렌의 것	**5%**	B
54023900	- - 기타	**5%**	B
54024400	- - 탄성사	**5%**	C
54024500	- - 기타(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한다)	**5%**	B
54024600	- -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방향성(方向性)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A
54024700	- -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5%**	A
54024800	- -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5%**	B
54024900	- - 기타	**5%**	A
54025100	-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5%**	A
54025200	- - 폴리에스테르의 것	**5%**	C
54025300	- - 폴리프로필렌의 것	**5%**	A
54025900	- - 기타	**5%**	A
54026100	-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5%**	B
54026200	- - 폴리에스테르의 것	**5%**	A
54026300	- - 폴리프로필렌의 것	**5%**	B
54026900	- - 기타	**5%**	B
54031000	-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5%**	A
54033100	-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꼬임이 없거나, 꼬임이 미터당 120회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A
54033200	-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꼬임이 미터당 120회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5%**	A
54033300	- -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5%**	A
54033900	- - 기타	**5%**	C
54034100	-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5%**	A
54034200	- -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5%**	A
54034900	- - 기타	**5%**	A
54041100	- - 탄성사	**5%**	A
54041200	- -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5%**	A
54041900	- - 기타	**5%**	B
54049000	- 기타	**5%**	B
54050010	- - - 모노필라멘트	**5%**	A
54050090	- - - 기타	**5%**	A
54060000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	A
54071000	-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나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직물	**5%**	B
54072000	-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5%**	A
54073000	- 제11부의 주 제9호의 직물	**5%**	B
54074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A
54074200	- - 염색한 것	**5%**	B
54074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	A
54074400	- - 날염한 것	**5%**	B
54075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A
54075200	- - 염색한 것	**5%**	C
54075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	C
54075400	- - 날염한 것	**5%**	B
54076100	- -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	C
54076900	- - 기타	**5%**	C
54077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A

54077200	- - 염색한 것	**5%**	C
54077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	A
54077400	- - 날염한 것	**5%**	B
54078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C
54078200	- - 염색한 것	**5%**	B
54078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	A
54078400	- - 날염한 것	**5%**	C
54079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B
54079200	- - 염색한 것	**5%**	A
54079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	B
54079400	- - 날염한 것	**5%**	C
54081000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5%**	C
54082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A
54082200	- - 염색한 것	**5%**	C
54082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	B
54082400	- - 날염한 것	**5%**	A
54083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A
54083200	- - 염색한 것	**5%**	C
54083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	A
54083400	- - 날염한 것	**5%**	A
55011100	- - 아라미드의 것	**5%**	B
55011900	- - 기타	**5%**	C
550120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5%**	A
55013000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5%**	C
55014000	- 폴리프로필렌의 것	**5%**	A
55019000	- 기타	**5%**	A
55021000	-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5%**	A
55029000	- 기타	**5%**	A
55031100	- - 아라미드(aramid)의 것	**5%**	A
55031900	- - 기타	**5%**	A
550320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5%**	B
55033000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5%**	A
55034000	- 폴리프로필렌의 것	**5%**	C
55039000	- 기타	**5%**	A
55041000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5%**	A
55049000	- 기타	**5%**	A
55051000	- 합성섬유의 것	**5%**	A
55052000	- 재생・반(半)합성 섬유의 것	**5%**	A
55061000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5%**	A
550620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5%**	A
55063000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5%**	A
55064000	- 폴리프로필렌의 것	**5%**	A
55069000	- 기타	**5%**	A
5507000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 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55081010	- - - 소매용	**5%**	A
55081090	- - - 기타	**5%**	A
55082010	- - - 소매용	**5%**	A
55082090	- - - 기타	**5%**	A
55091100	- - 단사	**5%**	A
55091200	-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	A
55092100	- - 단사	**5%**	A
55092200	-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	A
55093100	- - 단사	**5%**	A
55093200	-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	A
55094100	- - 단사	**5%**	A
55094200	-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	A
55095100	- - 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5%**	B
55095200	- -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5%**	A
55095300	- - 주로 면과 혼방한 것	**5%**	A
55095900	- - 기타	**5%**	B
55096100	- -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5%**	A
55096200	- - 주로 면과 혼방한 것	**5%**	A
55096900	- - 기타	**5%**	A
55099100	- -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5%**	A
55099200	- - 주로 면과 혼방한 것	**5%**	A
55099900	- - 기타	**5%**	A
55101100	- - 단사	**5%**	A
55101200	-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	A
55102000	- 그 밖의 실(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55103000	- 그 밖의 실(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55109000	- 그 밖의 실	**5%**	A
55111000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	A
55112000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5%**	A
55113000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5%**	A
55121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C
55121900	- - 기타	**5%**	C
55122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A
55122900	- - 기타	**5%**	C
55129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A
55129900	- - 기타	**5%**	C

551311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5%**	B
551312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5%**	A
551313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5%**	A
55131900	- - 그 밖의 직물	**5%**	C
551321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5%**	B
551323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5%**	A
55132900	- - 그 밖의 직물	**5%**	C
551331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5%**	B
55133900	- - 그 밖의 직물	**5%**	A
551341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5%**	A
55134900	- - 그 밖의 직물	**5%**	A
551411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5%**	B
551412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5%**	A
55141900	- - 그 밖의 직물	**5%**	A
551421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5%**	A
551422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5%**	A
551423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5%**	A
55142900	- - 그 밖의 직물	**5%**	B
55143000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	A
551441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5%**	B
551442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5%**	B
551443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5%**	B
55144900	- - 그 밖의 직물	**5%**	A
55151100	- - 주로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5%**	B
55151200	- -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5%**	B
55151300	- -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5%**	A
55151900	- - 기타	**5%**	B
55152100	- -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5%**	B
55152200	- -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5%**	A
55152900	- - 기타	**5%**	A
55159100	- -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5%**	A
55159900	- - 기타	**5%**	A
55161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A
55161200	- - 염색한 것	**5%**	C
55161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	A
55161400	- - 날염한 것	**5%**	B
55162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A
55162200	- - 염색한 것	**5%**	C
55162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	A
55162400	- - 날염한 것	**5%**	B
55163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A
55163200	- - 염색한 것	**5%**	B
55163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	A
55163400	- - 날염한 것	**5%**	A
55164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B
55164200	- - 염색한 것	**5%**	A
55164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	A
55164400	- - 날염한 것	**5%**	B
55169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C
55169200	- - 염색한 것	**5%**	A
55169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	A
55169400	- - 날염한 것	**5%**	C
56012110	- - - 면봉	**5%**	C
56012190	- - - 기타	**5%**	B
56012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C
56012900	- - 기타	**5%**	A
56013000	- 섬유의 플록(flock), 더스트(dust), 밀네프(mill nep)	**5%**	A
56021000	-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	**5%**	C
56022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A
56022900	-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5%**	A
56029000	- 기타	**5%**	A
560311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것	**5%**	C
560312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	**5%**	C
560313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	**5%**	C
560314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5%**	C
560391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것	**5%**	A
560392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	**5%**	C
560393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	**5%**	C
560394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5%**	C
56041000	-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56049000	- 기타	**5%**	A
56050000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gimp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스트립(strip)・가루 모양의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5%**	B
56060010	- - - 짐프사(Gimped yarn)・스트립(strip) 및 이와 유사한 것	**5%**	A
56060020	- - - 셔닐사(chenille yarn)	**5%**	A

56060030	- - -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5%**	A
56072110	- - - 엮지 않은 것	**5%**	B
56072120	- - - 엮은 것	**5%**	A
56072910	- - - 엮지 않은 것	**5%**	A
56072920	- - - 엮은 것	**5%**	B
56074110	- - - 엮지 않은 것	**5%**	C
56074120	- - - 엮은 것	**5%**	B
56074910	- - - 엮지 않은 것	**5%**	B
56074920	- - - 엮은 것	**5%**	B
56075010	- - - 엮지 않은 것	**5%**	C
56075020	- - - 엮은 것	**5%**	B
56079010	- - - 엮지 않은 것	**5%**	C
56079021	- - - - 황마나 제5303호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로 만든 것	**5%**	A
56079029	- - - - 기타	**5%**	B
56081100	- - 제품으로 된 어망	**5%**	C
56081900	- - 기타	**5%**	B
56089000	- 기타	**5%**	B
56090010	- - - 구두끈	**5%**	A
56090020	- - - 빨랫줄	**5%**	B
56090030	- - - 슬링(sling)	**5%**	C
56090090	- - - 기타	**5%**	C
57011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A
5701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B
57021000	-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 및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	**5%**	A
57022000	- 코코넛섬유(코이어)로 만든 바닥깔개	**5%**	A
57023110	- - - 기계로 만든 양탄자류	**5%**	A
57023120	- - - 러그와 이와 유사한 것	**5%**	A
57023190	- - - 기타	**5%**	A
57023210	- - - 양탄자류, 러그 및 모켓(moquette)	**5%**	B
57023220	- - - 셔닐사(chenille yarn)로 만든 양탄자류와 러그	**5%**	B
57023290	- - - 기타	**5%**	B
57023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A
57024110	- - - 기계로 만든 양탄자류	**5%**	A
57024120	- - - 러그와 이와 유사한 것	**5%**	A
57024190	- - - 기타	**5%**	C
57024210	- - - 양탄자류, 러그 및 모켓(moquette)	**5%**	A
57024221	- - - - 침대용·테이블용 커버	**5%**	C
57024229	- - - - 기타	**5%**	C
57024230	- - - 기도용 깔개	**5%**	C
57024290	- - - 기타	**5%**	C
57024911	- - - - 기도용 깔개	**5%**	A
57024919	- - - - 기타	**5%**	C
57024990	- - - 기타	**5%**	A
57025000	-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과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5%**	A
57029110	- - - 기계로 만든 양탄자류	**5%**	C
57029120	- - - 러그와 이와 유사한 것	**5%**	A
57029190	- - - 기타	**5%**	A
57029210	- - - 모켓(moquette) 양탄자류 및 러그	**5%**	C
57029220	- - - 기도용 깔개	**5%**	A
57029290	- - - 기타	**5%**	C
57029911	- - - - 기도용 깔개	**5%**	A
57029919	- - - - 기타	**5%**	B
57029990	- - - 기타	**5%**	B
57031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A
57032100	- - 인조잔디(turf)	**5%**	C
57032900	- - 기타	**5%**	C
57033100	- - 인조잔디(turf)	**5%**	C
57033910	- - - 양탄자류, 러그 및 모켓(moquette)	**5%**	A
57033920	- - - 셔닐사(chenille yarn)로 만든 양탄자류와 러그	**5%**	A
57033930	- - - 기도용 깔개	**5%**	A
57033990	- - - 기타	**5%**	A
57039011	- - - - 기도용 깔개	**5%**	A
57039019	- - - - 기타	**5%**	A
57039090	- - - 기타	**5%**	A
57041000	-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제곱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5%**	A
57042000	-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제곱미터 초과 1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C
57049000	- 기타	**5%**	C
57050011	- - - - 셔닐사(chenille yarn)로 만든 양탄자류와 러그	**5%**	C
57050012	- - - - 기도용 깔개	**5%**	A
57050019	- - - - 기타	**5%**	A
57050020	- - - 부직포 양탄자류[권축된(crimped) 카드한(carded) 방직용 섬유의 층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고무나 플라스틱 등에 의해 위치가 고정된 것]	**5%**	C
57050030	- - - 모켓(moquette) 또는 모피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양탄자류	**5%**	A
57050090	- - - 기타	**5%**	C
58011010	- - - 아바야(abaya)[남성용 클록(cloak)]제작용	**5%**	A
58011090	- - - 기타	**5%**	A
58012100	- -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5%**	A
58012200	- -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5%**	A

58012300	- -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5%**	A
58012600	- - 셔닐(chenille)직물	**5%**	A
58012700	- - 경(經)파일(pile)직물	**5%**	A
58013100	- -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5%**	B
58013200	- -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5%**	A
58013300	- -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5%**	C
58013600	- - 셔닐(chenille)직물	**5%**	B
58013700	- - 경(經)파일(pile)직물	**5%**	C
58019011	- - - - 아바야(abaya)[남성용 클록(cloak)]제작용	**5%**	A
58019019	- - - - 기타	**5%**	A
58019090	- - - 기타	**5%**	B
58021000	- 면으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5%**	C
5802200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5%**	B
58023000	- 터프트(tuft)한 직물	**5%**	A
58030000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5%**	B
58041000	- 튈(tulle)과 그 밖의 망직물	**5%**	C
580421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B
5804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B
58043000	- 손으로 만든 레이스	**5%**	A
58050000	고블랭(gobelin)직・플랜더스(flanders)직・오뷔송(aubusson)직・보베(beauvais)직과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태피스트리(tapestry), 자수의 태피스트리(tapestry)[예: 프티포인트(petit point)・십자수](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A
58061000	- 파일(pile)직물[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셔닐(chenille)직물	**5%**	C
58062000	- 그 밖의 직물(탄성사나 고무실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	C
58063100	- - 면으로 만든 것	**5%**	C
58063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C
58063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58064000	-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	**5%**	A
58071000	- 직조한 것	**5%**	B
58079000	- 기타	**5%**	A
58081000	- 브레이드(braid)(원단 상태로 한정한다)	**5%**	A
58089000	- 기타	**5%**	B
58090000	금속사의 직물과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zed yarn)의 직물(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5%**	B
58101000	-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5%**	A
58109100	- - 면으로 만든 것	**5%**	B
58109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B
5810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58110000	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5810호의 자수천은 제외한다)	**5%**	C
59011000	-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5%**	B
59019010	- - - 투사포(tracing cloth)	**5%**	B
59019020	- - - 회화용 캔버스	**5%**	C
59019030	- - - 모자 제조에 사용하는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5%**	A
59021000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5%**	A
59022000	-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5%**	A
59029000	- 기타	**5%**	B
59031000	- 폴리(염화비닐)의 것	**5%**	A
59032000	- 폴리우레탄의 것	**5%**	A
59039000	- 기타	**5%**	C
59041000	- 리놀륨	**5%**	A
59049000	- 기타	**5%**	A
59050010	- - - 셔닐(chenille)로 만든 것	**5%**	A
59050020	- - - 면으로 만든 것	**5%**	A
59050060	-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A
59050090	- -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5%**	C
59061000	-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	**5%**	C
59069100	-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5%**	A
59069900	- - 기타	**5%**	C
59070011	- - - - 물품 등의 덮개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타르・역청이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도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5%**	B
59070012	- - - - 왁스성 물질을 도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5%**	C
59070013	- - - - 천연수지와 장뇌(樟腦)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도포하거나 포화시킨 얇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5%**	A
59070014	- - - 기름이나 건성유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도포・침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예: 건성유와 그을음의 혼합물을 두꺼운 층으로 도포한 포장용 천, 대마・황마・아마・면으로 만든 질기고 거친 직물 및 방수성 인조직물]	**5%**	A
59070015	- - - - 불연성을 주기 위하여 규산염을 도포(塗布)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예: 내화스크린용)	**5%**	A
59070019	- - - - 기타	**5%**	C
59070020	- - - 극장용 배경・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5%**	C

59080000	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초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편조・편직한 것으로 한정한다), 백열가스 맨틀(mantle)과 백열가스 맨틀(mantle)용 관 모양의 편물(침투시켰는지에 상관없다)	**5%**	A
59090010	- - - 소방용	**5%**	B
59090090	- - - 기타	**5%**	C
59100000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belting)(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B
59111000	- 침포(針布)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felt), 펠트(felt)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가죽 또는 그 밖의 물품을 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물	**5%**	C
59112000	-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 상관없다)	**5%**	A
591131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650그램 미만인 것	**5%**	C
591132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650그램 이상인 것	**5%**	B
59114000	-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5%**	B
59119000	- 기타	**5%**	C
60011000	- 롱파일(long pile) 편물	**5%**	B
60012100	- - 면으로 만든 것	**5%**	A
60012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A
6001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B
60019100	- - 면으로 만든 것	**5%**	B
60019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B
6001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B
60024000	-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5%**	A
60029000	- 기타	**5%**	A
60031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A
60032000	- 면으로 만든 것	**5%**	A
600330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A
60034000	-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5%**	A
60039000	- 기타	**5%**	A
60041000	-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5%**	C
60049000	- 기타	**5%**	B
60052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A
60052200	- - 염색한 것	**5%**	A
60052300	- - 서로 다른 색실의 것	**5%**	A
60052400	- - 날염한 것	**5%**	A
60053500	-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직물	**5%**	C
60053600	- - 기타(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60053700	- -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	**5%**	B
60053800	- - 기타(서로 다른 색실의 것으로 한정한다)	**5%**	A
60053900	- - 기타(날염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60054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A
60054200	- - 염색한 것	**5%**	A
60054300	-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5%**	A
60054400	- - 날염한 것	**5%**	A
60059000	- 기타	**5%**	C
60061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A
60062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A
60062200	- - 염색한 것	**5%**	B
60062300	- - 서로 다른 색실의 것	**5%**	B
60062400	- - 날염한 것	**5%**	B
60063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C
60063200	- - 염색한 것	**5%**	C
60063300	- - 서로 다른 색실의 것	**5%**	B
60063400	- - 날염한 것	**5%**	B
60064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B
60064200	- - 염색한 것	**5%**	A
60064300	- - 서로 다른 색실의 것	**5%**	A
60064400	- - 날염한 것	**5%**	B
60069000	- 기타	**5%**	B
61012000	- 면으로 만든 것	**5%**	C
61013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C
6101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1021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C
61022000	- 면으로 만든 것	**5%**	C
61023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B
6102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1031000	- 슈트	**5%**	C
61032200	- - 면으로 만든 것	**5%**	B
61032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A
6103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B
61033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B
61033200	- - 면으로 만든 것	**5%**	C
61033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C
61033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1034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C
61034200	- - 면으로 만든 것	**5%**	C
61034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C

61034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1041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B
61041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1042200	- - 면으로 만든 것	**5%**	C
61042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A
6104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A
61043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A
61043200	- - 면으로 만든 것	**5%**	C
61043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B
61043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1044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A
61044200	- - 면으로 만든 것	**5%**	C
61044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B
61044400	- -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5%**	B
61044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1045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B
61045200	- - 면으로 만든 것	**5%**	B
61045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B
61045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1046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B
61046200	- - 면으로 만든 것	**5%**	C
61046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C
61046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1051000	- 면으로 만든 것	**5%**	C
61052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C
6105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1061000	- 면으로 만든 것	**5%**	B
61062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C
6106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B
61071100	- - 면으로 만든 것	**5%**	A
61071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B
61071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A
61072100	- - 면으로 만든 것	**5%**	A
61072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A
6107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A
61079100	- - 면으로 만든 것	**5%**	C
6107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A
610811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A
61081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A
61082100	- - 면으로 만든 것	**5%**	C
61082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A
6108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B
61083100	- - 면으로 만든 것	**5%**	B
61083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C
61083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1089100	- - 면으로 만든 것	**5%**	B
61089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A
6108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1091000	- 면으로 만든 것	**5%**	B
6109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A
61101100	- - 양모로 만든 것	**5%**	B
61101200	- - 캐시미어 염소의 털로 만든 것	**5%**	B
61101900	- - 기타	**5%**	B
61102000	- 면으로 만든 것	**5%**	A
61103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A
6110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1112000	- 면으로 만든 것	**5%**	B
611130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C
6111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1121100	- - 면으로 만든 것	**5%**	B
611212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B
61121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1122000	- 스키슈트	**5%**	A
611231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B
61123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B
611241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A
61124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A
61130000	의류(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5%**	C
61142000	- 면으로 만든 것	**5%**	B
61143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C
6114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A
61151000	-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5%**	A
611521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5%**	B
611522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	A
6115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B
61153000	- 그 밖의 여성용인 전길이(full-length)나 무릎길이(knee-length)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5%**	B
611594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B

61159500	- - 면으로 만든 것	**5%**	C
611596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B
6115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1161000	-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	**5%**	A
61169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A
61169200	- - 면으로 만든 것	**5%**	A
61169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B
6116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B
61171000	- 숄(shawl)・스카프・머플러・만틸라(mantilla)・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	**5%**	B
61178000	- 그 밖의 부속품	**5%**	B
61179000	- 부분품	**5%**	C
62012010	- - - 클록(cloak)	**5%**	A
62012090	- - - 기타	**5%**	A
62013000	- 면으로 만든 것	**5%**	A
62014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A
6201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A
62022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B
62023000	- 면으로 만든 것	**5%**	B
62024010	- - - 여성용 클록(cloak)	**5%**	B
62024090	- - - 기타	**5%**	B
62029011	- - - - 여성용 클록(cloak)	**5%**	B
62029019	- - - - 기타	**5%**	A
62029090	- - - 기타	**5%**	B
62031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C
620312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C
62031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2032200	- - 면으로 만든 것	**5%**	C
62032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B
6203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2033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B
62033200	- - 면으로 만든 것	**5%**	C
62033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C
62033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2034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C
62034200	- - 면으로 만든 것	**5%**	A
62034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B
62034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2041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B
62041200	- - 면으로 만든 것	**5%**	C
62041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C
62041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2042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A
62042200	- - 면으로 만든 것	**5%**	C
62042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B
6204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2043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B
62043200	- - 면으로 만든 것	**5%**	C
62043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B
62043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2044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B
62044200	- - 면으로 만든 것	**5%**	A
62044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A
62044400	- -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5%**	C
62044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B
62045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B
62045200	- - 면으로 만든 것	**5%**	C
62045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B
62045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B
62046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B
62046200	- - 면으로 만든 것	**5%**	A
62046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A
62046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2052000	- 면으로 만든 것	**5%**	A
62053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C
6205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2061000	-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5%**	C
62062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B
62063000	- 면으로 만든 것	**5%**	B
62064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A
6206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2071100	- - 면으로 만든 것	**5%**	C
62071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2072100	- - 면으로 만든 것	**5%**	C
62072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A
6207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A
62079100	- - 면으로 만든 것	**5%**	C
6207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B
620811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A
62081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A
62082100	- - 면으로 만든 것	**5%**	B

62082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C
6208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2089100	- - 면으로 만든 것	**5%**	C
62089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C
6208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2092000	- 면으로 만든 것	**5%**	C
620930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C
6209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B
62101010	- - -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일회용 의류와 슈트(수술실용으로 살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C
62101090	- - - 기타	**5%**	C
62102000	- 그 밖의 의류(제6201호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5%**	C
62103000	- 그 밖의 의류(제6202호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5%**	C
62104000	- 그 밖의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	**5%**	C
62105000	- 그 밖의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	**5%**	C
62111100	- - 남성용이나 소년용	**5%**	C
62111200	- - 여성용이나 소녀용	**5%**	C
62112000	- 스키슈트	**5%**	A
62113210	- - - 토브(Thobe)[디슈다샤(Dishdasha)]	**5%**	C
62113220	- - - 트레이닝슈트	**5%**	C
62113290	- - - 기타	**5%**	B
62113310	- - - 토브(Thobe)[디슈다샤(Dishdasha)]	**5%**	A
62113320	- - - 트레이닝슈트	**5%**	C
62113390	- - - 기타	**5%**	C
62113910	- - - 토브(Thobe)[디슈다샤(Dishdasha)]	**5%**	C
62113920	- - - 트레이닝슈트	**5%**	C
62113990	- - - 기타	**5%**	B
62114200	- - 면으로 만든 것	**5%**	C
621143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B
62114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2121000	- 브래지어	**5%**	C
62122000	- 거들과 팬티거들	**5%**	A
62123000	- 코르슬렛(corselette)	**5%**	A
62129000	- 기타	**5%**	B
62132000	- 면으로 만든 것	**5%**	B
6213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2141000	-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5%**	B
62142010	- - - 숄(shawl)	**5%**	A
62142020	- - - 머플러	**5%**	A
62142090	- - - 기타	**5%**	A
62143010	- - - 숄(shawl)	**5%**	A
62143020	- - - 머플러	**5%**	A
62143030	- - - 스카프	**5%**	A
62143040	- - - 베일(veil)	**5%**	A
62143090	- - - 기타	**5%**	B
62144010	- - - 숄(shawl)	**5%**	A
62144020	- - - 머플러	**5%**	C
62144030	- - - 스카프	**5%**	A
62144040	- - - 베일(veil)	**5%**	A
62144090	- - - 기타	**5%**	A
62149011	- - - - 숄(shawl)	**5%**	A
62149012	- - - - 머플러	**5%**	C
62149013	- - - - 스카프	**5%**	A
62149014	- - - - 베일(veil)	**5%**	A
62149019	- - - - 기타	**5%**	A
62149090	-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2151000	-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5%**	A
62152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A
6215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B
62160000	장갑류	**5%**	B
62171010	- - - 양말류	**5%**	C
62171020	- - - 바깥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유아용 신발은 제외한다)	**5%**	C
62171031	- - - - 진주・귀석이나 반귀석으로 장식하거나 귀금속으로 만든 버클(buckle)이나 그 밖의 부속물을 부착한 것	**5%**	C
62171039	- - - - 기타	**5%**	B
62171040	- - - 장식용 끈이나 배지(badge) 또는 휘장[적신월사・민방위 배지(badge)와 같이 팔에 착용하는 것]	**5%**	A
62171050	- - - 레이블(label)・배지(badge)・엠블렘(emblem)・이니셜(initial)(제5807호나 제5810호의 것은 제외한다)	**5%**	B
62171060	- - - 군복의 전면부를 장식하기 위한 엮은 스트립(strip)[브레이드(braid)]과 이와 유사한 것(어깨나 겨드랑이에 착용하도록 디자인한 것을 포함한다)	**5%**	B
62171070	- - - 주머니・소매・칼라(collar)・여성복용 칼라(collarette)・윔플(wimple)・여러 가지 종류의 장신구(예 : 커프스・요크・라펠과 이와 유사한 물품)	**5%**	B
62171090	- - - 기타	**5%**	C
62179010	- - - 겨드랑이 쉴드(shield)	**5%**	A
62179020	- - - 재단용 어깨 패드와 이와 유사한 물품	**5%**	A
62179090	- - - 기타	**5%**	C
63011000	- 전기모포	**5%**	C
63012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5%**	C
63013000	- 면으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5%**	C

63014000	- 합성섬유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5%**	A
63019000	- 그 밖의 모포와 여행용 러그(rug)	**5%**	C
63021000	- 베드린넨(bed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5%**	C
63022100	- - 면으로 만든 것	**5%**	C
63022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C
6302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A
63023100	- - 면으로 만든 것	**5%**	C
63023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C
63023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3024000	- 테이블린넨(table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5%**	B
63025100	- - 면으로 만든 것	**5%**	C
630253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B
63025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3026000	- 면으로 만든 토일렛린넨(toilet linen)과 주방린넨(kitchen linen)[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5%**	C
63029110	- - - 성지순례용 [이람(Ihram)] 타월	**5%**	B
63029120	- - - 일반 타월과 목욕용 타월	**5%**	C
63029130	- - - 릴(reel)에 걸도록 엔드-조인한(end-joined) 타월	**5%**	A
63029140	- - - 용기 닦기용・건조용 주방타월	**5%**	C
63029190	- - - 기타	**5%**	A
630293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B
6302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30312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A
63031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3039110	- - - 커튼과 드레이프	**5%**	C
63039120	- - - 운송수단용 블라인드	**5%**	A
63039190	- - - 기타	**5%**	B
63039210	- - - 커튼과 드레이프	**5%**	A
63039220	- - - 운송수단용 블라인드	**5%**	A
63039290	- - - 기타	**5%**	B
6303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3041100	-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5%**	C
63041900	- - 기타	**5%**	C
63042000	- 베드 네트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경(經)편직 편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	A
63049110	- - - 모기장	**5%**	A
63049120	- - - 차량 시트용 커버	**5%**	B
63049190	- - - 기타	**5%**	B
63049210	- - - 모기장	**5%**	A
63049220	- - - 차량 시트용 커버	**5%**	A
63049230	- - - 커튼 밴드	**5%**	A
63049240	- - - 베갯잇	**5%**	C
63049290	- - - 기타	**5%**	C
63049310	- - - 모기장	**5%**	C
63049320	- - - 차량 시트용 커버	**5%**	C
63049330	- - - 커튼 밴드	**5%**	A
63049340	- - - 베갯잇	**5%**	C
63049390	- - - 기타	**5%**	C
63049910	- - - 모기장	**5%**	A
63049920	- - - 차량 시트용 커버	**5%**	C
63049930	- - - 커튼 밴드	**5%**	A
63049940	- - - 베갯잇	**5%**	B
63049990	- - - 기타	**5%**	C
63051010	- - - 황마로 만든 것	**5%**	C
63051090	- - - 기타	**5%**	C
63052000	- 면으로 만든 것	**5%**	B
63053200	- - 중간 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A
63053300	- - 기타[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스트립(strip)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	C
63053900	- - 기타	**5%**	C
6305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3061210	- - - 방수포(tarpaulin)	**5%**	C
63061220	- - - 천막과 차양	**5%**	C
63061910	- - - 방수포(tarpaulin)	**5%**	C
63061920	- - - 천막과 차양	**5%**	B
630622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C
6306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C
63063000	- 돛	**5%**	A
63064000	- 압축공기식 매트리스(mattress)	**5%**	A
63069000	- 기타	**5%**	B
63071000	- 마루닦이포・접시닦이포・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5%**	B
63072000	- 구명재킷과 구명벨트	**5%**	C
63079010	- - - 드레스 패턴(dress pattern)	**5%**	C
63079020	- - - 깃발・현수막・페넌트(pennant)・배지(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	**5%**	C
63079030	- - - 세탁물 또는 신발용 포대・여성용 스타킹이나 손수건용 통 및 이와 유사한 부드러운 직물로 만든 가정용 통	**5%**	C
63079040	- - - 의류 보호용 포대	**5%**	C
63079050	- - - 자동차・기계 슈트케이스・테니스 라켓용 등의 벗길 수 있는 커버	**5%**	A
63079060	- - - 커피여과용 포와 제빙용 주머니	**5%**	A
63079070	- - - 대회용 장식목걸이	**5%**	C

63079080	- - - 공기식 쿠션(제6306호의 캠핑용품을 제외한다)	**5%**	C
63079091	- - - - 찻주전자용 커버	**5%**	C
63079092	- - - - 핀 쿠션(pin cushion)	**5%**	A
63079094	- - - - 구두 끈과 조임장치	**5%**	C
63079095	- - - - 운반식 요람	**5%**	A
63079096	- - - - 여행용 차양과 우산용 장대 및 케이스	**5%**	C
63079097	- - - - 외과용 마스크와 먼지・악취 보호용 얼굴 마스크	**5%**	C
63079099	- - - - 기타	**5%**	C
63080000	러그(rug)용・태피스트리(tapestry)용・자수한 테이블보용・서비에트(serviette)용 직물과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5%**	A
630900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5%**	B
63101000	- 선별한 것	**5%**	C
63109000	- 기타	**5%**	C
64011000	-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신발	**5%**	A
64019200	- -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	**5%**	B
64019900	- - 기타	**5%**	B
64021200	- -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스노보드부츠	**5%**	A
64021900	- - 기타	**5%**	B
64022000	-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64029100	- - 발목을 덮는 것	**5%**	B
64029900	- - 기타	**5%**	C
64031200	- -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스노보드부츠	**5%**	A
64031900	- - 기타	**5%**	C
6403200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	C
64034000	-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5%**	C
64035110	- - - 남성용과 소년용	**5%**	C
64035120	- - - 여성용과 소녀용	**5%**	C
64035130	- - - 아동용	**5%**	A
64035910	- - - 남성용과 소년용	**5%**	C
64035920	- - - 여성용과 소녀용	**5%**	C
64035930	- - - 아동용	**5%**	A
64039110	- - - 남성용과 소년용	**5%**	C
64039120	- - - 여성용과 소녀용	**5%**	B
64039130	- - - 아동용	**5%**	A
64039910	- - - 남성용과 소년용	**5%**	C
64039920	- - - 여성용과 소녀용	**5%**	C
64039930	- - - 아동용	**5%**	B
64041100	- -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와 이와 유사한 것	**5%**	C
64041900	- - 기타	**5%**	C
6404200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	C
64051000	-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5%**	C
64052000	-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5%**	C
64059000	- 기타	**5%**	C
64061000	- 갑피(甲皮)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한다)	**5%**	A
64062000	- 바깥 바닥과 뒷굽(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	B
64069000	- 기타	**5%**	B
65010000	모체(hat-form)[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felt)로 만든 플래토우(plateaux)와 망숑(manchon)[슬릿망숑(slit manchon)을 포함한다]	**5%**	A
65020000	모체(hat-shape)[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인 것,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거나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65040000	모자[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C
65050010	- - - 자수한 모자[시마그(shimagh)]	**5%**	C
65050020	- - - 시마그(shimagh) 형태로 날염된 모자[구트라(ghutrah)](자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65050030	- - - 일반 구트라(ghutrah)[포일(foil)]	**5%**	B
65050040	- - - 스컬캡(skullcap)[타키야(taqia)]	**5%**	B
65050050	- - - 헤드밴드[우쿨(uqul)]	**5%**	A
65050060	- - - 군모와 베레모	**5%**	A
65050070	- - - 수술실용 일회용 모자(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살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A
65050080	- - - 구트라(ghutrah)(자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A
65050090	- - - 기타	**5%**	C
65061010	- - - 스포츠 활동용	**5%**	C
65061020	- - - 소방관용 헬멧	**5%**	C
65061030	- - - 군용 헬멧	**5%**	C
65061040	- - - 오토바이 기수용 헬멧	**5%**	C
65061050	- - - 건설인부용 헬멧	**5%**	C
65061090	- - - 기타	**5%**	C
65069110	- - - 수영모자	**5%**	A
65069190	- - - 기타	**5%**	A
65069900	-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5%**	B
65070000	헤드밴드・내장재・커버・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모자의 프레임(frame)・챙・턱끈	**5%**	B

66011000	- 정원용 산류(傘類)나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	**5%**	C
66019100	- -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것	**5%**	C
66019900	- - 기타	**5%**	C
66020010	- - - 지팡이	**5%**	A
66020020	- - - 채찍	**5%**	A
66020090	- - - 기타	**5%**	A
66032000	- 산류(傘類)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5%**	A
66039000	- 기타	**5%**	C
67010010	- - - 깃털로 만든 장식용 손부채	**5%**	A
67010090	- - - 기타	**5%**	A
6702100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	C
67029010	- - - 금속의 박으로 만든 것	**5%**	A
67029020	- - -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A
67029090	- -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5%**	B
67030000	사람 머리카락(정돈・표백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기 위한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	**5%**	A
67041100	- - 전체가발	**5%**	A
67041900	- - 기타	**5%**	C
67042000	-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	**5%**	C
6704900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5%**	B
68010010	- - - 사암으로 만든 것	**5%**	B
68010020	- - - 화강암으로 만든 것	**5%**	A
68010030	- - - 반암으로 만든 것	**5%**	A
68010040	- - - 대리석으로 만든 것	**5%**	B
68010090	- - - 그 밖의 천연석재로 만든 것	**5%**	B
68021000	- 타일・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가장 넓은 면이 변의 길이가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알갱이・조각・가루	**5%**	C
68022100	- - 대리석・트래버틴(travertine)・설화석고(alabaster)	**5%**	X
68022300	- - 화강암	**5%**	X
68022900	- - 그 밖의 돌	**5%**	B
68029110	- - - 계단・코니스(cornice)・난간・문이나 창문용 틀・상인방(lintel)・문지방・경계선용 돌이나 이정표 및 이와 유사한 물품	**5%**	A
68029121	- - - - 욕조	**5%**	A
68029122	- - - - 세면대	**5%**	A
68029123	- - - - 우물반	**5%**	A
68029129	- - - - 기타	**5%**	A
68029130	- - - 꽃병・인조 과실과 인조 잎	**5%**	A
68029140	- - - 기둥・받침대・토대・기둥머리	**5%**	A
68029150	- - - 컵・상자・재떨이	**5%**	C
68029160	- - - 문진과 필기보조도구	**5%**	A
68029170	- - - 가구의 윗부분을 형성하는 석판(예: 식당용・설거지통용 및 테이블용 등)	**5%**	A
68029190	- - - 기타	**5%**	C
68029200	- - 그 밖의 석회질 암석	**5%**	A
68029300	- - 화강암	**5%**	X
68029900	- - 그 밖의 돌	**5%**	C
68030010	- - - 건축용・도로포장용 타일과 블록	**5%**	A
68030090	- - - 기타	**5%**	C
68041000	- 밀스톤(millstone)과 그라인드스톤(grindstone)[밀링(milling)용・그라인딩(grinding)용・펄핑(pulping)용으로 한정한다]	**5%**	C
68042100	- - 합성・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5%**	C
68042200	- - 그 밖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도자제의 것	**5%**	C
68042300	- - 천연석으로 만든 것	**5%**	C
68043000	- 수지석(手砥石)	**5%**	B
68051000	- 방직용 섬유의 직물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5%**	X
68052000	- 종이나 판지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5%**	X
68053000	- 그 밖의 재료를 기본 재료로 한 것	**5%**	X
68061000	-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벌크 모양・시트(sheet) 모양・롤 모양으로 한정한다]	**5%**	C
68062000	- 박리한 질석(蛭石)・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5%**	X
68069000	- 기타	**5%**	X
68071000	- 롤 모양인 것	**5%**	X
68079010	- - - 타일・블록 및 타일용 석재	**5%**	X
68079020	- - - 천장용・건축용 보드	**5%**	X
68079030	- - - 관・관 연결구류	**5%**	X
68079040	- - - 주조하거나 성형하여 만든 식탁용품	**5%**	A
68079090	- - - 기타	**5%**	X
68080000	패널・보드・타일・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짚・목재의 대팻밥・칩・파티클(particle)・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5%**	X
68091100	- - 종이나 판지만을 입혔거나 보강한 것	**5%**	X
68091900	- - 기타	**5%**	X
68099010	- - - 보드・시트(sheet)・패널・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장식한 것으로 한정한다)	**5%**	B
68099020	- - - 장식용 주조제품(패턴・기둥・그릇・꽃병 및 이와 유사한 제품)	**5%**	B
68099030	- - - 공업용 주형	**5%**	B
68099090	- - - 기타	**5%**	B

68101100	- - 건축용 블록(block)과 벽돌	**5%**	X
68101910	- - - 지붕용 벽돌	**5%**	C
68101921	- - - - 포장용 블록(block)과 슬래브(slab)	**5%**	X
68101922	- - - - 마루용이나 지붕용 타일(연마한 암석의 층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5%**	X
68101923	- - - - 알갱이 모양 대리석 타일	**5%**	X
68101929	- - - - 기타	**5%**	X
68101990	- - - 기타	**5%**	X
68109100	- - 건축용・토목공사용 조립식 건축자재	**5%**	X
68109910	- - - 고정식 욕실용품	**5%**	A
68109990	- - - 기타	**5%**	X
68114000	- 석면을 함유한 것	**금지**	PH
68118100	- - 물결 모양의 시트(sheet)	**5%**	C
68118200	- - 그 밖의 시트(sheet)・패널・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	**5%**	C
68118910	- - - 탱크	**5%**	X
68118920	- - - 세면대와 고정식의 욕실용 부착물	**5%**	A
68118930	- - - 꽃병	**5%**	A
68118990	- - - 기타	**5%**	X
68128000	- 청석면의 것	**금지**	PH
68129100	- - 의류・의류 부속품・신발・모자류	**5%**	X
68129900	- - 기타	**5%**	B
68132000	- 석면을 함유한 것	**금지**	PH
68138100	- - 브레이크 라이닝(brake lining)과 패드	**5%**	C
68138900	- - 기타	**5%**	C
68141000	- 판・시트(sheet)・스트립(strip)(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의 것으로 한정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B
68149010	- - - 관・도관과 이와 유사한 성형제품	**5%**	C
68149090	- - - 기타	**5%**	B
68151100	- - 탄소섬유	**5%**	C
68151200	- - 탄소섬유 직물	**5%**	C
68151310	- - - 탄소섬유로 만든 여과관과 디스크(disc)	**5%**	A
68151320	- - - 탄소섬유로 만든 액시얼(axial) 잉곳(ingot)	**5%**	A
68151330	- - - 탄소섬유로 만든 가공한 벽돌과 타일	**5%**	A
68151340	- - - 탄소섬유로 만든 섬세한 도안이 있는 물품(예: 화폐, 메달 등) 제조용 주형	**5%**	A
68151390	- - - 기타	**5%**	C
68151910	- - - 여과관과 디스크(disc)	**5%**	C
68151920	- - - 액시얼(axial) 잉곳(ingot)	**5%**	C
68151930	- - - 가공한 벽돌과 타일	**5%**	A
68151940	- - - 섬세한 도안이 있는 물품(예: 화폐, 메달 등) 제조용 주형	**5%**	A
68151990	- - - 기타	**5%**	C
68152010	- - - 플레이트(plate)	**5%**	A
68152020	- - - 실린더 모양의 것	**5%**	A
68152030	- - - 화분	**5%**	C
68152090	- - - 기타	**5%**	A
68159110	- - - 타르로 응결시킨 백운석으로 만든 불에 굽지 않은 벽돌	**5%**	A
68159120	- - - 벽돌과 그 밖의 형태의 마그네사이트나 크로뮴-마그네사이트(불에 굽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68159190	- - - 기타	**5%**	A
68159910	- - - 실리카나 알루미나로 만든 불에 굽지 않은 통[예: 유리의 용융(鎔融)용으로 사용하는 것]	**5%**	B
68159920	- - - 귀금속 검사용 시금석(touchstone)	**5%**	A
68159930	- - - 포장용 블록(block)과 슬래브(slab)	**5%**	A
68159940	- - - 석영이나 부싯돌을 잘게 분쇄하여 응결시켜 만든 여과관	**5%**	A
68159950	- - - 그 밖의 블록(block)・슬래브(slab)・시트(sheet)[용융(鎔融) 현무암으로 만든 것]	**5%**	A
68159990	- - - 기타	**5%**	C
69010000	벽돌・블록・타일과 그 밖의 도자제품[규조토{예: 키젤구어(kieselguhr)・트리폴리트(tripolite)・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69021000	- 마그네슘・칼슘・크로뮴원소를 산화마그네슘・산화칼슘・산화크로뮴으로 표현하였을 때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5%**	C
69022000	- 알루미나(Al2O3), 실리카(SiO2),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5%**	C
69029000	- 기타	**5%**	C
69031000	- 유리(遊離)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5%**	C
69032000	- 알루미나(Al2O3) 또는 알루미나와 실리카(SiO2)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5%**	C
69039000	- 기타	**5%**	C
69041000	- 건축용 벽돌	**5%**	C
69049000	- 기타	**5%**	B
69051000	- 기와(지붕타일)	**5%**	B
69059010	- - - 굴뚝갓	**5%**	A
69059020	- - - 건축용 장식품	**5%**	C
69059090	- - - 기타	**5%**	A
69060000	도자제의 관(管)・도관(導管)・홈통과 관(管)의 연결구류	**5%**	C
69072100	- -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이하인 것	**5%**	C
69072200	- -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초과 100분의 10 이하인 것	**5%**	C
69072300	- -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10 초과인 것	**5%**	B
69073000	-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소호 제6907.40호의 것은 제외한다)	**5%**	C

69074000	- 피니싱 세라믹	**5%**	C
69091100	- - 자기제의 것	**5%**	A
69091200	- -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5%**	C
69091900	- - 기타	**5%**	C
69099010	- - - 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	**5%**	A
69099090	- - - 기타	**5%**	B
69101000	- 자기제의 것	**5%**	C
69109000	- 기타	**5%**	C
69111000	-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5%**	C
69119000	- 기타	**5%**	C
69120000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	**5%**	C
69131010	- - - 향로(censer)	**5%**	A
69131020	- - - 서가・문진(paper weight)과 이와 유사한 책상용품	**5%**	A
69131030	- - - 꽃병	**5%**	A
69131040	- - - 재떨이	**5%**	A
69131050	- - - 보석함・캔디 상자 및 이와 유사한 것	**5%**	A
69131090	- - - 기타	**5%**	A
69139010	- - - 꽃병	**5%**	B
69139090	- - - 기타	**5%**	B
69141010	- - - 문과 창문용 부속품(예: 손잡이・지판 등)	**5%**	C
69141020	- - - 간판・문자・숫자 및 그 밖의 표지판	**5%**	A
69141090	- - - 기타	**5%**	C
69149010	- - - 도자재료(일반 도자재료와 세라믹 페이스트)로 만든 스토브와 그 밖의 가열장치	**5%**	C
69149020	- - - 일반 도자재료로 만든 비장식성의 화분(예: 원예용)	**5%**	A
69149030	- - - 실험실용・상점용(약국, 제과점 등) 항아리와 단지	**5%**	A
69149090	- - - 기타	**5%**	C
70010000	깨진 유리,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스크랩(scrap)[제8549호의 음극선관에서 얻어진 유리나 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제외한다], 유리 괴(塊)	**5%**	C
70021000	- 구(球)	**5%**	A
70022000	- 막대(rod)	**5%**	A
70023100	- - 석영유리나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5%**	B
70023200	- - 선팽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1백만분의 5이하인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5%**	A
70023900	- - 기타	**5%**	A
70031200	- - 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을 갖는 것	**5%**	A
70031900	- - 기타	**5%**	X
70032000	- 망입(網入) 시트(sheet) 유리	**5%**	B
70033000	- 프로파일(profile)	**5%**	B
70042000	- 유리[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을 갖는 것]	**5%**	A
70049000	- 그 밖의 유리	**5%**	X
70051000	- 망입(網入)하지 않은 유리(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X
70052100	- - 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색상이 있는 색유리를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단순히 표면을 연마한 것	**5%**	X
70052900	- - 기타	**5%**	X
70053000	- 망입(網入) 유리	**5%**	A
70060000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5%**	X
70071100	- - 차량・항공기・우주선・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5%**	X
70071900	- - 기타	**5%**	X
70072100	- - 차량・항공기・우주선・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5%**	X
70072900	- - 기타	**5%**	X
70080000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	**5%**	X
70091000	- 백미러(차량용으로 한정한다)	**5%**	C
70099100	- - 틀이 붙지 않은 것	**5%**	X
70099200	- - 틀이 붙은 것	**5%**	X
70101000	- 앰플	**5%**	C
70102000	-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5%**	C
70109000	- 기타	**5%**	X
70111000	- 전등용	**5%**	C
70112000	- 음극선관용	**5%**	A
70119000	- 기타	**5%**	A
70131010	- - - 식탁용이나 주방용	**5%**	B
70131030	- - - 사무실용	**5%**	A
70131041	- - - - 화장실용 향수병	**5%**	B
70131049	- - - - 기타	**5%**	A
70131090	- - - 기타	**5%**	B
70132200	-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5%**	A
70132800	- - 기타	**5%**	B
70133300	-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5%**	A
70133700	- - 기타	**5%**	X
70134100	-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5%**	A

70134200	- - 선팽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1백만분의 5이하인 유리로 만든 것	**5%**	B
70134900	- - 기타	**5%**	X
70139110	- - - 사무실용	**5%**	A
70139131	- - - - 화장실용 향수병	**5%**	X
70139139	- - - - 기타	**5%**	A
70139190	- - - 기타	**5%**	A
70139910	- - - 수족관	**5%**	B
70139920	- - - 향로(censer)	**5%**	C
70139990	- - - 기타	**5%**	X
70140010	- - - 운송장비용	**5%**	A
70140090	- - - 기타	**5%**	B
70151000	-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5%**	A
70159010	- - - 시계용 유리	**5%**	A
70159020	- - - 선글라스와 그 밖의 보호 안경용 유리	**5%**	B
70159090	- - - 기타	**5%**	A
70161000	-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5%**	A
70169000	- 기타	**5%**	X
70171010	- - -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용으로 확산로(擴散爐)와 산화로(酸化爐)에 삽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석영 리액터(reactor) 튜브와 홀더	**0%**	A
70171090	- - - 기타	**0%**	A
70172000	- 선팽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1백만분의 5 이하인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5%**	A
70179000	- 기타	**5%**	C
70181010	- - - 묵주(rosary)	**5%**	A
70181090	- - - 기타	**5%**	C
70182000	- 지름이 1밀리미터 이하인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5%**	B
70189000	- 기타	**5%**	A
70191100	- - 단연사(길이가 5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C
70191200	- - 로빙(roving)	**5%**	X
70191300	- - 그 밖의 실[슬리버(sliver)로 한정한다]	**5%**	A
70191400	- - 기계적으로 접착한 매트	**5%**	X
70191500	- - 화학적으로 접착한 매트	**5%**	A
70191900	- - 기타	**5%**	B
70196100	- - 촘촘하게 직조한 직물[로빙(roving)의 것]	**5%**	C
70196200	- - 그 밖의 촘촘한 직물[로빙(roving)의 것]	**5%**	X
70196300	- - 촘촘하게 직조한 직물[실로 짠 평직물로서, 도포・적층하지 않은 것]	**5%**	X
70196400	- - 촘촘하게 직조한 직물[실로 짠 평직물로서, 도포・적층한 것]	**5%**	A
70196500	- - 성기게 직조한 직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5%**	A
70196600	- - 성기게 직조한 직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5%**	A
70196900	- - 기타	**5%**	X
70197100	- - 베일(얇은 시트)	**5%**	C
70197200	- - 그 밖의 촘촘한 직물	**5%**	A
70197300	- - 그 밖의 성긴 직물	**5%**	A
70198000	- 글라스 울(glass wool)과 글라스 울 제품	**5%**	C
70199010	- - - 운송장비용	**5%**	A
70199020	- - - 물탱크	**5%**	X
70199030	- - - 가구용과 실내장식용	**5%**	B
70199040	- - - 절연 목적용(열・소리・전기용)	**5%**	X
70199050	- - - 전기 계기용 유리섬유 케이스(전기적 장치물이 부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B
70199060	- - - 관(管)	**5%**	X
70199070	- - - 가정용 레인지(range) 가스 통(유리섬유로 만든 것)	**5%**	A
70199090	- - - 기타	**5%**	B
70200010	- - - 운송장비용	**5%**	A
70200020	- - - 탱크와 세면대	**5%**	C
70200030	- - - 상점용 문자・숫자・명판과 그 밖의 장식	**5%**	X
70200040	- - -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용으로 확산로(擴散爐)와 산화로(酸化爐)에 삽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석영 리액터(reactor) 튜브와 홀더	**0%**	A
70200090	- - - 기타	**5%**	X
71011000	- 천연진주	**5%**	A
71012100	- - 가공하지 않은 것	**5%**	A
71012200	- - 가공한 것	**5%**	A
71021000	- 선별하지 않은 것	**0%**	A
71022100	- -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0%**	A
71022900	- - 기타	**5%**	A
71023100	- -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0%**	A
71023900	- - 기타	**5%**	A
71031000	- 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	**5%**	X
71039100	- - 루비・사파이어・에메랄드	**5%**	A
71039900	- - 기타	**5%**	A
71041000	- 압전기용 석영	**5%**	A
71042100	- - 다이아몬드	**5%**	A
71042900	- - 기타	**5%**	A
71049100	- - 다이아몬드	**5%**	A
71049900	- - 기타	**5%**	B
71051000	- 다이아몬드의 것	**5%**	A
71059000	- 기타	**5%**	A
71061000	- 가루	**0%**	A
71069110	- - - 잉곳(ingot)	**0%**	A

71069190	- - - 기타	**0%**	A
71069200	- - 반가공한 것	**0%**	A
71070000	은을 입힌 비금속(卑金屬)(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71081100	- - 가루	**0%**	A
71081210	- - - 잉곳(ingot)	**0%**	A
71081290	- - - 기타	**0%**	A
71081300	- -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0%**	A
71082000	- 화폐용	**0%**	A
71090000	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이나 은(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71101110	- - - 잉곳(ingot)	**0%**	A
71101190	- - - 기타	**0%**	A
71101900	- - 기타	**0%**	A
71102100	-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0%**	A
71102900	- - 기타	**0%**	A
71103100	-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0%**	A
71103900	- - 기타	**0%**	A
71104100	-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0%**	A
71104900	- - 기타	**0%**	A
71110000	백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은·금(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71123000	-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灰)	**5%**	C
71129100	- -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5%**	C
71129200	- -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5%**	C
71129900	- - 기타	**5%**	C
71131100	- -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5%**	C
71131910	- - - 금으로 만든 것	**5%**	A
71131920	- - - 백금과 백금족으로 만든 것	**5%**	C
71132000	-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5%**	C
71141100	- -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5%**	C
71141910	- - - 금으로 만든 것	**5%**	C
71141920	- - - 백금과 백금족으로 만든 것	**5%**	C
71142000	-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5%**	A
71151000	- 촉매제[백금으로 만든 와이어 클로스(wire cloth)나 그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5%**	A
71159000	- 기타	**5%**	A
71161010	- - - 신변장식용 제품	**5%**	A
71161090	- - - 기타	**5%**	A
71162010	- - - 신변장식용 제품	**5%**	A
71162020	- - - 공업용 제품	**5%**	B
71162090	- - - 기타	**5%**	C
71171110	- - - 커프링크(cuff-link)	**5%**	B
71171190	- - - 기타	**5%**	B
71171900	- - 기타	**5%**	C
71179010	-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	C
71179020	- - - 유리로 만든 것	**5%**	A
71179030	- - - 목재로 만든 것	**5%**	C
71179090	- - - 기타	**5%**	C
71181000	- 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	**0%**	A
71189000	- 기타	**0%**	A
72011000	-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C
72012000	-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C
72015000	- 합금선철과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5%**	C
7202110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것	**5%**	C
72021900	- - 기타	**5%**	C
72022100	- - 실리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	**5%**	C
72022900	- - 기타	**5%**	C
72023000	-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5%**	C
7202410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5%**	C
72024900	- - 기타	**5%**	C
72025000	-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	**5%**	C
72026000	- 페로니켈(ferro-nickel)	**5%**	C
72027000	- 페로몰리브데늄(ferro-molybdenum)	**5%**	C
72028000	- 페로텅스텐(ferro-tungsten)과 페로실리코 텅스텐(ferro-silico-tungsten)	**5%**	C
72029100	- - 페로티타늄(ferro-titanium)과 페로실리코티타늄(ferro-silico-titanium)	**5%**	C
72029200	- -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5%**	C
72029300	- - 페로니오븀(ferro-niobium)	**5%**	A
72029900	- - 기타	**5%**	C
72031000	-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5%**	C
72039000	- 기타	**5%**	C
72041000	- 주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C
72042100	- - 스테인리스강의 것	**5%**	A
72042900	- - 기타	**5%**	C
72043000	-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C

72044100	- - 선삭(旋削)・세이빙(shaving)・칩・밀링 웨이스트(milling waste)・톱밥・파일링(filing)・트리밍(trimming)・스탬핑(stamping)(번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5%**	C
72044900	- - 기타	**5%**	A
72045000	-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5%**	C
72051000	- 알갱이	**5%**	C
72052100	- - 합금강의 것	**5%**	C
72052900	- - 기타	**5%**	C
72061000	- 잉곳(ingot)	**5%**	C
72069000	- 기타	**5%**	C
72071100	- -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5%**	C
72071200	- - 그 밖의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5%**	C
72071900	- - 기타	**5%**	C
72072000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이상인 것	**5%**	C
72081000	- 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5%**	C
72082500	-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5%**	C
72082600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5%**	C
72082700	-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5%**	C
72083600	-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C
72083700	-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5%**	C
72083800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5%**	C
72083900	-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5%**	C
72084000	-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5%**	C
72085100	-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C
72085200	-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5%**	C
72085300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5%**	C
72085400	-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5%**	C
72089000	- 기타	**5%**	C
72091500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	**5%**	X
72091600	- -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5%**	X
72091700	-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5%**	X
72091800	-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5%**	X
72092500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	**5%**	X
72092600	- -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5%**	X
72092700	-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5%**	X
72092800	-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5%**	X
72099000	- 기타	**5%**	X
72101100	-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5%**	X
72101200	-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5%**	X
72102000	- 납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함석판을 포함한다)	**5%**	X
72103000	-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5%**	X
72104100	- - 물결 모양의 것	**5%**	X
72104900	- - 기타	**5%**	X
72105000	-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5%**	X
72106100	- -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5%**	X
72106900	- - 기타	**5%**	X
72107000	-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5%**	X
72109000	- 기타	**5%**	X
72111300	- - 4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5%**	X
72111400	- - 기타(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	X
72111900	- - 기타	**5%**	X
7211230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미만인 것	**5%**	X
72112900	- - 기타	**5%**	X
72119000	- 기타	**5%**	X
72121000	-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5%**	X
72122000	-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5%**	X
72123000	-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5%**	X
72124000	-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5%**	X
72125000	-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5%**	X
72126000	- 클래드(clad)한 것	**5%**	X
72131000	-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10%**	X
72132000	-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10%**	X
7213910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4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X
72139900	- - 기타	**10%**	X
7214103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X
7214104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X
72141090	- - - 기타	**10%**	X
7214203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X
7214204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X
72142090	- - - 기타	**10%**	X
7214303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X
7214304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X

72143090	- - - 기타	**10%**	X
72149100	- -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10%**	X
72149900	- - 기타	**10%**	X
7215103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X
7215104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X
72151090	- - - 기타	**10%**	X
7215503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X
7215504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X
72155090	- - - 기타	**10%**	X
7215903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X
7215904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X
72159090	- - - 기타	**10%**	X
72161000	- 유(U)형강・아이(I)형강・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5%**	X
72162100	- - 엘(L)형강	**5%**	X
72162200	- - 티(T)형강	**5%**	X
72163110	- - -높이가 80 밀리미터 이상 220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X
72163120	- - - 높이가 22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X
72163210	- - -높이가 80 밀리미터 이상 220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X
72163220	- - - 높이가 22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X
72163310	- - -높이가 80 밀리미터 이상 220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X
72163320	- - - 높이가 22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X
72164010	- - -높이가 80 밀리미터 이상 220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X
72164020	- - - 높이가 22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X
72165000	- 그 밖의 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X
72166100	- -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5%**	X
72166900	- - 기타	**5%**	X
72169100	- -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한 것	**5%**	X
72169900	- - 기타	**5%**	X
72171000	-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X
72172000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5%**	X
72173000	-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5%**	X
72179000	- 기타	**5%**	X
72181000	-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5%**	X
72189100	- -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5%**	X
72189900	- - 기타	**5%**	X
72191100	-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X
72191200	-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5%**	X
72191300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5%**	X
72191400	-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5%**	X
72192100	-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X
72192200	-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5%**	X
72192300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5%**	X
72192400	-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5%**	X
72193100	-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5%**	X
72193200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5%**	X
72193300	- -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5%**	X
72193400	-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5%**	X
72193500	-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5%**	X
72199000	- 기타	**5%**	X
72201100	-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5%**	X
72201200	- -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5%**	X
72202000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5%**	X
72209000	- 기타	**5%**	X
722100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5%**	X
7222110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5%**	X
72221900	- - 기타	**5%**	X
72222000	-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X
72223000	- 그 밖의 봉	**5%**	X
72224000	- 형강(形鋼)	**5%**	X
72230000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5%**	X
72241000	-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5%**	X
72249000	- 기타	**5%**	X
72251100	- - 방향성(方向性)인 것	**5%**	X
72251900	- - 기타	**5%**	X
72253000	-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X
72254000	- 기타[코일 모양은 제외하고,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X
72255000	- 기타[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X
72259100	- -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5%**	X
72259200	- - 그 밖의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5%**	X
72259900	- - 기타	**5%**	X
72261100	- - 방향성(方向性)인 것	**5%**	X

72261900	- - 기타	**5%**	X
72262000	- 고속도강의 것	**5%**	X
72269100	-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5%**	X
72269200	-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5%**	X
72269900	- - 기타	**5%**	X
72271000	- 고속도강의 것	**10%**	X
72272000	- 실리코망간강의 것	**10%**	X
72279000	- 기타	**10%**	X
7228101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X
7228102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X
72281090	- - - 기타	**10%**	X
7228201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X
7228202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X
72282090	- - - 기타	**10%**	X
7228301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X
7228302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X
72283090	- - - 기타	**10%**	X
7228401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X
7228402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X
72284090	- - - 기타	**10%**	X
7228501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X
7228502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X
72285090	- - - 기타	**10%**	X
7228601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X
7228602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X
72286090	- - - 기타	**10%**	X
72287000	- 형강(形鋼)	**10%**	X
72288000	- 중공(中空)드릴봉	**10%**	X
72292000	- 실리코망간강의 것	**5%**	X
72299000	- 기타	**5%**	X
73011000	- 널말뚝(sheet piling)	**5%**	X
73012000	- 형강(形鋼)	**5%**	X
73021000	- 레일(rail)	**5%**	X
73023000	- 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교차구류(crossing frog)・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5%**	X
73024000	-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5%**	X
73029000	- 기타	**5%**	X
73030000	주철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5%**	X
73041100	- -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5%**	X
73041900	- - 기타	**5%**	X
73042200	- -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드릴파이프	**5%**	X
73042300	- - 그 밖의 드릴파이프	**5%**	X
73042400	- -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	X
73042900	- - 기타	**5%**	X
73043100	- -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5%**	X
73043900	- - 기타	**5%**	X
73044100	- -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5%**	X
73044900	- - 기타	**5%**	X
73045100	- -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5%**	X
73045900	- - 기타	**5%**	X
73049000	- 기타	**5%**	X
73051100	- -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 용접한 것	**5%**	X
73051200	- -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5%**	X
73051900	- - 기타	**5%**	X
73052000	-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5%**	X
73053100	- -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	**5%**	C
73053900	- - 기타	**5%**	X
73059000	- 기타	**5%**	X
73061100	- -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	X
73061900	- - 기타	**5%**	X
73062100	- -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	X
73062900	- - 기타	**5%**	X
73063000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	X
73064000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	X
73065000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	X
73066100	- - 횡단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인 것	**5%**	X
73066900	- - 그 밖의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5%**	X
73069000	- 기타	**5%**	X
73071100	- -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5%**	X
73071900	- - 기타	**5%**	X
73072100	- - 플랜지(flange)	**5%**	X
73072200	- - 나선가공한 엘보(elbow)・벤드(bend)・슬리브(sleeve)	**5%**	X

73072300	- -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5%**	X
73072900	- - 기타	**5%**	X
73079100	- - 플랜지(flange)	**5%**	X
73079200	- - 나선가공한 엘보(elbow)・벤드(bend)・슬리브(sleeve)	**5%**	X
73079300	- -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5%**	X
73079900	- - 기타	**5%**	X
73081000	- 다리와 교량	**5%**	X
73082000	- 탑과 격자주(格子柱)	**5%**	X
73083000	-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5%**	X
73084000	- 비계(飛階)・차단기・지주・굉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5%**	X
73089010	- - - 벽걸이용 소화전(소방장비나 소방호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용으로 한정한다)	**5%**	X
73089020	- - - 상점・공장・창고 등에서의 조립용 대용량 선반과 고정시설	**5%**	X
73089030	- - - 천장용 형강(形鋼)과 격재(擊材)(장식 타일 고정용으로 한정한다)	**5%**	X
73089040	- - - 비계(飛階)・ 지주・작업대와 연결구류	**5%**	X
73089050	- - - 고정된 계단	**5%**	X
73089060	- - - 창고와 돔(dome)	**5%**	X
73089090	- - - 기타	**5%**	X
73090010	- - - 가정용 물탱크	**5%**	X
73090090	- - - 기타	**5%**	X
73101000	- 용적이 50리터 이상인 것	**5%**	X
73102110	- - - 탄산 음료와 과실주스용의 것	**5%**	X
73102120	- - - 식품 저장용의 것	**5%**	X
73102130	- - - 화학제품과 윤활유 저장용의 것	**5%**	X
73102190	- - - 기타	**5%**	X
73102900	- - 기타	**5%**	X
73110010	- - - 산소 저장용의 것	**5%**	X
73110020	- - - 프레온(freon) 저장용의 것	**5%**	X
73110030	- - - 가정용 스토브(stove) 가스용의 것	**5%**	X
73110090	- - - 그 밖의 가스 저장용의 것	**5%**	X
73121010	- - - 전선(電線)・케이블(절연한 것에 한정한다)	**5%**	X
73121090	- - - 기타	**5%**	X
73129010	- - - 권양(捲揚)용 로프	**5%**	X
73129090	- - - 기타	**5%**	X
73130000	철강으로 만든 유자선(有刺線)・대・평선을 꼰 것[유자(有刺)의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느슨하게 꼰 2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5%**	B
73141200	- - 기계용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	C
73141400	- - 그 밖의 직조한 클로스(cloth)(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	C
73141900	- - 기타	**5%**	C
73142000	- 그릴・망・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mesh)의 크기가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	C
73143100	- -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5%**	A
73143900	- - 기타	**5%**	C
73144100	- -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5%**	B
73144200	- -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5%**	A
73144900	- - 기타	**5%**	C
73145000	-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5%**	C
73151100	- - 롤러체인(roller chain)	**5%**	C
73151200	- - 그 밖의 체인	**5%**	C
73151900	- - 부분품	**5%**	C
73152000	- 스키드체인(skid chain)	**5%**	A
73158100	- - 스터드링크(stud-link)	**5%**	C
73158200	- -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으로 한정한다)	**5%**	C
73158900	- - 기타	**5%**	C
73159000	- 그 밖의 부분품	**5%**	C
73160000	철강으로 만든 닻과 그 부분품	**5%**	C
73170010	- - - 철강으로 만든 못과 목공용 못	**5%**	C
73170020	- - - 압정	**5%**	C
73170030	- - - 제도용 핀	**5%**	C
73170040	- - - 스테이플	**5%**	C
73170090	- - - 기타	**5%**	C
73181100	- - 코치 스크루(coach screw)	**5%**	C
73181200	- - 그 밖의 목재용 스크루(screw)	**5%**	C
73181300	- - 스크루 훅(screw hook)과 스크루 링(screw ring)	**5%**	C
73181400	- - 셀프태핑 스크루(self-tapping screw)	**5%**	C
73181500	- - 그 밖의 스크루(screw)와 볼트(bolt)[너트(nut)나 와셔(washer)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5%**	C
73181600	- - 너트(nut)	**5%**	C
73181900	- - 기타	**5%**	C
73182100	- - 스프링 와셔(spring washer)와 그 밖의 록 와셔(lock washer)	**5%**	C
73182200	- - 그 밖의 와셔(washer)	**5%**	C
73182300	- - 리벳(rivet)	**5%**	C
73182400	- - 코터(cotter)와 코터핀(cotter-pin)	**5%**	C
73182900	- - 기타	**5%**	C
73194000	- 안전핀과 그 밖의 핀	**5%**	C
73199000	- 기타	**5%**	C
73201000	- 판상 스프링과 그 판	**5%**	C
73202000	- 나선용 스프링	**5%**	C
73209000	- 기타	**5%**	C

73211110	- - - 조리기	**5%**	C
73211120	- - - 바비큐	**5%**	C
73211130	- - - 화로	**5%**	C
73211190	- - - 기타	**5%**	C
73211210	- - - 조리기	**5%**	C
73211220	- - - 바비큐	**5%**	C
73211230	- - - 화로	**5%**	C
73211290	- - - 기타	**5%**	C
73211900	- -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5%**	C
73218110	- - - 가열기(히터)	**5%**	C
73218190	- - - 기타	**5%**	C
73218210	- - - 가열기(히터)	**5%**	C
73218290	- - - 기타	**5%**	C
73218900	- -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5%**	C
73219010	- - - 조리기용	**5%**	C
73219020	- - - 바비큐용	**5%**	C
73219030	- - - 가열기용	**5%**	C
73219090	- - - 기타	**5%**	C
73221100	- - 주철로 만든 것	**5%**	C
73221900	- - 기타	**5%**	C
73229000	- 기타	**5%**	C
73231000	-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5%**	C
73239100	- -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가 아닌 것	**5%**	C
73239200	- -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5%**	C
73239300	- -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5%**	C
73239400	- -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5%**	C
73239900	- - 기타	**5%**	C
73241000	- 설거지통과 세면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	C
73242100	- - 주철로 만든 것(법랑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5%**	A
73242900	- - 기타	**5%**	C
7324900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5%**	C
73251010	- - - 하수용 인스펙션 트랩(inspection trap)・그레이팅(grating)・드레인 커버(drain cover)와 이와 유사한 주조품	**5%**	B
73251020	- - - 소화전의 지주와 커버	**5%**	C
73251030	- - - 원통형 우편함	**5%**	C
73251040	- - - 토끼와 가금류용 케이지, 하이브(hive), 동물용 사료 공급기 및 음용기와 플라우(plough)	**5%**	C
73251090	- - - 기타	**5%**	B
73259100	- -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5%**	C
73259910	- - - 하수용 맨홀・드레인 커버(drain cover)와 이와 유사한 주조물	**5%**	C
73259920	- - - 소화전 플레이트・밸브와 화재 경보 칼럼(column)	**5%**	C
73259930	- - - 원통형 우편함	**5%**	C
73259940	- - - 토끼와 가금류용 케이지, 하이브(hive), 동물용 사료 공급기 및 음용기와 플라우(plough)	**5%**	C
73259990	- - - 기타	**5%**	C
73261100	- -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5%**	C
73261900	- - 기타	**5%**	C
73262010	- - - 쥐덫	**5%**	C
73262020	- - - 어망	**5%**	C
73262030	- - - 동물 사육용 외양간	**5%**	C
73262040	- - - 휴지통	**5%**	C
73262090	- - - 기타	**5%**	C
73269010	- - - 신발 프로텍터(protector), 결속용 포인트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C
73269020	- - - 나무오르기용 철제품	**5%**	C
73269030	- - - 기계식이 아닌 통풍기	**5%**	C
73269040	- - - 베네치안 블라인드	**5%**	C
73269050	- - - 통용 체결 후프(hoop)	**5%**	C
73269060	- - - 전기 배선용 연결구류[예 : 스테이((stay))・클립・브래킷]와 절연체 체인용 서스펜션 또는 연결 장치	**5%**	C
73269070	- - - 울타리 기둥	**5%**	C
73269080	- - - 텐트용 지주・가축 등을 매어두기 위한 말뚝	**5%**	C
73269091	- - - - 정원 경계용 후프와 수목용 시렁(trainer)	**5%**	C
73269092	- - - - 물 호스용 클립	**5%**	C
73269093	- - - - 도로용 스터드	**5%**	C
73269094	- - - - 휴대용 사다리와 계단	**5%**	C
73269095	- - - - 공구 상자	**5%**	C
73269096	- - - - 보석과 골동품 상자, 화장품용이나 분용 상자와 케이스	**5%**	C
73269097	- - - - 조명용 전신주	**5%**	C
73269098	- - - 토끼와 가금류용 케이지, 하이브(hive), 동물용 사료 공급기 및 음용기와 플라우(plough)	**5%**	C
73269099	- - - - 기타	**5%**	C
74010000	구리의 매트(mat)와 시멘트동(침전동)	**5%**	C
74020000	정제하지 않은 구리와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5%**	C
74031100	- - 음극과 음극의 형재	**5%**	C
74031200	- - 와이어바(wire-bar)	**5%**	C
74031300	- - 빌릿(billet)	**5%**	A
74031900	- - 기타	**5%**	C
74032100	- -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5%**	C
74032200	- -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5%**	C
74032900	- - 그 밖의 구리합금[제7405호의 모합금(master alloy)은 제외한다]	**5%**	C

74040000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A
74050000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	**5%**	C
74061000	- 비(非)층상조직인 가루	**5%**	X
74062000	- 층상조직인 가루와 플레이크(flake)	**5%**	A
74071000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5%**	X
74072100	-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5%**	X
74072900	- - 기타	**5%**	X
74081100	-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X
74081900	- - 기타	**5%**	X
74082100	-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5%**	X
74082200	- -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5%**	X
74082900	- - 기타	**5%**	X
74091100	- - 코일 모양	**5%**	X
74091900	- - 기타	**5%**	B
74092100	- - 코일 모양	**5%**	X
74092900	- - 기타	**5%**	X
74093100	- - 코일 모양	**5%**	B
74093900	- - 기타	**5%**	A
74094000	-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5%**	B
74099000	- 기타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5%**	B
74101100	-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5%**	B
74101200	-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5%**	A
74102100	-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5%**	B
74102200	-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5%**	C
74111000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5%**	C
74112100	-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5%**	C
74112200	- -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5%**	C
74112900	- - 기타	**5%**	C
74121000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5%**	C
74122000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5%**	C
74130000	구리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5%**	C
74151000	- 못과 압정, 제도용 핀・스테이플과 이와 유사한 물품	**5%**	A
74152100	- - 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	**5%**	B
74152900	- - 기타	**5%**	C
74153300	- - 그 밖의 스크루(screw), 볼트(bolt)와 너트(nut)	**5%**	C
74153900	- - 기타	**5%**	C
74181000	-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5%**	C
74182000	-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5%**	C
74192010	- - - 방열판	**5%**	A
74192020	- - - 구리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C
74192090	- - - 기타	**5%**	B
74198010	- - - 방열판	**5%**	C
74198020	- - - 구리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C
74198030	- - - 가스압축 또는 액화용 컨테이너	**5%**	C
74198040	- - - 전기도금용 구리 또는 구리 합금의 음극	**5%**	C
74198050	- - - 구리선 제품(트랩, 휴지통 등)	**5%**	C
74198060	- - - 비기계식 통풍기	**5%**	A
74198070	- - - 베네치안 블라인드	**5%**	A
74198080	- - - 물 호스용 클립	**5%**	A
74198090	- - - 기타	**5%**	C
75011000	- 니켈의 매트(mat)	**5%**	A
75012000	- 소결(燒結)한 산화니켈과 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5%**	A
75021000	- 합금하지 않은 니켈	**5%**	A
75022000	- 니켈 합금	**5%**	C
75030000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C
75040000	니켈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5%**	A
75051100	-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5%**	C
75051200	-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5%**	C
75052100	-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5%**	A
75052200	-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5%**	C
75061000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5%**	C
75062000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5%**	C
75071100	-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5%**	C
75071200	-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5%**	C
75072000	- 관(管) 연결구류	**5%**	C
75081000	- 니켈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	**5%**	C
75089010	- - - 구조물용 창문 틀	**5%**	B
75089020	- - - 저장조・탱크・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과 상관없이 기계장치나 가열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C

75089030	- - - 못・압정・너트・볼트・스크류	**5%**	C
75089040	- - - 스프링	**5%**	B
75089050	- - - 가정용품과 주방용품	**5%**	C
75089060	- - - 위생용품	**5%**	C
75089090	- - - 기타	**5%**	C
76011000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5%**	A
76012000	- 알루미늄 합금	**5%**	A
760200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A
76031000	- 비(非)층상조직인 가루	**5%**	X
76032000	- 층상조직인 가루와 플레이크(flake)	**5%**	X
76041000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5%**	X
76042100	- -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5%**	X
76042900	- - 기타	**5%**	X
76051100	-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X
76051900	- - 기타	**5%**	X
76052100	-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X
76052900	- - 기타	**5%**	X
76061100	-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5%**	X
76061210	- - - 두께가 0.2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평평하거나 결이 있는 알루미늄 합금판과 시트(sheet)	**5%**	X
76061220	- - - 두께가 0.2밀리미터 이상 0.4밀리미터 이하인 평평한 알루미늄 합금 코일과 스트립	**5%**	X
76061230	- - - 두께가 0.4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평평하거나 결이 있는 알루미늄 합금 코일과 스트립	**5%**	X
76061240	- - - 두께가 1.0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이하인 알루미늄 합금 바둑판 무늬의 판과 시트(sheet)	**5%**	X
76061290	- - - 기타	**5%**	X
76069100	-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5%**	X
76069210	- - 두께가 0.2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이하인 평평한 알루미늄 합금 코일과 스트립	**5%**	X
76069220	- - - 두께가 0.2mm를 초과하는 알루미늄 합금판과 시트	**5%**	X
76069290	- - - 기타	**5%**	X
76071110	- - - 소매용으로 포장된 롤 모양인 것	**5%**	X
76071190	- - - 기타	**5%**	X
76071910	- - - 소매용으로 포장된 롤 모양인 것	**5%**	X
76071990	- - - 기타	**5%**	X
76072010	- - - 소매용으로 포장된 롤 모양인 것	**5%**	X
76072090	- - - 기타	**5%**	X
76081000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5%**	X
76082000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5%**	X
7609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5%**	X
76101010	- - - 차고용 전동문	**5%**	X
76101090	- - - 기타	**5%**	X
76109010	- - - 다리와 교량	**5%**	X
76109020	- - - 탑과 격자주(格子柱)	**5%**	X
76109030	- - - 창고와 돔(dome)	**5%**	X
76109040	- - - 계단	**5%**	C
76109050	- - - 병원 병동・식당・사무실・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것의 칸막이 벽	**5%**	X
76109060	- - - 천장용 장식 타일	**5%**	X
76109070	- - - 천장 장식 타일 고정용 형강(形鋼)과 스테이(stay)	**5%**	X
76109090	- - - 기타	**5%**	X
7611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X
76121000	- 연질의 튜브형 용기	**5%**	C
76129010	- - - 탄산 음료와 과실주스용 캔	**5%**	X
76129020	- - - 식품 저장용 캔	**5%**	X
76129030	- - - 화학제품・윤활유용 캔	**5%**	X
76129090	- - - 기타	**5%**	X
76130010	- - - 용적이 100리터 이하인 가스 실린더	**5%**	X
76130090	- - - 기타	**5%**	X
76141010	- - - 비절연 전선과 케이블	**5%**	X
76141090	- - - 기타	**5%**	X
76149000	- 기타	**5%**	X
76151010	- -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5%**	X
76151020	- - - 알루미늄 시트로 만든 접시・쟁반	**5%**	X
76151090	- - - 기타	**5%**	X
76152000	-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5%**	X
76161000	- 못・압정・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5%**	X
76169100	- - 알루미늄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울타리	**5%**	X
76169910	- - - 체인과 그 부품	**5%**	X
76169921	- - - - 익스팬디드(expanded) 알루미늄 와이어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	**5%**	X
76169922	- - - - 휴지통	**5%**	C
76169929	- - - - 기타	**5%**	X
76169930	- - - 기계식이 아닌 통풍기	**5%**	X

76169940	- - - 베네치안 블라인드	**5%**	X
76169950	- - - 알루미늄으로 만든 송전선 부속품(예: 와이어 채널・서포터・클립과 마운트)	**5%**	X
76169960	- - - 울타리 기둥	**5%**	C
76169970	- - - 휴대용 사다리	**5%**	X
76169990	- - - 기타	**5%**	X
78011000	- 정제한 납	**5%**	C
78019100	- -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그 밖의 원소의 것	**5%**	C
78019900	- - 기타	**5%**	C
78020000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B
78041100	- - 시트(sheet)・스트립・박(箔)[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A
78041900	- - 기타	**5%**	A
78042000	- 가루와 플레이크(flake)	**5%**	A
78060000	납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5%**	B
79011100	- -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5%**	C
79011200	- -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인 것	**5%**	C
79012000	- 아연 합금	**5%**	C
79020000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C
79031000	- 아연 더스트(dust)	**5%**	C
79039000	- 기타	**5%**	C
79040010	- - - 선(線)	**5%**	C
79040020	- - - 봉	**5%**	A
79040090	- - - 프로파일(profile)	**5%**	A
79050010	- - - 사진제판, 리소그래피용 또는 그 밖의 인쇄용 판 등	**5%**	A
79050090	- - - 기타	**5%**	A
79070010	- - - 포장・운송용 캔・박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5%**	C
79070020	- - - 저장조・배트(vat)・드럼과 이와 유사한 용기(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C
79070030	- - - 의약품 등의 포장용 튜브형 용기	**5%**	C
79070040	- - - 아연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 및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시트	**5%**	C
79070050	- - - 못・압정・너트・볼트・스크루(screw)	**5%**	B
79070060	- - - 가정용품	**5%**	C
79070070	- - - 위생용품	**5%**	C
79070080	- - - 수목・식물용 레이블(문자・숫자나 패턴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C
79070091	- - - - 포장용 중공(中空) 시트(sheet)	**5%**	C
79070092	- - - - 전기도금용 양극	**5%**	C
79070093	- - - - 파이프라인・선박 탱크 등의 부식방지용으로 사용되는 음극보호양극[희생양극(sacrificial anode)]	**5%**	A
79070099	- - - - 기타	**5%**	B
80011000	- 합금하지 않은 주석	**5%**	A
80012000	- 주석 합금	**5%**	C
80020000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A
80030010	- - - 중공(中空) 막대	**5%**	A
80030090	- - - 기타	**5%**	B
80070010	- - - 배트(vat)・저장조・드럼 및 그 밖의 용기(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80070020	- - - 치약・컬러제품 또는 그 밖의 물품 포장용 연질의 튜브	**5%**	A
80070030	- - - 가정용품・주방용품・식탁용품(물병・쟁반・접시 등)	**5%**	C
80070090	- - - 기타	**5%**	C
81011000	- 가루	**5%**	A
81019400	- - 텅스텐의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5%**	A
81019600	- - 선(線)	**5%**	A
8101970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A
81019900	- - 기타	**5%**	B
81021000	- 가루	**5%**	A
81029400	- -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5%**	A
81029500	- - 봉[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것은 제외한다], 프로파일(profile)・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5%**	A
81029600	- - 선(線)	**5%**	A
8102970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A
81029900	- - 기타	**5%**	C
81032000	- 탄탈륨의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가루	**5%**	A
81033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A
81039100	- - 도가니	**5%**	B
81039900	- - 기타	**5%**	A
81041100	- -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 이상인 것	**5%**	A
81041900	- - 기타	**5%**	A
81042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A
81043010	- - - 마그네슘 분말	**5%**	A
81043090	- - - 기타	**5%**	A
81049010	- - - 형강(形鋼)・프로파일・시트・플레이트・박・스트립・중공(中空) 봉・플레이크	**5%**	C
81049020	- - - 와이어・봉과 막대	**5%**	A
81049030	- - - 파이프・관과 그 연결구류 및 중공 바	**5%**	C
81049090	- - - 마그네슘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5%**	A
81052000	-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괴(塊)・가루	**5%**	A
81053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A

81059000	- 기타	**5%**	B
81061000	- 비스무트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를 초과하는 것	**5%**	A
81069000	- 기타	**5%**	A
81082000	- 티타늄의 괴(塊), 가루	**5%**	C
81083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A
81089000	- 기타	**5%**	C
81092100	- - 하프늄 함유량이 중량비로 지르코늄 함유량의 500분의 1 미만인 것	**5%**	A
81092900	- - 기타	**5%**	A
81093100	- - 하프늄 함유량이 중량비로 지르코늄 함유량의 500분의 1 미만인 것	**5%**	A
81093900	- - 기타	**5%**	A
81099100	- - 하프늄 함유량이 중량비로 지르코늄 함유량의 500분의 1 미만인 것	**5%**	A
81099900	- - 기타	**5%**	A
81101000	- 안티모니의 괴(塊), 가루	**5%**	A
81102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A
81109000	- 기타	**5%**	B
811100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5%**	C
81121200	- - 괴(塊), 가루	**5%**	A
8112130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A
81121900	- - 기타	**5%**	A
81122100	- - 괴(塊), 가루	**5%**	A
8112220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A
81122900	- - 기타	**5%**	A
81123100	- -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5%**	A
81123900	- - 기타	**5%**	A
81124100	- -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5%**	A
81124900	- - 기타	**5%**	A
81125100	- - 괴(塊), 가루	**5%**	A
8112520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A
81125900	- - 기타	**5%**	A
8112610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A
81126900	- - 기타	**5%**	A
81129200	- -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5%**	B
81129900	- - 기타	**5%**	A
81130000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5%**	B
82011000	- 가래와 삽	**5%**	B
82013000	- 곡괭이・픽스(picks)・괭이・쇠스랑	**5%**	A
82014000	-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5%**	A
82015000	-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지가위[가금(家禽)용 가위를 포함한다]	**5%**	B
82016000	- 울타리 전단기(剪斷機)・양손용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5%**	B
82019000	-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수공구	**5%**	C
82021000	- 수동식 톱	**5%**	C
82022000	- 띠톱의 날	**5%**	C
82023100	- - 작용하는 부분을 강(鋼)으로 만든 것	**5%**	C
82023900	-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5%**	C
82024000	- 체인톱의 날	**5%**	A
82029100	- - 금속가공용 직선형 톱날	**5%**	A
82029900	- - 기타	**5%**	C
82031000	- 줄과 이와 유사한 공구	**5%**	B
82032000	- 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집게・핀셋과 이와 유사한 공구	**5%**	C
82033000	- 금속 절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공구	**5%**	C
82034000	- 파이프커터(pipe-cutter)・볼트크로퍼(bolt cropper)・천공펀치와 이와 유사한 공구	**5%**	C
82041100	- - 조절할 수 없는 것	**5%**	C
82041200	- - 조절할 수 있는 것	**5%**	C
82042000	-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5%**	C
82051000	- 드릴링・드레딩(threading)이나 태핑용(tapping) 공구	**5%**	C
82052000	- 망치(hammer, sledge hammer)	**5%**	C
82053000	- 목공용 대패・끌・둥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5%**	C
82054000	- 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	**5%**	B
82055100	- - 가정용 공구	**5%**	C
82055910	- - - 카트리지식 리베팅 건(gun)	**5%**	C
82055920	- - - 수동 윤활장치	**5%**	C
82055990	- - - 기타	**5%**	C
82056000	- 블로램프(blow lamp)	**5%**	C
82057000	- 바이스(vice)・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5%**	C
82059010	- - - 수공구(가정용은 제외한다)	**5%**	C
82059020	- - - 가정용 수공구	**5%**	B
82060000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5%**	C
82071300	- - 작용하는 부분을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5%**	C
82071900	-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5%**	C
82072000	- 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	**5%**	C
82073000	-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 공구	**5%**	C
82074000	- 태핑(tapping)용이나 드레딩(threading)용 공구	**5%**	C
82075000	- 드릴링(drilling)용 공구(착암기용은 제외한다)	**5%**	C
82076000	- 보링(boring)용이나 브로칭(broaching)용 공구	**5%**	C
82077000	- 밀링(milling)용 공구	**5%**	C
82078000	- 터닝(turning)용 공구	**5%**	C

82079000	- 그 밖의 호환성 공구	**5%**	C
82081000	- 금속 가공용	**5%**	B
82082000	- 목재 가공용	**5%**	A
82083000	- 주방기구용이나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	**5%**	B
82084000	-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기계의 것	**5%**	A
82089000	- 기타	**5%**	B
82090000	공구용 판・봉・팁과 이와 유사한 것[서멧(cermet)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C
82100000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개의 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B
82111000	-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5%**	B
82119120	- - - 상아로 만든 손잡이가 부착된 것	**5%**	A
82119130	- - - 조개껍질・호박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손잡이가 부착된 것(귀금속을 도포하거나 장식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82119190	- - - 기타	**5%**	A
82119200	- -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	**5%**	B
82119310	- - - 전지용 칼	**5%**	B
82119390	- - - 기타	**5%**	A
82119400	- - 칼날	**5%**	A
82119500	-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손잡이	**5%**	A
82121010	- - - 금속으로 만든 안전 면도기・면도날과 그 부분품	**5%**	C
82121020	- - - 플라스틱으로 만든 안전 면도기(면도날과 함께 제시되는 것)	**5%**	C
82121090	- - - 기타	**5%**	C
82122000	-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5%**	C
82129000	- 그 밖의 부분품	**5%**	C
82130000	가위, 재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이들의 날	**5%**	C
82141010	- - - 연필깎이와 그 날	**5%**	B
82141090	- - - 기타	**5%**	B
82142000	-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5%**	C
82149010	- - - 정육점 또는 주방용 토막용 칼(chopper)・칼붙이 및 다지기용(mincing) 칼	**5%**	B
82149090	- - - 기타	**5%**	B
82151000	-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한 가지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으로 한정한다)	**5%**	A
82152000	- 위 물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	**5%**	C
82159100	- -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5%**	B
82159900	- - 기타	**5%**	C
83011000	- 자물쇠	**5%**	C
83012000	- 자동차용 자물쇠	**5%**	C
83013000	- 가구용 자물쇠	**5%**	B
83014010	- - - 다이얼식(combination) 자물쇠	**5%**	C
83014020	- - - 전기작동식 자물쇠	**5%**	C
83014030	- - - 핸드백용 자물쇠	**5%**	A
83014040	- - - 자전거・오토바이용 자물쇠	**5%**	A
83014090	- - - 기타	**5%**	B
83015000	-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5%**	B
83016000	- 부분품	**5%**	C
83017000	-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5%**	B
83021000	- 경첩	**5%**	C
83022000	- 카스터(castor)	**5%**	B
83023000	- 자동차용으로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5%**	C
83024100	- - 건물용으로 적합한 것	**5%**	C
83024200	- - 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83024910	- - - 문 손잡이	**5%**	C
83024990	- - - 기타	**5%**	C
83025000	-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5%**	C
83026000	- 자동도어 폐지기	**5%**	C
8303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갑하거나(armoured) 보강한 금고, 스트롱박스(strong-box), 스트롱룸(strong-room)용 문과 저장실, 현금함이나 손금고와 이와 유사한 것	**5%**	C
83040010	- - -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분류함과 이와 유사한 사무용품	**5%**	A
83040021	- - - - 철로 만든 것	**5%**	A
83040029	- - - -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5%**	A
83040030	- - - 타자기용 종이 마운트	**5%**	A
83040040	- - - 데스크 랙(desk rack)과 선반	**5%**	B
83040090	- - - 기타	**5%**	A
83051000	-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	**5%**	B
83052000	-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	**5%**	C
8305900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5%**	A
83061000	-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	**5%**	C
83062100	- -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5%**	C
83062900	- - 기타	**5%**	C
83063000	-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거울	**5%**	C
83071000	- 철강으로 만든 것	**5%**	C
83079000	-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5%**	C
83081000	- 훅(hook)・아이(eye)・아일릿(eyelet)	**5%**	C
83082000	-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5%**	A
83089010	- - - 비(卑)금속으로 만든 걸쇠・걸쇠가 붙은 프레임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신발・핸드백・서류가방・여행용품과 그 밖의 가죽・직물제품용으로 한정한다)	**5%**	B
83089020	- - - 구슬과 스팽글[타터(tarter)]	**5%**	A

83089090	- - - 기타	**5%**	B
83091000	- 크라운코르크(crown cork)	**5%**	A
83099010	- - - 코르크를 내장한 금속제 전(栓 : stopper)	**5%**	C
83099020	- - - 병 밀봉용 레버나 스프링이 장착된 나선형 마개・마개(bung)용 커버	**5%**	A
83099030	- - - 나선형 마개(bung)용 커버	**5%**	A
83099040	- - - 주입구・계량식・점적구용 전(栓 : stopper)(음료, 기름, 약 등의 병용으로 한정한다)	**5%**	C
83099050	- - - 모든 종류의 실(seal)	**5%**	B
83099060	- - - 봉인 가방・향주머니나 이와 유사한 용기용의 죄는 기구로서 플라스틱이나 종이 두 조각 사이에 삽입된 하나나 두 개의 강선(steel wire)으로 구성	**5%**	C
83099070	- - - 캔의 상판과 하판	**5%**	C
83099090	- - - 기타	**5%**	C
83100010	- - - 명판(지역, 도로명 등)과 건물의 명판과 번호판 등	**5%**	C
83100020	- - - 공공서비스기관에 사용하는 사인판(sign-plate)(경찰・소방서 등)・금지판(금연・수렵 등)・도로와 교통용 표지판 등	**5%**	C
83100030	- - - 사인판(주택・상점・공장용 등)	**5%**	C
83100040	- - - 광고용 사인판	**5%**	C
83100050	- - - 주소판(가옥・문・우편함・차량용)・식물용 레이블(label)・열쇠용 숫자 꼬리표・탈의실용 꼬리표	**5%**	C
83100060	- - - 유사한 판과 심벌[기계・계량기・자동차(예: 번호판)용 등]	**5%**	C
83100070	- - - 별도의 문자, 숫자 및 패턴(이 호에 해당하는 판 제조용으로 설계된 것)	**5%**	C
83100090	- - - 기타	**5%**	C
8311100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용접봉[플럭스(flux)를 봉에 도포한 것으로서 전기 아크용접용으로 한정한다]	**5%**	C
8311200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선[플럭스(flux)를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서 전기 아크용접용으로 한정한다]	**5%**	C
8311300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봉과 선[플럭스(flux)를 봉에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서 불로 납땜・납접・용접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C
83119000	- 기타	**5%**	C
84011000	- 원자로	**5%**	A
84012000	-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와 그 부분품	**5%**	A
84013000	-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연료요소(카트리지)	**5%**	C
84014000	- 원자로의 부분품	**5%**	C
84021100	- -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을 초과하는 수관(水管)보일러	**5%**	C
84021200	- -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 이하인 수관(水管)보일러	**5%**	X
84021900	- - 그 밖의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 포함한다)	**5%**	C
84022000	-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5%**	C
84029000	- 부분품	**5%**	C
84031000	- 보일러	**5%**	A
84039000	- 부분품	**5%**	C
84041000	- 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	**5%**	C
84042000	-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5%**	C
84049000	- 부분품	**5%**	C
84051000	-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5%**	C
84059000	- 부분품	**5%**	C
84061000	- 선박추진용 터빈	**5%**	A
84068100	- - 출력이 4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5%**	C
84068200	- - 출력이 40메가와트 이하인 것	**5%**	C
84069000	- 부분품	**5%**	C
84071000	- 항공기용 엔진	**5%**	B
84072100	- - 아웃보드(outboard) 모터	**5%**	C
84072900	- - 기타	**5%**	X
84073100	-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이하인 것	**5%**	A
84073200	-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것	**5%**	A
84073300	- - 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1,000시시 이하인 것	**5%**	C
84073410	- - -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5%**	C
84073420	- -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5%**	C
84073430	- - -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5%**	C
84079000	- 그 밖의 엔진	**5%**	C
84081000	- 선박추진용 엔진	**5%**	C
84082000	- 제87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5%**	C
84089000	- 그 밖의 엔진	**5%**	C
84091000	- 항공기 엔진용	**5%**	B
84099110	- - - 피스톤과 피스톤링	**5%**	C
84099120	- - - 실린더・실린더 블록・실린더 헤드와 실린더 케이싱	**5%**	C
84099130	- - - 연료흡입 밸브와 튜브	**5%**	C
84099140	- - - 배기 밸브와 파이프(매니폴드)	**5%**	C
84099150	- - - 연료용 기화기(carburettor)와 노즐(연료 노즐)	**5%**	C
84099190	- - - 기타	**5%**	C
84099900	- - 기타	**5%**	C
84101100	- - 동력이 1,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5%**	A
84101200	- - 동력이 1,000킬로와트 초과 10,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5%**	A
84101300	- - 동력이 10,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5%**	A
84109000	- 부분품(조정기를 포함한다)	**5%**	B
84111100	- - 추진력이 25킬로뉴턴 이하인 것	**5%**	A
84111200	- -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5%**	X
84112100	- - 출력이 1,100킬로와트 이하인 것	**5%**	B
84112200	- - 출력이 1,1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5%**	A
84118100	- - 출력이 5,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5%**	X
84118200	- - 출력이 5,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5%**	A

84119100	- -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5%**	C
84119900	- - 기타	**5%**	A
84121000	- 터보제트 외의 반동 엔진	**5%**	X
84122100	- -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5%**	C
84122900	- - 기타	**5%**	C
84123100	- -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5%**	C
84123900	- - 기타	**5%**	C
84128000	- 기타	**5%**	X
84129000	- 부분품	**5%**	C
84131100	- -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5%**	X
84131910	- - - 소화펌프	**5%**	X
84131990	- - - 기타	**5%**	C
84132000	-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나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	**5%**	B
84133000	-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	**5%**	C
84134000	- 콘크리트 펌프	**5%**	C
84135000	- 그 밖의 용적형 왕복펌프	**5%**	C
84136000	- 그 밖의 용적형 회전펌프	**5%**	C
84137000	- 그 밖의 원심펌프	**5%**	C
84138110	- - - 농업용의 것	**5%**	X
84138120	- - - 가정용의 것	**5%**	X
84138190	- - - 기타	**5%**	C
84138200	- - 액체엘리베이터	**5%**	A
84139100	- - 펌프의 것	**5%**	C
84139200	- -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5%**	X
84141000	- 진공펌프	**5%**	C
84142000	-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5%**	B
84143000	-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5%**	C
84144000	- 예인용 바퀴 달린 섀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5%**	X
84145110	- - -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출력이 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	X
84145120	- - -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출력이 25와트 초과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	X
84145900	- - 기타	**5%**	C
84146000	- 후드(hood)(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X
84147000	-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	**5%**	C
84148000	- 기타	**5%**	C
84149000	- 부분품	**5%**	C
84151010	- - 용적이 70,000비티유(BTU) 이하인 공기조절기	**5%**	C
84151020	- - 용적이 70,000비티유(BTU)를 초과하는 공기조절기	**5%**	C
84152000	- 자동차용(탑승자용으로 한정한다)	**5%**	C
84158120	- - - 중앙공기조절기	**5%**	C
84158190	- - - 기타	**5%**	C
84158220	- - - 중앙공기조절기	**5%**	C
84158290	- - - 기타	**5%**	C
84158320	- - - 중앙공기조절기	**5%**	X
84158390	- - - 기타	**5%**	C
84159000	- 부분품	**5%**	C
84161000	-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5%**	A
84162000	- 그 밖의 노(爐)용 버너[콤비네이션 버너(combination burner)를 포함한다]	**5%**	C
84163000	-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5%**	B
84169000	- 부분품	**5%**	C
84171000	- 배소(焙燒)용・용해용이나 그 밖의 처리용 노(爐)와 오븐(광석・황철광이나 금속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5%**	C
84172000	-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 오븐을 포함한다)	**5%**	C
84178010	- - - 목탄로	**5%**	A
84178020	- - - 시멘트 처리용 로터리(rotary) 노(爐)와 석고 처리용 혼합노(爐)	**5%**	C
84178030	- - - 도자기 제조용과 법랑용(enamelling) 노(爐)	**5%**	A
84178040	- - - 유리 제조용 노(爐)	**5%**	A
84178090	- - - 기타	**5%**	C
84179000	- 부분품	**5%**	C
84181000	- 일체형 냉장・냉동고(분리된 외부 문, 서랍이나 그 결합물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	C
84182100	- - 압축식	**5%**	C
84182900	- - 기타	**5%**	C
84183000	- 체스트(chest)형 냉동고(용량이 8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C
84184000	-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X
84185000	- 냉장용이나 냉동용 장치를 갖춘 저장과 전시 목적의 그 밖의 가구[체스트(chest), 캐비닛, 전시용 카운터, 쇼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84186100	- -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5%**	C
84186910	- - - 휴대용 냉수기	**5%**	C
84186920	- - - 아이스크림 제조기	**5%**	C
84186930	- - - 음료 냉각기	**5%**	X
84186940	- - - 용량이 900리터를 초과하는 냉장실이나 냉동실	**5%**	X
84186950	- - - 아이스큐브 제조기	**5%**	X
84186990	- - - 기타	**5%**	C

84189100	- - 냉장기구나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5%**	X
84189910	- - - 압축식 냉장기구	**5%**	B
84189990	- - - 기타	**5%**	C
84191100	- - 가스식인 즉시식 물가열기	**5%**	B
84191200	- - 태양열 물 가열기	**5%**	A
84191900	- - 기타	**5%**	C
84192000	- 내과용・외과용・실험실용 살균기	**5%**	C
84193300	- - 동결건조 장치・유닛과 분무건조기	**5%**	A
84193400	- - 기타(농산물용으로 한정한다)	**5%**	A
84193500	- - 기타(목재용・제지펄프용・종이용・판지용으로 한정한다)	**5%**	A
84193900	- - 기타	**5%**	C
84194000	- 증류기나 정류기	**5%**	C
84195000	- 열교환기	**5%**	C
84196000	- 기체 액화용 기기	**5%**	X
84198100	- -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5%**	C
84198900	- - 기타	**0%**	A
84199000	- 부분품	**0%**	A
84201000	-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	**5%**	C
84209100	- - 실린더	**5%**	B
84209900	- - 기타	**5%**	B
84211100	- - 크림분리기	**5%**	A
84211200	- - 의류탈수기	**5%**	C
84211900	- - 기타	**0%**	A
84212110	- - - 가정용의 것	**5%**	C
84212190	- - - 기타	**5%**	C
84212200	- - 물 외의 음료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5%**	X
84212300	- -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	**5%**	C
84212910	- - - 혈액 정화용 필터	**0%**	A
84212990	- - - 기타	**5%**	A
84213100	- - 내연기관용 공기 여과기	**5%**	C
84213200	- - 촉매 변환기나 분진 여과기(두 가지가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청정용이나 여과용으로 한정한다)	**5%**	B
84213900	- - 기타	**5%**	A
84219100	-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0%**	A
84219900	- - 기타	**5%**	C
84221100	- - 가정형	**5%**	C
84221900	- - 기타	**5%**	C
84222000	-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5%**	C
84223010	- - -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5%**	C
84223020	- - -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5%**	C
84223030	- - -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5%**	C
84224000	-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5%**	C
84229000	- 부분품	**5%**	C
84231000	-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와 가정형 저울	**5%**	C
84232000	- 컨베이어용 연속계량식 저울	**5%**	B
84233000	- 정량저울과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저울[호퍼스케일(hopper scale)을 포함한다]	**5%**	C
84238100	- - 최대 측정용량이 30킬로그램 이하인 것	**5%**	C
84238200	- - 최대 측정용량이 30킬로그램 초과 5,000킬로그램 이하인 것	**5%**	B
84238900	- - 기타	**5%**	C
84239000	- 각종 저울 추와 저울 부분품	**5%**	B
84241000	-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C
84242010	- - - 건축자재용 스프레이건(전동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5%**	X
84242090	- - - 기타	**5%**	C
84243000	-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5%**	C
84244110	- - - 해충박멸 살포기	**5%**	C
84244190	- - - 기타	**5%**	C
84244910	- - - 해충박멸 살포기	**5%**	B
84244990	- - - 기타	**5%**	C
84248210	- - - 모든 종류의 완전한 관개시스템	**5%**	X
84248230	- - - 잔디 관개용 살수기	**5%**	C
84248290	- - - 기타	**5%**	B
84248900	- - 기타	**0%**	A
84249010	- - - 잦은 압력으로 액체를 분사하는 플라스틱제 헤드(제9616호의 것은 제외한다)	**0%**	A
84249020	- - - 제8424.82.10호의 관개시스템의 부분품	**0%**	A
84249090	- - - 기타	**0%**	A
84251100	- - 전동식	**5%**	C
84251900	- - 기타	**5%**	C
84253100	- - 전동식	**5%**	X
84253900	- - 기타	**5%**	C
84254100	- -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jacking system)	**5%**	A
84254200	- - 그 밖의 잭(jack)과 호이스트(hoist)(액압식으로 한정한다)	**5%**	C
84254900	- - 기타	**5%**	C
84261100	- - 고정식 천장주행 크레인	**5%**	C
84261200	- -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5%**	X
84261900	- - 기타	**5%**	X
84262000	- 타워크레인(tower crane)	**5%**	C
84263000	- 문형이나 정치형 지브 크레인(jib crane)	**5%**	X
84264100	- - 타이어가 달린 것	**5%**	C

84264900	- - 기타	**5%**	X
84269100	- - 도로주행 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5%**	C
84269900	- - 기타	**5%**	C
84271000	-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自走式) 트럭	**5%**	C
84272000	- 그 밖의 자주식(自走式) 작업트럭	**5%**	C
84279000	- 그 밖의 작업트럭	**5%**	A
84281000	-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5%**	C
84282000	- 압축공기식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5%**	C
84283100	- -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	**5%**	X
84283200	- - 그 밖의 버켓형	**5%**	X
84283300	- - 그 밖의 벨트형	**5%**	C
84283900	- - 기타	**5%**	C
84284000	-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moving walkway)	**5%**	A
84286000	- 텔레페릭(teleferic)·의자 양하기·스키용 드래그라인(dragline)·퓨니쿨러(funicular)용 견인장치	**5%**	C
84287000	- 산업용 로봇	**5%**	A
84289000	- 그 밖의 기계	**5%**	C
84291100	- - 무한궤도식	**5%**	C
84291900	- - 기타	**5%**	B
84292000	- 그레이더(grader)와 레벨러(leveller)	**5%**	C
84293000	- 스크레이퍼(scraper)	**5%**	A
84294000	- 탬핑머신(tamping machine)과 로드롤러(road roller)	**5%**	B
84295100	- - 프론트엔드 셔블로더(front-end shovel loader)	**5%**	C
84295200	- -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5%**	C
84295900	- - 기타	**5%**	C
84301000	- 항타기(杭打機)와 항발기(抗拔機)	**5%**	C
84302000	-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5%**	B
84303100	- - 자주식(自走式)	**5%**	C
84303900	- - 기타	**5%**	B
84304100	- - 자주식(自走式)	**5%**	C
84304900	- - 기타	**5%**	X
84305000	-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5%**	B
84306100	- - 탬핑(tamping)용이나 콤팩팅(compacting)용 기계	**5%**	C
84306900	- - 기타	**5%**	C
84311000	- 제8425호의 기계의 것	**5%**	X
84312000	- 제8427호의 기계의 것	**5%**	C
84313100	- - 리프트·스킵호이스트(skip hoist)·에스컬레이터의 것	**5%**	C
84313900	- - 기타	**5%**	C
84314100	- - 버켓(bucket)·셔블(shovel)·그랩(grab)과 그립(grip)	**5%**	C
84314200	- - 불도저(bulldozer)나 앵글도저(angledozer)의 블레이드(blade)	**5%**	A
84314310	- - - 우물용 천공 드릴	**5%**	C
84314390	- - - 기타	**5%**	C
84314900	- - 기타	**5%**	C
84321000	- 플라우(쟁기)	**5%**	A
84322100	- -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5%**	A
84322900	- - 기타	**5%**	A
84323100	- - 무경간(無耕墾) 직접 농법용 파종기·식부기(植付機)·이식기	**5%**	A
84323900	- - 기타	**5%**	A
84324100	- - 퇴비 살포기	**5%**	A
84324200	- - 비료 살포기	**5%**	A
84328000	- 그 밖의 기계	**5%**	C
84329000	- 부분품	**5%**	B
84331100	- - 동력식(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	A
84331900	- - 기타	**5%**	B
84332000	- 그 밖의 풀 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 커터바(cutter bar)를 포함한다]	**5%**	A
84333000	- 그 밖의 건초제조용 기계	**5%**	A
84334000	- 짚이나 건초 결속기[픽업(pick-up)결속기를 포함한다]	**5%**	A
84335100	- - 수확·탈곡 겸용기	**5%**	A
84335200	- - 그 밖의 탈곡기	**5%**	A
84335300	- - 구경(球莖)이나 괴경(塊莖)의 수확기[근채(根菜) 수확기]	**5%**	A
84335900	- - 기타	**5%**	B
84336000	-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	**5%**	C
84339000	- 부분품	**5%**	B
84341000	- 착유기	**5%**	A
84342000	- 낙농기계	**5%**	A
84349000	- 부분품	**5%**	A
84351000	- 기계	**5%**	C
84359000	- 부분품	**5%**	B
84361000	-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	**5%**	A
84362100	- -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5%**	C
84362900	- - 기타	**5%**	C
84368010	- - - 실험실용 박테리아 배양기	**5%**	C
84368090	- - - 기타	**5%**	C
84369100	- -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나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5%**	B
84369900	- - 기타	**5%**	X
84371000	- 종자·곡물·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	**5%**	C
84378000	- 그 밖의 기계	**5%**	C
84379000	- 부분품	**5%**	B
84381000	- 베이커리 기계와 마카로니·스파게티·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품의 제조용 기계	**5%**	X
84382000	- 과자·코코아·초콜릿 제조용 기계	**5%**	C

84383000	- 설탕 제조용 기계	**5%**	A
84384000	- 양조용 기계	**5%**	A
84385000	- 육류나 가금(家禽)육의 조제용 기계	**5%**	C
84386000	- 과실・견과・채소의 조제용 기계	**5%**	C
84388000	- 그 밖의 기계	**5%**	C
84389000	- 부분품	**5%**	C
84391000	-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	**5%**	C
84392000	- 종이・판지의 제조용 기계	**5%**	A
84393000	- 종이・판지의 완성가공용 기계	**5%**	B
84399100	- -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5%**	A
84399900	- - 기타	**5%**	B
84401000	- 기계	**5%**	B
84409000	- 부분품	**5%**	B
84411000	- 절단기	**5%**	C
84412000	- 종이백・봉지・봉투 제조용 기계	**5%**	A
84413000	- 카톤(carton)・박스・케이스・튜브・드럼・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moulding)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5%**	C
84414000	- 제지용 펄프・종이・판지 제품의 몰딩(moulding)용 기계	**5%**	C
84418000	- 그 밖의 기계	**5%**	B
84419000	- 부분품	**5%**	C
84423000	- 기계류・장치・장비	**5%**	C
84424000	- 위의 기계류・장치・장비의 부분품	**5%**	C
84425000	-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그레인・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5%**	X
84431100	- - 오프셋(offset) 인쇄기계[릴(reel) 공급식으로 한정한다]	**5%**	B
84431200	- - 오프셋(offset) 인쇄기계[사무실용 시트(sheet) 공급식으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22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센티미터 이하인 시트(sheet)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A
84431300	- - 그 밖의 오프셋(offset) 인쇄기계	**5%**	B
84431400	- -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 공급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5%**	A
84431500	- -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 공급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5%**	A
84431600	- - 곡면인쇄용 기계	**5%**	C
84431700	- - 그라비어(gravure) 인쇄용 기계	**5%**	A
84431900	- - 기타	**5%**	C
84433100	- -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복사・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0%**	A
84433210	- - - 팩시밀리(facsimiles machines)	**0%**	A
84433220	- - - 텔렉스(telex machines)	**0%**	A
84433230	- - - 텔레프린터	**0%**	A
84433290	- - - 기타	**0%**	A
84433910	- - - 광학 시스템을 갖춘 복사기	**0%**	A
84433920	- - - 원래의 영상을 복사본으로 즉시 전송하는 복사기	**0%**	A
84433990	- - - 기타	**0%**	A
84439100	- -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5%**	C
84439920	- - - 자동 문서공급기	**0%**	A
84439930	- - - 종이공급기	**0%**	A
84439940	- - - 분류기	**0%**	A
84439950	- - - 프린터용 액체성 또는 분말 잉크 카트리지(catridge)	**0%**	A
84439990	- - - 기타	**0%**	A
84440000	인조섬유의 방사(紡絲)용・늘림(drawing)용・텍스처(texture)용・절단용 기계	**5%**	B
84451100	- - 카드기(carding machine)	**5%**	A
84451200	- - 코밍기(combing machine)	**5%**	C
84451300	- - 연조기나 조방기	**5%**	C
84451900	- - 기타	**5%**	C
84452000	- 방적기계	**5%**	C
84453000	- 합사기(合絲機)나 연사기(撚絲機)	**5%**	C
84454000	-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	**5%**	A
84459000	- 기타	**5%**	A
84461000	-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소폭직기	**5%**	A
84462100	- - 직조기(동력구동식으로 한정한다)	**5%**	C
84462900	- - 기타	**5%**	A
84463000	-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셔틀리스(shuttleless)형으로 한정한다]	**5%**	C
84471100	- - 실린더 지름이 165밀리미터 이하인 것	**5%**	A
84471200	- - 실린더 지름이 16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C
84472000	- 횡(横) 편직기와 스티치 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5%**	A
84479000	- 기타	**5%**	C
84481100	- - 도비(dobby)기・자카드기와 이들을 사용하기 위한 카드의 축소용・복사용・천공용・조립용 기계	**5%**	A
84481900	- - 기타	**5%**	A
84482000	- 제8444호에서 규정한 기계나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5%**	B
84483100	- - 침포	**5%**	C
84483200	- - 침포를 제외한 방적준비기계의 것	**5%**	A
84483300	- - 스핀들・스핀들 플라이어・스피닝 링・링트래블러	**5%**	A
84483900	- - 기타	**5%**	C
84484200	- - 직조기용 바디・종광(heald)과 종광 프레임	**5%**	A
84484900	- - 기타	**5%**	B
84485100	- - 바늘땀(stitch) 형성에 사용하는 싱커(sinker)・바늘과 그 밖의 물품	**5%**	C

84485900	- - 기타	**5%**	B
84490000	펠트나 부직포(성형인 것을 포함한다)의 제조・완성가공용 기계(펠트모자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다)와 모자 제조용 형(型)	**5%**	A
84501100	- - 완전자동 세탁기	**5%**	C
84501200	- - 그 밖의 세탁기(원심탈수기를 내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84501900	- - 기타	**5%**	C
84502000	- 1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5%**	C
84509000	- 부분품	**5%**	C
84511000	- 드라이클리닝기	**5%**	B
84512100	- - 1회의 건조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5%**	C
84512900	- - 기타	**5%**	C
84513000	- 다림질기와 프레스[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	**5%**	A
84514000	- 세탁기・표백기・염색기	**5%**	C
84515000	- 감기(reeling)용 기계・풀기(unreeling)용 기계・접음기・절단기・핑킹(pinking)용 기계(직물용으로 한정한다)	**5%**	C
84518000	- 그 밖의 기계	**5%**	C
84519000	- 부분품	**5%**	B
84521000	- 가정형 재봉기	**5%**	A
84522100	- - 자동식	**5%**	B
84522900	- - 기타	**5%**	C
84523000	- 재봉기용 바늘	**5%**	C
84529000	-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밑판・덮개와 그 부분품, 그리고 그 밖의 재봉기의 부분품	**5%**	C
84531000	- 원피・가죽의 유피(柔皮)준비기・유피(柔皮)기・가공기계	**5%**	A
84532000	- 신발의 제조용이나 수선용 기계	**5%**	B
84538000	- 그 밖의 기계	**5%**	A
84539000	- 부분품	**5%**	A
84541000	- 전로	**5%**	A
84542000	- 잉곳(ingot)용 주형과 레이들(ladle)	**5%**	A
84543000	- 주조기	**5%**	B
84549000	- 부분품	**5%**	C
84551000	- 관 압연기	**5%**	C
84552100	- - 열간(熱間)이나 열・냉간(熱冷間) 겸용 압연기	**5%**	C
84552200	- - 냉간(冷間) 압연기	**5%**	C
84553000	- 압연기용 롤	**5%**	B
84559000	- 그 밖의 부분품	**5%**	C
84561100	- - 레이저 방식의 것	**0%**	A
84561200	- - 그 밖의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	**0%**	A
84562000	-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5%**	B
84563000	- 방전 방식으로 하는 것	**5%**	A
84564000	-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하는 것	**0%**	A
84565000	- 워터제트 절단기	**0%**	A
84569000	- 기타	**0%**	A
84571000	-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5%**	C
84572000	-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	**5%**	A
84573000	-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5%**	A
84581100	- - 수치제어식	**5%**	C
84581900	- - 기타	**5%**	C
84589100	- - 수치제어식	**5%**	C
84589900	- - 기타	**5%**	C
84591000	- 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	**5%**	A
84592100	- - 수치제어식	**5%**	C
84592900	- - 기타	**5%**	C
84593100	- - 수치제어식	**5%**	C
84593900	- - 기타	**5%**	A
84594100	- - 수치제어식	**5%**	C
84594900	- - 기타	**5%**	A
84595100	- - 수치제어식	**5%**	C
84595900	- - 기타	**5%**	A
84596100	- - 수치제어식	**5%**	C
84596900	- - 기타	**5%**	C
84597000	- 그 밖의 나사 절삭용 기계나 태핑머신(tapping machine)	**5%**	B
84601200	- - 수치제어식	**5%**	C
84601900	- - 기타	**5%**	C
84602200	- - 무심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5%**	A
84602300	- - 그 밖의 원통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5%**	A
84602400	- - 기타(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5%**	B
84602900	- - 기타	**5%**	B
84603100	- - 수치제어식	**5%**	B
84603900	- - 기타	**5%**	B
84604000	- 호닝머신(honing machine)이나 래핑머신(lapping machine)	**5%**	C
84609000	- 기타	**5%**	C
84612000	- 쉐이핑머신(shaping machine)이나 슬로팅머신(slotting machine)	**5%**	B
84613000	-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5%**	A
84614000	-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기어완성가공기	**5%**	C
84615000	- 톱기계나 절단기	**5%**	C
84619000	- 기타	**5%**	C
84621100	- - 밀폐식 형 단조기	**5%**	A
84621900	- - 기타	**5%**	A
84622200	- - 프로파일 성형기	**5%**	C

84622300	- - 수치제어식 프레스 브레이크(press brake)	**5%**	A
84622400	- - 수치제어식 패널 굽힘기	**5%**	A
84622500	- - 수치제어식 롤 성형기	**5%**	A
84622600	- - 그 밖의 수치제어식 굽힘기・접음기・교정기・펼침기	**5%**	A
84622900	- - 기타	**5%**	C
84623200	- - 슬리팅(slitting) 설비와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설비(cut-to-length line)	**5%**	B
84623300	- - 수치제어식 전단기	**5%**	A
84623900	- - 기타	**5%**	B
84624200	- - 수치제어식	**5%**	C
84624900	- - 기타	**5%**	C
84625100	- - 수치제어식	**5%**	A
84625900	- - 기타	**5%**	A
84626100	- - 액압식 프레스	**5%**	C
84626200	- - 기계식 프레스	**5%**	C
84626300	- - 서보프레스	**5%**	A
84626900	- - 기타	**5%**	A
84629000	- 기타	**5%**	B
84631000	- 드로우벤치(draw-bench)[봉・관・프로파일(profile)・선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引拔)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A
84632000	- 나사 전조기	**5%**	A
84633000	- 선 가공기	**5%**	B
84639000	- 기타	**5%**	B
84641000	- 톱기계	**0%**	A
84642000	- 연마기나 광택기	**0%**	A
84649000	- 기타	**0%**	A
84651000	-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공구의 교환없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B
84652000	-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5%**	A
84659100	- - 톱 기계	**5%**	A
84659200	- - 평삭기・밀링머신(milling machine)・몰딩머신(moulding machine)(절단 방식으로 한정한다)	**5%**	X
84659300	- - 연삭기・샌딩머신(sanding machine)・광택기	**5%**	A
84659400	- - 굽힘기나 조립기	**5%**	A
84659500	- -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이나 모티싱머신(morticing machine)	**5%**	B
84659600	- - 스플리팅(splitting)기・슬라이싱(slicing)기・박피기	**5%**	B
84659900	- - 기타	**5%**	C
84661000	- 툴홀더(tool holder)와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5%**	C
84662000	- 가공용 홀더	**5%**	B
84663000	- 분할대(dividing head)와 그 밖의 공작기계 공구용 특수부착물	**5%**	C
84669100	- - 제8464호의 기계용	**0%**	A
84669200	- - 제8465호의 기계용	**5%**	B
84669300	- - 제8456호부터 제8461호까지의 기계용	**0%**	A
84669400	- - 제8462호나 제8463호의 기계용	**5%**	C
84671100	- - 회전방식의 것(회전 진동자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5%**	C
84671910	- - - 드릴・선반 및 드레더(threader)	**5%**	A
84671920	- - - 렌치(wrench)・스크루 드라이버・너트 셋팅장치(nut setting device)	**5%**	C
84671930	- - - 표면 폴리싱(polishing)・세정 및 레벨링(levelling)용 기계	**5%**	C
84671940	- - - 원형톱, 체인톱과 이와 유사한 것	**5%**	A
84671950	- - - 스케일 제거용 해머・치핑(chipping) 해머・펀칭(punching) 해머・리벳팅(riveting) 해머・콘크리트 파쇄용 해머	**5%**	C
84671960	- - - 조(jaw)형 리벳팅(riveting)기	**5%**	A
84671970	- - - 전단기	**5%**	A
84671980	- - - 도로 건설이나 유지용의 콤팩팅(compacting) 및 탬핑(tamping)용 기계	**5%**	A
84671990	- - - 기타	**5%**	C
84672100	- - 각종 드릴	**5%**	C
84672200	- - 톱	**5%**	A
84672900	- - 기타	**5%**	C
84678100	- - 체인톱	**5%**	A
84678900	- - 기타	**5%**	C
84679100	- - 체인톱의 것	**5%**	B
84679200	- -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5%**	C
84679900	- - 기타	**5%**	C
84681000	- 수지식 취관(吹管)	**5%**	B
84682000	- 가스를 사용하는 그 밖의 기기	**5%**	C
84688000	- 그 밖의 기기	**5%**	C
84689000	- 부분품	**5%**	C
84701000	- 전자계산기(외부의 전원 공급 없이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0%**	A
84702100	- - 인쇄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	**0%**	A
84702900	- - 기타	**0%**	A
84703000	- 그 밖의 계산기	**0%**	A
84705000	- 금전 등록기	**0%**	A
84709010	- - - 우편요금계기	0%	A
84709020	- - - 표권 발행기	**0%**	A
84709090	- - - 기타	**0%**	A
84713000	-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84714100	- - 적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장치와 입출력장치를 내장한 것(이들이 상호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A
84714900	- - 기타(시스템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한정한다)	**0%**	A

84715000	-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와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A
84716000	- 입력장치나 출력장치(동일 하우징 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에 상관없다)	**0%**	A
84717000	- 기억장치	**0%**	A
84718000	-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 기기	**0%**	A
84719000	- 기타	**0%**	A
84721000	- 등사기	**5%**	A
84723000	- 우편물의 분류기・접음기, 우편물을 봉투나 밴드에 삽입하는 기계, 우편물의 개봉기・봉함기・실링기, 우표의 첨부기나 소인기	**5%**	A
84729010	- - - 표권발행기[계산 기구를 갖춘 것이나 코인작동식의 기계(제8470호)를 제외한다]	**0%**	A
84729020	- - - 주화분류기 또는 주화계수기, 계수포장기	**0%**	A
84729030	- - - 연필절삭기	**0%**	A
84729040	- - - 지(紙) 천공기	**0%**	A
84729050	- - - 스테이플러(stapler)와 제침기	**0%**	A
84729060	- - - 서류절단기	**0%**	A
84729070	- - - 계산장치가 없는 금전등록기	**5%**	B
84729080	- - - 현금자동입출금기(ATM)	**0%**	A
84729090	- - - 기타	**0%**	A
84732100	- - 소호 제8470.10호・제8470.21호・제8470.29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	**0%**	A
84732900	- - 기타	**0%**	A
84733000	-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0%**	A
84734000	-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5%**	C
84735000	-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 중에서 두 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0%**	A
84741000	-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	**5%**	C
84742000	- 파쇄기나 분쇄기	**5%**	C
84743100	- - 콘크리트 혼합기나 모르타르 혼합기	**5%**	C
84743200	- - 역청질과 광물성 재료의 혼합기	**5%**	C
84743900	- - 기타	**5%**	C
84748000	- 그 밖의 기계	**5%**	X
84749000	- 부분품	**5%**	C
84751000	-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밸브・섬광전구(flashbu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	**5%**	X
84752100	- -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기계	**5%**	C
84752900	- - 기타	**5%**	C
84759000	- 부분품	**5%**	B
84762100	- -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5%**	A
84762900	- - 기타	**5%**	A
84768100	- -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5%**	A
84768900	- - 기타	**5%**	C
84769000	- 부분품	**5%**	B
84771000	- 사출 성형기	**0%**	A
84772000	- 압출기	**5%**	C
84773000	- 취입 성형기	**5%**	C
84774000	- 진공성형기와 그 밖의 열성형기	**5%**	C
84775100	- -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나 재생기 또는 그 밖의 이너튜브(inner tube) 성형기	**5%**	A
84775900	- - 기타	**5%**	C
84778000	- 그 밖의 기계	**5%**	C
84779000	- 부분품	**0%**	A
84781000	- 기계류	**5%**	C
84789000	- 부분품	**5%**	C
84791010	- - - 도로건설용으로 사용되는 표면 레벨링(levelling) 기계	**5%**	A
84791020	- - - 도로에 자갈이나 아스팔트를 까는 기계	**5%**	C
84791030	- - - 교통 도로 마킹(marking) 기계(분사식 기계는 제외한다)	**5%**	A
84791090	- - - 기타	**5%**	C
84792000	-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인 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조제용 기계류	**5%**	A
84793000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건축용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용 프레스, 목재나 코르크 처리용 그 밖의 기계	**5%**	X
84794000	-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	**5%**	C
84795000	-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84796000	- 증발식 에어쿨러	**5%**	X
84797100	- - 공항에서 사용되는 것	5%	A
84797900	- - 기타	**5%**	B
84798100	- - 금속 처리용(전선권선기를 포함한다)	**5%**	C
84798200	- -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 체・시프팅기(sifting machine)・균질기・유화기・교반기	**5%**	C
84798300	- - 냉간 등압성형기	**5%**	A
84798910	- - - 비누 제조기	**0%**	A
84798920	- - - 광주리 및 매트(mat) 세공용 기계와 장비	**0%**	A
84798930	- - - 브러시 제조용 기계와 장비	**0%**	A
84798940	- - - 공기 가습기나 제습기(제8415호, 제8424호나 제8509호의 기기는 제외한다)	**0%**	A
84798950	- - - 기계용의 펌프형 자동 그리스 주입기	**0%**	A
84798960	- - - 성냥의 화학 입히는 기계(match dipping machine)	**0%**	A

84798970	- - - 용접봉(welding electrode)의 피복기	**0%**	A
84798980	- - - 볼트를 조이거나 푸는 기계와 철심 추출기(제82류의 수지식 공구 및 제8467호 또는 제8508호의 수지식 공구를 제외한다)	**0%**	A
84798991	- - - - 파이프라인과 하수도의 유지용 기계	**0%**	A
84798992	- - - - 모포(blanket)와 매트리스에 퀼트(quilt)를 채우고 송풍 또는 추진 장치를 사용하여 덮개를 씌우는 기계	**0%**	A
84798993	- - - - 직물류, 종이 등의 보강재에 연마제를 도포하는 기계	**0%**	A
84798994	- - - - 잠수용 종(diver's bell)과 기계식 장치가 부착된 금속 잠수복(diving suit)	**0%**	A
84798999	- - - - 기타	**0%**	A
84799000	- 부분품	**0%**	A
84801000	- 금속 주조용 주형틀	**5%**	C
84802000	- 주형 베이스	**5%**	C
84803010	- - - 목재 또는 철로 만든 것	**5%**	C
84803090	- -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5%**	C
84804100	- - 사출식이나 압축식	**5%**	C
84804900	- - 기타	**5%**	X
84805000	- 유리 성형용 주형	**5%**	A
84806000	-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5%**	C
84807100	- - 사출식이나 압축식	**0%**	A
84807900	- - 기타	**5%**	X
84811000	- 감압밸브	**5%**	C
84812000	-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	**5%**	C
84813000	- 체크밸브	**5%**	C
84814000	- 안전밸브	**5%**	C
84818010	- - - 타이어용 이너튜브 밸브(inner tube valve)	**5%**	C
84818020	- - - 방열기의 배출용 밸브(discharge valve))	**5%**	C
84818030	- - - 가스 실린더(cylinder)용 밸브	**5%**	C
84818040	- - - 부표 작동식 밸브	**5%**	C
84818050	- - - 소화전과 노즐(nozzle)	**5%**	C
84818060	- - - 분무 및 관개 호스(irrigation hose)용 노즐과 밸브	**5%**	C
84818070	- - - 목욕탕과 욕조의 배수용 밸브	**5%**	X
84818080	- - - 살충제・소독제 등이 충전된 압력용 또는 스프레이캔용 뚜껑	**5%**	C
84818090	- - - 기타	**5%**	A
84819000	- 부분품	**5%**	C
84821000	- 볼베어링(ball bearing)	**5%**	C
84822000	-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5%**	C
84823000	- 구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5%**	C
84824000	-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케이지와 니들 롤러의 조립품을 포함한다)	**5%**	C
84825000	-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케이지와 롤러의 조립품을 포함한다)	**5%**	C
84828000	- 그 밖의 베어링[볼베어링(ball bearing)과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5%**	C
84829100	- - 볼・니들・롤러	**5%**	C
84829900	- - 기타	**5%**	C
84831000	-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5%**	C
84832000	-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	C
84833000	-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5%**	C
84834000	-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날이 붙은 휠・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과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는 제외한다], 볼이나 롤러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5%**	C
84835000	-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5%**	C
84836000	-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5%**	C
84839000	-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와 부분품	**5%**	C
84841000	-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84842000	-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5%**	C
84849000	- 기타	**5%**	C
84851000	- 금속용	**5%**	A
84852000	- 플라스틱・고무용	**5%**	A
84853000	- 플라스터・시멘트・세라믹・유리용	**5%**	A
84858000	- 기타	**5%**	A
84859000	- 부분품	**5%**	A
84861010	- - - 반도체디바이스 마스크 및 보울(boule) 형상을 제조하거나 수리하기 위한 집속 이온 빔 밀링기	**0%**	A
84861020	- - - 단결정 반도체 블록을 칩으로 절단하거나 얇은 디스크를 웨이퍼(wafer)로 절단하는 기계	**0%**	A
84861030	- - - 반도체 칩 가공용의 연마기・광택기	**0%**	A
84861040	- - - 반도체 칩 밀링(milling)용이나 낫칭(notching)용의 큐브(cube) 절단기계	**0%**	A
84861090	- - - 기타	**0%**	A
84862010	- - - 반도체 모형의 건식 드릴링(drilling)용 공구	**0%**	A
84862020	- - - 도포에 의하여 반도체를 활성화시키는 이온 플랜트(plant) 기기	**0%**	A

84862030	- - - 웨이퍼 위에 직접 드로잉하는 기계	**0%**	A
84862040	- - - 줄을 드로잉하는 기계(형상의 반복에 의한 것)	**0%**	A
84862050	- - - 감광성 반도체 재료에 회로모형을 투영하거나 드로잉하는 그 밖의 기계	**0%**	A
84862060	- - - 주형 고정용 기기・접착테이프 기기와 반도체 칩 조립용 와이어 고정 기기	**0%**	A
84862070	- - - 반도체 칩의 드릴링, 추출 또는 세척용 스프레이 기기	**0%**	A
84862090	- - - 기타	**0%**	A
84863010	- - - 습식 드릴링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거 또는 세척용 기기	**0%**	A
84863090	- - - 기타	**0%**	A
84864010	- - - 패턴형성기(차광 코팅층의 마스크(mask)나 보울(boule)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0%**	A
84864020	- - - 반도체 칩, 웨이퍼 커버 및 캔과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용 물품의 이송・취급이나 저장을 위한 자주식(自走式) 기계	**0%**	A
84864030	- - - 반도체 웨이퍼와 레티클의 취급 및 이송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장비가 부착된 전자빔을 사용하는 현미경	**0%**	A
84864091	- - - - 반도체 웨이퍼와 레티클의 취급 및 이송을 위해 특별히 사용되는 장비가 부착된 현미경	**0%**	A
84864092	- - - - 반도체 웨이퍼와 레티클의 취급 및 이송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장비가 부착된 마이크로 사진용 현미경	**0%**	A
84864099	- - - - 기타	**0%**	A
84869010	- - - 고정 블록 기기・접착테이프 기기와 반도체 칩 조립용 와이어 고정 기기용의 부분품	**0%**	A
84869020	- - - 반도체 코팅 활성화용 이온 플랜트 기기의 부분품	**0%**	A
84869030	- - - 소호 제8486.20.30호부터 제8486.20.50호까지의 기기용 부분품과 부속품	**0%**	A
84869040	- - - 반도체 칩, 커버 및 웨이퍼 캔과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의 이송・취급・저장을 위한 자주식(自走式) 기계의 부분품	**0%**	A
84869090	- - - 기타	**0%**	A
84871000	- 선박이나 보트의 추진기와 그 블레이드(blade)	**5%**	X
84879000	- 기타	**5%**	B
85011000	-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C
85012000	-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출력이 37.5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C
85013100	- -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5%**	C
85013200	- -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5%**	B
85013300	- - 출력이 75킬로와트 초과 375킬로와트 이하인 것	**5%**	X
85013400	- - 출력이 3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5%**	X
85014000	- 그 밖의 단상(單相) 교류 전동기	**5%**	C
85015100	- -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5%**	C
85015200	- -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5%**	C
85015300	- - 출력이 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5%**	C
85016100	-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C
85016200	-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C
85016300	- -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C
85016400	- -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5%**	C
85017100	- - 출력이 50와트 이하인 것	**5%**	A
85017200	- - 출력이 50와트를 초과하는 것	**5%**	A
85018000	- 태양광 교류 발전기	**5%**	A
85021100	-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X
85021200	-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C
85021300	- -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5%**	C
85022000	-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5%**	X
85023100	- - 풍력의 것	**5%**	A
85023900	- - 기타	**5%**	C
85024000	- 회전변환기	**5%**	A
85030000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C
85041000	- 방전등용이나 방전관용 안정기	**5%**	X
85042100	- -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C
85042200	- -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C
85042300	- -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5%**	C
85043100	- -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C
85043200	- -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6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X
85043300	- - 용량이 16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C
85043400	- - 용량이 5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5%**	C
85044011	- - - - 휴대용 전화기(portable phone)와 태블릿(tablet)용 충전기	**0%**	A
85044012	- - - - 랩탑컴퓨터(laptop computer)용 충전기	**0%**	A
85044013	- - - - 건전지용 충전기	**0%**	A
85044014	- - - - 데스크탑 컴퓨터(desktop computer)용 전원장치	**0%**	A
85044019	- - - - 기타	**0%**	A
85044090	- - - 기타	**0%**	A
85045010	- -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통신기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밖의 전기 유도자	**0%**	A
85045090	- - - 기타	**0%**	A
85049000	- 부분품	**5%**	A
85051100	- - 금속으로 만든 것	**5%**	C
85051900	- - 기타	**5%**	C
85052000	-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브레이크	**5%**	B
8505900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5%**	C
85061010	- - - 전압이 1.5볼트 이상인 휴대용 장치용 건전지	**5%**	B
85061090	- - - 기타	**5%**	A

85063010	- - - 전압이 1.5볼트 이상인 휴대용 장치용 건전지	**5%**	A
85063090	- - - 기타	**5%**	A
85064010	- - - 전압이 1.5볼트 이상인 휴대용 장치용 건전지	**5%**	A
85064090	- - - 기타	**5%**	A
85065010	- - - 전압이 1.5볼트 이상인 휴대용 장치용 건전지	**5%**	C
85065090	- - - 기타	**5%**	A
85066010	- - - 전압이 1.5볼트 이상인 휴대용 장치용 건전지	**5%**	A
85066090	- - - 기타	**5%**	B
85068010	- - - 전압이 1.5볼트 이상인 휴대용 장치용 건전지	**5%**	C
85068090	- - - 기타	**5%**	B
85069000	- 부분품	**5%**	B
85071000	-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5%**	C
85072000	- 그 밖의 연산(鉛酸)축전지	**5%**	C
85073000	- 니켈-카드뮴	**5%**	C
85075000	- 니켈-수소합금	**5%**	A
85076000	- 리튬이온	**5%**	C
85078000	- 그 밖의 축전지	**5%**	C
85079000	- 부분품	**5%**	X
85081100	- - 출력이 1,500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5%**	C
85081910	- - - 출력이 1,500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리터 초과 50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가정용의 것	**5%**	A
85081920	- - - 출력이 1,500와트 초과 3,000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50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가정용의 것	**5%**	A
85081990	- - - 기타	**0%**	A
85086000	- 그 밖의 진공청소기	**5%**	X
85087000	- 부분품	**5%**	C
85094000	-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실주스・채소주스 추출기	**5%**	C
85098010	- - - 감자 탈피기(peeler)와 치퍼(chipper)	**5%**	C
85098020	- - 고기・치즈・빵・채소・과실 절단용의 다양한 기계	**5%**	A
85098030	- - - 주방과 테이블 칼붙이의 연마 및 폴리싱(polishing)용 기계	**5%**	A
85098040	- - - 전기칫솔	**5%**	C
85098090	- - - 기타	**5%**	C
85099000	- 부분품	**5%**	C
85101000	- 면도기	**5%**	C
85102000	- 이발기	**5%**	X
85103000	- 모발제거기	**5%**	A
85109000	- 부분품	**5%**	B
85111000	- 점화플러그	**5%**	C
85112000	-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 자석발전기와 마그네틱 플라이휠	**5%**	B
85113000	- 배전기와 점화코일	**5%**	C
85114000	- 시동전동기와 겸용 시동발전기	**5%**	C
85115000	- 그 밖의 발전기	**5%**	C
85118000	- 그 밖의 기기	**5%**	C
85119000	- 부분품	**5%**	C
85121000	-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5%**	B
85122000	-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5%**	C
85123000	- 음향신호용 기구	**5%**	C
85124000	-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	**5%**	C
85129000	- 부분품	**5%**	C
85131000	- 전등	**5%**	C
85139000	- 부분품	**5%**	A
85141100	- - 열간 등압성형기	**0%**	A
85141900	- - 기타	**0%**	A
85142000	- 전자유도식이나 유전(dielectric)식 노(爐)와 오븐	**0%**	A
85143100	- - 전자 빔 노(爐)	**0%**	A
85143200	- - 플라즈마・진공 아크식 노(爐)	**0%**	A
85143900	- - 기타	**0%**	A
85144000	- 그 밖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식의 가열기기	**5%**	C
85149000	- 부분품	**0%**	A
85151100	- - 납땜용 인두와 건(gun)	**5%**	B
85151900	- - 기타	**5%**	B
85152100	- - 전자동식이나 반자동식	**5%**	B
85152900	- - 기타	**5%**	C
85153100	- - 전자동식이나 반자동식	**5%**	C
85153900	- - 기타	**5%**	C
85158000	- 그 밖의 기기	**5%**	C
85159000	- 부분품	**5%**	C
85161010	- - -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용적이 2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X
85161020	- - -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용적이 2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X
85162100	- -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5%**	A
85162910	- - - 가정용 전열용 기기	**5%**	B
85162990	- - - 기타	**5%**	C
85163100	- - 헤어드라이어	**5%**	B
85163200	- - 그 밖의 이용기기	**5%**	C
85163300	- - 손 건조기	**5%**	B
85164000	- 전기다리미	**5%**	X
85165000	-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	**5%**	C

85166000	- 그 밖의 오븐, 쿠커 · 조리판 · 보일링링 · 그릴러 · 로스터	**5%**	X
85167100	- - 커피 · 차를 끓이는 기기	**5%**	X
85167200	- - 토스터	**5%**	A
85167910	- - - 커피 볶는 기기나 팝콘조리기	**5%**	C
85167920	- - - 전기식의 향로	**5%**	C
85167990	- - - 기타	**5%**	C
85168000	- 전열용 저항체	**5%**	C
85169000	- 부분품	**5%**	C
85171100	- -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171300	- - 스마트폰	**0%**	A
85171410	- - - 휴대형(mobile) 셀룰러 통신망용 전화기	**0%**	A
85171420	- - - 위성 네트워크용 전화기[투라야(Thuraya)와 이와 유사한 물품]	**0%**	A
85171490	- - - 기타	**0%**	A
85171800	- - 기타	**0%**	A
85176100	- - 기지국	**0%**	A
85176210	- - - 교환대와 전화기 교환기	**0%**	A
85176220	- - - 그 밖의 전류선 도체시스템이나 디지털통신시스템용 기기	**0%**	A
85176230	- - - 동시통역(simultaneous interpretation)용 특수 송신기기	**0%**	A
85176240	- - - 선박 · 항공기 등으로부터의 구호 신호 수신용 특수 기기	**0%**	A
85176250	- - - 짧은 케이블(안테나)이나 소형 금속 안테나를 갖춘 무선 마이크로폰(microphone)(라디오나 텔레비전 기기는 제외한다)	**0%**	A
85176260	- - - 신호의 원격 송신이나 수신용 기기	**0%**	A
85176270	- - - 차량 · 선박 · 항공기 · 열차용 등의 무선수신기기를 포함한 무선 전화기	**0%**	A
85176280	- - - 통신기능을 갖춘 노출박스(surface box) 조절용의 것: 데이터 교환 기능이 있는 인터넷 접속 모뎀을 갖춘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장치	**0%**	A
85176290	- - - 기타	**0%**	A
85176910	- - - 경보기와 음성 신호용 기기	**0%**	A
85176990	- - - 기타	**0%**	A
85177100	- -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	**0%**	A
85177900	- - 기타	**0%**	A
85181010	- - - 통신용 마이크로폰(지름이 10밀리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3밀리미터 이하이며, 주파수 대역이 300헤르츠부터 3.4킬로헤르츠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181090	- - - 기타	**0%**	A
85182100	- -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5%**	C
85182200	- -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5%**	C
85182910	- - - 통신용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가 없는 것으로,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주파수 대역이 300헤르츠부터 3.4킬로헤르츠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182990	- - - 기타	**0%**	A
85183010	- - - 유선전화용 헤드폰	**0%**	A
85183090	- - - 기타	**0%**	A
85184010	- - - WTO 정보기술협정(ITA)에 규정된 전화선 기술 제품의 신호 재생용 전기 증폭기	**0%**	A
85184090	- - - 기타	**5%**	B
85185000	- 음향증폭세트	**5%**	C
85189010	- - - WTO 정보기술협정(ITA)의 전화선 기술 제품의 신호용 기기 개선에 사용되는 전기 증폭기의 부분품	**0%**	A
85189090	- - - 기타	**5%**	A
85192000	- 코인 · 은행권 · 은행카드 · 토큰이나 그 밖의 지급 수단으로 작동하는 기기	**5%**	C
85193000	- 턴 테이블(레코드 데크)	**5%**	B
85198100	- - 자기식 · 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5%**	C
85198900	- - 기타	**5%**	C
85211000	- 마그네틱 테이프형	**5%**	A
85219000	- 기타	**5%**	C
85221000	- 픽업 카트리지	**5%**	A
85229000	- 기타	**5%**	C
85232100	- - 마그네틱 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를 갖춘 카드	**5%**	X
85232910	- - - 기록이 안 된 자기식 매체(음성이나 영상 레코더용으로 한정한다)	**0%**	A
85232990	- - - 기타	**0%**	A
85234100	- - 기록이 안 된 것	**0%**	A
85234900	- - 기타	**0%**	A
85235100	- - 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0%**	A
85235200	- - 스마트카드	**0%**	A
85235900	- - 기타	**0%**	A
85238000	- 기타	**0%**	A
85241100	- - 액정의 것	**5%**	C
85241200	- -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의 것	**5%**	A
85241900	- - 기타	**5%**	A
85249100	- - 액정의 것	**5%**	C
85249200	- -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의 것	**5%**	A
85249900	- - 기타	**5%**	B
85255000	- 송신기기	**0%**	A
85256000	-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0%**	A
85258010	- - - 비디오카메라	**0%**	A
85258020	- - - 정지영상용 디지털카메라	**0%**	A
85258091	- - - - 보안 감시 전용 텔레비전 카메라	**0%**	A
85258099	- - - - 기타	**0%**	A
85258100	-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고속 카메라	**0%**	A

85258200	- -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방사선 강화・내(耐)방사선 카메라로 한정한다]	**0%**	A
85258300	- -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3호에 규정된 야간투시 카메라로 한정한다)	**0%**	A
85258900	- - 기타	**0%**	A
85261000	- 레이더기기	**5%**	C
85269110	- - -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	**5%**	C
85269190	- - - 기타	**5%**	C
85269200	- - 무선원격조절기기	**5%**	C
85271200	- -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5%**	A
85271300	- - 그 밖의 기기(음성기록기기나 음성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5%**	C
85271900	- - 기타	**5%**	A
85272100	- - 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5%**	C
85272900	- - 기타	**5%**	C
85279100	- - 음성기록기기나 음성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5%**	X
85279200	- -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5%**	A
85279900	- - 기타	**5%**	B
85284200	-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0%**	A
85284900	- - 기타	**5%**	B
85285200	-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0%**	A
85285900	- - 기타	**5%**	C
85286200	-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0%**	A
85286900	- - 기타	**5%**	C
85287110	- - 통신 기능을 갖춘 조정 표면(adjustment surface)이 있는 박스, 인터넷 접속용 모뎀을 갖춘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장치(정보교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287120	- - - 위성(수신기기)을 통한 텔레비전 전송 수신용 기기	**5%**	A
85287190	- - - 기타	**5%**	C
85287220	- - - 스마트 텔레비전 기기	**5%**	A
85287230	- - - 그 밖의 텔레비전 기기	**5%**	A
85287290	- - - 기타	**5%**	C
85287300	- - 기타(단색)	**5%**	B
85291000	-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	**0%**	A
85299010	- - - 송신기기(라디오 방송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 수신기를 갖춘 송신기기, 정지영상용 디지털 비디오카메라, 통신・경보 또는 호출용 휴대용 송신기기는 제외한다)용의 부분품	**0%**	A
85299090	- - - 기타	**0%**	A
85301000	-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기	**5%**	B
85308000	- 그 밖의 기기	**5%**	C
85309000	- 부분품	**5%**	B
85311000	-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5%**	C
85312000	- 액정 디바이스(엘시디)나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0%**	A
85318010	- - - 도어용 전기식의 벨	**5%**	B
85318020	- - - WTO 정보기술협정(ITA) 상품용 평판디스플레이(엘시디 모니터, 플라즈마, 전자-발광, 진공-형광과 그 밖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포함한다)	**0%**	A
85318030	- - - 경보기와 음성 신호용 기기	**0%**	A
85318090	- - - 기타	**5%**	C
85319010	- - - 소호 제8531.80.20호, 제8531.8030호의 기기용 부분품	**0%**	A
85319090	- - - 기타	**0%**	A
85321000	- 고정식 축전기로 50/60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無效)전력 용량이 0.5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0%**	A
85322100	- - 탄탈륨의 것	**0%**	A
85322200	- - 알루미늄 전해의 것	**0%**	A
85322300	- -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0%**	A
85322400	- - 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층)	**0%**	A
85322500	- - 종이나 플라스틱 유전체의 것	**0%**	A
85322900	- - 기타	**0%**	A
85323000	- 가변식이나 조정식(프리세트) 축전기	**0%**	A
85329000	- 부분품	**0%**	A
85331000	-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콤퍼지션형이나 필름형으로 한정한다)	**0%**	A
85332100	- - 용량이 20와트 이하인 것	**0%**	A
85332900	- - 기타	**0%**	A
85333100	- - 용량이 20와트 이하인 것	**0%**	A
85333900	- - 기타	**0%**	A
85334000	- 그 밖의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한다]	**0%**	A
85339000	- 부분품	**0%**	A
85340000	인쇄회로	**0%**	A
85351000	- 퓨즈	**5%**	C
85352100	- - 전압이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5%**	X
85352900	- - 기타	**5%**	C
85353000	- 격리용 개폐기와 회로단속용 개폐기	**5%**	X
85354000	- 피뢰기・전압제한기와 서지(surge)억제기	**5%**	C
85359000	- 기타	**5%**	C
85361000	- 퓨즈	**5%**	C
85362000	- 자동차단기	**5%**	C
85363000	- 전기회로 보호용 그 밖의 기기	**5%**	C
85364100	- -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	**5%**	C
85364900	- - 기타	**5%**	C

85365010	- - - 광학적으로 접속된 입출력 회로로 구성된 전기전자식 스위치(절연 가감저항 전기 스위치)	**0%**	A
85365020	- - - 전자스위치[온도보호 전자스위치를 포함하고 1,000볼트 이하의 전압용으로 트랜지스터와 논리칩{칩온칩(chip-on-chip) 기술}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365030	- - - 전기기계식의 래피드 무브먼트(rapid movement) 스위치(11암페어 이하로 한정한다)	**0%**	A
85365090	- - - 기타	**0%**	A
85366100	- - 램프홀더	**5%**	C
85366910	- - - 동축전선과 인쇄회로용 플러그와 소켓	**0%**	A
85366920	- - - 그 밖의 플러그와 소켓	**0%**	A
85367000	-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	**5%**	C
85369010	- - - 전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	**0%**	A
85369020	- - - 칩 프로브(probe)	**0%**	A
85369091	- - - - 어댑터[범용 직렬 버스(USB)용 슬롯(slot)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0%**	A
85369099	- - - - 기타	**0%**	A
85371000	-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5%**	A
85372000	-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	**5%**	C
85381000	-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7호의 물품용으로 한정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5%**	C
85389000	- 기타	**5%**	C
85391000	- 실드빔 램프 유닛(sealed beam lamp unit)	**5%**	B
85392100	- - 텅스텐 할로겐의 것	**5%**	C
85392200	- - 기타(전력이 200와트 이하 전압이 1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C
85392900	- - 기타	**5%**	C
85393100	- - 형광램프(열음극형으로 한정한다)	**5%**	C
85393200	- - 수은램프나 나트륨증기 램프, 메탈 할라이드(metal halide) 램프	**5%**	C
85393900	- - 기타	**5%**	B
85394100	- - 아크램프	**5%**	A
85394900	- - 기타	**5%**	C
85395100	-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모듈	**5%**	A
85395200	-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	**5%**	C
85399000	- 부분품	**5%**	C
85401100	- - 천연색	**5%**	B
85401200	- - 기타(단색)	**5%**	B
85402000	- 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영상변환관, 영상증강관(image intensifier), 그 밖의 광전관(photocathode tube)	**5%**	B
85404000	-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단색),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천연색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5%**	A
85406000	- 그 밖의 음극선관	**5%**	A
85407100	- - 자전관(magnetron)	**5%**	B
85407900	- - 기타	**5%**	A
85408100	- - 수신관이나 증폭관	**5%**	X
85408900	- - 기타	**5%**	A
85409100	- - 음극선관의 것	**5%**	A
85409900	- - 기타	**5%**	A
85411000	- 다이오드(감광성 다이오드나 발광다이오드는 제외한다)	**0%**	A
85412100	- - 전력 낭비율이 1와트 미만인 것	**0%**	A
85412900	- - 기타	**0%**	A
85413000	- 사이리스터(thyristor), 다이액(diac), 트라이액(triac)(감광성 디바이스는 제외한다)	**0%**	A
85414100	-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0%**	A
85414200	- -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된 것은 제외한다)	**0%**	A
85414300	- -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414900	- - 기타	**0%**	A
85415100	- -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0%**	A
85415900	- - 기타	**0%**	A
85416000	-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0%**	A
85419000	- 부분품	**0%**	A
85423100	- -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0%**	A
85423200	- - 메모리	**0%**	A
85423300	- - 증폭기	**0%**	A
85423900	- - 기타	**0%**	A
85429000	- 부분품	**0%**	A
85431000	- 입자가속기	**5%**	B
85432000	- 신호발생기	**5%**	C
85433000	- 전기도금용・전기분해용・전기영동(泳動)용 기기	**0%**	A
85434010	- - 전자담배	**특별관심품목**	SG
85434020	- - - 전자워터파이프 "시샤(shisha)"	**특별관심품목**	SG
85434030	- - - 담배용 전기가열장치	**특별관심품목**	SG
85434090	- - - 기타	**특별관심품목**	SG
85437010	- - - 번역 또는 사전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	**0%**	A
85437020	- - - WTO 정보기술협정(ITA) 상품용 평판디스플레이(엘시디 모니터, 플라즈마, 전자-발광, 진공-형광과 그 밖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포함한다)	**0%**	A
85437090	- - - 기타	**0%**	A
85439010	- - -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0%**	A
85439091	- - - - 전자담배용의 것(제8507호의 축전지는 제외한다)	**특별관심품목**	SG

85439092	- - - - 전자워터파이프 "시샤(shisha)"용의 것(제8507호의 축전지는 제외한다)	**특별관심품목**	SG
85439093	- - - - 담배용 전기가열장치의 것(제8507호의 축전지는 제외한다)	**특별관심품목**	SG
85439098	- - - - 그 밖의 흡연용 전자 장치의 것	**특별관심품목**	SG
85439099	- - - - 기타	**0%**	A
85441100	- - 구리로 만든 것	**5%**	X
85441900	- - 기타	**5%**	X
85442010	- - - 단면이 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전압이 30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 케이블	**5%**	X
85442020	- - - 10쌍 이상의 전선을 갖춘 전신 및 전화 케이블	**5%**	X
85442030	- - - 10쌍 미만의 전선을 갖춘 전신 및 전화 케이블	**5%**	X
85442090	- - - 기타	**5%**	X
85443000	-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5%**	X
85444211	- - - - 단면이 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전압이 30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케이블용 전기 접속자	**0%**	A
85444219	- - - - 기타	**0%**	A
85444221	- - - - 단면이 10밀리미터 이하인 전선용 전기 접속자	**0%**	A
85444229	- - - - 기타	**0%**	A
85444230	- - - 10쌍 이상의 전선을 갖춘 전신 및 전화 케이블	**0%**	A
85444240	- - - 10쌍 미만의 전선을 갖춘 전신 및 전화 케이블	**0%**	A
85444291	- - - - 그 밖의 전기 접속자	**0%**	A
85444299	- - - - 기타	**0%**	A
85444910	- - - 단면이 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전압이 30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전기 케이블	**5%**	X
85444921	- - - -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0%**	A
85444929	- - - - 기타	**5%**	X
85444931	- - - -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0%**	A
85444939	- - - - 기타	**5%**	C
85444941	- - - -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0%**	A
85444949	- - - - 기타	**5%**	C
85444991	- - - -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0%**	A
85444999	- - - - 기타	**5%**	X
85446010	- - - 단면이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전기 케이블	**5%**	X
85446020	- - - 단면이 10밀리미터 이하인 전기 케이블	**5%**	X
85446030	- - - 10쌍 이상의 전선을 갖춘 전신 및 전화 케이블	**5%**	C
85446090	- - - 기타	**5%**	X
85447000	- 광섬유 케이블	**0%**	A
85451100	- - 노(爐)용	**5%**	X
85451900	- - 기타	**5%**	X
85452000	- 브러시	**5%**	C
85459000	- 기타	**5%**	C
85461000	- 유리로 만든 것	**5%**	A
85462000	- 도자제의 것	**5%**	C
85469000	- 기타	**5%**	X
85471000	-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5%**	C
85472000	-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5%**	C
85479000	- 기타	**5%**	C
85480000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X
85491100	- - 연산(鉛酸)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연산 축전지	**5%**	X
85491200	- - 기타(납・카드뮴・수은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85491300	- - 화학적 유형에 따라 선별된 것(납・카드뮴・수은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85491400	- - 선별되지 않은 것(납・카드뮴・수은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85491900	- - 기타	**5%**	B
85492100	- - 일차전지・축전지・수은 스위치・음극선관에서 얻어진 유리・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함유하는 것 또는 카드뮴・수은・납・폴리염화비페닐(PCBs)을 함유한 전기・전자부품	**5%**	A
85492900	- - 기타	**5%**	A
85493100	- - 일차전지・축전지・수은 스위치・음극선관에서 얻어진 유리・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함유하는 것 또는 카드뮴・수은・납・폴리염화비페닐(PCBs)을 함유한 전기・전자부품	**5%**	A
85493910	- - - 집적회로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85493990	- - - 기타	**5%**	X
85499100	- - 일차전지・축전지・수은 스위치・음극선관에서 얻어진 유리・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함유하는 것 또는 카드뮴・수은・납・폴리염화비페닐(PCBs)을 함유한 전기・전자부품	**5%**	A
85499900	- - 기타	**5%**	A
86011000	-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5%**	A
86012000	-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5%**	A
86021000	- 디젤 전기기관차	**5%**	A
86029000	- 기타	**5%**	A
86031000	-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5%**	A
86039000	- 기타	**5%**	A
86040000	철도나 궤도의 유지용이나 보수용 차량[자주식(自走式)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예: 공작차(workshop)・기중기차(crane)・밸러스트 템퍼(ballast tamper)・트랙라이너(trackliner)・검사차・궤도검사차]	**5%**	A
86050000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수하물차・우편차와 그 밖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특수용도차[자주식(自走式)과 제8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5%**	A

86061000	- 탱크차와 이와 유사한 차	**5%**	A
86063000	- 자기양하식(self-discharging) 화차(소호 제8606.10호의 것은 제외한다)	**5%**	A
86069100	- - 덮개가 있는 것으로서 밀폐되어 있는 것	**5%**	A
86069200	- - 덮개가 없는 것으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5%**	A
86069900	- - 기타	**5%**	X
86071100	- - 구동식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5%**	A
86071200	- - 그 밖의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5%**	A
86071900	-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5%**	B
86072100	- -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5%**	A
86072900	- - 기타	**5%**	A
86073000	- 혹과 그 밖의 연결장치・완충장치와 이들의 부분품	**5%**	A
86079100	- - 기관차용	**5%**	X
86079900	- - 기타	**5%**	B
86080000	철도나 궤도선로용 장치물,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신호기기・안전기기・교통관제기기, 이들의 부분품	**5%**	B
86090000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	C
87011000	- 차축이 하나인 트랙터	**5%**	A
87012100	-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것	**5%**	C
87012200	-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5%**	A
87012300	- -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5%**	A
87012400	- - 추진용 전동기만 갖춘 것	**5%**	A
87012900	- - 기타	**5%**	B
87013000	- 무한궤도식 트랙터	**5%**	A
87019100	- - 엔진의 동력이 18킬로와트 이하인 것	**5%**	B
87019200	- - 엔진의 동력이 18킬로와트 초과 37킬로와트 이하인 것	**5%**	B
87019300	- - 엔진의 동력이 37킬로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5%**	C
87019400	- - 엔진의 동력이 75킬로와트 초과130킬로와트 이하인 것	**5%**	A
87019500	- - 엔진의 동력이 13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5%**	A
87021000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것	**5%**	C
87022000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5%**	B
87023000	-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5%**	A
87024000	- 추진용 전동기만 갖춘 것	**5%**	A
87029000	- 기타	**5%**	C
87031000	- 설상(雪上)주행용 차량, 골프용 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5%**	C
87032111	- - - - 통관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에 제조한 것	**5%**	C
87032112	- - - - 통관 연도 이전 첫 번째 연도 또는 그 이전에 제조한 것	**5%**	C
87032131	- - - - 통관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모델	**5%**	C
87032132	- - - - 통관 연도 이전 첫 번째 연도 또는 그 이전의 모델	**5%**	C
87032150	- - - 긴급차량(예: 구급차・경찰차, 죄수 호송차・영구차)	**5%**	C
87032160	- - - 여행 및 피크닉을 위한 모터홈 차량과 이와 유사한 것	**5%**	A
87032171	- - - - 툭툭(Tuk Tuk)・락샤(Raksha) 및 이와 유사한 것	**5%**	A
87032179	- - - - 기타	**5%**	C
87032180	- - - 장애가 있거나 하반신 마비가 있는 사람이 운전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차량	**5%**	A
87032190	- - - 기타	**5%**	C
87032211	- - - - 통관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모델	**5%**	C
87032212	- - - - 통관 연도 이전 첫 번째 연도 또는 그 이전의 모델	**5%**	C
87032231	- - - - 통관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모델	**5%**	C
87032232	- - - - 통관 연도 이전 첫 번째 연도 또는 그 이전의 모델	**5%**	C
87032250	- - - 긴급차량(예: 구급차・경찰차, 죄수 호송차・영구차)	**5%**	A
87032260	- - - 여행 및 피크닉을 위한 모터홈 차량과 이와 유사한 것	**5%**	C
87032270	- - - 간단한 구조의 경량(輕量) 삼륜자동차	**5%**	A
87032280	- - - 장애가 있거나 하반신 마비가 있는 사람이 운전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차량	**5%**	A
87032290	- - - 기타	**5%**	C
87032311	- - - - 통관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모델	**5%**	C
87032312	- - - - 통관 연도 이전 첫 번째 연도 또는 그 이전의 모델	**5%**	C
87032331	- - - - 통관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모델	**5%**	C
87032332	- - - - 통관 연도 이전 첫 번째 연도 또는 그 이전의 모델	**5%**	C
87032350	- - - 긴급차량(예: 구급차・경찰차, 죄수 호송차, 영구차)	**5%**	C
87032360	- - - 여행 및 피크닉을 위한 모터홈 차량과 이와 유사한 것	**5%**	A
87032370	- - - 간단한 구조의 경량(輕量) 삼륜자동차	**5%**	A
87032380	- - - 장애가 있거나 하반신 마비가 있는 사람이 운전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차량	**5%**	A
87032390	- - - 기타	**5%**	C
87032411	- - - - 통관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모델	**5%**	C
87032412	- - - - 통관 연도 이전 첫 번째 연도 또는 그 이전의 모델	**5%**	C
87032431	- - - - 통관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모델	**5%**	C
87032432	- - - - 통관 연도 이전 첫 번째 연도 또는 그 이전의 모델	**5%**	C
87032450	- - - 긴급차량(예: 구급차・경찰차, 죄수 호송차・영구차)	**5%**	C
87032460	- - - 여행 및 피크닉을 위한 모터홈 차량과 이와 유사한 것	**5%**	A
87032470	- - - 장애가 있거나 하반신 마비가 있는 사람이 운전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차량	**5%**	A

87032490	- - - 기타	**5%**	C
87033100	-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5%**	C
87033200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5%**	C
87033300	- -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5%**	C
87034000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5%**	C
87035000	-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5%**	C
87036000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5%**	A
87037000	-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5%**	B
87038000	-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5%**	C
87039000	- 기타	**5%**	C
87041000	-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5%**	C
87042110	- - - 싱글(single)이나 더블(double) 캐빈(cabin)의 소형 트럭(픽업 자동차)(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5%**	C
87042120	- - - 경량 운송용 트럭[디야나(Diyana)・하프 로리(half lorry)와 이와 유사한 것][팁박스(tipbox)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5%**	C
87042130	- - - 탱커(tanker)(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87042140	- - - 덤프차[패킹(packing)・프레싱(pressing) 또는 완충 장비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5%**	C
87042150	- - - 운전자 객실을 갖춘 섀시(chassis)	**5%**	C
87042160	- - - 냉장차	**5%**	C
87042191	- - - - 화물운반용 경량(輕量) 삼륜자동차	**5%**	A
87042199	- - - - 기타	**5%**	C
87042210	- - - 화물자동차(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87042220	- - - 팁박스(tipbox)를 장착한 것(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87042230	- - - 탱커(tanker)(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87042240	- - - 덤프차[패킹(packing)・프레싱(pressing) 또는 완충 장비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5%**	C
87042250	- - - 셔틀카	**5%**	A
87042260	- - - 리프팅 도르래(pulley) ・ 자동적재장비가 장착된 차량	**5%**	C
87042270	- - -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의 운반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기계가 장착된 차량과 가스 및 화학물질 운반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5%**	C
87042291	- - - - 냉장차	**5%**	C
87042299	- - - - 기타	**5%**	A
87042310	- - - 화물자동차(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87042320	- - - 팁 박스(tipbox)를 장착한 것(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87042330	- - - 탱커(tanker)(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87042340	- - - 덤프차[패킹(packing)・프레싱(pressing) 또는 완충 장비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준비된 상태의 것)	**5%**	A
87042350	- - - 리프팅 도르래(pulley) ・ 자동적재장비가 장착된 차량	**5%**	A
87042360	- - -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의 운반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기계가 장착된 차량	**5%**	A
87042370	- - - 가스 및 화학물질 운반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5%**	A
87042391	- - - - 냉장차	**5%**	C
87042399	- - - - 기타	**5%**	C
87043110	- - - 싱글캡(single-cab) 픽업 자동차(조립한것으로 한정한다)	**5%**	C
87043120	- - - 더블캡 (two-cab)픽업 자동차(조립한것으로 한정한다)	**5%**	C
87043130	- - - 소형 트럭[디아나(Dyana)・하프 로리(half-lorries)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스탠다드 박스(standard box)를 갖춘 것(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87043140	- - - 소형 트럭[디아나(Dyana)・하프 로리(half-lorries)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팁박스(tipbox)를 갖춘 것(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87043150	- - - 탱커(tanker)(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87043160	- - - 덤프차[패킹(packing)・프레싱(pressing) 또는 완충 장비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87043170	- - - 운전석이 내장된 섀시	**5%**	C
87043180	- - - 냉장차	**5%**	A
87043190	- - - 기타	**5%**	C
87043210	- - - 화물자동차・티퍼(tippers)와 탱크(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87043220	- - - 덤프차[패킹(packing)・프레싱(pressing) 또는 완충 장비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5%**	A
87043290	- - - 기타	**5%**	A
87044100	-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5%**	A
87044200	- -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5%**	A
87044300	- -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5%**	A
87045100	-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5%**	A
87045200	- -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	**5%**	A
87046000	- 기타(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	A
87049000	- 기타	**5%**	B
87051000	- 기중기차(crane lorry)	**5%**	C
87052000	- 이동식 시추용 데릭(derrick)차	**5%**	C
87053000	- 소방차	**5%**	A
87054000	-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5%**	C
87059010	- - - 각종 기계공구가 장착된 예인 및 수리 차량과 이동공작차	**5%**	C

87059020	- - - 전기가선 · 가로등 등을 유지하기 위한 사다리나 승강대를 갖춘 차량	**5%**	C
87059030	- - - 도로 · 광장 · 비행장 등의 청소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차량	**5%**	C
87059040	- - - 모든 목적을 위한 분사 차량	**5%**	A
87059050	- - - 적재차량(즉, 상하방향으로 움직이는 리프팅 포크(lifting fork) 또는 하대를 갖추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차량의 엔진에 의해 구동하는 것)	**5%**	A
87059060	- - - 발전기가 장착된 차량	**5%**	A
87059070	- - - 방사선 촬영용 차량	**5%**	A
87059080	- - - 외과용과 내과용으로 설계된 차량	**5%**	A
87059091	- - - - 프로젝터가 부착된 조명차량	**5%**	A
87059092	- - - - 라디오 방송 · 전신 · 무선 송수신과 레이더 차량용으로 설계된 자동차	**5%**	A
87059093	- - - - 장비(반죽기, 오븐 등)가 완비된 제빵차와 주방차	**5%**	C
87059094	- - - - 탱크 및 양수기가 장착된 차량	**5%**	C
87059099	- - - - 기타	**5%**	C
87060000	엔진을 갖춘 섀시(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5%**	C
87071000	- 제8703호의 차량용	**5%**	A
87079010	- - - 제8701호의 트랙터용	**5%**	A
87079020	- - - 제8702호의 차량용	**5%**	A
87079031	- - - - 픽업용	**5%**	B
87079032	- - - - 소형 트럭용[디아나(Dyana) · 하프 로리(half lorry) 등]	**5%**	A
87079033	- - - - 덤프차용	**5%**	C
87079034	- - - - 화물자동차용	**5%**	A
87079035	- - - - 팁박스(tipbox)	**5%**	C
87079036	- - - - 식품 운반 자동차용 냉장 박스	**5%**	C
87079039	- - - - 기타	**5%**	A
87079090	- - - 기타	**5%**	C
87081000	- 완충기와 그 부분품	**5%**	C
87082100	- - 안전 벨트	**5%**	C
87082210	- - -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쉴드) · 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틀에 끼운 것으로 한정한다)	**5%**	A
87082220	- - -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쉴드) · 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틀에 끼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가열장치나 그 밖의 전기 · 전자장치를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87082910	- - - 짐칸[그리드(grid)나 바스켓(basket)]	**5%**	C
87082990	- - - 기타	**5%**	C
87083000	-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5%**	C
87084000	-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5%**	C
87085010	- -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5%**	C
87085090	- - - 비구동 차축과 부분품	**5%**	C
87087000	-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 · 부속품	**5%**	C
87088000	-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5%**	C
87089110	- - - 방열기	**5%**	C
87089120	- - - 부분품	**5%**	C
87089210	- - - 소음기와 배기관	**5%**	C
87089220	- - - 부분품	**5%**	C
87089300	- - 클러치와 그 부분품	**5%**	C
87089410	- - - 운전대 · 스티어링 칼럼(steering column) · 운전박스	**5%**	C
87089420	- - - 부분품	**5%**	C
87089500	- -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5%**	C
87089900	- - 기타	**5%**	A
87091100	- - 전기식의 것	**5%**	B
87091900	- - 기타	**5%**	B
87099000	- 부분품	**5%**	C
8710000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	**5%**	C
87111000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이하인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5%**	A
87112000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5%**	C
87113000	- 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500시시 이하인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5%**	B
87114000	- 실린더용량이 500시시 초과 800시시 이하인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5%**	A
87115000	- 실린더용량이 800시시를 초과하는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5%**	A
87116000	- 추진을 위해 전동기를 갖춘 것	**5%**	A
87119000	- 기타	**5%**	A
87120010	- - - 자전거(어린이용으로 고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C
87120020	- - - 신체장애인용 자전거	**5%**	A
87120090	- - - 기타	**5%**	C
87131000	-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0%**	A
87139000	- 기타	**0%**	A
87141000	- 모터사이클의 것[모페드(moped)의 것을 포함한다]	5%	C
87142000	-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것	**0%**	A
87149100	- - 프레임과 포크, 이들의 부분품	**5%**	C
87149200	- - 휠 림(wheel rim)과 스포크(spoke)	**5%**	C
87149300	- - 허브(hub)[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는 제외한다], 프리휠(free-wheel) 스프로켓 휠(sprocket-wheel)	**5%**	B
87149400	- - 브레이크[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를 포함한다], 그 부분품	**5%**	B
87149500	- - 안장	**5%**	A
87149600	- - 페달과 크랭크기어(crankgear), 이들의 부분품	**5%**	C
87149900	- - 기타	**5%**	C
87150010	- - - 유모차	**5%**	B
87150090	- - - 기타	**5%**	B

87161000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 또는 캠핑용으로 한정한다)	**5%**	C
87162000	- 농업용 자동적재식이나 자동양하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5%**	B
87163100	- - 탱커 트레일러(tanker trailer)와 탱커 세미트레일러(tanker semi-trailer)	**5%**	C
87163910	- - - 토목공사용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팁박스(tipbox)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C
87163920	- - - 식품과 부패하기 쉬운 물품의 수송용 냉장식 또는 가열식 박스를 갖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5%**	B
87163930	- -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가구운송용으로 설계된 것에 한정한다)	**5%**	C
87163940	- - - 가축 수송용의 일단식이나 이단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5%**	A
87163950	- - - 자동차 수송용의 일단식이나 이단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5%**	B
87163960	- - - -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수송용 트레일러와 세미 트레일러	**5%**	B
87163970	- - - 중량물(탱크・크레인・불도저・변압기 등) 수송용의 적재용 경사판을 갖춘 저상식(低床式) 트레일러	**5%**	B
87163990	- - - 기타	**5%**	C
87164010	- - - 여객 수송용으로 특별히 설계된것	**5%**	B
87164020	- - - 상품 전시용으로 설계된 것	**5%**	C
87164030	- - - 서점용으로 설계된 것	**5%**	A
87164090	- - - 기타	**5%**	B
87168011	- - - - 청소용과 건축용 수레	**5%**	B
87168012	- - - - 폐유 배출용 드럼(drum)이 장착된 수레	**5%**	A
87168013	- - - - 버클이 장착된 청소용(압착기와 와이퍼가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A
87168014	- - - - 카펫 운반용 수레와 바퀴가 장착된 선반	**5%**	A
87168015	- - - - 상점 쇼핑용 금속선으로 만든 수레	**5%**	C
87168016	- - - - 병원용 의료기기와 장치의 운반을 위한 수레	**5%**	B
87168017	- - - - 음식의 운반과 판매를 위해 설계된 수레(제9403호의 것은 제외한다)	**5%**	C
87168018	- - - - 단열박스가 장착된 아이스크림 행상용 소형 수레	**5%**	A
87168019	- - - - 기타	**5%**	C
87168090	- - - 기타	**5%**	C
87169010	- - - 제8716.80.11호・제8716.80.12호・제8716.80.13호의 수레의 부분품	**5%**	C
87169090	- - - 기타	**5%**	C
88010000	기구・비행선, 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	**5%**	A
88021100	- -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 이하인 것	**0%**	A
88021200	- -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A
88022000	-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0%**	A
88023000	-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 초과 15,0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0%**	A
88024000	-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0%**	A
88026000	-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서보비틀(suborbital) 발사체・우주선 발사체	**0%**	A
880400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rotochute),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5%**	C
88051000	- 항공기 발진장치와 그 부분품,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그 부분품	**5%**	A
88052100	- - 모의공중전장치(air combat simulator)와 그 부분품	**5%**	A
88052900	- - 기타	**0%**	A
88061000	- 승객 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	**5%**	A
88062110	- - - 카메라를 부착한 것	**5%**	A
88062190	- - - 기타	**5%**	A
88062210	- - - 카메라를 부착한 것	**5%**	A
88062290	- - - 기타	**5%**	A
88062310	- - - 카메라를 부착한 것	**5%**	A
88062390	- - - 기타	**5%**	A
88062410	- - - 카메라를 부착한 것	**5%**	A
88062490	- - - 기타	**5%**	A
88062910	- - - 카메라를 부착한 것	**5%**	A
88062990	- - - 기타	**5%**	A
88069110	- - - 카메라를 부착한 것	**5%**	A
88069190	- - - 기타	**5%**	A
88069210	- - - 카메라를 부착한 것	**5%**	A
88069290	- - - 기타	**5%**	A
88069310	- - - 카메라를 부착한 것	**5%**	A
88069390	- - - 기타	**5%**	A
88069410	- - - 카메라를 부착한 것	**5%**	A
88069490	- - - 기타	**5%**	A
88069910	- - - 카메라를 부착한 것	**5%**	A
88069990	- - - 기타	**5%**	A
88071000	- 프로펠러・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	**5%**	X
88072000	- 이착륙장치와 그 부분품	**5%**	A
88073000	- 비행기・헬리콥터・무인기의 그 밖의 부분품	**5%**	X
88079000	- 기타	**5%**	C
89011000	- 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각종 페리보트(ferry-boat)	**0%**	A
89012000	- 탱커(tanker)	**0%**	A
89013000	- 냉동선(소호 제890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0%**	A
89019000	- 그 밖의 화물선과 화객선	**0%**	A
89020000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0%**	A
89031100	- - 모터가 결합되었거나 결합되도록 설계된 것[짐을 싣지 않은 순중량(모터를 제외한다)이 10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B
89031200	- - 모터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것[짐을 싣지 않은 순중량이 10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B

89031900	- - 기타	**5%**	A
89032100	- - 길이가 7.5미터 이하인 것	**5%**	B
89032200	- - 길이가 7.5미터를 초과하고 24미터 이하인 것	**5%**	B
89032300	- - 길이가 24미터를 초과하는 것	**5%**	B
89033100	- - 길이가 7.5미터 이하인 것	**5%**	B
89033200	- - 길이가 7.5미터를 초과하고 24미터 이하인 것	**5%**	B
89033300	- - 길이가 24미터를 초과하는 것	**5%**	B
89039300	- - 길이가 7.5미터 이하인 것	**5%**	B
89039910	- - - 모터보트(선외기를 제외한 유리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	B
89039920	- - - 유리섬유 보트(고정되지 않은 외부엔진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B
89039930	- - - 워터 바이크(제트 스키)	**5%**	B
89039990	- - - 기타	**5%**	B
89040000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pusher craft)	**0%**	A
89051000	- 준설선	**0%**	A
89052000	- 시추대나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89059010	- - - 소방선	**0%**	A
89059020	- - - 조명선	**0%**	A
89059090	- - - 기타	**0%**	A
89061000	- 군함	**0%**	A
89069010	- - - 구명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함과 군함	**0%**	A
89069090	- - - 기타	**0%**	A
89071000	- 공기주입식 부교	**0%**	A
89079000	- 기타	**0%**	A
89080000	선박과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해체용으로 한정한다)	**0%**	A
90011000	- 광섬유・광섬유 다발과 광섬유 케이블	**5%**	A
90012000	-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5%**	A
90013000	- 콘택트렌즈	**5%**	C
90014000	- 유리로 만든 안경렌즈	**5%**	A
9001500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안경렌즈	**5%**	A
90019000	- 기타	**5%**	C
90021100	- -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확대기용・사진 축소기용	**5%**	C
90021900	- - 기타	**5%**	B
90022000	- 필터	**5%**	C
90029000	- 기타	**5%**	C
9003110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	A
90031900	-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5%**	B
90039000	- 부분품	**5%**	B
90041000	- 선글라스	**5%**	C
90049010	- - - 시력교정용 안경	**5%**	C
90049020	- - - 전문가용 보호용 고글	**5%**	B
90049090	- - - 기타	**5%**	C
90051000	- 쌍안경	**5%**	B
90058000	- 그 밖의 기기	**5%**	C
90059000	-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5%**	B
90063000	- 수중촬영용・공중측량용・장기(臟器)의 내과나 외과 검사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사진기와 법정비교용 사진기	**5%**	B
90064000	- 즉석인화 사진기	**5%**	C
90065300	- - 폭이 35밀리미터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5%**	B
90065900	- - 기타	**5%**	A
90066100	- -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5%**	B
90066900	- - 기타	**5%**	B
90069100	- - 카메라용	**5%**	A
90069900	- - 기타	**5%**	C
90071000	- 촬영기	**5%**	B
90072000	- 영사기	**5%**	A
90079100	- - 촬영기용	**5%**	B
90079200	- - 영사기용	**5%**	B
90085000	투영기・확대기와 축소기	**5%**	C
90089000	- 부분품과 부속품	**5%**	C
90101000	- 롤 모양인 사진용(영화용을 포함한다) 필름이나 감광지를 자동현상하는 기기, 현상된 필름을 사진용 감광지에 자동노출시키는 기기	**5%**	A
90105000	- 사진(영화용을 포함한다) 현상실(現像室)용의 그 밖의 기기와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5%**	B
90106000	- 영사용 스크린	**5%**	C
90109000	- 부분품과 부속품	**5%**	B
90111000	- 입체현미경	**0%**	A
90112000	- 그 밖의 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마이크로 영사용으로 한정한다)	**0%**	A
90118000	- 그 밖의 현미경	**5%**	B
90119000	- 부분품과 부속품	**0%**	A
90121000	-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0%**	A
90129000	- 부분품과 부속품	**0%**	A
90131000	- 무기용 망원조준기, 잠망경, 이 류나 제16부의 기기 부분품용 망원경	**5%**	C
90132010	- - - 휴대용 레이저 포인터(펜, 메달 등의 형태)	**5%**	B
90132090	- - - 기타	**5%**	B
90138010	- - - 확대 렌즈(포켓, 데스크 등)	**5%**	B
90138020	- - - 문, 오븐용 및 이와 유사한 것의 도어 아이	**5%**	A
90138030	- - - WTO 정보기술협정(ITA) 상품용 평판 디스플레이(엘시디・플라즈마・전자-발광・진공-형광과 그 밖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포함한다)	**0%**	A
90138090	- - - 기타	**5%**	C

90139010	- - - WTO 정보기술협정(ITA) 상품의 평면 모니터(엘시디 모니터・플라즈마・전자 발광・진공 형광과 그 밖의 모니터 기술을 포함한다)의 부분품	**0%**	A
90139090	- - - 기타	**5%**	A
90141000	-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	**5%**	B
90142000	- 항공용이나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	**5%**	C
90148000	- 그 밖의 항행용 기기	**5%**	C
90149000	- 부분품과 부속품	**5%**	C
90151000	- 거리측정기	**5%**	B
90152000	- 경위의(經緯儀)와 시거의(視距儀)	**5%**	A
90153000	- 수준기(水準器)	**5%**	A
90154000	- 사진측량기기	**5%**	C
90158000	- 그 밖의 기기	**5%**	A
90159000	- 부분품과 부속품	**5%**	A
90160000	감량(感量)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추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5%**	C
90171010	- - - 제도용구(제8471호의 입출력 장치인지 또는 제9017호의 제도기인지에 상관없다)	**0%**	A
90171090	- - - 기타	**5%**	A
90172010	- - - 제도용구(제8471호의 입출력 장치인지 또는 제9017호의 제도기인지에 상관없다)	**0%**	A
90172090	- - - 기타	**0%**	A
90173000	- 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callipers)와 게이지류	**5%**	C
90178010	- - - 학교용 자와 이와 유사한 것	**5%**	A
90178020	- - - 접이식 줄자 등	**5%**	B
90178090	- - - 기타	**5%**	B
90179010	- - - 도면과 형상제작장치의 부분품	**0%**	A
90179090	- - - 기타	**0%**	A
90181100	- - 심전계	**5%**	A
90181200	- - 초음파 영상진단기	**5%**	C
90181300	- - 자기공명 촬영기기	**5%**	A
90181400	- -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5%**	B
90181910	- - - 혈압과 동맥경화 측정 장치	**5%**	A
90181920	- - - 그 밖의 측정 장치(호흡・뇌・골반용 등)	**5%**	A
90181990	- - - 기타	**5%**	A
90182000	-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5%**	B
90183110	- - - 플라스터[소석고(燒石膏)] 도포용 주사기	**5%**	A
90183120	- - - 눈・귀・후두용 주사기	**5%**	A
90183130	- - - 자궁 및 부인과용 주사기	**5%**	A
90183140	- - - 일회용 피하 주사기	**5%**	A
90183190	- - - 기타	**5%**	A
90183200	- - 관 모양의 금속으로 만든 바늘과 봉합용 바늘	**5%**	A
90183910	- - - 트로카(trocar)	**5%**	A
90183920	- - - 수술용 칼과 메스・개구부를 확장하기 위한 도구・겨울과 반사경(눈・후두・귀 등의 검사용)・수술용 클립・가위・ 절단기・ 겸자(鉗子 : forceps)・집게・꼴・정・망치・해머・ 톱・제석자(scraper) 및 압설자(壓舌子: spatulae)	**5%**	B
90183930	- - - 정맥 카데터	**5%**	B
90183990	- - - 기타	**5%**	A
90184100	- - 치과용 드릴엔진(하나의 베이스 위에 그 밖의 치과기기를 부착하였는지 상관없다)	**5%**	A
90184910	- - - 분수가 있는 타구(唾具 : spittoon)	**5%**	A
90184920	- - - 치과용 충전기구	**5%**	A
90184930	- - - 치과용 기구가 포함된 치과의사용 의자(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	**5%**	B
90184990	- - - 기타	**5%**	B
90185010	- - - 진단 기기(검안경・안검혈류측정기 등)	**5%**	B
90185020	- - - 시력검사 기구 및 장비(시력 선명도・망막 등 검사용)	**5%**	A
90185090	- - - 기타	**5%**	B
90189010	- - - 귀치료용 기기(고막 마사지기, 이경 등)	**5%**	A
90189020	- - - 마취용 기기	**5%**	A
90189030	- - - 비강과 인후용 기기	**5%**	B
90189040	- - - 인공신장(투석)기기	**5%**	B
90189050	- - - 침술용 침[금・은・강(鋼)으로 만든 것]	**5%**	B
90189060	- - - 내시경	**5%**	B
90189070	- - - 수의과용 기기	**5%**	B
90189080	- - - 거즈・면・가위・집게 등으로 구성된 수술 세트	**5%**	A
90189090	- - - 기타	**5%**	A
90191000	-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5%**	B
90192000	-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5%**	A
90200000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5%**	A
90211010	- - - 제90류 주 제6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제조된 정형외과용 신발과 밑창 그리고 그 밖의 발의 교정용구 및 발 받침대[발용 스프링(spring)제 지지구(支持具 : support)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5%**	A
90211020	- - - 구개성형술용 기구(턱 뼈용)	**5%**	B
90211030	- - - 손발가락교정 장치	**5%**	A
90211040	- - - 머리 및 척추 정형외과용 기기	**5%**	B
90211050	- - - 척추측만증과 만곡 교정을 위한 탈장 벨트 및 기구・수술용 의료용 벨트(제6212호의 것은 제외한다)	**5%**	A
90211060	- - - 목발(제6602호의 지팡이를 제외한다)	**5%**	A
90211070	- - - 동물용 정형외과 기구	**5%**	A
90211090	- - - 기타	**5%**	A

90212100	- - 의치	**5%**	A
90212900	- - 기타	**5%**	A
90213100	- - 인공관절	**5%**	A
90213910	- - - 의안(義眼) 용품 (의안, 내안렌즈 등)	**5%**	A
90213920	- - - 인공의 팔・팔뚝・손・다리・발・코 및 심장 판막	**5%**	A
90213990	- - - 기타	**5%**	B
90214000	-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5%**	A
90215000	-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5%**	A
90219010	- - - 인공성대(성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것)	**5%**	B
90219020	- - - 시각장애인용 전자식 보조기	**5%**	A
90219090	- - - 기타	**5%**	B
90221200	- -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5%**	B
90221300	- -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5%**	C
90221400	- - 기타(내과용・외과용・수의과용으로 한정한다)	**5%**	C
90221910	- - - 수화물 검사용	**5%**	C
90221990	- - - 기타	**5%**	B
90222100	- -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5%**	A
90222900	- - 그 밖의 용도의 것	**5%**	A
90223000	- 엑스선관	**5%**	A
90229000	-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5%**	B
90230000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5%**	A
90241000	- 금속재료 시험기기	**5%**	B
90248000	- 그 밖의 기기	**5%**	C
90249000	- 부분품과 부속품	**5%**	C
90251100	- - 액체를 넣은 것(직시식으로 한정한다)	**5%**	B
90251900	- - 기타	**5%**	C
90258010	- - - 액체 비중계	**5%**	A
90258020	- - - 습도계	**5%**	A
90258090	- - - 기타	**5%**	B
90259000	- 부분품과 부속품	**5%**	A
90261000	- 액체의 유량이나 액면의 측정용・검사용	**0%**	A
90262000	- 압력의 측정용・검사용	**0%**	A
90268000	- 그 밖의 기기	**0%**	A
90269000	- 부분품과 부속품	**0%**	A
90271000	-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0%**	A
90272000	-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0%**	A
90273000	- 분광계・분광광도계・분광사진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90275000	- 그 밖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90278100	- - 질량분석기	**0%**	A
90278910	- - - 혈액검사・분비물 및 소변 등의 분석용으로 실험실에서 진단 목적으로 설계된 것	**0%**	A
90278990	- - - 기타	**0%**	A
90279010	- - - 제9027호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가스・매연분석기기는 제외한다)	**0%**	A
90279090	- - - 기타	**0%**	A
90281000	- 기체용 계기	**5%**	B
90282010	- - - 액체용 계기	**5%**	A
90282090	- - - 기타	**5%**	B
90283000	- 전기용 계기	**5%**	A
90289000	- 부분품과 부속품	**5%**	B
90291010	- - - 적산(積算)용 계기	**5%**	B
90291020	- - - 주행거리계	**5%**	C
90291090	- - - 기타	**5%**	C
90292000	-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5%**	B
90299000	- 부분품과 부속품	**5%**	B
90301000	-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5%**	C
90302000	-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와 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	**5%**	B
90303100	- -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5%**	C
90303200	- -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5%**	B
90303300	- - 기타(기록장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5%**	C
90303900	-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	C
90304000	-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예: 누화계(cross-talk meter)・게인측정계(gain measuring instrument)・만곡률계(distortion factor meter)・잡음전압계(psophometer)]	**0%**	A
90308200	- -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집적회로를 포함한다)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0%**	A
90308400	-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	B
90308900	- - 기타	**5%**	C
90309010	- - -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부분품과 부속품	**0%**	A
90309090	- - - 기타	**0%**	A
90311000	- 균형시험기	**5%**	B
90312000	- 테스트벤치(Test bench)	**5%**	B
90314100	- - 반도체 웨이퍼 또는 소자(집적회로를 포함한다) 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집적회로를 포함한다)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photomask)나 레티클(reticle) 검사용	**0%**	A
90314910	- - - 반도체 웨이퍼의 입자 표면 오염 측정용 광학식 기기	**0%**	A
90314990	- - - 기타	**0%**	A
90318010	- - - 자동차 엔진 점검용 및 조정용 기기	**5%**	A
90318020	- - - 일렉트론 빔 현미경(반도체 웨이퍼와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사용되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0%**	A
90318090	- - - 기타	**5%**	A

90319010	- - - 부분품과 부속품[반도체 웨이퍼 광학기기 또는 소자 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반도체 마스크, 포토마스크(photomask)나 레티클(reticle) 검사용으로 한정한다]	**0%**	A
90319020	- - - 스트로보스코우프(stroboscope)[반도체 웨이퍼 및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사용되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용 부분품과 부속품	**0%**	A
90319030	- - - 반도체 웨이퍼의 입자 표면 오염 측정용 광학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0%**	A
90319040	- - - 일렉트론 빔 현미경(반도체 웨이퍼 및 포토마스크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사용되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용 부분품과 부속품	**0%**	A
90319050	- - - 현미경(반도체 웨이퍼 및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사용되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용 부분품과 부속품	**0%**	A
90319090	- - - 기타	**0%**	A
90321000	-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	**5%**	A
90322000	- 매노우스타트(manostat)	**5%**	B
90328100	- - 액압식이나 공기식	**5%**	A
90328900	- - 기타	**5%**	A
90329000	- 부분품과 부속품	**5%**	A
90330000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C
91011100	-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5%**	B
91011900	- - 기타	**5%**	B
91012100	- - 자동권(自動捲)식	**5%**	B
91012900	- - 기타	**5%**	B
91019100	- - 전기구동식	**5%**	C
91019900	- - 기타	**5%**	A
91021100	-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5%**	A
91021200	-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5%**	C
91021900	- - 기타	**5%**	B
91022100	- - 자동권(自動捲)식	**5%**	A
91022900	- - 기타	**5%**	B
91029100	- - 전기구동식	**5%**	A
91029900	- - 기타	**5%**	B
91031000	- 전기구동식	**5%**	A
91039000	- 기타	**5%**	A
91040000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선박용 계기반 클록(clock)과 이와 유사한 클록(clock)	**5%**	B
91051100	- - 전기구동식	**5%**	A
91051900	- - 기타	**5%**	A
91052100	- - 전기구동식	**5%**	C
91052900	- - 기타	**5%**	B
91059100	- - 전기구동식	**5%**	A
91059900	- - 기타	**5%**	B
91061000	-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와 타임레코더(time-recorder)	**5%**	B
91069000	- 기타	**5%**	C
91070000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	B
91081100	-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이나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5%**	B
91081200	-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5%**	A
91081900	- - 기타	**5%**	A
91082000	- 자동권(自動捲)식	**5%**	A
91089000	- 기타	**5%**	A
91091000	- 전기구동식	**5%**	A
91099000	- 기타	**5%**	A
91101100	- - 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무브먼트세트)	**5%**	A
91101200	- - 불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5%**	A
91101900	- - 러프 무브먼트(rough movement)	**5%**	A
91109000	- 기타	**5%**	A
91111000	-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5%**	A
9111200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케이스(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5%**	A
91118000	- 그 밖의 케이스	**5%**	A
91119000	- 부분품	**5%**	B
91122000	- 케이스	**5%**	A
91129000	- 부분품	**5%**	A
91131000	-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5%**	B
9113200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5%**	B
91139010	- - - 인조 플라스틱 재료로 만든 것	**5%**	C
91139020	- - - 천연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나 재생가죽으로 만든것	**5%**	B
91139030	- - - 직물로 만든 것	**5%**	C
91139040	- - - 진주・귀금속 또는 반귀석・천연가죽 ・콤퍼지션 레더 또는 재생가죽으로 구성되거나 결합된 것	**5%**	A
91139090	- - - 기타	**5%**	C
91143000	- 문자판	**5%**	B
91144000	- 지판과 브리지(bridge)	**5%**	A
91149000	- 기타	**5%**	B
92011000	- 업라이트(upright) 피아노	**5%**	C
92012000	- 그랜드 피아노	**5%**	B
92019000	- 기타	**5%**	C
92021000	- 활을 사용하는 것	**5%**	B
92029010	- - - 플루트	**5%**	A

92029090	- - - 기타	**5%**	B
92051000	- 금관악기	**5%**	A
92059000	- 기타	**5%**	A
92060010	- - - 북	**5%**	B
92060020	- - - 심벌	**5%**	A
92060030	- - - 트라이앵글(triangle)	**5%**	A
92060040	- - - 실로폰	**5%**	A
92060090	- - - 기타	**5%**	B
92071000	- 건반악기(아코디언은 제외한다)	**5%**	A
92079000	- 기타	**5%**	C
92081000	- 뮤지컬박스	**5%**	A
92089010	- - - 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	**5%**	A
92089020	- - - 뮤지컬소(musical saw)	**5%**	A
92089030	- - - 데코이 콜(decoy call)	**5%**	A
92089040	- - - 지휘와 기동훈련용으로 입으로 부는 호각	**5%**	A
92089090	- - - 기타	**5%**	A
92093000	- 악기용 현	**5%**	A
92099100	- -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5%**	B
92099200	- - 제9202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5%**	B
92099400	- - 제9207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5%**	B
92099900	- - 기타	**5%**	B
93011000	- 포병 무기(예: 평사포・곡사포・박격포)	**5%**	A
93012000	- 로켓 발사기, 화염방사기, 수류탄 발사기, 어뢰관 및 유사한 발사기	**5%**	B
93019000	- 기타	**5%**	A
93020000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제9303호・제9304호의 것은 제외한다)	**5%**	A
93031000	- 총구장전 화기	**5%**	A
93032000	- 그 밖의 스포츠용・수렵용・표적사격용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rifle)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5%**	A
93033000	- 그 밖의 스포츠용・수렵용・표적사격용 라이플(rifle)	**5%**	B
93039000	- 기타	**5%**	A
93040010	- - - 수중총	**5%**	A
93040090	- - - 기타	**5%**	A
93051000	- 리볼버(revolver)나 피스톨(pistol)의 것	**5%**	A
93052000	- 산탄총 또는 라이플(rifle)의 것(제930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5%**	A
93059100	- - 제9301호의 군용 무기의 것	**5%**	A
93059900	- - 기타	**5%**	A
93062110	- - - 수렵용이나 스포츠 사격용	**5%**	A
93062190	- - - 기타	**5%**	A
93062910	- - - 수렵용이나 스포츠 사격용 탄약의 부분품과 부속품	**5%**	A
93062990	- - - 기타	**5%**	A
93063010	- - - 탄약, 그 부분품과 부속품(수렵용이나 스포츠 사격용으로 한정한다)	**5%**	A
93063090	- - - 기타	**5%**	A
93069000	- 기타	**5%**	A
93070010	- - - 군용	**5%**	A
93070090	- - - 기타	**5%**	A
94011000	- 항공기용 의자	**5%**	C
94012000	- 차량용 의자	**5%**	C
94013100	- - 목재로 만든 것	**5%**	C
94013900	- - 기타	**5%**	B
94014100	- - 목재로 만든 것	**5%**	A
94014900	- - 기타	**5%**	A
94015200	- - 대나무로 만든 것	**5%**	A
94015300	- - 등나무로 만든 것	**5%**	A
94015900	- - 기타	**5%**	A
94016100	- -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것	**5%**	C
94016900	- - 기타	**5%**	C
94017110	- - - 다른 의자 뒤쪽에 걸 수 있게 설계된 어린이 의자	**5%**	C
94017120	- - - 작은 바퀴가 달린 유아용 보행기(보행 교습용)	**5%**	A
94017190	- - - 기타	**5%**	C
94017910	- - - 다른 의자 뒤쪽에 걸 수 있게 설계된 어린이 의자	**5%**	C
94017920	- - - 작은 바퀴가 달린 유아용 보행기(보행 교습용)	**5%**	A
94017990	- - - 기타	**5%**	C
94018011	- - - - 다른 의자 뒤쪽에 걸 수 있게 설계된 어린이 의자	**5%**	C
94018012	- - - - 작은 바퀴가 달린 유아용 보행기(보행 교습용)	**5%**	C
94018019	- - - - 기타	**5%**	C
94018020	- - - 석면과 도자기의 혼합물이나 돌로 만든 의자	**5%**	A
94018090	- - - 기타	**5%**	C
94019100	- - 목재로 만든 것	**5%**	C
94019900	- - 기타	**5%**	C
94021010	- - - 치과용 의자와 그 부분품	**5%**	B
94021020	- - - 이발용 의자와 그 부분품	**5%**	B
94021090	- - - 기타	**5%**	B
94029010	- - - 내과용・외과용 가구와 부분품	**5%**	C
94029090	- - - 기타	**5%**	C
94031010	- - - 책상	**5%**	C
94031020	- - - 바퀴달린 테이블	**5%**	C
94031030	- - - 파일 보관용 전기 캐비닛	**5%**	C
94031090	- - - 기타	**5%**	C
94032010	- - - 장롱	**5%**	C
94032020	- - - 바닥에 장착되는 의류거치대	**5%**	C
94032030	- - - 실험실용 또는 현미경 시험용 테이블(가스나 물 노즐 등이 장착된것)	**5%**	B

94032040	- - - 바닥에 장착되는 휴대용 커튼	**5%**	B
94032050	- - - 알루미늄으로 만든 주방용 가구	**5%**	C
94032090	- - - 기타	**5%**	C
94033010	- - - 책상	**5%**	C
94033020	- - - 바퀴달린 테이블	**5%**	C
94033030	- - - 파일 보관용 전기 캐비닛	**5%**	A
94033090	- - - 기타	**5%**	C
94034010	- - - 식탁용품용 찬장	**5%**	C
94034020	- - - 식탁과 의자 세트(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94034090	- - - 기타	**5%**	C
94035010	- - - 침실 세트(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5%**	C
94035020	- - - 장롱	**5%**	C
94035090	- - - 기타	**5%**	C
94036010	- - - 실험실용 또는 현미경 시험용 테이블(가스나 물 노즐 등이 장착된 것)	**5%**	C
94036020	- - - 바닥에 장착되는 의류거치대	**5%**	C
94036030	- - - 벽장(구급상자용)	**5%**	B
94036040	- - - 세면대의 거치대로 사용되는 캐비닛	**5%**	C
94036090	- - - 기타	**5%**	A
9403700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	**5%**	C
94038200	- - 대나무로 만든 것	**5%**	A
94038300	- - 등나무로 만든 것	**5%**	B
94038900	- - 기타	**5%**	C
94039100	- - 목재로 만든 것	**5%**	C
94039900	- - 기타	**5%**	C
94041000	-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5%**	C
94042110	- - - 스프링이 있는 매트리스	**5%**	C
94042190	- - - 기타	**5%**	C
94042910	- - - 스프링이 있는 매트리스	**5%**	C
94042990	- - - 기타	**5%**	C
94043000	- 침낭(sleeping bag)	**5%**	C
94044000	- 이불・침대보・솜털이불・깃털이불[컴포터(comforter)]	**5%**	C
94049010	- - - 퀼럿스(Quilets)	**5%**	C
94049020	- - - 베개	**5%**	C
94049030	- - - 쿠션・푸프(pouff) 좌석	**5%**	C
94049040	- - - 누비이불, 침대 시트, 베갯잇으로 구성된 세트(단일 포장한 것)	**5%**	C
94049090	- - - 기타	**5%**	C
94051100	-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5%**	C
94051900	- - 기타	**5%**	C
94052100	-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5%**	C
94052900	- - 기타	**5%**	A
94053100	-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5%**	C
94053900	- - 기타	**5%**	A
94054100	- - 광전(光電)식의 것[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5%**	C
94054200	- - 기타[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5%**	C
94054910	- - - 외부 조명용 램프(가로등・현관과 대문 램프・공원 램프 등)	**5%**	C
94054920	- - - 특수 램프(기계・사진 스튜디오와 쇼룸 창문용 램프)	**5%**	C
94054990	- - - 기타	**5%**	C
94055000	- 비전기식 조명기구	**5%**	C
94056100	-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5%**	C
94056900	- - 기타	**5%**	C
94059100	- - 유리로 만든 것	**5%**	A
9405920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	B
94059900	- - 기타	**5%**	C
94061010	- - - 재배용 온실	**5%**	A
94061020	- - - 동물 생산을 위한 헛간과 우리	**5%**	A
94061030	- - - 창고	**5%**	A
94061040	- - - 주거용이나 학교용 건물	**5%**	C
94061090	- - - 기타	**5%**	C
94062000	- 모듈화된 빌딩 유닛[강(鋼)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	C
94069011	- - - - 재배용 온실	**5%**	C
94069012	- - - - 동물 생산을 위한 헛간과 우리	**5%**	A
94069013	- - - - 창고	**5%**	C
94069014	- - - - 주거용이나 학교용 건물	**5%**	B
94069019	- - - - 기타	**5%**	C
94069021	- - - - 재배용 온실	**5%**	B
94069022	- - - - 동물 생산을 위한 헛간과 우리	**5%**	A
94069023	- - - - 창고	**5%**	B
94069024	- - - - 주거용이나 학교용 건물	**5%**	B
94069029	- - - - 기타	**5%**	A
94069031	- - - - 재배용 온실	**5%**	A
94069032	- - - - 동물 생산을 위한 헛간과 우리	**5%**	A
94069033	- - - - 창고	**5%**	B
94069034	- - - - 주거용이나 학교용 건물	**5%**	B
94069039	- - - - 기타	**5%**	B
94069041	- - - - 재배용 온실	**5%**	A
94069042	- - - - 동물 생산을 위한 헛간과 우리	**5%**	A
94069043	- - - - 창고	**5%**	B
94069044	- - - - 주거용이나 학교용 건물	**5%**	C
94069049	- - - - 기타	**5%**	B

94069090	- -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5%**	C
95030010	- - - 자전거	**5%**	B
95030020	- - - 인형	**5%**	B
95030030	- - - 풍선	**5%**	B
95030040	- - - 원격 조종이 가능한 소형 항공기 모형	**5%**	A
95030090	- - - 기타	**5%**	B
95042010	- - - 각종 당구용구	**5%**	A
95042090	- - - 부속품	**5%**	B
95043000	- 그 밖의 게임용구(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 또는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자동식 볼링장용구는 제외한다)	**5%**	B
95044000	- 오락용 카드	**5%**	A
95045000	-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소호 제9504.30호의 것들은 제외한다)	**5%**	A
95049000	- 기타	**5%**	C
95051000	-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5%**	A
95059000	- 기타	**5%**	B
95061100	- - 스키	**5%**	C
95061200	- - 스키파스닝(ski-fastening)(스키바인딩)	**5%**	A
95061900	- - 기타	**5%**	A
95062100	- - 세일보드(sailboard)	**5%**	A
95062900	- - 기타	**5%**	A
95063100	- - 골프채(완제품으로 한정한다)	**5%**	B
95063200	- - 골프공	**5%**	A
95063900	- - 기타	**5%**	B
95064000	- 탁구용구	**5%**	B
95065100	- - 론테니스(lawn-tennis)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5%**	A
95065900	- - 기타	**5%**	A
95066100	- - 론테니스(lawn-tennis) 공	**5%**	A
95066200	- - 공기주입식의 것	**5%**	A
95066900	- - 기타	**5%**	A
95067000	- 아이스 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5%**	A
95069100	- -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5%**	C
95069910	- - - 스포츠용 활・화살・결검	**5%**	C
95069990	- - - 기타	**5%**	C
95071000	- 낚싯대	**5%**	B
95072000	- 낚싯바늘(낚싯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5%**	A
95073000	- 낚시 릴	**5%**	B
95079000	- 기타	**5%**	A
95081000	-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5%**	A
95082100	- - 롤러코스터	**5%**	A
95082200	- - 회전놀이기구・그네・회전목마	**5%**	B
95082300	- - 범퍼카(Dodge'em car)	**5%**	A
95082400	- - 동작 시뮬레이션 기기 및 무빙 씨어터(moving theatre)	**5%**	A
95082500	- - 물놀이용 탈것	**5%**	A
95082600	- - 워터파크 놀이기구	**5%**	A
95082900	- - 기타	**5%**	C
95083000	- 유원지용 오락물	**5%**	B
95084000	- 순회극장용품	**5%**	A
96011000	- 가공한 아이보리(ivory)와 그 제품	**5%**	B
96019000	- 기타	**5%**	A
96020010	- - - 인조벌집	**5%**	A
96020020	- - - 왁스진주	**5%**	A
96020030	- - - 밀랍과 굳지 않은 젤라틴을 기초로 한 제제로 제조된 물품(내과용, 외과용 또는 약학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	**5%**	B
96020040	- - - 파라핀으로 만든 제품(플루오르화수소산용 용기와 같은 것)	**5%**	A
96020050	- - - 스테아린으로 만든 제품	**5%**	A
96020090	- - - 기타	**5%**	B
96031000	-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으로 한정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5%**	B
96032100	- - 칫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5%**	C
96032910	- - - 면도 브러쉬	**5%**	C
96032920	- - - 헤어 브러쉬	**5%**	C
96032990	- - - 기타	**5%**	C
96033000	- 회화용 붓・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붓	**5%**	C
96034000	- 페인트용・디스템퍼(distemper)용・바니시(varnish)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브러시(소호 제9603.30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5%**	C
96035000	- 그 밖의 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C
96039010	- - - 고무나 플라스틱을 성형하여 일체로 만든 욕실 청소용 및 가정용 브러쉬	**5%**	C
96039020	- - - 옷과 신발의 청소용 브러쉬	**5%**	C
96039030	- - - 도로・바닥 청소용 브러시	**5%**	A
96039040	- - - 금속 와이어의 핸드 브러쉬	**5%**	B
96039090	- - - 기타	**5%**	C
96040000	수동식 체와 어레미	**5%**	A
96050000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5%**	C
96061000	-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스냅파스너(snap-fastener)・프레스스터드(press-stud)와 이들의 부분품	**5%**	A
9606210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5%**	B

96062200	-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5%**	B
96062900	- - 기타	**5%**	A
96063000	- 단추의 몰드(mould)와 단추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5%**	A
96071100	- - 체인스쿠프(chain scoop)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5%**	B
96071900	- - 기타	**5%**	B
96072000	- 부분품	**5%**	A
96081000	- 볼펜	**5%**	C
96082000	-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5%**	C
96083010	- - - 사라지거나 지워지는 잉크 펜	**5%**	A
96083090	- - - 그 밖의 액체 잉크 펜	**5%**	A
96084000	-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5%**	C
96085000	-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5%**	A
96086000	- 볼펜용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B
96089100	- - 펜촉과 닙포인트(nib point)	**5%**	A
96089900	- - 기타	**5%**	B
96091000	- 연필과 크레용(집 속에 심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5%**	B
96092000	- 연필심(검은색이나 색깔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C
96099010	- - - 석필(slate pencil)	**5%**	B
96099020	- - - 도화용 목탄	**5%**	A
96099030	- - - 크레용	**5%**	B
96099040	- - - 필기용・도화용 초크	**5%**	B
96099050	- - - 재단사용 초크	**5%**	A
96099090	- - - 기타	**5%**	B
96100010	- - - 석판과 보드(필기용이나 도화용 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틀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5%**	A
96100090	- - - 기타	**5%**	B
96110000	날짜 도장・봉합용 스탬프・넘버링스탬프(numbering stamp)와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label)에 날인하거나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으로 한정한다], 수동식 조판용 스틱과 조판용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 인쇄용 세트	**5%**	C
96121000	- 리본	**5%**	C
96122000	- 잉크 패드	**5%**	B
96131000	-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5%**	C
96132000	-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B
96138000	- 그 밖의 라이터	**5%**	B
96139000	- 부분품	**5%**	A
96140010	- - - 흡연용 파이프[파이프 볼(pipe bowl)을 포함한다]	**5%**	C
96140020	- - - 워터파이프[시샤(shisha)]와 그 부분품	**5%**	C
96140090	- - - 기타	**5%**	C
96151100	- -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	C
96151900	- - 기타	**5%**	C
96159000	- 기타	**5%**	C
96161000	-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5%**	B
96162000	- 화장용 분첩과 패드	**5%**	C
96170010	- - - 차나 커피용의 진공플라스크	**5%**	A
96170090	- - - 기타	**5%**	B
96180000	마네킹 인형과 그 밖의 모델형 인형, 자동인형과 그 밖의 쇼윈도 장식용인 움직이는 전시용품	**5%**	B
96190010	- - - 유아용 냅킨	**5%**	C
96190020	- - - 여성용 패드	**5%**	C
96190030	- - - 환자와 장애인을 위한 냅킨	**5%**	C
96190040	- - - 환자의 분비물 흡수를 위한 얇은 종이 패드	**5%**	C
96190050	- - - 소호 제4818.40.10호부터 제4818.40.90호까지와 제4810.50.00호의 하나 이상의 물품으로 구성된 배달용 세트	**5%**	A
96190090	- - - 기타	**5%**	C
96200010	- - 삼각대	**5%**	A
96200090	- - - 기타	**5%**	B
97012100	- - 회화・데생・파스텔	**5%**	B
97012200	- - 모자이크	**5%**	A
97012900	- - 기타	**5%**	A
97019100	- - 회화・데생・파스텔	**5%**	B
97019200	- - 모자이크	**5%**	A
97019900	- - 기타	**5%**	A
97021000	-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	**5%**	A
97029000	- 기타	**5%**	A
97031000	-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	**5%**	A
97039000	- 기타	**5%**	A
97040000	우표・수입인지・우편요금 별납증서・초일(初日)봉투・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이미 사용한 것이나 제4907호의 것은 제외한 사용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5%**	A
97051000	- 수집품과 표본(고고학・민족학・사학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97052100	- - 사람 표본과 그 일부분	**5%**	A
97052200	- - 멸종하였거나 멸종위기에 있는 종의 것이나 그 일부분	**5%**	A
97052910	- - - 고생물학	**5%**	A
97052990	- - - 기타	**5%**	A
97053100	- -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	**5%**	A
97053900	- - 기타	**5%**	A
97061000	- 제작 후 250년을 초과한 것	**5%**	A
97069010	- - - 골동품 가구와 그 부분품	**5%**	A

97069020	- - - 골동품 카페트	**5%**	A
97069030	- - - 고미술품과 서예품	**5%**	A
97069090	- - - 기타	**5%**	A
98010000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 또는 거주를 위해 처음 입국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반입한 사유물 및 중고 가전제품	**0%**	A
98020010	- - - 대사관과 영사관용	**0%**	A
98020020	- - - 국제기구용	**0%**	A

제3장
원산지 규정

제3.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양식이란 특히 정기적인 방류, 급식 또는 천적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이 생산 증대를 위한 사육 또는 성장 과정에 개입하여,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 및 수생식물을 포함한 수생생물을 알, 치어, 작은 물고기 및 유생동물과 같은 종자로부터 기르는 것을 말한다.

세번변경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2단위, 4단위 또는 6단위 수준에서의 변경을 말한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또는 관세청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그리고

나.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경제부 또는 때때로 통보되는 그 밖의 기관

탁송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생산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생산품을 말한다.

관세가격이란 관세평가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이란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

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지지를 말한다. 이러한 기준은 세부 기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상품이란 재료와 생산품을 포함한 모든 교역 물품을 말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관한 국제협약의 부속서에 규정된 그 일반규칙과 법적 주석을 포함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를 말한다.

제조란 조립 또는 특정 공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이나 가공을 말한다.

재료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료, 원재료, 구성품 또는 부품을 말한다.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란 이 장에 따른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원산지 상품 또는 **원산지 재료**란 이 장에 따른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생산품이란 그 생산품이 추후 다른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기 위한 것이더라도 재배, 사육, 채굴, 수확, 어로, 양식, 덫사냥, 수렵, 추출 또는 제조에 의하여 획득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생산이란 재배, 사육, 채굴, 수확, 어로, 양식, 덫사냥, 수렵, 제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상품의 획득 방법을 말한다.

제1절
원산지 결정

제3.2조

원산지 상품

1. 이 협정의 이행 목적상, 다음의 경우 상품은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상품이 제3.3조에 따라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경우

나. 상품이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지 않은 경우. 다만, 그 상품이 제3.4조에 따라 당사국의 영역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다. 상품이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2. 제1항에 규정된 각각의 경우, 상품은 이 장의 모든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다.

제3.3조
완전하게 획득된 상품

제3.2조제1항가호의 목적상, 다음 상품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 수집 또는 수확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나.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 있는 동물

다.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육된 살아 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생산품

라. 그 당사국의 토양, 하층토,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추출되거나 채취된 광물 생산품 또는 천연 자원

마.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수렵, 덫사냥, 수집, 포획, 어로 또는 양식에 의하여 획득된 생산품

바. 당사국에 등록, 등기, 기재 또는 인가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양 당사국의 영해 밖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수산물

사. 당사국에 등록, 등기, 기재 또는 인가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박에서 바호에 언급된 생산품만으로 만들어진 생산품

아. 양 당사국의 해저, 해상 또는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하층토에서 잡히거나 추출된 어획물 및 그 밖의 수산물 외의 생산품. 다만,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은 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처분,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차.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사용, 소비 또는 제조 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 또는 부스러기. 다만, 그러한 폐기물 또는 부스러기는 처분,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카. 모든 생산단계에서, 가호부터 차호까지에 언급된 생산품 또는 그 파생품만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거나 획득된 상품

제3.4조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1. 제3.2조제1항나호의 목적상, 상품이 다음을 충족하는 경우 그 상품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것으로 여겨지고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이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

료에 4단위 수준에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또는

나. 인정가치포함비율(QVC)이 본선인도가격의 4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 목록에 포함된 분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그와 관련하여 목록에 기술된 특정 규정을 충족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인정가치포함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text{인정가치포함비율} = \frac{(\text{본선인도가격 또는 공장도가격})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text{본선인도가격 또는 공장도가격}} \times 100$$

공장도가격이 사용된 경우, 인정가치포함비율 요건은 본선인도가격에 기초하여 계산된 인정가치포함비율 요건보다 5퍼센트 포인트 더 낮다.

이 경우,

인정가치포함비율(QVC)은 백분율로 표시된 상품의 인정가치포함비율이다.

본선인도가격(FOB Price)은 운송 수단과 관계없이,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드는 운송 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을 말한다.

공장도가격(Ex-Works Price)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당사국에서의 제조자 공장에서 인도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제조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을 말한다. 다만, 그 가격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고, 그 획득된 제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거나 환급될 수 있는 모든 내국세를 공제해야 한다. 그리고

비원산지재료가치(VNM)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며, 다음과 같다.

가. 상품의 생산자가 소재한 당사국 영역의 수입항으로 재료를 운송하는 데 발생한 운송비 및 보험료를 포함하는,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 시 관세가격, 또는 이를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수출 당사국에서 그 재료에 대하여 지불된 최초의 확인 가능한 가격

나. 상품의 생산자가 자신이 소재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획득한 경우, 그러한 재료의 가치는 공급자의 창고에서 생산자의 위치로 재료를 운송하는 데 발생하는 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어떠한 비용도 포함하지 않는다. 또는

다. 자가생산된 재료의 경우 또는 상품의 생산자와 재료의 판매자 간 관계가 그 재료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일반 경비를 포함하여 그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 추가적으로,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부가되는 이윤에 상당하는 이윤액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3.5조
중간재

원산지 상품이 다른 상품의 후속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후속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목적상 그 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않는다.

제3.6조
누적

1.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의 가공 또는 생산에 완성품의 재료로 사용된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은 그 완성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재료로 간주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서 제3.8조에 기재된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넘어선 가공이 일어나지 않은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은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지위를 유지한다.

3.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상, 그 밖의 형태의 누적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를 검토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제3.7조
허용치

1.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상품은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 또는 가치가 그 상품의 중량 또는 공장도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이 장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한다.

4. 제1항에 언급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모든 적용 가능한 인정가치포함비율 요건을 위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된다.

제3.8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1. 제3.4조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의 공정이 당사국 영역에서 그 자체로만 또는 결합되어 수행된 경우, 상품은 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가. 동물의 도살

나. 건조, 냉동, 환기, 냉장 및 이와 유사한 공정과 같이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생산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정

다. 감별, 세탁, 절단, 쪼개기, 구부리기, 감기 또는 풀기, 연마, 단순 분쇄 또는 얇게 자르기

라.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를 포함한 세척

마.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바. 시험 또는 측정

사.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로의 배치, 카드 또는 판 위에 고정, 그리고 포장 공정

아.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품의 단순한 혼합

자. 완전한 상품을 구성하는 생산품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생산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차. 단순한 탈피, 씨 제거 또는 탈각

카. 당류 착색 또는 각설탕 제조 공정

타.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파. 포장의 변경, 포장의 해체 또는 재포장 공정, 그리고 탁송물의 해체 및 조립

하.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거.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너.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서 물 또는 다른 물질로 단순 희석, 또는

더. 가호부터 너호까지에 명시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2. 위 제1항의 목적상, “단순한”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것이다.

가. “단순한”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또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나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나. “단순한 혼합”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또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나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않는다.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은 이 정의의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1)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2)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3)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제3.9조
간접재료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생산에 사용된 다음의 재료는 그러한 재료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원산지 재료로 취급된다.

가. 에너지 및 연료

나. 설비 및 장비

다. 기계 및 공구, 또는

라.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고, 그 상품의 최종 구성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도록 의도되지 않은 그 밖의 재료 또는 상품

제3.10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1. 상품의 표준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그리고 사용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그 상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는 그 상품의 일부로 간주되고, 원산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가. 그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그리고 사용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가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고,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그리고 사용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의 수량과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정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인 상품의 경우,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그리고 사용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의 가치는 그 상품의 인정가치포함비율 산정 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제3.11조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1. 각 당사국은 상품의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해석을 위한 통칙 5에 따라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2. 상품이 인정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그러한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치는 그 상품의 인정가치포함비율 산정 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제3.12조
자격 단위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위한 자격 단위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품목분류체계를 사용하여 분류를 결정하는 경우 기본 단위로 여겨지는 특정 생산품이다. 이에 따라,

가. 물품의 집단 또는 집합으로 구성된 생산품이 단일의 호로 분류되는 경우, 그 전체가 자격 단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나. 탁송물이 동일한 호에 분류된 여러 개의 동일한 생산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각 생산품이 개별적으로 고려된다.

제3.13조
운송 및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각 당사국은 운송 및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제3.14조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

1. 각 당사국은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각 상품 또는 재료의 물리적 분리를 통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거나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 의하여 달리 인정되는 평균법, 후입선출법 또는 선입선출법과 같은 재고관리기법의 사용을 통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특정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선택된 재고관리기법이 그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당사국의 회계연도 동안 그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되도록 규정한다.

제3.15조
상품의 세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통칙 3에 정의된 세트는 모든 구성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세트가 원산지 및 비원산지 생산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비원산지 생산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공장도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여, 그 세트는 전체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제2절
영역 및 통과

제3.16조
영역 원칙

1. 제3.2조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관련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2. 다음 사항이 관세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될 수 없다면, 당사국의 영역에서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원산지 상품이 수출 당사국으로 재반입되는 경우, 그 상품은 비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져야 한다.

가. 재반입되는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그리고

나. 재반입되는 상품이 그 비당사국에 있는 동안이나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았을 것

3. 제3.2조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의 획득은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되고 그 후 그 당사국에 재수입되는 재료에 대해서 그 당사국 밖에서 이루어진 작업 또는 가공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가. 그 재료가 수출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수출되기 전에 제3.8조에 언급된 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어야 한다. 그리고

나. 다음 사항이 관세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1) 재수입되는 상품이 수출된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으로 획득되었을 것, 그리고

2) 이 조를 적용함으로써 당사국 밖에서 획득된 총 부가가치가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최종 생산품의 공장도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제3항의 목적상, 제1절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수출 당사국 밖에서 이루어진 작업 또는 가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최종 생산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데 인정가치포함비율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획득된 총 부가가치는 최종 생산품에 대하여 기재된 인정가치포함비율 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제3항 및 제4항은 제3.4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생산품 또는 제3.7조의 일반 허용치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충분히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생산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이 조와 관련된 사실 정보는 부속서 3-나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될 것이다.

7. 제3항나호2목을 적용하는 목적상, “총 부가가치”는 수출 당사국 밖에서 결합된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여, 수출 당사국 밖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8. 이 조의 적용대상이 되고 수출 당사국 밖에서 이루어진 모든 작업 또는 가공은 세계관세기구의 지침에 따른 역내 및 역외 가공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9.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은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이 조에 따른 특정 상품의 처리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고, 그 논의의 개시부터 3년 내에 그러한 논의를 마친다.

제3.17조
통과 및 환적

1. 각 당사국은 원산지 상품이 비당사국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는 경우, 그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원산지 상품이 하나 이상의 중간 경유 비당사국을 통하여 통과되거나 일시적으로 창고보관되는 경우, 다음을 조건으로 그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가. 그 상품이 통과 또는 보관되는 비당사국들의 영역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있을 것, 그리고

   나.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수입 당사국의 특정 국내 요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라벨의 추가 또는 부착, 통과 또는 보관되는 비당사국들에서 세관의 감독하에 수행되는 화물의 분리,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공정 외에 그 비당사국에서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아야 한다.

3. 수입자는 요청에 따라, 상품이 통과 또는 보관되는 국가들에서 세관의 감독하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적절한 증거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공한다.

제3.18조
자유지역

1. 양 당사국은 운송 도중 양국의 영역에 위치한 자유지역을 이용하는, 원산지 증명하에 거래되는 원산지 상품이 다른 상품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통상적인 공정 외의 작업을 거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제1항에 포함된 규정에 대한 예외로,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생산품이 원산지 증명하에 자유지역으로 반입되어 처리 또는 가공을 거치는 때, 그 처리 또는 가공이 이 장의 규정에 합치되는 경우 다른 원산지 증명이 작성될 수 있다.

3. 한쪽 당사국 내에 위치한 자유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상품은, 그 처리 또는 가공이 이 장의 규정에 합치되고 원산지 증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에 수출될 때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제3절
원산지 증명

제3.19조
원산지 증명

1.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증명에 근거하여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2. 다음은 원산지 증명으로 여겨진다.

가. 제3.20조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서면 또는 전자 형태의 원산지 증명서

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고 제3.21조에 따라 상호 개발된 전자 시스템에 의하여 교환되는 전자 원산지 증명서, 또는

다. 제3.22조에 따라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

3. 원산지 증명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하나 이상 상품의 단일 선적에 적용될 수 있다.

4. 각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이 영어로 작성되고 발급일 또는 작성일부터 1년 동안 유효하다고 규정한다.

제3.20조
원산지 증명서

1.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국내 규정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1]에 의하여 발급된다.

2. 원산지 증명서는 부속서 3-나에 언급된 서식으로 작성된다.

3.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상품의 생산자나 수출자,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관련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장의 그 밖의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제출하도록 준비한다.

4.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 전이나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5근무일 내에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다. 원산지 증명서가 비자발적인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로 인하여 선적 전이나 선적 시, 또는 선적일부터 5근무일 내에 발급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소급하여 발급될 수 있으나 그 유효기간은 선적일부터 1년을 넘지 않는다. 이 경우 부속서 3-나에 기술된 적절한 란에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5. 이 조의 규정은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고, 이 협정의 발효일에 통과 중이거나 양 당사국 영역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보세창고에 임시 보관 중이거나 자유지역에 있는 상품에 적용된다. 이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내에, 상품이 제3.17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1] 권한 있는 당국은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특정 기관에 권한을 위임하거나 부여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이를 통보한다. 한국의 경우, 이 책임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부여된다.

소급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6.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규정한 조건에 따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통칙 2가의 의미 내에서 분해되거나 미조립된 생산품이 분할 수입되는 경우, 그러한 생산품에 대한 단일 원산지 증명서는 첫 번째 분할 수입 시 관세 당국에 제출된다.

7. 원산지 증명서가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생산자, 수출자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원본 원산지 증명서의 진정 등본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등본은

가. 원본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일 후 1년 이내에 발급된다.

나. 원본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신청을 기초로 한다.

다. 원본 원산지 증명서와 동일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번호 및 발급일을 포함한다. 그리고

라. “진정 등본”이라는 문구가 기재된다.

8. 원산지 증명서상의 삭제와 덮어쓰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변경 시에는 잘못된 원산지 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다. 수정된 원산지 증명서의 참조 번호는 부속서 3-나에 기술된 대로 새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의 적절한 란에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대체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성은 원본과 동일할 것이다.

9. 상품의 수입을 위한 절차를 수행할 목적으로 원산지 증명서에 작성된 내용과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작성된 내용 사이에 사소한 불일치가 발견되더라도, 그러한 서류가 제출된 상품에 사실상 상응한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증명서가 무효화되지 않는다. 원산지 증명서에서 타자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는, 이러한 오류가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경우, 이 서류가 거부되는 원인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제3.21조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1. 제3.19조제2항나호의 목적상,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2년 내에, 특히 전자 원산지 증명서의 전송에 대한 이 장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산지 정보 교환에 대한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작업반을 설치한다.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산지 정보”는 부속서 3-나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에 포함된 정보를 지칭한다.

2. 그러한 교환 시스템의 구축 전에, 양 당사국은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뿐만 아니라 권한 있는 당국이 운영하는 안전한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진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

제3.22조
원산지 신고

1. 제3.19조제2항다호의 목적상,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내에, 각 권한 있는 당국이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를 인정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이행한다.

2.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은 관련 상품의 가치에 관계없이 부속서 3-다에 견본이 제시되어 있는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상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3. 그러한 권한을 구하는 수출자는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장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4.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5.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 목록을 공유하거나 공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한다.

6.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접근 가능하고 위의 정보를 포함하는 자국의 안전한 웹사이트를 개설한 경우, 그 항에 언급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7. 원산지 신고서(부속서 3-다에 제시된 문안)는 인증수출자가 관련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한 송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 서류에 신고 내용을 타자로 치거나, 인장을 찍거나 인쇄하여 작성된다. 신고서는 또한 수기로 작성될 수 있다.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된 경우, 내구성이 있는 잉크를 사용하여 판독 가능한 정자로 작성된다.

8.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관련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장의 그 밖의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제출하도록 준비한다.

제3.23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1. 수입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에 기초하여 원산지 상품에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2. 이 장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수입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목적상 다음을 규정한다. 수입자는,

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음을 그 세관 신고서에 진술하거나 달리 기재한다.

나. 가호에 언급된 신고서 작성 시 유효한 원산지 증명을 소지하고, 요구되는 경우 이를 관세 당국에 제출하도록 준비한다. 그리고

다. 신고의 근거가 된 원산지 증명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법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신고서를 정정하고 납부해야 할 모든 관세와 이자 및 그 밖의 부과금을 납부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증명을 요구할 수 없다.

가. 수입의 관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수입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그보다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나. 수입 당사국이 요건을 면제한 상품인 경우

다만, 그 수입은 이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규율하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거나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4.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적절한 경우, 수입자에게 상품이 이 장의 요건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음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원산지 증명이 그 제출기간의 만료 후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된 경우로서 불가항력 또는 수입자나 수출자의 통제를 벗어난 그 밖의 타당한 이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때, 그러한 원산지 증명은 수입 당사국의 법, 규정 또는 행정 관행에 따라 여전히 수용될 수 있다.

6.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원산지 증명서가 판독 불가하거나 표면에 결함이 있거나 부속서 3-나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원산지 증명서와 서면 신고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함을 발견한 경우, 관세 당국이 대체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 날부터 5근무일 이상 30근무일 이하의 기간이 수입자에게 부여될 것이다.

제3.24조
수입 후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상품이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었을 때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그 상품의 수입자가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에 다음을 제시하여, 상품이 수입된 날 후 1년 이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고 그 상품에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않은 결과로 초과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가. 유효한 원산지 증명 및 적절한 경우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그 밖의 증거, 그리고

나. 수입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그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

제4절
협력 및 원산지 검증

제3.25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1.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다음의 경우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거나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가. 상품이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나. 상품의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를 획득하기 위한 이 장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다.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라.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이 제3.26조에 따른 검증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결정에 대한 사유를 포함하여 그 결정을 서면으로 제공한다.

3. 특혜관세대우 거부의 근거를 전달받은 경우,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한 권한을 가지고 그러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3.26조
검증

1.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그러한 서류의 진정성, 관련 상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장의 그 밖의 요건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될 수 있다.

2. 제1항의 이행의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추가 정보에 대한 서면 요청으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3.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관련 상품에 대한 특혜대우의 부여를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사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상품의 반출이 허용된다.

4. 검증을 요청하는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그 결과를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에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와 관련 상품이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질 수 있고 이 장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한다.

5. 합리적 의심이 있고 검증의 요청일부터 6개월 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요청 관세 당국은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

6.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공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의 수단으로 수출 당사국에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가. 위의 검증 결과에 관하여, 추가 정보, 서류 또는 설명을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요청. 그러한 정보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으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공된다. 또는

나.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방문. 그 목적을 위하여,

1)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을 수행하려는 수입 당사국의 의사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수출 당사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입 당사국 및 수출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방문 날짜를 정한다. 방문은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서면 통보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행된다.

3) 수출 당사국의 공무원은 수입 당사국의 공무원이 방문 시 그리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서 수입 당사국의 공무원과 동행하고 그를 지원한다. 그리고

4) 검증을 수행하는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검증 방문이 완

료된 날 후 3개월 내에, 사실의 조사결과와 결정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여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 결정을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한다.

제3.27조
제3자 송장

1.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상품이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송장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산지 신고서는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발행된 송장 또는 그 밖의 상업 서류에 대하여 제공되지 않는다.

2. 상품의 수출자는 “제3자 송장”이라 기재하고, 송장을 발행하는 회사의 명칭 및 국가와 같은 정보는 부속서 3-나(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적절한 란에, 또는 제3.22조에 따라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의 경우 원산지 신고서에 표시된다.

제3.28조
기록 유지 요건

1. 제3.26조에 따른 검증 절차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한다.

   가. 제조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이 발급되거나 작성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증빙 기록을 원산지 증명의 발급일 또는 작성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또는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더 긴 기간 동안 유지한다.

   나. 수입자는 특혜관세대우가 신청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모든 기록을 그 상품의 수입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또는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더 긴 기간 동안 유지한다. 그리고

다. 권한 있는 당국[2]은 원산지 증명 신청에 대한 모든 증빙 기록을 원산지 증명의 발급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또는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더 긴 기간 동안 유지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은 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매체로 유지될 수 있다.

제3.29조
비밀유지

1. 이 장의 적용과 관련하여 양 당사국 간 전달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취급된다. 양 당사국의 당국은 정보를 제공하는 인 또는 당국의 분명한 허가 없이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2. 제1항에 언급된 정보는 법 집행의 목적상 또는 사법절차 과정에서 공개되도록 요구될 수 있는 한도 외에,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 또는 정부의 명시적 허가 없이 공개되지 않는다.

제3.30조
연락처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0일 내에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 내의 하나 이상의 연락처를 지정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 그 하나 이상의 연락처에 대한 연락 세부사항을 통보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연락 세부사항에 대한 모든 변경을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특정 기관에 권한을 위임하거나 부여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이를 통보한다. 한국의 경우, 이 책임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부여된다.

제3.31조
상호 지원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협정의 발효 전 다음을 서로 제공한다.

가.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공식 우표와 서명의 견본

나. 원산지 증명의 검증을 담당하는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및 주소, 그리고

다. QR 코드 및 전자 원산지 증명서의 인증을 위한 보안 웹 주소

제5절
협의 및 변경

제3.32조
협의 및 변경

양 당사국은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를 통하여 다음에 대하여 적절히 협의하고 협력한다.

가. 이 장의 해석을 포함하여, 이 장이 효과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나. 검증을 요청하는 권한 있는 당국과 검증을 수행하는 권한 있는 당국 간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작업한다. 그리고

다. 기술, 생산 절차 및 그 밖의 관련 사안의 진전사항을 고려하여, 이 장에 대하여 필요한 개정을 논의한다.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 두주

1. 이 부속서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해석을 위하여,

HS 코드란 2022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품목분류체계를 말한다.

부란 HS 코드에 규정된 부를 말한다.

류란 HS 코드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2단위를 말한다.

호란 HS 코드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그리고

소호란 HS 코드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2.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가. 제1열 - HS 코드(류, 호 또는 소호)

나. 제2열 - HS 코드에 따른 품목명

다. 제3열 - 품목별 원산지 규정, 그리고

라. 제4열 - 품목별 원산지 규정상 선택기준

3.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제3열 및 제4열에 명시된 경우, 수출자는 제3열 또는 제4열에 규정된 규정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4. 일부 경우 제1열의 기재사항이 “ex”로 시작하면, 이는 제3열 또는 제4열의 규정이 제2열에 기술된 그 소호, 호 또는 류의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사용된 재료가 세번변경 또는 특정 제조나 가공 공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규정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된다.

6. 제3열과 제4열의 목적상,

완전생산기준(WO)이란 상품이 제3.3조(완전하게 획득된 상품)에 따라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말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이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2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4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이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6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인정가치포함비율(QVC)이란 제3.4조에 명시된 인정가치포함비율을 말한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인정가치포함비율은 본선인도가격을 기초로 계산된다. 다만, 공장도가격이 사용된 경우 인정가치포함비율 요건은 본선인도가격에 기초하여 계산된 인정가치포함비율 요건보다 5퍼센트 포인트 더 낮다. 그리고

해당없음은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없음을 말한다.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1)	(2)	(3)	(4)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ex 제9류	커피·차·마테·향신료. 다음을 제외함.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0901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해당없음
제10류	곡물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ex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다음을 제외함.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1101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006호의 것은 제외한다)	해당없음
110311	밀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006호의 것은 제외한다)	해당없음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1)	(2)	(3)	(4)
110412	귀리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006호의 것은 제외한다)	해당없음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ex 제13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1211.20호의 인삼제품은 제외한다)	해당없음
1301	락(lac), 천연 검·수지·검수지·올레오레진(oleoresin)[예: 발삼(balsam)]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ex 제15류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왁스.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해당없음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해당없음
1508	땅콩기름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해당없음
1510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만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해당없음
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해당없음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1)	(2)	(3)	(4)
1512	해바라기씨유·잇꽃유·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해당없음
1513	야자[코프라(copra)]유, 팜핵유(palm kernel oil),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해당없음
1514	유채유(rape oil, colza oil), 겨자유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해당없음
1515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해당없음
1601	소시지와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屑肉)·피·곤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2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3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	2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4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어,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어 대용물	2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2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170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을	2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1)	(2)	(3)	(4)
	제외함.		
1701.99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해당없음
1702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	2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1703	당밀(糖蜜)[당류(糖類)를 추출하거나 정제할 때 생긴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1.10	영유아·어린이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4류의 재료는 제외한다)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제4류의 재료는 제외한다)
ex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다음을 제외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2008.99	김	2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1212.21호, 제1212.29호의 것은 제외한다)	해당없음
2106.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1211.20호, 제1302.19호의 인삼 제품은 제외한다)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1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2202.99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1211.20호, 제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1)	(2)	(3)	(4)
		1302.19호의 인삼 제품은 제외한다)	이상일 것
2401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ex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다음을 제외함.	6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2501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2710	석유와 역청유(瀝青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제2710호의 목적상,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규정에 더하여, 다음의 공정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 가. 제3.8조제2항나호(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에 언급된 화학반응 나. 상압증류법(석유가 증류탑에서 끓는점에 따라 분획된 후 그 증기가 응축하여 상이한 액화 분획물이 되는 분리공정) 다. 감압증류법(대기압보다는 낮으나 분자증류법으로 분류될 정도로 낮지 않은 압력에서 증류됨)	
제28류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6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30류	의료용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1)	(2)	(3)	(4)
			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31류	비료	6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32류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6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6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6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다음을 제외함.	6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5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1)	(2)	(3)	(4)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		
4001	천연고무・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율(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5001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5002	생사(꼰 것은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5003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 실 웨이스트(waste),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ex 제71류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다음을 제외함.	6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110	천연진주	완전생산기준	해당없음
ex 7106, ex 7108 및 ex 7110	귀금속 - 가공하지 않은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제7106호, 제7108호 또는 제7110호 귀금속의 전해, 열 또는 화학적 분리, 또는 제7106호, 제7108호 또는 제7110호 귀금속의 상호 간 또는 비금속과의 융합 및/또는 합금, 또는 제련	해당없음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1)	(2)	(3)	(4)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상품과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에 적용 가능한 규정은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규정 대신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이 된다.	해당없음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상품과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에 적용 가능한 규정은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규정 대신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이 된다.	해당없음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상품과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에 적용 가능한 규정은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규정 대신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이 된다.	해당없음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상품과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에 적용 가능한 규정은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규정 대신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이 된다.	해당없음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1)	(2)	(3)	(4)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상품과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에 적용 가능한 규정은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규정 대신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인정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이 된다.	해당없음

부속서 3-나

원산지 증명서

[QR 코드
또는
웹사이트]

1. 수출자의 이름, 주소, 국가	*참조번호* **한국-아랍에미리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증명서** 발행국 _____ (국가) 뒷면 주해 참조
2. 생산자의 이름, 주소, 국가	
3. 수입자의 이름, 주소, 국가	
4. 운송수단 및 경로(아는 범위까지 기재합니다) 출항일: 선명/편명 등: 선적항: 하역항:	5. ☐ 제3자 송장 (이름 및 주소) 6. 비고

7. 품목 번호	8. 상품의 품명(포장의 표시 및 번호)	9. HS 코드	10. 원산지 기준	11. 총 중량, 수량	12. 송장 번호 및 날짜

13. 수출자 신고 아래의 서명자는 이 증명서 기입을 위한 설명을 읽었으며, 상품이 이 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신고합니다. 날짜 서명	14. 증명 이 증명서의 진정성을 증명하며 이 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서명 및 관인 ..... 날짜, 서명 및 권한 있는 당국의 관인

뒷면 주해

제1란: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제2란: 상품의 생산자(이름 및 국가)를 제공한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 제1란에 기재한 대로 이 란에 세부사항을 작성한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정보를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 "요청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제공 가능"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수용 가능하다.

제3란: 수입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제4란: 알고 있는 경우, 운송수단 및 경로를 작성하고, 출발일, 운송수단의 편명 및 선적항과 하역항을 명시한다.

제5란 제3자 송장: 제3자가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제3자 송장" 란에 체크(√) 표시를 해야 할 것이고 송장을 발행하는 회사의 이름 및 주소 정보가 기재된다.
제3자가 발행한 송장이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시에 이용 가능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된 수출자가 발행한 송장의 번호 및 날짜는 제12란에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5란에는 다른 송장을 발행할 회사 또는 인의 법적 이름과 주소를 적시하여, 상품이 수입 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하여 제3자가 발급한 다른 송장의 적용대상이 될 것임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수입 신고한 상품에 대하여 수출 당사국으로부터 수입 당사국으로의 거래를 확인하는 송장 및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제공할 것을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란 비고: 이 란은 수출국이 작성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소급 발급" : 원산지 증명서가 선적 전이나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5근무일 내에 발급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그 원산지 증명서는 제3.20조제4항에 따라 소급하여 발급될 수 있다.
"진정 등본" : 제3.20조제7항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원본이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대체" : 제3.20조제8항에 따라 대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전 원산지 증명서의 번호를 기재한다.
"역외 가공" : 제3.16조에 따라 역외 가공한 경우
"그 밖의 정보" : 필요한 경우

제7란: 품목 번호를 기재한다.

제8란: 각 상품의 품명을 제공한다. 품명은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그 상품을 식별할 수 있고, 그 상품을 송장 품명과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포장의 운송표장 및 숫자, 포장의 수량 및 종류도 명시한다.

제9란: HS 코드는 수출 당사국의 코드를 말한다. HS 코드가 6단위를 초과하여 제공되는 경우, 첫 6단위만 고려될 것이다.

제10란: 한쪽 당사국에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의 수출이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수출자는 이 양식의 제9란에 자신의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원산지 기준을 다음의 표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 기준	
가. 제3.3조를 충족하는, 수출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완전생산기준"
나. 제3.4조를 충족하는 상품 • 세번변경 • 인정가치포함비율 • 특정 제조 또는 가공 • 결합 기준	 "CTC" "QVC" "SO" "COMBO"
다. 제3.2조다호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	"PE"

제11란: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총 중량이 이 란에 기입되어야 할 것이다. 관례적인 경우,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측정 단위(예: 부피 또는 개수)가 사용될 수 있다.

제12란: 송장 번호 및 날짜가 이 란에 기입되어야 할 것이다.

제13란: 이 란은 수출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 장소 및 서명일을 삽입한다.

제14란: 이 란은 권한 있는 당국의 권한을 부여받은 인이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며, 관인을 찍어야 한다.

부속서 3-다

제3.22조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

이 서류(관세 당국 인증번호: _____[3])의 적용대상이 되는 생산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 생산품이 한국-아랍에미리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따른 _____[4]의 특혜원산지 상품이며, 충족한 원산지 기준은 _____[5]임을 신고한다.

_____	_____
장소 및 날짜	수출자의 서명 및 관인, 또한 이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3] 이 란에는 관련된 권한 있는 당국이 부여한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기입되어야 한다.
[4] 생산품의 원산지가 표시된다.
[5] 생산품의 원산지 기준이 표시된다.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4.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아래의 정의는 다음을 말한다.

관세법이란 관세, 조세 또는 관세 당국이 징수하는 그 밖의 부과금 또는 관세 당국이 집행하는 금지, 제한 또는 통제 조치와 관련이 있는지에 관계없이 상품의 수입, 수출, 통과 또는 그 밖의 통관 절차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이행되는 규정을 말한다.

통관 절차란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운송 수단에 적용하는 조치를 말한다.

인이란 맥락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말한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이란 2015년 12월 16일 발효된 것으로 합법적인 무역을 확보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 세관 협력 및 정보 교환을 보다 강화하는 협정을 말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란 국가 관세 당국이 승인한 어떠한 기능이든지 상품의 국제적 이동에 연관된 업체를 세계관세기구 또는 이와 동등한 공급망 보안 표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그리고

상호인정협정이란 2018년 10월 1일 발효된 것으로 관세 당국 중 하나에 의하여 적절하게 부여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승인을 상호 인정하는 양 당사국 간 협정을 말한다.

제4.2조

범위

이 장은 양 당사국 각각의 국제적 의무와 그들의 국가법,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국 간 교역되는 상품의 통관에 요구되는 통관 절차에 적용된다.

제4.3조
일반 규정

1. 양 당사국은 양국의 관세법과 절차가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일관되고 무역에 불필요한 절차적 장애물을 피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2. 양 당사국의 통관 절차는 가능한 경우, 세계관세기구의 표준 및 권고되는 관행을 따른다.

3. 각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양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한 통관 절차의 간소화와 발전을 위하여, 자국의 통관 절차를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제4.4조
정보의 공표 및 이용가능성

1.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을 규율하는 자국의 법, 규정, 지침, 절차 및 행정 판정이 가능한 한도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영어로 신속하게 공표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관련한 이해관계인의 문의를 다루는 하나 이상의 문의처를 지정, 수립 및 유지하며, 그러한 문의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3. 이 조 또는 이 협정의 어떠한 부분에서의 규정도 당사국이 위험 분석 및 표적화 방법론의 수행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법 집행 절차 및 내부 운영 지침을 공표하도록 요구하지 않

는다.

4.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자국의 국내법 및 법적 체계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통과 중인 상품을 포함하여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에 관련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또는 개정된 법과 규정이 이해당사자가 그 새로운 또는 개정된 법과 규정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발효 전에 가능한 한 조기에 공표되거나 그에 대한 정보가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정보와 공표물이 가능한 한도에서 영어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제4.5조
위험관리

양 당사국은 검사 활동을 고위험 상품에 집중하면서, 저위험 탁송물의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품의 확인된 위험에 기초하여 세관 활동에서 위험관리 접근법을 채택한다.

제4.6조
종이 없는 통신

1. 양 당사국은 국제 무역 자료의 양국 간 교환을 원활하게 하고 상품의 반출과 무역원활화를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국의 관세 당국과 무역 주체 간의 상거래를 지원하는 전자적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각국의 관세 당국과 무역 주체 간의 종이 없는 통신의 실현과 증진에 대하여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한다.

3. 양 당사국의 각 관세 당국은 종이 없는 통신의 사용을 규정하는 이니셔티브의 이행 시, 세계관세기구에서 합의된 방법론을 고려한다.

제4.7조
사전심사결정

1. 양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으면 상품이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요청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시간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요청 후 90일을 넘지 않도록 인에게 다음과 관련하여 사전심사결정을 발급한다.

가. 품목분류

나. 상품의 원산지

다. 관세평가협정에 규정된 규정의 적용에 따른 평가기준의 적용,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그러한 사안

2. 수입 당사국은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자국이 발급한 사전심사결정을 그 사전심사결정이 발급된 날 또는 그 사전심사결정에 명시된 다른 날에 적용한다. 그 사전심사결정이 수정되거나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사전심사결정은 사전심사결정에 대한 국가법 및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3. 그 당사국이 발급한 사전심사결정은 자국의 영역에서 그것이 발급된 그 인에게만 구속력을 가진다.

4.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상황이 통관사후심사 또는 행정적, 사법적 재심사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을 거부하는 당사국은 자국의 결정에 대한 관련 사실 및 상황과 근거를 적시하여 사전심사결정을 신청한 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

5.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가. 사법적 결정 또는 자국 국내법의 변경을 준수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

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가 제공되었거나 관련 정보가 보류된 경우

다. 사전심사결정이 잘못된 사실에 기초했던 경우

라. 사전심사결정의 기초가 되었던 중요한 사실 또는 상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마. 이 장의 수정을 준수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

6. 각 당사국은 신청인에게 발급된 사전심사결정을 철회 또는 수정하는 그 당사국의 결정을 설명하는 서면 통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7.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수정 또는 철회가 발급된 날짜 또는 그에 명시될 수 있는 더 늦은 날짜에 수정 또는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고, 사전심사결정을 발급받은 인이 그 조건에 따라 행동한 경우, 그 날짜 전에 발생한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8. 비밀유지 요건을 포함한 각 당사국의 절차와 법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전심사결정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표한다.

제4.8조
벌칙

1.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관세법, 규정 또는 절차 요건의 위반에 대하여, 단독이거나 조합인지에 관계 없이 형사상,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벌칙을 부과하는 조치를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관세법, 규정 또는 절차 요건의 위반에 대하여 발부된 벌칙이 자국의 법

에 따라 그 위반에 책임이 있는 인(들)에게만 부과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부과하는 벌칙이 사건의 사실과 상황에 의존하고 위반의 정도와 심각성에 상응하도록 보장한다.

4. 각 당사국은 관세법, 규정 또는 절차 요건의 위반에 대하여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벌칙을 부과하는 경우, 벌칙이 부과되는 인(들)에게 위반의 성격과 벌칙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법, 규정 또는 절차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설명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제4.9조
상품의 반출

1. 각 당사국은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자국의 관세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상품을 반출하도록 규정하는 절차

나. 도착 시 세관 통제로부터 상품의 반출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상품의 도착 전에 적하목록을 포함한 서류와 자료의 전자적 제출 및 처리를 규정하는 절차

다.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도록 요구하지 않고 도착지점에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 그리고

라. 당사국이 상품을 신속하게 반출하지 않는 경우, 실행 가능하고 자국의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상품이 반출되지 않는 이유와 어느 기관(관세 당국이 아닌 경우)이 상품의 반출을 보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수입자에게 알리도록 요구하는 절차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의 반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상품을 반출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당사국이 자국의 법에 따라 보증금을 청산하는 것을 금지하지도 않는다.

4.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자국의 관세법에 따라, 수입이 의도된 상품이 그 당사국 영역으로의 반입 지점부터 상품이 반출되도록 의도된 자국 영역의 다른 세관까지 세관 통제 하에 자국의 영역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적용 가능한 규제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5. 양 당사국은 요구될 수 있는 어떠한 검사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 부패성 상품에 적절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제4.10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양 당사국은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양국 간 준수 및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프로그램의 상호인정협정의 이행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제4.11조
국경기관 협력

각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경 통제와 상품의 수입, 수출 및 통과를 다루는 절차를 담당하는 당국과 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그들의 활동을 조정하도록 보장한다.

제4.12조
특송화물

각 당사국은 적절한 세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최소한 항공 화물 시설을 통하여 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러한 절차는

가. 특송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그 화물의 반출에 필요한 정보가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규정한다.

나. 가능하다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적하목록과 같은 특송화물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단일 제출을 허용한다.[1]

다. 가능한 한도에서, 특정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라. 통상적인 상황하에서, 특송화물이 도착한 경우, 필요한 통관서류의 제출 및 모든 적용 가능한 절차와 요건의 충족 후 가능한 한 조속히 특송화물이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마. 당사국이 상품의 중량 또는 가치를 기초로 하여, 신고서 및 증명서류 그리고 관세의 납부를 포함한 공식적인 반입 절차를 반출의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모든 중량 또는 가치의 화물에 적용한다. 그리고

바. 통상적인 상황하에서,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정한 일정한 금액 이하의 가치를 가진 특송화물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임을 규정한다.[2]

[1] 반출의 조건으로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2] 이 조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정한 제한되거나 통제되는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거나 공식적인 반입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13조
통관사후심사

1. 상품의 반출을 신속화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통관사후심사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적절한 선별 기준을 포함할 수 있는 위험에 기초한 방식으로 통관사후심사를 위한 인이나 탁송물을 선별한다. 각 당사국은 투명한 방식으로 통관사후심사를 수행한다. 그 인이 심사 과정에 관여되고 확실한 결과가 달성된 경우, 그 당사국은 자신의 기록이 심사된 인에게 지체없이 다음을 통보한다.

가. 결과

나. 결과에 대한 이유, 그리고

다. 인의 권리 및 의무

3. 양 당사국은 통관사후심사에서 획득된 정보가 추가적인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4.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위험관리 적용 시 통관사후심사의 결과를 이용한다.

제4.14조
재심사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관세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모든 인이 다음에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가. 재심사 중에 있는 결정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 또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자국

의 관세 당국의 결정에 대한 최소한 한 단계의 행정적 재심사[3], 그리고

나. 결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사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불복청구 및 재심사 절차가 비차별적이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 또는 불복청구를 수행하는 당국이 그 재심사 또는 불복청구의 판정 또는 결정과 그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이유를 그 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보장한다.

제4.15조
관세 협력

1. 양 당사국은 합법적인 무역을 확보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양국 관세 당국 간의 관세 협력 및 정보 교환을 더욱 강화하고자 양국 간 서명된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이행을 계속하고 이 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2. 이 장에 따른 지원은 요청을 받은 당사국의 국내법 및 양 당사국 간 서명된 세관상호지원협정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다.

3. 양 당사국은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연락처를 교환한다.

제4.16조
비밀유지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저해하게 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게

[3]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행정적 재심사 단계는 관세행정기관을 감독하는 권한 있는 당국을 포함할 수 있다.

되거나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 협정에 따라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비밀로 취급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장에 따라 획득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그 정보를 제공한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그 정보를 보호한다.

제4.17조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제17장에 따라 양 당사국의 관세 당국 및 권한 있는 당국으로 구성되는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를 설치한다. 양 당사국의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은 양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특히 그러한 장들의 해석 및 이행에 대한 공통적인 접근 방식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적절히 해결한다.

3. 위원회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회합한다.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5.1조
정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가의 정의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장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제5.2조
목적

이 장의 목적은 무역을 원활하게 하면서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고, 양 당사국 간의 협력, 의사소통 및 투명성을 강화하며, 양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과학에 기초하고 무역에 부당한 장벽을 조성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제5.3조
적용범위

이 장은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

제5.4조
일반 규정

1.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른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한다.

2. 양 당사국은 상호 관심 정보를 교환하고, 연락처를 통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며 요청에 따라 이에 대한 협의를 증진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에 따른 제15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5.5조
연락처와 권한 있는 당국

1. 이 협정의 발효 시에,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연락처를 지정하고, 이 협정의 발효 후 30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2. 이 협정의 발효 시에,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목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을 지정하고 이 협정의 발효 후 30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3. 각 당사국은 연락처 및 권한 있는 당국에 대한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모든 변동 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알린다.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6.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WTO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정의가 이 장에 적용된다.

제6.2조
목적

이 장의 목적은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기술장벽을 제거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규제 협력과 모범규제관행의 확대를 증진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무역을 촉진하는 것이다.

제6.3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제11장(정부조달)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기관이 자신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구매 규격, 또는

   나.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제6.4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확인

양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양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제6.5조
국제 표준

1.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4조 및 제5.4조에 규정된 범위에서, 자국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서 관련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를 사용한다.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의 의미 내에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각 당사국은 WTO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가 2000년 11월 13일에 채택한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과 그 후속본에 규정된 원칙에 그 판정의 근거를 둔다.

3. 양 당사국은 국제 표준화 기구 내에서 개발된 국제 표준이 무역을 촉진하고 국제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그러한 국제 표준화 기구에 대한 참여의 맥락에서, 상호 관심 분야에서 각 당사국의 국가 표준화 기관 간 협력을 장려한다.

제6.6조
기술규정

1. 양 당사국은 국제 표준이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하지 않은 한, 양국의 기술규정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로서 국제 표준을 사용한다.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의 기술규정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로 국제 표준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제공한다.

2. 각 당사국은 기술규정의 동등성을 달성하기 위한 약정의 교섭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그러한 약정 교섭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

3.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WTO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와 같은 국제 포럼에서 기술규정의 동등성 및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의 맥락에서 상호 의사소통 및 조정을 강화한다.

제6.7조
적합성 평가절차

1. 양 당사국은 관련된 특정 분야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한 메커니즘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적합성 평가기관 간 기존의 국제적인 다자 간 인정 협정 및 약정의 인정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기관 지정에 대한 인정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한 적합성 평가결과에 대한 상호 인정 증진

다.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적합성 평가기관 간 자발적 약정 장려

라. 적절한 경우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에 대한 수용

마. 인정 절차를 포함한 적합성 평가기관 지정 기준의 조화, 또는

바.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메커니즘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가 자국의 적합성 평가절차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자국의 절차와 동등한 적용 가능한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대한 만족스러운 보장을 제공하는 한, 가능한 경우 언제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가 수용되도록 보장한다.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3. 적합성 평가결과의 일관된 신뢰성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관련된 적합성 평가기관의 기술능력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각국의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상호 인정을 위한 협정 또는 약정의 교섭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5.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용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환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6. 당사국은 국가 및 지역 적합성 평가절차에 포함된 중복 시험 및 인증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그 부과를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다.

제6.8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가.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 증대

나. 건강, 안전 및 환경 보호를 포함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의 규제 기관 간 협력 증진

다. 모범규제관행의 이행을 통한 무역 촉진, 그리고

라.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국제표준 또는 그 관련 부분에 기초하고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협력 강화

2. 제1항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된 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을 포함할 수 있는 규제 문제에 대하여 협력한다.

가. 위험관리 원칙에 기초한 모범규제관행의 증진

나. 각 당사국의 기술규정의 질과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 교환

다.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대한 위험의 관리 및 기만적인 관행의 방지를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 개발, 그리고

라. 적절한 경우 시장 감시 정보의 교환

3. 양 당사국은 무역을 촉진하고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피하기 위하여, 표준화, 적합성 평가, 인정 및 계량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 기관 간의 협력을 장려한다.

제6.9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이 채택했거나 채택하겠다고 제안하는, 그리고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취지를 포함한 정보를 양 당사국 간에 합의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공한다.

2. 제안된 기술규정이 WTO에 통보된 경우,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의견을 적절히 고려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의견

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공한다.

3. 양 당사국은 채택된 모든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4. 당사국은 안전, 보건, 환경 보호 또는 국가 안보에 관한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이 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자국의 제안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WTO의 중앙통지문등록처에 통보한 후 최소 60일의 기간을 부여한다.

5.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양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의 생산자가 수입 당사국의 요구사항에 맞게 생산품 또는 생산 방식을 조정할 시간을 허용하기 위하여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공표와 그 발효 사이에 합리적인 시간 간격을 허용한다.

제6.10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공동위원회 산하에 양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직접 대면, 원격 회의, 화상회의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회합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의 이행과 운영의 촉진 및 점검

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및 개선에 대한 협력 강화

다.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채택, 적용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지도록 보장

라. 규제 당국, 인정 기관 또는 적합성 평가기관 간의 추가 협력을 위하여 당사국이 제시하는 분야별 제안에 대한 검토

마. 다른 쪽 당사국이 지정한 분야에서, 협정 교섭에 대한 요청을 포함하여, 한 쪽 당사국이 그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를 인정하도록 하는 요청에 대한 검토

바.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는 비정부, 지역 및 다자 포럼에서의 진전사항에 대한 정보 교환, 그리고

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관한 협력 강화

3. 이 장의 목적상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산업 및 선진기술부 표준규제부문 또는 그 승계기관

4. 각 당사국은 자국 연락처의 모든 변동 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5. 연락처는 이 장의 이행과 이 장에 관한 모든 사안에서 양 당사국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6.11조
정보 교환 및 기술 논의

1.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또는 설명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쇄하여 또는 전자적으로 제공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60일 내에 응답하도록 노력한다.

2.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의사소통은 제6.10조에 따라 지정된 연락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3.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발생한 사안에 대한 기술 논의를 요청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제6.10조에 따라 지정된 연락처에 통보하여 기술 논의를 개시하도록 노력한다.

제7장
무역구제

제1절
적용범위

제7.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따라 취해지는 조사 및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목적상,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무역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경제부 또는 그 승계기관

제2절
반덤핑 및 상계 조치

제7.2조
일반규정

1. 양 당사국은 1994년 GATT 제6조 및 제16조,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양국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한다.

2. 양 당사국은 1994년 GATT 제6조,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에 합치되게 조치를 적용할 권리와, 투명성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3. 이 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은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사의 개시와 수행 그리고 반덤핑 및/또는 상계 조치의 적용을 포함하여, 반덤핑 및 상계 조치에 관하여 양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4.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최종판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확정 조치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의 근거를 형성하는 고려 중인 모든 필수적인 사실의 공개를 보장한다. 이는 반덤핑 협정 제6.5조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2.4조와 무관하다. 공개는 서면으로 하고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제7.3조
통보 및 협의

1.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개시를 위하여 자국의 국내 산업에 의하여 또는 국내 산업을 대신하여 서면 신청을 접수할 때, 수령 당사국은 그러한 조사의 개시에 앞서 가능한 한 사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그 신청을 통보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대한 상계 관세 조사를 위한 신청을 접수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신청의 접수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하고, 그 신청에 언급된 사안에 관한 상황을 명확히 하고 상호 합의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을 초청한다.

3. 이해당사자는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 동안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를 부여받아야 할 것이다.

4. 자국의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부과된 반덤핑 또는 상계 조치의 대상이 되는 당사국은 양국 간 무역에 대한 이러한 조치의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제7.4조
최소부과 원칙

당사국이 잠정 또는 확정인, 반덤핑 관세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러한 관세의 세액은 덤핑 마진 또는 상계 가능 보조금 액수를 초과하지 않으나,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마진 미만의 관세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할 경우, 관세는 그 마진 미만이 될 수 있다.

제7.5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어떠한 당사국도 이 절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의 제15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3절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제7.6조
정의

이 절의 목적상,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제7.7조에 기술된 것으로서 과도기간 내에 적용하는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국내 산업이란 수입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활동하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총생산이 그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잠정조치란 제7.10조에 기술된 잠정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란 국내 산업의 입지에 대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과도기간이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완료일부터 5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7.7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심각한 피해의 우려를 초래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음으로 구성된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에 규정된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 정지, 또는

나. 다음 중 더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인상

1)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해진 날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제7.8조
통보 및 협의

1. 한쪽 당사국은 다음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즉시 통보한다.

가. 제7.9조에 기술된 조사의 개시

나. 이 협정에 따른 상품에 대한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증가된 수입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에 대한 조사 결과의 도출, 그리고

다. 잠정 또는 최종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연장하는 결정

2. 한쪽 당사국은 조사로부터 얻는 비밀이 아닌 형태의 정보를 검토하고 그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에 앞서 실행 가능한 한 사전에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7.9조
조건 및 제한

1.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다호에 따라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다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2. 제1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그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가호 및 제4조제2항나호의 요건을 준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가호 및 제4조제2항나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모든 조사를 그 개시일부터 1년 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4. 어떠한 당사국도

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한도와 기간을 제외하고,

나.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의 총기간이 최초 적용기간과 이에 대한 연장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 절에 명시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도기간의 만료 후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5. 이전에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대상이었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그 이전의 조치가 적용되었던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에는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재적용하지 않는다.

6.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 존속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7. 당사국이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하는 때, 관세율은 그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제7.10조
잠정조치

1.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를 초래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예비판정에 따라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적용 당사국은 잠정적으로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를 개시한 날 후 최소한 45일까지는 잠정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3.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그 기간 동안 그 당사국은 제7.9조제1항 및 제7.9조제2항의 요건을 준수한다.

4. 그 당사국은 제7.9조에 기술된 조사에서 제7.7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사결과에 이르지 않는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을 신속하게 반환한다.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제7.9조제4항나호에 기술된 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7.11조
보상

1. 한쪽 당사국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후 30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하여 자국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한다. 적용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보상을 제공한다.

2. 양 당사국이 협의 개시 후 30일 내에 보상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조치가 적

용되는 원산지 상품의 당사국은 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당사국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에만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3. 자국의 상품에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는 당사국은 제2항에 따라 양허를 정지하기 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4.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수입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적용되어 왔고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는 한, 제2항에 언급된 정지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유효한 최초 24개월 간 행사되지 않는다.

5.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적용 당사국의 의무와 제2항에 따라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권리는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하는 날에 소멸된다.

제4절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제7.12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9조를 포함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협정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행해진 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하거나 어떠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제3절에서 적용되는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조치

3.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결과로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른 특혜 마진은 유지된다.

4.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그 당사국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려는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의 잠정 결과 및 최종 결과를 포함한, 그 조사의 개시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의 서면 통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즉시 제공하고, 협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5. 이 조의 목적상, 절대적 양 또는 가액 기준으로 측정하여 당사국이 최근 3년의 기간 동안 조사 중인 상품의 상위 5대 공급자 중 하나인 경우, 그 당사국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여겨진다.

제7.13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어떠한 당사국도 이 절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의 제15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5절
무역구제에 대한 협력

제7.14조
무역구제에 대한 협력

양 당사국은 무역구제 사안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각 당사국의 관련 당국 간 무역구제에 대한 협력을 장려하도록 노력한다.

제8장
서비스무역

제8.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란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지 않는 기간 중 항공기 자체 또는 항공기의 부분에 대하여 행해지는 그러한 활동을 말하며, 이른바 비행 전 운항정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상업적 주재란 서비스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 영역 내 모든 유형의 영업적 또는 전문적 설립체를 말하며 다음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가. 법인의 구성, 인수 또는 유지, 또는

나. 지점이나 대표사무소의 설치 또는 유지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란 항공사의 운항 일정, 가용성, 요금 및 요금 규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산화 체제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상 조업 서비스란 수수료 또는 계약에 기반해 공항에서 다음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사 대리・관리 및 감독, 여객 취급, 수하물 취급, 램프 서비스, 케이터링(음식 준비 제외), 항공 화물 및 우편물 취급, 항공기 연료 공급, 항공기 정비 및 청소, 육상 운송, 그리고 비행 운영・승무원 관리 및 비행 계획. 지상 조업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자체 처리, 보안, 비행 전 운항정비, 항공기 보수 및 유지, 또는 제빙(除氷) 시설, 연료 배급 시스템, 수하물 취급 시스템 및 공항 내 고정 교통 시스템과 같은 필수적인 중앙 집중식 공항 기반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

법인이란 회사, 신탁, 파트너십, 합작투자, 단독소유기업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정당하게 구성되거나 달리 조직된 법적 실체를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그 다른 쪽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달리 조직되고,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나.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다음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법인

1) 그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2) 가호에 명시된 그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

법인은

가.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그 법인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익성 있게 소유되는 경우,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된다**.

나. 당사국의 인이 그 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거나 달리 그 법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지배된다.** 또는

다. 자신이 다른 인을 지배하거나 다른 인에 의하여 지배받을 경우, 또는 자신과 다른 인이 모두 동일한 인에 의하여 지배받을 경우, 그 다른 인과 **계열관계에 있다.**

조치란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행위의 형태이거나 또는 그 밖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당사국에 의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당사국의 조치란 다음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 그리고

나.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

각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와 약속을 이행할 때, 자국의 영역 내에서 지역 및 지방 정부와 당국, 그리고 비정부기관에 의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는 다음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다.

가. 서비스의 구매, 대가 지불 또는 이용

나.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서비스의 이용, 그리고

다. 상업적 주재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당사국 인의 주재

서비스의 독점 공급자란 당사국 영역의 관련 시장에서 그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로서 그 당사국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승인을 받거나 설립된 모든 공적 또는 사적 인을 말한다.

당사국의 자연인이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 당사국의 국민 또는 영주권자[1]를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아랍에미리트에 대하여, **영주권자**라는 용어는 아랍에미리트의 법과 규정에 따라 유효한 거주 허가증을 보유하는 모든 자연인을 말한다. 이 장 및 그 부속서의 목적상, **영주권자**라는 용어는 외국인 학생 거주 허가증, 외국인 은퇴자 거주 허가증, 원격 근무 거주 허가증, 가사 근로자 거주 허가증 및 외국인 부양가족 거주 허가증을 보유하는 자연인은 제외한다.

서비스의 **분야**란

가. 구체적 약속과 관련해서는, 당사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대로, 그 서비스의 하나 또는 그 이상 또는 모든 하위분야를 말하며, 또는

나. 그 밖에는, 서비스의 모든 하위분야를 포함하는 그 서비스 분야의 전체를 말한다.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이란 시장 조사, 광고 및 유통과 같은 마케팅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관련 항공사가 자신의 항공 운송 서비스를 자유롭게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항공 운송 서비스의 가격 책정이나 적용 가능한 조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서비스는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의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서비스 소비자란 서비스를 받거나 이용하는 모든 인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란 다음과 같이 공급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또는 영역에서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해상운송의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의 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의하여, 또는 선박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운영 및/또는 사용하여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나. 상업적 주재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의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도 않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하에 공급되지도 않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모든 인을 말한다.[2]

서비스의 공급은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을 포함한다.

서비스무역이란 다음의 서비스 공급을 말한다.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로의 서비스 공급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다.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라.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그리고

운수권이란 대가나 사용료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영역으로, 영역 내에서 또는 영역을 통과하는 정기적·비정기적 운항 및/또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 운송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운항 지점, 운항 노선, 운송대상의 형태, 운송 용량, 부과 운임 및 그 조건, 그리고 항공사의 수, 소유권 및 지배권 등과 같은 기준을 포함한 항공사 지정 기준을 포함한다.

제8.2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된다.

[2] 서비스가 법인에 의하여 직접 공급되지 않고 지점이나 대표사무소 같은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공급되는 경우, 서비스 공급자(즉, 그 법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재를 통하여 이 장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제공되는 대우를 부여받는다. 그러한 대우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재에 대하여 부여되며 서비스가 공급되는 영역 밖에 위치한 공급자의 그 밖의 부분에까지 부여될 필요는 없다.

2.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상업적 재판매를 위한 경우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정부기관의 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법, 규정 또는 요건

나.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다.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 또는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시민권, 거주 또는 고용에 관한 조치, 그리고

라.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제외하고, 어떻게 부여되었는지와 관계없이 항공 운수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또는 항공 운수권의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1)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2)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3)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또는

4) 지상 조업 서비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국경의 일체성을 보호하고 자국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자연인이 자국 영역 내로 입국하거나 자국 영역에서 일시 체류하는 것을 규제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구체적 약속의 조건에 따라 어떠한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3]

[3] 특정 국가의 자연인에 대해서는 사증을 요구하고 그 밖의 국가의 자연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약속에 따른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8.3조
시장접근

1. 제8.1조에 적시된 공급 형태를 통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4]

2. 시장접근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당사국이 지역적 소구분에 근거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근거하여 유지하거나 채택하지 않는 조치는 다음으로 정의된다.

가.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

나.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다.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 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5]

라.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수에 대한 제한

마.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의 특정 유형을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그리고

---

[4] 당사국이 제8.1조 **서비스무역**의 정의 가호에 언급된 공급형태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접근 약속을 하는 경우와 국경 간 자본 이동이 그 서비스 자체의 필수적 부분인 경우, 그 당사국은 이로써 그러한 자본의 이동을 허용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당사국이 제8.1조 **서비스무역**의 정의 다호에 언급된 공급형태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접근 약속을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로써 자국 영역 내로의 관련 자본 송금을 허용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5] 다호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바. 외국인의 지분 소유의 최대 비율 한도 또는 외국인 투자의 개인별 또는 총액 한도에 의한 외국 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

제8.4조
내국민 대우

1.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서, 그리고 그 양허표에 규정된 조건 및 제한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자국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6]

2.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 또는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3. 한쪽 당사국의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는 그것이 다른 쪽 당사국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비교하여 그 당사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쟁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된다.

제8.5조
추가적 약속

양 당사국은 자격, 표준 또는 면허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양허표 기재사항은 아니나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관련하여 약속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약속은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다.

제8.6조

[6] 이 조에서 상정되는 구체적 약속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관련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의 것이라는 성격으로부터 기인하는 내재적인 경쟁상의 불리함을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제8.3조,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라 행하는 구체적 약속을 양허표에 규정한다. 그러한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 대하여, 각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는 다음을 명시한다.

가.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및 조건

나. 내국민 대우에 대한 조건 및 제한

다. 추가적 약속과 관련된 조치

라. 적절한 경우 그러한 약속의 이행을 위한 기간, 그리고

마. 그러한 약속의 발효일

2. 제8.3조 및 제8.4조 모두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제8.3조와 관련된 열에 기재된다. 이 경우, 그 기재는 제8.4조에 대해서도 조건 또는 제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3.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는 이 장에 부속되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8.7조
최혜국 대우

이 협정의 발효일 후 한쪽 당사국이 GATS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통보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국에 그 협정에서 부여된 혜택을 협상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8.8조
양허표의 수정

1. 가. 당사국(이 조에서 “수정 당사국”이라 한다)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자국 양허표의 약속이 발효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언제든지, 그 약속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나. 수정 당사국은 약속의 수정 또는 철회를 이행하려는 날의 최소 3개월 이전에 이 조에 따라 수정 또는 철회하려는 자국의 의사를 서비스무역위원회에 통보한다.

2. 이 장에 따른 혜택이 제1항나호에 따라 통보되는 제안된 수정 또는 철회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국(이 조에서 “영향을 받는 당사국”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정 당사국은 필요한 보상 조정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협상을 개시한다. 그러한 협상 및 합의에서, 양 당사국은 그러한 협상 전에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규정된 것보다 무역에 더 불리하지 않은, 상호 유익한 약속의 일반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3. 협상을 위하여 마련된 기간의 종료 전에 수정 당사국과 영향을 받는 당사국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영향을 받는 당사국은 그 사안을 서비스무역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서비스무역위원회가 그 사안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서비스무역위원회는 결정을 채택하거나 권고를 하도록 그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4. 공동위원회는 양허표의 정정 또는 수정을 위한 절차를 수립한다. 이 조에 따라 양허된 약속을 수정하거나 철회한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에 따라 자국의 양허표를 수정한다.

제8.9조
국내 규제

적용범위

1. 이 조는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면허 요건 및 절차, 자격 요건 및 절차, 그리고 기술표준과 관련된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된다.

2. 구체적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각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

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3. 이 조는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라 당사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어떠한 제한 또는 조건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4. 이 조의 목적상, **승인**이란 면허 요건, 자격 요건 또는 기술표준의 준수를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따라야 하는 절차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공급에 대한 허가를 말한다.

신청의 제출

5.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신청인이 각 승인 신청에 대하여 둘 이상의 권한 있는 당국을 접촉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피한다. 서비스가 복수의 권한 있는 당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경우, 복수의 승인 신청이 요구될 수 있다.

신청 기간

6. 당사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연중 언제든지 신청의 제출을 허용하도록 보장한다.[7] 특정 신청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신청의 제출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허용하도록 보장한다.

전자 신청과 사본의 수용

7. 당사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을 하도록 보장한다.

가. 상충하는 우선순위 및 자원 제약을 고려하여, 전자적 형태의 신청을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나.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 과정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본 문서를 요구하

[7] 권한 있는 당국은 그들의 공식 근무시간과 근무일 외에 신청의 검토를 시작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지 않는 한, 원본 문서 대신 그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인증된 문서의 사본을 수용한다.

신청의 처리

8. 당사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을 하도록 보장한다.

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신청의 처리를 위한 예시적 기간을 제공한다.

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과도한 지체 없이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른 처리를 위한 신청의 완료를 확인한다.

라. 권한 있는 당국은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른 처리를 위하여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간주하는 경우[8], 신청의 제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다음을 보장한다.

1) 신청의 처리가 완료된다. 그리고

2) 가능한 범위에서 서면으로[9], 신청에 관한 결정이 신청인에게 알려진다.[10]

마. 권한 있는 당국은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른 처리를 위하여 신청이 불완전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8]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이 "처리를 위하여 완료되었다"고 간주하기 위하여 모든 정보가 특정한 형식으로 제출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9] "서면으로"는 전자적 형식을 포함할 수 있다.

[10]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의 제출일부터 특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회신이 없는 것은 신청의 수락 또는 거부를 나타낸다는 것을, 공표된 조치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림으로써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1) 신청이 불완전함을 신청인에게 알린다.

2)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추가 정보를 확인하거나, 신청이 불완전하다고 간주되는 이유에 대하여 달리 지침을 제공한다. 그리고

3) 신청인에게 신청을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추가 정보를 제공할 기회[11]를 제공한다.

그러나 위의 어느 것도 실행 가능하지 않고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이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바. 신청이 거부된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권한 있는 당국의 자체 발의로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거부 사유와 적용 가능한 경우 신청의 재제출 절차를 신청인에게 알린다. 신청인은 이전에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근거만으로 다른 신청[12]을 제출하는 것이 방해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9.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승인이 일단 부여되면 적용 가능한 조건에 따라 과도한 지체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보장한다.[13]

수수료

10.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부과하는 승인 수수료[14]가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조치에 규정된 권한에 기초하고, 그 자체로 관련 서비스의 공급을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

[11] 그러한 기회는 권한 있는 당국에 마감시한 연장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12] 권한 있는 당국은 그러한 신청의 내용이 수정되었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3] 권한 있는 당국은 자신의 권한 밖의 사유로 인한 지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14] 승인 수수료는 천연자원의 사용에 대한 수수료, 경매, 입찰 또는 허가를 부여하는 그 밖의 비차별적 수단에 대한 지불, 또는 보편적인 서비스 공급에 대한 의무적 출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자격의 평가

11. 당사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승인에 대하여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합리적으로 빈번한 간격으로 그러한 시험의 일정을 수립하고 신청인이 그 시험에 대한 응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제공할 것을 보장한다. 비용, 행정적 부담 및 관련된 절차의 무결성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은 그러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전자적 형식의 요청을 수용하고,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시험 과정의 그 밖의 측면에 전자적 수단의 사용을 고려하도록 권장된다.

인정

12. 양 당사국의 전문직 기관이 전문 자격, 면허, 또는 등록의 인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대화를 수립하는 데 상호 관심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요청이 있고 적절한 경우, 그 기관의 대화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독립성

13. 당사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승인과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이 요구되는 모든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독립된 방식으로 결정에 이르고 이를 집행하도록 보장한다.[15]

공표 및 이용 가능한 정보[16]

14. 제1.7조(투명성)에 더하여, 당사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서비스 공급자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이 그러한 승인의 취득, 유지, 개정 및 갱신을 위한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표[17]하거나 달리 서면으로 공개한다. 그러한 정보는 존재하는 경우,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1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규정은 특정한 행정 조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결정 과정 및 결정의 운영을 지칭한다.

[16] 제14항은 양 당사국이 특정 조치의 채택 전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하기 위한 상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제14항에 규정된 대안은 상이한 법적 시스템을 반영함을 인정한다.

[17] 이 조의 목적상, **공표**란 관보와 같은 공식 간행물 또는 공식 웹사이트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양 당사국은 전자 간행물을 단일 포털에 통합하도록 권장된다.

가. 요건 및 절차

나. 관련된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처

다. 수수료

라. 기술표준

마. 신청에 관한 결정의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를 위한 절차

바. 면허 또는 자격 조건의 준수를 점검하거나 집행하기 위한 절차

사. 공청회 또는 의견을 통한 것과 같은 공공참여를 위한 기회, 그리고

아. 신청의 처리를 위한 예시적 기간

문의처

15. 각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조치에 관하여 서비스 공급자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으로부터의 문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유지하거나 수립한다.[18] 당사국은 문의처와 연락처 또는 적절한 경우 그 밖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그러한 문의를 다루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기술표준

16. 각 당사국은 기술표준을 채택할 때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개방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표준을 채택하도록 권장하고, 기술표준을 개발하도록 지정된, 관련 국제기구[19]를 포함한 모든 기관이 개방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18] 자원 제약은 문의에 응답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데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19] “관련 국제기구”란 이 협정의 양 당사국의 관련 기관에 가입이 개방된 국제기구를 지칭한다.

조치의 개발

17. 당사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승인과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그러한 조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20]에 기초한다.

나. 절차가 공정하고, 그 절차는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신청인이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다. 절차는 그 자체로 요건의 충족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라. 그러한 조치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21]

제8.10조
인정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표준 또는 기준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할 목적으로, 그리고 제3항의 요건을 조건으로, 당사국은 특정 국가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된 면허 또는 증명을 인정하거나, 자국의 관련 권한 있는 기관이 이를 인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조화를 통하여 또는 달리 달성될 수 있는 그러한 인정은 관련 국가와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기존의 것인지 또는 미래의 것인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관심이 있는 경우에, 다른 쪽 당사국에 자국과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

[20] 그러한 기준은 특히, 보건 및 환경 요건과 같은 당사국의 규제 요건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포함할 수 있다. 권한 있는 당국은 각 기준에 부여되는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다.

[21]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정당한 목적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차등 대우, 그리고 양 당사국에 의한 남녀 간 실질적 평등의 가속화를 목표로 하는 임시 특별 조치의 채택은 이 규정의 목적상 차별로 여겨지지 않는다.

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경험, 면허 또는 증명이나 충족된 요건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그 다른 쪽 당사국이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3. 당사국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자국의 표준이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쪽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의 차별 수단을 구성하거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부여하지 않는다.

4. 적절한 경우 언제나, 인정은 다자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은 인정에 대한 국제공통 표준과 기준 그리고 관련 서비스무역과 전문직의 수행을 위한 국제공통 표준의 수립과 채택을 위하여 관련 정부 간 기구 그리고 비정부 기구와 협력하여 작업한다.

제8.11조
지불 및 송금

1. 제8.12조에 상정된 상황하에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자국의 구체적 약속과 관련된 경상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송금 및 지불에 대하여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통화기금협정」(이하 “IMF 협정”이라 한다)과 합치하는 외환 조치의 사용을 포함하여, 협정에 따른 국제통화기금 회원국으로서의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당사국은 제8.12조에 따른 경우 또는 국제통화기금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그러한 거래에 관한 자국의 구체적 약속과 불합치하게 제한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8.12조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1.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국은 구체적 약속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지불 또는 송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약속을 한 서비스무역에 대한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 언급된 제한은

가. 다른 쪽 당사국과 비당사국을 차별하지 않는다.

나. IMF 협정과 합치한다.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상업적·경제적·재정적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한다.

라. 제1항에 기술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 일시적이며 제1항에 명시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제된다.

3. 그러한 제한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당사국은 자국의 경제 계획 또는 개발 계획에 더 필수적인 서비스의 공급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은 특정 서비스 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거나 유지되지 않는다.

4. 제1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제한 또는 이에 대한 변동은 신속하게 서비스무역위원회에 통보된다.

제8.13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서비스의 독점 공급자가 관련 시장에서 독점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그 당사국의 의무 및 구체적 약속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의 독점 공급자가 자신의 독점권 범위 밖에 있고 그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직접 또는 계열사를 통하여 경쟁을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가 자국의 영역에서 그러한 약속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하

여 자신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3.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의 독점 공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를 설립, 유지 또는 승인하는 다른 쪽 당사국에 관련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이 조는 당사국이 공식적이거나 사실상 (가) 소수의 서비스 공급자를 승인하거나 설립하고, (나) 자국 영역에서 그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8.14조
영업 관행

1. 양 당사국은 제8.13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공급자의 특정한 영업 관행이 경쟁을 제약할 수 있고 이로써 서비스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조에서 “요청 당사국”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언급된 관행의 폐지를 위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조에서 “피요청 당사국”이라 한다)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부여하며, 해당 사안과 관련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비밀이 아닌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협력한다. 피요청 당사국은 또한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리고 요청 당사국에 의한 비밀보호와 관련한 만족스러운 합의를 조건으로, 그 밖의 이용 가능한 정보를 요청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8.15조
혜택의 부인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법인이고,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법인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나 이 장의 혜택이 그 법인에 부여되면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한쪽 당사국이 해상운송 서비스 공급의 경우로서 다음에 의하여 서비스가 공급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그 당사국은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가. 비당사국의 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그리고

나. 선박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운영 및/또는 사용하는 비당사국의 인

2.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면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인 경우, 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제8.16조
검토

1. 양 당사국 간 서비스무역의 추가적 자유화를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WTO의 주관하에 진행 중인 작업의 결과로서의 서비스 자유화 발전을 고려하여 양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를 공동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2. 최초의 그러한 검토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실시한다.

제8.17조
서비스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서비스무역위원회(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의 검토

나. 서비스무역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의 식별 및 권고, 그리고

다.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협의

3.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내에 회합하며, 그 후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2년마다 회합한다. 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각 회의의 결과를 알린다.

부속서 8-가[1]
금융서비스

정의

1. 이 부속서의 목적상,

금융서비스란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융적 성격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모든 보험과 보험 관련 서비스, 그리고 모든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를 포함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가. 직접보험(공동보험 포함)

1) 생명보험

2) 손해보험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라.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마.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바. 소비자대출, 주택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융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부속서는 이 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사. 금융리스

아. 신용, 선불 및 직불 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자. 보증 및 약정

차.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로 거래하는 것

1) 단기금융상품(수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포함)

2) 외환

3)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파생상품

4) 스왑, 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5) 양도성 증권

6)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

카.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타. 자금중개업

파.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모든 형태의 집합투자운용・연금기금운용・보관・예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운용

하. 증권, 파생상품 및 그 밖의 유통증권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거.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너. 신용조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마호부터 거호까지 기재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나, "금융서비스 공급자"라는 용어는 공공기관을 포함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 기능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으로서, 당사국의 정부,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또는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관. 상업적인 조건하에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는

나.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으로서 그러한 기능을 행사하는 때의 민간기관

적용범위 및 정의

2. 이 부속서는 금융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이 부속서의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언급은 제8.1조에 정의된 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3. 제8.1조에 규정된 **서비스** 정의의 목적상,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다음을 말한다.

가.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이 통화 또는 환율정책 추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

나. 법정사회보장제도 또는 공적퇴직연금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활동, 그리고

다. 공공기관이 정부의 계좌로, 또는 정부의 보증하에, 또는 정부의 금융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그 밖의 활동

4. 제8.1조에 규정된 **서비스** 정의의 목적상, 당사국이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제3항나호 또는 제3항다호에 언급된 모든 활동을 공공기관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서비스**는 그러한 활동을 포함한다.

5. 제8.1조에 정의된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는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규제

6. 이 장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투자자·예금자·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의 보호 또는 금융제도의 완전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로 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그러한 조치가 이 장의 규정과 합치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조치는 이 장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7.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 고객의 사적 사항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의 공개를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인정

8.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그 당사국의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인정은 조화를 통하여 또는

달리 달성될 수 있으며, 관련 비당사국과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9. 미래의 것인지 또는 기존의 것인지에 관계없이 제8항에 언급된 협정이나 약정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은, 동등한 규제, 감독, 그러한 규제의 이행이 존재하고,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 협정이나 약정의 당사자 간에 정보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쪽 당사국에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협상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협상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한쪽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한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분쟁해결

10. 건전성 문제와 그 밖의 금융사안에 대한 분쟁 패널은 분쟁 중인 특정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다.

부속서 8-나[1]

통신

정의

1. 이 부속서의 목적상,

최종이용자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 외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 또는 가입자를 말한다.

필수 설비란 다음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는 것, 그리고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것

상호접속이란 구체적 약속이 행해진 경우,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 모바일 로밍 서비스란 최종이용자가 자신의 본국 공중 통신 망이 위치한 영역 밖에서 음성, 데이터 또는 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위하여 자신의 본국 모바일 단말기 또는 그 밖의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들 간 상업적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상업적 모바일 서비스를 말한다.

면허란 어떠한 인이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국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러한 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양허, 허가 또는 등록을 포함하는 모든 승인을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부속서는 이 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말한다.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망 요소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에 이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하며, 그러한 설비 또는 장비에 의하여 제공되는 특징, 기능 및 성능을 포함한다.

비차별적이란 동종의 상황에서 동종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그 밖의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한다.

번호이동성이란 동일한 범주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 간에 전환할 때에 동일한 번호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 통신 서비스 최종이용자의 능력을 말한다.

공중 통신 망이란 명시된 망 종단점 간에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공중 통신 기반을 말한다.

공중 통신 서비스란 당사국이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요구하는 모든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한 서비스는 특히 고객의 정보를 형태나 내용면에서 종단 간의 변경 없이 둘 이상의 지점 간의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를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전화 및 데이터 전송을 포함할 수 있고, 부가서비스는 제외한다.

통신이란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메시지, 음향, 영상, 또는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한다.

통신규제기관이란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통신의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기관들을 말한다.

이용자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최종이용자 또는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부가서비스란 향상된 기능을 통하여 통신 서비스에 가치를 부가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각 당사국의 관련 법 또는 규정에 각각 정의된 그러한 서비스를 말한다.

적용범위

2. 이 부속서는 다음을 포함하여 통신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공중 통신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조치

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조치

다.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관한 그 밖의 조치, 그리고

라. 부가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조치

3. 방송국 및 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서비스 공급자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 이 부속서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케이블로 배급하는 것에 관한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4.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 구축, 취득, 임대, 운영 또는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거나,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 또는

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이나 케이블 배급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사의 방송 또는 케이블 설비를 공중 통신 망으

로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

접근 및 이용

5.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전용회선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건너 제공되는 모든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에 규정된 조건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보장한다.

6.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가. 공중 통신 망에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하고 부착하는 것

나. 소유 또는 전용 회선을 통하여 개별 또는 복수의 최종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다. 소유 또는 전용 회선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국경 간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와 접속하거나,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전용 또는 소유 회선과 접속하는 것

라. 교환, 신호, 처리 및 변환 기능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마. 모든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선택한 운용규약을 사용하는 것

7.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사내통신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또는 자국 국경을 건너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어느 한쪽 당사국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포함되거나 달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공중 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8.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메시지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9.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가.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 서비스 책임, 특히 그들의 망 또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 또는

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

10.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조건이 제9항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러한 조건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인터페이스규약을 포함하여,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하여 특정의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나. 필요한 경우, 그러한 망 및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요건, 그리고

다. 망과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과 그 장비를 그러한 망에 부착하는 것에 관한 기술적 요건

경쟁보장장치

1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유지한다.

12. 제11항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나.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다.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그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 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지 않는 것

번호이동성

13.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번호이동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상호접속

일반조건

14.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망 내의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설비 및 장비를 위한 상호접속을 제공하는 것을 요구받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상호접속은

가. 비차별적인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 포함) 및 요율에 따라

나.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품질로

다. 시의적절하게,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않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 포함)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그리고

라.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대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제공된다.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절차의 공개

15.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적용 가능한 절차를 공개한다.

상호접속 약정의 투명성

16. 각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신의 상호접속협정을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보장한다.

망 요소 세분화

17.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을 세분화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으로 제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요구되는 망 요소와 그러한 요소를 획득할 수 있는 공급자를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전주, 관로 및 도관에 대한 접근

18.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이 결정한, 지배적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전주, 관로, 도관 또는 그 밖의 구조물에 대한 접근을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한 조건 및 요율로 제공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9.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에게 제

18항에 따라 접근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전주, 관로, 도관 또는 그 밖의 구조물을 결정할 수 있다. 당사국은 이러한 결정을 할 때, 그러한 접근의 부족에 따른 경쟁적 효과,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러한 구조물이 경제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그 밖의 특정한 공익 요인과 같은 요인을 고려한다.

부가서비스의 공급조건

20.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이 부가서비스의 공급자로 분류한 자국 영역의 기업으로서 그 기업이 소유하지 않은 설비를 통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없다.

가. 그러한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공급할 것

나. 그러한 서비스 요율을 비용상 정당화할 것

다. 그러한 서비스의 요율표를 제출할 것

라.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자사 망을 특정 고객과 연결할 것, 또는

마. 공중 통신 망 외의 다른 망에 연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의 특정 표준 또는 기술규정을 준수할 것

21. 제20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특정 경우에 있어 반경쟁적인 것으로 판단한 부가서비스 공급자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또는 달리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20항에서 기술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제 모바일 로밍

22.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 성장 촉진 및 소비자 복지 향상에 일조할 수 있는 국제 모바일 로밍 서비스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요율 증진에 대하여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3. 당사국은 국제 모바일 로밍 서비스에 대하여 투명성과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소비자가 소매 요율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나. 소비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한쪽 당사국의 영역을 방문할 때 자신이 선택한 기기를 이용하여 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로밍에 대한 장애를 최소화한다.

보편적 서비스

24.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 또는 유지하려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정의할 권리를 가진다.

25.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 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자국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가 자국이 정의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보장한다.

허가 절차

26. 당사국이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할 때, 당사국은 다음을 공개한다.

가. 자국이 적용하는 모든 허가 기준 및 절차

나.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그 당사국이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기간, 그리고

다. 발효 중인 모든 허가의 조건

27. 각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의 거부, 취소, 갱신 거부 또는 조건 부과 사유를 신청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통신규제기관

28.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모든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기능적으로 독립적일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그러한 공급자에 대하여 지분[2]을 소유하거나 운영 또는 경영 역할을 유지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29.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의 결정 및 절차가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도록 보장한다.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30. 각 당사국은 주파수 · 번호 ·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자국의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31. 각 당사국은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하거나 할당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제공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한다.

32.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며 주파수를 관리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제8.3조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는 전파 및 주파수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현재 및 미래의 수요와 전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분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은 통신규제기관 외의 당사국 정부기관이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통신 분쟁의 해결

33.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이의신청

가. 1)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는 제5항부터 제19항까지에 규정된 사안에 관한 조치와 관련하여,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 간 분쟁을 시의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면허를 획득하고, 당사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는, 그 공급자가 상호접속을 요청한 후 공개적으로 명시된 합리적 기간 내에, 그러한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조건과 요율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사법적 심사

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이익이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서비스 공급자는,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 당사국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당국에 의하여 그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어떠한 당사국도, 관련 사법기관이 달리 판정하지 않는 한, 사법적 심사의 신청이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근거를 구성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투명성

34.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관련 정보가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가. 서비스 요율 및 그 밖의 조건

나. 그러한 망 및 서비스와의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규격

다. 그러한 접근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의 준비 및 채택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

라.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부착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마. 통보 또는 면허 요건이 있으면, 그러한 요건

기술 선택의 유연성

35. 각 당사국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그들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기술을 선택할 유연성을 갖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36. 제35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그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치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안되어야 하고,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입안, 채택 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부속서 8-다[1]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

일반 원칙

1. 이 부속서는 국경 안전을 보장하고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국내 노동력과 영구적 고용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양국의 법 및 규정과 이 장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약속에 따라 자연인의 입국과 일시 체류를 촉진하고, 각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영향을 미치는 투명한 조치를 수립하려는 양 당사국의 공동의 희망을 반영한다.

일반 의무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이 부속서와 관련된 자국의 조치를 적용하며, 특히,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부당하게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이 장에 따른 서비스 무역을 지연하지 않도록 그 조치를 적용한다.

입국 및 일시 체류의 허용

3. 양 당사국은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대하여 약속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약속과 그 약속을 규율하는 조건은 제8.6조에 언급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다.

4. 이 부속서에 따라 그리고 각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를 조건으로, 한쪽 당사국은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 약속에 규정된 범위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에게 입국 또는 일시 체류의 연장을 허용한다. 다만, 그 자연인은

가. 허용 당사국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규정된 그 당사국의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나. 입국 및 일시 체류 또는 일시 체류 연장을 위한 모든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해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부속서는 이 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야 한다.

5.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입국 및 일시 체류를 위한 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부과하는 수수료가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부당하게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이 장에 따른 서비스 무역을 지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리적임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6. 한쪽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입국을 허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연인이 전문직을 수행하거나 달리 사업 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어떠한 면허 또는 의무적 행동 규범을 포함한 그 밖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부터 면제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투명성

7. 제1.7조(투명성)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가. 다른 쪽 당사국이 이 부속서와 관련된 자국의 조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자료를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나.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가능한 한도에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명시된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을 포함하여 이 부속서에 따른 입국 및 일시 체류 요건에 관한 설명 정보를 준비, 공표 및 이용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다.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명시된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8.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명시된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와 관련된 신청 및 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9.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신청의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 또는 신청의 결과에 대한 결정을 과도한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협력

10.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된 협력 분야를 논의할 수 있으며, 이는 협상 과정에서 어느 한쪽 당사국이 제안한 분야 또는 양 당사국이 확인할 수 있는 그 밖의 분야를 고려한다.

분쟁해결

11. 양 당사국의 관련 당국은 이 부속서의 이행 및 운영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협의를 거쳐 호의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12. 양 당사국이 제1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 부속서의 이행 및 운영으로부터 발생된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 제15장(분쟁해결)이 그 사안에 적용된다.

13.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국은 이 부속서에 따른 입국 허용의 거부에 대하여 제15장(분쟁해결)에 따른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다.

가. 그 사안이 반복된 관행과 관련되는 경우, 그리고

나. 영향을 받은 자연인이 그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행정적 구제를 완료했을 경우

14. 권한 있는 당국이 행정 절차가 개시되었을 때부터 1년 내에 그 사안에 대하여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않았고,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그 자연인이 야기한 지체에 기인하지 않는 경우, 제13항나호에 언급된 구제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부속서 8-라-1

한국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수평적 양허			
CPC(유엔 잠정 중앙상품분류: 통계문서시리즈 M No. 77, 국제 경제사회국, 유엔통계사무소, 뉴욕, 1991) 코드 번호 위의 별표(*)는 이 양허표상의 해당 서비스 하위 분야가 주어진 CPC 코드 번호에 따라 분류된 서비스 하위 분야의 일부 또는 일부들만을 포함하는 것을 표시한다. "약속 안함*" 이란 기술적 실현가능성의 부족으로 약속하지 않음을 말한다.			
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	3) 아랍에미리트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에너지 및 항공 등의 분야에서 기존 국내 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음. 새롭게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제한될 수 있음.	3) 토지 취득은 다음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기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기업의 토지취득은 허용됨. 그리고 (ii)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기업으로 간주되는 기업과 외국기업 지점의 토지 취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조건으로 하여 다음의 정당한 사업 목적으로 허용됨. •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 중 서비스 공급에 사용되는 토지, • 해당 법령상 기업 고위임원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또는 • 해당 법령에 규정된 토지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세제 혜택을 포함한 보조금에 대한 자격은 해당 법에 따라 한국에 설립된 기업으로 제한될 수 있음. 연구개발 보조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으로 취급되는 거주자는 한국 주식에 포트폴리오 투자 시 내국민 대우를 부여받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 아래와 같이 정의된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외에는 약속 안 함. **A. 기업 내 전근자(ICT)** 한국에 설립된 자회사, 지사 또는 지정된 계열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피고용인이며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 기업에 고용된 자로서 다음 중 하나인 자연인: (i) 임원 – 조직 내에서 주로 조직의 경영을 지휘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넓은 재량을 행사하며, 그 회사의 고위급 임원, 이사회 또는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휘만을 받는 자. 임원은 그 조직의 서비스의 실제 공급과 관련된 임무는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음. (ii) 고위관리자 – 조직 내에서 주로 조직 또는 그 조직의 부서를 지휘하고, 그 밖의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며, 채용 및 해고 권한이나 채용, 해고 또는 그 밖의 인사 조치를 권고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일상적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고위관리자는 감독을 받는 피고용인이 전문직이 아닌 한 제일선의 감독자는 포함하지 않으며, 주로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4) 기업 내 전근자(ICT), 상용 방문자(BV), 서비스 판매자(SS)에 관한 조치를 제외하고는 약속 안 함. 계약 서비스 공급자(CSS)에 대해서는 약속 안 함. 토지취득은 토지 임차권 허용 외에는 약속 안 함. 세제 혜택을 포함한 보조금에 대한 자격은 해당 법에 따른 거주자로 제한될 수 있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도 포함하지 않음. (iii) 전문가 – 조직 내에서 지속적인 전문성을 지닌 고급 지식과 조직의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또는 경영에 대하여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하는 인. A에 정의된 자연인의 입국 및 체류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제한되며, 신청인이 위 조건을 여전히 충족하는 경우 체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다음의 정의는 투명성 목적으로 규정한다.

i) 자회사는 그 회사의 모회사가 총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한 기업, 회사 또는 그 밖의 법적 실체로 정의함.
ii) 지점은 동일한 조직의 운영부서 또는 대표사무소로 정의하고, 그 운영부서 또는 대표사무소는 아랍에미리트 영역에 소재한 모회사를 대표할 포괄적 권한을 가진 피고용인을 보유함.
iii) 지정된 계열사는 동일한 모회사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두 개의 자회사 중 하나, 또는 파트너십, 회사 또는 그 밖의 법적 실체의 파트너로 두 법적 실체 각각의 총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두 실체 각각의 총 투자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동일한 주주단체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두 개의 법적 실체 중 하나로 정의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상용 방문자(BV) 아랍에미리트 서비스 공급자의 한국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 설립의 책임이 있는 자연인으로서, 한국 내에 서비스 공급자의 대표사무소, 지점 또는 자회사가 없고 그 자연인은 직접적인 판매 또는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지 않음. **C. 서비스 판매자(SS)** 한국 영역에 기반을 두지 않고 한국 내에 소재한 소득원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 자연인으로서,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 판매가 일반 공중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자연인이 그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판매를 교섭할 목적으로 그 서비스 공급자를 대표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B와 C에 정의된 자연인의 입국 및 체류는 90일의 기간으로 제한됨. **D. 계약 서비스 공급자(CSS) – 법인의 피고용인** 다음의 조건과 분야별 구체적 파트에 언급된 모든 추가 조건의 적용을 받는, 한국에 상업적 주재가 없는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계약된 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자연인.[1] 그 법인은 공급되는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한국에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서비스 계약을 취득해야 함.		

[1] "D" 유형에 따라 이루어진 수평적 또는 구체적 약속은 이 장에 따라 한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고용에 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그 계약은 한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함. 입국하려는 자연인은 입국허가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그 법인의 피고용인이어야 할 것임. 그 자연인은 한국의 법, 규정 또는 요건에 따라, 그리고 워싱턴 어코드, EMF 국제 등록 전문 엔지니어 및 APEC 엔지니어와 같은 관련 국제기구의 인정에 따라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학문적, 전문적 자격 및 전문적 자격을 갖춘 능력에 기반한 경험을 보유해야 함. 그 자연인은 한국에 소재한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도록 요구됨. 약속은 특정 하위 분야에 달리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적 제한(적용 양식 및 수준은 추후 결정함)의 적용을 조건으로 할 수 있음. 계약은 한국의 전문직 직함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함이 없이, 다음의 서비스 공급 활동 또는 하위 분야에서 체결될 것이 요구됨. – 아랍에미리트에 소재한 자연인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장비 또는 기계를 구입하는 한국의 법인을 위한, 건설 및 발전 장비 외의 산업 장비 또는 기계의 설치, 관리 또는 수리와 관련된 서비스 – 정보기술, 전자상거래, 생명공학, 나노기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술, 디지털 전자공학 및 환경 산업에 적용되는 자연과학에 관한 기술적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 – 한국의 회계법인 또는 회원 계약을 통한 사무소에 대한, 외국 회계 기준 및 감사, 공인회계사 연수, 감사 기법 전수, 그리고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위한 자문 서비스 – 공동계약의 형태로 한국의 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와의 협업을 조건으로 하는 건축 서비스 – 경영 컨설팅 서비스 다음 서비스 분야의 전문 엔지니어 –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와 관련된 자문 서비스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기반 이행 서비스 – 자료 관리 서비스 – 자료 시스템 서비스 – 자동차에 대한 특수 엔지니어링 설계 서비스 D에 정의된 자연인의 입국 및 체류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계약 기간으로 제한됨.		
투명성 목적을 위한 주석 1. 입국과 일시 체류가 허가된 자연인은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을 준수함. 2. 자연인의 일시적 이동에 관한 한국의 약속은 노사분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 분야별 구체적 약속			
1. 사업 서비스 A. 전문직 서비스 a. 법률 서비스 (CPC 861*) 서비스 공급자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대한 자문 서비스로서 다음을 제외함. (i) 법원 및 그 밖의 정부기관에서의 사법 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률 문서의 준비 (ii) 공증 증서의 준비 위탁을 위한 법적 대리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대표사무소 형태로만 가능. 한국의 변호사 자격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현지 변호사와의 제휴 또는 그 변호사의 고용은 허용되지 않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법자문사는 1년에 최소 18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것이 요구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국제상사중재에서의 대리는 허용됨. 다만, 중재에서 적용 가능한 절차법과 실체법이 외국법자문사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법이어야 함. (ii) 회사 이름의 사용은 허용됨. 다만, 한글로 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라는 명칭과 함께 사용되어야 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i) 노동 분야 자문서비스 또는 한국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또는 한국의 정부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나 상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행위, 그리고 (iv) 한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가족관계 또는 상속에 관한 법률 사건에 관한 행위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주석

다음 정보는 투명성 목적으로만 규정함.

i)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최소 3년 동안 법률실무에 종사했어야 하며, 그 관할국의 법조계에서 유효하고 적정하게 종사하고 있어야 함.

ii)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함. 동 대표사무소는 법무부장관이 승인한 외국법자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됨. 동 대표사무소는 신용과 전문성을 보유해야 하며,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함. 대표사무소의 대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쌓은 3년의 경력을 포함하여 최소 7년 동안 법률실무에 종사했어야 함.

iii) 대표사무소는 이윤추구행위를 할 수 있음. 다만, 한국 내에서의 그러한 주재는 적절한 사업계획과 재정기반을 유지해야 하고, 「외국법자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함.

iv) 이 분야의 약속의 목적상, 아랍에미리트의 관련 법에 따라 조직되고 아랍에미리트에 본사를 둔 법무회사(로펌)만이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음. 아랍에미리트가 아닌 국가의 법무회사(로펌)의 지점, 현지 사무소,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어떠한 유형의 종속적 또는 의존적 법적 실체도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음.

v) 한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a)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법무회사(로펌)가 어떠한 유형으로라도 한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자격 부여, 승인, 등록, 허용 및 감독 그리고 그 밖의 요건에 대한 제한, (b)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변호사, 법무회사(로펌),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세사와 동업, 상사연합, 제휴 또는 법적 유형을 막론하고 그 밖의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대한 제한, (c)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내에서 한국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세사를 고용하는 데 대한 제한, 그리고 (d) 외국법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CPC 862)	1) 감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2) 감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3)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공인회계사에 의한 개인 사무소, 감사반 및 회계 법인(유한회사)만 허용됨. 감사반 및 회계 법인(유한회사)의 공인회계사만 감사서비스 공급이 허용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1)2)3) 한국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는 연회비를 납부하고, 전 세계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국제회계조직의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한국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에 대해서는 회원계약을 통하여 다음의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음. – 외국회계기준 및 감사에 대한 자문, 공인회계사 연수, 감사기법 전수 및 정보 교환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인회계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통과 후 한국에서 2년의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함.	4) 본국의 법에 따라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제회계법인에 고용된 자연인이 상기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허용됨. 이러한 인력의 입국 및 체류는 1년으로 제한되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함.
c. 세무 서비스 (CPC 863)	1) 세무조정서비스 및 세무대리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2) 세무조정서비스 및 세무대리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3)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에 의한 개인사무소, 세무조정반 및 세무대리법인(유한회사)만이 허용됨. 세무조정반 및 세무대리법인(유한회사)의 세무사만 세무조정서비스 공급이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세무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시험 통과 후 한국에서 6개월의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건축 서비스 (CPC 8671)	1) 한국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건축사와의 공동계약을 통하여 외국 건축사에 의하여 서비스가 공급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2)4) 한국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건축사와의 공동계약을 통한 외국 건축사의 서비스 공급은 허용됨. 5년의 전문 경력을 이수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하여 그 자격이 한국 건축사와 동등한 전문직으로 인정되는 외국 건축사 자격자는 한국에서 시행되는 인턴 개발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도 건축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이들은 건축사 자격 시험의 다음 두 과목에 통과함으로써 한국 건축사 자격 취득이 가능함. (a) 건축설계 I, 그리고 (b) 건축설계 II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 (CPC 867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수의료 서비스 (CPC 93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a.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관련 자문 서비스 (CPC 84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소프트웨어 시행 서비스 (CPC 84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CPC 84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CPC 84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타(CPC 845, 84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연구개발 서비스			
a.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해양과학조사에 대하여, 한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려는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전에 허가 또는 동의를 획득해야 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학제간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부동산 서비스			
중개 서비스 (CPC 82203*, 82204*, 82205*, 82206*)	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감정평가 서비스 (CPC 82201*, 82202*) 토지 가격 책정과 수용에 대한 보상 등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감정평가 서비스는 제외함.	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a. 선박 관련 (CPC 8310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항공기 관련 (CPC 83104)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인 지분참여 50퍼센트 미만의 합작투자에 한정하여 허용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회사의 대표자는 한국 국민이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그 밖의 운송장비 관련 (CPC 83101, 83105*)[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관련 (CPC 83106-831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 83105*: CPC 83105 중 15인승 미만의 승합차에 한정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기타 개인 또는 가정 용품 관련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 (CPC 83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그 밖의 사업 서비스 a. 광고 서비스 (CPC 8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 (CPC 86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경영 컨설팅 서비스 (CPC 86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프로젝트 경영 서비스 (CPC 8660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성분과 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1*)[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심사 기준: 기존의 국내 공급자의 수 및 이들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공중 보건, 안전 및 환경의 보호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물리적 성질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2)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통합 기계 및 전기 시스템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3*, 86769*)[4]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86761*: CPC 86761 중 대기, 수질, 소음 수준 및 진동 수준에 대한 검사, 시험 및 분석 서비스만을 포함함.

[4] 86763*, 86769*: CPC 86763, 86769 중 전기 제품의 검사 및 분석 서비스만을 포함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기술적 진단 서비스 (CPC 8676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 서비스 (CPC 8811* , 88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가금류 감별 서비스 (CPC 88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공에 의한 산불 진화 및 병해충 방제를 제외한 임업 부수 서비스 (CPC 881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어업 관련 자문 서비스 (CPC 88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h. 광업 부수 서비스 (CPC 88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제조업 부수 서비스: 신제품 제조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만 포함(CPC 884* 및 885*, 다만 88411, 88450, 88442 및 88493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k. 직업 소개 서비스(CPC 87201*, 87202*)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한 직업 소개 서비스는 제외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상법」에 따른 회사 형태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직업소개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목적의 주석

1. 회사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하여 결정되고 공표된 서비스 요금에 대한 규칙을 준수함.
2. 회사는 5천만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으로 설립됨. 공급자가 추가로 지점 사업소를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지점 사업소당 2천만원씩 총 납입자본금이 가산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1. 조사 및 경비 서비스 (CPC 87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한국 내에서 경비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투명성 목적상, 한국에서는 다음 5가지 종류의 경비 서비스만이 허용됨. (a) 시설경비 (b) 호송경비 (c) 신변보호 (d) 기계경비, 그리고 (e) 특수경비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m. 과학 및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및 그 밖의 과학적 예측 서비스 (CPC 8675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지표 및 조사 서비스 (CPC 86752)			
지표조사 서비스 (CPC 86753*) 지적 측량과 관련된 서비스는 제외함.	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지도제작 서비스 (CPC 86754*) 지적도 관련 서비스는 제외함.	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n. 장비의 유지 및 보수 (CPC 633, 8861, 8862, 8863, 8864, 8865, 886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o. 빌딩 청소 서비스 (CPC 874*, 다만, 87409 제외)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p. 사진 서비스(CPC 875)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q. 포장 서비스 (CPC 87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r. 인쇄 (CPC 88442*)[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r. 출판 (CPC 88442*) 신문 및 정기 간행물 출판 서비스는 제외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s. 국제회의 대행 서비스 (CPC 879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속기 서비스 (CPC 879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5] 88442*: CPC 88442 중 스크린 인쇄, 그라비어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t. 번역 및 통역 서비스 (CPC 8790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전문디자인 서비스 (CPC 87907)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B. 쿠리어 서비스 특급배달 서비스[6]를 포함하는 쿠리어 서비스 (CPC 7512*) 「우편법」에 따라 한국 우정당국이 배타적 권리[7]를 가지는 서신의 수집, 처리 및 배달 서비스는 제외함.[8]	1) 서비스의 제공은 항공 및 해로운송 형태로 제한됨. 2) 제한 없음. 3) 국내 쿠리어 공급을 위한 화물운송업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내 쿠리어 서비스 공급자를 인수하려는 인은 피인수자가 보유한 면허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조건하에 영업을 영위하는 한, 신규 화물운송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서비스의 제공은 항공 및 해로운송 형태로 제한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6] "특급배달 서비스"란 신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서, 인쇄물, 소포, 상품 또는 그 밖의 품목의 수집, 운송 및 배달로서, 서비스 공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그 품목을 추적하고 그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함.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a) 군복무자 또는 이와 동등한 신분을 지닌 자가 우체국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b)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그 부에 속할 수 있는 차량 정수를 결정하고 우체국에 그 차량을 배정하는 것

[8] 그러나 「우편법 시행령」 제3조는 민간 쿠리어 사업자가 다음을 포함한 상업서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 a) 화물에 첨부한 봉하지 않은 서류 또는 송장, b) 무역 관련 서류, c) 외국 자본 또는 기술 관련 서류, 그리고 d) 외국환 또는 그 관련 서류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한국 우정당국의 배타적 권리는 우편망 및 그 운영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함. 이 약속은 자신의 책임하에 고용하여 운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이 약속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및 항공기를 보유한 쿠리어 사업자에게의 항공 운항권 부여를 포함하지 않음.			
C. 통신 서비스 a. 음성전화 서비스 b. 패킷교환 데이터 전송 서비스 c. 회선교환 데이터 전송 서비스	1) 모든 서비스 공급은 허가받은 한국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조건으로 함. 2) 제한 없음. 3) 기간통신사업 허가 또는 별정통신사업을 위한 등록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정하여 부여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텔렉스 서비스 e. 전신 서비스 f. 팩시밀리 서비스 g. 전용회선 서비스 o. 기타 디지털 셀룰러 서비스 무선호출 서비스 PCS(개인통신 서비스) TRS(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 무선 데이터 서비스 IAS(인터넷 접속 서비스) PSTN(공중교환 전화망)과 연결된 VoIP(인터넷 전화) 서비스	외국정부나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음. 기간통신사업 허가는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9] 모두가 합하여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부여되거나 그 법인에 의하여 보유되지 않음.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모두가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10]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함.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KT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9] “의제외국인”이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한국의 관련 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80퍼센트(그 최대주주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라면 15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함.

[10] “기간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한 공급자를 말함. “별정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하지 않고(그러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는 소유할 수 있음)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설비를 통하여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말함. “전송설비”란 송신 지점과 수신 지점을 연결하는 유선 또는 무선 전송설비(회선설비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부가 서비스[11] h. 전자메일 i. 음성메일 j.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k. 전자적 데이터 교환 l. 저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을 포함한 고도/부가 팩시밀리 서비스 m.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n.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거래 처리 포함) o. 기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원격 컴퓨팅 서비스[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부가 서비스 공급자에게 데이터 전송 서비스의 공급이 허용됨.[13]

포함)를 말함.

[11] "부가 서비스" 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통신망설비를 통하여 제공되며,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여 전송하거나 처리하여 전송하는 통신 서비스를 말함.

[12]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원격 컴퓨팅 서비스는 제3자 통신을 매개하는 통신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음.

[13] 이용자의 데이터를 형태 또는 내용의 변경 없이 전송 및/또는 교환하는 통신 서비스(음성전화, 텔렉스, 팩시밀리 서비스 그리고 전용회선의 단순 재판매는 제외).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시청각 서비스			
a.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제작 및 배급 서비스 (CPC 96112*, 96113*) 케이블 TV 방송 서비스는 제외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음반 제작 및 배급 서비스(녹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건설 서비스 (CPC 511-518)	1) CPC 5111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CPC 5111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 유통 서비스[14] A. 위탁 중개인 서비스 (CPC 621, 다만, 62111, 62112 및 선물계약의 위탁 중개인 서비스는 제외)	1) 의약품 및 의료상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4] 다음 서비스는 제외함.
(a) 총포, 도검 및 화약류 거래
(b) 예술품 및 골동품, 그리고
(c) 다음의 개설 및 운영과 다음에서의 유통 서비스
(i) 지방 당국이 공영도매시장으로 공식 지정한 농축수산물 공영도매시장
(ii)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개설 및 운영하는 농수산물 공판장, 그리고
(iii)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 및 운영하는 가축시장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관세율할당의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 또는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도매 서비스 (CPC 622*, 다만, 62211 중 곡물 도매업, 62223, 62229 중 인삼, 홍삼 및 곡분 도매업, 그리고 62276 중 비료 도매업은 제외)	1) 의약품, 의료상품, 기능성 식품 및 공급형태 3상 제한 대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약속 안 함.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서비스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 중고자동차 도매업 – 가스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주요 기준: 합리적인 가격의 형성, 수급 균형을 위하여 기존 공급자의 수와 이들에 미치는 영향,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질서 있는 상행위. 또한 인구밀도, 교통, 환경오염, 지역적 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징과 공공의 이익 주류 도매 유통업을 하는 인은 관련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함.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입된 지정 한약재의 도매유통에 대한 수급조절을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소매 서비스 [CPC 61112, 61130, 61210, 613*(LPG 관련 소매거래 및 주유소 사업 제외), 631*(63108, 쌀, 인삼 및 홍삼 제외), 632]	1) 의약품, 의료상품, 기능성 식품 및 공급형태 3상 제한 대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약속 안 함. 2) 제한 없음. 3) 중고자동차 및 가스 연료에 대한 소매 서비스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기존 국내 공급자의 수와 이들에 미치는 영향, 인구밀도, 교통, 환경오염, 지역적 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징과 공공의 이익. 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됨.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으로서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한 자만이 안경사 또는 검안 영업에 종사할 수 있음. 면허를 받은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만이 영업을 위한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안경사 1인당 1개의 영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음. 의약품 소매유통 서비스(한약재 유통 포함)를 공급하는 인은 약국을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으며, 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LPG 관련 소매거래 및 주유소 사업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프랜차이징 (CPC 8929*)[1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주석 다음의 설명은 소매 서비스에 적용됨. 일반 공중에 대한 의약품의 직접 공급(약국)은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하여 허가받은 약사에 의해서만 허용됨.			

[15] 프랜차이징 서비스는 이 양허표의 도매 서비스 및 소매 서비스 분야에서 허용된 품목으로 한정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5. 교육 서비스[16]			
C. 고등교육 서비스[17] (CPC 923*) 학위 수여를 목적으로 정부 또는 공인평가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립고등교육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고등교육 서비스. 다음은 제외함. (i) 보건 및 의료 관련 고등교육 (ii) 유아·초등·중등 교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iii) 법학전문대학원, 그리고 (iv) 방송통신 대학 및 사이버 대학	1) 약속 안함. 2) 그 밖의 국내외 고등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그러한 인정된 학점이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됨. 3)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학교법인[18]만이 장관의 인가를 받아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함(사내대학은 학교법인 설립이 불필요). – 첨부 1에 기재된 교육기관의 형태만 가능함. – 고등교육기관의 신설, 확장 또는 이전은 수도권 지역[19]에서 제한될 수 있음.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16] 모든 서비스 공급형태를 통한 시장접근 및 내국민 대우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한국에서의 전문직 활동을 위한 입학, 등록 및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학위의 인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17] 고등교육기관의 형태는 고등교육서비스에 관한 첨부 1에 기재됨.

[18] "학교법인"이란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정규 교육기관을 설립할 목적으로만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을 말함.

[19] "수도권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대학(전문대학)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서의 전문대학, 대학 및 산업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외국 공인평가인정기구의 인정을 취득하거나, 해당 외국 정부의 인정 또는 추천을 획득한 외국 대학으로 제한됨. - 그 밖의 국내외 고등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그러한 인정된 학점이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됨. - 교육부장관은 각 교육기관의 학생 수를 제한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첨부 1(고등교육 서비스) 고등교육기관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기능대학은 제외): 「고등교육법」에 따라 (a) 2년부터 3년까지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또는 (b)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2. 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4년부터 6년까지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3. 산업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산업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4. 기술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문인력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2년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5. 사내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라 근로자를 교육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경영자, 연합체 또는 협의체가 설치 및 운영하고,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및 학위를 수여하는 평생교육시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성인교육 서비스[20] (CPC 924*) 사립 성인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성인교육 서비스. 다음은 제외함. (i) 학력을 인정하거나, 국내외 학점, 학위 또는 졸업장을 수여하거나 이와 연계된 교육 서비스 (ii)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선원법」에 따라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직업훈련 서비스 (iii) 방송을 통한 교육 서비스, 그리고 (iv) 정부가 위임한 권한에 따라 기관이 제공하는 직업훈련 서비스	1) 보건 및 의료 관련 성인교육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 첨부 2에 기재된 교육기관의 형태만 허용됨. – 교육감은 학원수강료를 규율할 수 있음. – 수도권 지역과 그 주변에서 교육기관의 설립 및/또는 확장은 제한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보건 및 의료 관련 성인교육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성인대상 학원에 강사로 고용되는 외국 국민은 학사 학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로서 한국에 거주해야 함.	

[20] 성인교육기관의 형태는 성인교육서비스에 관한 첨부 2에 기재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첨부 2(성인교육 서비스)

성인교육기관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학원(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설교육기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10명 이상에게 평생교육 또는 직업교육과 관련된 다음의 과목에 대한 교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학교, 도서관, 박물관, 직원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운전학원은 제외됨.

(a)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섬유 및 의복, 광업 자원, 국토 개발, 농업 및 임업, 해양 산업, 에너지, 공예, 환경, 운송 및 안전 관리

(b)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미용 경영, 식음료, 포장, 인쇄, 사진 및 피아노 조율

(c) 컴퓨터: 컴퓨터, 게임, 로봇, 데이터 처리, 통신 기기,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

(d) 간호 조무: 간호 조무

(e) 문화 및 관광: 출판, 영상 및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상품 및 관광

(f) 경영 및 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회계,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및 속독

(g) 국제: 성인 대상 외국어, 통역 및 번역

(h) 인문사회: 대학 편입, 공공 경영, 사업 경영, 회계, 통계 및 공무원 시험

(i) 기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꽃 기예와 공예, 만화, 연극, 모델, 화술, 실용음악, 바둑 및 웅변

2.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의 인가를 받거나, 교육부에 등록 또는 신고된 시설임. 평생교육시설은 성인을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사업장, 비정부기구, 학교, 언론기관, 그리고 지식 및 인력의 개발과 관련된 평생교육시설에 부설된 평생교육시설을 지칭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6. 환경 서비스			
A. 폐수 서비스			
폐수 처리 서비스 (CPC 9401*)[21]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폐기물 처리 서비스			
산업폐기물 처리 서비스 (CPC 9402*)[2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1] 9401*: CPC 9401중 산업폐수의 수집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함.

[22] 9402*: CPC 9402 중 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기타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저감 서비스 (CPC 9404, 940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환경 시험 및 평가 서비스 (CPC 9406*, 9409*)[2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토양 및 지하수 정화 서비스 (CPC 9406*)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환경 컨설팅 서비스 (CPC 94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3] 9406*, 9409*: CPC 9406 및 9409 중 환경영향평가 서비스만 해당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금융서비스에 대한 주해 1. 금융 분야는 기본적으로 금융서비스 부속서의 카테고리에 따라 재분류됨. 그러므로 하위 분야의 순서는 GATS/SC/48/Suppl.3/Rev.1의 약속상의 하위 분야와 다름. 2. 하위 분야의 기재사항은 현존하는 국내 금융서비스에만 적용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7. 금융서비스 두주: 모든 금융서비스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1)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고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을 조건으로 함.[24] (2) 한국의 약속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설립하거나 이에 대한 지배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국에서 동일한 금융서비스의 하위 분야에서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소유하거나 지배해야 한다는 제한을 조건으로 함.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최고경영자가 한국 영역 내에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음. (4) 금융서비스 부속서에 따른 건전성 사유로 한국은 모회사와 관련된 요건, 최소자본금 요건, 최소영업자금 요건, 영업 활동을 위한 영업 직원의 면허 및 승인을 포함한 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음. (5) 금융기관은 관련 법에 규정된 오직 한 종류의 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밖의 관련 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그 밖의 영업활동을 겸할 수 없음. (6) 한국이 자국 영역에 소재한 인, 그리고 소재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국민이, 아랍에미리트의 영역에 소재하는 아랍에미리트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금융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그러한 허용은 한국에 그러한 공급자에 대하여 한국 영역에서 영업을 하거나 구매권유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것임. 한국은 이 의무의 목적상 “영업” 및 “구매권유”를 정의할 수 있음. 다만, 그러한 정의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하여 한국이 한 약속과 불합치하지 않아야 함. (7) 한국은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아랍에미리트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에 대하여 등록 또는 인가를 요구할 수 있음.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한국의 영역에서 그 공급자가 공급해 온 금융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보 또는 통계 목적으로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한국은 그 공급자의 경쟁상의 지위를 저해하게 될 모든 공개로부터 그러한 비밀 영업 정보를 보호할 것임.			

[24] 이 두주는 그 자체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지점 또는 자회사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8) 금융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 및 소비자 이동을 통한 공급은 원화로 결제될 수 없음. 상업적 주재의 설립 후, 금융기관은 거주자와 원화로 표시되고 결제된 거래만 다룰 수 있음. 외화로 표시되거나 결제된 거래 또는 비거주자와의 거래는 승인이 필요함. (9) 지점소유 자산은 한국의 영역 내에 보유되어야 함. 금융기관의 본점 자본금은 국내 지점의 자금 조달 및 대출 활동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음. (10) 요구불예금 금리가 규제됨. (11) 금융기관의 자산 관리 및 운용이 제한됨. (12) 금융기관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음. (13) 파생상품을 포함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도입은 승인을 받아야 함.			
A.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i) 직접보험 a) 생명보험 서비스 상해보험 및 건강보험 서비스를 포함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생명보험회사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한국 생명보험회사와의 합작투자기업 설립은 허용되지 않음. 모집인을 포함한 보험 전문인력의 채용 및 고용이 제한됨. 각 설립체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손해보험 서비스	1) 해상수출입 적하보험 및 항공보험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손해보험회사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한국 손해보험회사와의 합작투자기업 설립은 허용되지 않음. 모집인을 포함한 보험 전문인력의 채용 및 고용이 제한됨. 각 설립체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i) 재보험 및 재재보험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재보험회사 및 재재보험회사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모집인을 포함한 보험 전문인력의 채용 및 고용이 제한됨. 한국 재보험회사 및 재재보험회사와의 합작투자기업 설립은 허용되지 않음. 각 설립체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i) 보험중개 및 대리 서비스 a) 보험 중개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보험중개회사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각 설립체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보험대리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각 설립체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v) 보험 부수 서비스: 하위 분야 a) 및 b)에만 적용됨. a) 손해사정 서비스[25] b) 보험계리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손해사정회사 및 보험계리회사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각 설립체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5]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 다음에 기재된 하위 분야에만 적용됨. (i) 예금[26] (ii) 대출[27] (iii) 금융 리스 (iv) 지급 및 송금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본국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영위하는 외국 금융기관(금융리스는 제외)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인은 관련 당국의 특별한 인가 없이 은행 지분의 10퍼센트까지(비금융서비스 기관의 경우 4퍼센트까지), 그리고 지방은행 지분의 15퍼센트까지 취득할 수 있음.[28] 인은 관련 당국의 특별한 인가하에 은행 및 지방은행의 100퍼센트까지 취득할 수 있음. 외국환 포지션은 규제됨. 현물환매각 초과 포지션은 미화 500만 달러 또는 자본금의 3퍼센트 중 큰 금액임.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26] 예금의 수취 또는 양도성 상품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발행에 의하여 은행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인수하는 업무.

[27] 융자 또는 어음할인을 통하여 은행이 대중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기 위하여 자금을 융자하는 업무.

[28] “인” 및 “비금융서비스 기관”의 정의는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름.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v) 보증 및 약정 (vi) 외환 서비스[29] (vii) 결제 및 청산[30]	주택청약저축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한 예금은 지정된 기관에서만 취급 가능함. 증권저축과 신용공여의 경우 한도와 운용상의 제한에 따름. 카드론과 같은 수단을 통한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대출은 제한됨. 신용카드 서비스에 대하여, 수수료 및 이자율과 같은 각종 요율에 대한 최고한도가 있음. 양도성예금증서 만기는 30일을 초과함. 외환거래시 실수요 원칙 및 실수요 증명 요건이 적용됨. 선물거래의 경우 실수요 증명 요건이 면제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무가 요구됨. 외환대출에 대한 한도 및 용도가 제한됨. 금융 리스, 신용 공여 및 증권저축회사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9] 외환의 발행, 송금 및 추심 업무.

[30] 금융결제원의 규약에 따른 은행의 어음 및 수표에 대한 결제 및 청산 업무.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viii)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자기 계좌 또는 고객 계좌로 거래하는 것 다음에 기재된 상품에만 적용됨. a) 단기금융상품(수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포함 b) 외환 c) 금융파생상품(선물 및 옵션 포함) d) 환율 및 이자율 상품(스왑 및 선도금리계약 포함) e) 양도성 증권 f)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금괴 포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본국에서도 동일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 각 설립체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x) 모든 형태의 증권발행에 참여 a) 증권발행 b) 증권인수 c) 증권모집 d) 그 밖의 증권 관련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모든 종류의 증권을 발행하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 각 설립체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x) 자산 운용: 다음에 기재된 서비스에만 적용됨. a)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b)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 운용 c) 보관 d) 신탁 [31] (투자일임업 포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자산운용회사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 신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업인 은행업 외의 업무에 종사하고 신탁업에 종사한다는 금융위원회의 승인(두 종류)이 요구됨. 부동산 신탁 사업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각 설립체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xi) 신용정보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기존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50퍼센트 미만의 지분참여를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xii)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 서비스 다음에 기재된 서비스에만 적용됨. a) 투자 자문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투자자문회사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 각 설립체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신용평가 및 분석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무보증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하려는 회사의 신용평가는 관련 당국이 지정한 신용평가회사가 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1] 수탁자가 위탁을 받아 신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업무.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9.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A. 호텔 및 레스토랑 (CPC 641, 6431*) CPC 6431 중 철도 및 항공 운송 관련 시설은 제외함. 음식 제공 서비스 (CPC 64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항공 운송 관련 시설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항공 운송 관련 시설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여행 알선 및 대행 서비스 여행 알선 서비스 및 여행 대행 서비스 (CPC 74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관광객 안내 서비스 (CPC 74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10.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A.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CPC 96191, 96192) 뮤지컬, 연극, 라이브 밴드, 오페라 등과 같이 개인 아티스트나 그룹에 의하여 제공되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뉴스제공 서비스 (CPC 962)	1)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는 연합뉴스사와 같이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와의 계약 체결을 통한 방법으로만 한국에서 뉴스통신을 공급할 수 있음. 2) 제한 없음. 3) 외국 뉴스통신사의 한국 내 지사 또는 지국의 설립은 기사취재 목적일 경우에만 가능함.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지사 또는 지국은 한국 내에서 뉴스통신을 배포할 수 없음.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한국에서 뉴스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a) 외국정부 (b) 외국인 (c) 한국 국민이 아니거나 한국에 주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뉴스통신사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나 편집인, 또는 연합뉴스사 또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음. (a) 외국 국민, 또는 (b)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않은 한국 국민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를 두지 않은 인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로 되어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d) 외국인이 25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무선국 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a) 외국 국민 (b)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c) 외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기타 게임 서비스 (CPC 964* 다만, 96492 제외)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레크리에이션 파크 서비스 (CPC 96491 다만, CPC96191, 96192 및 해변 서비스 제외)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11. 운송 서비스			
A. 해상운송 서비스[32]			
국제 운송 (CPC 7211*, 7212*)	1) a) 정기선 해운: 제한 없음. b) 벌크선, 부정기선 및 그 밖의 국제해운: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항구에서의 다음 서비스는 국제해상운송공급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함. 1. 도선 2. 예선 지원 3. 식량・연료 공급 및 급수 4.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폐기물 처리 5. 선석 배정 서비스 6. 항행원조 7. 통신, 급수 및 전기공급을 포함한 선박 운영에 필수적인 육상 기반 운영 서비스 8. 비상보수시설 9. 정박, 접안지 및 선박 접안 서비스
연안운송은 제외함	2)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한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 i) 국제여객해운: 약속 안함. ii) 국제화물해운: 「상법」 상에 명시된 주식회사만이 허용됨. b)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 제한 없음.	3) a) 제한 없음. b) 제한 없음.	
	4) a) 선박승무원: 약속 안함. b) 항만 노무자: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a) 약속 안함. b)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2] 해상운송 서비스에 관한 첨부 참조.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주석 관련 국내법상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 양허표는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 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운송을 포함하지 않음.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규정된 대륙붕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해운 부수 서비스			
해상화물취급 서비스 (CPC 741*)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만 내 창고업 (CPC 74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통관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해운대리업 서비스 (CPC 748*)[3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법」 상에 명시된 모든 회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3] CPC 748 중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외국운송사업 포함)을 주선하는 대리업 서비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컨테이너 스테이션 서비스 (CPC 741*)[34]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해상화물운송주선 서비스 (CPC 748*)[3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법」 상에 명시된 모든 회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해운중개 서비스 (CPC 748*, 749*)[3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법」 상에 명시된 모든 회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4] CPC 741 중 항만 지역에서 제공되는 컨테이너 스테이션 서비스.
[35] CPC 748 중 자기의 명의(계약상 외국주선인 포함)로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서비스.
[36] 748*, 749*: CPC 748 및 749 중 해상화물운송 중개 서비스 또는 선박의 용대선, 대여 또는 매매를 위한 중개 서비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선박 유지 및 보수[37]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상법」 상에 명시된 모든 회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선원 포함 선박 임대 (CPC 721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예선 서비스 (CPC 7214)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검수, 검량 및 감정 서비스 (CPC 745*)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7]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위하여 제공되는 선박 수리 및 관리, 선원 관리 및 해상보험과 같은 서비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항공 운송 서비스			
컴퓨터 예약 시스템(CRS) 서비스[38]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공기 유지 및 보수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8] 제8.1조의 정의에 따름.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지상 조업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철도 운송 서비스 a. 여객 운송 (CPC 7111) b. 화물 운송 (CPC 711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현재 운영 중인 노선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새로운 노선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철도 산업에서의 질서와 규율의 확립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철도 유지 및 보수 (CPC 8868의 일부)[39]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9] 철도 유지 및 보수 서비스에 대한 약속은 민간 소유 철도 시설에만 적용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철도 운송 부수 서비스 (CPC 741의 일부, CPC 7113의 일부)[40]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0] 철도운송 부수 서비스에 대한 약속은 민간 소유 철도 시설에만 적용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도로 운송 서비스 연안운송을 제외한 컨테이너 화물 운송 (CPC 7123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허가는 국제해운회사에만 부여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화물은 수출 또는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로 한정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파이프라인 운송 (CPC 7131*) 석유제품 운송에만 한정, 다만 LPG 운송은 제외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H. 모든 운송형태에 대한 부수 서비스 b. 항만구역 외의 창고업(CPC 742*) 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에 대한 서비스는 제외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그 밖의 운송 서비스 복합 운송 서비스 철도 화물 주선[41]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1] "철도 화물 주선"이란 철로 운송의 끝지점에서 수행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수집, 한국철도공사와의 철도화물 운송을 위한 계약의 체결, 화물 하역 및 배달과 같은 부수 서비스를 말함.

해상운송 서비스에 관한 첨부

1. 국제해운, 3.b)

"국제해상운송 서비스 공급을 위한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 란 다른 쪽 당사국의 국제해상운송 서비스 공급자가 그들의 고객에게 해상운송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점을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 해상화물취급 서비스

터미널 운영자를 포함한 하역회사가 수행하는 활동으로서, 항만인력단이 하역회사 또는 터미널 운영회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직된 경우 항만노무자의 직접적 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적용대상이 되는 활동은 다음의 조직 및 관리를 포함한다.

- 선박으로의/선박으로부터의 화물 선적/하역
- 화물의 고정/분리
- 선적 전 또는 하역 후 화물의 인수/인도 및 보호

3. 통관 서비스

이 서비스가 서비스 공급자의 주요 활동 또는 주요 활동의 일상적인 보조 활동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 수출 또는 화물의 통운송과 관련하여 다른 자의 통관절차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4.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

컨테이너의 적입/적출, 수리 및 선적에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항만 지역 내에 보관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5. 해운대리업 서비스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대리인으로서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 이상의 해운선사 또는 해운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대표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 견적부터 송장 작성까지 해상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마케팅 및 판매, 회사를 대신한 선하증권의 발행, 필요한 관련 서비스 취득 및 재

판매, 서류 준비, 그리고 사업정보의 제공
– 필요한 때, 선박 기항을 편성하거나 화물을 접수하는 회사를 대신한 업무 수행

6. 해상화물운송주선 서비스

해상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취득, 선적서류 준비 및 사업정보 제공을 통하여, 선적자를 대신하여 선적업무를 조직 및 점검하는 활동

7. 검수・검량・감정 서비스

– 검수 서비스: 화물을 선적 및 양하하는 경우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인도 및 인수를 증명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 검량 서비스: 화물을 선적 및 양하하는 경우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 감정 서비스: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 포함)과 관련된 검증, 검사 및 조사로 구성된 활동

부속서 8-라-2

아랍에미리트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서설

1. 이 부속서는 이 장에 따른 아랍에미리트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를 규정한다. 이 서설은 아랍에미리트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2. 양허표는 MTN.GNS/W/120 문서의 서비스분야별분류목록을 기초로 준비되었다. 달리 기술되지 않는 한, CPC 코드에 대한 언급은 잠정 중앙상품분류(통계문서시리즈 M No. 77, 국제 경제사회국, 유엔 통계사무소, 뉴욕, 1991)에서 사용되는 CPC 코드를 지칭하고 약속의 적용범위를 정의하도록 의도되었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수평적 양허			
별표(*)는 명시된 서비스가 MTN.GNS/W/120 문서의 서비스분야별분류목록의 다른 곳에 명시된 보다 집합적인 CPC 항목의 구성요소임을 나타낸다. 이중별표(**)는 명시된 서비스가 CPC 색인이 적용되는 전체 활동범위의 일부만을 구성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양허표에 포함된 서비스의 모든 분야 및 하위 분야[1]	3) 상업적 주재는 다음을 통할 것임. (i) 외국 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이 없는 대표사무소 또는 지점(100퍼센트의 외국인 소유가 허용됨), 또는 (ii) 아랍에미리트 법에 따라 허용된 법적 형태를 취하고, 아래의 구체적 분야에 규정된 최대 외국인 지분을 가진 회사 설립 일부 구체적 분야 및 하위 분야의 경우, 상업적 주재는 기술 이전,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 기술 지원 그리고 현지인력 교육 및 훈련 형태의 혜택을 조건으로 할 수 있음. (iii) 자유 구역: 아래의 구체적인 하위 분야에 규정된 자유 구역에서 100퍼센트 외국인 소유가 허용됨.	3) 토지 및 부동산 취득은 외국인이나 외국 국민이 주식을 보유하는 회사에는 허용되지 않음. 그러나 아랍에미리트에서 활동을 수행하도록 승인 받은 외국 회사는 허용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만 그리고 연방 및 에미리트 수준에서 부동산 소유를 규율하는 법과 규정에 따라 토지 및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음. (i) 정부 보조금을 받는 서비스는 아랍에미리트 국민에게만 부여될 수 있음. (ii) 외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아랍에미리트 내에서의 업무 또는 영업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직접세를 납부하도록 요구될 수 있는 반면, 현지 서비스 공급자 또는 아랍에미리트 회사는 GATS 제 14 조라호의 규정을 고려하여 유사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되지 않을 수 있음.	- 기업 내 전근자 배우자의 일할 권리는 아랍에미리트 노동법에 따라 허용됨. - 투명성: 노동, 거주 및 취업 허가 법에 관한 모든 규율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함.

[1] 아랍에미리트는 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서비스에서 어떤 약속도 제안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제안은 이러한 서비스에 따른 약속을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 다음 범주의 자연인의 입국 또는 일시 체류에 관한 조치 외에는 약속 안함. **A. 상용 방문자** 아랍에미리트 내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일반 대중에 대한 직접 판매 또는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서, 사업상 회의, 서비스 판매를 위한 협상을 포함한 사업상 접촉 또는 아랍에미리트에 상업적 주재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포함한 그 밖의 유사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랍에미리트에 체류하는 자연인: 이 범주의 인에 대한 입국 및 체류는 12 개월의 기간 내 90 일을 초과하지 않음. **B. 기업 내 전근자** 아랍에미리트 입국 신청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아랍에미리트 밖의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에 고용되어 있었으며 그 법인의 아랍에미리트 내 지점 또는 계열사로 전근하는 자로서, 아래에 정의된 관리자, 임원 및 전문가. 입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할 것임: (i) 관리자, 임원 및 전문가의 수는 각	4) 시장접근 열에 언급된 자연인의 범주에 관한 조치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서비스 공급자의 관리자, 임원 및 전문가 총수의 50퍼센트로 제한됨. (ii) 입국은 3년의 기간으로, 추가적인 기간으로 갱신이 가능함. (iii) 아랍에미리트 내 체류는 아랍에미리트 노동법 및 이민법을 조건으로 할 것임. **정의:** 관리자: 주로 조직 또는 조직의 부서나 하부 조직을 지휘하고 그 밖의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며 채용 또는 해고 권한이나 채용, 해고 또는 그 밖의 인사 조치(승진 또는 휴직 승인과 같은 것을 말함)를 권고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일상적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조직 내의 자연인. 관리자는 감독을 받는 피고용인이 전문직이 아닌 한 제일선의 감독자는 포함하지 않으며, 주로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도 포함하지 않음. 임원: 주로 조직의 경영을 지휘하고, 조직의 목표 및 정책을 수립하며,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넓은 재량을 행사하고, 그 회사의 고위급 임원, 이사회 또는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휘만을 받는 조직 내의 자연인. 임원은 그 조직의 실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임무는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음. 전문가: 전문성을 지닌 고급 지식을 보유하고 조직의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또는 경영에 대하여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하는 조직 내의 자연인.		
II. 분야별 구체적 약속			
1. 사업 서비스			
A. 전문직 서비스 a. 법률 서비스(CPC 861) 서비스 공급자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법에 대한 자문(CPC 861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비(非)아랍에미리트 변호사는 아랍에미리트 법원에서 변론하거나 공적 기관에서 대리하거나 공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CPC 8621 및 862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은 75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이 협정 발효부터 2년 후, 외국인 지분은 100퍼센트까지 허용될 것임.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세무 서비스 (CPC 8630) 다음 하위분야에 한정함. - 기업 세무 계획 및 자문(CPC 86301) - 기업 세무 준비 및 검토 서비스(CPC 8630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은 75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건축 서비스(CPC 8671) e. 엔지니어링 서비스(CPC 8672) f.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CPC 8673) g.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CPC 867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은 75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h.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CPC 93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은 70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외국인 지분 참여는 두바이헬스케어시티에서 100퍼센트까지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수의료 서비스(CPC 9320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은 75퍼센트까지로 제한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j. 조산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CPC 93191)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인 지분 참여는 49퍼센트까지로 제한되고,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a.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관련 자문 서비스(CPC 841) b. 소프트웨어 시행서비스(CPC 842) c.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CPC 843) d. 데이터베이스 서비스(CPC 844) e.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 기계 및 장비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CPC 84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그 밖의 컴퓨터 서비스(CPC 849)			
C. 연구개발 서비스 a.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CPC 851) b.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CPC 852) c. 학제간 연구개발 서비스(CPC 85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 및 리스 서비스(차량 관련 임대 및 리스 서비스 제외) a. 선박 관련 (CPC 83103) b. 그 밖의 운송장비 관련(CPC 83101 + 83102 + 83105) c.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관련(CPC 83106-831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은 70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그 밖의 사업 서비스 a. 광고 서비스(CPC 8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은 70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CPC 86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은 75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이 협정 발효부터 2년 후, 외국인 지분은 100퍼센트까지 허용될 것임.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경영 컨설팅 서비스(CPC 8650) d. 경영 컨설팅 관련 서비스(CPC 8660) e.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CPC 867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제조업 부수 서비스(CPC 884+885, 다만, 88442 제외)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은 75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이 협정 발효부터 2년 후, 외국인 지분은 100퍼센트까지 허용될 것임.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m. 과학 및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CPC 867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외에는 약속 안함.	약속 안함.	
n. 장비의 유지 및 보수(선박,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송 장비는 포함하지 않음)(CPC 633+ 8861- 886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o. 빌딩 청소 서비스(CPC874)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 사진 서비스(CPC 875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q. 포장 서비스(CPC 876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r. 인쇄 및 출판 서비스(CPC 8844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은 70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s. 국제회의 서비스(CPC 879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은 70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t. 기타(CPC 879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은 75퍼센트까지로 제한됨. CPC 87905에 대하여, 외국인 지분은 75퍼센트까지로 제한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이 협정 발효부터 5년 내 100퍼센트 외국인 지분이 허용될 것임. 4)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A. 우편 서비스(CPC 7511) 서류, 통상 우편물 및 소포의 취급으로 한정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은 49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쿠리어 서비스(CPC 75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은 49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통신 서비스			
수평적 양허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취해진 약속은 다음의 WTO 문서에서 제공된 양허 원칙에 기초한다: 기본 통신 서비스 약속에 관한 양허표 작성을 위한 노트(S/GBT/W/2/Rev.1) 및 전파 이용가능성에 관한 시장접근 제한(S/GBT/W/3) • 기본 통신에 대한 이 양허표는 전파 면허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상이한 사안에 대한 아랍에미리트 통신 및 통신디지털정부규제청(TDRA) 규제 체계에 따라 방송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2]			
	3) 아랍에미리트에 설치된 모든 네트워크는 아랍에미리트에 등록되고 외국인 지분이 49 퍼센트까지로 제한된 회사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함.		
a. 음성전화 서비스(CPC 7521) b. 패킷교환 데이터 전송 서비스(CPC 7523**) c. 회선교환 데이터 전송 서비스(CPC 7523**) d. 텔렉스 서비스(CPC 7523**) e. 전신 서비스(CPC 7522**) f. 팩시밀리 서비스(CPC 7521**+7529**) g. 전용회선 서비스(CPC 7522**+7523**)	1) 상업적으로 주재하는 회사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2) 거주자는 한국 및 아랍에미리트의 규제 체계에 따라 한국 영역에서 통신 서비스의 구매가 허용됨. 3) 복점. TDRA는 복점에 추가되는 공급자의 타당성을 고려할 것임. 상업적 주재가 요구되며 49퍼센트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조건으로 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2)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 "방송 서비스"는 소리 전송, 텔레비전 전송 또는 그 밖의 유형의 전송을 포함하여 일반 대중의 직접 수신을 의도하여 전송되는 무선통신 서비스로 정의된다. 아랍에미리트의 「통신법」에서 방송은 기본 통신 서비스의 일부가 아니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h. 전자메일(CPC 7523**) i. 음성메일(CPC 7523**) j.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CPC 7523**) k. 전자적 데이터 교환(EDI)(CPC 7523) l. 저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을 포함한 고도/부가 팩시밀리 서비스(CPC 7523**) m.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해당 없음)			
D. 시청각서비스(방송 제외) a.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제작 및 배급 서비스(CPC 9611) b. 영화 상영 서비스(CPC 9612) c. 녹음(CPC Ver. 2 9611) d. 시청각 후반제작 서비스(CPC Ver. 2 9613)	1) 권한 있는 아랍에미리트 당국으로부터 면허 및 승인 획득을 조건으로 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은 49퍼센트까지로 제한되고, 권한 있는 아랍에미리트 미디어 당국으로부터 면허 및 승인 획득을 조건으로 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권한 있는 아랍에미리트 당국으로부터 면허 및 승인 획득을 조건으로 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3.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A. 빌딩관련 일반건설업(CPC 512) B. 토목관련 일반건설업(CPC 513) C. 설치 및 조립 작업(CPC 514+516) D. 빌딩 완성 및 마무리 작업(CPC 517) E. 기타 건설현장에서의 사전 시공 작업(CPC 511) 전문건설공사(CPC515) 운영자를 동반하는 빌딩 또는 토목작업의 건설 또는 철거 장비 관련 임대 서비스(CPC 518)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i) 외국인 지분은 70퍼센트까지로 제한됨. (ii) 공항, 고속도로 및 스포츠 시설과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 프로젝트 및 미화 4억 5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외국인 지분은 100퍼센트까지 허용됨. 추가적 명확성을 위하여, (ii)에 따라 설립된 외국 회사는 미화 4억 5천만 달러 미만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허용되지 않을 것임.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유통 서비스			
B. 도매 서비스(CPC 622)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인 지분은 49퍼센트까지로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제한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소매 서비스 • 식품 소매 서비스(CPC 631) • 비식품 소매 서비스(CPC 632) • 자동차 판매(CPC 6111) •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 판매(CPC 6113) •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그리고 관련 부품 및 부속품 판매(CPC 6121)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인 지분은 49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프랜차이징(CPC 8929)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인 지분은 49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5. 교육 서비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중등교육 서비스(CPC 922) C. 고등교육 서비스(CPC 923) D. 성인교육(CPC 924) E. 그 밖의 교육 서비스 : 공교육은 제외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i) 제한 없음. (ii) 한국의 자연인은 교육기관을 설립 및 지휘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하도록 요구될 수 있음. 이는 또한 학교시설의 적합성 조건 및 양질의 교육 수준의 보장을 조건으로 할 수 있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6. 환경 서비스			
A. 폐수 서비스(CPC 9401) B. 폐기물 처리 서비스(CPC 9402) C. 위생 및 유사 서비스(CPC 940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기타 • 배기가스 정화 서비스(CPC 9404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오염된 토양 및 수질 처리, 개선(CPC 94060의 일부)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소음 저감 서비스(CPC 9405) • 자연 및 경관 보호 서비스(CPC 9406) • 그 밖의 환경 보호 서비스(CPC 94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7. 금융서비스			
수평적 양허 상업적 주재는 다음 활동을 위하여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에서 외국인 지분 100 퍼센트까지 허용된다: 은행 서비스(투자 은행, 기업 은행 및 민간 은행), 자본 시장(지분, 채무증서, 파생상품 및 상품의 거래), 자산 관리와 자금 등록, 보험과 재보험, 이슬람 금융 그리고 사업 절차 운영과 부수 서비스			
A.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수평적 양허 일반 조건 • 아랍에미리트 내 서비스 소비자가 한국 영역에서 서비스를 구매하는 능력에 대한 어떠한 제한의 부재도 비거주 서비스 공급자가 아랍에미리트 영역에서 구매를 권유하거나 적극적인 마케팅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약속을 의미하지 않음. • 상업적 주재는 아랍에미리트 관련 법에 포함된 외국 회사의 면허와 등록에 관한 규정을 따름. • WTO 금융서비스 부속서 제2항가호의 맥락 내에서, 아랍에미리트는 최소자본금 요건, 최소영업자금 요건 및 영업 활동을 위한 승인과 같은 건전성 사유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방해되지 않음.			
(i) 직접보험(공동보험 포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a) 생명 - 생명보험과 건강보험 서비스(CPC 81211 및 CPC 81212) • 연금기금운용은 제외함	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2) 약속 안함. 3) 투명한 경제적 수요심사는 새로운 외국 보험 회사의 지점 및 기존 외국 보험 회사의 새로운 지점의 상업적 주재에 적용됨. 이러한 경제적 수요심사는 새로운 보험서비스 공급, 현지 수요 증가 및 국제 표준과의 합치와 같은 기준에 기초함. • 외국인 지분은 아랍에미리트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회사 자본의 25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손해보험 서비스(CPC 8129) • 상해보험 서비스를 포함함	1) 해상 및 항공 보험을 제외한 모든 손해보험 서비스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해상 및 항공 보험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2) 해상 및 항공 보험을 제외한 모든 손해보험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해상 및 항공 보험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 투명한 경제적 수요심사는 새로운 외국 보험 회사의 지점 및 기존 외국 보험 회사의 새로운 지점의 상업적 주재에 적용됨. 이러한 경제적 수요심사는 새로운 보험서비스 공급, 현지 수요 증가 및 국제 표준과의 합치와 같은 기준에 기초함. – 아랍에미리트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회사와의 합작투자 설립은 허용되지 않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해상 및 항공 보험을 제외한 모든 손해보험 서비스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해상 및 항공 보험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2) 해상 및 항공 보험을 제외한 모든 손해보험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속 안 함. 해상 및 항공 보험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i)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른 곳에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보험 서비스(CPC 8129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은 49퍼센트까지로 제한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ii) 중개 및 대리 서비스와 같은 보험 중개 직접보험[3]을 취급하는 중개인에 한정(CPC 8140**)	1) 해상 및 항공 보험과 재보험 중개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해상 및 항공 보험과 재보험 중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2)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3) 외국인 지분은 49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2)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v) 보험 상담(CPC 8140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은 49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보험계리 서비스(CPC 81404)	1)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가 아랍에미리트 경제부에 등록되어야 한다는 점 외에는 제한 없음. (등	1)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접보험”이란 다음을 말한다: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 서비스(CPC 81211 및 CPC 81212)(연금기금운용 제외) 및 손해보험 서비스(CPC 8129)(상해보험 포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록 요건은 외국인 공급자가 자국 영역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 영역 내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은 49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손해 사정, 위험 평가 및 보험금 청산 서비스(CPC 81403)	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2)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3) 외국인 지분은 49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2)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보험 제외)			
(v)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i) 대표사무소 설립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ii) 은행 지점 운영을 위한 신규 면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i) 기존 금융 기관의 활동 확장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v) 외국인 지분은 49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vi) 소비자대출, 주택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융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i) 대표사무소 설립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ii) 은행 지점 운영을 위한 신규 면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ii) 기존 금융 기관의 활동 확장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v) 외국인 지분은 49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vii) 금융 리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i) 대표사무소 설립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 은행 지점 운영을 위한 신규 면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ii) 기존 금융 기관의 활동 확장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v) 외국인 지분은 49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viii) 신용, 선불 및 직불카드, 여행자 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i) 대표사무소 설립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ii) 은행 지점 운영을 위한 신규 면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ii) 기존 금융 기관의 활동 확장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v) 외국인 지분은 49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x) 보증 및 약정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i) 대표사무소 설립에 대해서는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제한 없음. (ii) 은행 지점 운영을 위한 신규 면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ii) 기존 금융 기관의 활동 확장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v) 외국인 지분은 49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x)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 계좌 또는 고객 계좌로 거래하는 것. A. 단기금융상품(수표, 어음, 양도성 예금 증서 포함) B. 외환 C.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파생상품 D. 스왑, 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E. 양도성 증권 F.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i) 대표사무소 설립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ii) 은행 지점 운영을 위한 신규 면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ii) 기존 금융 기관의 활동 확장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v) 외국인 지분은 49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xi)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i) 대표사무소 설립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ii) 은행 지점 운영을 위한 신규 면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ii) 기존 금융 기관의 활동 확장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v) 외국인 지분은 49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xii) 자금중개업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i) 대표사무소 설립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ii) 은행 지점 운영을 위한 신규 면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ii) 기존 금융 기관의 활동 확장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v) 외국인 지분은 49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외에는 약속 안함.	약속 안함.	
(xiii) 자산운용(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그리고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및 운용으로 한정)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i) 대표사무소 설립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ii) 은행 지점 운영을 위한 신규 면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ii) 기존 금융 기관의 활동 확장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v) 외국인 지분은 49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xiv)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i) 대표사무소 설립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ii) 은행 지점 운영을 위한 신규 면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ii) 기존 금융 기관의 활동 확장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v) 외국인 지분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9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xv) 신용조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v)호부터 (xv)호까지에 기재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i) 대표사무소 설립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ii) 은행 지점 운영을 위한 신규 면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ii) 기존 금융 기관의 활동 확장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v) 외국인 지분은 49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8. 보건 및 관련 사회 서비스 (1.A.h-i.에 기재된 것은 제외)			
A. 병원 서비스(CPC 931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 해당 지역의 병원과 의료 및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보건 센터의 수를 고려한 경제적 수요심사에 기초하게 될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외국인 지분은 100퍼센트가 허용됨. – 외국인 지분 참여는 두바이헬스케어시티에서 100퍼센트까지 허용됨. 경제적 수요심사가 요구되지 않을 것임.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그 밖의 보건의료 서비스 (CPC 93191을 제외한 CPC 931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해당 지역의 병원과 의료 및 보건 센터의 수를 고려한 경제적 수요심사에 기초하게 될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외국인 지분은 100퍼센트가 허용됨. 외국인 지분 참여는 두바이헬스케어시티에서 100퍼센트까지 허용됨. 경제적 수요심사가 요구되지 않을 것임.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9.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A. 호텔 및 레스토랑(케이터링 포함)(CPC 64110, 64120 및 642, 64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 호텔: 외국인 지분은 49퍼센트까지로 제한됨. 호텔 경영에 대하여, 외국인 지분이 70퍼센트까지로 제한됨. – 레스토랑: 외국인 지분이 70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여행 알선 및 여행 대행 서비스(CPC 7471) 움라(Umra)와 하지(Hajj)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는 제외함(즉, 이슬람 순례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C. 관광객 안내 서비스(CPC 74720) 움라(Umra)와 하지(Hajj)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는 제외함(즉, 이슬람 순례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은 49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10.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시청각 서비스 제외)			
A.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연극, 라이브 밴드 및 서커스 서비스를 포함함)(CPC 9619) 연극, 라이브 밴드 및 서커스 서비스로 한정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은 75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뉴스 제공 서비스(CPC 962 - 두바이 미디어 시티 내로 한정)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D. 스포츠 및 그 밖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오직 CPC 96491- 공원 및 공공 정원 서비스로 한정)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인 지분은 75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포함한 게임 서비스(96492를 제외한 CPC 964**)	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권한 있는 아랍에미리트 당국으로부터 면허 및 승인 획득을 조건으로 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은 49퍼센트까지로 제한되고, 권한 있는 아랍에미리트 당국으로부터 면허 및 승인 획득을 조건으로 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도서관 서비스(CPC 9631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1. 운송 서비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A. 해상운송 서비스			
국제운송 화물 및 여객(CPC 7211 및 7212, 연안운송 서비스 제외) 다음을 포함함. • 선박 유지 및 보수 해운 부수 서비스 • 해상화물 취급 서비스[4] • 창고업 서비스(CPC 74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 화물: 외국인 지분은 49퍼센트까지로 제한됨. – 여객: 외국인 지분은 70퍼센트까지로 제한됨. – 선박 유지 및 보수: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항구에서의 다음 서비스는 국제해상운송공급자에게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용 가능함. • 도선 • 예선 지원 • 식량・연료 공급 및 급수 •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폐기물 처리 • 선석 배정 서비스 • 항행원조 서비스 • 통신, 급수 및 전기 공급을 포함한 선박 운영에 필수적인 육상기반 운영 서비스

[4] "해상화물 취급 서비스"란 터미널 운영자를 포함한 하역회사가 수행하는 활동으로서 항만인력단이 하역회사 또는 터미널 운영회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직된 경우 항만노무자의 직접적 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적용대상이 되는 활동은 다음의 조직 및 관리를 포함한다: 선박으로의/선박으로부터의 화물 선적/하역, 화물의 고정/분리 그리고 선적 전 또는 하역 후 화물의 인수/인도 및 보호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5] • 해운대리업 서비스[6] • 해상화물운송주선 서비스[7]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은 49퍼센트까지로 제한됨.[8]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비상보수시설 • 정박, 접안지 및 선박접안 서비스
C. 항공 운송 서비스 d. 항공기와 그 부품의 유지 및 보수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5]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 란 컨테이너의 적입/적출, 수리 및 선적에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항만 지역 또는 내륙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을 말한다.

[6] "해운대리업 서비스"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대리인으로서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 이상의 해운선사 또는 해운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대표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을 말한다:

- 견적부터 송장 작성까지 해상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마케팅 및 판매, 회사를 대신한 선하증권의 발행, 필요한 관련 서비스 취득 및 재판매, 서류준비 그리고 사업정보의 제공
- 필요한 때 선박기항을 편성하거나 화물을 접수하는 회사를 대신한 업무수행

[7] "화물운송주선 서비스" 란 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취득, 선적서류 준비 및 사업정보 제공을 통하여 선적자를 대신하여 선적업무를 조직 및 점검하는 활동을 말한다.

[8] 운영과 기능은 공공 당국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운영자가 규정한 특정 서비스 의무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컴퓨터 예약 시스템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지상 조업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철도 운송 서비스 a. 여객 운송(CPC 7111) b. 화물 운송(CPC 7112) c. 화물 입환 서비스(CPC 71130) d. 철도운송장비의 유지 및 보수(CPC 8868) e. 철도 운송 서비스를 위한 지원 서비스(CPC 74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제9장
디지털 무역

제9.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컴퓨터 설비란 상업적 용도로 정보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컴퓨터 서버 및 저장 장치를 말한다.

적용대상인이란 제8.1조(정의)에 정의된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디지털제품이란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되며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물 또는 그 밖의 제품을 말한다.[1] [2]

전자인증이란 전자 통신 또는 거래의 당사자에 대한 신원을 검증하고 전자 통신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절차 또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송장이란 구조화된 디지털 형식을 사용하여 공급자와 구매자 간 지급 요청을 자동으로 생성, 교환 및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지급이란 지급인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수취인이 수용 가능한 금전상 청구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디지털제품"은 화폐를 포함한 금융상품의 디지털화된 표현은 포함하지 않는다.

[2] "디지털제품"의 정의는 전자적 전송을 통한 디지털제품의 무역이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 또는 상품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당사국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양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에 있거나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또는 암호기법으로 결합되어 있는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로서 전자문서에 관한 서명자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고 그 서명자가 그 전자문서에 포함된 정보를 승인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전자적 전송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이란 광자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송을 말한다.

핀테크란 금융서비스의 전달과 이용을 개선하고 자동화하는 기술의 사용을 말한다.

개방형 데이터란 자유로운 사용, 재사용 및 재배포에 필요한 기술적·법적 특성을 갖추어 이용 가능하게 된 디지털 데이터를 말한다. 이 정의는 당사국에 의하여 또는 당사국을 대신하여 보유되거나 처리되는 정보에만 관련된다.

개인 데이터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무역행정문서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발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한다. 그리고

요청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란 수신자의 동의 없이 또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접근 서비스 공급자 또는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규정된 한도에서 그 밖의 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상업적 또는 마케팅 목적으로 인의 전자 주소로 발송되는 전자 메시지를 말한다.

제9.2조
목적

1. 양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이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기회, 그 이용 및 개발에 대한 장벽 회피의 중요성, 디지털 무역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증진하는 체계의 중요성, 그리고 디지털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WTO 협정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이러한 사안에 대한 양자 간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전자상거래와 세계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포함한 디지털 무역의 추가적인 진전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제9.3조
적용범위 및 일반규정

1. 이 장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정부조달

나. 제9.15조를 제외하고, 당사국에 의하여 또는 당사국을 대신하여 보유되거나 처리되는 정보, 또는 그 정보의 수집에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그러한 정보에 관련된 조치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제8장(서비스 무역) 및 그 부속서의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의무(그러한 의무에 적용 가능한,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예외 포함)의 대상임을 확인한다.

4. 제9.5조, 제9.13조 및 제9.14조는 당사국의 조치가 다음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한도에서, 제8장(서비스 무역)의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그러한 조치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제8.6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라 만들어진 당사국의 약속에 명시되거나 당사국의 약속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모든 제한 및 조건, 또는

나. 제8장(서비스 무역)의 의무에 적용 가능한 모든 예외

제9.4조
관세

1. 어떠한 당사국도 전자적으로 전송된 콘텐츠를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의 인과 다른 쪽 당사국의 인 간의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내국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이 이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경우라면, 당사국이 전자적으로 전송된 콘텐츠에 대하여 그러한 내국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9.5조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1.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창작, 제작, 발행, 계약, 발주되거나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 가능하게 된 디지털제품이나 그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나 소유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인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자국이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다.[3]

2. 제1항은 제10장(지식재산권)의 권리와 의무에 불합치하는 한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3. 양 당사국은 이 조가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한다.

4. 제1항은 방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제9.5조의 의무를 해석할 때, 양 당사국은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가 내국민 대우로 한정되며 최혜국 대우는 포함하지 않음을 양해한다.

제9.6조
국내 전자거래 체계

1. 각 당사국은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1996) 또는 2005년 11월 23일 뉴욕에서 채택된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원칙과 합치되게 전자거래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전자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적 부담을 피한다. 그리고

나. 전자거래를 위한 자국의 법 체계의 개발에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촉진한다.

제9.7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1. 자국의 법에 따라 달리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당사국은 서명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다는 근거만으로 그 서명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전자인증에 관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가.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그 거래를 위하여 적절한 인증 방법을 상호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또는

나.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자신의 거래가 인증에 대한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방해하는 조치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특정한 범주의 거래에 대하여 인증의 방법이 일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거나 자국의 법에 따라 공인된 당국에 의하여 증명될 것을 요구할 수 있

다.

4. 양 당사국은 상호운용이 가능한 전자인증의 이용을 장려한다.

제9.8조
종이 없는 무역

1. 각 당사국은,

   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무역행정문서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나.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 형식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한다. 그리고

   다.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가호에 언급된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을 영어로 제공한다.

2.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의 의무에 주목하며, 각 당사국은 인이 단일접수지점을 통하여 참여 당국 또는 기관에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통과를 위한 무역행정문서 및 데이터 요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단일창구를 개설하거나 유지한다.

3.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무역행정문서와 관련된 데이터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단일창구와의 매끄럽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4.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제3항에서 언급된 무역행정문서에 관련된 데이터 교환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교환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5. 양 당사국은 제4항에서 언급된 데이터 교환 시스템이 가능한 한 서로 호환되고 상호운용이 가능해야 할 것임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데이터 교환 시스템의

개발 및 거버넌스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의 개발 및 채택을 위하여 노력한다.

6. 종이 없는 무역의 이용을 규정하는 이니셔티브를 개발할 때, 각 당사국은 국제기구가 합의한 방법을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제9.9조
온라인 소비자 보호

1. 양 당사국은 소비자가 디지털 무역에 참여할 때 오도적이고 기만적이며 사기적인 상업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고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피해 또는 잠재적 피해를 불러오는 오도적이고 기만적이며 사기적인 상업 활동을 금지하는 소비자 보호법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4]

3.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자국이 전자상거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보를 공표한다.

가. 소비자가 구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 기업이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

제9.10조
개인 데이터 보호

1. 양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 이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의 경제적·사회적 유익함과 그러한 보호가 디지털 무역에서 소비자의 신뢰 향상에 기여함을 인정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소비자 보호법 또는 규정과 같은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함으로써 이 항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 이용자의 개인 데이터 보호를 규정하는 법 체계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5]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 체계를 개발할 때,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나 국제기관의 원칙 및 지침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 데이터 보호 위반으로부터 디지털 무역 이용자를 보호할 때 비차별적 관행을 채택하도록 노력한다.

4.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디지털 무역 이용자에게 자국이 제공하는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정보를 공표한다.

가. 개인이 구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 기업이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

제9.11조
디지털 무역을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디지털 무역의 발전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소비자가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인정한다.

가. 그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 자신이 선택한 서비스 및 응용프로그램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

나. 법적·규제적 집행 활동상의 필요를 포함하여 그 당사국의 법을 조건으로, 자신이 선택한 서비스 및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 그리고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사생활 또는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 사생활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법이나 사생활과 관련하여 기업의 자발적 약속 이행을 규정하는 법과 같은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함으로써 이 항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다. 자신이 선택한 장치가 네트워크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그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달리 금지되지 않는 한, 그러한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

제9.12조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1. 각 당사국은 전자 메일 주소로 발송된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에 관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게 그러한 메시지의 지속적 수신을 방지하기 위한 수신자의 능력을 촉진하도록 요구하는 조치

나.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상업용 전자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치, 또는

다.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최소화를 달리 규정하는 조치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 대한 청구 수단을 제공한다.

3. 양 당사국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규제에 관하여 상호 우려가 있는 적절한 경우에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9.13조
정보의 국경 간 흐름[6]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이전에 관하여 자국의 규제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6] 이 조는 금융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2. 이 활동이 적용대상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일 경우, 어떠한 당사국도 개인 데이터를 포함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의 이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정보의 이전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9.14조
컴퓨터 설비의 위치[7]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통신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여 컴퓨터 설비의 사용에 관한 자국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적용대상인에게 그 영역에서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거나 위치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컴퓨터 설비의 사용 또는 위치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7] 이 조는 금융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9.15조
정부 데이터 공개

1. 양 당사국은 정부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및 사용의 촉진이 경제적·사회적 발전, 경쟁력 및 혁신을 강화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이 데이터를 포함한 정부정보를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범위에서, 당사국은 그 정보가 개방형 데이터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양 당사국은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이 개방형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그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9.16조
디지털 정부

1. 양 당사국은 기술이 보다 효율적이고 민첩한 정부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정부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정부가 자국 시민과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필요에 더 잘 부응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정부 운영 및 서비스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접근성, 투명성 및 책임성에 중점을 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부 절차를 채택한다.

   나. 디지털 의제 문제에 대하여 범분야적·범정부적 조정과 협력을 증진한다.

   다. 디지털 포용성을 염두에 두고 정부 절차, 서비스 및 정책을 형성한다.

   라. 정부 서비스 전달을 위한 통합 디지털 플랫폼과 공공 디지털 조력자를 제공한

다.

마. 재난 및 위기를 예측하여 역량 구축을 위하여 신생 기술을 활용하고 선제적 대응을 촉진한다.

바. 공공 정책의 계획, 전달 및 점검에 정부 데이터를 적용하고, 데이터의 신뢰할 만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규범과 윤리적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정부 데이터로부터 공공 가치를 창출한다.

사. 대중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정부 데이터와 정책 수립 절차(알고리즘 포함)를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아. 일반 대중과 정부 인력 모두의 디지털 역량 및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증진한다.

3. 디지털 정부 이니셔티브에 대한 양국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양 당사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정부 및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디지털 정부 전략 및 정책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교환한다.

나. 디지털 정부와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달에 대한 우수 관행을 공유한다. 그리고

다. 공무원의 교류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디지털 정부 역량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문 또는 훈련을 제공한다.

제9.17조
전자송장

1. 양 당사국은 상업적 거래의 효율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송장의 중

요성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자국 영역에서 전자송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스템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사용되는 시스템과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전자송장에 관련된 조치의 이행이 양 당사국의 전자송장 체계 간의 국경 간 상호운용성을 지원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전자송장에 관련된 자국 조치의 기반을 국제 체계에 두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양 당사국은 상호운용이 가능한 국제 체계를 포함하여, 상호운용이 가능한 전자송장 시스템의 전 세계적인 채택을 증진하는 것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기업이 전자송장을 채택하는 것을 증진하고, 장려하고, 지원하고 또는 촉진한다.

나. 전자송장을 지원하는 정책, 인프라 및 절차의 존립을 장려한다.

다. 전자송장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전자송장을 위한 역량을 구축한다. 그리고

라. 우수 관행을 공유하고 상호운용이 가능한 국제 전자송장 시스템의 채택을 증진한다.

제9.18조
전자지급

1. 전자지급, 특히 비은행, 비금융기관 및 금융기술(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전자지급의 급속한 성장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다음에 의한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국경 간 전자지급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가. 전자지급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의 채택 및 사용 강화

나. 전자지급 인프라의 상호운용성 및 상호연결성 증진, 그리고

다. 전자지급 서비스에서 혁신과 경쟁 장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규제 승인, 면허 요건, 절차 및 기술표준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전자지급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자국의 법과 규정을 공개한다.

나. 전자지급에 관한 규제 승인 또는 면허 승인에 관한 결정을 시의적절하게 완료한다.

다. 전자지급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 간에 자의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라. 전자지급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서비스 공급자 간 전자 데이터 교환을 위한 국제적인 표준을 채택하거나 활용한다.

마.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하여 제공되는 도구 및 프로토콜과 같은 개방형 플랫폼 및 구조의 사용을 촉진하고, 전자지급에서 보다 높은 상호운용성, 혁신 및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경우, 지급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제품 및 서비스용 API를 제3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장려한다. 그리고

바. 규제 및 산업 샌드박스 채택과 같은 방식을 통하여, 혁신과 경쟁 그리고 새로운 금융 및 전자지급 상품과 서비스의 도입을 시의적절하게 촉진한다.

3. 제1항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은 규제를 통하여 전자지급 시스템에서 안전성, 효율성, 신뢰 및 보안성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규제 및 정책의 채택과 집행은 지급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위험에 비례해야 할 것임을 인정한다.

제9.19조
디지털 신원

1. 자연인 또는 기업을 위하여 디지털 신원에 대한 양 당사국 간 협력이 디지털 무역의 연계성과 추가적인 성장을 증진할 것임을 인정하고, 각 당사국이 디지털 신원에 대하여 상이한 법적·기술적 접근을 취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각국의 디지털 신원 체제 간 호환성을 증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추구하도록 노력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각 당사국의 디지털 신원 구현 간 기술적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체계 및 공통 표준의 개발

나. 각 당사국의 법 체계에 따른 디지털 신원에 대한 유사한 보호, 또는 자율적으로 또는 합의로 부여되었는지에 관계없이 그 법적 효과에 대한 인정의 개발

다. 디지털 신원 체제에 대한 국제적 체계의 개발 지원, 그리고

라. 디지털 신원 정책 및 규제, 기술 구현 및 보안 표준, 그리고 디지털 신원 사용의 증진과 관련된 우수 관행에 대한 지식 및 전문 지식의 교환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9.20조
협력

양 당사국의 경제에 대한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관련된 법, 규정 및 그 이행에 대한 것을 포함하는 디지털 무역에 대한 정보와 경험, 그리고 우수 관행을 공유하기 위하여,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규제적 사안에 관한 대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이는 다음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다.

가. 온라인 소비자 보호

나. 개인 데이터 보호

다. 디지털 무역을 위한 자금세탁 방지와 제재의 준수

라.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마. 전자인증

바. 디지털 무역에 대한 지식재산 우려사항

사. 디지털 무역에서 중소기업의 도전과제

아. 디지털 정부

자. 정부 데이터 공개, 그리고

차.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

제9.21조
사이버보안

양 당사국은 안정적인 디지털 무역을 증진한다는 비전을 공유하며, 사이버보안에 대한 위협이 디지털 무역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다음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가.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자국의 적절한 권한 있는 당국의 역량 구축

나. 경험 및 우수 관행의 교환을 통하여 기존의 협력 메커니즘 및 추가 협력 강화, 그리고

다. 양 당사국의 전자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악의적 침입 또는 악성코드 유포의 적발 및 경감에 대한 협력

제9.22조
핀테크 협력

양 당사국은 양국의 핀테크 산업 간 협력을 증진한다. 양 당사국은 핀테크에 관한 효과적인 협력이 기업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가. 기업 또는 금융 분야를 위한 핀테크 솔루션의 개발을 촉진한다. 그리고

나. 각국의 법과 규정에 합치하도록, 핀테크에서의 양 당사국 간 기업가 정신 또는 스타트업 인재 협력을 장려한다.

제9.23조
인공지능

1. 양 당사국은 인공지능(AI) 기술의 사용 및 채택이 자연인과 기업에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디지털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또한 AI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는 AI 기술의 사용을 위한 윤리적 거버넌스 체계를 개발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디지털 경제의 초국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그러한 체계가 가능한 한 국제적으로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

3.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관련 지역, 다자 및 국제 포럼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는 AI 기술의 사용을 지원하는 체계(AI 거버넌스 체계)의 개발 및 채택에 대하여 협력하고 이를 증진한다.

나. 그러한 AI 거버넌스 체계를 개발할 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칙 또는 지침을 고려한다. 그리고

다. AI 기술의 사용 및 채택과 관련된 규제, 정책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대화의 증진 및 경험의 공유를 통하여 협력한다.

제10장
지식재산

제1절
일반규정

제10.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지식재산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을 포함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나. 특허 및 실용신안

다. 상표

라. 산업디자인

마. 집적회로의 배치설계(반도체 지형학)

바. 지리적 표시

사. 식물품종, 그리고

아. 미공개 정보의 보호

국민이란 관련 권리에 관하여, 제10.5조에 열거된 협정 또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보호를 위한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게 될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말한다.

제10.2조
목적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은 기술 지식 생산자와 사용자의 상호 이익에 대하여 그리고 사회적 및 경제적 복지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무역, 투자 및 기술 혁신의 증진과 기술의 이전 및 확산 그리고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제10.3조
원칙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권리자가 지식재산권을 남용하는 것 또는 무역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거나 기술의 국제적 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행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이 장과 합치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공중 보건과 영양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및 기술적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분야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이 장의 규정과 합치되어야 한다.

제10.4조
의무의 성격 및 적용범위

각 당사국은 이 장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한다.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이 장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 또는 집행을 자국의 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할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다만, 그러한 보호 또는 집행은 이 장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제도와 관행 내에서 이 장의 규정을 이행하는 적절한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한다.

제10.5조
국제 협정

양 당사국은 다음의 다자 협정에 규정된 양국의 의무를 재확인한다.

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나. 1970년 6월 19일 채택되고 2001년 10월 3일 수정된 「특허협력조약」

다. 1883년 3월 20일 채택되고 1979년 9월 28일 개정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하 “파리 협약”이라 한다)

라. 1886년 9월 9일 채택되고 1971년 7월 24일 개정된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이하 “베른협약”이라 한다)

마. 1989년 6월 27일 채택된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바. 1996년 12월 20일 채택된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이하 “WPPT”라 한다)

사. 1961년 10월 26일 채택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로마협약”이라 한다)

아. 1996년 12월 20일 채택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이하 “WCT”라 한다)

자. 1977년 4월 28일 채택되고 1980년 9월 26일 개정된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차. 2013년 6월 27일 채택된「맹인, 시각 손상인 또는 그 밖의 독서 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 촉진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이하 "마라케시 조약"이라 한다), 그리고

카. 1991년 3월 19일 채택된「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제10.6조
지식재산과 공중보건

양 당사국은 2001년 11월 14일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이하 "도하 선언"이라 한다)에서 수립된 원칙을 인정하고 이 장의 규정이 도하 선언과 무관함을 확인한다.

제10.7조
내국민 대우

1.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에 관하여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보호[1]에 대하여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2.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송달을 위한 주소지를 지정하거나 자국 영역에서 대리인을 임명하도록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국의 사법 및 행정 절차와 관련하여 제1항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이탈은

[1] 이 항의 목적상, "보호"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구체적으로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이용가능성, 취득, 범위, 유지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그리고 (2) 제10.43조에 규정된 효과적인 기술 조치의 우회 금지와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권리 및 의무

가. 이 장에 불합치하지 않는 법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해야 한다. 그리고

나.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3. 제1항은 지식재산권의 취득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 주관하에 체결된 다자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0.8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에 관한 자국의 법과 규정을 인터넷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제도와 관행에 따라 일반 대중이 상표, 지리적 표시, 산업디자인, 특허 그리고 식물품종권리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3. 양 당사국은 또한 이미 공공의 영역에 속하게 된 대상물의 확인을 지원하는 등록 지식재산권의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정보 자료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4.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그러한 정보가 영어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제10.9조
기존의 대상물 및 이전의 행위에 대한 이 장의 적용

1. 이 장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장은 당사국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미 존재하여, 보호가 주장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날짜에 보호되고 있거나, 제3자의 공정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함이 없이 이 장에 따른 보호 기준을 충족하거나 이후에 충족하게 되는 모든 대상물에 대하여 의무를 발생시킨다.

2. 이 장에서 규정되지 않는 한,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에서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미 공공의 영역에 속하게 된 대상물에 대한 보호를 회복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제10.10조
지식재산권의 소진

당사국이 회원인 국제 협정에서 지식재산권의 소진을 다루는 규정과 무관하게,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의 법 제도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소진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또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2절
협력

제10.11조
협력 활동 및 이니셔티브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각 지식재산부서 또는 각 당사국이 결정하는 그 밖의 기관 간의 적절한 조정, 훈련 및 정보교환 같은 것을 통하여 이 장의 적용대상인 대상물에 대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이 장에 따라 수행되는 협력 활동 및 이니셔티브는 양 당사국 자원의 이용가능성을 조건으로 하고, 당사국의 요청 및 양 당사국 간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른다. 협력은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가. 국내 및 국제 지식재산 정책의 개발

나. 특허 심사의 질과 효율성

다. 지식재산 행정 및 등록 시스템

라. 지식재산 관련 교육 및 인식

마. 다음과 관련된 지식재산 사안

1) 중소기업

2) 과학, 기술 및 혁신 활동

3) 기술의 창출, 이전 및 확산, 그리고

4) 여성과 청년의 역량 증진

바. 연구, 혁신 및 경제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의 사용과 관련된 정책

사. 세계지식재산기구 주관 하에 체결되거나 운영되는 것과 같은 다자 지식재산 협정의 이행

아. 역량 배양

자. 지식재산권의 집행, 그리고

차. 양 당사국 간 상호 결정될 수 있는 그 밖의 활동과 이니셔티브

제3절
상표

제10.12조
상표 등록이 가능한 표지의 유형

어떠한 당사국도 등록의 요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냄새 상표를 등록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상표에 대한 간결하고 정확한 설명 또는 시각적 표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13조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

각 당사국은 상표가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당사국은 증명표장이 보호되는 한, 이를 자국의 법에서 별도의 범주로 취급할 의무가 없다. 각 당사국은 또한 지리적 표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표지가 자국의 상표제도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10.14조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의 사용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제 3 자가 소유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10.15조
예외

당사국은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 3 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제10.16조
유명 상표

1. 어떠한 당사국도 어떠한 표장이 유명 표장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표장이 그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명 표장에 대한 구제를 거부할 수 없다.

가. 등록

나. 유명 표장 목록에의 등재, 또는

다. 표장의 유명성에 대한 사전 인식

2. 파리협약 제6조의2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명상표[2]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그 상표의 사용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표권자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어야 하며, 상표권자의 이익이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산업재산의 보호를 위한 파리 동맹 총회와 1999년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제34차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유명상표의 보호 규정에 관한 공동권고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4. 각 당사국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 상표[3]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선행 유명 상표와 혼동을 야기하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상표의 출원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

[2] 상표가 당사국에서 유명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 당사국은 상표의 명성이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통상적으로 다루는 분야의 일반인의 범위를 넘어설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3] 양 당사국은 유명 상표가 최초로 언급된 상표에 대한 출원, 등록 또는 사용 전에, 당사국에 의하여 결정된 대로, 이미 유명했던 상표임을 양해한다.

제10.17조
악의적 상표

각 당사국은 상표 등록을 위한 출원이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상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규정한다.

제10.18조
상표의 심사, 이의제기 및 취소의 절차적 측면

각 당사국은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다음을 포함하는 상표 심사 및 등록을 위한 제도를 규정한다.

가. 상표 등록의 거절 이유에 대하여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통지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나. 출원인에게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의 통지에 대하여 답변하고, 최초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상표 등록에 대한 최종 거절에 대하여 사법적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다. 상표 등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등록된 상표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그리고

라. 이의제기 및 취소절차에서의 행정적 결정은 그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 이는 전자적인 수단으로 제공될 수 있다.

제10.19조
전자적 상표제도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상표에 대한 전자적 출원, 전자적 처리 및 유지를 위한 제도, 그리고

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상표 출원 및 등록된 상표에 관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전자적 정보 시스템

제10.20조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

각 당사국은 1957 년 6 월 15 일 니스에서 체결되고 수정 및 개정된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이하 "니스 분류"라 한다)에 합치하는 상표 분류 체계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니스 분류[4]에 의하여 설정된 류별로 분류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그 명칭으로 표시하는 출원의 등록 및 공표, 그리고

나. 상품 또는 서비스는 등록이나 공표에서 니스 분류상 동일한 류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서로 유사한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 역으로, 각 당사국은 상품 또는 서비스가 등록이나 공표에서 니스 분류상 다른 류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여겨질 수 없도록 규정한다.

제10.21조
상표의 보호 기간

각 당사국은 상표의 최초 등록 및 각 등록 갱신이 10 년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규정한다.

[4] 니스 분류의 번역본에 의존하는 당사국은 발표 및 공표된 공식 번역본의 한도에서 니스 분류의 최신 버전을 따른다.

제10.22조
사용권의 비등록

어떠한 당사국도

가. 사용권의 유효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또는

나. 사용권자의 상표 사용이 상표의 취득, 유지 또는 집행과 관련된 절차에서 상표권자에 의한 사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위한 조건으로

상표 사용권의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10.23조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1. 국가코드 최상위도메인(ccTLD)의 도메인이름 관리를 위한 각 당사국의 시스템과 관련하여, 다음이 이용 가능하다.

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승인한 대로,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정책에서 수립된 원칙에 기초하거나 같은 맥락으로 만들어진 적절한 분쟁해결 절차 또는 다음의 절차

1) 신속하고 낮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계된 절차

2) 공정하고 공평한 절차

3) 지나치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절차, 그리고

4) 사법 절차에 의존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 절차

나. 각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련 관리자 정책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자에 관한 연락정보의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온라인상 대중의 접근, 그리고

다. 최소한 어떠한 인이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 의도로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 또는 보유하는 경우, 적절한 구제[5]

2. 각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에서 저작권 침해를 확인하고 완화하기 위하여 주로 저작권 침해 자료의 배포로 이익을 얻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막고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한다.

3. 각 당사국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면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구제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제도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제10.24조
국가명

각 당사국은 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도하는 방식으로 당사국의 국가명칭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법적 수단을 제공한다.

제4절
지리적 표시

제10.25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

[5] 양 당사국은 그러한 구제는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취하, 취소, 이전, 손해배상 또는 구제명령을 포함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음을 양해한다.

1.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당사국의 영역이나 그 영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말한다.

2. 양 당사국은 지리적 표시가 상표 또는 독자적 제도 또는 그 밖의 법적 수단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다.

제10.26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한 행정 절차

각 당사국은 상표 또는 독자적 제도를 통해서 지리적 표시의 등록 또는 인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등록에 대한 출원 또는 인정에 대한 요청에 대하여 그러한 출원 또는 요청의 제출을 규율하는 자국의 법과 규정이 대중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위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보장한다.

제10.27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일

당사국이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보호를 부여하는 경우, 그 보호는 그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자국에서의 출원일[6] 또는 등록일 이후 개시된다.

제5절
특허

제10.28조
특허 가능 대상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 언급된 출원일은, 적용 가능한 경우,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 출원일을 포함한다.

1. 각 당사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해야만 한다.[7] 이에 추가하여, 각 당사국은 알려진 물건의 새로운 용도 또는 사용방법에 대하여 특허가 가능하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특허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8]

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피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적 이용을 자국의 영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발명. 다만, 그러한 제외는 그 이용이 자국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적, 치료적 및 외과적 방법

제10.29조
공지 예외

각 당사국은 공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9] 등록 출원과 관련된 발명의 공지에 포함된 정보를 무시한다.

가. 발명가, 출원인 또는 자국 영역의 안 또는 밖에서 발명가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한 인에 의하여 실시된 경우, 그리고

나. 출원일 전 최소한 12개월 내에 발생한 경우

---

[7]이 조의 목적상, 당사국은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이라는 용어를 각각 “비자명성” 및 “유용성”과 동의어로 간주할 수 있다.

[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은 당사국이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7조와 합치되는 특허대상에 대한 예외를 입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된다.

[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허는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실용신안을 포함할 수 있다.

제10.30조
특허의 심사, 이의제기 및 무효의 절차적 측면

각 당사국은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다음을 포함하는 특허 심사 및 등록을 위한 제도를 규정한다.

가. 특허 등록의 거절 이유에 대하여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통지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나. 출원인에게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의 통지에 대하여 답변하고, 최초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특허 등록에 대한 최종 거절에 대하여 사법적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다. 이해당사자가 등록된 특허의 취소 또는 무효화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그리고

라. 이의제기, 취소 또는 무효화 절차에서의 결정은 그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 이는 전자적인 수단으로 전달될 수 있다.

제10.31조
보정, 정정 및 의견진술

1. 각 당사국은 특허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하여 보정, 정정 또는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 1회 제공한다.

2. 각 당사국은 특허권자에게 등록 후 보정 또는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그러한 보정 또는 정정은 특허권 전체 범위를 변경하거나 확대하지 않아야 한다.[10]

[10] 권리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확대하지 않는 보정 또는 정정은 특허권의 범위가 종전과 같거나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10.32조
예외

당사국은 특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 3 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않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6절
미공개 실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보호

제10.33조
의약품에 대한 미공개 실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보호

1. 당사국이 신규 의약품을 위한 시판허가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그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또는 모두에 관하여 미공개 실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정보를 이전에 제출한 인의 동의가 없이는 제3자가 다음에 기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11] 제품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신규 의약품의 시판허가일부터 최소 5년간 시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가. 그 정보, 또는

나. 그러한 정보를 제출한 인에게 부여된 시판허가

2. 당사국은 특허권자 또는 시판허가 신청자가 규제 당국에 제출한 특허정보에 기초하여,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의악품에 대하여 주장되는 특허의 적

[1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절의 목적상, 그러한 유사한 의약품의 시판허가, 또는 그 대안으로서, 그러한 허가에 대한 출원인의 요청이 이전에 승인된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미공개 실험 또는 그 밖의 자료에 기초하거나 그 이전에 승인된 제품의 이전 허가에 기초하는 경우, 그 의약품은 이전에 승인 받은 의약품과 “유사”하다.

용대상인 그 의약품의 시판을 구하는 제3자에게 시판허가의 발급을 배제하는, 사법절차를 제외한 시스템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따라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도하 선언

나. 도하 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WTO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들에 의하여 부여되었으며 양 당사국 간 발효 중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규정에 대한 면제, 또는

다. 양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하게 되는, 도하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개정

4. 제1항의 목적상, 신규 의약품이란 동일한 유효성분을 함유한 다른 의약품이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전에 시판허가를 획득하지 않은 그러한 유효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말한다.

제7절
산업디자인

제10.34조
산업디자인의 보호

1. 각 당사국은 물품의 일부(들)를 포함한 산업디자인에 대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자국의 국내법에서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등록된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확보하거나 집행하기 위한 요건이 그러한 보호를 획득하거나 집행하기 위한 기회를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3. 등록된 산업 디자인의 이용 가능한 보호 기간은 출원일부터 최소 20년에 달한다.

제10.35조
산업디자인의 심사, 이의제기 및 무효의 절차적 측면

각 당사국은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다음을 포함하는 산업디자인 심사 및 등록을 위한 제도를 규정한다.

가. 산업디자인 등록의 거절 이유에 대하여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통지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나. 출원인에게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의 통지에 대하여 답변하고, 최초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산업디자인 등록에 대한 최종 거절에 대하여 사법적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다. 이해당사자가 등록된 산업디자인의 취소 또는 무효화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그리고

라. 이의제기, 취소 또는 무효화 절차에서의 결정은 그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 이는 전자적인 수단으로 전달될 수 있다.

제10.36조
보정, 정정 및 의견진술

각 당사국은 산업디자인 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하여 등록 전 보정, 정정 또는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 1회 제공한다.

제10.37조

공지 예외

각 당사국은 공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디자인 등록 출원과 관련된 디자인 공지에 포함된 정보를 무시한다.

가. 창작자, 출원인 또는 자국 영역의 안 또는 밖에서 창작자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한 인에 의하여 실시된 경우, 그리고

나. 출원일 전 최소한 12개월 내에 발생한 경우

제10.38조
예외

당사국은 산업디자인에 의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산업디자인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보호되는 디자인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8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10.39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양 당사국은 다음을 준수한다.

가. 로마협약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나. 베른협약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다. WCT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그리고

라. WPPT 제1조부터 제23조까지

제10.40조
제한 및 예외

1. 이 절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는 일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이 조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베른협약, WCT 또는 WPPT 에 의하여 허용되는 제한 및 예외의 적용가능성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장하지 않는다.

제10.41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도의 균형

각 당사국은 비판, 논평, 뉴스 보도, 수업・학문・연구와 그 밖의 유사한 목적과 맹인, 시각 손상인 또는 그 밖의 독서 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 촉진과 같은 정당한 목적을 적절히 고려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제10.40조와 합치되는 제한 또는 예외의 수단을 통하여(디지털 환경을 위한 것을 포함한다) 자국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도에서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12]

제10.42조
계약에 의한 이전

[12] 마라케시 조약에서 인정된 바와 같다.

각 당사국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보유한 인이 다음을 하도록 규정한다.

가. 그 권리를 계약에 의하여 자유롭게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나.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창작의 바탕이 되는 고용계약을 포함한 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혜택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다.

제10.43조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에 관한 의무

1. 각 당사국은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자신의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에 관하여 해당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가 허락하지 않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2. 각 당사국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 가능,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게 할 것을 알면서 또는 민사구제에 대해서는 이를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13]를 권한 없이 고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인으로부터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제10.44조
집중관리

[13] 이 장의 목적상, 권리관리정보란 저작물・고정된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저작물의 대중 전달이나 고정된 실연 또는 음반의 대중 전달 또는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다음 정보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저작물・저작자・저작물에 관한 권리자 또는 실연자・실연자의 실연・음반 제작자・음반, 실연이나 음반에 관한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어떠한 숫자 또는 코드

양 당사국은 적절한 기록의 유지 및 보고 메커니즘을 포함할 수 있는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행을 기초로 한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위한 집중관리단체의 역할을 인정한다.

제10.45조
저작자 또는 권리자의 추정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관련되는 민사, 행정 및 형사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저작자・출판자・실연자・제작자 또는 방송국으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 이름이 표시되는 인을 그러한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지정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제9절
집행

제10.46조
집행상 일반 의무

1.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특히 제41조부터 제61조까지에 합치되게 각국의 법에 지식재산권의 집행을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침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구제 및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는 구제를 포함하여,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가 허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절에 명시된 집행절차가 자국의 법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절차는 정당한 무역에 대한 장벽의 설치를 피하고 그 남용으로부터의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14]

[1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이 절에 규정된 집행절차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그리고 상표 침해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한도에서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3. 각 당사국은 인터넷이나 그 밖의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저작권의 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한다.[15]

제10.47조
국경 조치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 및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부제4절의 규정에 따라, 위조된 상표 상품 또는 불법 복제된 저작권 상품의 수입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타당한 근거를 가진 권리자가 권한 있는 당국에 그러한 상품이 자유로운 유통에 반출되는 것을 그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정지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부제4절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그 밖의 침해와 관련된 상품에 대하여 그러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출하기로 되어 있는 침해상품의 관세 당국에 의한 반출 정지에 관하여 상응한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1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는 법령, 지침, 정책, 인식 캠페인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 11 장
정부조달

제 11.1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계약이란 물리적 기간시설, 공장, 건물, 설비 또는 그 밖의 정부소유 사업의 신축 또는 재건을 규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계약적 약정을 공급자가 이행하는 대가로서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사업의 임시 소유권 또는 이를 통제하고 운영하며 사용에 대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정된 기간 동안 부여하는 계약적 약정을 말한다.

상업적 상품 또는 서비스란 비정부적 목적을 위하여 비정부 구매자에게 일반적으로 상업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한 청약의 대상이 되고, 비정부 구매자에 의하여 관례적으로 구매되는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건설서비스란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CPC) 중분류 51에 근거하여, 그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든 토목 또는 건축 공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일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서면으로 또는 **서면**이란 독해 가능하고, 모사 가능하며, 사후에 통지될 수 있고 그리고 전자적으로 전송되고 저장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모든 문자 또는 숫자로 된 표현을 말한다.

제한입찰이란 조달기관이 자신이 선택한 하나 또는 복수의 공급자들과 접촉하는 조달 방법을 말한다.

유자격자 명부란 조달기관이 그 명부에 등재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결정하여 그 조달기관이 두 번 이상 활용하려는 공급자들의 명부를 말한다.

조달예정공고란 조달기관이 관심 있는 공급자에게 참가신청서, 입찰서 또는 둘 모두를 제출할 것을 청하기 위하여 공표하는 공고를 말한다.

대응구매란 국산 재료의 사용, 기술 면허, 투자, 대응 무역 및 이와 유사한 행위 또는 요건과 같이 국내 개발을 장려하거나 당사국의 국제수지계정을 개선하는 모든 조건 또는 약속을 말한다.

공개입찰이란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달 방법을 말한다.

조달기관이란 부속서 11-가(정부조달 양허표)에 열거된 기관을 말한다.

적격 공급자란 조달기관이 참가조건을 충족시킨다고 인정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선택입찰이란 조달기관이 적격 공급자들에 한정하여 입찰서 제출을 청하는 조달방법을 말한다.

서비스는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건설서비스를 포함한다.

공급자란 조달기관에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인 또는 인의 집단을 말한다. 그리고

기술규격이란 다음의 입찰 요건을 말한다.

가. 품질, 성능, 안전도 및 용적을 포함한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또는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을 위한 과정 및 방법을 규정한 것, 또는

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다루는 것

제 11.2 조
범위

이 장의 적용

1. 이 장은 적용대상조달에 관한 모든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목적상, 적용대상조달이란 다음의 정부조달을 말한다.

가. 상품, 서비스 또는 그 조합의 것

1) 부속서 11-가(정부조달 양허표)의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것, 그리고

2)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조달하지 않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달하지 않는 것

나. 구매, 매입 선택권을 갖거나 갖지 않는 임차 또는 리스 그리고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 수단에 의한 것

다. 제 9 항부터 제 11 항까지에 따라 추정된 조달금액이 조달예정공고의 공표 당시 부속서 11-가(정부조달 양허표)의 당사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관련 기준가와 같거나 초과하는 가액의 것

라. 조달기관에 의한 것, 그리고

마. 이 협정의 적용범위로부터 달리 배제되지 않는 것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활동

3. 부속서 11-가(정부조달 양허표)의 당사국의 양허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토지, 기존 건물 또는 그 밖의 부동산이나 이들에 대한 권리의 취득 또는 임차

나. 비계약적 합의 또는 협력협정, 무상교부, 융자, 지분참여, 보증, 보조금, 재정적 유인 및 후원 약정을 포함하여,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

다. 재무 대리 또는 예탁 서비스, 규제되는 금융기관의 청산 및 관리 서비스, 또는 융자 및 정부채권, 어음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을 포함한 공적 부채의 판매, 상환 및 배분과 관련된 서비스의 조달 또는 취득

라. 공공고용계약

마. 다음과 같이 수행되는 조달

1) 개발원조를 포함하여 국제지원을 제공하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수행되는 조달

2) 국제기구에 의하여 또는 외국의 또는 국제적 공여, 차관 또는 그 밖의 지원으로 자금이 충당되는 것으로서, 국제기구 또는 공여자의 조달 절차 또는 조건이 적용되는 것. 국제기구 또는 공여자의 절차 또는 조건이 공급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 그 조달은 제 11.5 조제 1 항을 따른다. 또는

3) 군대 주둔과 관련되거나 사업 서명국의 공동 이행과 관련된 국제 협정의 특정 절차 또는 조건하에서 수행되는 것

양허표

4. 각 당사국은 부속서 11-가(정부조달 양허표)의 자국 양허표에 다음의 정보를 명시한다.

가. 제1절에는 조달이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중앙정부기관

나. 제2절에는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상품

다. 제3절에는 건설서비스를 제외한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

라. 제4절에는 이 장의 적용을 받는 건설서비스

마. 제5절에는 일반 주해

바. 제6절에는 모든 조달 특혜

사. 제7절에는 기준가 조정, 그리고

아. 제8절에는 조달 정보

5. 적용대상조달의 맥락에서 조달기관이 제1절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인에게 특정 요건에 따라 조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제11.5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그러한 요건에 적용된다.

준수

6.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조달의 수행에서 자국의 조달기관이 이 장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7. 어떠한 조달 기관도 이 장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달의 어떠한 단계에서든 조달을 준비 또는 설계하거나 달리 구성하거나 별개의 조달로 나누지 않거나 조달가액 추산을 위한 특정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8.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이 새로운 조달 정책, 절차 또는 계약 수단을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이 장과 불합치하지 않아야 한다.

가액산정

9. 적용대상조달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조달가액을 추산할 때, 조달기관은 다음을 고려하여 조달의 전체 기간에 걸쳐 추정되는 최대 총 조달가액을 포함한다.

가. 그 계약에 따라 규정될 수 있는 할증료, 요금, 수수료, 이자 또는 그 밖의 수입 흐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보수

나. 선택 조항의 가액, 그리고

다. 동일한 조달에 따라 동시에 또는 주어진 기간 동안 하나 이상의 공급자에게 낙찰되는 계약

10. 조달의 개별적인 요건이 두 건 이상의 낙찰이나 낙찰의 분할로 귀결되는 경우(이하 “반복계약”이라 한다), 추정되는 최대 총 가액의 산정은 다음에 근거한다.

가. 조달의 전체 기간에 걸친 총 최대 조달가액

나. 직전 12개월 또는 조달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동안 낙찰된 동일한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반복계약의 가액으로서, 가능한 경우, 다음 12개월에 걸쳐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 또는 가액의 예상되는 변동을 고려하여 조정한 것, 또는

다. 최초 낙찰 후 12개월 또는 조달기관의 회계연도 동안 낙찰될 동일한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반복계약의 추정가액

11. 이 협정에 따라 달리 제외되지 않는 한, 조달의 전체 기간에 걸쳐 추정되는 최대 총 조달가액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그 조달은 적용대상조달로 간주된다.

제 11.3 조
일반 규정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공급자를 위한 특히, 경쟁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무역관계에서의 정부조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양국 정부조달 시장의 효과적이고 호혜적이며 점진적인 개방을 양국의 목적으로 정한다.

제 11.4 조
예외

1. 조치가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양 당사국 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게 되거나 양 당사국 간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공중도덕, 질서 또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라. 장애인, 자선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또는 재소자 노동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는 조치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에 불가결한 조달과 관련된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치를 하거나 그렇다고 여기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 11.5 조
일반원칙

내국민 대우 및 비차별

1. 적용대상조달에 관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각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및 서비스와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

다)이 국내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2. 적용대상조달에 관한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도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과의 대외 제휴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의 소유의 정도를 근거로, 국내에 설립된 한 공급자를 국내에 설립된 다른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또는

나.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가 특정한 조달을 위하여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라는 점에 근거하여 그 공급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3. 적용대상조달을 위하여 낙찰된 계약에 따른 모든 주문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적용대상이 된다.

조달 방법

4. 조달기관은 제11.9조 또는 제11.10조가 적용되지 않는 한, 적용대상조달을 위하여 공개입찰 절차를 이용한다.

5. 조달기관은 적용대상조달을 다음과 같이 투명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수행한다.

가. 공개입찰, 선택입찰 및 제한입찰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이 장에 합치하는 방식

나. 이해 상충을 피하는 방식, 그리고

다. 부패 관행을 방지하는 방식

원산지 규정

6. 적용대상조달의 목적상,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공급받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자국이 이와 동시에 통상적인 무역과정에서 같은 당사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공급받는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하는 원산지 규정과 다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달에 특정되지 않는 조치

7. 제1항 및 제2항은 관세 및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 그러한 관세 및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법, 그 밖의 수입규정 또는 절차, 그리고 적용대상조달을 규율하는 조치 외의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전자적 수단의 이용

8. 양 당사국은 조달 정보, 공고 및 입찰서류의 공표, 입찰의 접수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달에서 지급까지의 전체 주기를 포함하여 적용대상조달이 전자적 수단으로 수행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9. 전자적 수단으로 적용대상조달을 수행하는 때에, 조달기관은

가. 정보의 인증 및 암호화와 관련한 것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그 밖의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금융 시스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와 상호운용이 가능한 금융 시스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조달이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나. 참가신청 및 입찰을 포함하여, 공급자가 제공한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유지한다.

대응구매

10. 적용대상조달에 대하여,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부속서 11-가(정부조달 양허표)에 포함된 자국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응구매를 모색, 고려, 부과 또는 시행하지 않는다.

제 11.6 조
조달 정보의 공표

1.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조달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와 이 정보의 모든 변경이나 추가를 신속하게 공표한다.

2.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제1항에 기술된 정보와 제11.7조 및 제11.9조제4항에서 요구되는 공고를 공표하는 종이 또는 전자적 수단을 부속서 11-가(정부조달 양허표)의 자국 양허표의 제8절에 기재한다.

3. 각 당사국은 요청에 따라 제1항에 언급된 정보에 관련된 문의에 대한 응답으로 설명을 제공한다.

제 11.7 조
조달예정공고

1. 각 적용대상조달에 대하여, 조달기관은 제11.10조에 기술된 상황을 제외하고, 부속서 11-가(정부조달 양허표)에 기재된 적절한 종이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조달예정공고를 공표한다. 공고는 최소한 공고에 응답하기 위한 기간의 만료 또는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지된다.

2.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조달에 대하여, 부속서 11-가(정부조달 양허표)에 포함된 자국 양허표 제1절에 규정된 자국의 조달기관이 인터넷 또는 비슷한 망을 통하여 무료로 접근 가능한 전자적 공표에 대한 단일 창구에 조달예정공고를 공표하도록 보장한다.

3.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정보가 조달예정공고와 동시에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에게 무료로 이용 가능한 입찰 서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조달예정공고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 조달 기관의 명칭 및 주소와 그 조달 기관에 접촉하고 조달과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정보, 그리고 관련 서류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과 지불조건이 있다면 그 비용과 지불조건

나. 적절한 경우,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및 수량 그리고 선택 사항에 대한 기술,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 수량을 포함하는 조달에 대한 설명

다. 적용 가능한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인도 기한 또는 계약 기간

라. 적용 가능한 경우, 조달 참가 신청서 제출 주소 및 마감일

마. 입찰서 제출 주소 및 마감일

바.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의 공식 언어 외의 언어로 입찰서 또는 참가 신청서가 제출될 수 있는 경우, 그것들이 제출될 수 있는 하나 또는 복수의 해당 언어

사. 공급자가 제공해야 하는 특정 서류 또는 증명서에 대한 모든 관련 요건을 포함할 수 있는 공급자의 참가를 위한 모든 조건의 목록 및 간단한 설명

아. 조달기관이 제11.9조에 따라 입찰 참가를 청하는 대상으로 제한된 숫자의 적격 공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하는 데 사용될 기준과, 적용 가능한 경우, 입찰 참가가 허용될 공급자 수에 대한 모든 제한, 그리고

자. 조달이 이 장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의 적시

조달계획공고

4. 조달기관은 조달의 대상 및 조달예정공고의 공표 계획일을 포함해야 할 향후 조달 계획에 관한 공고(이하 “조달계획공고”라 한다)를 매 회계연도마다 가능한 한 조기에 공표하도록 장려된다.

제 11.8 조
참가조건

1. 조달기관은 적용대상조달의 참가조건을 공급자가 그 조달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법적 및 재정적 역량과 상업적 및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참가조건을 설정할 때, 조달기관은

   가. 공급자가 조달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그 공급자가 해당 당사국의 조달기관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계약을 종전에 낙찰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그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전 작업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 조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에는 이전의 관련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3.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조달기관은

   가.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의 영역 안과 밖 모두에서의 공급자의 영업활동에 기초하여 그 공급자의 재정적 역량, 상업적 및 기술적 능력, 규제 준수 관행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행을 평가한다.[1] 그리고

   나. 조달기관이 사전에 공고 또는 입찰 서류에 명시한 조건에만 근거하여 평가한다.

4.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공급자를 배제할 수 있다.

   가. 파산 또는 지급불능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급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고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제공한 정보에 합리적으로 의존할 수 있다.

나. 허위 신고

다. 이전의 하나 또는 복수의 계약상의 실질적인 요건 또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 중대하거나 지속적인 흠결

라. 중대한 범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관한 최종 판결

마. 공급자의 상업상 무결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업무상 부정 행위 또는 작위나 부작위, 또는

바. 세금 미납

제 11.9 조
공급자 자격심사

등록제도와 자격심사 절차

1.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관심 있는 공급자가 등록하고 특정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공급자 등록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조달기관이 그들의 자격심사 절차들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그리고

나. 조달기관이 등록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조달기관이 그들의 등록제도들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3. 어떠한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도

가. 자국의 조달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가 참가하는 것에 대하여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등록제도나 자격심사 절차를 채택 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는

나.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가 공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것을 금지 또는 지연하거나 그러한 공급자가 특정 조달에 고려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등록제도나 자격심사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다.

선택입찰

4. 조달기관이 선택입찰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가. 적격 공급자에게 적용대상조달에 대한 참가 신청을 제출하도록 청하는 조달예정공고를 공표한다. 그리고

나. 조달예정공고에 제11.7조제3항가호, 나호, 라호 및 사호부터 자호까지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5. 조달기관은

가. 관심 있는 공급자가 조달에 대한 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달에 대한 공고를 충분히 사전에 공표한다.

나. 조달기관이 제11.14조제3항나호에 명시된 바에 따라 통보하는 적격 공급자에게 최소한 제11.7조제3항다호, 마호 및 바호의 정보를 입찰기간이 시작될 때까지 제공한다. 그리고

다. 조달기관이 조달예정공고에 입찰에 허용될 공급자 수의 제한 및 제한된 숫자의 공급자를 선정하는 기준 또는 정당한 이유를 기술하지 않는 한, 모든 적격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한다.

6. 입찰서류가 제4항에 언급된 공고의 공표일부터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지 않은 경우, 조달기관은 제5항다호에 따라 선정된 모든 적격 공급자에게 입찰서류가 동시에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유자격자 명부

7.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이 관심 있는 공급자들에게 유자격자 명부에의 등재를 신청하도록 청하는 공고를 매년 발행하거나, 달리 전자적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유자격자 명부를 설립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그 공고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유자격자 명부가 사용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또는 이들의 범주에 대한 설명

나. 유자격자 명부에 등재하기 위하여 공급자들이 충족해야 할 참가조건과 조달기관 또는 그 밖의 정부기관이 공급자의 그러한 조건 충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할 방법

다. 조달기관 또는 그 밖의 정부기관의 명칭 및 주소와 그 조달기관에 접촉하고 유자격자 명부와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라. 유자격자 명부의 유효기간 및 이를 갱신하거나 종료시키기 위한 수단, 또는 유효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유자격자 명부 사용의 종료를 통보할 방법의 적시

마. 적용 가능한 경우, 유자격자 명부 등재를 위한 신청서의 제출 마감시한, 그리고

바. 유자격자 명부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달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적시. 다만, 그러한 적시가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공표된 정보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8. 유자격자 명부를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제7항에 언급된 공고에 규정된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공급자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명부에 포함시킨다.

9. 제7항에도 불구하고, 유자격자 명부가 3년 이하 동안 유효하게 될 경우, 조달기관은 제7항에 언급된 공고를 그 명부의 유효기간이 시작될 때 한 번만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그 공고는

가.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추가 공고는 공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나. 전자적 수단으로 공표되고 유효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

10.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유자격자 명부에의 등재를 신청하도록 허용하고, 합리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적격 공급자를 그 명부에 포함시킨다.

11. 유자격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급자가 유자격자 명부에 근거한 조달에의 참가 신청서 및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제11.14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그 신청서를 검토한다. 조달기관은 조달의 복잡함 때문에 신청에 대한 검토를 입찰서 제출이 허용되는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을 검토할 시간이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그 공급자를 그 조달과 관련하여 고려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조달기관 결정에 관한 정보

12. 당사국의 조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은 조달 참가 신청서 또는 유자격자 명부에 등재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공급자에게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게 알린다.

13. 당사국의 조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 공급자의 조달 참가 신청 또는 유자격자 명부 등재 신청을 거부하거나, 공급자가 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공급자를 유자격자 명부에서 삭제하는 경우, 그 기관은 그 공급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그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결정 이유에 대한 서면 설명을 그 공급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 11.10 조
제한입찰

1. 제 2 항을 조건으로 그리고 공급자 간 경쟁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국내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를 차별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 규정을 이용하지 않는 한, 조달기관은 제한입찰을 이용할 수 있다.

2. 조달기관이 제한입찰을 이용하는 경우, 조달의 성격에 따라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1.11조부터 제11.15조까지를 적용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 조달기관은 다음의 상황에서만 제한입찰을 이용할 수 있다.

가. 사전 공고, 참가 요청 또는 입찰 요청에 대하여

1) 입찰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거나 입찰참가를 신청하는 공급자가 없는 경우

2) 입찰서류상 필수적 요건에 부합하는 입찰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은 경우

3) 입찰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공급자가 없는 경우, 또는

4) 제출된 입찰서가 담합에 의한 것일 경우

다만, 조달기관이 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규정된 필수적인 요건을 실질적으로 수정하지 않아야 한다.

나. 상품 또는 서비스가 특정 공급자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고 다음의 이유로 합리적인 대안이나 대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1) 요건이 예술 작품에 대한 것인 경우

2) 특허, 저작권 또는 그 밖의 배타적인 권리의 보호, 또는

3) 기술적인 이유로 경쟁 부재에 기인하는 경우

다. 최초 조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원 공급자 또는 그의 인증 받은 대리인이 추가적으로 인도하는 경우로서, 그러한 추가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공급자 변경이

1) 최초 조달에 따라 조달된 기존의 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설비와의 상호호환성 또는 상호운용성 요건과 같은 기술적 이유로, 또는 원 공급자의 보증에 따른 조건으로 인하여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2) 조달기관에 중대한 불편 또는 상당한 비용 중복을 초래할 경우

라. 원자재 시장 또는 거래소에서 구매되는 상품의 경우

마. 조달기관이 조사, 실험, 연구 또는 독자 개발을 위한 특정 계약을 목적으로 그리고 그 계약과정에서 조달기관의 요청으로 한시적 이용을 위하여 의도되었거나 개발된 시제품 또는 최초 상품 또는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 시제품이나 최초 상품 또는 서비스의 독자 개발은 현장시험 결과를 포함하고 그 시제품이나 최초 상품 또는 서비스가 수용할만한 품질 기준으로 대량 생산 또는 공급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한적 생산이나 공급을 포함할 수 있으나, 상업성을 확립하거나 연구 및 개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대량 생산 또는 공급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롭게 개발된 이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그 후의 조달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된다.

바. 기초 사업에 부합하는 유사한 서비스의 반복으로 구성된 신규 서비스의 경우로, 그 기초 사업의 최초 계약이 낙찰되었으며, 그 조달기관이 최초 서비스에 관한 조달예정공고에 그러한 신규 서비스의 계약 낙찰에는 제한입찰절차가 사용될 수 있다고 적시한 경우

사. 이례적인 처분, 청산, 파산 또는 법정관리와 같이 매우 단기간에만 발생하는 예외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구매의 경우. 다만, 일반 공급자로부터의 통상적인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디자인 경연대회 당선자에게 낙찰되는 계약의 경우

1) 경연대회가 이 장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조직된 경우, 그리고

2) 당선자에게 디자인 계약이 낙찰되게 할 목적으로 경연대회가 독립적인 심사인단에 의하여 판정을 받는 경우, 또는

자. 엄밀히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조달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극도로 긴급한 상황을 이유로 공개입찰 또는 선택입찰에 의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적시에 취득할 수 없는 경우

3. 제 2 항에 따라 낙찰된 각 계약에 대하여, 조달기관은 조달기관의 명칭, 조달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액 및 종류, 그리고 제한입찰의 이용을 정당화한, 제 2 항에 기술된 상황과 조건을 적시하는 문안을 포함하는 서면 보고서를 준비하거나 기록을 유지한다.

제 11.11 조
협상

1. 당사국은 적용대상조달의 맥락에서 다음의 경우, 자국의 조달기관이 협상을 수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가. 조달기관이 제11.7조에 따라 요구되는 조달예정공고에서 협상을 수행할 의향이 있다고 적시한 경우

나. 평가를 통하여, 조달예정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규정된 특정 평가기준에 비추어 명백하게 가장 유리한 입찰서가 없는 것으로 보일 경우

다.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라. 모든 입찰이 조달기관의 예산에 규정된 배정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2. 조달기관은

가. 협상에 참가하는 공급자의 탈락이 조달예정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규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됨을 보장한다. 그리고

나. 협상이 타결된 경우, 나머지 참가 공급자에게 새로운 또는 개정된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공통적인 마감시한을 제시한다.

제 11.12 조
기술 규격

1. 조달기관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거나 적합성 평가절차를 규정하지 않는다.

2. 조달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술규격을 규정할 때, 조달기관은 적절한 경우,

가. 디자인이나 외형적 특성보다는 성능 및 기능적 요건을 기준으로 기술규격을 규정한다. 그리고

나.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기술 규격을 그러한 국제표준에 기초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기술규정, 인정된 국가표준 또는 건축법규에 기초한다.

3. 기술규격에 디자인이나 외형적 특성이 사용되는 경우, 조달기관은 적절한 경우 입찰서류에 “또는 동등한 것”과 같은 문구를 포함시켜, 조달의 요건을 명백하게 충족시키는 동등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입찰서를 고려할 것임을 적시해야 할 것이다.

4. 조달기관은 조달의 요건을 충분히 정확하게 또는 명료하게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상표 또는 상호, 특허, 저작권, 디자인, 형식, 특정 원산지, 생산자 또는 공급자를 요구하거나 인용하는 기술규격을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달기관은 입찰서류에 “또는 동등한 것”과 같은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5. 조달기관은 특정 조달을 위한 기술규격의 준비 또는 채택에 사용될 수 있는 조언을 그 조달에 상업적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인으로부터, 경쟁을 미리 배제하는 효과를 갖게 될 방식으로 구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달기관은 특정 조달을 위한 규격을 개발할 때 시장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조달기관이 천연자원의 보존 또는 환경의 보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다.

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조달기관이 그 당사국 영역 밖에서 정부의 민감한 정보의 보관, 호스팅(hosting), 또는 처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규격을 포함한 그러한 정보를 보호하는 데 요구되는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다.

제 11.13 조
입찰서류

1. 조달기관은 관심 있는 모든 공급자에게 그 공급자가 응찰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입찰서류를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거나 제공한다. 조달예정공고에 이미 규정되지 않는 한, 그러한 입찰서류는 다음에 대한 완전한 기술을 포함한다.

가.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범위 그리고 알려진 경우에는 그 수량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 수량을 포함한 그 조달 그리고 기술규격, 적합성 인증, 계획서, 설계도 또는 사용설명서 자료를 포함한 충족시켜야 하는 모든 요건

나. 공급자가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재정적 보증, 정보 및 서류를 포함한 모든 참가조건

다. 계약 낙찰시 고려될 모든 기준 및 그러한 기준의 상대적인 중요성

라. 공개 개찰이 있을 경우, 개찰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적절한 경우 입회 권한이 있는 인들

마. 조달기관이 전자적 수단으로 조달을 수행할 경우, 인증 및 암호화 요건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제출과 관련되는 그 밖의 요건

바. 입찰 평가와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조건

사. 지불조건 및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과 같은 입찰서가 제출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그 밖의 모든 조건, 그리고

아. 상품 인도 또는 서비스 공급 날짜

2.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적용 가능한 요금을 조건으로, 기관은 관련 입찰 서류를 모든 공급자가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자적 수단 또는 컴퓨터 기반 통신망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한다.

3. 조달기관은 조달될 상품의 인도 날짜 또는 서비스의 공급 날짜를 정할 때, 조달의 복잡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한다.

4. 조달기관은 관심 있는 공급자 또는 참가하는 공급자의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요청에 신속하게 답변한다. 다만, 그러한 정보가 그 공급자에게 다른 공급자보다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

수정

5. 조달기관이 계약의 낙찰 전에 조달예정공고 또는 참가한 공급자에게 제공한 입찰서류에 규정한 평가 기준 또는 요건을 수정하거나, 공고 또는 입찰서류를 개정하거나 재발행하는 경우, 그 조달기관은 그러한 수정사항 또는 개정되거나 재발행된 공고 또는 입찰서류를

가. 수정, 개정 또는 재발행 당시 조달에 참가 중인 모든 공급자를 조달기관이 알고 있는 경우, 그러한 모든 공급자에게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원래 정보를 이용 가능하게 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표하거나 서면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나. 적절한 경우 그러한 공급자가 최초 입찰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할만한 충분한 시간 내에 공표하거나 서면으로 제공한다.

제 11.14 조
기간

일반사항

1.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입찰서류를 획득하고 참가신청서와 응찰서를 준비 및 제출할 수 있도록 자국의 합리적인 필요에 합치되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가. 조달의 성격 및 복잡성

나. 예상되는 하도급 계약의 범위, 그리고

다. 전자적 수단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국내는 물론 국외의 지점에서 비전자적 수단으로 입찰서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시간

기간의 연장을 포함하여 그러한 기간은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 또는 참가하는 공급자에 대하여 동일하다.

마감시한

2. 선택입찰을 사용하는 조달기관은 참가신청서의 제출을 위한 마감일이 조달예정공고의 공표일부터 원칙적으로 25일 미만이 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조달기관에 의하여 적절하게 증명된 긴급사태로 그러한 기간이 실행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단축될 수 있다.

3.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달기관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다음의 날부터 40일 이상이 되도록 설정한다.

가. 공개입찰의 경우, 조달예정공고가 공표된 날, 또는

나. 선택입찰의 경우, 조달기관이 유자격자 명부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권유받을 것이라고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통보하는 날

4. 조달기관은 제3항에 규정된 입찰기간을 다음의 상황 중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5일씩 단축할 수 있다.

가. 조달예정 공고가 전자적 수단으로 공표되는 경우

나. 입찰서류가 조달예정공고 공표일부터 전자적 수단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다. 그 조달기관이 전자적 수단으로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5. 조달기관은 다음의 경우 제3항에 규정된 입찰 기간을 10일 이상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다.

가. 조달기관이 제11.7조에 따라 조달계획공고를 조달예정공고의 공표보다 최소 40일 그리고 12개월을 넘지 않을 만큼 미리 공표하였고, 그 조달계획공고가 다음을 포함하는 경우

1) 그 조달에 대한 설명

2) 입찰서 또는 참가 신청서의 대략적인 제출 마감일

3) 조달과 관련된 서류를 얻을 수 있는 주소, 그리고

4) 조달예정공고를 위하여 요구되는 이용 가능한 최대한의 정보

나. 반복계약에 대하여, 조달기관이 이 항에 근거한 입찰 기간을 차기 공고에서 제공할 것이라고 최초의 조달예정공고에서 적시하는 경우

다. 조달기관에 의하여 적절하게 증명된 긴급사태로 제3항에 규정된 입찰 기간이 실행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또는

라. 조달기관이 상업적 상품 또는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

6. 제5항과 연계하여 제4항의 원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에 규정된 입찰 기간이 조달예정공고가 공표된 날부터 10일 미만이 되도록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7. 조달기관은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 또는 참가하는 공급자에게 공통적인 마감시한에 따라 참가 신청 또는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기간과 이러한 기간의 연장은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 또는 참가하는 공급자에 대하여 동일하다.

제 11.15 조

입찰서의 취급 및 계약의 낙찰

입찰서의 취급

1. 조달기관은 모든 입찰서를 조달 과정의 공정성 및 공평성과 입찰서의 기밀성을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접수하고 개봉하며 취급한다.

2. 공급자의 입찰서가 입찰서 접수에 대하여 명시된 시각 후에 접수된 경우, 그 조달기관은 지연이 오로지 그 조달기관 측의 잘못된 취급 때문인 경우 그 공급자를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

3. 조달기관이 입찰서의 개찰과 계약의 낙찰 사이에 공급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형식상 오류를 정정할 기회를 주는 경우, 그 조달기관은 참가하는 모든 공급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한다.

계약의 낙찰

4. 입찰서가 낙찰 대상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제출되고, 개찰 시 입찰서가 공고 및 입찰서류에 규정된 필수 요건을 준수하며, 참가조건을 충족시키는 공급자가 제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조달기관이 계약을 낙찰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그 조달기관은, 충분히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조달기관이 결정한 공급자로서 공고 및 입찰서류에 명시된 평가기준에만 근거하여 다음을 제출한 공급자에게 계약을 낙찰한다.

가. 가장 유리한 입찰서, 또는

나. 가격이 유일한 기준인 경우, 최저가 입찰서

6. 조달기관이 제출된 그 밖의 입찰서의 가격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 조달기관은 그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하는지 및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능력이 있는지를 그 공급자와 검증할 수 있다.

7. 조달기관은 이 장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선택사항을 사용하거나, 적용대상조달을 취소하거나 낙찰된 계약을 수정 또는 해지하지 않는다.

제 11.16 조
투명성과 낙찰 후 정보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1. 조달기관은 입찰서를 제출한 공급자에게 계약 낙찰 결정을 신속하게 알린다. 조달기관은 서면 또는 공고의 신속한 공표를 통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공고에 낙찰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급자가 그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조달기관은 서면으로 제공한다.

2. 제11.17조에 따라, 조달기관은 요청 시 낙찰되지 않은 공급자에게 그 조달기관이 그 낙찰되지 않은 공급자의 입찰서를 선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 또는 낙찰자의 입찰서의 상대적 이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기록의 유지

3. 조달기관은 제11.10조제3항에 규정된 기록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적용대상조달에 대한 입찰 절차 및 계약의 낙찰과 관련된 서류, 기록과 보고서를 계약 낙찰 후 최소 3년 동안 유지한다.

제 11.17 조
정보의 공개

양 당사국에 대한 정보의 제공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낙찰에 성공한 입찰서의 특징과 상대적 이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조달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이 장에 따라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그 정보의 발표가 향후의 입찰에서 경쟁을 저해하게 될 경우, 그 정보를 접수하는 당사국은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협의하여 합의한 후를 제외하고는, 그 정보를 어떠한 공급자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

정보의 비공개

2. 이 장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법이 요구하는 한도 또는 그 정보를 제공한 공급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한 공급자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급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도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비밀정보의 공개가 다음과 같을 경우, 당사국(조달기관, 당국 및 심사기구를 포함한다)에게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법 집행을 방해하게 될 경우

나. 공급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다. 특정한 인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지식재산의 보호를 포함한다)을 저해하게 될 경우, 또는

라.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게 될 경우

제 11.18 조
조달 관행의 무결성 보장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정부 조달에서 부패를 다루기 위한 형사 또는 행정 조치가 존재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조치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정부 조달과 관련하여 사기 또는 그 밖의 불

법적인 행위에 관여했다고 그 당사국이 판단한 공급자들에 대하여, 무기한 또는 명시된 기간 동안 당사국 조달에 대한 참가 자격이 없도록 하는 절차를 포함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또한 조달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이 있는 인들의 잠재적인 이해 충돌을 가능한 한도에서 제거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보장한다.

제 11.19 조
국내 심의

1. 각 당사국은 공급자가 관심이 있거나 있었던 적용대상조달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다음에 대한 그 공급자의 이의제기나 문제제기(이하 “문제제기”라 한다)를 비차별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심의할, 조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최소한 하나의 공평한 행정 또는 사법 당국(이하 “심의 당국”이라 한다)을 유지, 설립 또는 지정한다.

가. 이 장의 위반, 또는

나. 공급자가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이 장의 위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의 제기할 권리를 갖지 않는 경우, 조달기관의 이 장을 이행하기 위한 그 당사국 조치의 준수 실패

이러한 문제제기를 위한 절차규정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한다.

2. 공급자가 관심이 있거나 있었던 적용대상조달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제1항에 언급된 위반 또는 실패가 있었다는 공급자의 문제제기가 있는 경우, 그 조달을 수행하는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은 조달기관과 공급자가 협의를 통하여 문제제기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장려한다. 그 조달기관은 그 공급자의 진행 중인 또는 향후의 조달 참가, 또는 행정적 또는 사법적 심의 절차상 시정 조치를 구할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문제제기를 공평하고 시의적절하게 검토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문제제기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를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한다.

3. 심의 당국 외의 기구가 문제제기를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 당사국은 공급자가 문제제기의 대상이 되는 조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심의 당국에 최초 결정을 상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심의 당국이 제1항에 언급된 위반 또는 실패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당사국은 입은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입찰 준비 또는 문제제기 중 하나 또는 양자 모두에서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제한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심의 당국이 법원이 아닌 경우 심의 절차가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가. 공급자는 문제제기를 준비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부여 받으며, 이 시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자에게 문제제기의 근거가 알려지거나 합리적으로 알려졌어야 했던 때부터 10일 이상이다.

나. 조달기관은 공급자의 문제제기에 서면으로 응답하고 심의 당국에 모든 관련 서류를 제공한다.

다. 문제제기를 개시한 공급자에게 심의 당국이 그 문제제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달기관의 응답에 답변할 기회가 제공된다. 그리고

라. 심의 당국은 공급자의 문제제기에 대한 결정을 결정의 근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시의적절하게 제공한다.

6.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문제제기의 해결을 기다리는 동안, 공급자의 조달 참가 기회를 보존하고 그 당사국의 조달기관이 이 장을 이행하는 조치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신속한 잠정조치, 그리고

나. 제 4 항에 따른 보상을 포함할 수 있는 정정 행위

이러한 절차는, 그러한 조치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공익을 포함하여 관련 이해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부작위에 대한 정당한 근거는 서면으로 제공된다.

제 11.20 조
부속서의 수정 및 정정

1. 당사국은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지를 회람하여 부속서 11-가(정부조달 양허표)의 자국 양허표의 제안된 수정 또는 정정(이하 "수정"이라 한다)을 통보한다. 당사국은 수정 전에 존재한 적용범위에 상응하는 적용범위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용범위의 변경에 대한 보상 조정을 제공한다. 당사국은 자국의 통지에 보상 조정안을 포함할 수 있다.

2. 당사국은 제안된 수정이 다음 중 하나에 관한 것이고 다른 쪽 당사국이 제안된 수정이 가호 또는 나호에 관한 것이 아님을 근거로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 보상 조정을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가. 그 당사국이 조달기관에 의한 적용대상조달에 대하여 통제 또는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제거한 그 조달기관, 또는

나. 다음과 같은 부속서 11-가(정부조달 양허표)의 자국 양허표에 대한 순전히 형식적인 성격의 정정 및 사소한 수정

1) 조달기관의 명칭 변경

2) 자국 양허표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조달기관의 합병

3) 자국 양허표에 열거된 조달기관이 그 부속서의 동일한 절에 열거된 조달기관에 모두 추가되는 둘 이상의 조달기관으로 분리, 또는

4) 웹사이트 참조 변경

3. 당사국이 이 장에 따른 자국의 권리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제안된 수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여기는 경우, 그 당사국은 통지 회람일부터 45일 내에 제안된 수정에 대한 이의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4. 당사국이 조달기관의 적용대상조달에 대한 정부의 통제 또는 영향력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음을 근거로 조달기관에 관한 수정을 포함하여 제안된 수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그 조달기관의 지속적인 적용범위를 포함하여 제안된 수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정부 통제 또는 영향력의 성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수정 당사국과 이의제기 당사국은 협의를 통하여 이의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시도를 한다.

5. 공동위원회는 합의된 수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부속서 11-가(정부조달 양허표)를 수정한다.

제 11.21 조
중소기업의 참여 촉진

1. 양 당사국은 경제성장과 고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중요한 기여와 정부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 촉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이 중소기업을 위한 특혜 대우를 제공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적격성 기준을 포함하여 그 조치가 투명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적절한 경우

가. 중소기업의 정의를 포함한 조달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보를 단일 전자 포털에서 제공한다.

나. 모든 입찰서류가 무료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다. 조달을 전자적 수단 또는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수행한다. 그리고

라. 중소기업에 의한 하도급의 이용을 포함하여 조달의 규모, 설계 및 구조를 고려한다.

제 11.22 조
재정적 의무

1. 이 장은 양 당사국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다.

2. 각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역할을 충족하기 위한 재정 비용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 11.23 조
언어

각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조달 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능한 경우 부속서 11-가(정부조달 양허표)의 각 당사국의 양허표 제8절에 기재된 공표물을 포함하여 제11.7조에 따른 자료나 정보의 공표에 영어를 사용한다.

부속서 11-가
정부조달 양허표

제1절
중앙정부기관

한국 양허표

기준가

제11장(정부조달)은 조달가액이 다음 금액과 같거나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장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는 중앙정부기관에 적용된다.

130,000 SDR　　모든 상품
130,000 SDR　　모든 서비스
5,000,000 SDR　모든 건설서비스

기관 목록

1. 감사원
2. 국무조정실
3. 국무총리비서실
4. 기획재정부
5. 교육부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외교부
8. 통일부
9. 법무부
10. 국방부
11. 행정안전부[협정 제11.4조(예외)에 규정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구매는 제외한다]
12. 문화체육관광부

13. 농림축산식품부
14. 산업통상자원부
15. 보건복지부
16. 환경부
17. 고용노동부
18. 여성가족부
19. 국토교통부
20. 해양수산부
21. 중소벤처기업부
22. 공정거래위원회
23. 금융위원회
24. 국민권익위원회
25. 방송통신위원회
26. 국가인권위원회
27. 인사혁신처
28. 법제처
29. 국가보훈부
30. 식품의약품안전처
31. 국세청
32. 관세청
33. 조달청
34. 통계청
35. 검찰청
36. 병무청
37. 방위사업청
38. 경찰청[협정 제11.4조(예외)에 규정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구매는 제외한다]
39. 국가유산청
40. 농촌진흥청
41. 산림청
42. 특허청
43. 기상청
4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 양허표에 대한 주해

위의 중앙정부기관은 대한민국「정부조직법」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그들의 “보조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을 포함한다.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이 부속서에 열거되지 않은 모든 기관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아랍에미리트 양허표

기준가

제11장(정부조달)은 조달가액이 다음 금액과 같거나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장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는 중앙정부기관에 적용된다.

134,000 SDR 모든 상품
134,000 SDR 모든 서비스
5,844,000 SDR 모든 건설서비스

기관 목록

1. 재무부
2. 기후변화 및 환경부
3. 에너지 및 인프라부
4. 청년부
5. 경제부
6. 인적자원 및 에미라티제이션(Emiratization)부
7. 법무부
8. 산업 및 선진기술부
9. 지역사회개발부
10. 보건 및 예방부
11. 아랍에미리트우주청
12. 교육부

13. 관용 및 공존부
14. 연방평의회업무부
15. 국가상담청
16. 연방지리정보청
17.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행정청
18. 정무부통령실
19. 에미리트학교연합
20. 에미리트국영통신사
21. 체육국
22. 회교국 관리 및 기부국
23. 연방정부인적자원국
24. 연방조세청
25. 연방주민등록세관항만보안청
26.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척결 전략위원회
27. 내무부

아랍에미리트 양허표에 대한 주해

제1절의 양허표에 열거되지 않은 연방기관이 디지털조달플랫폼(Digital Procurement Platform)을 활용하는 경우, 그 연방기관은 제1절의 양허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절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

한국 양허표

1. 이 장은 이 협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제1절에 열거된 기관이 조달하는 모든 상품 조달에 적용된다.

2. 제11.4조(예외)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조건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의한 조달의 경우, 제11장(정부조달)은 다음의 군급번호(FSC) 분류품목에만 적용된다.

FSC	참조번호	설명
1	2510	차량의 운전실, 차체 및 프레임 구조 구성품
2	2520	차량 동력전달 장치 구성품
3	2540	차량용 가구 및 부수품
4	2590	그 밖의 차량 구성품
5	2610	항공기용이 아닌 공기식 타이어와 튜브
6	291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연료계통 구성품
7	292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전기계통 구성품
8	293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냉각계통 구성품
9	294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공기 및 기름필터, 여과기 및 정화기
10	2990	항공기용이 아닌 그 밖의 엔진부수품
11	3020	기어, 활차, 톱니바퀴 및 전달체인
12	3416	선반
13	3417	절삭기
14	3510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장비
15	4110	냉장장비
16	4230	오염제거 및 주입장비
17	4520	공간 난방장치 및 온수기

18	4940	그 밖의 유지장비 및 수리점용 특수장비
19	5120	날이 없고 전력으로 작동되지 않는 수공구
20	5410	사전조립 및 이동식 건축물
21	5530	합판 및 단판
22	5660	울타리 재료, 울타리, 문 및 구성품
23	5945	계전기 및 원통코일
24	5965	헤드세트, 송수화기,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25	5985	안테나, 도파관 및 관련 장비
26	5995	전선, 코드 및 전선조립품: 통신장비용
27	6505	약품 및 생물제제
28	6220	차량용 전기조명 및 설비
29	6840	살충소독제
30	6850	각종 특수화학물
31	7310	식품조리, 제빵 및 급식장비
32	7320	주방설비 및 기구
33	7330	주방용품 및 용구
34	7350	식탁용 식기
35	7360	음식조리 및 급식용 세트, 키트, 장비 및 모듈
36	7530	문방구 및 기록용지
37	7920	비, 솔, 걸레 및 스폰지
38	7930	청소 및 광택용 화합물 및 조제품
39	8110	드럼 및 깡통
40	9150	기름 및 윤활유: 절삭용, 윤활용 및 유압용
41	9310	종이와 판지

아랍에미리트 양허표

이 장은 제5절의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것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제3절
건설서비스를 제외한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

한국 양허표

보편적 서비스 목록 중 MTN.GNS/W/120 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다음의 서비스는 적용대상이 된다.

GNS/W/120	CPC	설명
1.A.b.	862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1.A.c.	863	세무 서비스
1.A.d.	8671	건축 서비스
1.A.e.	8672	엔지니어링 서비스
1.A.f.	8673	통합엔지니어링 서비스
1.A.g.	8674	도시계획 및 경관 건축 서비스
1.B.	84	컴퓨터 서비스
1.B.a.	841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와 관련된 자문 서비스
1.B.b.	842	소프트웨어 시행 서비스
1.B.c.	843	데이터프로세싱 서비스
1.B.d.	844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1.B.e.	845	컴퓨터를 포함하는 사무기계류 및 기기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서비스
1.E.a.	83103	선박 관련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1.E.b.	83104	항공기 관련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1.E.c.	83101, 83105*	그 밖의 운송기기(15인승 미만의 승용차로 한정함) 관련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1.E.d.	83106, 83108, 83109	그 밖의 기계류 및 기기 관련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83107	건설 기계류 및 기기 관련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1.F.a.	8711, 8719	광고대행 서비스
1.F.b.	86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
1.F.c.	865	경영 컨설팅 서비스
1.F.d.	86601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1.F.e.	86761*	성분과 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대기, 수질, 소음 수준 및 진동 수준에 대한 검사, 시험 및 분석 서비스로 한정함)
	86764	기술적 진단 서비스
1.F.f.	8811*, 8812*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서비스
	8814*	임업부수서비스(공중 소화 및 병해충 방제는 제외함)
1.F.g.	882*	어업 관련 자문 서비스
1.F.h.	883*	광업 관련 자문 서비스
1.F.m.	86751, 86752	관련 과학 및 기술 자문 서비스
1.F.n.	633, 8861 8862, 8863 8864, 8865 8866	장비의 유지 및 보수
1.F.p.	875	사진 서비스
1.F.q.	876	포장 서비스
1.F.r.	88442*	인쇄(스크린 인쇄, 그라비어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
1.F.s.	87909*	속기 서비스
		국제회의 대행 서비스
1.F.t.	87905	번역 및 통역 서비스
2.C.j.	7523*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2.C.k.	7523*	전자적 데이터 교환
2.C.l.	7523*	저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을 포함한 고도/부가가치 팩시밀리 서비스
2.C.m.	–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2.C.n.	843*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거래 처리 포함함)
2.D.a.	96112*, 96113*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제작 및 배급 서비스(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그러한 서비스는 제외함)
2.D.e.	–	음반 제작 및 배급 서비스(녹음)
6.A.	9401*	폐수 처리 서비스(산업폐수 수집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함)
6.B.	9402*	산업폐기물 처리 서비스(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함)
6.D.	9404*, 9405*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저감 서비스(건설업서비스는 제외한 서비스)
	9406*, 9409*	환경분야 시험평가 서비스(환경영향평가서비스만 해당함)
9.A.	641	호텔 및 그 밖의 숙박 서비스
9.A.	642	음식제공 서비스
9.A.	6431	오락을 제공하지 않는 음료제공 서비스(CPC 6431의 철도 및 항공 운송 관련 시설은 제외함)
9.B.	7471	여행 알선 및 대행 서비스(정부 운송요청은 제외함)
11.A.b.	7212*	카보타지는 제외한 국제운송
11.A.d.	8868*	선박의 정비 및 수리
11.F.b.	71233*	카보타지는 제외한 컨테이너 화물 운송
11.H.c.	748*	화물운송대행서비스 – 해운대리업 서비스 – 해상화물 운송주선 서비스 – 해운중개 서비스 – 항공화물 운송대리업 서비스 – 통관 서비스
11.I.	–	철도 운송을 위한 화물 주선

한국 양허표에 대한 주해

별표(*)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최초 약속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정된 조건부 양허안에 자세히 기재된 대로 “일부분”을 가리킨다.

아랍에미리트 양허표

이 장은 제8장(서비스 무역)에 따라 규정된 아랍에미리트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아랍에미리트 양허표에 대한 주해

서비스에 대한 조달은 제8장(서비스 무역)에 따라 규정된 아랍에미리트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명시된 제한 및 조건을 따른다.

제4절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서비스

한국 양허표

제11장(정부조달)은 각 절 및 제5절에 대한 주해를 조건으로 제1절에 열거된 기관이 조달하는 CPC 51에 분류된 모든 건설서비스에 적용된다.

한국 양허표에 대한 주해

제11장(정부조달)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어떠한 할당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아랍에미리트 양허표

이 장은 제8장(서비스 무역)에 따라 규정된 아랍에미리트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 모든 건설서비스에 적용된다.

아랍에미리트 양허표에 대한 주해

건설서비스에 대한 조달은 제8장(서비스 무역)에 따라 규정된 아랍에미리트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명시된 제한 및 조건을 따른다.

제5절
일반 주해

한국 양허표

1. 이 협정은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항에 대한 조달은 이 협정에 따른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이 협정은 건설서비스, 프로젝트 및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제11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모든 할당분 및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랍에미리트 양허표

1. 이 장은 다음 조달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건설서비스, 프로젝트 및 계약

   나. 내무부 또는 안보나 군사적 성격의 연방기관이 수행하는 군사적 성격의 모든 구매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1) 무기

      2) 사격 통제 장비

      3) 유도탄

      4) 항공기

5) 선박

6) 엔진 또는 터빈, 그리고

7) 통신, 탐지 및 방사능 간섭

다. 모든 의약품 구매, 그리고

라. 2019년 아랍에미리트 내각 결의 제4/8호, 2017년 아랍에미리트 내각 결의 제1/1호 그리고 그러한 결의를 개정하는 후속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파트너십 프로젝트”로 분류되는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 계약

제6절
조달 특혜

한국 양허표

한국에 대하여 적용 가능하지 않음.

아랍에미리트 양허표

1. 다음과 같은 특정 범주를 위한 법에 의하여 구속력 있는 특권이 있다.

가. 중소기업

중소 프로젝트 및 기업에 관한 2014년 연방법 제2호, 중소 프로젝트 및 기업에 관한 2014년 연방법 제2호의 행정규정에 관한 2016년 내각 결의 제35호 및 디지털 조달 정책에 관한 2022년 내각 결의 제1호에 근거하여, 점수를 매길 때 10퍼센트의 추가 보너스가 중소기업의 최종 점수에 가산될 것이다.

나. 국내가치(ICV) 증명서 보유자

국가 부가가치 프로그램에 관한 2021년 내각 결의 제72호 및 디지털 조달 절차 매뉴얼에 근거하여, ICV 증명서가 있는 공급자는 입찰 평가 시 ICV 지침에 따라 25퍼센트의 추가 보너스를 받는다.

다. 제11장(정부조달)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기관은 국내 녹색 공급자 및 원산지가 국내인 녹색 상품에 대하여 10퍼센트 가격 특혜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주해의 목적상,

1) **녹색 공급자**란 공동체 안전성, 경제 성장 및 환경 보존 간 발전의 균형을 달성하고자 국제 우수 관행에 따른 환경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그린 어플리케이션(green application)을 고려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2) **녹색 상품**이란 공동체 안전성, 경제 성장 및 환경 보존 간 발전의 균형을

달성하고자 국제 우수 관행에 따른 환경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그린 어플리케이션(green application)을 보유한 상품을 말한다.

제7절

기준가 조정

1. 각 당사국은 국제통화기금이 월별 “국제금융통계”에 공표하는 환산 비율을 사용하여 제1절에 포함되어 있는 기준가액을 자국 통화로 계산하여 환산한다.

2. 환산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 원의 기준가가 유효하게 되기 전 해의 10월 1일 또는 11월 1일부터 역산한 2년 동안의 SDR에 대한 한국 원의 일일 가치 평균, 그리고

나.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디르함의 기준가가 유효하게 되기 전 해의 10월 1일 또는 11월 1일부터 역산한 2년 동안의 SDR에 대한 디르함의 일일 가치 평균

3. 당사국은 자국 통화로 된 기준가액을 다음과 같이 버릴 수 있다.

가. 한국의 경우, 상품 및 서비스는 1백만원 아래, 그리고

나.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상품 및 서비스는 1백만 디르함 아래

4. 자국의 통화로 표시된 기준가액은 역년으로 2년 동안 고정된다.

5. 각 당사국은 기준가액의 자국 통화 환산액을 이 협정의 발효 직후에, 그리고 이후에 새롭게 계산된 기준가액을 시의적절하게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6. 양 당사국은 SDR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주요한 변화가 이 장의 적용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 협의한다.

제8절
조달 정보

한국의 공표수단

1. 법과 규정

- 대한민국 정부 관보
- 대한민국 정부 전자관보: http://gwanbo.moi.go.kr
- 한국 법제처 웹사이트: http://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

3. 공급자 등록

- http://www.g2b.go.kr

아랍에미리트의 공표수단

1. 법과 규정

- 공식 관보: https://mof.gov.ae/general-revenue-and-expenditure/

2. 디지털조달플랫폼 정보

- https://mof.gov.ae/government-procurement-operations/

3. 공급자 등록

- https://mof.gov.ae/supplier-registration-in-federal-supplier-register/
- 외국 공급자 등록 요건:

서류	외국 공급자	유효 기간(일)	만료 전 경고(일)
세금등록증명서	해당됨	365	30

수익 소유자의 여권 사본	해당됨	365	30
계약 성립(파트너십의 경우)	적용 가능한 경우	365	30

제 12 장
투자 원활화 협력

제12.1조
목적

양 당사국은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증진하려는 자국의 희망을 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2002년 6월 9일 아부다비에서 체결된「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의 제2조제1항 및 그에 대한 모든 후속 개정에 합치되게 투자를 장려하고 원활화하며 양 당사국의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12.2조
협력 활동

양 당사국은 투자 활동을 증진하고 원활화하는 데 협력한다. 양 당사국 간 투자 원활화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양 당사국 간 투자 원활화에 대한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 향상시키는 것

나. 투자 관계를 점검하고, 투자 확대 기회를 확인하며, 적절한 포럼에서 협상에 적절할 수 있는 투자 관련 사안을 확인하는 것

다. 양 당사국이 관심을 갖는 특정한 투자 사안에 대한 협의를 개최하는 것

라. 투자 흐름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

마. 투자 흐름에 대한 장애를 확인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또는

바. 적절한 경우, 투자원활화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민간 부문의 의견을 구하는 것

제12.3조
투자원활화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투자원활화위원회(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및 아랍에미리트 재무부 대표가 위원회의 공동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회합하되, 양 당사국은 최소 연 1회 회합하도록 노력한다. 한쪽 당사국은 관련 사안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서면 요청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전달함으로써 특정한 투자 사안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요청 당사국이 그 사안에 대한 논의를 연기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요청이 전달된 후 신속하게 그 사안을 논의한다.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하기 전에 위원회가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12.4조
제15장(분쟁해결)의 비적용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15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 13 장
경제협력

제 13.1 조
목적

1. 양 당사국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및 원활화와 경제 성장의 촉진을 위하여 상호 이익을 위한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을 증진한다.

2. 이 장에 따른 경제협력은 이 협정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무역 및 투자 원활화 계획을 지원하며 양 당사국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과 번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장 접근성과 개방성을 더욱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의 공동의 이해에 기초한다.

제 13.2 조
범위

1. 이 장에 따른 경제협력은 무역 및 투자와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이 협정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 및 활용을 지원한다.

2. 이 장에 따른 경제협력은 초기에는 다음의 분야에 집중한다.

가. 에너지 및 자원

나. 선진산업

다. 순환경제

라. 시청각 서비스와 공동제작

마. 스마트 농업과 기후 친화적 농업

바. 보건의료 산업

사. 관광

아. 운송

자. 해운과 해양

차. 디지털 경제/무역

카. 귀금속

타. 공급망

파. 경쟁

하. 바이오경제, 그리고

거.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분야

3. 양 당사국은 경제협력 활동에 관한 연례작업프로그램에서 경제협력을 위한 그 밖의 분야의 추가를 포함하여 위의 목록을 수정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4. 부속서 13-가부터 13-마까지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13.3 조
경제협력 활동에 관한 연례작업프로그램

1. 경제협력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제출한 제안에 기초하여 경제협력 활동에 관한 연례작업프로그램(이하 “연례작업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채택한다.

2. 이 장에 따라 개발된 연례작업프로그램의 각 활동은

가. 제 13.1 조에서 합의된 목적에 따른다.

나. 무역 또는 투자 원활화와 관련되고 이 협정의 이행을 지원한다.

다. 양 당사국에 관련된다.

라. 양 당사국의 상호 우선순위를 다룬다. 그리고

마. 기존의 경제협력 활동의 중복을 피한다.

제 13.4 조
공급망

1. 양 당사국은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보장하고 교란과 취약성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는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 간의 조정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은 충격을 예측할 수 있거나 견딜 수 있거나 충격으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고 양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복원력 있는 공급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국의 법과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면서 투명성, 다변화, 안전성 및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고자 한다.

제 13.5 조
경쟁정책

1. 양 당사국은 양국의 무역관계에서 자유롭고 왜곡되지 않은 경쟁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양국의 국내법, 규정과 이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경쟁정책의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협력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그러한 협력을 수행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은 반경쟁적 관행과 그것의 무역에 대한 부정적 효과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협의는 각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 경쟁법과 규정을 개발하고 유지하며 집행하는 자율성과 무관하다.

제 13.6 조
자원

1. 이 장에 따른 경제협력을 위한 자원은 양 당사국이 합의한 방식으로 그리고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제공된다.

2. 양 당사국은 연례작업프로그램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당사국과의 협력 및 비당사국의 기여를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 고려할 수 있다.

제 13.7 조
협력 수단

양 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을 통하여 기술적, 과학기술적 및 과학적 경제협력을 장려하도록 노력한다.

가.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회의, 훈련 및 지원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주최

나. 전문 훈련을 위한 연구방문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학계, 연구기관, 민간 부문 및 정부기관의 대표단, 전문 직업인, 기술자 및 전문가 교류

다. 무역 진흥에 관련된 양 당사국의 민간 부문과 기관 간의 대화 및 경험 교환

라. 아랍에미리트의 정부경험교환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부 개발 및 현대화 분야의 경험과 우수 관행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공유플랫폼의 개시

마. 양 당사국 기업가 간의 공동 사업 이니셔티브 증진,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

제 13.8 조
경제협력위원회

1.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을 위하여, 양 당사국은 경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이 장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나. 장래의 협력 또는 역량 강화 활동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확인하고 새로운 발상에 합의한다.

다. 연례작업프로그램 제안과 그 이행 메커니즘을 만들고 개발한다.

라. 연례작업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과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에 대한 기여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례작업프로그램의 진전 상황을 조정, 점검 및 검토한다.

마. 주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연례작업프로그램의 개정을 제안한다.

바.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상황 파악, 점검 및 벤치마킹을 수행하고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에서 피드백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그 밖의 위원회 또는 부속기구와 협력한다. 그리고

사. 이 장의 이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공동위원회와 협의한다.

3. 위원회는 다음에 의하여 조정된다.

가.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경제부 또는 그 승계기관

제 13.9 조
제 15 장(분쟁해결)의 비적용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 15 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부속서 13-가
에너지 및 자원

1. 양 당사국은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서 더 강력하고 더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장에 따른 협력을 증진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에너지 공급망 전체에 걸친 협력의 증진이 양국의 공동 목적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가. 석유와 가스의 탐사, 채굴 및 생산과 같은 업스트림 활동

   나. 석유의 정제, 석유화학물질의 처리, 가스의 액화와 원유 및 석유제품의 운송 및 유통과 같은 다운스트림 및 미드스트림 활동, 그리고

   다. 수소 생산, 저장, 운송, 응용 및 충전소

3. 에너지 및 자원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천연가스, 지속 가능한 탄화수소에너지(CCUS 및 수소를 포함한다) 및 바이오에너지와 같은 대체 및 재생 에너지원의 개발 및 이용

   나. 에너지 및 자원과 관련된 양 당사국의 영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의 설계 및 개발, 그리고

   다. 환경 영향이 낮은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부속서 13-나
선진산업

1. 양 당사국은 복원력과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둔 경제 발전, 안정 및 번영을 위한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선진산업에 대한 협력을 증진한다.

2. 선진산업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스마트 기계 및 자율 제조와 같은 선진 제조, 그리고

   나.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및 생명공학과 같은 선진기술

3.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하여 선진산업에 대한 협력을 증진한다.

   가. 합작사업의 이행, 기업 간(B2B) 및 기업 대 정부(B2G) 유대 강화, 정부 간(G2G) 협업 증진 및 제 3 국(다자간 G2G)으로의 협력 증대

   나. 공동 연구개발 및 스타트업 또는 합작투자의 공동 설립과 그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의 제공, 그리고

   다. 양 당사국이 합의한, 선진산업에 대한 그 밖의 형태의 협력

부속서 13-다
스마트 농업과 기후 친화적 농업

1. 양 당사국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공동의 비전으로 인정하며, 스마트 농업과 기후 친화적 농업 분야에서 더 강력하고 더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장에 따른 협력을 증진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 분야에서 협력을 지원하고 촉진하며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가. 스마트 농업과 기후 친화적 농업 분야의 경험, 정보, 우수 관행, 혁신 및 현대 기술의 교환

나. 소규모 농장에 경제적으로 유익한 기술을 강조하는, 스마트 농업과 기후 친화적 농업 관련 도전 과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연구

다. 스마트 농업과 기후 친화적 농업 분야에서 양 당사국의 민간 부문 간 협업을 위한 기회 및 투자 증대

라. 양 당사국의 상호 관심 분야에서 프로젝트 공동 마련, 그리고

마. 양 당사국이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 분야

부속서 13-라
보건의료 산업

1. 양 당사국은 상호 이익에 기초하고 각국의 국가 법률에 따라 보건의료 산업에서의 협력을 장려한다.

2. 보건의료 산업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공중 보건 정책 및 관리

   나. 의료 및 제약 정책 및 관리

   다. 병원 보건의료

   라. 디지털 보건의료, 그리고

   마. 보건의료 및 의료 장비의 신기술

3.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하여 보건의료 산업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

   가. 보건의료와 의료 및 제약 과학 분야에서의 인력 훈련

   나. 양 당사국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다. 한쪽 당사국의 의료 기관을 다른 쪽 당사국에서 홍보, 그리고

   라. 보건의료 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협력

부속서 13-마
바이오경제

적용범위

1. 이 부속서의 목적상,

바이오경제 부문은 바이오의약품, 바이오화학 및 바이오에너지, 바이오환경, 바이오의료기기, 바이오장비 및 바이오기기 그리고 바이오자원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제 1 절
혁신에 대한 협력

2. 양 당사국은 바이오경제 분야에서 혁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양 당사국 간 기술적인 혁신을 장려하고 증진하기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협력은 다음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양 당사국이 합의한 특정 분야를 지정

나. 연구소, 기업 및 투자자 간의 중개를 적극적으로 지원. 양 당사국은 비즈니스 포럼과 간담회를 포함한 중개 행사를 개최한다. 이러한 행사는 최소 연 2회 개최될 것이며, 혁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아이디어를 논의하며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장려할 것이다. 그리고

다.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프로젝트를 이행할 양 당사국의 연구소 및 기업을 지정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이용 가능한 경우 그리고 국가 경제 발전 및 산업 정책에 따라 제공. 프로젝트를 통하여 개발된 기술 및 산출물의 소유 및 활용은 양 당사국과 프로젝트 이행자 간의 사전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3. 양 당사국은 제2항에 규정된 분야 및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바이오경제전담반을 설치한다. 전담반은 진전 상황을 검토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향후 활동을 계획하기 위하여 최소 연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전담반은 이 절의 제2항가호에 규정된 협력 분야의 지정이 이 협정 발효 후 신속하게 개시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전담반은 또한 이 절의 제2항나호에 규정된 그 밖의 분야가 이 협정 발효 후 신속하게 개시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양 당사국은 관련 정부 대표 및 연구 전문가들의 개방형 혁신 모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이는 개방형 혁신의 구성 및 기능, 그 이점 및 그러한 모델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체계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의 교환과 전파를 포함할 것이다.

제 2 절
공급망 복원력에 대한 협력

정의

5. 이 절의 목적상,

바이오공급망이란 양 당사국의 바이오경제 분야에서의 기업 간 경제・상업・무역 관계를 말한다.

공급망 교란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중단, 지연 또는 부족을 포함한다.

가. 어느 한쪽 당사국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나. 재료, 물품 또는 제품의 국경 간 이동이나 그에 대한 접근을 중대하게 저해한다.

공급망 복원력에 대한 협력

6.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바이오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하고 자의적이며 부당한 제한 또는 장애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한다.

7. 조치의 개발・채택・적용 시 그리고 이 협정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양 당사국은 바이오공급망에 대한 조치의 효과를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8. 양 당사국은 바이오공급망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경우 수입 의존도, 가격 및 교역량 그리고 전 세계적인 공급 및 수요 변화를 점검하도록 노력한다.

9. 양 당사국은 원재료 수요, 수요 예상치, 제조 및 가공 능력에 관하여 해당 분야 또는 상품에 대한 시장 집중이 존재하는 경우, 공급원의 다변화를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10. 양 당사국은 어떠한 재료, 물품 또는 제품이 바이오경제에 필수적인지 공동으로 결정하고, 각국의 영역에 대하여 그러한 생산품의 저장 용량을 평가하도록 노력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생산품에 대한 자국의 저장 용량의 최적화 및 향상을 증진하고,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한 이용 가능한 용량을 평가하도록 노력한다.

공급망 교란 시 협력

11. 양 당사국은 공급망 교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공급망 교란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하여 서로를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12. 공급망 교란을 겪고 있는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은 다음을 하도록 노력한다.

가. 각 당사국의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작업반을 설치하고 요청 접수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면 또는 화상으로 회합한다.

나. 공급망 교란을 겪고 있는 분야 또는 생산품(이하 “영향을 받는 분야 또는 생산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급망 교란의 원인, 공급망 교란의 예상 지속기간 및 도움이 될 다른 쪽 당사국의 지원과 같은 정보를 공유한다. 그리고

다. 영향을 받는 분야 또는 생산품에 대한 통관 절차의 신속화, 필요한 생산품을 수출하려는 용의가 있는 기업에 관한 정보 제공 그리고 양 당사국이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그 밖의 조치나 정책과 같은,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나 정책을 논의한다.

13. 당사국이 공급망 교란 동안 바이오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는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하며 균형적이고 투명하며 일시적이고 이 협정, WTO 협정 및 그 밖의 관련 국제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합치한다. 그러한 조치나 정책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당사국은 다음을 하도록 노력한다.

가.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조치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의 시의적절한 공표 및 전파를 보장한다.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조치에 관한 협의를 수행한다. 이러한 협의는 가능한 한 조속히 개최되며 이메일, 영상 또는 전화 회의나 양 당사국 간 합의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개최될 수 있다. 그리고

다. 그러한 협의에서 합의될 수 있는 조치를 수행한다.

제 3 절
바이오경제 분야에서의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교류

14.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합의한 분야에 특히 집중하여, 바이오경제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요 기반 인력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협력한다.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훈련 커리큘럼, 방법론 및 자료 개발에 협업한다.

15. 양 당사국은 관련 정부 공무원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그리고 정부 공무원 간 정보 및 지식 교환의 증진에 협력한다. 양 당사국은 바이오경제 분야에서 정부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한다.

16. 양 당사국은 바이오산업에서의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교류와 관련된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서의 우수 관행과 경험을 공유한다.

제 14 장
중소기업

제 14.1 조
일반원칙

1. 양 당사국은 각국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증진하는 데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역할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의 중소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일자리와 성장 증진에 협력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이행될 중소기업 협력에서 민간 부문의 필수적인 역할을 인정한다.

제 14.2 조
중소기업의 무역 및 투자 기회를 증대하기 위한 협력

중소기업의 상업적 기회를 향상하기 위한 양 당사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무역 및 투자 기회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특히 다음을 한다.

가. 우수 관행 공유, 시장 조사 교류 및 중소기업의 국제 무역 참여와 현지 시장에서의 사업 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담센터, 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터, 수출지원센터 그리고 적절한 그 밖의 센터를 포함한 양 당사국의 소기업 지원 인프라 간 협력을 증진한다.

나. 여성 및 청년이 소유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육성, 그리고 그러한 중소기업 간 동반자 관계와 그들의 국제 무역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다. 자본 및 신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 개선, 적용대상정부조달 기회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 및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한 중소기업의 적응 지원 등에 대한 정보 및 우수 관행을 교환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력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라. 중소기업이 국제적인 공급자, 구매자 및 그 밖의 잠재적 사업 파트너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가 및 상담사가 정보 및 우수 관행을 공유할 수 있도록, 특별한 목적으로 구축된 모바일 또는 웹 기반 플랫폼에 대한 참여를 장려한다.

제 14.3 조
정보 공유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무료로 대중의 접근이 가능한 자국의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유지한다.

가. 이 협정의 문안

나. 이 협정의 요약, 그리고

다. 다음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만들어진 정보

1) 당사국이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설명, 그리고

2) 이 협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기회로부터 혜택을 받는 데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에 유용할 모든 추가적인 정보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웹사이트에 자동 전자 전송을 통한 다음에 대한 링크 또는 정보를 포함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동등한 웹사이트, 그리고

나. 당사국이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무역, 투자 또는 사업을 하는 데 관심이 있는 인에게 유용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국의 정부 기관 및 그 밖의 적절한 단체의 웹사이트

3.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제2항나호에서 기술된 정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통관 규정, 절차 또는 문의처

나. 지식재산, 영업비밀 및 특허보호권에 관한 규정 또는 절차

다. 기술 규정, 표준 및 품질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

라.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마. 외국인 투자 규정

바. 사업자 등록

사. 무역 진흥 프로그램

아. 경쟁력 프로그램

자. 중소기업 투자 및 자금조달 프로그램

차. 과세 및 회계

카. 정부조달 기회, 그리고

타. 당사국이 중소기업에 유용하다고 여기는 그 밖의 정보

4. 각 당사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웹사이트의 정보 및 링크가 최신이고 정확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러한 정보와 링크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5.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이 조에 기술된 정보가 영어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이 정보가 이 협정의 다른 정본 언어로 이용 가능한 경우, 그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이 정보를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노력한다.

제 14.4 조
중소기업문제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국가 및 지방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중소기업문제위원회(이하 "중소기업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중소기업위원회는

가. 양 당사국 영역 내 중소기업이 이 협정에 따른 상업적 기회를 이용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확인한다.

나. 양 당사국의 중소기업 간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을 확인하고 권고한다.

다. 여러가지 중에서 특히 훈련 프로그램, 무역 교육, 무역 금융, 무역 사절단, 무역 원활화, 디지털 무역에 대하여 중소기업 수출자를 지원하고 도우며, 양 당사국 영역 내 상업적 파트너를 확인하고, 우수 비즈니스 인증을 확립하는 데에서의 각 당사국의 경험과 우수 관행을 교환하고 논의한다.

라. 이 협정에 따라 중소기업이 이용 가능한 혜택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세미나, 워크숍, 웨비나, 멘토링 또는 그 밖의 활동을 증진한다.

마. 중소기업 수출 상담·지원·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향상에 대한 각 당사국의 작업을 촉진하기 위한 역량 강화 기회를 모색한다.

바. 당사국이 제14.3조에 언급된 웹사이트에 포함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권고한다.

사. 작업 프로그램의 중복을 피하고 이 협정에 따른 무역 및 투자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 기회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다른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부속기구 그리고 그 밖의 관련 국제 기구의 작업과 함께 중소기업위원회의 작업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조정한다.

아. 중소기업 관련 약속 및 활동을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부속기구의 작업에 고려하도록 그들과 협업하고 그들에게 장려한다.

자. 이 장과 이 협정 내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 향후 작업 및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는 결과 보고 및 권고를 한다.

차. 중소기업이 양 당사국의 지역 공급망 및 전 세계적인 공급망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통합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진한다.

카. 이 협정에 따른 기회를 이용하고 새로운 시장에 신속하게 접근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디지털 무역에 대한 참여를 증진한다.

타. 양 당사국의 영역 내 창업환경을 증진하기 위하여 청년과 여성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및 인식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교환을 촉진한다.

파.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자신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고 공동위원회에 적절한 권고를 한다. 그리고

하. 이 협정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능력에 관하여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포함한, 중소기업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

3. 중소기업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이 협정 발효일 후 1년 내에 소집하고 그 이후 매년 회합한다. 회의는 양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는 대로, 대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될 수 있다.

4. 중소기업위원회는 자신의 프로그램과 활동 수행 시, 적절한 전문가 및 국제공여기관과의 협업을 추구할 수 있다.

제 14.5 조
제 15 장(분쟁해결)의 비적용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 15 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15장
분쟁해결

제15.1조
목적

이 장은 가능한 경우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5.2조
협력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하며,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을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제15.3조
적용범위

1. 제15.3조제2항 및 제15.3조제3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한쪽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여기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적용된다(이하 "대상 규정" 이라 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와 불합치한다. 또는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했다.

2. 이 장은 비위반제소와 그 밖의 상황제소를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양 당사국은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정의 다음 장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의한다: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12장(투자 원활화 협력), 제13장(경제협력) 및 제14장(중소기업)

제15.4조
연락처

1. 각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개시된 분쟁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연락처를 지정한다.

2. 이 장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요청, 통보,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는 지정된 연락처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전달된다.

제15.5조
정보 요청

제15.6조 또는 제15.7조 각각에 따라 협의, 주선, 조정 또는 중개 요청 전에,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요청의 접수일 후 20일 이내에 제출될 서면 응답에,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제15.6조
협의

1.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른다는 목적으로 신의성실하게 협의를 개시함으로써 제15.3조에 언급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2. 한쪽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와 그 사실적 근거 및 적용 가능하다고 여기는 대상 규정을 명시한 법적 근거의 서술을 포함하여 요청의 사유를 적시한, 다른 쪽 당사국에 전달된 서면 요청으로 협의를 구한다.

3.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신속하게, 그러나 요청의 접수일 후 10일 이내에 그 요청에 답변한다. 협의는 요청의 접수일부터 30일 내에 개최된다. 협의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요청의 접수일부터 60일 내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부패성 상품 또는 적절한 경우 계절성 상품 또는 계절성 서비스에 관한 것을 포함한 긴급 사안에 대한 협의는 요청의 접수일부터 15일 내에 개최된다. 협의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15일 내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협의 중에,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운영과 적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그 조치의 완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각 당사국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6. 양 당사국이 협의 중에 공개한 모든 정보와 취한 입장을 포함하여 협의는 비밀이며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에서든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와 무관하다.

7. 협의는 대면으로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개최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대면으로 개최되는 경우에 협의는, 요청받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8. 요청받은 당사국이 요청의 접수일부터 10일 내에 협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협의가 제15.6조제3항 또는 제15.6조제4항 각각에 규정된 기한 내에 개최되지 않은 경우, 또는 양 당사국이 협의를 갖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또는 협의가 종결되고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협의를 구한 당사국은 제15.8조를 이용할 수 있다.

제15.7조
주선, 조정 또는 중개

1. 양 당사국은 언제라도 주선, 조정 또는 중개 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주선, 조정 또는 중개는 언제라도 시작될 수 있고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언제라도 종료될 수 있다.

2. 주선, 조정 또는 중개와 관련된 절차와 그 절차에서 양 당사국이 취한 특정 입장은 비밀이며, 이 장에 따른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 또는 양 당사국이 선택한 분쟁해결 절차상의 그 밖의 절차에서도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와 무관하다.

3.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주선, 조정 또는 중개 절차는 패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될 수 있다.

제15.8조
패널의 설치

1. 제소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가. 피소 당사국이 제15.6조에 언급된 기한에 따른 협의 요청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나. 이 협정의 제15.6조제8항에 언급된 협의가 30일 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이나 적절한 경우 계절성 상품 또는 계절성 서비스에 관한 것을 포함한 긴급 사안과 관련하여 15일 내에 개최되지 않거나, 양 당사국이 협의를 갖지 않도록 합의하거나 피소 당사국의 협의 요청 접수일부터 60일 내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2. 패널 설치 요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전달되는 서면 요청으로 이루어지며, 문제가 되는 조치를 적시하고 제소의 사실적 근거와 그러한 조치가 관련 대상 규정과 어떻게 불합치하는지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한 규정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기재한다.

3. 제1항에 따라 제소 당사국이 요청을 한 경우, 패널이 설치된다.

제15.9조
패널의 구성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3명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2. 제15.8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패널 설치 요청부터 20일 내에, 각 당사국은 패널위원을 임명한다. 양 당사국은 제15.8조제3항에 따른 패널의 설치부터 40일 내에 패널의 의장 역할을 할 세 번째 패널위원을 공동합의로 임명한다.

3. 어느 한쪽 당사국이 제2항에 정해진 기간 내에 패널위원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20일의 기간 내에 WTO 사무총장에게 임명되지 않은 패널위원을 요청부터 20일 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요청을 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일부터 20일 내에 WTO 사무총장 자신이 임명되지 않은 패널위원을 임명할 수 없다고 분쟁의 양 당사국에 통보하거나 임명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분쟁 당사국도 상설중재재판소의 사무총장에게 임명되지 않은 패널위원을 요청부터 20일 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요청을 할 수 있다.

5. 양 당사국이 제2항에 정해진 기한 내에 패널의장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다음 10일 내에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각 3명의 후보자들로 구성된 당사국 각각의 명부를 교환한다. 패널의장은 양 당사국이 각국의 후보자 명부를 교환하는 기한의 만료부터 10일 내에 명부에서 추첨으로 임명된다. 추첨에 의한 패널의장의 선정은 공동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6. 당사국이 제5항에 정해진 기한 내에 후보자 3명의 명부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의장은 다른 쪽 당사국이 제출한 명부에서 추첨으로 임명된다.

7. 패널의 구성일은 3명의 선정된 패널위원 중 마지막 패널위원이 임명된 날이다.

제15.10조

긴급 결정

당사국이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 패널은 패널의 구성으로부터 15일 내에 분쟁이 긴급한 사안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판정을 내린다.

제15.11조
패널위원의 요건

1. 각 패널위원은

   가. 법, 국제무역 및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그 밖의 사안의 전문성을 입증한다.

   나.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제휴 관계에 있거나 지시를 받지 않는다.

   다.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분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기관 또는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는다.

   라. 부속서 15-나에 규정된 행동 규범을 준수한다. 그리고

   마.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된다.

2. 패널의장은 또한 분쟁해결 절차에 경험이 있다.

3.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등한 사안과 관련하여 제15.7조에 따라 양 당사국에 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제공한 인은 그 사안에서 패널위원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다.

제15.12조
패널위원의 교체

원 패널의 어떠한 패널위원이 역할을 수행할 수 없거나, 사임하거나 행동 규범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교체될 필요가 있을 경우, 후임 패널위원은 제15.9조에 따른 원 패널위원의 임명을 위하여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임명되고, 패널의 업무는 후임 패널위원이 임명되는 동안 정지된다.

제15.13조
패널의 기능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가. 사안의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대상규정과 문제가 되는 조치의 적용 가능성 및 합치성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

나. 패널의 결정과 보고서에 사실 및 법적 조사결과와 패널이 한 모든 조사결과 및 내린 모든 결론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다. 그리고

다. 양 당사국과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이고, 상호 합의된 해결의 개발을 위하여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제15.14조
위임사항

1. 양 당사국이 패널 설치일부터 15일 내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양 당사국이 인용한 이 협정의 관련 대상 규정에 비추어 패널 설치 요청에 언급된 사안을 조사하고, 문제가 되는 조치와 이 협정의 관련 대상 규정과의 합치성에 대하여 조사결과를 내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 대하여 권고가 있을 경우 권고를

하고, 제15.18조 및 제15.19조에 따라 보고서를 전달하는 것"

2. 양 당사국이 제1항에 명시된 일정 내에 그 항에 언급된 것 외의 위임사항에 합의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합의된 위임사항을 그들의 합의 후 5일 이내에 패널에 통보한다.

제15.15조
해석 규칙

1. 패널은 국제공법에 관한 관습적인 해석규칙에 따라 대상 규정을 해석한다.

2. 적절한 경우, 패널은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패널의 보고서와 WTO 분쟁해결기구가 채택한 패널과 상소기구 보고서의 관련 해석을 또한 고려할 수 있다.

3. 패널의 판정은 이 협정에 따라 규정된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없다.

제15.16조
패널 절차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부속서 15-가에 규정된 모범 절차 규칙을 따른다.

2. 패널이 검토 중인 사안에 관하여 패널과의 의사소통은 일방적이지 않다.

3. 패널의 심의 및 패널에 제출된 문서는 비밀로 유지된다.

4.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과 불합치한다고 주장하는 한쪽 당사국은 그러한 불합치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어떠한 조치가 이 협정상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은 그 예외가 적용된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5.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과 협의하고 상호 합의된 해결의 개발을 위하여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6. 패널은 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정을 컨센서스로 내리며, 컨센서스가 불가능할 경우 다수결로 결정을 내린다. 패널 구성원은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별개 의견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별개 의견은 공개되지 않는다.

7. 패널의 판정은 양 당사국을 구속한다.

제15.17조
정보의 접수

1.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체 발의로, 패널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여기는 관련 정보를 양 당사국으로터 구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정보에 대한 패널의 모든 요청에 신속하고 완전하게 응답한다.

2.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체 발의로, 패널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어떠한 정보원으로부터도 구할 수 있다.

3.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체 발의로 그리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패널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기술적 조언 또는 전문가 의견을 구할 수 있다.

4. 이 조에 따라 패널이 획득한 정보는 양 당사국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양 당사국은 그 정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5.18조
잠정보고서

1. 패널은 패널의 구성일부터 90일 내에 양 당사국에 잠정보고서를 전달한다. 패널이

이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 패널의장은 지연의 이유와 패널이 잠정보고서를 전달하기로 계획한 날을 적시하여, 양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연은 기한 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잠정보고서는 대중에 공개되지 않는다.

2. 잠정보고서는 서술적 부분과 패널의 조사결과 및 결론을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잠정보고서의 제출일부터 15일 내에 잠정보고서의 정확한 측면을 검토하기 위한 서면 의견과 서면 요청을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대하여 그 요청의 전달부터 6일 내에 의견을 밝힐 수 있다.

4. 잠정보고서에 대한 각 당사국의 서면 의견과 요청을 고려한 후, 패널은 잠정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고 적절하다고 여기는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5.19조
최종 보고서

1. 패널은 패널의 구성일부터 135일 내에 양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전달한다. 패널이 이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 패널의장은 지연의 이유와 패널이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기로 계획한 날을 적시하여, 양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연은 기한 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최종 보고서는 잠정보고서에 대한 양 당사국의 서면 의견과 요청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패널은 자신의 최종 보고서에 최종 보고서가 이행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3. 양 당사국이 최종 보고서를 부분적으로만 공표하거나 최종 보고서를 공표하지 않기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최종 보고서는 양 당사국에 대한 전달부터 15일 내에 대중에 공개된다.

제15.20조
최종 보고서의 이행

1. 피소 당사국이 제15.3조에 따른 대상 규정에 불합치하게 행동했다고 패널이 판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신속하게 그리고 선의로 패널 판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즉시 준수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 피소 당사국은 최종 보고서의 전달 후 30일 이내에 제소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최종 보고서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통보하고, 양 당사국은 최종 보고서의 준수를 위하여 요구되는 합리적인 기간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제15.21조
준수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

1. 양 당사국이 합리적인 기간의 길이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제소 당사국은 제15.20조 제2항에 따라 피소 당사국이 한 통보의 접수일 후 20일 이내에 원 패널에 합리적인 기간의 길이를 결정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한다. 그러한 요청은 피소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동시에 통보된다. 이 항에 언급된 20일의 기간은 양 당사국의 상호 합의로 연장될 수 있다.

2. 원 패널은 관련 요청으로부터 20일 내에 양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자신의 결정을 전달한다.

3. 최종 보고서의 준수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의 길이는 양 당사국의 상호 합의로 연장될 수 있다.

제15.22조
준수 검토

1. 피소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최종 보고서의 준수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최소 한달 전에 최종 보고서 준수에서의 진전 상황에 대한 서면 통보를 제소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전달한다.

2.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이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전에 피소 당사국이 최종 보고서의 준수를 위하여 한 조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 조치가 충분한 준수를 어떻게 보장하는지에 대한 서술과 함께 모든 조치에 대한 통보를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제소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전달한다.

3. 양 당사국이 최종 보고서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의 존재 또는 대상 규정과의 합치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15.23조제1항에 따라 보상이 구해질 수 있거나 혜택의 정지가 적용될 수 있기 전에, 제소 당사국은 원 패널에 그 사안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은 피소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동시에 통보된다.

4. 그 요청은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의 적시와 왜 피소 당사국이 한 어떤 조치도 최종 보고서를 준수하지 못했는지 또는 달리 대상 규정과 불합치하는지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제소의 사실적 및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5. 패널은 그 요청의 제출일부터 60일 내에 양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자신의 결정을 전달한다.

제15.23조
미준수의 경우 일시적 구제

1. 피소 당사국이

   가.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전에 최종 보고서를 준수하기 위하여 한 어떠한 조치도 통보하지 못한 경우, 또는

   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최종 보고서의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제소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또는

   준수를 위하여 한 조치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소 당사국이 통보한, 최종 보고서를 준수하기 위하여 한 조치가 대상 규정과 불합치한다고 원 패널이 판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상호 만족할 만한 보상 또는 대안적 방안에 합의하기 위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2. 양 당사국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의 접수일부터 20일 내에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적용을 정지하려고 한다는 서면 통보를 피소 당사국에 전달할 수 있다.

3.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이 제7항에 따른 요청을 하지 않는 한, 피소 당사국에 통보를 송달한 날 후 20일째 되는 날에 이전 항에 언급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개시할 수 있다.

4.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가. 피소 당사국이 최종 보고서를 준수하지 못해서 발생한 무효화 또는 침해와 동등한 수준이다. 그리고

나. 이 협정에 따라 피소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으로 제한된다.

5. 제2항에 따라 어떠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할 때, 제소 당사국은 다음의 원칙을 적용한다.

가. 제소 당사국은 패널이 이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한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그 동일 분야 또는 분야들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우선 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 제소 당사국이 동일 분야(들)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밖의 분야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을 통보하는 통지에는 그 기초가 되는 이유를 적시한다.

6.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또는 제1항에서 예견된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는 일

시적이며 조치의 관련 대상 규정과의 불합치가 제거되거나, 양 당사국이 제15.28조에 따른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를 때까지만 적용된다.

7. 피소 당사국이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가 제4항 및 제5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우, 그 당사국은 제2항에 언급된 통보의 접수일 후 15일 이내에 원 패널에 그 사안을 조사해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 요청은 제소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동시에 통보된다. 원 패널은 피소 당사국으로부터의 요청 접수 후 45일 이내, 또는 원 패널이 원래의 구성원으로 설치되지 못할 경우 새롭게 설치된 패널의 마지막 패널위원이 임명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양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사안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통보한다.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는 패널이 이 항에 따른 자신의 결정을 전달하기 전까지 정지되지 않는다.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그 결정에 합치한다.

제15.24조
일시적 구제의 채택 후 준수를 위하여 한 조치의 검토

1. 피소 당사국이 최종 보고서의 준수를 위하여 한 조치를 제소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통보한 경우,

가. 제15.23조에 따라 제소 당사국이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권리를 행사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제2항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통보 접수일 후 30일 이내에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종료한다. 또는

나. 필요한 보상에 합의한 경우, 피소 당사국은 제2항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통보 접수일 후 30일 이내에 그러한 보상의 적용을 종료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이 통보 접수일부터 30일 내에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조치가 관련 대상 규정과 합치하는지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원 패널에 그 사안에 대한 조사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 요청은 피소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동시에 통보된다. 패널의 결정은 그 요청의 제출일 후 30일 이내에 양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통보된다.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조치가 대상 규정과 합치한다고 패널이 결정하는 경우,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또는 보상의 적용은 각 경우에 맞게 결정일 후 15일 이내에 종료된다. 통

보된 조치가 대상 규정의 부분적 준수만을 달성한다고 패널이 결정하는 경우, 혜택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또는 보상의 수준은 패널의 결정에 비추어 조정된다.

제15.25조
절차의 정지 및 종료

양 당사국이 서면으로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 패널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고 그러한 요청으로부터 연속 1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패널의 업무를 정지한다. 패널 업무가 정지된 경우, 이 장에 따른 관련 기간은 패널 업무가 정지된 기간과 동일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패널은 양 당사국의 서면 요청에 따라 정지 기간의 종료 전에 업무를 재개한다. 패널 업무가 연속 12개월을 초과하여 정지된 경우, 패널의 권한은 실효되고 분쟁해결 절차는 종료된다.

제15.26조
분쟁해결 절차의 선택

1. 이 장은 이 조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국인 그 밖의 국제무역협정에 따라 이용 가능한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양국의 권리와 무관하다.

2. 이 협정과 WTO 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국인 다른 국제 무역 협정에 따라 특정 조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3. 제2항에 언급된 특정 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이 분쟁해결 절차를 선택하고 이 장 또는 다른 국제 협정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으면, 그 선택된 분쟁해결 절차는 다른 절차들을 배제하고 이용된다.

4. 제3항의 목적상,

   가.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는 제15.8조에 따라 당사국이 패널 설치를 요청한 때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나. WTO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는 당사국이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6조에 따라 패널 설치를 요청한 때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다. 그 밖의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는 그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15.27조
비용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의 비용과 절차 수행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는 양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2. 각 당사국은 패널 절차와 관련되어 발생한 자국의 경비와 그 밖의 법무 비용을 부담한다.

제15.28조
상호 합의된 해결

1. 양 당사국은 제15.3조에 언급된 분쟁에 대하여 언제라도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를 수 있다.

2. 패널 절차 동안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르는 경우, 양 당사국은 패널의장에게 그러한 해결책을 공동으로 통보한다. 그러한 통보에 따라 패널은 종료된다.

3. 각 당사국은 합의된 기간 내에 상호 합의된 해결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이행 당사국은 상호 합의된 해결을 이행하기 위하여 자국이 한 모든 조치를 합의된 기간의 만료 이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알린다.

제15.29조
기간

1. 이 장에 규정된 모든 기간은 이 장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그 기간이 관련되는 행위 또는 사실의 다음 날부터 달력상의 일로 계산된다.

2. 이 장에 언급된 기간은 양 당사국의 상호 합의로 수정될 수 있다.

3. 이 장에 규정된 모든 기간은 긴급한 경우에 대하여, 이 장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절반으로 단축된다.

제15.30조
부속서

공동위원회는 부속서 15-가 및 15-나를 수정할 수 있다.

부속서 15-가
패널 절차 규칙

일정표

1. 양 당사국과 협의 후, 패널은 최종 패널위원의 임명으로부터 7일 내에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패널 과정을 위한 일정표를 정한다.

2. 패널 과정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패널 설치일부터 최종 보고서 일까지 135일을 넘지 않는다.

3. 패널이 일정표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패널은 제안된 수정과 그 이유를 양 당사국에 서면으로 알린다. 제15.10조에 따른 긴급한 경우,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 후 적절한 경우 일정표를 조정하고 그러한 조정을 양 당사국에 통보한다.

서면입장 및 그 밖의 문서

4. 패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제소 당사국은 자국의 최초 서면입장을 패널의 구성일 후 20일 이내에 패널에 전달한다. 패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의 최초 서면입장 전달일 후 20일 이내에 자국의 최초 서면입장을 패널 및 제소 당사국에 전달한다.

5. 한쪽 당사국은 각 패널위원과 다른 쪽 당사국에 자국의 서면입장의 사본을 제공한다.

6. 각 당사국은 심리의 종결부터 20일 내에 심리 동안 발생했던 모든 사안에 응답하는 보충적 서면입장을 패널과 다른 쪽 당사국에 전달할 수 있다.

7. 양 당사국은 모든 정보 또는 서면입장, 구두진술의 서면본 및 패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그것이 패널에 제출됨과 동시에 다른 쪽 분쟁 당사국에 전송한다.

8. 양 당사국과 패널위원은 수령증을 받는 송달, 등기우편, 택배, 팩스, 텔렉스, 전신 또

는 그 발송 기록을 제공하는 그 밖의 모든 통신 수단으로 요청, 통보,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를 전송한다.

9. 패널 절차와 관련된 모든 요청, 통보,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에서 사무적 성격의 사소한 오류는 그 변경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문서의 전달로 수정될 수 있다.

패널의 운영

10. 패널 의장은 패널의 모든 회의를 주재하고 양 당사국과 패널의 다른 구성원과 협의하여 심리 일시를 정한다. 패널은 행정적 및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1. 패널 심의는 비밀이다. 패널위원만이 패널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패널은 그러한 심의에 패널의 보조인의 참석을 허락할 수 있다. 패널 보고서는 양 당사국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된 정보와 진술된 것에 비추어 초안이 작성된다.

12. 개별 패널위원에 의하여 패널 보고서에 표현된 의견은 익명이다.

심리

13. 양 당사국은 심리와 패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14. 패널은 양 당사국이 사건을 패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최소 1회의 심리를 규정한다.

15. 당사국이 비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패널은 추가 심리를 열거나 심리를 전혀 열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다.

16. 모든 패널위원은 심리에 참석한다. 패널 심리는 패널위원과 양 당사국만 참석하여 비공개로 개최된다. 그러나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보조인, 번역가, 분쟁 당사국의 자문인, 행정 직원, 통역사 또는 지정된 기록원 또한 패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 패널이 수립한 그러한 모든 방안은 양 당사국의 합의로 변경될 수 있다.

17. 심리는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에 사건을 제출할 동일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패널이 수행한다. 패널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방식으로 심리를 수행한다: 제소 당사국의 변론, 피소 당사국의 변론, 제소 당사국의 답변, 피소 당사국의 반박 답변, 제소 당사국의 마무리 진술 그리고 피소 당사국의 마무리 진술. 의장은 각 당사국에 동일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구두 변론을 위한 제한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서면 질문

18. 패널은 절차 동안 언제라도 어느 한쪽 당사국에 직접 서면 질문을 할 수 있다. 패널이 서면 질문을 제시한 당사국은 패널이 수립한 일정표에 따라 패널과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답변을 전달한다.

19. 각 당사국은 패널이 수립한 일정표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응답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공할 기회를 가진다.

비밀

20. 패널의 심리와 패널에 제출된 문서는 비밀이다.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하여 패널에 제출한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21. 한쪽 당사국이 패널에 대한 자국의 서면입장을 비밀로 지정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자국의 서면입장에 포함된 비밀이 아닌 정보의 요약본을 요청일 후 10일 이내에 패널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이러한 규칙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의 입장에 대한 진술을 대중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작업언어

22. 서면입장, 구두 변론 또는 발언, 패널 보고서 및 양 당사국 간 그리고 패널과의 모든 서면 및 구두 의사소통을 포함한 패널 절차의 작업언어는 영어이다.

장소

23. 패널 심리의 장소는 양 당사국 간 합의로 결정된다. 합의하지 않은 경우, 첫 번째 심리는 피소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고 추가적인 심리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한다.

경비

24. 패널은 자신의 보조인, 지정된 기록원 또는 자신이 보유한 그 밖의 개인에게 지불되는 것을 포함하여, 절차와 관련되어 발생한 모든 일반 경비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최종 결산보고를 한다.

일방적 접촉

25. 패널은 다른 쪽 당사국의 참석 없이 한쪽 당사국과 회합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

26.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또는 다른 패널위원의 참석 없이,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패널위원과도 회합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

27. 어떠한 패널위원도 다른 쪽 당사국과 다른 패널위원의 참석 없이, 한쪽 당사국과 그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어떠한 측면도 논의하지 않는다.

부속서 15-나

패널위원 및 이 협정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에 관여하는 그 밖의 인에 대한 행동 규범[1]

정의

1. 이 부속서의 목적상,

가. **보조인**이란 패널위원의 임명 조건에 따라 사안별 과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패널위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거나 패널위원의 업무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인을 말한다.

나. **후보자**란 패널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이 고려되는 인을 말한다.

다. **패널위원**이란 제15.8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라. **절차**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장에 따른 패널 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마. **직원**이란 패널위원에 대하여, 보조인을 제외하고 패널위원의 지시와 통제하에 있는 인을 말한다.

과정에 대한 책임

2. 모든 패널위원은 분쟁해결 과정의 진실성과 공정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부정과 부정의 인상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직접적 및 간접적인 이해의 상충을 피하고, 높은 수준의 행동 규범을 준수한다. 전임 패널위원은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에 확립된 의무를 준수한다.

공개 의무

[1] 이 행동 규범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제15.7조에 따른 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명된 인에게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3. 이 협정에 따라 패널위원으로서 자신의 선정이 확정되기 전에, 후보자는 자신의 독립성 또는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절차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공개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후보자는 그러한 모든 이해, 관계 및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4. 일단 선정되면, 패널위원은 제3항에 언급된 모든 이해, 관계 및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양 당사국의 검토를 위하여 서면으로 공동위원회에 이를 전달함으로써 이를 공개한다. 공개 의무는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이해, 관계 및 사안을 패널위원이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지속적인 의무이다.

패널위원의 임무 수행

5. 패널위원은 이 장 및 그 부속서의 규정을 준수한다.

6. 선정 시, 패널위원은 절차의 과정 내내 공평하고 근면하게 자신의 임무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행한다.

7. 패널위원은 절차의 모든 측면에서 다른 패널위원의 참여기회를 거부하지 않는다.

8. 패널위원은 그 절차에서 제기되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그러한 문제들만을 검토하며, 결정할 임무를 그 밖의 어떠한 인에게도 위임하지 않는다.

9. 패널위원은 패널위원의 보조인 및 직원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그리고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를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0. 패널위원은 절차에 관하여 일방적 접촉에 관여하지 않는다.

11. 패널위원은 다른 패널위원에 의한 이 부속서의 실제 또는 잠재적 위반에 관한 사안을, 양 당사국 모두에게 통지하거나 해당 패널위원이 이 부속서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지하지 않는다. 각 패널위원은 패널 절차에 할애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자신의 직원과 보조인의 시간과 비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최종결산보고를 한다.

패널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12. 패널위원은 독립적이고 공정하다. 패널위원은 공평한 태도로 행동하며,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하는 것을 피한다.

13. 패널위원은 자신의 이익, 외부 압력, 정치적 고려, 대중의 요구, 당사국에 대한 충성 또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14. 패널위원은 자신의 임무에 대한 적절한 수행을 어떠한 식으로든 방해하거나 방해할 인상을 주는 모든 의무 또는 혜택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부담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

15. 패널위원은 모든 개인적 또는 사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패널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 패널위원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패널위원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한다.

16. 패널위원은 과거 또는 기존의 재정적, 사업적, 직업적, 가족 또는 사회적 관계나 책임이 자신의 행위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17. 패널위원은 자신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관계를 맺거나 재정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피한다.

특정 상황에서의 임무

18. 패널위원 또는 전임 패널위원은 그 패널위원이 패널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편파적이었거나 패널의 결정 또는 보고서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비밀의 유지

19. 패널위원 또는 전임 패널위원은 절차의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에 관한 모든 비공개 정보 또는 절차 중 획득한 모든 비공개 정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이익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20. 패널위원은 패널 보고서 공표에 앞서 그 보고서 또는 그 일부를 공개하지 않는다.

21. 패널위원이나 전임 패널위원은 법적 또는 헌법적 요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패널의 심의 또는 패널위원의 견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지 않는다.

22. 패널위원은 패널 절차에 관한 공식 성명을 내지 않는다.

제16장
예외

제16.1조
일반적 예외

1. 제2장(상품 무역), 제3장(원산지 규정), 제4장(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및 제6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2. 제8장(서비스무역) 및 제9장(디지털 무역)[1]의 목적상, GATS 제14조(그 각주를 포함한다)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제16.2조
안보 예외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여기는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 또는

나. 당사국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다음의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1) 핵분열성 및 핵융합성 물질 또는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

[1] 이 항은 당사국이 디지털 제품을 상품 또는 서비스로 여기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2) 무기, 탄약 및 전쟁 도구들의 거래와 관련되고 군사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되는 그 밖의 제품 및 재료의 거래에 관련된 조치

3) 군사시설에 제공할 목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조치

4) 전시 또는 그 밖의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시에 취해지는 조치, 또는

다. 당사국이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제16.3조
과세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2]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에 따른 어떠한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협정과 그러한 조세협약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하는 범위에서 그 조세협약이 우선한다.

3. 양 당사국 간의 조세협약의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그 협약 상에 기재된 기관이다.

[2]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WTO 협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가 또한 부여되거나 부과되는 규정은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세금과 과세조치는 제1.1조(일반 정의)에 정의된 관세와 그 정의 중 예외 나호, 다호 및 라호에 기재된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17장
협정의 운영

제17.1조
공동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는

   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대표로 구성된다. 그리고

   나. 상설 또는 임시 위원회나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고 자신의 권한을 그들에게 부여할 수 있다.

3.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부터 1년 내에 회합한다. 그 후,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과 관련된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2년에 한 번 회합한다. 공동위원회의 정기 회기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4. 공동위원회는 또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특별 회기 요청일부터 과도한 지체없이 특별 회기를 개최한다.

5.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이 협정을 적용하는 동안 획득한 경험과 이 협정의 목적에 비추어, 이 협정의 결과와 전체적 운영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나. 이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양허의 수정을 포함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이 제안할 수 있는 이 협정의 개정을 검토한다.

다.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 발생하는 양 당사국 간의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라.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와 작업반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율한다.

마.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한다.

바. 어느 한쪽 당사국이 요청한 경우, 이 협정의 규정에 부여될 상호 합의된 해석을 제안한다.

사. 이 협정이 상정한 대로 결정을 채택하거나 권고를 한다. 그리고

아.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6. 공동위원회는 자신의 업무 절차 규칙을 수립한다.

7. 공동위원회와 상설 또는 임시 위원회나 작업반의 회합은 대면으로 또는 양 당사국이 결정한 그 밖의 수단으로 수행될 수 있다.

8. 공동위원회는 상호 합의로 결정을 내리고 권고를 한다.

제17.2조
의사소통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의 공식적 의사소통을 수신하고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접촉선을 지정한다.

2. 이 협정과 관련된 모든 공식적 의사소통은 영어로 이루어진다.

제18장
최종 규정

제18.1조
부속서, 부록, 부속서한 및 각주

이 협정의 부속서, 부록, 부속서한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8.2조
개정

1. 어느 한쪽 당사국은 검토와 권고를 위하여 공동위원회에 이 협정의 개정을 위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2. 이 협정의 개정은 공동위원회의 권고 후, 그 개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양 당사국 각국의 국내 법적 절차 완료를 위하여 양 당사국에 제출된다.

3. 이 협정의 개정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제18.4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효한다.

제18.3조
존속 및 종료

1.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서면 통보로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고 그러한 종료는 통보일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8.4조
발효

1. 이 협정의 발효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각 당사국의 국내 법적 절차의 완료와 양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각국의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의 외교 경로를 통한 교환을 조건으로 한다.

2. 이 협정은 마지막 서면 통보의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제18.5조
정본

이 협정은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2 부씩 작성되었다.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년 월 일 에서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를 대표하여